한국 일생 의례 사전

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일생의례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Rites of Passage

한국일생의례사전

발행일 2014년 11월 25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3704-3230)
발행인 천진기
총괄 정명섭
기획 김태우·안혜경
편수원 김윤지 백민영 변혜민 은현정 이경민 조선영
윤문·교열 모노그래프·황치영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174-01
ISBN 978-89-289-0086-2 94380 : 비매품
978-89-92128-58-2 (세트) 9408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32733)

한국 일생 의례 사전

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의례들을 흔히 일생의례 혹은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라고도 일컬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유교적인 예법을 받아들여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유교적인 예법과 한국적인 풍습이 혼합된 독특하면서도 정교한 일생의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일생의례의 풍속은 한민족의 사상과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에 자칫 어렵고 고루한 풍속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의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이 사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일생의례에 대한 현지 조사와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집약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이 사전을 편찬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삼신에게 비는 전통적인 풍속에서부터 조산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요즘 세태까지, 혹은 전통적인 혼례뿐만 아니라 결혼식 후에 부케를 던지고 받는 풍속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전은 특히 민속학·인류학 분야는 물론이고 예학, 역사학, 가정학 등 인접학문의 연구자가 총망라되어 집필되었습니다. 이번 사전이 한국의 의례 문화를 조망해 보고 법고창신(法古創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전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집필진, 자문위원, 감수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준 우리 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를 위하여《한국민속대백과사전》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전5권이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되었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에 '무속신앙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편'(1·2권)이 발간되었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이 시작되어 같은 해 '설화편'(1·2권), 2013년에 '민요편'과 '판소리편'이 발간되었다. 올해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1·2권)이 발간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일생의례사전〉은 표제어 538항목, 원고 6,500여 매, 사진 700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일생의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일생의례의 각 분야를 전공한 89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거친 후 업체와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각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지닌 외부 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단이 감수하였으며 감수위원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필자들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등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전은 일생의례를 크게 출생의례, 관·계례, 혼례, 수연례, 상장례, 제례로 구분하고 사전에 실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되었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함께 분야별 차례를 제시하였다. 가나다 차례는 일반적인 사전 찾기 방식으로서 비교적 편리하게 표제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분야별 차례를 병행한 것은 출생의례에서 제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해당되는 관련 절차와 용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집필자란에는 집필자가 작성한 표제어와 쪽수를 기재하여 이를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일러두기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일생의례사전〉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일생의례'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출생의례·관·계례·혼례·수연례·상장례·제례를 말한다. 단, 왕실에서 왕이 주체가 되어 행해진 일생의례는 제외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일생의례의 역사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수용하였다. 일생의례와 관련하여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제도종교의 의례도 포함하였다.
2. 표제어는 『사례편람』 등의 예서와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등 현장조사 보고서, 일생의례와 관련된 최근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와 관외 자문을 거쳐 최종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4. 표제어는 출생의례, 관·계례, 혼례, 수연례, 상장례, 제례, 자료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표제어 중에 분야별로 중복되는 것들은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자료의 경우는 관혼상제에 관련된 예서 위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으며 근현대의 가정의례준칙 등을 추가하였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차례의 경우는 각 분야 안에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3. 분야별로 중복되는 표제어의 경우에도 각각의 분야별 차례에 모두 포함시켜 중복적 성격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표기방법

1.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0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2. 이 사전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를 위 첨자로 표기하였다.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표기하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 현실음에 따랐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단,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한 경우에는 [ ] 안에 넣어 구별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외국 인명의 경우에도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사진과 도판

사진, 도표, 삽화, 서식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본문 해당 부분에 첨부하였다. 시각 자료에 대한 정보는 내용, 장소, 시기 순으로 표기하고 촬영자 혹은 출처,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사진 제공

경향신문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무형유산원 · 국립중앙박물관 · 동아일보 · 부산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서울역사박물관 ·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 충현박물관 · 하회동탈박물관 · 학봉종택 · 한국국학진흥원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표제어 일람표

표제어의 영역과 연관 색인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표제어 일람표를 제시하였다.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관내 자문위원은 김영재, 이관호, 정연학, 정현미, 최순권, 최은수가 맡았다.
2. 관외 자문위원은 고영진(광주대), 구미래(불교민속연구소), 김명자(전 안동대), 김상보(대전보건대),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나경수(전남대), 박혜인(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3. 감수위원은 이길표(성신여대), 이범직(건국대), 이필영(한남대), 지두환(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한국일생
의례사전

2

차례

가나다순

ㄱ역

가가례 22
가례 24
가례도감의궤 25
가례언해 26
가례원류 27
가례의절 27
가례증해 28
가례질서 29
가례집람 30
가례향의 31
가묘(사당) 230
가복 31
가정의례준칙 31
간납 32
감모여재도 33
감실 35
갑사(사갑제) 229
강복 38
강신 38
개영역 39
갱(대갱) 122
갱기 41
갱물 41
건전가정의례준칙 42
격몽요결 43
견전 43
결혼기념일 44
경례유찬 45
계녀서 46
계례 46
계문 48
계반개 49
계반삽시 49
계빈 50
고려사 예지 52
고복(복) 191
고사당 52
고이성 53
고임새 54
곡 56
공포 58
곽 59
관(冠) 60
관(棺) 61
관대벗김 63
관례 63
관례벗김(관대벗김) 63
관례홀기 65
관혼상제 66
광중 70
교배례 71
교의 72
교환혼 73
구일 차례(중구 차례) 595
국궁 74
국수 74
국제결혼 76
국조오례의 78
궁합 78
궐명 80
근친 81
근친혼 82
금줄 83
급묘 85
기럭아비 86
기신재 86
기일비망기 87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기자의례 89
기제(기제사) 92
기제사 92
길례요람 96
길제 97
까마귀 모른 식게 99

ㄴ은

남계선생예설 100
남귀여가혼 101
납골(봉안) 201

납길 103
납주 103
납징 104
납채 105
납채서 107
납폐 108
납폐물목 110
납폐서 111
널(관) 60
녜제 112
노제 113
뇌주 114

디귿 ㄷ

다비 114
다시래기 117
단설 119
담제 120
당내 121
대갱 122
대공 123
대렴 124
대렴금 125
대례 126
대례상 128
대반 130
대상 131
도적 133
독(주독) 587
독축 134
돌 135
돌복 137
돌잡이 139
동상례(신랑다루기) 356
떡 140
떡국 차례(설 차례) 312

미음 ㅁ

막편지 143
만사(만장) 144
만장 144
망주석 145
맞선 146
매안(조매) 570
매장 147
메 148
멱목 149
면(국수) 74
면기 150
명기 151
명당 153
명당도 154
명자례(자관자례) 512
명재선생의례문답 155
명정 156
모란병 157
모사기 158
목기러기 159
목욕 160
묘제 161
묘지 163
묘표 166
무복친 167
무인석 168
문명 169
문상 170
문안인사(새벽문안) 303
문인석 171
문중 173

비읍 ㅂ

반곡 174
반기 175
반친영 176
반함 178
반혼(반곡) 174
발상 178
발인 179
방상시 180
배냇머리자르기 183
배냇저고리 184
백수백복도 186
백일 186
벌초 188
별전 189
보공 190
복 191
복수결혼 192
복인 194
복차장 196
본종오복제도(오복제도) 461
봉사대수 197
봉사혼 199
봉선잡의 200
봉안 201
봉제사접빈객 203
봉치시루 204
부고 205
부의 207
부제 208
부조 209
부조록 210
부케 210
분상 211
분재기 212
분정기 213
분축 214
분향 215
불교화혼식 216
불천위 218
불천위제사 220
불천지위(불천위) 218
빈 224
빈상여놀이 226
빈소(장례식장) 527
빈장 228

시옷 ㅅ

사갑제 229
사당 230
사당도(감모여재도) 33
사당제 233
사대봉사 234
사돈 236
사돈지 238
사례집요 238
사례편람 239
사마씨서의 239
사시제 240
사신 242
사십구재 242
사의 245
사자상 245
사주단자 246
사처방 248
삭망전 249
산골 249
산신제 250
산실 252
산전의례 253
산파 256
산후의례 258
산후조리 259
삼가례 261
삼가르기 262
삼내흠 262
삼년상 263
삼색나물 264
삼신 266
삼신받기 267
삼신상 269
삼실과 270
삼우제 271
삼일장 272
삼칠일 274
삼헌(종헌) 585
삽 275
삽시정저 276
상객 277
상견례 277
상두계(상포계) 302
상례 279
상례비요 282
상례언해 283
상문살 283
상변통고 284
상복 285
상수 287
상식 288
상여 289
상여장식 293
상용영반 295
상장 297
상장례 298
상주 300
상청 301
상포계 302
새벽문안 303
생신제 304
서옥제 305
석문가례초 306
석문상의초 307
석물 307
석수 310
선종 311
설 차례 312
설위 313
성년식 314
성년의 날 316
성묘 317
성복 319
성분제 320
세종실록 오례 321
소공 321
소렴 322
소렴금 323
소목 324
소병 326
소상 326
소천예배 327
속절 329
수서(수연문) 337
수성노인도 331
수시 332
수연례 333
수연문 337
수유 338
수의 339
수장 342
수조 342
수질 343
순장 344
시가례 345
시다림 347
시도기 348
시마 349
시묘살이 350
시사전 353
시접 353
시제(묘제) 161
시집살이 354
시향(묘제) 161
식혜 356
신랑다루기 356
신방엿보기 358
신부가마 359
신부대 360
신알례 361
신주 362
신줏단지 364
신행 366
신혼여행 368
심상 369

이응 ㅇ

아헌 430
악수 430
안산법 432
안태 434
앙장 436

애장 437
약혼 439
어육 440
어육기 441
여막 442
역복 444
연길 444
연도(위령기도) 470
연애혼 446
염습 447
염습구 448
염포 449
영결식 451
영구 453
영구차 454
영안실(장례식장) 527
영여 455
영정 456
영좌 457
영혼결혼식 457
예기 458
예의유집 459
오낭 460
오복제도 461
오복친(복인) 194
오선생예설분류 463
외손봉사 464
요질 465
우귀(신행) 366
우암경례문답 466
우인 466
우제 467
운상 468
위령기도 470
위령미사 472
위령제 473
위토 475
위패 476
위호 477
유감주술 477
유골용기 478
유사고(고사당) 52
유산법 480
유식 482
유월장 483
육아의례 484
윤도 486
윤회봉사 488
음복 490
음양오행 491
의례 494
의례경전통해 494
의례문해 495
의례준칙 495
의복 495
의양 496
의혼 497
이레잔치(일훼잔치) 503
이바지음식 499
이장 500
이혼 502
인줄(금줄) 83
일훼잔치 503
일생의례 506
임종 509
입관 510
입맷상 511

지읒 ㅈ

자관자례 512
자리걷이 513
자연장지 515
작명 517
잔반 519
잔치 520
장례 521
장례미사 525
장례식장 527
장명등 530
장사택일지 531
장지 532
재가례 534
재계 534
재실 536
재우제 537
재최 538
재행 539
재혼 540
적 542
적기 543
전 544
전안례 545
접촉주술 546
정복 547
정침 548
제관 549
제기 550
제기함 552
제례 552
제례홀기 557
제문 559
제물 560
제복 563
제사(제례) 552
제사도구 565
제사분할 566
제상 567
제주(祭酒) 568
제주(題主) 569
젯메(메) 148
조매 570
조문 571
조상숭배 572
조상신 574
조석전 576
조전 577
조혼 577
졸곡 578
종가 579
종계 581
종법 583
종중(문중) 173
종헌 585
좨주 586

주과포 586
주독 587
주례 588
주병 589
주술기자 590
주육례 592
주자가례(가례) 24
주자사례 593
준 594
중구 차례 595
중매인 596
중매혼 598
중상 598
증보사례편람 599
지관 600
지방 601
지방함 603
지석 604
지요 606
진기 607
진다(헌다) 718
진새례 607
진설 609
진설도 610
진설법 611
진적 613
진찬 614

치읓 ㅊ

차례 615
참례 618
참사자 619
참신 620
참최 621
천구 622
천금 623
천기대요 624
천도굿 624
천도재 627
천인천자문 629
철상 629
철시복반 631
첨작 631
첫국밥 632
첫나들이 633
첫날밤 634
청기 635
청장 636
청첩장 637
청혼서 638
체천 639
초가례(시가례) 345
초례(대례) 126
초분 639
초야(첫날밤) 634
초우제 640
초접 641
초종 642
초행 644
초헌 646
초혼(복) 191
촛대 647
최장방 647
추도식 648
추석 차례 650
축문 651
축판 653
출산금기 653
출생의례 655
출입고 659
출주 659
충이 660
취토 661
치성기자 662
치장 664
치전 665
친영 666
친전(노제) 113
친진 669
칠성판 669
침주 670

키읔 ㅋ

큰상받기 671

티읕 ㅌ

탈상 673
탕 674
탕기 675
태교 676
태교신기 678
태몽 679
태점 680
태처리 682
태항아리 684
택일 685
토장(매장) 147
통과의례 687
통혼권 690
퇴계상제례답문 692
퇴주기 693

피읖 ㅍ

패철(윤도) 486
편기 693
편적 694
평생도 695
폐백 696
폐백음식 698
포 700
풍장 701

히읗 ㅎ

하관 702
한식 절사 703
함 705
함진아비 706

합궁례(신방엿보기) 358
합근례 707
합문 708
합사 708
합설 710
합장 711
합환주 712
해산의례 713
향로 715
향상(향탁) 716
향탁 716
향합 716
허혼서 717
헌다 718
헌식 719
헌작 720
현구고례 722
혈식군자 726
호상 727
호석 729
호피 730
혼담 731
혼례 732
혼례복 736
혼례식 739
혼례홀기 741
혼반 743
혼백 745
혼사계 746
혼서물목(납폐물목) 110
혼서지(납폐서) 111
혼수 747
혼인 749
혼인권(통혼권) 690
혼인법 752
혼인성사 754
혼인신고 756
혼인여탐굿 758
혼주 759
화장 760
화장장 762
환갑(회갑) 764
회갑 764
회갑상 766
회격 769
회근(회혼례) 771
회다지 770
회혼례 771
효 775
후토제 776
후행 777
휘장 778
흠향 779
희생 780

한국일생
의례사전

2

차례

분야별

관혼상제 66
일생의례 506
통과의례 687



금줄 83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기자의례 89
돌 135
돌복 137
돌잡이 139
배냇머리자르기 183
배냇저고리 184
백일 186
별전 189
산실 252
산전의례 253
산파 256
산후의례 258
산후조리 259
삼가르기 262
삼신 266
삼신받기 267
삼신상 269
삼칠일 274
수유 338
안산법 432
안태 434
애장 437
유감주술 477
유산법 480
육아의례 484
인줄(금줄) 83
작명 517
잔치 520
접촉주술 546
주술기자 590
천인천자문 629
첫국밥 632
첫나들이 633
출산금기 653
출생의례 655
치성기자 662
태교 676
태몽 679
태점 680
태처리 682
태항아리 684
택일 685
해산의례 713



계례 46
계빈 50
관례 63
관례홀기 65
명자례(자관자례) 512
삼가례 261
성년식 314
성년의 날 316
시가례 345
자관자례 512
재가례 534
진새례 607
초가례(시가례) 345



결혼기념일 44
고사당 52
고임새 54
관대벗김 63
관례벗김(관대벗김) 63
교배례 71
교환혼 73
국수 74
국제결혼 76
궁합 78
근친 81
근친혼 82
기럭아비 86
남귀여가혼 101
납길 103
납징 104
납채 105
납채서 107
납폐 108
납폐물목 110
납폐서 111
대례 126
대례상 128
대반 130
동상례(신랑다루기) 356
막편지 143
맞선 146
모란병 157
목기러기 159
문명 169
문안인사(새벽문안) 303
반친영 176
복수결혼 192
봉사혼 199
봉치시루 204
부조 209
부조록 210
부케 210
불교화혼식 216
사돈 236
사돈지 238
사주단자 246
사처방 248
상객 277
상견례 277
상수 287
새벽문안 303
서옥제 305
시집살이 354
신랑다루기 356
신방엿보기 358
신부가마 359
신부대 360
신행 366
신혼여행 368
약혼 439
연길 444
연애혼 446
영혼결혼식 457
우귀(신행) 366
우인 466
음양오행 491
의양 496
의혼 497
이레잔치(일훼잔치) 503
이바지음식 499
이혼 502
일훼잔치 503
입맷상 511
잔치 520
재행 539
재혼 540
전안례 545
조혼 577
주례 588
주육례 592
주자사례 593
중매인 596
중매혼 598
첫날밤 634
청기 635
청첩장 637
청혼서 638
초례(대례) 126
초야(첫날밤) 634
초행 644
친영 666
큰상받기 671
택일 685
통혼권 690
평생도 695
폐백 696
폐백음식 698
함 705
함진아비 706
합궁례(신방엿보기) 358
합근례 707
합환주 712
허혼서 717
현구고례 722
호피 730
혼담 731
혼례 732
혼례복 736
혼례식 739
혼례홀기 741
혼반 743
혼사계 746
혼서물목(납폐물목) 110
혼서지(납폐서) 111
혼수 747
혼인 749
혼인권(통혼권) 690
혼인법 752

혼인성사 754
혼인신고 756
혼인여탐굿 758
혼주 759
후행 777



백수백복도 186
수서(수연문) 337
수성노인도 331
수연례 333
수연문 337
평생도 695
폐백 696
환갑(회갑) 764
회갑 764
회갑상 766
회근(회혼례) 771
회혼례 771



가복 31
강복 38
개영역 39
견전 43
고복(복) 191
고이성 53
곡 56
공포 58
곽 59
관(冠) 60
관(棺) 61
광중 70
급묘 85
길제 97
납골(봉안) 201
널(관) 60
노제 113
다비 114
다시래기 117
담제 120
당내 121
대공 123
대렴 124
대렴금 125
대상 131
만사(만장) 144
만장 144
망주석 145
매장 147
멱목 149
명기 151
명당 153
명당도 154
명정 156
목욕 160
묘지 163
묘표 166
무복친 167
무인석 168
문상 170
문인석 171
반곡 174
반함 178
반혼(반곡) 174
발상 178
발인 179
방상시 180
보공 190
복 191
복인 194
복차장 196
본종오복제도(오복제도) 461
봉안 201
부고 205
부의 207
부제 208
분상 211
분정기 213
빈 224
빈상여놀이 226
빈소(장례식장) 527
빈장 228
사십구재 242
사자상 245
삭망전 249
산골 249
산신제 250
삼년상 263
삼우제 271
삼일장 272
삽 275
상두계(상포계) 302
상례 279
상문살 283
상복 285
상식 288
상여 289
상여장식 293
상장 297
상장례 298
상주 300
상청 301
상포계 302
석물 307
석수 310
선종 311
성복 319
성분제 320
소공 321
소렴 322
소렴금 323

소상 326
소천예배 327
수시 332
수의 339
수장 342
수질 343
순장 344
시다림 347
시도기 348
시마 349
시묘살이 350
시사전 353
심상 369
악수 430
여막 442
역복 444
연도(위령기도) 470
염습 447
염습구 448
염포 449
영결식 451
영구 453
영구차 454
영안실(장례식장) 527
영여 455
영정 456
영좌 457
오낭 460
오복제도 461
오복친(복인) 194
요질 465
우제 467
운상 468
위령기도 470
위령제 473
유골용기 478
유월장 483
윤도 486
음양오행 491
의복 495
이장 500
임종 509
입관 510
자리걷이 513
자연장지 515
장례 521
장례미사 525
장례식장 527
장명등 530
장사택일지 531
장지 532
재우제 537
재최 538
전 544
정복 547
제문 559
제주(題主) 569
조문 571
조석전 576
조전 577
졸곡 578
중상 598
지관 600
지석 604
지요 606
참최 621
천구 622
천금 623
천도굿 624
천도재 627
초분 639
초우제 640
초종 642
초혼(복) 191
충이 660
취토 661
치장 664
치전 665
친전(노제) 113
칠성판 669
탈상 673
택일 685
토장(매장) 147
패철(윤도) 486
풍장 701
하관 702
합장 711
호상 727
호석 729
혼백 745
화장 760
화장장 762
회격 769
회다지 770
후토제 776



가가례 22
가묘(사당) 230
간납 32
감모여재도 33
감실 35
갑사(사갑제) 229
강신 38
갱(대갱) 122
갱기 41
갱물 41
계문 48
계반개 49
계반삽시 49
고사당 52
고이성 53
고임새 54
교의 72
구일 차례(중구 차례) 595
국궁 74

국수 74
궐명 80
기신재 86
기일비망기 87
기제(기제사) 92
기제사 92
까마귀 모른 식게 99
납주 103
녜제 112
뇌주 114
단설 119
당내 121
대갱 122
도적 133
독(주독) 587
독축 134
떡 140
떡국 차례(설 차례) 312
매안(조매) 570
메 148
면(국수) 74
면기 150
모사기 158
묘제 161
문중 173
반기 175
벌초 188
봉사대수 197
봉제사접빈객 203
분재기 212
분정기 213
분축 214
분향 215
불천위 218
불천위제사 220
불천지위(불천위) 218
사갑제 229
사당 230
사당도(감모여재도) 33
사당제 233
사대봉사 234
사시제 240
사신 242
산신제 250
삼내흠 262
삼색나물 264
삼실과 270
삼헌(종헌) 585
삽시정저 276
상용영반 295
생신제 304
설 차례 312
설위 313
성묘 317
소목 324
소병 326
속절 329
수조 342
시도기 348
시접 353
시제(묘제) 161
시향(묘제) 161
식혜 356
신알례 361
신주 362
신줏단지 364
아헌 430
앙장 436
어육 440
어육기 441
외손봉사 464
위령미사 472
위령제 473
위토 475
위패 476
위호 477
유사고(고사당) 52
유식 482
윤회봉사 488
음복 490
잔반 519
재계 534
재실 536
적 542
적기 543
정침 548
제관 549
제기 550
제기함 552
제례 552
제례흘기 557
제물 560
제복 563
제사(제례) 552
제사도구 565
제사분할 566
제상 567
제주(祭酒) 568
젯메(메) 148
조매 570
조상숭배 572
조상신 574
종가 579
종계 581
종법 583
종중(문중) 173
종헌 585
좨주 586
주과포 586
주독 587
주병 589
준 594
중구 차례 595
지방 601
지방함 603
진기 607
진다(헌다) 718
진설 609
진설도 610
진설법 611

진적 613
진찬 614
차례 615
참례 618
참사자 619
참신 620
철상 629
철시복반 631
첨작 631
청장 636
체천 639
초접 641
초헌 646
촛대 647
최장방 647
추도식 648
추석 차례 650
축문 651
축판 653
출입고 659
출주 659
친진 669
침주 670
탕 674
탕기 675
퇴주기 693
편기 693
편적 694
포 700
한식 절사 703
합문 708
합사 708
합설 710
향로 715
향상(향탁) 716
향탁 716
향합 716
헌다 718
헌식 719
헌작 720
혈식군자 726
효 775
휘장 778
흠향 779
희생 780



가례 24
가례도감의궤 25
가례언해 26
가례원류 27
가례의절 27
가례증해 28
가례질서 29
가례집람 30
가례향의 31
가정의례준칙 31
건전가정의례준칙 42
격몽요결 43
경례유찬 45
계녀서 46
고려사 예지 52
국조오례의 78
길례요람 96
남계선생예설 100
명재선생의례문답 155
봉선잡의 200
사례집요 238
사례편람 239
사마씨서의 239
사의 245
상례비요 282
상례언해 283
상변통고 284
석문가례초 306
석문상의초 307
세종실록 오례 321
예기 458
예의유집 459
오선생예설분류 463
우암경례문답 466
의례 494
의례경전통해 494
의례문해 495
의례준칙 495
주자가례(가례) 24
증보사례편람 599
천기대요 624
태교신기 678
퇴계상제례답문 692

아헌
亞獻

정의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복을 구하려고 세 번 올리는 술잔 가운데 두 번째 술잔.

내용 아헌亞獻이라는 말은 두 번째로 올리는 술이라는 뜻으로 '이헌二獻'이라고도 한다. 아헌은 제사에서 삼헌三獻으로 규정된 헌작의 두 번째 순서로 중국 주대周代부터 행해져 왔다. 아헌은 침주斟酒와 좨주[祭酒], 진적進炙, 재배再拜의 순서로 한다. 헌작하는 방법은 『가례家禮』의 방식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방식이 전한다.

이곡李穀(1298~1351)이 쓴 도교 제사의 아헌문은 "지극한 도道는 정묘하므로 비록 엿보고 살필 수는 없으나 믿음을 밝히는 성의는 제물을 올려야 하므로 변변치 못한 의식을 베푸오니, 흠격歆格(내려와서 제사를 받고 흠향하는 것)하시고 길상吉祥과 강녕을 넉넉히 주소서."라는 내용이다. 이 아헌문을 통해 '평소 보살핌에 감사하는' 아헌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아헌 |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에서는 『국조오례의』 방식의 헌작을 하여 아헌에서 적炙을 올리지 않지만, 안동의 학봉鶴峯 종택에서는 미수味需라는 적을 올리는데, 이를 '이미탕二味湯'이라고 한다. 기호지역에서는 여성의 제사 참여를 꺼려 아헌관이 초헌관의 장남, 동생 등이 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아헌은 삼헌의 두 번째 잔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성혼成渾은 정구鄭逑가 제례祭禮를 논하여 말하기를, "삼헌은 모두 주인主人과 주부主婦와 장남長男이 해야 하며 비록 백부나 숙부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이용하여 아헌관亞獻官은 반드시 주부主婦가 맡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주부가 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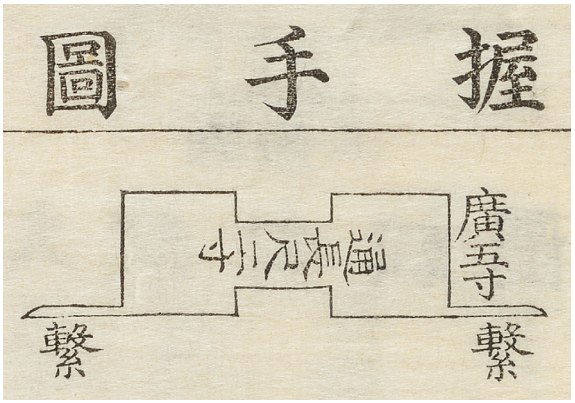
참고문헌 家禮, 東國李相國集, 禮記, 林下筆記,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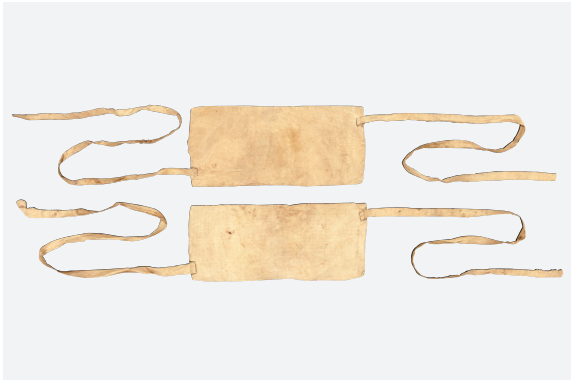
악수
幄手

정의 염습殮襲 때에 시신의 손을 싸기 위한 품목.

내용 악수는 시신의 손등과 손바닥을 완전히 감싸는 손 덮개로, 왼손과 오른손용 두 개이다. 형태는 세로로 긴 장방형(길이 한 자 두 치, 너비는 다섯 치)의 각진 아령 모양이다. 솜을 얇게 펴서 충전한 겹袷(안감과 겉감으로 구성)으로 제작되며 양 끝의 두 모서리에는 피부를 감싼 악수를 고정시키는 끈이 한 개씩 두 개가 부착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유색有色으로 안팎이 다르다. 위의 형태와는 달리 단순한 장방형으로 네 모서리에 각 한 개씩, 총 네 개의 끈이 부착된 사례(행주기씨 묘, 김확 합장묘)와 두 모서리, 즉 좌(우)측 하단과 우(좌)측 상단의 모서리에 한 개씩 두 개의 끈이 달린 사례(원주변씨 묘)도 있다. 그리고 주머니 형(이진숭 묘)도 있다.



악수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악수 | 16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소재는 비단을 많이 사용한다.

착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악수에 손을 넣고 한쪽 끝으로 손등을 싸고 끈을 당겨서 한 겹 두른다. 또 다른 한쪽 끝으로 손등을 거듭 덮고 끈으로 손바닥을 향해 싼다. 그리고 다시 손등을 향하여 당겨 맨 뒤 무명지無名指(넷째 손가락)와 장지長指(셋째 손가락) 사이로 넣은 다음 장지와 식지食指(둘째 손가락) 사이로 빼서 중지中指(가운뎃 손가락)와 얽어 손바닥에서 묶는다. 다른 쪽 손도 역시 동일한 순서로 진행한다.

문헌에서는 악수의 소재와 색상, 치수, 제작법, 착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 흉례의식·습襲」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권7 「습襲」에서는 "악수는 2개이다. 겉감은 청색의 라羅(무늬가 있고 성글며 얇은 비단), 안감은 분홍색의 초綃(생사로 제직한 성글고 얇은 비단)를 사용한다. 길이는 한 자 두 치이고, 너비는 다섯 치이다. 손바닥 뒷면에서 묶을 수 있도록 보라색의 초로 만든 2개의 끈을 단다幄手二 用青羅 裏縿綃 長尺二寸 廣五寸 安紫綃帶二結於掌後."라고 하였다. 『가례家禮』 권4 「상례喪禮 진습의陳襲衣」에서는 "악수는 백帛(모든 비단을 일컫는 총칭)을 사용하며, 길이는 한 자 두 치이고 손을 싸는 것이다幄手用帛 長尺二寸 所以裹手者也."라고 하였다. 『상례비요喪禮備要』 「습구襲具」에서는 "악수는 2개이며, 검은색 백帛(모든 견직물을 일컫는 총칭) 혹은 주紬(조밀하게 제직한 비단)를 사용한다. 길이는 한 자 두 치이고 너비는 다섯 치이다. 길이를 삼등분하여 중앙의 네 치를 취하며, 양변에서 한 치씩 들여서 재단하여 줄인다. 안감은 분홍색이며 솜으로 안을 채운다. 양 끝 모서리 아래에는 각각 손을 묶는 끈을 단다幄手二 用玄帛或紬 長尺二寸廣五寸 三分其長 取中央四寸 從兩邊各裁入一寸 削約之 以纊爲裏 充之以絮 兩端下角 各有繫 所以裹手者."라고 기록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의 무덤을 발굴하거나 개장하는 경우, 좋은 매장 환경으로 인해 시신이 착용하고 있던 수의와 염습제구殮襲諸具 등이 우수한 보존 상태로 출토되기도 한다. 변수邊脩(1447~1524), 심수륜沈秀崙(1534~1589), 남오성南五星(1643~1712), 김확金矱, 행주기씨 묘 등이 그 예이다.

이 가운데 남오성 묘에서 출토된 악수의 원단 및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겉감은 만초연화문단蔓草蓮花紋緞, 안감은 공단貢緞(광택이 많고 무늬가 없는 두꺼운 비단)의 솜을 충전한 겹으로 제작했다. 치수는 길이 23.7~23.9㎝, 너비 11.5~11.7㎝이며, 중앙의 들어간 부분의 치수는 길이 9㎝, 너비 3.5~4㎝이다. 안감의 좌우 양쪽 아래의 모서리 끝에 한 개씩 길이 50㎝, 너비 0.7㎝의 가늘고 긴 끈이 2개 달렸다.

특징 및 의의 습襲은 시신에 수의壽衣를 갈아입히는 의례 절차이다. 조선시대의 예서禮書에는 죽은 당일에 행한



악수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망 이튿날에 많이 행한다. 습의 과정에서 먼저 시신의 머리를 감기고 몸을 깨끗이 닦는다. 염殮은 습이 끝나면 시신에 수의를 입힌 다음 충이充耳로 귀를 막고 멱목幎目으로 시신의 눈과 얼굴을 덮은 후 악수握手로 양손을 싸고 이불을 덮는 절차로 행해진다. 악수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습용구 중 한 가지이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抄解,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世宗實錄, 가정의례대백과(교육도서, 1995), 국역 가례향의(국립중앙도서관, 2011),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경기도박물관, 2007), 남오성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04), 신역 관혼상제(김관봉, 태봉출판사, 1980), 원주변씨 출토유물 기증전(국립민속박물관, 2000), 이진숭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10), 중국의 역대직물(심연옥, 한림원, 1998).

필자 조현숙(趙玄淑)

안산법
安産法

정의 난산難産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하는, 특별한 음식물 섭취의 방법이나 특별한 종교적 의례.

역사 임신부에게나 그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의 순산이다. 출산의 순간은 인간의 의지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난산을 해결하기 위한 안산법에 대한 기록은 『목은집牧隱集』과 『동의보감東醫寶鑑』, 『산림경제山林經濟』, 『규합총서閨閤叢書』 등에 수록되어 있다. 『목은집』에는 "부이의 시를 주남에서 읽어보니, 그 씨가 난산을 다스린다 하였네芣苢讀周南, 其子治難産"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경詩經』「주남·부이」의 전에 "혹자는 부이의 씨가 난산을 다스린다."라고 한 것을 토대로, 난산을 해결하기 위해 차전초車前草를 사용한 것이다.

이 밖에 『동의보감』「잡병편雜病篇」, 『산림경제』「구급救急」, 『규합총서』「청낭결靑囊訣」에는 의료적 차원에서 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동의보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안산방위도安産方位圖와 최생부催生符, 차지법借地法은 모두 주사朱砂를 물에 푼 것으로 쓴다. 먼저 산모産母의 방 안 북벽北壁에 안산방위도를 붙인다. 그리고 최생부를 붙이고 나서 차지법을 붙인다. 그다음 차지법 주문呪文을 세 번 외운다." 난산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의료적 처방보다는 주술적인 방법만을 사용했는데 안산에 대한 소망이 큰 만큼 동시에 다양한 방법을 중첩해서 사용한 것이다.

『산림경제』 난산조難産條 에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각종 의학서를 토대로, 난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처방이 소개되어 있다. 난산의 원인에 따라 처방을 달리한 이 책은, 난산의 원인을 잉부孕婦가 정상으로 움직이지 않고 통증을 참고서 몸을 굽혀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아이가 뱃속에서 회전하고 움직일 수 없어 아이의 손부터 나오는 횡산橫産이나 발부터 나오는 역산逆産이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난산의 종류로 편산偏産(태아의 머리가 치우치게 한쪽으로 떠받쳐 있어서 이마가 드러나는 것), 애산礙産(태아의 머리가 산문에 이르러 정수리를 드러냈지만 아이의 어깨가 걸려서 낳지 못하는 것), 반장산盤腸産(아이보다 장腸이 먼저 나오고 태아가 뒤이어 바로 나오는 것), 난산難産(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것) 등을 들고, 각각에 대한 의료적 처방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난산의 해결 방법으로 의료적 치료와 더불어 속신적俗信的인 방법도 소개했다. 한 예로 "역산이나 횡산, 편산 등에는 산모를 반듯이 눕히고 해산을 거두는 사람이 태아를 서서히 손으로 잡아 몸과 머리를 똑바로 한 후 최생약을 먹인다. 사람에게 길가에 버려진 짚신 한 짝을 찾아서 신코를 잘라오되 소이小耳(짚신의 코 쪽으로 양쪽에 뚫어진 부분)의 노끈이 달리도록 잘라오게 하여, 그것을 태워 재를 따뜻한 술에 타 먹이면 효험이 있다."라고 하였다.

정상적인 출산의 경우에도 안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진통이 오는 임산기臨産期에 임신부는 죽반粥飯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걸으며, 물건에 의지해서 서 있다가 진통이 심하면 앉는다. 태아가 산문産門에 이르렀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높은 곳에 수건을 달아매고 산부에게 붙들고 끌면서 다리를 가볍게 구부리게 하면 순생順生한다. 그러나 난산일 경우에는 아이의 출산을 재촉하는 최산催産을 위해서 익모초고益母草膏를 먹인다."라고 하였다.

일종의 여성생활 백과사전인 『규합총서』에는 더욱 다양한 안산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부적의 사용 시간, 난산에 대한 개인적 소견, 안산법 등이 요점만 간추

려져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동의보감』의 방법은 수태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 사용하라고 적어 두었다. 그 밖에도 "난산하는 여자는 모두 부귀하고 편안히 지내는 사람이며, 가난하여 애써 일하는 여자는 난산이 없다. 해산은 몸을 놀려야 쉽고, 아이를 밴 여자가 편히 있으면 해산이 더디다."라고 하여, 난산과 일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을 때는 산실을 안정하고 고요하게 한다. 해산이 더디면 여신단如神丹을 먹이고, 소의 길마를 산실 용마루 위에 산모 모르게 얹어 놓으면 순산한다."라고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현지 조사한 자료에는 "경기도 이천에서는 참기름 한 주발, 꿀[淸蜜] 한 주발, 활석滑石 가루 한 냥兩을 넣고 끓여 복용하고, 그 찌꺼기는 배꼽 위에 바른다. 수탉 한 마리의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잉부孕婦의 배에 붙이는데, 닭의 머리를 아래로 드리운다. 원주에서는 '오소리 기름[狢脂]' 한 종지를 복용한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산통産痛과 더불어 양수가 터지면 출산이 시작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 산통을 겪은 후에 아이를 낳고, 곧 후산後産까지 마치면 '순산'이라 한다. 순산 이외의 상황을 '난산'이라 한다. 모래잿물(양수, 머리받지물, 모리보줏물이라고도 함)이 터진 후에 여러 날이 지나도록 출산이 되지 않거나, 달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하거나, 팔이나 다리부터 나오는 것 등이 모두 난산에 해당한다. 출산이 임박하면 혹여라도 임신부가 힘에 겨울까 하여 기운을 내도록 음식을 먹인다. 밥이나 기름을 제거한 삶은 닭을 먹이는데, 기력이 좋아야 산모가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머리가 산문産門에 보이면 순산을 기원하기 위해 미끄러운 성질의 음식을 산모에게 준다. 날달걀, 참기름, 국수, 돼지 껍데기, 달걀흰자에 참기름을 섞은 것, 흰죽 등을 먹인다. 아이가 빨리 산문을 뚫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인다.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서 넣는 것처럼 아이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며 '뚬벙 수제비'를 먹이거나, 거센 물길을 막는 논의 물꼬를 덮었던 돌 또는 강력한 바위를 뚫고 자라난 소나무 가지를 넣고 삶은 물을 먹인다. 출산의 순간에 부정이 깃들지 않도록 하는 행동도 빠뜨리지 않아야 했다. 산통이 시작되면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집안 곳곳에 뿌려서 부정을 치웠고, 임신부는 머리를 빗거나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바가지에 머리를 감았다.

임신부가 산통을 겪는 동안 소리를 지르면 출산이 더욱 늦어진다고 하여 주의한다. 이왕 소문이 났다면 세 집 혹은 세 마을에 소문을 내야 난산을 예방할 수 있다. 양수가 터지고 산문産門에 아이의 머리가 비치는 순간을 '아이가 문 튼다'(상주), '애기 튼다'(부산), '대머리판이 된 순간'(영광)이라 한다. 대머리판이 된 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도 출산 소식이 없으면, 난산으로 간주하여 삼신(지양)께 빌거나 특별한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출산을 상징하는 행위를 통해 난산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다양한 안산법이 실제 활용되는 순간이다.

먼저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삼신(지양)에게 빌거나 특별한 곳에서 의례를 행한다. 산실의 산모 머리맡에 놓아둔 밥과 미역국을 올린 지양상 앞에서 비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마당 중앙에 찬물 한 사발을 올린 삼신상 앞에서 빈다. 이때 "어서 아기를 순산하게 해 주십시오!"(영광), "한 배기(큰 바가지) 물 쏟아지듯, 쪽배기(작은 쪽박) 물 쏟아지듯 퍽 쏟아지게 해주소서."(진해), "헌 치마에 외 빠지듯 잘 낳게 해달라."(홍천), "쇠술(쇠숟가락)로 밥을 먹는 우리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 지양님네가 어서 순산시켜 주시오."(함평)라고 빈다. 삼신의 도움이 있어야 순산할 수 있다고 믿기에 먼저 행한다. 순산의 기운이 임신부에게 전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순산한 부인의 속옷이나 허리띠 등 몸에 직접 착용했던 것을 임신부 배 위에 얹어준다. 순산한 부인이 임신부의 배를 어루만지거나 배 위를 여러 번 타고 넘기도 한다. 간혹 아이가 아버지를 봐야 얼른 나온다고 하여 아버지를 상징하는 물건인 허리띠, 옷 등을 배에 얹어 두기도 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산을 위해 당골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조치는 출산이 쉽도록 임신부의 배에 힘이 들어가게 유도하는 일이다. 임신부를 웃겨서 웃는 순간 자연스레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고, 머리의 달비를 풀어 입에 물려 토악질하게 함으로써 힘을 주게 하기도 한다. 그래도 출산이 되지 않으면 산문

産門을 여는 주술을 행한다. 예를 들면, 연기가 잘 빠지도록 부엌 아궁이에 부채질하거나, 논의 물꼬를 덮어 둔 돌멩이를 치워 막힌 물이 쏟아지도록 한다. 또한, 방문을 비롯해 창문, 장롱, 서랍, 쥐구멍 등을 열어둔다. 빨래터의 빨래독이나 솥뚜껑도 뒤집어 놓는다. 이 밖에도 특별한 성질을 지닌 물건을 이용하여 출산을 재촉한다. 미끄러운 성질이 전이되도록 방 안의 네 귀퉁이에 아주까리 대를 세우거나(충북, 충남, 강원, 전북, 경남), 강한 힘을 상징하는 절구 방망이를 세우거나(경북), 부정을 없애는 대표적인 주구呪具인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를 세운다(당진). 다른 예로 강원도 강릉에서는 산바라지를 하는 이가 아주까리 대를 부엌 보광지(아궁이) 곁 조왕신竈王神을 모시는 자리에 세우고, 아궁이의 그을음을 긁어내는 깍쟁이로 아궁이의 재를 긁어내는 시늉을 한다. 미끄러운 기름과 재를 긁어내는 흉내는 모두 출산의 순간을 모사한 중첩된 의례 행위이다. 산도産道 아래나 임신부의 배 위에 돈을 놓아두고 "이 돈 너 줄게 얼른 나와라."라고 애걸하기도 한다.

산통으로 지쳐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 초산初産이라서 힘 조절을 하지 못해 아이가 항문으로 빠지는 경우, 하체에 힘이 없어 항문이 찢어지고 자궁이 빠지는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 방앗간의 방앗공이를 가져다가 엉덩이 부분에 받쳐 주거나, 아이 아버지나 산바라지를 하는 사람이 무릎이나 발뒤꿈치로 임신부의 항문을 막아준다. 아이가 역산이나 편산일 때는 아이의 발을 쥐고 산도에 다시 넣어, 아이를 돌려 머리부터 나오도록 순산을 유도한다. 아이의 발을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 아이가 움찔하며 몸을 오므리도록 하기도 한다. 후산後産이 안 되는 것 역시 난산으로 간주하는데, 해결 방법은 난산과 동일하다.

특징 및 의의 아이의 출산은 산통의 시작에서 후산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매 순간 순산을 위한 방법을 동원한다. 난산일 경우에는 아이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방법을 총망라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참고문헌 闡閣叢書, 牧隱集, 山林經濟, 중추원조사자료(출장조사보고서47, 난산),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김효경(金孝慶)



안태
安胎

정의 왕가王家의 태를 명당에 설치한 태실胎室에 편안하게 봉안하는 격식 및 절차.

내용 태는 몸을 뜻하는 육달월[月=肉]과 처음을 나타내는 태台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곧 어머니 몸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한자 '태'를 우리말로는 삼이라 한다. '삼'이란 생명이나 생산 등도 뜻한다. 탯줄을 '삼줄'이라 하고, 태를 자르는 일을 '삼가른다'고 하며, 태를 태우는 불을 '삼불'이라 한다. '삼기다'라는 고어古語는 '생기다', '태어나다'라는 뜻이다. 안安은 '편안히 있게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안태는 '태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된다. 이와는 달리 태를 안치하여 묻는 일 자체는 '장태藏胎'라고 한다.

태는 어머니가 태아를 키워 낸 생명줄이다. 태는 어머니와 태아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결합했던 매개이자, 어머니와 태아 모두의 분신이기도 하다. 양친 부모의 생명이, 또 조상의 생명이 태를 통하여 태아에 닿아있다.

태가 조상과 이어져 있다면, 주검은 후손과 연계되어 있다. 태를 안태하고 주검을 안장安葬함으로써, 한 인간은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안태와 안태제安胎祭는 태주의 조상에 대한 보은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태주의 운명을 평안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에 반하여 안장과 제사는 후손과 조상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동시에, 후손의 운명을 평안하게 하는 수단이다. 물론 안태나 안장은 모두 명당明堂에서 해야 한다. 이로써 한 인간은 과거의 조상과 미래의 후손을 자신의 존재와 무한히 연결할 수 있다. 인간의 유한한 시간이 영원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태의 생명력에 대한 원초적 관념이 어떠했고, 그에 따라 안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태라는 가시적 형체 안에 응축된 생명 탄생의 신비神秘가 안태의 시원이었을 것이다. 혼백이 빠져나가 더는 쓸모없다고 시신을 함부로 하지 않듯이, 잘라진 태도 더는 소용없다고 마구 버리지는 않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안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6세기 후반 삼국 통일의 영웅 김유신金庾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태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기록으로만 그렇게 확인될 뿐이지, 그 역사는 분명히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까지 소급될 것이다. 또한, 김유신 집안만 안태를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대의 다른 귀족들도 그러했고, 당대의 모든 사회계층도 이런저런 형태로 안태를 했으리라 짐작된다. 김유신의 태는 고향의 고산高山에 묻었다. 그런데 태가 화化하여 신神이 되었기 때문에, 고산을 태령산胎靈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망자가 신이 되듯이, 태도 신이 된 것이다. 8세기 후반 중국 남선종南禪宗을 신라에 전한 도의道義 선사禪師도 이승異僧의 가르침에 따라서 강가의 언덕에 안태하였다. 여기에는 태가 아기의 평생 운수와 관계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안태 풍습은 통일신라 하대에도 보인다. 877년(헌강왕 3)에 태어난 고려 태조 왕건王建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 태를 봉안했음이 분명하다. 그 역시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태실을 조성하였다. 또 당시에는 태아의 시신인 태시胎屍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념이 있었다. 태시는 비록 죽은 태아이지만, 한 집안의 자손 번성 여부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태시를 유복인有福人의 무덤에 몰래 묻어서, 그 복록을 전이轉移받아 후손이 절멸하지 않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안태 제도가 더욱 정비되고 정착되었다. 특히 나말여초羅末麗初에 풍수지리사상이 성행하고, 부분적으로는 태경지설胎經之說이 유포되면서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정부는 안태를 위한 관리를 임명하였고, 『태장경胎藏經』에 기초하여 태실지胎室地에 안태를 했다. 주로 양광도와 경상도에서 명당을 찾아 태실을 썼다. 왕이 즉위하고 태자가 책봉되면, 그 이전에 설치했던 태실은 왕이나 태자의 격에 맞추어 새로운 명당에 위세가 드러나도록 조성했다. 태실을 봉한 지역은 읍호邑號를 승격하여, 현縣이나 목牧으로 올렸다. 이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태장경'은 잡과雜科의 지리업地理業에 부과하는 시험 과목이었다. 그만큼 왕실 중심의 안태는 중요시되었다.

한편, 태실을 파괴함으로써 태주와 그 조상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저주와 복수의 행태도 있었다. 고려 말기의 문신 조준趙浚은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신우辛禑·신창辛昌의 태실을 파헤쳐서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신명神明과 사람들의 분노를 풀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태실의 훼손은 부관참시剖棺斬屍와는 다른 차원의 극형極刑으로 여겨진다. 태실 파괴는 조상과 이어지는 핏줄을 끊고, 부관참시는 봉제사奉祭祀를 통하여 연결되는 후손後孫과의 혈연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조선의 단종端宗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된 후 태실마저 철거되었다.

조선시대에 태실은 고려시대보다 더 완비된다. 산실청産室廳, 태실도감胎室都監, 안태사安胎使, 태실고증사胎室證考使, 태실안위제胎室安慰祭, 태실시위품관胎室侍衛品官, 수호인守護人, 수호군守護軍 등이 정비되고, 태봉胎峯에 안치한 태실도 기본적으로 석함石函, 석물石物, 태비胎碑, 표석表石으로 꾸며져 한층 그 위용을 더하였다.

이러한 태실은 왕실의 번영을 희구하며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에도 기여했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태실이 봉해진 지역은 읍호를 승격하였다. 물론 조선시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태실 제도는 시기별로 약간씩 변화했다. 초기에는 경기와 하삼도下三道에서 주로 태실을 구하였지만, 성종·중종대 이후에는 강원도와 황해도에도 태실을 썼다. 특히 영·정조대 이후에는 태실 제도의 번폐가 심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풍수의 태경설胎經說이 점차 부정되면서,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규모로 안태를 했다. 또한, 왕이 즉위하거나 세자가 책봉되면, 이전에 잠저潛邸나 인근에 모셨던 태를 이전하여 새로운 태실을 꾸몄다.

왕실의 안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해졌다. 산실청의 관할 하에 왕비가 순산하면, 태는 곧 항아리에 담아 산실의 길방吉方에 보관하여 둔다. 3일이 지난 후 이레 안에 세태일洗胎日을 정해서 태를 일백 번 씻은 다음 약제藥劑로 처리한다. 이를 다시 태항아리에 넣고 유지油紙와 태의胎衣로 싸서 큰 항아리에 넣어 길방에 안태일까지 보관한다. 항아리 바닥 한복판에는 개원통보開元通寶 한 개를 놓는다. 안태일安胎日은 관상감觀象監에서 정한다. 이날 안태사는 태항胎缸을 함函에 넣어 누자樓子에 안치한다. 다음에는 헌관獻官, 대축大祝 등이 제사를 올린다.

고취鼓吹를 선두로 한 안태사의 봉송 행렬은 태봉胎

峯을 향한다. 이들이 지나는 주현州縣마다 봉송 행사가 벌어져, 채붕彩棚을 짓고 나희儺戱를 베푼다. 주현의 관문에는 누각樓閣을 짓고 의장儀仗과 고악鼓樂을 갖춘다. 태를 맞이하는 각 고을에서는 태를 정청政廳에 안치하고 관찰사觀察使 이하 대소 사신使臣과 외임外任 관원들이 공복公服 차림으로 재배한다.

태봉은 국왕·왕비·대군·군·공주·옹주 그리고 세자의 자녀에 한하여 모신다. 이에 대한 업무는 태실도감이 맡는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평상시에 태실고증사가 주로 경기와 하삼도에서 태실로 쓸 만한 길지를 3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장부를 만들어 두고, 필요에 따라서 원자元子와 원손元孫은 1등, 대군과 공주는 2등, 왕자와 옹주는 3등 길지를 골라 쓰게 하였다. 태실이 완성되면 태실시위품관, 수호인, 수호군 등을 두어 관리와 수호를 맡게 한다.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정기적으로 왕, 왕비, 세자의 태실을 살펴서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태실을 조성하거나 이전할 때에도 중요한 과정마다 제사를 올렸다. 곧 개기開基할 때, 봉실封室을 마련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위安慰할 때에 제사를 모셨다. 한편,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도 안태에 대단한 정성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 사례를 16세기 중반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 집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반드시 가산家山에 안태를 했다.

이렇듯 안태는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비교적 광범위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왕실과 사대부의 태 처리를 민간에서 모방한 결과, 태 처리가 풍습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거의 모든 시대·지역·계층에 걸쳐 관습적으로 행했던 안태의 전통이 왕실에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로 정착되었고, 사대부 집안에서는 민간보다 더 복잡한 격식을 갖춘 의절로 수용되었으며, 민간에서는 더 간소하게 정성만 담은 형태로 지속하였던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안태의 성립 배경에는 태에 대한 생명사상 및 조상에 대한 보은報恩, 그리고 태주와 태의 운명적 상관성 등이 자리한다. 곧 자손의 탄생은 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태는 조상이 후손을 키운 생명의 실체이기도 하다. 또한, 태주胎主의 현우성쇠賢愚盛衰가 태에 달려 있기 때문에, 태를 소중하게 여겨 길지吉地를 택하여 안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며, 우리 고유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역 안태등록(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7), 민속의 지속과 변동-출산의례 중의 안태를 중심으로(이필영, 역사민속학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서삼릉 태실(국립문화재연구원, 1999),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일고찰(최호림, 한국학논총7,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5), 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김상환 역,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6), 조선왕실의 출산과 안태의 재조명(육수화, 민족문화논총3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조선의 왕(신명호, 가람기획, 1998), 조선의 태실1·2·3(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 후기 안태 의례의 개선과 정비(윤진영, 조선시대사학보67, 조선시대사학회, 2013), 조선 후기 왕실의 출산 풍경(김호,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필자 이필영(李弼泳)

앙장
仰帳

정의 제례 장소의 천장에 치는 천막.

역사 『사례편람四禮便覽』「제례」에 보면, 교의交椅(위패를 모시는 의자), 제상祭床, 역帟(제상 위를 가리는 작은 장막), 막幕(제상 주위를 가리는 장막)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런 물건이 실제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거와 생활환경이 변하면서 앙장이 사용되는 예는 더욱 줄어드는 추세이다.

내용 제상 위를 가리는 작은 장막인 앙장은 천으로 만든 휘장으로, 제상 위의 천장에 친다. 상여喪輿에도 이와 유사한 휘장이 사용되기도 한다. '역막' 혹은 '천일'이라고도 하는 앙장은 제사상 위에 먼지가 떨어지지 않게



앙장(천일) 설치 | 경북 안동 퇴계 이황 종가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한다는 실제적 기능과 더불어, 제례 공간임을 알리는 의례적 상징물의 역할도 맡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진성이씨 경류정 종택과 퇴계 종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천일'이라고 한다.

정여창鄭汝昌, 김굉필金宏弼,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의 종가에서는 불천위不遷位 제사를 모시는 정침正寢의 제상 위에 차려진 제수에 벌레나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에 앙장을 설치했다.

특징 및 의의 앙장은 제상의 제물을 보호하는 위생적인 기능과 함께, 주변을 차단하여 제장祭場을 신성하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불천위제례(김길영, 민속원, 2011),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애장

정의 아이가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 혹은 그 무덤을 이르는 말.

내용 '애장'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를 줄인 말로, 한자로 쓰면 '아장兒葬'이다. 그러나 통상 애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아이들의 무덤을 보고도 애장이라 했는데, 이는 '애장터'의 준말로 쓴 것이다. 요즘은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병이 나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사망률이 높지 않지만, 병원 시설이 열악했던 과거에는 병에 걸리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어 나갔다. 그래서 마을 근처 후미진 산골짜기나 공동묘지 부근에는 흔히 애장터가 있기 마련이었다. 애장터는 일반적인 공동묘지와는 구별되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애장터는 대개 공동묘지의 아래쪽 발치에 자리 잡기도 했다. 애장터를 부르는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애장골, 애장산, 애장자리는 공통으로 부르는 명칭이었고, 애기당(남해, 사천), 애기담(남해), 돌산터(영주, 영양)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식자층인 노인들은 애총[兒塚], 애석장[兒石葬], 애석총[兒石塚]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옛날에는 갓난아이가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백일 안에는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다. 어떤 집에서는 1년 혹은 2년 후에 등재하기도 했다. 그것은 수많은 아기가 홍역, 마마, 장티푸스, 학질, 경기 등으로 죽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죽으면 옷을 입은 시신 그대로 홑이불로 말아서 염殮하지 않은 채 가져 나가는데, 경상남도 남해와 경상북도 청도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겉저고리 혹은 등거리 등으로 아이의 시신을 쌌고 특히, 얼굴을 중점적으로 싸맨다고 한다. 경남 함양과 전라남도 영암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바지에 시신을 싸서 나간다. 이곳에서는 특히 누비옷이나 누비이불로는 시신을 싸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에 태어날 아기가 또 죽는다는 속신俗信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신을 누비이불로 싸서 아기를 땅에 묻은 엄마가 아이의 무덤에 가서 도로 이불을 벗겨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경북 포항 연일에서는 어머니의 치마에, 안동·의성·영양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두루마기에 시신을 싸서 나간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기의 장사를 치를 때는 평소 덮던 이불로 싸지 않는다고 한다. 태어날 아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세 미만에 죽은 어린 아기에게는 배냇저고리를 입혔는데, 부잣집의 아기인 경우에는 때때옷을 입혀 장사를 치르기도 했다. 그리고 웬만한 집에서는 옷을 입힌 채로 죽은 아이를 묻었는데 깨끗한 옷이 있으면 갈아 입혀 묻기도 했다.

10세 미만의 아기가 죽으면 관棺을 사용하지 않았다. 11세 이상의 아이인 경우, 부잣집에서는 관을 사용하기도 하나 보통은 그냥 홑이불이나 삼베(남해, 하동, 사천)로 싸서 묻었다고 한다. 남해에서는 한지로 싸서 묻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가마니를 이용하여 시신을 말아 들고 나가기도 했다. 전라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관 대신 옹기(옹관甕棺) 혹은 단지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관 대신 사용한 측면도 있지만 옹기를 이용한 것은 짐승에 의해 무덤이 파괴되어 시신이 훼손되는 것과 시신의 영혼이 나와 악귀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충청도에서는 애장을 '덕매' 혹은 '독매'라 하기도 했는데, 독에 넣어 매장한 데서 비롯된 말인 것 같다.


부산 황령산


부산 영도 봉래산

애장터 돌무덤 | 2014 | 배도식

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기의 엄마는 모르게 하거나 알아도 보지 못하게 했다. 너무 비참한 상황에 아기의 엄마가 망연자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른이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린 자식의 죽음이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는 일이라는 뜻일 것이다. '애물단지'란 말이 있는데, 부모의 속을 태우는 문제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애물단지'란 애물을 넣은 단지, 즉 부모의 애를 태우던 자식이 죽으면 단지에 넣어 장사지낸 데서 유래한 말이란 설이 있다. 진위야 어떻든 그럴듯한 말이다.

시신을 들고 나가기 전에 남해에서는 삽이나 괭이로 집안 마당을 세 번 쾅쾅쾅 다지고 가는데, 잡귀나 액운이 따라오지 못하게 겁을 주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시신을 묻을 때 영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엎어서 묻었다 한다. 영혼이 밖으로 나와 다시 삼시랑(아기)으로 태어나면 단명한 아기가 된다고 여긴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시체가 나갈 때 부엌문을 닫고 우물의 뚜껑도 닫아두고 나간다.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시신을 옮기는 시기는 초저녁에서 새벽 사이의 남이 보지 않을 시간이었다. 좋은 일이 아니므로 남몰래 처리하려는 생각에서였다.

애장터가 없는 마을은 없었는데, 대개 너덜밭이거나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애장터로 삼았다. 그런 곳이 시신을 묻은 다음 돌로 덮어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을 덮는 이유는 첫째, 여우나 들개 같은 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 시신의 영혼이 밖으로 나와 나쁜 귀신이 되어 남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애장터 대신에 자기 소유의 농지 두렁 한 곳에 묻기도 하는데 아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혹은 조잡한 애장터에 묻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경남 함양과 전남 진도에서는 드물게 산속의 큰 나뭇가지에 가마니로 싼 시신을 매달아 풍장風葬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나무를, 아이를 장사 지낸 나무라 하여 '애장목[兒葬木]' 혹은 '풍장목風葬木'이라 했다. 진도에서는 시신을 독에 담아 장사 지낸 경우 '독다물' 혹은 '독담물'이라 하기도 했다. 독에 담아 처리한 물건이란 뜻일 것이다. 애장터의 돌밭에 묻을 때도 구덩이에 흙을 넣은 다음 시체나 관, 옹관을 안치한 후 흙을 채워 덮고, 그 위에 돌덩이로 눌러 덮는다. 함양에서는 시체를 묻은 후에 왼발로 세 번 밟으며 박복한 삼시랑(아기)으로 태어나지 말고 좋은 곳에 태어나라고 말한다. 전남 영암에서는 시신을 묻고 봉분 위를 대나무로 가로세로로 엮어 단단하게 얽어맨다. 무덤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무덤 주변에 찔레나무나 가시나무, 청다래 넝쿨, 칡넝쿨 등을 심어 짐승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방비했다.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애장은 선영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찍 죽은 아이는 가족의 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애장 무덤은 봉분封墳이 아닌 평장平葬이 일반적인 사례이고, 봉분을 만들더라도 약간 솟아 있는 상태라 한다. 애장터가 아닌 평지에 묻었다 하더라도 약간의 봉분을 만들고 그 위에 큼직한 돌을 얹어 표시했다. 아이를 묻은 애장묘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표지석인 셈이다. 돌무덤은 애장 말고 호식장에도 존재한다. 강원도 산악 지대에는 호환虎患으로 죽은 이들의 유골을 묻은 호식총이 있는데 애장의 돌무덤과 외형이 비

슷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단, 호식총의 돌문이 위에는 떡시루를 덮고 시루의 구멍에 쇠꼬챙이를 꽂아두어서 호식총임을 분별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 떡시루와 쇠꼬챙이가 사라지면 정말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특징 및 의의 아기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 않고 염도 하지 않는다. 또한, 관도 쓰지 않는다. 선영이나 일반 공동묘지에 묻지 않고 애장터에 묻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부모가 하지 않고 남이 대신 아기의 장사를 치른다. 엄마는 장사 때 방 안에 앉아 밖을 내다보지도 않는다. 흙으로 봉분을 만들지 않고, 무덤은 돌로 덮어 짐승의 훼손을 막는다. 사람들은 장사를 치른 후에도 그곳에 가보지 않는다. 따라서 벌초, 성묘 등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애장터에 가는 것조차 꺼린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애장터에 묻지 말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시끄러운 속성을 가졌으므로, 시끄러운 데는 가기 싫다는 뜻일 것이다. 비 오는 날 애장터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귀신이 나타난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무섭다는 말일 것이다. 실제로 짐승이 애장묘에 구멍을 내고 아이의 옷가지를 물어 흩뜨린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정황들 외에도 애장이 가지는 비극적인 의미로 인해 애장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

참고문헌 부산산성마을의 기층문화(김승찬,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4), 소설어 사전(김윤식,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호식장(김강산, 태백향토문화연구소, 1988), 혼불의 언어(장일구, 한길사, 2003).

필자 배도식(裵桃植)



약혼
約婚

정의 정식 결혼을 약속하는 사전 행위로 당사자 및 가족 간의 공식적 의례.

역사 약혼은 전통혼례에서 신랑 측이 신랑의 사주단자를 적어 신부 측에 보내면 신부 댁에서 답례로 신부에게 정갈한 옷차림을 하게 하고, 사주에 대한 축하의 주연酒宴이 베풀어진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현대에 접어들면서 신부 측에서 택일을 하고 별도의 길일吉日을 잡아 상견례를 하였는데, 이것이 약혼례로 발전하게 되었다.

법률적으로는 약혼約婚이라는 말은 『민법』에도 등장하는데, 『민법』에서는 혼인을 약속하는 절차인 '제1절 약혼'과 '제2절 혼인의 성립'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약혼과 혼인이라는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혼인이 성립한다. 하지만 혼인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혼인신고'와 같은 강제적인 법적 행위가 따르는 혼인과 달리 약혼은 약혼이 이루어졌음에도 강제적인 법적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약혼은 19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약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 제재조항이 없는 「가정의례준칙」과 달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건전한 사회 기풍의 진작을 목적으로 법적 제재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8월 「가정의례준칙」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약혼에 따른 예식은 약혼 당사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약혼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약혼을 하는 경우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않으며 약혼당사자는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고 약혼서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 약혼은 정식혼인을 예약하는 매우 중요한 공식적 의례이므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혼례를 준비하며 양가의 화목을 조화시키는 분수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심한 준비와 약혼서의 교환 등 예법이 존중되는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 약혼당사자들은 약혼기간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가족관계와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고 융화되어야 한다. 약혼기간을 자신들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점검을 하는 공동의 시간으로 활용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혼인은 약혼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가 적당하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약혼에 대해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



약혼기념사진 | 전북 무주 | 1978 | 국립민속박물관

의가 있어야 하고,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약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약혼 이후 혼인당사자 일방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할 경우에 약혼서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약혼식을 할 경우에는 직계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으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가운데 상호 가족적인 분위기로 약혼례를 진행한다. 간단한 예물을 교환하고 가벼운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로 검소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당사자의 성장배경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양가 간의 사전 혼인 교류가 있는 경우에는 약혼서만 교환하여도 무방하다. 일반적인 약혼식의 절차로는 사회자 개회사, 신랑·신부 양가인사, 양가 가족 및 친지 소개, 양가어른의 인사, 약혼서약, 사주단자와 택일단자 교환, 예물교환, 약혼케이크 절단, 축배,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르면, 혼인에 앞서 별도의 약혼식을 거행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약혼의 진정한 의미는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기간에 남편과 아내로서로를 폭넓게 이해하며, 혼인에 대한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함께 해 나가는 데 있으므로, 약혼식이 형식에 치우쳐서 원래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사자 및 가족 사이에는 구두와 문서에 의해 혼인 예약의 효력이 생기므로 약혼 시에는 약혼서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이영재, 실천민속학연구 12, 실천민속학회, 2008), 한국의 아름다운 혼례문화(이향숙, 동창, 2011).

필자 이향숙(李香淑)

어육
魚肉

정의 기신제나 시제에서 신에게 올리는, 생선과 육류로 만든 제물.

내용 1609년(광해군 원년) 조선왕조 최고의 귀한 손님인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올린 조반早飯,初朝飯이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각색병各色餠·청밀淸蜜·타락죽酡酪粥·침채沈菜·세면細麵·개말芥末·저두편猪豆片·정과正果·계아탕鷄兒湯·생선탕生鮮湯·상화병床花餠·강초薑醋·채菜·약과藥果·대추[大棗]·황률黃栗 외에 육류로 만든 좌간남左肝南과 어류로 만든 우간남右肝南이 이때의 찬품단자饌品單子이다. 이와 비슷한 조반상차림이 1643년(인조 21)의 『영접도감의궤』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손님접대상차림에 일관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간남의 간肝은 '요긴하다', '중요하다'는 뜻이고, 남南은 '남쪽'을 의미하니,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앉은 귀빈을 위하여 남쪽에 차리는 중요한 음식이라는 의미이다. 즉 '좌간남'은 남쪽의 왼쪽(손님에게는 오른쪽)에, '우간남'은 남쪽의 오른쪽(손님에게는 왼편)에 차려지

는 핵심적인 음식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간남이 1800년대 초의 저작으로 보이는 탄옹炭翁 권시權諰(1604~1672) 집안의 가례서家禮書인 『묘사의절墓祀儀節』에 나온다. 이 책에서는 '좌간남'을 '육남肉南'이라 하여 육회肉膾·협脇(갈비)·수육[熟肉]·육전肉煎이 이에 속한다 하였고, '우간남'을 '어남魚南'이라 하고 합자蛤子·멸치滅雉·해蟹(게)·북어北魚가 이에 속한다 하였다.

적炙을 한가운데 두고 적의 왼편과 오른편에 차린 육남(육간남, 좌간남)과 어남(어간남, 우간남)은 1800년대 말경에 나온 필사본 조리서 『시의전서是義全書』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책에서는 '간납肝納'이라 하였다. 이 책에는 「제물부祭物部」와 「간납부肝納部」를 두어, 어채魚菜·조개어채·전유아·해삼·홍합초·게간납·참새전유어·누르미·알쌈·수란·수육·족편·육회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시의전서』「간납」을 통하여 몇 개의 조리법을 살펴보자.



조기 | 충남 논산 사계 김장생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돔배기(상어고기) | 경북 경주 월성 손동만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 잡회: 잡회는 콩팥, 천엽, 간을 썰어 옆옆이 담고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쓴다. 단 천엽회만 하려면 천엽을 갸름하게 썰어 잣을 하나씩 물리어 말아서 담아 쓴다.
- 게간납: 게딱지를 떼어 게장을 모두 긁어내고, 긁어낸 게장에 숙주나물·미나리·쇠고기·두부를 다져서 합하여 양념한 다음, 게딱지에 가득 넣고 밀가루를 약간 묻혀서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다. 게발은 발톱만 잘라내어 살에만 달걀을 씌워 부친다.
- 참새전유어: 참새의 털을 깨끗이 뜯어 씻어서 뱃속에 곱게 다져 양념한 쇠고기를 얇게 넣고 밀가루를 묻혀 달걀을 씌워 지져낸다.
- 알쌈, 달걀을 개어서 번철에 얇게 편다. 익으면 곱게 다져 양념한 쇠고기 소를 한 편으로 조금 넣고 싸서 주악 모양이 나도록 지져낸다.

특징 및 의의 찜·전·회·수육·초로 조리된 찬품이 바로 어간남과 육간남에 해당하는데, 이는 『묘사의절』에 등장하는 육회·갈비·수육·육전·합자·멸치·해·북어와도 통한다. 여기에서 갈비는 갈비찜이며, 멸치와 게는 멸치전과 게전이고, 북어는 북어찜, 합자는 조개어채이다. 따라서 어魚는 게전유아·조개어채·홍합초·해삼전·멸치전·북어찜·어채 등을 가리키고, 육肉은 육회·갈비찜·수육·육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은 가장 맛있는 반찬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제례에서도 어간남과 육간남은 제수로 쓰이고 있다.

참고문헌 墓祀儀節, 是義全書, 迎接都監儀軌,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생활문화 속의 향토음식문화(김상보, 신광출판사, 2007).

필자 김상보(金尙寶)

어육기
魚肉器

정의 제사의 제물인 생선과 고기를 담는 그릇.

역사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물고기와 고기 등을 담

는 어육기로 사발 또는 접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진설도에서는 면-육물-적-어물-떡을 올리고, 『사례편람』 시제時祭의 진설도에서는 과果, 포의 줄 다음에 면-고기-적-물고기-떡의 순으로 진설하여, 육물(고기)과 어물(물고기)을 각각 제기접시에 담았다.

내용 생선이나 고기를 담는 제기인 어육기로는 유기鍮器나 목기木器로 된 직사각형의 네모진 어육(적)기와 지름이 크고 작은 둥근 굽다리 제기접시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즉, 담는 제물의 내용과 양에 따라 가로 20.5㎝, 세로 29㎝, 높이 6.4㎝의 네모진 어육기, 또는 윗 접시의 지름이 21㎝인 큰 둥근 어육기를 쓰거나, 지름이 12.7㎝인 작은 제기접시가 이용되었다. 큰 어육기에는 민어포, 육포, 문어다리오림, 건전복 순으로 고이며, 작은 어육기를 쓸 때는 미수인 상어전을 한 조각씩만 얹어 올린다. 둥근 접시의 지름 크기만 다를 뿐 제기의 높이는 두 어육기 모두 8㎝ 정도이다. 그러나 네모진 어적기의 높이는 6.4㎝로 둥근 제기보다 더 낮아 안정감이 있다.

지역사례 대구광역시 달성 서흥 김씨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종가는 초헌初獻에는 도적을, 아헌亞獻에는 어적을, 종헌終獻에서 계적을 올린다. 어적은 네모진 어적기에 염방어, 익힌 민어와 조기, 찐 상어꼬치적을 담고 익힌 문어를 얹으며, 기름에 지진 육전은 둥근 작은 제기접시에 담는다. 도적 1기는 도적기에 산적, 우엉전, 명태전, 돼지고기 수육(10근), 쇠고기적 18꼬치를 얹어 총 21㎝ 높이로 담아, 어적과 도적은 네모난 적기에 보기 좋게 담는다.

경상북도 안동 길안면 안동 김씨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 종가의 불천위不遷位 제사 제물 중 대육 1기는 생쇠고기를 가로, 세로 12㎝ 정도로 잘라 평접시에 세 개를 얹어 진설하고, 대어 1기는 상어고기를 가로, 세로 12㎝ 정도로 썰어 제기접시에 담는다. 도적은 명태·상어꼬치·쇠고기꼬치·문어꼬치·조기를 올리고, 그 위에 닭 한 마리를 얹는다. 재료들은 익힌 것이다. 도적을 위의 종가들처럼 익힌 제물을 올리기도 하나 혈식군자血食君子라 하여 생육을 사용하는 종가도 있다.



어적 | 전남 장성 하서 김인후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불천위제사처럼 제물을 높이 쌓을 때에는 네모난 어적기를 쓰거나 둥근 큰 제기접시인 어육기를 사용한다. 떡을 담는 편틀이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인 데에 비하여 네모난 어육(적)기는 직사각형 형태가 대부분이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식생활 기명기구(윤덕인 외, 한국음식대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전통식 기제사를 통해 본 조상관(배영동, 비교민속학23, 비교민속학회, 2003),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2), 종가의 제례와 음식1-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월인, 2003), 종가의 제례와 음식10-안동김씨 보백당 김계행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월인, 2006).

필자 윤덕인(尹德仁)

여막
廬幕

정의 부모가 사망하면 상주가 무덤이나 궤연几筵을 지키기 위하여 거처하는 집으로 여차廬次, 여소廬所, 여묘廬墓, 의려倚廬, 여廬라고도 함.

역사 고려시대에는 의종 때 손응시孫應時, 명종 때 장광부張光富가 여묘 3년의 효행을 다했다고 전한다. 또한, 경주의 손시양孫時揚은 부모를 위하여 각각 3년간 여막을 짓고 살아서 국가로부터 정문旌門을 받았다. 그리고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의하면 최누백崔累伯은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서 복수한 다음, 3년 동안 여묘廬墓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후 성리학의 대가인 정몽주가 3년간 여막을 짓고 살았으며, 조선시대에 들어

와서는 성리학 이념의 도입과 함께 국가에서 삼년상을 장려하면서 여막이 사대부 계층에 일반화되었다.

내용 여막은 사람이 겨우 지낼 수 있는 초막으로 부모의 묘소 옆에다가 조성한다. 그렇지만 장례를 지내기 전에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서 집 안에 만든 움막도 여막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도 상을 당하면 궁궐 안에 여차廬次를 짓고 임시 거처로 삼았다.

여막을 집 안에 세울 때는 중문 바깥의 동쪽 담장 아래에 나무를 기대어서 만들었다. 『의례儀禮』에 의하면, "효자는 의려倚廬에 거처하는데 거적 위에서 자고 흙덩어리를 베개로 삼으며 질絰과 대帶를 벗지 않고 지낸다."라고 하였고, 또 "이미 우제를 지낸 뒤에는 가려진 풀을 깎고 기둥으로 들보를 받치며 자리를 깔고 잔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상주는 볏짚이나 띠로 만든 여막 안에서 짚으로 만든 고석藁席을 깔고 고침藁枕을 베며 엄나무를 섞어 만든 엄신을 신고서 고통스럽게 생활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여막이 유행하였지만, 여막의 구조를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다만,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에 있는 〈의려도倚廬圖〉를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의려도〉에는 집에 붙어 있는 움막의 모양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는데, 외부에는 풀로 엮은 거적을 만들어 덮는다고 했다. 그 밖에, 김용환·김형래는 묘소 옆에 짓는 여막의 구조가 선사시대와 유사한 움집 형태로, 지붕과 벽체는 이엉으로 두른 구조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런데 움집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취식과 취침이 가능해야 했으므로, 겨울에는 한기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안동에 살던 이정회李庭檜(1542~1612)는 모친상 때에 여막에서 생활하면서 취식을 하였고, 찾아오는 손님을 맞았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노비들이 수시로 숯과 나무를 마련하여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안동의 김성일金誠一은 시묘살이 기간 중 모친의 행장, 묘지문을 작성하였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상례고증喪禮考證』을 편찬하였는데,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바로 여막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류성룡柳成龍은 60세에 모친상을 당해, 여막살이를 하며 『신종록愼終錄』, 『영모록永慕錄』, 『상례고증喪禮考證』 등을 찬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여막은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취식을 하면서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난방시설을 갖추었고, 때에 따라서는 난로나 간이 온돌시설을 갖췄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내부에는 적어도 손님을 맞이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빈소에 설치한 여막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여막은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모시기 위해서 마련한 거주지이다. 상주가 움막 같이 누추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지극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綱行實圖, 禮記, 상례와 시묘살이(김문택, 조선시대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시묘살이 여막의 복원적 고찰(김용환·김형래, 박물관지10, 충청대학교박물관, 2001),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문택(金文澤)

역복
易服

정의 상중喪中에 옷을 갈아입는 일.

내용 초혼을 끝내고 수시收屍를 마치면, 초상이 났음을 알리고 역복을 행한다. 상복을 입는 사람들은 모두 관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흰옷을 입는다. 망자의 아들이나 주상主喪의 손자는 두루마기를 입을 때 아버지의 상에는 왼팔을 꿰지 않고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팔을 꿰지 않는다. 이는 슬픔이 복받쳐 총망중에 옷을 제대로 입을 겨를이 없음을 의미한다. 옷을 갈아입고 3일간 밥을 먹지 않는데, 이를 '역복불식易服不食'이라 한다.

역복을 행하면 밥을 먹지 않는데, 이를 '불식不食'이라 한다. 이는 『세종실록』의 부록인 「오례」 중 흉례의 식의 하나로, 임금이나 왕비가 승하하면 내명부 소속의 종친을 포함하여 대군 이하 친자와 친손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素服을 입으며 베로 만든 버선을 신는다. 내외의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수를 놓은 옷의 착용을 엄금하고 화려한 장식을 버린다.

특징 및 의의 상중의 불식 행위로 세종대 사대부가에서는 거상居喪 중에 훼척毁瘠이 지나쳐 상사를 폐하고 목숨을 잃어 도리어 효도를 무너뜨린 자가 속출했다. 그래서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예기禮記』의 내용을 참작하여 제도로 만들어 항식하도록 하였다. 왕세자와 대군 이하 여러 아들은 3일 안에 죽을 조금 먹고, 3일 뒤에 밥을 먹으며, 달이 넘으면 조금 술을 마시고, 졸곡 뒤에는 고기를 먹는다. 만일 병이 있으면 비록 초상 때라도 고기를 먹으며, 병이 나으면 처음대로 회복하고, 거처하는 것은 차고 더운 것에 따라서 판자상이나 온돌방을 쓰고 베 이불과 베 베개를 쓰도록 하여 몸이 상하는 일을 막는다. 일년복은 하루를 굶고, 소공 5월, 시마복 3월은 두 끼를 먹지 않는데 친척과 이웃에서 죽을 쑤어 와서 먹기를 강권하면 조금 먹는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世宗實錄五禮儀, 朱子家禮, 조선초기상장의례연구(정종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필자 정종수(鄭鍾秀)

연길
涓吉

정의 신랑 측으로부터 사성四星을 받은 뒤에 신부 측에서 혼인날을 택하여 신랑 측에 보내는 것. 날받이, 택일, 납길納吉, 추길諏吉이라고도 함.

역사 우리나라에서 택일과 직접 관련된 가장 초기의 자료도 연길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진평왕대(재위 579~632)에 설씨녀薛氏女가 혼인을 앞두고 날을 골랐다[卜日]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설씨녀는 율리 마을 민가의 여자이다. …… 진평왕 때에 …… 설씨가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갑작스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가 변방 방위에 나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에, 날을 골라서[卜日] 예식을 올려도 늦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기록을 볼 때, 6세기 말경에는 이미 민가에서도 혼인을 앞두고 좋은 날을 택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택일과 관련해서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온다. 왕태자의 혼례와 관련해서 '채택고기采擇告期'가 행해졌음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의 사주四柱를 갖고 궁합을 보고, 신부 측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혼인날을 정하는 지금의 연길·날받이 관행과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에도 국가와 왕실, 그리고 민간에서 날을 가리는 풍습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더욱 성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문건李文楗(1494~1567)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조선 전기에 민간에서 행해지던 택일 관련 풍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종손從孫의 혼인날을 잡을 때 점복자占卜者에게 택일을 의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자수가 저녁에 와서 만났다. (종손인) 천택의 혼인 문제를 점쳐 보게 하였다. '해亥'자를 불렀더니 점을 쳐서 이르기를, '서합변이괘噬嗑變頤卦가 나왔으니 고향에서 여자를 얻어야 할 것 같고, 이듬해 정월에 성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갔다."

17세기 초 경상도 현풍에 살았던 곽주郭澍(1569~1617)와 그 가족이 쓴 한글 편지인 『현풍곽씨언간』도

당시의 다양했던 택일 관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십악대패일十惡大敗日과 천구일天狗日을 피하고 책력(칙녁)과 날 받는 책(날 밧는 칙)을 이용하여 딸의 혼인날을 받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스무이튿날은 누구에게 받으니 좋다고 하던가. 그날이 십악대패 날이고, 또 하늘개가 땅에 내려와 먹는 날이어서 아무 일도 못할 날이니, 하물며 그 일(혼례)을 어떻게 할꼬. 새 책력도 여기 왔고, 날 받는 책(택일서)도 여기 있거늘 자세히 받아보니 정월까지는 마땅한 날이 없으니, 내가 내려가서 다시 자세히 가리어 볼 것이니, 순희 오거든 가지 말고 있다가 나를 보고 가게 이르소.

"고대 이후 천문역법의 발달과 길일·흉일의 인식 위에 형성된 우리의 택일 풍속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연길 등 각종 행사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날 받는 책인 택일서도 계속 증보·발간되어 민간으로 택일 풍속이 널리 보급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택일 풍속은 근대까지도 계속 확대되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길편지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인륜지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큰일인 혼인의 택일 즉, 연길은 예로부터 매우 중요시되었다. 택일에 관한 초기 기록으로 『삼국사기』에 설씨녀가 혼인날을 고른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유로운 남녀 교제가 금지되고 중매 없이는 혼인할 수 없던 시절에는 혼인날이 신랑·신부가 처음 만나는 날이고 신랑·신부의 기와 천지의 기가 합덕合德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혼인날을 정하는 택일은 다른 어떤 절차보다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고, 또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육례六禮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양가에서 혼인하기로 합의한 뒤에는 정혼定婚(약혼)을 하는데, 남자 측에서 신랑이 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성四星·사주단자四柱單子를 여자 측에 보낸다. 그러면 사주단자를 받은 답례로 신부 측에서 신랑 측으로 혼인 날짜를 택일하여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택일을 '연길' 또는 '날받이'라고 한다. 연길은 신부 측에서 신랑 측으로 허혼서許婚書와 같이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신랑 측에서 연길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를 '맞택일'이라 부른다.

택일 결과를 알리는 연길단자는 백지를 다섯 칸 또는 일곱 칸으로 접어 중앙에 '전안○○년○월○일○시奠雁○○年○月○日○時'를 쓴 다음, 봉투에 넣어 청·홍 보자기에 싸서 보낸다. 연길단자에는 납폐일納幣日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납폐동일선행納幣同日先行'이라고 쓴다. 그리고 연길단자를 넣은 봉투의 앞면에는 '연길涓吉'이라고 쓴다.

혼인날을 정하는 연길은 혼인 준비의 복잡함이나 생리 현상 등으로 인해 신부 측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대강의 시기를 양가에서 합의한 뒤에 신부 측에서 택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신랑·신부의 부모가 혼인한 달, 양가에 불길한 일이 있었던 날, 양가 조상의 기일 등은 피하여 택일하기도 한다.

혼인날은 신부의 생리 현상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신랑·신부의 사주를 가지고 역학 원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주일 주기로 생활의 흐름이 짜여 있는 현대인들은 역학으로 따진 길일보다 하객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공휴일을 훨씬 선호한다. 여기에 길일까지 겹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상북도 안동 풍산읍의 김○○(남, 70세) 씨의 경우에도 "옛날에는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조용할 때 당사자의 사주를 넣어서 (혼인날을) 잡았지만, 지금은 공휴일에 나쁜 화禍만 없다면 혼인한다. 철

학관 하는 이들도 그렇게 날을 잡아주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날이 나오지 않아서 혼인을 이듬해로 미루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잘 없더라."라고 하여 오늘날 혼인날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신랑·신부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살을 피하고 길일을 가려서 혼인날을 잡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휴일로 혼삿날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과거에는 농번기, 두 집안의 부모가 혼인한 날, 두 집안의 불길했던 날, 제삿날, 삼복이 낀 달 등을 피해서 신랑·신부의 사주를 넣어서 날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속칭 길일과 공휴일, 신랑·신부의 사주, 축의금 수입까지 두루 참작해서 택일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입춘立春이 일 년에 두 번 겹친 쌍춘년雙春年에 혼인하면 잘 산다고 해서 쌍춘년으로 알려진 2006년에는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들이 급증하여 비수기인 한여름 평일에도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혼인 택일을 할 때 속칭 '길일'보다는 공휴일을 반드시 먼저 선호하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래 쌍춘년은 오래전 중국 한족에서 유행하던 풍속이다. "쌍춘년에 산동·하북에서는 콩이 금처럼 귀하고, 호남·하남에서는 가축이 불리하여 소가 금처럼 귀하다."라는 속담이 전한다. 다만, 하남에서는 '춘春'이 길상의 뜻도 있어서 쌍춘년에 결혼하면 '매우 좋다大吉大利'고 여겨왔다. 반대로 입춘이 들어있지 않는 무춘년無春年에는 혼인을 꺼려 혼인을 앞당기거나 늦추기도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윤월閏月」에는 "풍속에 혼인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들기에 좋으며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俗宜嫁娶, 又宜裁壽衣, 百事不忌."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전에는 윤달을 혼인하기에도 좋은 달로 여겼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윤달에 혼인을 꺼리는 풍속이 생겨났다. 따라서, 윤달에 혼인을 꺼리는 것은 근래 새롭게 변형된 연길 풍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쌍춘년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상업자본과 대중심리의 시류적인 영합으로 인해 혼인 택일은 약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양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징 및 의의 혼인날을 정하는 연길은 대강의 시기를 양가에서 합의한 뒤에 신부 측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랑·신부의 부모가 혼인한 달, 양가에 불길한 일이 있었던 날, 양가 조상의 기일 등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묵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이복규, 민속원, 1999), 역서류를 통해 본 택일문화의 변화(김만태, 민속학연구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우리문화와 음양오행(권오호, 교보문고, 1999), 한국 민속의 세계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김만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국 택일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김만태, 정신문화연구3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현풍곽씨언간 주해(백두현, 태학사, 2003).

필자 김만태(金萬泰)

연애혼
戀愛婚

정의 혼인당사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혼인하는 것.

내용 혼인 방식의 한 유형인 연애혼戀愛婚은 본인의 선택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는 만큼 그 선택에는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요 토대가 되기 마련이다. 고대 설화 중 김춘추金春秋와 문희文姬, 김서현金舒玄과 만명부인萬明夫人, 서동薯童과 선화공주善花公主,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대장간 집 딸과 혼인한 강수強首의 혼인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면모를 잘 볼 수 있다.

강수는 중원경中原京 일대에서 학식이 높고 글 잘 짓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의 집안은 중원경 지역에서 지방 토착민보다 더 우월한 신분이었다. 그런 그가 대장간 집 딸과 사랑에 빠졌다. 강수의 부모는 그녀와 헤어지고 집안 좋고 행실이 좋은 여인과 혼인할 것을 권했다. 그의 부모는 신분제 사회에서 대장간 집 딸과 혼인하면 자식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수는 끝까지 부모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道를 배우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찍이 옛사람의 말에 '고생을 같이 했던 아내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빈천한 시절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들었으니, 천한 아내라고 해서 차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강수는 마침내 대장간 집

딸과 혼인하였다.

고대 설화에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연애혼의 모습은 유교적 도덕률이 강화되는 조선시대로 올수록 점차 보기 힘들어진다. 그러다 개화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신소설 등이 자유연애·자유결혼·평등사상을 주로 다루면서 자유연애혼이 보급되고 연애혼이 증가한다. 1920년대 초부터 이른바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여성 지식인 계층에 의해서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결혼이 가족의 번영이나 사회의 번영을 위해 구속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두 개인의 정당한 이해와 사랑의 결합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혜택을 받은 소수의 여성에 의해 논의된 이야기일 뿐,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농촌에서는 1950년대 중반 이후에나 이와 같은 여성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혼인의 의미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에서 개인 대 개인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사회참여 기회가 증대되면서 연애혼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특징 및 의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진 남녀가 일정 시간 교제 후 가정을 이루는 혼인의 한 유형으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혼인방식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이배용,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현대사연구학회, 1999),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김경일, 푸른역사, 2012),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필자 박동철(朴東喆)

염습
殮襲

정의 고인의 시신을 목욕하여 수의襚衣를 입혀 염포로 싸고 입관하는 절차로서, 습襲·소렴小斂·대렴大斂을 통칭하는 최근의 용어.

역사 예서禮書의 규정을 따르면 통상 3일에 걸쳐 염습殮襲이 진행된다. 습은 고인의 돌아가신 날에 하고, 그다음 이틀째에 시신을 네모나게 싸서 묶은 소렴을 하고, 그다음 날인 사흘째에는 소렴한 시신을 입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내용 습이란 운명한 날에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새로운 옷인 수의로 갈아입히며, 반함飯含하는 절차로 시신을 깨끗이 정화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습이란 시신을 목욕시키는 일과 수의를 입히는 일을 함께 일컫는다. 습을 마치면 반함한 후에 시신에 홑이불을 덮어 놓은 다음 혼백魂帛을 접고 영좌靈座를 설치한다.

소렴이란 운명 후 이틀째(운명 다음날)에 하는 일로서 시신을 베로 싸서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이다. 먼저 준비 차원에서 소렴에 사용하는 옷과 이불, 효絞 등을 늘어놓는데, 이를 '진소렴의금陳小斂衣衾'이라고 한다. 집사자가 소렴에 필요한 기구와 이불을 준비하여 당堂의 동쪽 벽 아래 탁자 위에 늘어놓는다. 옷은 깃을 남쪽으로 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접는다. 소렴에 필요한 물품은 고인이 입던 옷과 시신을 묶는 베인 효, 시신을 덮는 이불인 금衾이다. 옷이 많으면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염포는 가로(가로매)가 셋이고 세로(세로매)가 하나인데, 양 끝을 세 가닥으로 잘라서 묶기 좋게 만든다. 가로는 몸을 돌릴 만큼, 세로는 머리와 발을 감싸 중간에 묶을 만큼의 길이로 준비한다. 이불은 홑이불이 아니라 겹이불을 쓴다. 준비가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시신을 들어 소렴상 위에 놓는다. 먼저 베개를 치우고 비단 겹옷을 말아 머리를 괸다. 이후 양 끝을 말아 올려 두 어깨의 빈 곳을 채운다. 그런 다음 또 옷을 말아서 두



염습 | 국립민속박물관

다리의 빈 곳을 채우고 남은 옷으로 시신을 덮는다. 옷섶은 좌임左衽(왼쪽으로 여밈)으로 하여 가지런히 한 후 이불로 싼다. 이때 발, 머리, 왼쪽, 오른쪽 순서로 싼다. 염포로 싸서 묶을 때는 먼저 세로매를 묶고, 다음에 가로매를 묶는데, 매듭을 짓지 않고 말아 돌려서 끼워 둔다. 염을 마치면 홑이불을 덮어놓는다.

대렴이란 소렴한 시신을 관에 넣는 입관入棺의 절차로 운명 후 3일째에 행한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세 가지 절차 중 세 번째 절차이다. 3일째에 대렴大斂하는 것은 혹시 소생蘇生하기를 기다리는 효성 때문이라고 한다. 대렴할 때는 관의 빈 곳에 고인이 생시生時에 입던 옷(산의散衣라고 한다)을 채우는데, 이를 '보공補空'이라 한다. 경기도와 호남지역 일부에서는 산의 대신 흙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흙보공'이라고 한다. 신분에 따라 옷의 수량이 다르다. 보공을 하는 이유는 운구運柩할 때 관 안에서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관 안의 산소를 최소화하여 시신을 오래 유지하려는 의미가 있다. 입관하면 이때부터 관을 영구靈柩로 고쳐 부른다.

특징 및 의의 일제강점기부터 의례의 간소화와 편의를 위해 습·소렴·대렴의 세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염습' 혹은 '습렴襲斂'이라 하게 되었다. 특히,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면서 염습이라는 용어가 고착되었다. 요즘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이 확인된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장례지도사가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염습을 진행한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喪禮備要, 상례 누구를 위한 의례인가(김시덕, 민속학연구7,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염습구
殮襲具

정의 염습할 때 사용되는, 염습의(수의)를 제외한 여러 가지 도구와 시신을 관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수의 용품.

개관 염습구를 설명하려면 먼저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 순서를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의를 제외한 것들이 염습구이다. 상례 절차는 복復,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殮, 성복成服, 제祭, 문상問喪의 순서이나, 대렴까지가 입관 절차에 해당한다. '염습의'란 크게 염과 습에 사용된 옷과 부속물을 일컫는다. 조선시대에는 상례 때 엄격하게 집안마다 전해 오는 예를 지켜 습과 소렴, 대렴을 행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상례가 매우 간략하게 변하자 습과 소렴과 대렴이 혼합되어 이를 "염한다."라고 하였고, 습과 염에 사용되는 수의 용품들도 혼합되거나 생략되었다.

내용 염습의와 염습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유교에 따른 장묘법이 일반화된 조선시대에도 시기별로 염습구의 명칭과 형태 등이 달랐다. 습구의 종류는 남녀의 상喪에 따라 다르다. 조선시대 보편적인 염습구는, 수의로 사용되는 기본 복식 외에 말襪(버선), 망건網巾, 복건幅巾, 명목幎目, 충이充耳, 악수幄手, 리履, 늑백勒帛, 모冒가 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수의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칠성판, 석席, 지요[地褥], 대렴금大殮衾, 소렴금小殮衾, 대렴교大殮絞, 소렴교小殮絞, 명정銘旌, 삽翣, 현훈玄纁 등을 염습구라고 했다.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재봉전서』에서는 수의 용품, 즉 염습구로 면모, 악수, 복과, 현훈, 영, 천금, 지요, 베개, 대·소렴금, 오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장의업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천금, 지요, 장메(교포), 악수, 면포(명목), 베개, 버선, 오낭 등을 수의 용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망건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머리를 정리하던 머리띠의 일종으로, 평상시에는 말총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수의용으로는 검은색 비단으로 간략하게 만들어 사용했다. 복건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모자로, 수의용은 망건 위에 착용한다. 조선 전기 출토 복식에는 망건 대신 소모자小帽子가 사용되기도 했다. 명목은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사각형의 모양에 네 귀퉁이에는 끈이 달려 있어 손을 싼 다음 묶게 되어 있다. 조선시대 예서에 의하면 겉은 검은색 비단, 안은 붉은색 비단이며 속에는 얇게 비단 솜을 넣기도 했다. 충이는 대추씨 정도 크기의 비단 솜이나 솜으로, 시신의 귀를 막는 데 사용한다. 악수는 손 싸개로 직사각형 형태에 중간이

패인 모양이고 양쪽에는 긴 끈이 달려있어 손을 싼다. 멱목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예서에 따르면 겉은 검은색 비단, 안은 붉은색 비단을 쓰며 속에는 비단 솜을 얇게 넣기도 했다. 버선은 조선시대에는 세 겹을 껴 신기기도 했다. 리履는 수의용 신으로 종이나 비단으로 만들어 신긴다. 늑백은 시대마다 뜻이 다른데, 배를 감싸는 허리띠 혹은 행전을 뜻한다. 칠성판은 관 속에 놓는 나무판으로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일곱 개의 구멍을 뚫는다. 북두칠성 모양의 구멍을 뚫는 것은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신에게 빌어 죽음을 구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석席은 시신을 모시는 자리로 신분에 따라 재료가 달라진다. 지요는 시신을 모시는 요[褥]로 관의 크기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고 겉감은 검은색, 안감은 붉은색으로 하며 속에는 솜을 넣는다. 대렴금과 소렴금은 대렴과 소렴을 할 때 시신을 감싸는 이불이다. 대렴교, 소렴교는 시신을 감싸고 묶는 끈으로 최근에는 '장메'라고도 부른다. 명정은 붉은 비단에 망자의 신분을 적은 깃발이다. 운구 때 관 앞에 세우고 가서, 하관 때 관 위에 덮는다. 삽翣은 운구 때 관의 앞뒤에 세우고 가서 하관할 때 내관과 외관 사이에 넣는 것으로 나쁜 기운을 막는 것이다. 현훈은 하관 시에 관 위에 올리는 청홍비단으로 지신地神에게 바치는 폐백이다. 오낭은 시신을 목욕할 때 떨어진 머리카락, 치아, 손톱, 발톱을 넣은 작은 주머니이다.

2014년 현재 일반적인 염습구로는 삼베로 만든 고깔(얼굴싸개), 천금, 지요, 장메, 악수, 면포, 베개, 버선, 오낭(조발랑이) 등을 말한다. 조선시대와 비교해 보면 망건, 복건, 리, 늑백, 칠성판, 석, 삽, 현훈 등이 제외되었다. 이는 오늘날 상례 절차가 간략해지면서 염습구들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염습은 망자를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감하는 과정이다. 염습구를 사용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감싸서 시신이 관내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신의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망자에게 염습구가 필요한 이유는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신의 부패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부패의 현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죽음이 이승을 떠나 저승인 새집으로 이사



염습구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 고유의 내세관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망자를 염습함으로써 저승에서의 평안한 삶을 빌고 효를 다하려는 효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상례 절차를 통해 종명終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의식으로 망자와 살아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김진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정종수·이은주 외,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염포
殮布

정의 소렴小殮과 대렴大殮 때에 시신을 감싼 후 종횡으로 묶는 옷감.

역사 염포에 관한 기록은 『예기禮記』에서 찾아볼 수 있어, 유교식 상례에서는 염포 사용이 오래된 풍습임을 알 수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많은 예서에서 염포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 예서에서는 염포를 '교포絞布' 또는 '교絞'라고도 했다. 2000년 경기도 지방에서는 '매'라고 불러, 횡교橫絞는 '가로매', 종교縱絞는 '세로매'라고도 한다. 또, 종교를 '장포', 횡교를 '단포'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멧베'라는 이름도 있다. 2014년 현재 장례관련 업체에서는 염포를 '장매'라고 부르고 있다.



염포 | 1990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염포는 시신을 종縱으로 감싸거나 묶을 때 사용하는 '종교'와 횡橫으로 감싸거나 묶을 때 사용하는 '횡교'가 있다. 상례의 순서에 따라 소렴과 대렴 때 사용하는 염포는 각각 '소렴교小殮絞', '대렴교大殮絞'로 구별해서 불렀다. 즉, 소렴에 사용하는 소렴포로는 소렴종교, 소렴횡교가 있고, 대렴에 사용하는 염포인 대렴포大殮布로는 대렴종교, 대렴횡교가 있다.

『국조오례의』와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소렴포는 횡으로 3개를 먼저 놓고, 종으로 1개를 깐다. 이때 염포는 옷감 한 폭을 세 갈래로 갈라 사용한다. 대렴포는 횡 두 폭을 세 갈래로 나누어 총 여섯 갈래로 가른 다음 그중 다섯 갈래만 사용한다. 종포는 한 폭을 세 갈래로 나누어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소렴포는 고운 베를 정련하여 사용하며, 종縱의 길이는 10척尺(자) 정도는 허용된다. 양 끝을 세 갈래로 가르되, 길이의 중간 3분의 2는 갈라지지 않도록 한다. 횡橫 세 폭의 길이는 각 4척이나 3척 정도로 한다. 종포도 끝을 세 갈래로 나누되, 중간 8촌寸 정도에서 멈추어 가르지 않도록 한다. 대렴포는 종 3척, 횡 5척으로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1942년에 출간된 『사례의절四禮儀節』에서는 "소렴포는 세련포洗練布를 사용하되, 횡교는 네 폭의 양 끝을 갈라 8개로 만들고 반半 폭을 더하여 아홉 갈래를 쓰고, 종교는 한 폭의 양 끝을 세 갈래로 갈라 중간은 찢지 않고 사용한다. 대렴포는 정련한 포 세 폭의 각 끝을 갈라 여섯 갈래[絞]로 만들어 한 갈래는 버리고 다섯 갈래를 이용한다. 종교는 한 폭을 이용하여 양 끝을 세 갈래로 갈라서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염포의 사용은 시대마다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염포의 옷감은 문헌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었다. 『국조오례의』에서는 고운 모시나 채綵(오색 비단)을 사용한다고 했고, 『가례언해家禮諺解』에서는 가는 베 또는 비단을 쓴다고 하였다. 『사례편람』에서는 "가는 포(베)를 두들겨 세탁한 것을 사용한다."라고 했다. 정문공正文公 김수근金洙根(1798~1854)과 문헌공文獻公 김병학金炳學(1821~1879), 김정규金貞圭의 부인 한산 이씨韓山李氏(1865~1915)의 『신종록愼終錄』에는 세포를 정련하여[練細布] 사용한 기록이 있다. 『사례의절』에는 '천금' 관련 기록이 있다. 2014년 현재 장례업체에서는 대부분 삼베로 만든 염포를 판매하고 있다. 조선시대 무덤에서 수습되는 염포의 재질은 고운 모시와 베, 그리고 명주 등으로 다양하다.

2001년 장례업체에서 시행한 대렴은 조선시대와 달리, 염포의 위와 아래를 묶어주고 왼쪽을 덮은 후 오른쪽으로 덮는다. 7개의 멧베를 사용하여 염포로 싼 시신을 묶는데, 멧베의 양 끝을 세 가닥으로 갈라서 총 스물한 가닥으로 만든 후 시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묶는 것으로 대렴 과정이 끝난다.

특징 및 의의 『사례찬설四禮纂說』에서는 이암頤庵 송인宋寅(1517~1584)의 말을 인용하여 "소렴과 대렴은 시신을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단단히 묶는 것만 능사로 알아 힘센 사람을 택하여 힘써 묶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소렴할 때 교絞로 묶지 않는 것은 효자가 수시로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함이며, 혹 사람이 죽은 지 2~3일 만에 살아나기도 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염포는 시신을 묶는 용도로 소렴과 대렴에 사용하는 염습구이지만, 소렴에서는 단단하게 묶지 않는다. 조선시대 출토 복식에서도 꼬아서 비틀어 넣은 상태로 수습된다. 이는 소렴에서 혹시라도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으로, 효사상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김진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정종수·이은주 외, 신유,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영결식
永訣式

정의 장사 지내기 전에 고인을 영원히 떠나보낸다는 뜻으로 행하는 의식.

역사 고인을 이제 영원히 떠나보낸다는 의미의 '영결'은 이미 유교식 상례의 견전遣奠절차에서 읽는 축문에 드러나 있으나 의례의 절차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축문의 내용은 "상여에 멍에를 씌워 유택으로 가니 견전례를 베풀어 영원히 작별합니다靈輀旣駕往卽幽宅載陳永訣遣禮終天."이다. 그러나 전통 유교식 상례의 견전은 영결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대에 영결식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의례준칙」(1934) 제10조이다. 그 내용은 "발인 전에 영결을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상가에서 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이다. 그러나 이미 1927년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의 장례식이 사회장으로 치러진 것을 보면 이전부터 영결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법률과 함께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33조에서 '영결식'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영결식장은 상가 또는 편리한 장소에 마련한다."라고 하여 영결식이 단체장團體葬에서 치러지는 특성을 가졌음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1973년에 개정된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영결식 대신 '발인제'를 '영결식'의 대체절차로 제시하였다.

「의례준칙」의 영향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근·현대 저명인사의 국장, 국민장을 비롯한 단체장에는 반드시 영결식이 중요한 절차로 등장한다. 전통사회의 유림장儒林葬이 단체장의 기원이 될 수도 있으나, 유림장에는 영결식이라는 절차가 없다. 국장·국민장에서도 영결식을 중요한 절차로 행하는데, 이는 저명인사의 사망을 알리고 전 국민이 그 죽음을 추모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내용 가족 장례식의 영결식은 발인 전에 장례식장에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행하는,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의례이다. 그러나 영결식을 하고 영구차 앞에서 다시 견전을 올리기도 하여, 그 성격이 매우 애매하고 중복되는 느낌이다.

영결식을 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1969년 「가정의례준칙」 33조에 최초로 나타난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정된 시간에 영구를 식장에 옮기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영결식순은 다음과 같다.
>
> 1. 개식, 2.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배례, 3. 고인의 약력보고, 4. 조사, 5. 조객분향, 6. 호상인사, 7. 폐식

1973년의 「가정의례준칙」부터는 '영결식'이 '발인제'로 바뀌면서 식순 역시 수정된다. '2.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배례'에서 배례가 생략되고 '2.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으로 바뀐다. '3. 고인의 약력보고'가 '소개'로 바뀌고, '6. 호상인사'가 생략된다. 발인제에서 호상인사를 생략하는 것은 영결식의 단체장 혹은 사회장의 애매한 성격을 가족장으로 축소 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1988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새로 제정하면서 발인제의 식순 역시 대폭 수정된다. 그 식순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식, 나. 주상 및 상제의 분향, 다. 헌주, 라. 조사, 마. 조객분향, 바. 일동경례, 사. 폐식

한편, 단체장의 영결식은 더욱 넓은 참석 범위에서 진행된다. 단체장이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때 국가 또는 사회단체, 각계 대표가 단체 혹은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단체장은 1927년 4월 7일 월남 이상재李商在(1850~1927)의 사회장이다. 두 번째 단체장은 이듬해 1928년에 치른 유인식柳寅植(1865~1928)의 사회장이다. 1947년 여운형呂運亨(1886~1947)의 인민장, 1947년 윤봉길尹奉吉(1908~1932)의 국민장, 1949년 김구金九(1876~1949)의 국민장, 1979년 박정희朴正熙(1917~1979) 대통령의 국장 등이 있었고, 이러한 단

체장은 현재도 거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공립 기관의 단체장, 회사의 단체장, 군대의 단체장, 연구소장도 등장하여 단체장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장에서 행하는 영결식은 단순히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뿐만 아니라 고인의 숭고한 삶을 돌아보고 고인의 뜻을 계승하려는 목적이 크다. 2011년부터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였는데, 이를 제외한 단체장은 국가장 다음에,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행하는 장례식이다. 국가에서 직접 장례절차나 장례비용 등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하여 훈장을 추서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장을 치를 때의 영결식 절차는 가족장의 영결식과 다르다. 먼저, 단체장에서는 장례 기간에 분향소를 공공장소에 차리는 것은 물론, 영결식장 역시 공공장소에 차린다. 영결식의 순서는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가족장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 식순은 다음과 같다.

1. 개식, 2. 고인에 대한 묵념, 3. 약력보고, 4. 조사 또는 식사, 5. 조가, 6. 종교의식, 7. 헌화 및 분향, 8. 폐식

단체장의 영결식에서 영결하는 대상은 사회의 저명인사이므로 개식 전에 반드시 국민의례를 한다. 종교의식이 식순에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인 몇몇 종교의 이름으로 고인을 추모하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인이 생시에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종교의식 다음에 상영해 고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도 한다. 헌화와 분향은 일종의 문상으로서, 영결식장이 공공장소에 마련되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구문화와 전통을 융합한 것이다.

지역사례 영결식은 최근에 생성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공인된 의식이어서 특별히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다만, 고인의 생시 종교가 있을 경우 종교의례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는 점이 다르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 내용과 절차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영결식은 가족장과 단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장은 영결식을 하더라도 혈연관계인 상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단체장은 장례위원회의 장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영결식을 이끌어 간다. 단체장의 영결식은 사회장, 인민장, 기관장機關葬 등 다양한 단체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큰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단체장의 영결식에서는 대부분 개식 전에 국민의례를 행하고, 회사장에서는



偉蹟 永遠히 靑史에 燦然!

金九先生 昨日 國民葬

慟哭 속에 靈鞏의 발자욱도 더듬어

嗚呼! 七十平生을 祖國光復에 바쳐오다가 아직 統一을 보지못한채 倭仇아닌 겨레의 兇彈에맞아 지난 二十六日 逝去한 偉大한 平和統一指導者 大韓民國 臨時政府 主席兼 韓獨黨委員長 金九翁의 國民葬은 봄은피루 라신지 열흘만인 昨五日 三千萬의 悲痛한 哀悼裏에 莊嚴히 擧行되었다

위적 영원히 청사에 찬연! 김구선생 작일 국민장 | 1949. 7. 6 | 경향신문

월남선생사회장의 | 1927. 4. 8 | 동아일보

회사 소개를 추가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한국 국가장에 관한 연구(유재철,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영구
靈柩

정의 대렴大殮한 시신을 입관한 관.

내용 영구靈柩는 대렴절차를 행한 뒤 시신을 입관한 관을 의미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대렴을 마친 영구는 병풍으로 가리고 관 동쪽에 영상靈床을 마련하고 전奠을 올렸다. 그러나 "옛날에는 대렴하고 빈殯을 하였으며, 이미 대렴하였으면 흙벽돌을 쌓고 진흙을 발랐다. 지금은 관을 칠한 것이 마르지 않았거나 남방의 흙에 개미가 많아 빈에 진흙을 바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리한 대로 따른다."라고 하여 땅을 파고 영구를 묻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사를 지내는 기간이 길거나 여름철에는 '도빈塗殯'이라 하여 사랑채나 대문 곁 행랑채 옆에 땅을 파고 영구를 묻었으며, 『상례비요喪禮備要』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어 발인發靷 하루 전에 천구遷柩절차에서 전奠을 올려 축관이 술을 따르고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 "지금 길일에 영구를 옮깁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한다. 정침正寢 또는 빈에 있었던 영구는 사당에서 조상을 뵙고 청사廳事로 이동한 뒤 이튿날 다시 상여로 옮긴다. 이때 축관은 북향하여 무릎 꿇고 "지금 영구를 상여로 옮깁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고 견전遣奠을 올린다. 발인 날 상여에 실린 영구가 떠나 장지로 향한다. 방상시方相氏가 앞에서 인도하고 명기明器, 명정銘旌, 영거靈車, 만장輓章, 공포功布, 상여 순으로 가고 그 뒤에 주인과 복服을 입는 남녀, 존장尊長, 복이 없는 친척, 빈객 순으로 따라간다. 친척과 빈객은 성 밖 길가에 장막을 치고 영구가 멈추면 전을 올린다. 묘소가 멀면 30리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차려놓고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전을 올리고 식사 때는 상식上食을 올린다. 밤이 되면 주인과 형제 모두 영구 옆에서 자고 친척도 함께 지낸다.

영구가 묘소에 도착하면 급묘及墓 절차에 따라 집사자가 먼저 광壙의 남쪽에 자리를 깔고 영구를 상여에서 내려 자리 위로 놓는데 머리를 북쪽으로 가게 한다. 주인과 남녀는 각각 자리로 가서 곡하고, 빈객은 절하며 작별하고 돌아가고 이어 영구를 광중壙中에 내리는데, 이를 '하관'이라 한다. 영구를 내리는 것은 가장 세심하게 힘써서 해야 하므로, 잘못해서 기울여 떨어뜨리거나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인과 형제들은 마땅히 곡을 그치고 친히 가서 살펴보아야 하며, 이미 내렸으면 관을 덮은 옷과 명정을 다시 정돈하여 평평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주인은 현훈玄纁이라는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을 폐백으로 바치고 회격灰隔으로 안팎의 덮개를 덮는다. 이어 석회·모래·황토 섞은 것을 아래에 깔고 재를 위에 펴고 흙을 채우고 점점 다진다. 묘소의 왼쪽에서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 드리고 명기와 지석誌石을 묻고 다시 흙으로 채우고 견고하게 다진다. 광중을 메우고 봉분을 조성하는 동안 신주를 쓰고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 다음 "고자孤子 아무개가 감히 아무개 부군府君께 고합니다. 육신은 무덤 속으로 가셨지만, 신령은 집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신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높으신 신령께서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좇아 여기에 기대고 의지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축문을 읽는다. 축관이 신주를 받들고 수레에 오르고 집사자는 영좌를 거두어 떠나고 자식 중 한 명을 머물게 하여 봉분이 완성할 때까지 살펴보게 한다.

1970년대 이후 영구는 장례식장에서 입관과 발인 절차를 마친 뒤 상여보다는 영구차로 장지까지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징 및 의의 대렴 이후 시신을 입관한 관을 의미하는 영구는 습 이후 만들어지는 혼백·명정과 함께 고인의 상징물로 기능하다가 급묘及墓의 매장 절차를 끝으로 기능을 다한다. 영구가 매장됨으로써 가족들은 고인과, 고인은 이승세계와 실질적으로 이별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정종수 외, 국사편찬위원회, 2005), 전통상례(임재해, 대원사, 199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고영진(高英津)

영구차
靈柩車

정의 발인 과정에서 망자의 시신을 입관한 구柩를 장지까지 운송하는 자동차.

역사 일제강점기에 「의례준칙」(1934)은 자동차를 사용해서 발인해도 무방함을 명문화하였다. 당시 영구차는 다인승 중소형 차량이었다. 1950년에는 기존의 영구차를 버스형으로 개선하여 영구와 상주, 그 가족들을 태우고 장지까지 이동하였다. 1970년에는 영구차의 내부와 외관 디자인을 표준화해서 일반버스와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장의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장의업체들은 시신운구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였다. 영구차는 상주 가족과 문상객을 태운 버스와 시신을 운구하는 장의차 등으로 정의의 폭이 넓어졌다. 1996년에 성북구는 장례복지의 실현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장례 시에 서울시립매·화장장까지 영구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내용 사회변화는 상례 공간과 상례·장례 운구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통 상례·장례에서는 주로 상여로 운구하였지만, 현재는 이 역할을 영구차가 대신하고 있다. 실제 장례에서 영구차의 사용형태는 몇 가지로 나뉜다. 영구차 한 대에 시신과 상주, 문상객이 함께 한 형태, 시신운구 전용차량과 버스가 한 조를 이룬 형태, 영정을 모신 차량과 상주가 탄 시신운구 버스가 한 조를 이룬 형태 등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실제 운구 방식을 반영해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한 장례 참여와 시체(유골 포함) 운송'으로 기술하고 있다.

상주는 발인일 아침에 하관 또는 화장 시간에 맞추어서 영구차를 장례식장 또는 상가 인근 지정장소에 배치한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입관실 또는 집에서 관을 영구차에 운구해서 싣는다. 일부 상주와 유가족들은 운구자들이 관을 영구차에 싣는 모습을 보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곤 한다. 상주들은 발인식을 장례식장 또는 상가에서 올리며, 한때 영구차 옆에서 올리기도 했다. 영정과 위패를 안은 상주와 나머지 상주, 유가족들이 탑승하면, 영구차는 화장장, 매장지,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향한다.

일부 영구차 운전사가 차문을 열지 않거나 관을 인도하지 않은 채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상주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상주가 하는 수 없이 돈을 지급하면, 운전사는 그제서야 상주에게 관을 인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상여를 운구할 때 상여꾼들이 상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행태로 보인다.

1970년대 정부는 영구차 내·외관 디자인을 포함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였다. 표준안은 백색 에나멜 바탕 위에 측면과 전면에 검은색 줄 표시, 일정한 크기의 상호 기재, 차내 의자의 흰색 씌우개 사용, 광고물 부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영구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고, 엄숙한 장의 환경을 유지하고자 마련한 것이었다. 이 표준안을 지키지 않은 영구차는 3일간 운영이 금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장의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장의업체들은 GM사의 캐딜락(Cadillac)과 포드사의 링컨 타운 카(Lincoln Town Car) 같은 고급 차종을 수입하여 시신과 영정을 모셨다. 최근에는 영구차에서 구柩를 싣는 부분을 상여 모양으로 개조하거나 형상화함으로써, 상주들이 느끼는 이질감을 상쇄시켰을 뿐만 아니라, 운구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가원수와 사회 저명인사는 기존 영구차를 국화 같은 꽃으로 단장해서 운구하였다.

장지, 화장장, 납골당 등의 여러 곳을 이동하다 보면, 상주들은 어쩔 수 없이 영구차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영구차는 여러 곳으로 이동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히치거나 사고를 당해서 하관 시간을 맞추지 못하기도 하였다. 영구차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는 자꾸 증가하였기 때문에 장례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금품 요구나 차량 노후화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 해결책으로 당국에서는 영구차를 증차하는 한편, 편의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춘 차량만을 영구차로 등록시키는 조처를 취했다.

1970년에는 영구차가 전국적으로 206대 운행되었으나, 1983년에는 서울에서만 8개 장의업체가 140대

를 운행하였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880개 업체가 1,973대의 영구차를 운행하였다. 영구차 사용요금은 정부가 통제하였는데, 1970년의 영구차 사용요금은 1일 8,400원, 1㎞ 운행에 64원 5전으로 30분당 450원이었다. 1988년의 경우, 영구차 한 대당 1억 이상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관련 사업은 수익성이 높았다.

1993년 이전까지 영구차 사업은 광역지방단체별로 구역을 한정하였다. 경기도는 14개 구역으로 나누었다가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변화, 업체 간의 과당 경쟁, 운송질서 문란 등으로 22개 구역으로 재편하였다. 1993년에 정부는 영구차 사업구역 제한을 폐지해서, 영구차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일부 영구차 운전사가 차문을 열지 않거나 또는 시신을 인도하지 않은 채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주들의 영구차 운전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상주가 하는 수 없이 돈을 지급하면, 운전사는 상주에게 시신을 인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상여를 운구할 때 상여꾼들이 상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행태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가 인근의 영구차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이 영구차를 죽음과 관련지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급적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면서 회사와 마찰을 빚곤 했다. 서울시는 1983년 영구차 공동차고지를 설치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을 막고자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사회변화는 운구 방식을 상여에서 영구차로 바뀌게 하였고, 결국 영구차로 운구하는 형태마저도 다양화시켰다. 게다가 운구의 현실화와 고급화가 더해져, 영구차 운행은 장례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부 잡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차를 통해 전통적인 장례문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儀禮準則, 부산 장의차 파업(한겨레신문, 1993년 10월 20일 기사), 불량 장의차 단속(매일경제, 1981년 12월 5일 기사), 상주 슬픔 뜯는 영구차 운전사들 떡값 강요 단속 못하나(경향신문, 1973년 8월 8일 기사), 소형 장의차 도입(한겨레신문, 1992년 9월 10일 기사), 신형영구차출현(경향신문, 1950년 6월 11일 기사), 장의차 면허제서 등록제로(동아일보, 1993년 3월 18일 기사), 장의차 색깔 바꿔(매일경제, 1983년 11월 16일 기사), 장의차 업자들 운임 머대로 올려(동아일보, 1970년 7월 27일 기사), 저승길 요금도 올려(매일경제, 1970년 11월 5일 기사), 캐딜락 장의차 사업 호황(매일경제, 1995년 9월 20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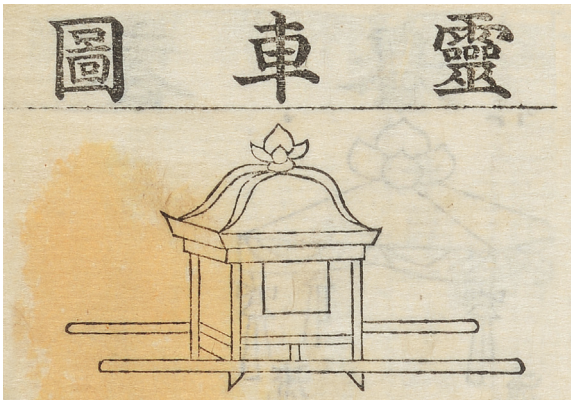
필자 박종민(朴鍾珉)

영여
靈轝

정의 혼백魂帛과 신주를 모시고 다니는 작은 가마.

내용 영여란 말 그대로 영혼이 타는 수레이다. 여기에는 혼백 및 혼백상자, 신주, 향로, 영정 따위를 싣는다. 두 명이 메듯이 앞뒤로 끈을 가위표로 엇걸어 어깨에 걸고, 두 손으로는 가마채를 잡고 간다. 가마채가 허리 높이 정도 오기 때문에 '요여腰輿'라고도 한다.

사람은 죽으면 혼백魂魄이 분리되어 '혼'은 하늘,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를 '신혼체백神魂體魄'이라 한다. 신혼은 혼백이나 신주에 의지하여 사당에 모셔지고, 체백은 무덤에 모셔져 흙이 된다. 혼백은 죽은 이의 영혼이 깃든 것이기에 시신을 옮기는 상여와 따로 분리한 것이다.



영차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영여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영여는 지붕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지붕 맨 위에는 녹색 바탕에 붉은색 연꽃 봉우리를 달았으며 옆면에도 피지 않은 연꽃 망울을 그려놓는다. 연꽃은 정화와 영혼의 부활을 상징한다. 정면에는 여닫이문을 양쪽에 내고, 뒷면에는 태극을 그려 놓는데 음과 양을 뜻한다.

출상행렬의 순서는 맨 앞에 방상시方相氏가 서고, 이어 명기明器와 복완—명정銘旌—요여—만장輓章—공포功布—상여喪轝—운아삽—주상—상주—복인—존장—무복친—조문객의 순으로 나간다. 장례 행렬에서 요여가 시신을 실은 상여 앞에 가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와 함께 저승과 이승을 나누어 인식하는 이원적 세계관을 나타낸 것이다. 오늘날 영구차에 시신을 싣고 가면서도 혼백이나 영정을 모신 차가 앞서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禮記, 朱子家禮.

필자 정종수(鄭鍾秀)

영정
影幀

정의 제사나 장례를 지낼 때 신주나 지방紙榜 대신 사용하는 초상화 혹은 사진.

역사 『가례家禮』에서 "세속에서 초상화를 그려 혼백魂帛의 뒤에 놓는데, 남자는 살아 있을 때 그려둔 초상화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부인은 살아 있을 때 규문閨門 안에 깊이 거처하였고 외출할 때 가마를 타거나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니, 얼굴을 기억하는 이가 드물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뒤 어찌 화공에게 직접 방 안에 들어가서 얼굴을 덮은 비단을 벗겨서 용모를 그리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로 볼 때 영정은 혼백 뒤에 놓는 초상화를 일컫는 것이고, 남자는 생전에 그려둔 초상화를 영정으로 사용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영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영정影幀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묘사해둔 그림으로, 예서에는 영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가례』에 따르면 "사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이천程伊川 선생이 제사 지낼 때는 '영影'자를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영당影堂'을 '사당'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라고 한다. 이때의 영당이란 가묘를 건립할 형편이 되지 않는 서인庶人이 영당을 세워서 초상화인 영정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던 곳을 뜻한다. 이후 주자朱子가 『가례家禮』에서 영당 대신에 사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또 그곳에 신주를 봉안하여 제사를 거행하는 것을 규범으로 제시함에 따라 초상화를 두고 의례를 행하는 행위는 점차 축소되어 갔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황희黃喜가 임금에게 "지금 사람들이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만 수염이나 머리털 하나라도 같은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면 영정을 모시고 제사하는 것은 이미 딴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라고 고했던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만 하더라도 영정에 대한 제사가 일반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 상례에서 영정은 혼백이나 신주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상례의 경우 영정 사진을 혼백과 함께 빈소에 모시며, 행렬에서도 영정 사진을 앞세운다. 1999년 배포된 「가정의례준칙」에서도 운구 행렬의 순서를 '명정—영정—영구—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인할 때 영구차 앞에 영정을 세워두고 발인제를 지낸다. 이는 모두 전통상례에서 혼백이 차지하던 자리였다. 다만, 달라진 것은 오늘날에는 초상화가 아니라 사진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영정사진 | 충남 태안 | 1961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영정은 신주, 지방紙榜, 혼백과 마찬가지로 망자의 영혼을 의탁하는 일종의 상징물이다. 『가례』가 보급되기 전에는 대부분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나, 주자가 신주 봉사奉祀를 강조한 이후부터 급격히 쇠퇴했다.

참고문헌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영좌
靈座

정의 혼백魂帛을 모시는 자리.

내용 영좌는 시신 앞 또는 방 한 곳에 병풍을 설치하고 혼백이나 영정을 모신 것이다. 먼저 교의交椅를 놓고 그 앞에 자리를 깐 다음 제상을 놓는다. 제상 앞에는 향상을 놓고, 그 위에는 향합과 향로를, 향상 앞에는 모삿그릇을 놓는다. 영좌가 마련되면 교의에 혼백魂帛을 안치하고 영좌 우측에 명정銘旌을 걸어 세운다. 장사를 마치면 영좌는 철거한다. 혼백은 육체로부터 빠져나간 혼을 불러 빙의하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속백束帛의 옛 이름이다.

국왕의 경우, 상의원尙衣院은 대행大行(죽은 임금)이 누워 있는 상床의 남쪽에 악장幄帳을 치고, 악장 안에 평상과 자리, 병풍을 설치하고, 붉게 칠한 교의交椅를 평상 위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내시가 혼을 부를 때 썼던 왕의 복의를 접어서 작은 함에 담고, 백초 한 필을 묶어 만든 혼백을 복의 위에 놓고 함을 받들어 교의에 모셔 놓는다. 그리고 그 앞에 행안을 놓고, 받침대가 달린 부채와 덮개 각각 두 개씩을 좌우에 설치한다.

특징 및 의의 고례에는 염습이 끝나면 영좌를 설치했으나, 오늘날처럼 삼일장을 치르는 경우에는 발상發喪과 동시에 영좌를 설치한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禮記, 朱子家禮.

필자 정종수(鄭鍾秀)



영혼결혼식
靈魂結婚式

정의 결혼을 못 하고 죽은 이를 위해 사후에 올려주는 결혼식.

내용 다양한 이칭으로 불리는 영혼결혼식靈魂結婚式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혼결혼식은 무속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교와 불교에서도 행해지며 통일교에서도 행해졌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영혼결혼식은 의례 진행방식, 의례 당사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의례 진행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표적인 영혼결혼식의 유형으로 무속형, 유교형, 불교형을 들 수 있다.

무속형은 무속의 굿 형식으로 영혼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오기굿, 오구굿, 씻김굿 등 각 지역 무속에서 망자의 저승 천도를 위해 행해지는 죽음 관련 굿에 망자 혼례식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망자의 혼례식을 치른 다음 망자의 저승 천도를 위한 절차가 행해진다. 무속형 영혼결혼식의 경우, 혼례식 이후 신랑 신부에게 신방을 차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의 하나로 포함된다. 영혼결혼식은 이른바 유교 형식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즉, 무당을 부르지 않고, 유교 혼례처럼 신부 집에서 양가 친척이 모여 남녀의 사진을 제단 위에 놓고 축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묘지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부의 묘에 가서 이장축移葬祝을 고하고 신부의 시신을 신랑의 묘로 옮겨 묻어 쌍분을 만드는 것으로 사후 결혼을 치르기도 한다. 그리고 사후 결혼을 한 망자에게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으면 양자를 입양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도 한다. 불교형은 불교 사찰에서 승려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영혼결혼식을 말한다. 불교형 영혼결혼식은 어느 한 종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불교 종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불교형 영혼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두 망자의 혼례식을 올린 후 극락왕생을 비는 천도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는 사찰에 따라 다르다. 또한, 무속형의 영혼결혼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랑·신부 신방 차려

주기가 사찰에 따라 행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 가족과 친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영혼결혼식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간혹 남녀 중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결혼식이 이뤄지기도 한다. 남녀가 함께 애까지 낳고 살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지내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아내와 죽은 남편 사이에 이뤄지는 굿 형식의 영혼결혼식이 그 예이다. 또한, 반드시 미혼의 남녀끼리 영혼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며, 기혼남과 미혼녀, 미혼남과 기혼녀, 기혼남과 기혼녀 사이에 영혼결혼식이 이뤄지기도 한다. 기혼자의 경우, 생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생전이나 사후에 홀로 된 사람이 영혼결혼식의 대상이 된다.

영혼결혼식에서 이전에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로 신랑·신부를 상징하였다. 그러나 인형이 일반화되면서 허수아비 대신 인형으로 신랑·신부를 나타내게 되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결혼식이 이뤄지는 경우,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을 대상으로 영혼결혼식을 치르게 된다.

영혼결혼식의 상대를 정하는 역할은 주로 영혼결혼식을 주관하는 무당이나 승려가 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이웃이 상대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영혼결혼식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범위는 어떤 형식으로 영혼결혼식을 치르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무속의 굿 형식에 의한 영혼결혼식은 동네에서 할 경우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참관한다. 그래서 참여자의 범위가 양가 가족이나 친지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유교식이나 불교식으로 영혼결혼식을 치르는 경우 대체로 참여자가 양가의 가족과 친지들로 한정되기 마련이다. 무속형의 경우에도 굿당에서 행해지는 영혼결혼식에는 가족과 친지로 참여자의 범위가 한정된다.

특징 및 의의 영혼결혼식의 일차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결혼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생의례가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해당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영혼결혼식에는 죽음 이후의 삶과 생전의 삶의 연속성에 대한 관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생전의 삶과 다르다면,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생의례를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생의례 및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환갑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행하는 망자환갑굿이나 사갑제死甲祭 등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영혼결혼식은 일생의례가 인간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잘 보여준다. 영혼결혼식은 미혼으로 죽은 사람은 정상적인 조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상이 되도록 행하는 일생의례이다. 이는 일생의례가 산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여준다. 영혼결혼식은 망자가 가족의 꿈에 현몽해서 결혼식을 요구하거나, 삶에 문제가 발생해서 미혼으로 죽은 가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될 때 행한다. 아니면 보통은 가족들이 미혼으로 죽은 가족을 위해 행한다. 어느 경우든 결혼식 같은 일생의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관념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혼결혼식은 인간 삶에서 일생의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사후결혼의 구조연구(노성환,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사후결혼의 의미(최길성, 비교민속학1, 비교민속학회, 1985), 제주도의 사후혼(최재석, 한국학보13, 일지사, 1978), 한국 전통 죽음의례의 변화(이용범, 종교문화비평16,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9).

필자 이용범(李龍範)

예기
禮記

정의 중국 고대의 예禮에 관한 기록과 그 해설을 담고 있는 책으로 유교 경전인 오경五經의 하나이며 『주례周禮』·『의례儀禮』와 함께 '고례古禮' 또는 '삼례三禮'로 지칭되는 예서.

내용 공자孔子는 하夏·은殷·주周 3대 이래의 문물제도와 의례儀禮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삼았다. 이후 예禮에 대한 기록이 쌓여 한漢나라에

이르러서는 200여 편이나 되었다. 중국 역사에서 예학禮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선도적 학자는 대덕戴德과 대성戴聖이다. 이들은 흩어진 예설을 수집하여 편찬하였다. 이들은 숙부와 조카 사이로 대덕이 대성의 숙부이다. 한漢나라의 정현鄭玄은 그의 『육예론六藝論』에서 "지금 세상에서 행하는 예는 대덕과 대성의 학學이다. 대덕은 「기記」 85편을 전하였으니 곧 『대대례大戴禮』이고, 대성은 「예」 49편(『소대례小戴禮』)을 전하였으니 곧 이 『예기禮記』다."라고 하였다. 후에 『대대례』는 대개 흩어지고, 정현이 『주례』·『의례』와 함께 『소대례기小戴禮記』에 주석을 붙여 이 세 책을 '삼례'라 칭하면서, 『소대례기』가 『예기』로 정착되었다. 『예기』에 대한 주석서로는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예기정의禮記正義』가 대표적이다. 『예기』의 판본은 경문經文만을 수록한 것, 경문과 주석을 합록한 것(20본), 정의만 수록한 것(70권본), 경문과 주소를 모두 합록한 것(63권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나라의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30권이 널리 읽히고 판각되었다.

『예기』의 내용은 ①통론通論, ②제도制度, ③명당음양기明堂陰陽記, ④상복喪服, ⑤세자법世子法, ⑥제사祭祀, ⑦길례吉禮, ⑧길사吉事, ⑨악기樂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실린 "서적으로는 오경五經이 있다." 등의 기록에 의하면, 삼국 초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된 듯하다. 통일신라 이후로 『예기』는 관리 등용 시험에 필수 과목이 되고는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예기』 주석은 고려 말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26권 11책)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예기』를 『의례』의 주석서로 인정하여 중시하였으므로, 주석서가 많이 출간되었다. 특히 『가례』의 변례를 고례에 근거하여 해석할 때에도 많이 활용되었다.



예기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필자 한기범(韓基範)

예의유집
禮疑類輯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겸재謙齋 박성원朴聖源(1697~1767)이 우리나라 제현諸賢의 가례에 관한 예설禮說을 종류별로 모아 편집한 예서禮書.

내용 본집 24권, 목록 2권, 부록 2권 등 총 28권 15책이다. 활자본이며 1783년(정조 7)에 왕명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권두에 정조의 어제서御製序와 편자의 자서自序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예서는 관혼상제에 대한 해설로서 대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본으로 편집하였다. 오복제도五服制度는 참최斬衰(거친 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은 상복) 3년부터 시작했고, 상장喪葬과 도구道具에 관해서는 치상도구治喪道具부터 기록하였다. 제례는 사례四禮 위주로 제현의 설 가운데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모두 기록한 것이 특색이다.

권1은 관례와 삼가관례三加冠禮에 대한 문답, 권2는 혼례婚禮, 권3은 상례喪禮, 권4도 상례(목욕에서 혼백까지), 권5·6은 오복, 권7은 조석곡朝夕哭, 권8은 장기葬期에서 성분成墳까지, 권9는 폄窆(하관)에서 여묘廬墓까지, 권10은 우제虞祭·소상小祥, 권11은 대상大祥, 권12는 거상잡의居喪雜儀, 권13은 상중행례喪中行禮, 권14는 부재모상父在母喪, 권15는 국휼國恤, 권16은 상변례喪變禮, 권17은 계유변빈笄有變殯, 권18은 도유상途有喪, 권19는 초빈草殯과 권장權葬, 권20~24는 제례, 부록 2권은 종법宗法·거가잡의居家雜儀와 그 밖의 목록이 있다.

저자 박성원은 밀양 박씨로 이재李縡(1680~1746)

와 이간李柬(1677~1727)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생원시와 문과를 거쳐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으며, 후에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박성원은 효孝를 화민성속化民成俗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효가 백성을 보호하고 국기를 다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효를 실천하고자 했다. 그의 『돈효록敦孝錄』은 이를 입증하는 윤리서이다. 또한, 박성원은 예서의 연구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 의혹 사항을 일일이 뽑아내고 조목마다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후학의 예서 연구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후일 정조는 그가 지은 이 책의 어제서문御製序文에서 "본조의 열성列聖이 유교를 진작한 뒤 300년 동안 예에 밝은 사람이 40~50 예가禮家에 이르니 예禮에 대한 고훈과 학설이 각처에 산재하여서 한데 모으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박성원이 이를 극복하고 종법宗法과 잡례雜禮를 망라해 책을 만든 것이 가상하여 교서관에 명해서 이 책을 간행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이 예서가 국가적인 관심과 공인을 받아 간행 및 보급된 예서였음을 알게 한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오낭 五囊

정의 시신의 양 손발톱, 빠진 모발 등을 담는 품목.

내용 오낭은 시신을 목욕沐浴하면서 빠진 모발과 손발톱을 잘라 좌우를 구분해서 담는 다섯 개의 작은 주머니이다. 생시에 빠진 치아[落齒]나 빠진 수염[落鬚]이 있을 때는 주머니를 추가하여 '육낭六囊'을 만든다. 간혹 '삼낭' 또는 '사낭'인 경우도 있다. 주머니에 손톱과 발톱 등을 담을 때는 먼저 한지에 싼 후 해당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주머니와 한지에는 왼손[左手], 오른손[右手], 왼발[左足], 오른발[右足], 머리카락[頭髮] 또는 빠진 수염[落鬚], 빠진 치아[落齒]라고 묵서墨書해서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오낭의 형태는 주로 사각형이며 홑[單]으로 제작된다. 비단을 주로 사용하며, 색상은 유색有色이 많다. 제작법은 먼저 장방형長方形의 긴 천을 반으로 접고, 개봉면인 상단을 제외한 옆선을 솔기 처리한다. 다음으로 트인 면인 상단을 빙 둘러 땀 수 크게 홈질한 후 실을 잡아당겨, 아귀가 오므려질 수 있게 만든다.



오낭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문헌에서는 오낭의 소재와 색상, 치수, 사용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가례家禮』 권1 「상례喪禮 내대렴乃大殮」에서는 "시신을 들어 관의 중앙으로 입관하고, 살아 있을 때 빠진 치아, 빠진 머리카락, 잘라 둔 손톱과 발톱을 관棺 모서리에 넣는다共擧尸納于棺中 實生時所落齒髮及所剪爪于棺角."라고 하였다. 『상례비요喪禮備要』 권3 「목욕지구沐浴之具」에서는 "작은 주머니가 다섯 개이다. 색깔 있는 주紬(조밀하게 제직한 비단)를 사용한다. 네 개의 주머니에는 좌수左手, 우수右手, 좌족左足, 우족右足이라 적어 표시하고 손톱과 발톱을 넣으며, 한 개의 주머니에는 머리카락을 넣는다小囊五 以色紬爲之 四囊名書手足左右字以表之 所以盛爪者 一所以盛頭髮者."라고 하였다. 『순종실록純宗實錄』 부록 권13에는 "오낭과 멱목, 악수 모두 검푸른 빛의 공단貢緞(광택이 많고 무늬가 없는 두꺼운 비단)으로 만든다五囊鴉靑貢緞 幎目鴉靑貢緞 握手鴉靑貢緞."는 기록이 있다.

한편, 조선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 중에는 보존 상태가 우수한 유물들이 많다. 남오성南五星(1643~1712), 이진숭李鎭嵩(1702~1756), 수원 이의동 안동 김씨 묘 등에서 출토된 복식이 그러한데, 이 가운데 남오성 묘와 이진숭 묘에서 출토된 오낭의 소재 및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남오성 묘에서는 두발頭髮, 우족右足, 좌족左足, 좌수左手라고 적힌 네 개의 주머니가 출토되었다. 우족右手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손·발톱·

머리카락 등을 한지로 싼 후 해당 주머니에 넣어졌다. 겉면과 한지에는 해당 부위 명칭이 표기되었다. 치수는 두발낭頭髮囊이 길이 10㎝, 너비 8㎝로 다소 큰 편이며, 나머지의 세 개는 길이 5.5~5.8㎝, 너비 5.2㎝로 크기가 비슷하다. 소재는 만초연화문단蔓草蓮花紋緞이다. 이진숭 묘에서는 낙치落齒, 우수右手, 좌수左手, 우족右足, 좌족左足을 묵서한 오낭이 출토되었다. 마찬가지로 사각 주머니 모양이며 아귀 면을 견사絹絲로 홈질한 후 잡아당겨 묶도록 제작했다. 치수는 길이 8~8.5㎝, 너비 7~7.5㎝로 모두 비슷한 편이다. 소재는 무문단無紋緞이다.

특징 및 의의 습襲은 시신에 옷을 갈아입히는 절차이며, '염습殮襲'이라고도 한다. 습은 먼저 시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시신에게 입히는 새 옷)를 입힌 뒤, 시신을 염포殮布로 단단히 매고 입관하는 순서로 행해진다. 시신의 머리를 감기고 빗질하면서 빠진 머리카락과 수염, 시신의 양쪽 손톱과 발톱을 깎아서 대렴 때까지 오낭에 넣어둔다. 이렇게 준비된 오낭은, 소렴과 대렴이 끝난 뒤에 관의 네 모서리에 넣는다. 그리고 관의 빈 곳은 산의散衣(고인이 평소 입던 옷)로 충분히 채워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천금天衾(입관할 때 시신 위에 덮는 이불)과 천개天蓋(관 뚜껑)를 덮고 마무리한다. 오낭은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습구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抄解, 喪禮備要, 純宗實錄, 增補四禮便覽, 관혼상제전서(최윤정, 동양서적, 1980), 국역 가례향의(국립중앙도서관, 2011), 남오성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04), 이진숭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10), 조선의 관혼상제(김종혁, 중심, 1999), 중국의 역대직물(심연옥, 한림원, 1998).

필자 조현숙(趙玄淑)

오복제도
五服制度

정의 전통 상례에서 친소관계에 따라 5등급으로 경중을 나누어 정한 상복제도.

역사 상복은 고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슬퍼하는 기간을 정한 제도이기에 그 역사가 길다. 『예기禮記』의 열다섯 번째에 「상복소기喪服小記」, 『의례儀禮』의 열 번째에 「상복」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은 유교사회에서 고인과의 친소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보여 준다. 신라에서는 504년(지증왕 5)에 상복제를 정하고, 고려에서는 985년(성종 4)에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정하여, 유교식 상례가 의례의 규범으로 정착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식 상례가 문화적 전통이 되면서 『가례家禮』에 따른 오복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행하였다.

내용 상복의 등급을 다섯 종류로 정한 것은 고인과의 친소親疏, 존비尊卑, 장유長幼, 남녀유별男女有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이 차이나 차등은 도덕상 극히 중대한 질서로서 친족과 친하고[親親], 존족尊族을 존경하고[尊尊], 연장자를 공경하고[長長], 남녀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男女有別]으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윤리이다. 이때 오복의 '복服'은 속하고 따르는 것으로서 복종服從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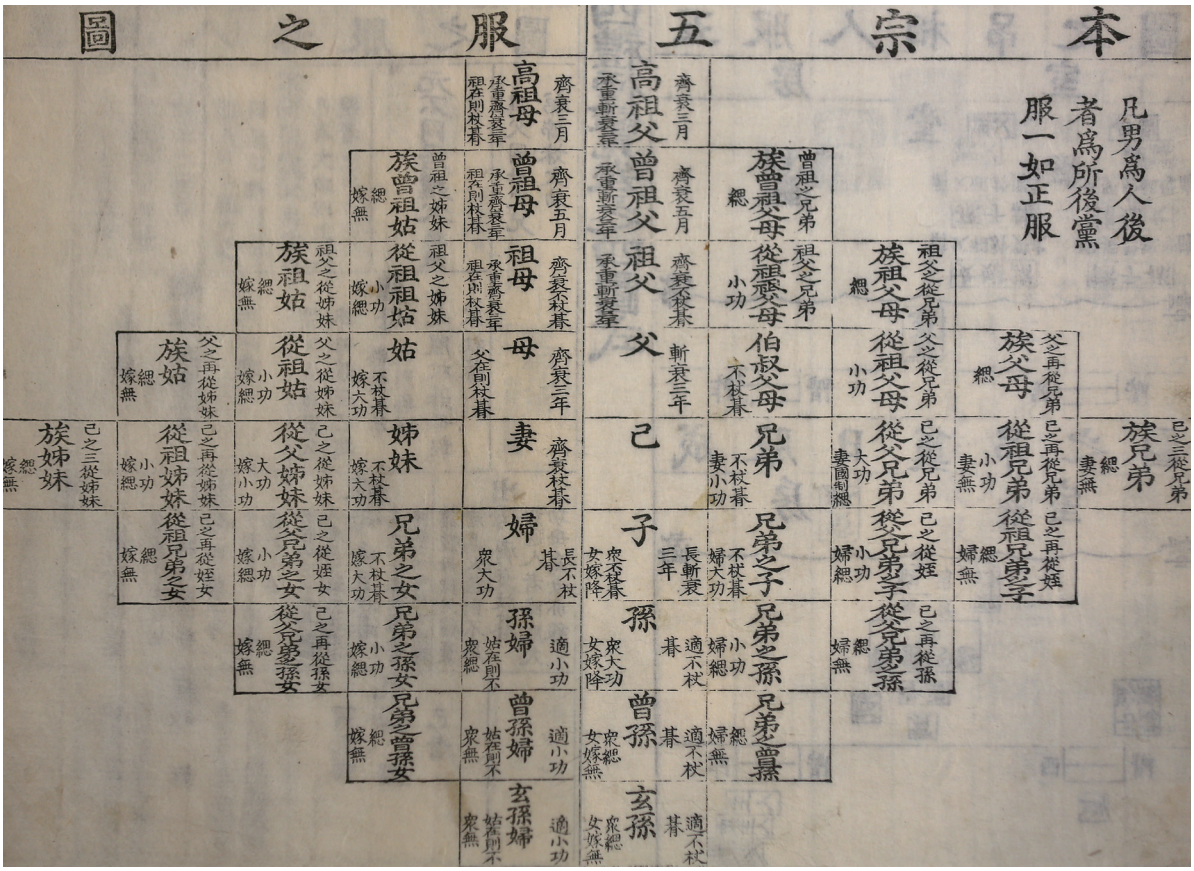
오복에는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가 있는데, 대공 이상은 가까운 친親, 소공 이하는 관계가 먼 소疏이다. 여기에 존비와 친소의 원근관계에 따라 등급의 차이를 표시하는 네 가지 복이 있다. 정복正服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정식으로 입는 본복本服을 말한다. 의복義服이란 혼인, 입양관계 등으로 명분이 생겨 의리상 입는 복이다. 가복加服은 원래의 본복에 더하여 무겁게 입는 복이다. 예를 들면, 조부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는 기년복朞年服이지만 승중承重한 적손嫡孫은 참최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강복降服은 시집간 딸, 입양간 아들이 친부모에게 입는 복, 계모에게 입는 복처럼 본복보다 가벼운 복이다. 이 네 가지 상복은 오복의 종류에서 세부 항목으로 구별된다.

첫째, 참최복은 아들과 미혼의 딸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입는 상복으로 기간은 3년이며, 저장苴杖의 지팡이가 있다. 가공을 하지 않은 성긴 생포를 사용하며, 옆과 아랫단을 여미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특징이다. 가슴에 최衰, 양어깨에 적適, 등에 부판負版을 붙인다. 가복은 승중한 손자가 조부를 위하여 입는 복 등이다. 의복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양자가 양부를 위해 입는 복 등이 해당한다.

둘째, 재최복은 아들과 미혼의 딸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입는 상복으로 기간은 3년이며, 삭장削杖의 지팡이가 있다. 약간 가공한 거친 마포麻布를 사용하며, 옆과 아랫단을 꿰맨다. 식루(최), 부판, 적이 있다. 재최복은 다시 3년, 1년장기一年杖朞, 1년부장기一年不杖朞, 5월(부장기), 3월(부장기) 등으로 기간이 세분되어 가장 복잡하다. 재최 삼년복의 정복은 아들과 미혼의 딸이 어머니를 위하여,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가복은 승중한 적손이 조모·증조모·고조모를 위하여 입는 복 등이다. 의복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 등이다. 지팡이를 짚는 재최 1년장기의 정복은 적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증조모와 고조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강복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이다. 의복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이다. 지팡이를 짚지 않는 재최 1년부장기의 정복은 조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 등이다. 가복은 증손이나 현손玄孫의 후예가 적손을 위해 입는 복이다. 강복은 시집가거나 나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입는 복이다. 의복은 계모가 전남편의 아들, 백숙모를 위해 입는 복 등이다. 재최 5월복의 정복은 증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재최 3월복의 정복은 고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의복은 계고조모繼高祖母를 위해 입는 복이다.

셋째, 대공복은 종형제자매(사촌)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으로 기간은 9개월이며 부장기이다. 조금 거칠게 누인 베를 쓰고, 단을 꿰맨다. 상복의 형태는 재최와 같다. 최, 적, 부판이 없다. 정복은 4촌을 위해 입는 복 등이다. 의복은 둘째 이하의 며느리, 질부를 위해 입는 복 등이다.

넷째, 소공은 증조부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으로 기간은 5개월이며 부장기이다. 조금 곱게 누인 베를 쓰고 단을 꿰맨다. 최, 적, 부판이 없다. 정복은 종조조부從祖祖父(조부의 형제자매), 외삼촌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 등이다. 의복은 종조조모從祖祖母, 남편 형제의 손자의 상을 당



본종오복지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해 입는 복 등이다.

다섯째, 시마는 형제의 증손, 증조부의 형제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으로 기간은 3개월이며 부장기이다. 아주 곱게 누인 베를 쓰고, 단을 꿰맨다. 최, 적, 부판이 없다. 정복은 형제의 증손, 족증조부(증조부의 형제) 등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이다. 강복은 서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사람이 그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이다. 의복은 족증조모나 족조모, 외손부 등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이다.

이에 덧붙여 일찍 죽은 이에 대해 한 등급을 낮춰서 입는 상복殤服이 있다. 그리고 남의 후사가 된 남자와 시집간 여자는 생부모를 위해서는 무조건 한 등급을 내려 입는 강복降服이 있는데, 생부모도 이와 같다. 그리고 스승이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면, 상복은 입지 않지만 3년 동안 마음으로 슬픔의 정을 가지는 심상삼년心喪三年이 있다. 또한, 부인으로서 강복하여 복이 없는 사람이나 친구, 종의 상을 당했을 때 흰 옷을 입고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더하는 조복가마弔服加麻가 있다.

상복제도는 고인과 산 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혈연관계, 가족제도에 따른 질서관계, 사회 질서 체계와 지위에 따른 상하 유대관계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상복제도 자체가 사회질서의 기초를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상복은 대단히 엄격하고 세세하게 구분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실컷 울다가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묻는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냈다. 상주의 상복을 보면 부친상인지 모친상인지 구별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핀잔을 줄 때 사용하는 이 속담을 통해, 일상적인 삶에 스며든 상복제도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지역사례 기호지역에서는 여성의 상관喪冠을 중시하지만 영남지역에서는 개두蓋頭를 중시한다.

특징 및 의의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복제를 개정하면서 『대명률大明律』을 따랐으나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은 친백숙부와 동일하게 하였는데, 재최 기년복으로 하여 차이를 두었다. 이렇게 한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430년(조선 세종 12)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혼례를 치를 때 친영親迎하지 않아 아이가 외가나 처부모 집에서 자라니, 외조부모와 처부모에게 은의恩義가 있으므로 소공복에 한 달을 더 입게 하자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즉, 우리나라 혼례 특성상 아이가 외가에서 자라는 사례가 많아 외조부모에 대해 특별히 6개월간 복을 입게 하자는 주장이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오복제도는 고조까지의 상에 입어야 할 상복을 정하였으므로, 사대봉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四禮便覽, 五禮儀, 朝鮮王朝實錄,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오복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전혜숙·권이순, 한국의류산업학회지6-2, 한국의류산업학회, 2004), 삼년상-소운 김시인(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삼년상-화재 이우섭(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오선생예설분류
五先生禮說分類

정의 조선 중기에 한강寒岡 정구鄭逑(1543~1620)가 중국 송나라의 정호程顥·정이程頤·사마광司馬光·장재張載·주희朱熹 등 다섯 유학자의 예설禮說을 분류하여 엮은 책.

내용 20권 7책(활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서는 조선 중기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인 한강 정구의 편저로 1611년(광해군 3)에 완성되었다. 1629년(인조



오선생예설분류 | 1629년경 | 국립민속박물관

7) 정구의 제자 이윤우李潤雨(1569~1634)가 담양부사潭陽府使로 있을 때 간행하였다. 이 책은 주로 제후의 예를 다룬 전집과 일반 사대부의 예를 다룬 후집으로 편집되었다. 전집은 권1 예총론禮總論·천자제후관혼례天子諸侯冠婚禮, 권2·3 천자제후상례天子諸侯喪禮, 권4~7 천자제후제례天子諸侯祭禮, 권8 천자제후잡례天子諸侯雜禮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집은 권1 관혼총론冠婚總論, 권2~6 상례喪禮, 권7~9 제례祭禮, 권10 제례부록祭禮附錄, 권11 잡례雜禮, 권12 편례編禮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각 영역에서 관혼상제冠婚喪祭와 잡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 책은 17세기 초엽까지 나타난 영남학파의 예학적 성격과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서이다. 정구는 물론 『가례家禮』를 중시하였지만, 『가례』에 국한하지 않고 송대宋代 주요 예학자의 예설을 집대성함으로써 대체로 『가례』에 집중하였던 기호畿湖 예학과는 다른 예학 경향을 보였다. 즉, 기호 예학의 예학 연구는 주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중심으로 하는 전일적專一的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영남의 예학 연구는 주자朱子에 대해 절대적인 위상이 아니라 상대적 위상으로 접근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영남 예학의 방향성을 시사하였으며, 결국 정구의 문인인 허목許穆(1595~1682)에 의하여 고학古學(시詩·서書·역易·예기禮記·춘추春秋·악경樂經 등 육경六經의 학문)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이 책은 예설뿐만 아니라 유교적 법질서에 관한 내용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색을 지닌다. 특히 「잡례」에 실린 천자·제후의 거복車服, 책명冊命·궁실宮室·신민례臣民禮 같은 봉건 질서와 제도, 사대부의 문생門生·부시赴試 등의 내용은 동양 고대 및 중세의 법제사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외손봉사
外孫奉祀

정의 딸의 후손이 지내는 외조外祖의 제사.

역사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 집안의 제사는 적장자嫡長子를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었지만,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제사를 담당하는 봉사자奉祀者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해졌다.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아 지내는 윤회봉사輪回奉祀, 딸의 자손이 지내는 외손봉사外孫奉祀, 죽은 장자의 부인이 지내는 총부봉사冢婦奉祀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했던 봉사 방식은 17세기 이후 적장자에 의한 가계 계승을 강조하는 종법적宗法的 가족질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점차 적장자봉사로 바뀌어갔다.

내용 15~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부계 우위이긴 하지만 양계적兩系的인 친족관념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친손과 외손의 구별이 그리 엄격하지 않았고 단계적單系的 혈통관념과 가계 계승에 관한 인식도 비교적 희박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외손봉사의 관행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활발했던 외손봉사의 흔적은 지금도 묘제墓祭의 형태로 남아있다.

경상북도 안동 길안면 묵계리에 터를 잡은 안동 김씨 입향조 김계행金系行(1431~1517)은 김삼근金三近의 차남이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뜨자 이듬해인 1454년 묵계마을 남상치南尙致의 딸인 의령남씨와 재혼하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원래 묵계마을은 의령남씨의 세거지인데, 아들이 없던 남상치가 사위인 김계행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외손봉사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 뒤 남상치 내외의 묘사는 김계행의 후손들이 지내오다가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의령남씨 후손들이 남상치 부부의 묘를 이장해감으로써 그들이 맡게 되었다.

안동 서후면 금계리에 터를 잡은 의성김씨 입향조 김성일金誠一(1538~1693)은 김진金璡의 4남이다. 그는 18세에 안동권씨 부인을 맞아하여 1582년 7월, 45세 되던 해에 처가의 터전인 금계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금계마을로 들어온 김성일은 처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장인인 권덕황權德凰이 세상을 뜨자 홀로 된 장모를 모셨다. 현재 금계리의 의성김씨 문중에서는 권덕황 내외를 위해 매년 10월 10일 묘제를 지내고 있다.

안동 풍산면 하회마을에서는 외손봉사뿐만 아니

라 외외손봉사外外孫奉祀까지 확인된다. 류종혜柳從惠는 풍산 상리에서 거주하다 배상공裵尙恭과 함께 하회마을로 들어온다. 이후 권옹權雍은 후사後嗣가 없는 배상공의 아들 배소裵素의 사위가 되어 하회마을로 들어온 뒤에 흥해배씨의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권옹 역시 후사가 없어 사위인 류소柳沼(류종혜의 둘째 손자)가 재산을 물려받아 권옹뿐만 아니라 흥해배씨의 제사까지 지내게 되었다. 그 뒤 류소의 차남인 류자온柳子溫의 후손이 제사를 이어받아, 매년 묘제를 지내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풍산류씨 후손들이 권옹의 제사(외손봉사)와 함께 배상공과 배소의 제사(외외손봉사)까지 지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 문중에서 외손봉사를 하는 것과 달리, 여러 문중이 외조를 함께 모시는 경우도 눈에 띈다. 변계손卞系孫은 태조2년(1393)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 벼슬까지 올랐는데, 아들 청원淸源이 영양김씨 김지로金智老의 사위가 되어 안동군 녹전면 사신동에 이주해 선주민인 의성김씨, 함양박씨, 김해허씨 등과 혼반을 형성했다. 그 뒤 변계손의 증손 변효검卞孝儉 대에 이르러 아들이 없자 여러 집안에 속한 외손들이 제사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외손봉사는 종법적인 가족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 윤회봉사와 함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현상은 부계 우위이긴 하지만 부계와 모계를 크게 구별하지 않는 양계적인 친족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친족관념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행의 지속과 변화는 마을의 성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종법의 실천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처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위가 처가의 터전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여러 성씨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성잡거異姓雜居의 형태를 띠는 마을들이 많았다. 그러나 17~18세기를 거치면서 적장자에 의한 가계 계승과 적장자우위의 상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점차 특정 성씨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성마을들이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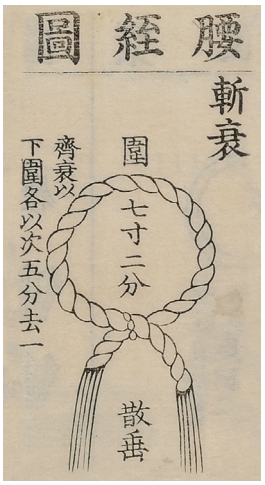
참고문헌 동성마을 정착과정에 나타난 친족이념의 변천양상(김미영, 실천민속학연구11, 실천민속학회, 2008), 안동지방의 외손봉사에 대한 고찰(김호태, 안동문화8,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4), 주자가례와 조선전기의 제례문화(이숙인, 정신문화연구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필자 한양명(韓陽明)

요질
腰絰

정의 상중에 상주가 교대絞帶 위에 겹쳐서 허리에 두르는 띠.

내용 요질腰絰은 대대大帶를 본떠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양 끝을 묶어 두 끝을 길게 아래로 드리운 형태이다. 요질 아래에는 교대絞帶, 즉 효대를 두르는데, 교대는 혁대革帶를 본뜬 것으로 한끝에 구자彄子가 있어서 다른 한쪽 끝을 구자 가운데로 꿰어서 묶는 형태이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변통고常變通攷』에 따르면, 요질의 소재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참최斬衰의 요질은 저마苴麻(씨 있는 삼)로 만들며, 둘레는 7촌寸(치) 남짓이다. 두 가닥을 서로 꼬아 양 끝을 묶어, 각기 삼의 밑동[麻本]을 남겨서 3척尺(자)의 산수散垂(흩어 드리우는 모양)를 만들고, 서로 묶은 곳의 양쪽 곁에는 각기 가는 줄[繩]을 매어 연결한다. 재최齊衰의 요질은 시마枲麻(씨 없는 삼)로 만드는데, 둘레가 5촌 남짓이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따르면 재최 이하는 베[布]를 매어 연결한다고 한다. 장기杖朞·부장기不杖朞·오



요질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요질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월복五月服·삼월복三月服도 모두 같다. 대공大功의 요질은 둘레가 4촌 남짓, 소공小功의 요질은 3촌 남짓으로, 재료는 재최와 같다. 시마緦麻의 요질은 숙마熟麻(누인 삼베)로 만들며 둘레는 2촌 남짓이다.

또한, 참최의 교대는 삼줄[苴麻繩](씨 있는 삼줄) 한 가닥을 사용하는데, 길이는 요질의 반이다. 가운데를 접어 두 가닥을 각기 한 자 정도로 만들어 합하면 길이가 질絰과 같다. 왼쪽 허리부터 교대를 둘러서 뒤를 지나 교대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오른쪽 끝을 두 가닥 사이에 넣고 뒤집어 오른쪽에 꽂아 질絰 아래로 둔다. 재최 이하의 교대는 포布(베)로 만드는데, 너비가 4촌 정도 되는 포를 겹쳐 꿰매어 2촌을 만든다. 대공, 소공, 시마緦麻는 차례로 점점 좁게 만드는데, 모두 그 오른쪽 끝 한 자 남짓을 접어서 실로 꿰매어 고리를 만든다. 포布의 승升은 각각 그 관과 같게 한다.

특징 및 의의 요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참최는 저마苴麻, 재최 이하는 무마牡麻, 소공·시마는 조마澡麻를 사용하며, 이는 수질首絰의 제도와 동일하다. 그리고 질絰의 크기에 모두 차등이 있다. 남자는 산수를 했으나, 그 꾸밈에 변화가 있다. 소렴의 요질은 삼을 흩어 드리웠다가 사흘 만에 성복成服할 때 꼰다. 소공小功 이하 및 50세 이상인 사람과 부인은 산수를 하지 않았다. 이는 50세인 사람은 신체가 쇠약하여 거상居喪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손상하지 않으려는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조우현(趙又玄)

우암경례문답
尤庵經禮問答

정의 조선 중기의 우암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주로 가례家禮와 그 변례를 중심으로 사우들과 문답한 예禮 문답서.

내용 이 책은 1730년에 우암尤庵 송시열의 증손 송무원宋婺源이 주재하여 간행한 『경례문답經禮問答』 10책 24권 중 5책 11권 분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가례家禮』의 여러 문제에 대한 문답서이다. 이 책의 내용은 『가례』 부분과 『가례』가 아닌 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가례』 부분은 『가례』의 목차를 따라 가례도家禮圖·통례通禮·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의 순서로 되어 있고, 약 3%에 해당하는 비가례 부분은 향례鄕禮·왕조례王朝禮·학궁례學宮禮·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문답수가 1,000여 개를 넘을 정도로 방대한데, 전체적으로 상례가 60%, 상제례喪祭禮가 70%를 넘어 이 문답서가 상제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이 문답서는 원래 송시열의 『경례문답經禮問答』에서 '예의禮疑'라고만 써서 분리·수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용과 분량이 충분히 독립적인 예 문답서로 분류할 만하였으므로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따로 『예의문답禮疑問答』이라 불려 왔다. 송시열의 『예의문답』은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의례문해疑禮問解』, 김집金集(1574~1656)의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에 뒤이은 호서 학맥의 방대한 예 문답서로서 김장생, 김집의 예 문답서와 함께 '호서학파의 3대 예 문답서'라 할 수 있다. 이들 예 문답서는 대개가 속례인 변례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당시 조선의 예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긴요한 예서라 할 수 있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우인
友人

정의 혼례식에 참가하는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내용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기 위한 혼례식을 치를 때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개 신랑·신부의 절친한 친구들이다. 이들은 '우인友人' 대표라는 명분과 자격으로 혼례식장에 참가



신랑·신부와 친구들 | 경남 함양 | 1968 | 배도식

하는데,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옛 문헌에는 혼례식에 우인들이 참가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가까운 조선시대의 혼례를 보더라도 혼사는 중매인의 도움으로 양가의 합의로 결정되고, 혼례 당일에는 신랑·신부 양가의 어른들, 그리고 배행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식을 치렀다. 배행하는 후객 중에 일을 거들기 위해 신랑의 친구 한두 사람이 끼일 수는 있겠으나, 우인이란 자격으로 참여한 예는 없다. 혼례식에 우인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마도 개화기 이후로 추정된다.

혼인이란 자고로 양가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철저히 양가 어른들의 의지로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혼인을 의논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양가 어른들이고 신랑이나 신부의 의사는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성사되었으니, 거기에 다른 친척의 의견도 반영될 수 없었다. 그러니 신랑·신부의 친구들이 끼어들 수는 더더구나 없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 양가 위주의 혼례식도 점차 그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철저한 양가 위주의 혼례식 진행 방식에 우인 대표가 끼어들어 의식을 진행하는 데 한몫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인들은 혼례식 전에 함을 옮기는 일에 참여하여 옛날의 함진아비 역할을 대신 맡았다. 우인들이 몇 명 모여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거나 마른오징어에 눈을 뚫어 가면을 쓰고 함을 지고 신부 댁으로 가서는 "함 사시오!"하고 외치고 흥정을 하여 술과 음식을 추렴하기도 하고, 노잣돈도 제법 많이 받아내기도 했다.

혼례식 당일에는 홀기笏記를 부르는 이가 있어서 이 사람의 진행대로 행하고 끝냈지만, 우인들이 참여하는 혼례식에서는 성례 후에 축사를 읽어주는 신랑 우인이 등장하여 장황한 축사를 낭독해 주었다. 그리고 사진기를 가진 우인이 혼례식의 이모저모를 촬영하여 기념으로 남기기도 했다. 혼례식에 참여하는 우인들은 남자 우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우인들도 참여하여 그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신부 방에 모여 신부 화장은 물론이고, 신부가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하는 일을 거들기도 했다. 신랑·신부의 우인들은 은근히 기세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양쪽 우인들이 여럿 참여하여 활동을 많이 하고 제법 거들먹거려서 신랑과 신부의 사회적 위치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려는 경향도 있었다.

특징 및 의의 우인들이 참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랑·신부의 혼인을 경하하고, 이들의 기를 살려 앞으로 살아가는 데 격려를 해주는 것에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혼례식이 끝나면 우인 대표들은 정해진 방에 들어가서 성대한 음식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신랑의 우인들은 신부가 수놓아 만든 손수건과 담배, 라이터 등의 선물을 받기도 했다. 때로는 신랑·신부 우인들이 합석하여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의 전통혼례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향토문화지(여증동, 경상남도, 1989).

필자 배도식(裵桃植)

우제
虞祭

정의 장사를 지낸 뒤 방황하는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내는 제사.

역사 『예기禮記』에 따르면, 우제虞祭는 "신을 안정시키는 제사로서, 우제를 지내는 것은 단 하루도 어버이의 신령과 떨어질 수 없다는 간절함을 알려 신이 안정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제사였다. 중국 후한 말의 정현鄭玄 역시 우제에 대해 "골육은 흙으로 돌아갔으

나 혼기魂氣는 가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효자가 방황하는 것을 생각하여 세 번 제사를 지내 안정시킨다."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우제는 중국에서 유래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년) 기사를 보면, "옛날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들에 장사하고 나서 우제虞祭를 지내어 신을 편안하게 하고 사당에 모시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중략)… 지금부터는 일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좇아서, 대부 이상은 3세世까지 제사를 지내고, 육품 이상은 2세까지 제사를 지내며, 칠품 이하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는 그 부모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며, 깨끗한 방 한 칸을 가려서 각기 한 감실龕室을 만들어, 그 신주를 간수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을 것이며,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전奠을 드리고 …(중략)… 이를 어기는 자는 불효로 논죄하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보건대, 우제는 고려 말부터 행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우제는 사자死者의 체백體魄을 매장한 뒤 그 혼을 위안하는 의식이다. '우虞'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염려한다'와 '편안케 한다'는 뜻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우제를 글자 그대로 푼다면 '근심하고 염려하여 편안케 하는 제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염려하고 안정시키는 진혼鎭魂의 제사를 세 번, 즉 혼백을 모시고 장례 날에 초우제初虞祭, 초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유일柔日(일진의 천간天干이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인 날)에 재우제再虞祭, 재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강일剛日(일진의 천간이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인 날)에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그러나 지금은 재우는 장례 다음날, 삼우는 3일째에 제사를 지내며, 삼우제를 지낸 후 성묘를 간다. 또한, 요즈음은 삼우제를 지낸 후, 묘 앞에 구덩이를 파고 혼백을 묻기도 한다. 궤연几筵에 혼백을 모시면 삼우제까지는 끼니때마다 상식을 올린다. 그러나 삼우제를 지낸 후에는 상식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만 올린다. 우제부터는 체백體魄이 아닌 신神을 모시는 제례祭禮이다. 우제의 일반적 제사 절차는 진설陳設, 강신降神, 진찬進饌, 삼헌三獻, 유식侑食, 합문閤門, 계문啓門, 사신辭神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징 및 의의 우제는 고인故人의 영혼을 위안하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우제는 고인을 진실로 위로하는 마음과 자세로 지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제는 고인을 무척 생각하고 배려하는 제사라 하겠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禮記, 儀禮, 朱子家禮, 개정증보판 한국 의례의 연구(송재용, 박문사, 2010), 전통 우제와 현대 우제에 관한 비교 연구(김미혜·정문탁, 효학연구18, 한국효학회, 2013).

필자 송재용(宋宰鏞)

운상
運喪

정의 사람의 시신을 넣은 관棺을 상여喪輿에 싣고 집에서 장지까지 운반하는 절차와 행위.

개관 운상은 원래 사람 혹은 소나 말이 끄는 수레를 이용해 이루어졌으나,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수용하면서 여러 사람이 상여를 어깨에 메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운상은 발인제發靷祭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운상의 행렬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고 망인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행렬의 순서는 대체로 유사하다. 행렬의 순서는 방상方相·명정銘旌·만장輓章·영여靈輿·공포功布·운불삽雲黻翣·상여喪輿·상주喪主·복인服人·친척親戚·빈객賓客의 순이다.

방상은 벼슬이 4품 이상일 때는 눈이 네 개 달린 것을, 그 이하는 눈이 두 개 달린 것을 사용했다. 곰의 가죽을 어깨에 걸친 채, 검은 웃옷과 빨간 아래옷을 입고 양손에는 창과 방패를 든다. 방상의 이러한 겉모습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악귀를 위협하여 쫓고자 한 것이다.

명정은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품계·관직·본관·성씨를 기록한 기旗다. 명정은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세워두거나 병풍에 걸쳐 두었다가 운상할 때 상여 앞에서 가게 한다. 하관할 때는 명정을 관 위에 덮어 묻는다.

만장은 만사輓詞라고도 하며,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깃발처럼 만든 것이다. 문체에 따라 만사와 만시輓詩로 구분되는데, 만장 행렬의 규모는 곧 고인의 사회적 지명도를 알려주기도

한다. 만장의 수효가 많을수록 사회 명사라 일컬었다. 만장은 하관 때에 관을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장례 후에 상청喪廳에 보관했다가 고인의 문집을 편찬할 때 부록으로 싣기도 한다.

영여는 이인교二人轎의 가마처럼 메어, 상여 앞에 가는 작은 가마이다. 여기에는 혼백상자와 향로, 영정 등을 싣고 간다. 민가에서는 영여 속에 사진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죽은 사람의 옷과 담뱃대나 신발 등을 넣어 가기도 한다. 묘역이 끝나면 혼백 또는 사진을 집으로 모시고 온다. 영여는 영혼이 타고 가는 것을 상징한다.

공포는 글이 씌어져 있지 않은 삼베를 기다란 대나무에 매달은 기旗다. 관을 묻을 때 관을 닦는 삼베 헝겊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운상할 때 길이 비탈지거나,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꺾일 경우 흔들어 알려주는 용도로도 쓴다. 다시 말해, 상여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상여는 관을 싣고 장지까지 운반하는 제구祭具로 가마의 모양과 비슷하나 더 길다. 상여를 운반할 수 있는 상여틀이 있는데, 상여틀은 분해하거나 조립하여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몸채는 단청식으로 여러 가지 채색을 하고, 네 귀에는 기둥을 세우고 위로 포장을 쳐서 햇빛을 가리며, 상여 뚜껑에는 연꽃·봉황 등으로 장식한다. 상여틀은 마을마다 공동으로 마련하여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상엿집을 짓고 그 안에 보관하였다. 대개 상여를 메는 사람을 상여꾼·상두꾼·향도군香徒軍이라 부른다.

운불삽은 운삽雲翣과 불삽黻翣이 있다. 불삽은 '아亞'자의 형상을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에 긴 자루를 대었고, 운삽은 구름문을 그린 널판에 긴 자루가 있다. 운불삽으로는 좌우를 가렸다. 옛날에는 대부大夫이면 불삽 두 개와 운삽 두 개를 썼고, 사士이면 운삽만 두 개를 썼다. 삽은 액을 막고 악귀를 퇴치하는 기능을 가진다.

내용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기 전에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직인사를 한다. 그리고 설소리꾼의 상엿소리에 맞추어 상여를 어깨에 메고 상엿소리하면서 집을 나가면, 상주와 복인들은 통곡을 한다. 상여는 설소리꾼과 북재비 혹은 요령잡이에 의해 인도된다. 상여가 마을을 떠나기 전 다시 한 번 마을에 하직인사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거릿제'라고 한다. 거릿제는 마을 어귀나 좀 떨어진 적당한 장소에서 지내며, 상여를 내려놓은 뒤 그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상주부터 순서대로 잔을 올린다. 이때 조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상을 하기도 한다. 상여는 망인이 즐겨 가던 곳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거릿제는 마을 어귀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장지로 가는 도중에 길가나 의미 있는 곳에서 지내기도 한다. 운상 도중에 친척 집 옆을 지나가는 경우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다리를 건너거나 개울을 건너든지 혹은 언덕을 올라갈 때 적당한 장소에 장막 혹은 병풍 등으로 제청祭廳을 차리고 상주 이하의 여러 복인이 분향하고 술을 올리기도 한다. 이처럼 거릿제는 원래 망자와 친한 친척이나 빈객 중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했다가 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마을 앞에서 거릿제를 지내면 여자 상주는 뒤따르지 않는다. 운상을 할 때 상여가 마을 가운데를 지나가면 마을에 해가 된다고 하여 가능하면 마을의 후미진 길로 갔다. 특히 남의 마을 앞을 지날 때는, 지나가지 못하게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막는 일도 생겨, 양측이 서로 승강이를 벌이기도 한다. 상여꾼들은 상여를 메고 가는 도중에 망인의 친척들을 상여에 태우기도 한다. 상여에 탄 사람들은 얼마간의 노잣돈을 상여 앞에 맨 새끼줄에 끼워 놓는다. 이 돈은 망자가 저승길 갈 때 쓰라는 뜻이다. 상여꾼들은 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장례가 끝난 후에 술을 마련하여 뒤풀이를 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상好喪일 경우 기생이 설소리꾼 앞뒤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한다. 운상 도중에 상주들은 지팡이를 짚고 땅만 보며 곡을 하고 가는데, 자신들은 하늘에 대한 죄인이라는 뜻이다. 지팡이는 부친상일 때는 대나무로, 모친상일 때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다.

운상 행렬은 상엿소리를 하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운상의 조건에 따라 상엿소리도 다르다. 상엿소리는 단순히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상주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원활한 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부르기 때문이다. 상여가 언덕을 오를 때 부르는 소리, 다리를 건너갈 때 부르는 소리, 외나무다리를 건너갈 때 부르는 소리 등 운상의 조건에 소리의 내용과 빠르기가 다르다. 특히 상여가 외나무다리를 건

너갈 때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상여꾼들이 몸을 45도 각도의 V자 형태로 뒤로 제치고 통과한다. 선소리꾼인 요령잡이는 상여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데, 이때도 상엿소리를 부른다. 상엿소리는 운상하는 상여꾼들이 일사불란하게 호흡을 맞추기 위해 부르기도 한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관을 내려 묘상각墓上閣에 횡대를 깔고 안치한다. 그곳에서 하관할 때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상여는 벗겨서 태워 버리고 상여틀만 가지고 온다.

지역사례 전라북도 순창에서는 상여가 집에서 나갈 때 짚불 위를 넘어가고, 상여가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상여가 돌아서서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한다. 거릿제는 떠나는 망자의 하직인사로서 마을 앞에서 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경남 동래에서는 망자의 친척이나 친구 집 앞을 상여가 지나갈 때 차마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집 앞에 멈추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전남의 도서지역에서는 당산나무를 지날 때 반드시 거릿제를 지내기도 한다. 대전에서는 상여가 지나가는 우물은 미리 멍석으로 덮어 둔다. 만일 망자가 물에 비치면 부정이 타서 물이 안 솟거나, 물이 뿌옇게 혹은 황토로 변한다고 믿고 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는 운상 도중에 혼례 가마 행렬과 만나게 되면, 망자를 어른으로 인식하여 산 사람이 피해 간다. 운상 행렬에 여자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지만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상여꾼으로 여자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운상은 단순히 망자를 집에서 장지까지 운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서 조상이 되는 존재론적 변화를 도모하는 실천적인 과정이자,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공간변화를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통과의례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실천하기 하기 위해 운상 행렬이 구성되어 있고, 상엿소리의 내용이나 운상 도중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남도민속학(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민속지(광주직할시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0),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인의 일생(이광규, 형설출판사, 1985).

필자 표인주(表仁柱)

위령기도
慰靈祈禱

정의 한국가톨릭에서 세상을 떠난 교우, 즉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역사 위령기도慰靈祈禱는 우리 가락으로 바치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말한다. 곧 노래이자 기도인 셈이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기도인 연도의 발생과 기원은 가톨릭 전래 초기의 조상제사 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상제사를 금지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선조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해를 유발한 조상제사 금지방침은 한국가톨릭 교회의 창설(1784년) 이전에 이미 중국의 의례논쟁(1536~1742)을 통해서 확정된 상태였다.

가톨릭의 중국 선교는 1583년 예수회(Society of Jesus)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적응주의적 선교 정책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도미니크 수도회(Dominicans Order)와 프란체스코 수도회(Franciscan Order)가 이를 영합주의라고 비난함으로써, 100여 년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의례논쟁이 일어났다. 공자 숭배나 조상제사 같은 중국의례의 허용을 놓고 여러 차례 논쟁한 결과,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중국의례를 금하는 금령을 발표함으로써 조상제사는 금지된다.

초기의 한국가톨릭 신자들은 처음에는 제사 금지가 포함된 중국 의례논쟁의 결과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교리를 연구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한 초기 신자들이 중국 천주교회에 문의한 결과, 1790년 사행원으로 중국에 간 윤유일尹有一을 통해 가톨릭에서의 조상제사 금지를 확인하게 된다. 전통적인 유교 질서의 세계에서 조상제사의 금지는 전통사회와의 충돌이라는 실로 엄청난 충격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791년 전라도 진산의 선비 윤지충尹持忠과 사촌 권상연權尙然은 윤지충의 모친이 별세하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올리지도 않고 신주를 불태워 버린다. 이른바 폐제분주廢祭焚主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두 사람은 무군무부無君無父의 패륜아로 고발당했고, 조정에

서는 이를 충효의 유교 이념을 국시로 하는 조선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른바 '진산사건'이라고 하는 신해박해辛亥迫害가 일어나게 되었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사상적 갈등, 당쟁, 경제적 피폐, 민족적 위기의식 등 여러 배경에서 기인했으나, 폐제분주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피의 참사를 정당화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이유가 제공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4년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하여 신앙의 절대성과 조상제사의 허위성을 교육하면서 가톨릭 신앙과 조상숭배의 병행이 불가함을 명백히 밝히자, 신자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인륜에 해당되는 장례와 제사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래 초기 신자들은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 더욱 깍듯한 정성으로 죽은 이에 대한 장송葬送의 예를 갖추었다. 초상이 나면 신자들은 함께 모여 밤을 지새우면서, 죽은 이에 대한 효성스러운 마음과 정성을 담은 기도를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위령기도 즉 연도라고 할 수 있다. 위령기도의 발생은 돌아가신 이에 대한 우리의 관행과 당시 사회적 조건이 합치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위령기도는 장례 예식서『상장예식』에 수록되어 있다. 전래 초기에는 한문본과 더불어 한문본을 독음형태로 옮긴 공과功課(기도서)를 사용하였으나, 박해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다. 1862년 조선의 2대 교구장인 앵베르(Imbert, 1797~1839) 주교는 중국에서 간행된 한문본『천주경과天主經課(1783)』,『천주성교일과天主聖教日課(1602)』및 이를 축약한『수진일과袖珍日課(1638)』등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공과의 편찬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864년 베르뇌 주교의 감수로 4권 4책의 목판본『천주성교공과天主聖教功課』가 간행되어 1969년『가톨릭기도서』가 나오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공식 기도서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위령기도, 즉 연도는 축문, 찬미경, 죽은 부모을 위한 기도문 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 가톨릭 장례 관련 문헌으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집약한 예식서인『천주성교예규天主聖教禮規(1865)』가 출간이 된다. 이 책은 다블뤼(Daveluy, 1818~1866) 주교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의 결과로 1614년에 로마에서 간행된『로마예식서(Rituale Romanum)』와 이를 바탕으로 출간된 중국 천주교회의『성교예규聖教禮規』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것만을 추린 것이다. 처음에는 필사본으로 나왔으나, 후에 목판본 상·하 두 권과 한 권의 활판본(1887)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오늘날 사용되는『상장예식』의 뿌리가 되는 문헌이다.

내용 가톨릭 교리로 볼 때 위령기도는 연옥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도煉禱, 즉 위령기도는 연옥煉獄의 영혼을 위해 살아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리에서 연옥은 세상에서 죄의 벌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정화淨化하는 곳이다. 연옥의 영혼들은 자력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도, 고통을 덜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연옥의 영혼을 위해 지상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즉 연옥의 영혼들을 위한 지상의 교우들의 대도代禱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연옥의 영혼을 위하여 바치는 위령기도는 산 이가 죽은 이를 위해 죄의 용서와 안식을 빌어주는 정화와 구원의 내용으로, 이들 상호 간의 통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도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연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령기도는 몇 편의 시편(22장, 113장, 129장 등)과 성인호칭기도(Litania), 찬미경 등으로 구성되며, 입관·출관·하관 등 임종에서 탈상까지 가톨릭의 모든 상례·장례·제례 등에서 바칠 수 있다. 신자들은 죽은 이와 그 가족을 위해 교대로 빈소를 지키며 위령기도를 하게 되는데,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대략적인 형식은 기도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 하는 계송와 응송(후렴)으로 구성된다.

특징 및 의의 위령기도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위령 감사송 1)이라는 가톨릭 교리에 제시된 부활 희망이 잘 드러나는 신앙고백이며, 특히 한국적인 가락으로 이루어진 기도이다. 위령기도에 내재된 율격은 불규칙적이고 매우 길지만, 선율은 짝을 이룬 두 팀이 계송와 응송으로 주고받으며 반복할 수 있는 단순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민요

에서 선후창의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형식과 유사하다. 위령기도에 우리 음악의 원형질原形質이 녹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나타나는 메나리토리, 육자배기토리인 판소리, 가사, 장례노래 등의 영향을 골고루 받은 것으로, 음악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부를 수 있는 편안한 음정의 폭을 가지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생소한 가톨릭 신앙이 우리 민요와 결합하여, 죽은 이를 위한 기도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백여 년 가까이 구송하던 과정에서, 위령기도는 근대화의 물결도 이겨내면서 우리 고유의 음을 지켜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위령기도는 한국 가톨릭의 귀중한 전통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연도는 토착화의 모범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1614년 로마예식서에 비추어 본 천주성교예규의 장례에 관한 고찰(허윤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한국 천주교 상장례 노래 연도(강영애, 민속원, 2007), 한국 천주교 연도와 상장례 문화(주은경,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김영수(金榮洙)



위령미사

정의 가톨릭에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

역사 초대교회에서는 상을 당한 지 3일, 7일, 30일, 1년 되는 날, 죽은 이들의 무덤에서 음식을 나누는 음복 잔치가 있었다. 여기에서 유래된 위령미사는 중세로 접어들면서 파스카 사건의 재현이라는 초대교회의 전통보다는 개인의 신심과 청원 등을 바치는 미사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령미사가 죽은 이들의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그리하여 기념일에만 봉헌되던 데서 벗어나 연중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 때마침 연옥煉獄 교리의 형성으로 고통을 받는 영혼을 위한 미사의 효험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산 사람이 위령미사를 봉헌하여 받은 대사大赦의 효력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징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변화된 것은 트리엔트공의회(1545~1563)를 통해서이다. 이 공의회에서 '미사'(missa, 라틴어이며 영어로는 'mass')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할 수 있는 파스카 사건의 재현이라는 신학적인 정리가 이루어져 위령미사의 위상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공의회 이전까지의 위령미사에 대해서도 죽은 이들을 위해 봉헌한다는 선한 지향이 인정되어, 오늘날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유지되었다.

내용 위령미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살아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신학적 근거는 연옥교리와 모든 성인의 통공에 관한 교리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연옥의 영혼들은 자력으로 천국에 올라가거나 고통을 덜 수 없으므로 고통을 겪는 연옥의 영혼을 위해 지상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며, 미사를 통해 이들이 서로 통교를 이룰 수 있다는 연대성의 원리가 담겨있다. 따라서 미사를 통해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파스카의 영원성에 초대하는 이가 하느님이므로, 교회에서는 미사가 죽은 이들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들이 봉헌하는 의미 있는 제사라고 가르치고 있다.

위령미사의 등급은 크게 셋으로 나눈다. 가장 높은 미사는 장례미사이다. 장례미사가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미사이자, 교회 공동체가 그를 송별하는 미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등급은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처음 드리는 미사나 장례일에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미사, 1주년 기념 미사 등이다. 세 번째 등급은 이 밖의 모든 위령미사이다. 위령미사는 미사 전례서에 따로 수록된 위령미사 기도문과 독서문을 사용하며, 사제가 입는 제의의 색도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통상 살아 있는 이가 죽은 이들을 위해 예물을 봉헌하고 미사에 참여하는 연미사와는 구별된다. 한편 합동위령미사라고 하여 설날이나 추석, 위령의 날(11월 1일) 등 우리 고유의 제사를 대신하여 죽은 조상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경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죽은 이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다. 그러나 가톨릭의 전래 초기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제사 문제가 박해의 시발점이었다. 이른바 전통사회와의 충돌을 경험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가톨릭에서는 조상제사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상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위령미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의의가 인정되는 것은 위령미사가 조상제사를 대신할 만한 가톨릭의 공식적인 의례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로마장례 예식 안에서의 파스카(이완희, 누리와 말씀7,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 탈상의 가톨릭수용에 관한 사목적 고찰(박수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필자 김영수(金榮洙)

위령제
慰靈祭

정의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개관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는 의식이 발생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의식이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죽음과 집단적인 죽음에 따라 의식의 모양은 달라지는데, 개인적인 죽음은 조상숭배의 과정에서 혼을 위로하는 의식으로, 집단적인 죽음은 이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의 건립이나 집단적인 제사의 형태로 치러졌다. 그래서 제의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죽음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집단적인 죽음은 이승으로부터 저승으로 천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집단적인 죽음이 신격화되어 공동체신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것은 국가나 지역 혹은 마을 단위의 제사로 이루어진다. 물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대의 제천의례라든가,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국가 행사로 치러진 팔관회, 조선시대의 여제厲祭, 무속을 바탕으로 한 진혼 의례, 불교적인 수륙재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위령제는 고대국가시대부터 지속하여온 것으로, 조상숭배의 연장선에서 혼을 위로하거나 불행한 죽음을 정화하여 그 혼들을 위무하는 행사이다.



전사한 군인을 위한 위령제 |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민간신앙에서 인간은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는데, 혼과 백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믿어진다. 혼은 다시 영혼과 원혼으로 구분되고,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풍족한 삶과 죽음, 즉 한 사람이 갖출 것을 고루 갖추고서 살 만큼 살다가 집에서 편안히 천수를 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원증명, 즉 이름 · 신분 등이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여기서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혼은 원혼의 자질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크게 울타리 내부 공간인 가내家內와 울타리 밖인 가외家外가 있는데, 가외는 다름 아닌 객지客地이다. 가내에서 맞이한 죽음은 가사家死이고, 객지에서 맞이한 죽음은 객사客死라 할 수 있다. 가사자家死者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산 다음에 자연사한 경우가 많아 가족 중심으로 죽음을 처리하는 경향이 많지만, 객사자客死者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충분히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로, 가족이 아닌 집단이 죽음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자는 상례의 절차에 따라 죽음을 처리하고, 그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낸다. 그렇지만 객사자는 횡사橫死, 변사變死, 객사客死, 익사溺死한 경우가 많으므로, 예서에 나타난 상례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이나 지역 혹은 죽음의 방식에 따라서 위령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도 대부분 조상숭배 의례가 아닌 단순히 망자 의례에 집중된다. 다시 말하면 가사자는 혈연적인

집단을 바탕으로 조상숭배의 연장선에서 위령제가 거행된다면, 객사자는 지연적인 집단과 관계하여 기억의 수단인 망자 의례의 차원에서 위령제가 거행되는 경우가 많다.

내용 위령제는 죽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먼저 정상적인 의례적 삶을 거친 가사자의 위령제는 조상신으로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1차 과정에서 망자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2년에 걸치는 긴 세월 동안 상주들은 세속과 절연하고 근신하면서 여러 절차의 의례를 행하는데, 이때 행해지는 여러 의례를 흉제凶祭라 한다. 전반적으로 유교적인 절차를 따르는 흉제는 망자를 조상신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자의 위령제는 조상숭배 차원에서 행해진다.

두 번째로 객사자는 공적인 죽음과 비공적인 죽음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적인 기억의 죽음은 국가나 집단의 차원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신격화되기도 한다. 공적 기억의 죽음이라 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이 대부분으로, 국가와 민족이 기억해주어야 할 죽음이다. 이들의 죽음은 국가가 요구한 희생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의 시신은 국가적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치된다.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크게 추모의례와 매장의례 그리고 가정의례로 구성된다.

그리고 비공적인 죽음은 국가의 요구 때문에 희생당한 죽음이 아니라, 무고하게 국가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한 죽음이거나 재난災難에 의해 발생한 죽음 등을 말한다. 이럴 때 위령제는 망자들의 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작업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 혹은 성역화 사업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합동 위령제 절차는 전통제례, 종교의례, 추모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흉제는 삼제三祭—졸곡제卒哭祭—부제祔祭—소상小喪—대상大喪—담제禫祭—길제吉祭의 순으로 진행된다. 삼제는 우제虞祭라고도 하며, 망자를 지하에 매장하였기 때문에 몸을 떠난 영혼이 방황할 것으로 우려하여 지내는 제사이고, 졸곡제는 초상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일剛日을 정하여 지내는 제사이며, 부제는 신주가 있고 사당이 있는 경우 졸곡제를 지내는 다음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초상 1주년이 되는 날 행하는 제사이고, 대상은 초상 후 2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담제는 대상 후 2개월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고,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 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정하거나, 대상으로부터 백일이 되는 정일 또는 해일을 정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길제를 지냄으로써 망자는 이승의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승의 조상신이라는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된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위령제로 현충일의 추모식을 들 수 있다. 현충일의 추모식은 ①개식,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애국가 제창, ④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⑤헌화 및 분향, ⑥대통령의 추념사, ⑦헌시 낭송, ⑧현충의 노래 제창, ⑨폐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거행되거나 각 시장 ·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거행되는 현충일 추모식도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중앙행사에 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거행하고 있다. 추모식의 핵심적인 내용은 묵념,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함평 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위령제는 전통제례, 종교의례, 추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제례는 유교식의 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을 신앙과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절차에 의해 제사가 거행된다. 제관은 수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 집례, 집사로 구성된다. 주로 유족회 임원들이 제관을 맡으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수헌관과 아헌관을 맡는 경우도 있다. 전통제례가 끝난 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의례가 거행되고, 마지막으로 거행되는 추모식은 ①개식, ②국민의례, ③추모사, ④감사패 증정, ⑤유족회장 인사, ⑥참석자 전원의 헌화, ⑦폐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에 의해 희생당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로 경상북도 문경 가은읍 성저리의 동제를 들 수 있다. 임진왜란 때 마을 사람들이 모산굴 안에 피신해 있었는데, 이들이 널어놓은 빨래를 보고 왜적들이 굴 앞에 불을 지펴 굴속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질식해 죽었다고 한다. 그 후 마을에 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을 동제로 발전하였다. 그런가 하

면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충청남도 은산 별신제의 유래에서도 위령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옛날 마을의 한 노인의 꿈에 금빛 투구를 쓰고 철갑옷을 입은 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나는 백제를 지키던 장군인데 이곳은 우리가 나라의 광복을 위해 죽음을 맹세하고 싸운 자리이다. 내 부하였던 많은 애국 장병들의 한 맺힌 시신이 어지럽게 묻혀 있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이 유골들을 수습하여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영혼을 위로해 주면 보답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괴질을 말끔히 물리쳐 주겠노라."라고 당부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잠에서 깬 노인은 그 사실을 마을에 알려 그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매장해주고 위령제를 지내자 괴질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재난으로 발생한 망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충남 천안 국립 묘원의 위령탑 앞에서는 1983년 9월 1일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에 의해 격추된 대한항공기 희생자 269명과, 제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연행되어 희생된 무연고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합동 위령제를 지내기도 한다. 그 외 반공순국위령탑과 동학혁명군위령탑,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협에서 북한의 테러로 폭파된 대한항공 858기 희생자를 기리는 서울시민의숲 위령탑과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한 502명의 삼풍희생자위령탑 등 곳곳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위령제는 단순히 죽은 혼들을 위로하는 행사로만 그치지 않는다. 죽음의 대상이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망자들을 기억하거나 신격화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이고 의례적인 삶을 거친 영혼의 위령제는 조상신으로 신격화하기 위한 혈연적인 의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나 재난에 의한 죽음의 위령제는 죽음의 기억화 작업을 통해 지연적인 의례로 발전해 가기도 한다.

참고문헌 남도민속과 축제(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인의 일생(이광규, 형설출판사, 1985).

필자 표인주(表仁柱)

위토
位土

정의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

역사 조선 초기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수용으로 조상제사에 대한 법제가 정비됨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적장자 등에게 상속분으로 5분의 1을 더 주는 봉사조奉祀條의 규정에 따라 위토가 마련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유교적 가족제도가 확산하고 사대봉사四代奉祀가 널리 보급되면서 봉사조가 중시되었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입향조入鄕祖가 중시되면서 조상제사는 가문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고, 묘제墓祭를 강조하는 조선 특유의 제사관행이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조상제사가 지속되기 위한 물적 장치로 위토를 설정하여 적장자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사상속을 조선 상속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이후 호주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사상속은 호주상속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위토는 당연히 제사를 상속하는 호주상속인이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라는 관습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농지개혁법』(1949. 6. 제정, 1996. 1. 폐지)으로 이어졌으며, 1960년부터 시행된 제정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의 특권으로 위토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하였다(제996조). 그러나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이 아닌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였다(제1008조의3).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에서는 제사주재자를 후손들(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하는 것으로 하였다.

내용 위토는 조상제사를 지속해서 거행하기 위해 마련한 재산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제전祭田, 祭位田과 묘전墓田, 墓位田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위토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008조의3).

그러나 위토를 종손 등 개인이 아니라 후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경우에는 종손 등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후손들의 공동소유로 보았으며, 이러한 사정이 종중宗中을 형성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종중은 동일조상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며, 그 소유형태는 합유合有로 본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에서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여, 남녀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위토는 유교에 바탕을 둔 조상숭배와 제사 및 그 승계에 근거하여 조선 후기에 형성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화되어 제정 『민법』에서는 호주의 특권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의식의 강화에 따라 호주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제사를 바탕으로 하는 위토는 도시화의 진척과 친족집단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사라질 운명에 있다.

참고문헌 제사용 재산의 귀속주체(정긍식, 민사판례연구22, 민사판례연구회, 2000),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김상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정긍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종법적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정긍식, 한국사회사연구, 나남, 2003),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필자 정긍식(鄭肯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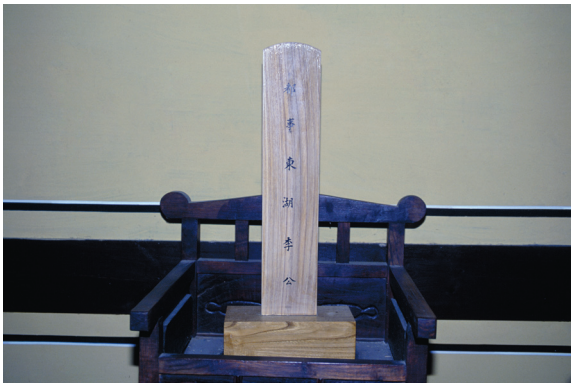
위패
位牌

정의 고인故人의 인적 사항을 적어둔 나무패.

내용 위패位牌는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어 그의 혼을 대신하는 상징물이다. 일반적으로 신주神主와 혼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 신주는 위패의 범주에 속하지만 신주를 위패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신주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것임에 반해 위패는 복수로 존재한다. 즉, 고인의 이름과 관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신주는 4대代 동안 집안의 사당祠堂에 모셔져 제사를 받지만, 위패는 고인의 이름을 적는 것은 동일하나 향교와 서원 등 여러 장소에 배향된다. 특히 문묘文廟에 배향된 인물은 전국 향교를 비롯한 다수의 서원에 위패가 모셔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신주에는 고인이 역임한 관직명을 모두 망라해두는 반면에 위패에는 호號, 성씨, 선생先生 등 극히 간략한 글귀만 적어둔다. 이런 점에서 신주는 사적인 것이고, 위패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패는 신주와 마찬가지로 중국 주周나라의 예禮를 따라 단단한 밤나무로 제작한다. 주신主身과 받침대[跗]로 구성되며, 주신은 높이 약 25㎝, 너비 6㎝, 두께 2.5㎝ 정도의 크기이다. 『가례家禮』에 "이천伊川의 제도에 사서인士庶人은 신주를 사용하지 않고 패자牌子만을 쓴다고 하였다. 패자는 의당 옛 제도와 같이 해야 할 것이나, 다만 두 조각을 서로 합치며 그 옆에 구멍을 뚫어 가운데를 통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벼슬하지 않았으면 패자를 사용하다가 훗날에도 바꾸지 않는다. 신주제도는 이천 선생이 만든 것이지 조정에서 세운 법이 아니므로 관품의 한계가 없다. 만약 대를 잇는 이가 관직이 없더라도 서둘러 바꾸기 어려우니, 이것만을 계승하여 합당한 규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패자 또한 정해진 제도가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주의 크기로 하되 쪼개서 합치거나 함중陷中을 만들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다. 이처럼 신주는 나무 조각 두 개를 합쳐 만들므로 앞면을 '전식前式' 혹은 분칠을 한다고 해서 '분면粉面'이라고 하며, 뒷면을 '후식後式'이라고 한다. 또 후식 옆에 구멍을 뚫어 가운데로 통하게 하여 함중을 만들어 이름과 호號, 자字 등을 적어 넣는다. 그러나 위패는 하나의 나무 조각으로 만들며 이름이나 호 등을 적어두는 함중도 없다.

특징 및 의의 위패는 주로 향교나 서원에 배향하는 것으



동호 선생 위패 | 경북 성주 회연서원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로, 하나의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신주는 집안의 사당[家廟]에 봉안되며 두 개의 나무 조각을 합쳐서 만든다.

참고문헌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김미영(金美榮)

위호
衛護

정의 조상의 신위神位를 무당에게 맡기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

내용 고려시대에 집이 있는 자들은 모두 반드시 신사神祠를 세워놓고 이것을 '위호衛護'라 하였다. 위호는 조상의 신위를 무당에게 맡기고 노비와 재물을 주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고려시대 민간에서는 집에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 신사神祠를 세웠는데 이를 '위호'라고 했다. 조선시대의 가묘家廟가 정착되기 전에 이미 고려시대부터 국도國都에서 군현郡縣까ㅈ지 집에 신사를 세우고 이것을 위호라 하였으니, 이것은 일종의 가묘제도의 전통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위호는 무당에게 조상 모심을 위탁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무교巫敎 식으로 조상을 모시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모시는 의례를 뜻하기도 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의 혼魂을 무당의 집으로 청해서 이름하기를 '위호'라 하고 형상形象을 그리거나 신神의 노비라고 칭하면서 무당의 집에 바치기도 하며, 비록 노비는 바치지 않아도 위호를 설치하거나 무당집에서 조부모祖父母의 신神을 제사 지내는 자가 퍽 많사오니 …… "라는 기록이 있다.

민간의 위호에 대한 『성종실록成宗實錄』의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투어가며 귀신을 신봉하여 무릇 길흉화복吉凶禍福에 대하여 한결같이 무당의 말만 듣고서 화상畫像을 그려 돈을 걸어 놓기도 하고 영혼靈魂을 맞이하여 집안에 들이기도 하며, 공창空唱을 듣기도 하고 직접 성황城隍에 제사도 지내며, 노비奴婢를 시납施納하기도 하는데"라는 기록은 위호가 성행했음을 증명한다.

이능화李能和는 조상을 모시는 신묘神廟와 같은 뜻으로 위호를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위호를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조상굿의 일종으로도 보았다.

특징 및 의의 조상에 대한 제사는 유교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교제사도 있다. 무교의 대표적인 제사가 위호라고 할 수 있다. 제사의 주관자가 가족이 아니라 종교 사제자인 무당이라는 점에서 일반제례와 다르다.

참고문헌 高麗史, 成宗實錄, 世宗實錄,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2002).

필자 이희재(李曦載)

유감주술
類感呪術

정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서 유사한 결과를 끌어낸다는 주술.

내용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영국의 사회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였던 프레이저(J. Frazer, 1854~1941)는 대표 저서인 『황금가지(Golden Bough)』에서 접촉주술과 함께 유감주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프레이저는 종교와 주술, 과학이 상호 연관된 문화영역이라고 보았고, 이 세 영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술은 사이비 과학 혹은 의사擬似 과학으로서 과학의 이복형제라고 간주되었다. 과학과 주술은 자연을 기계적으로 인정하지만, 종교는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의식 또는 인격을 가진 초인간적 존재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프레이저는 주술을 유감주술과 접촉주술로 구분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바로는 유감주술은 모방주술이기도 하다. 유감주술의 핵심 원칙은 '유사類似는 유사를 낳는다.'와 '결과는 그 원인을 닮는다.'이다. 이 원칙에 따라 어떤 현상을 모방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유감주술이나 모방주술은 비를 오게 하기 위한 기

우제 혹은 말라리아나 천연두 같은 다양한 병의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기우제에서 사람들은 물을 뿌리거나 구름을 흉내 내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의례를 수행하였다.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는 전나무 위로 남자들이 올라가서 솥이나 통을 두드린다. 이는 천둥소리를 흉내 내는 것이다. 또한, 불타는 막대기를 마주쳐서 불꽃을 튕김으로써 번갯불을 흉내 낸다.

치병 등에 사용되는 유감주술은 매우 다양한데, 가령 고대 그리스인들은 눈이 나쁜 사람이 독수리의 간을 먹으면 독수리와 같이 시력이 좋아진다고 믿었고, 까마귀 알을 먹으면 백발이 검은 머리카락으로 변한다고 믿었다. 고대 인도에서는 황달 환자가 건강한 혈색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붉은 소가죽 위에 환자를 앉히고 황색 식물로 만든 누런 빛깔의 반죽을 환자에게 바른 후에 물을 부어서 누런 반죽을 씻어낸다. 이를 통해 황달이 빠져나간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감주술·모방주술의 예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도록 물을 길어다가 키로 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도록 한다거나, 열매가 많이 열리도록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두는 식이다. 임신부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 수족手足이 붙는다고 하여 금하거나, 출산할 때에 잠가 두었던 문을 열거나 창, 옷장 문을 열어 두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환자 대신 인형을 치료 행위에 사용하는 것도 유감주술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프레이저는 주술과 종교, 과학이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보고, 종교와 주술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현실 속에서 종교와 주술은 많이 연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실재와 명확하게 대응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대의 어떤 종교에도 주술적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징 및 의의 유감주술은 주술의 핵심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인류학과 민속학에서는 종교와 분리하기 어렵다고 본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감주술과 접촉주술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김경희 역, 동문선, 199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황금가지(J. Frazer, 신상웅 역, 동서문화사, 2007).

필자 강정원(姜正遠)

유골용기
遺骨容器

정의 화장한 유골을 납골시설 등에 안치하기 위하여 원형대로 수습된 뼈를 담는 용기.

역사 고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유골용기를 역사·고고학계에서는 '장골용기藏骨容器' 또는 '골호', '뼈단지'라고 하거나 '석관石棺'이라고 했다. 이런 형태의 용기는 대체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래하면서, 묘에다 골호 등을 안장하는 중국식의 화장 장법葬法과 함께 수입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선왕조 전기 조정에서 법률로 화장을 금지한 후, 유골용기의 사용은 거의 맥이 끊어지게 된다. 1902년 당시 한성에 거주하던 일본거류민단에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근대식 화장장을 설치하였다. 이후 법률로 화장이 인정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럼에도 납골당부터 유골용기까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유골용기가 공식 용어로 사용된 것은 1991년에 개정된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에서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납골상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더욱 정리된 용어는 2004년에 진행된 납골당 표준서비스기준 제정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이 당시 유골용기, 분골용기, 납골분함(urn), 납골용기(urn) 등을 검토하다가 '유골용기' 및 '분골용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 '납골納骨'을 '봉안奉安'으로 바꾸고,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후 화장 후 납골하는 문화가 급속히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법정 용어는 정의되지 않고 있다.

내용 유골용기의 소재는 도자陶瓷, 나무, 금속, 돌, 옥玉 등이며, 자연장이 도입된 2008년 이후에는 생분해성 소재인 종이류[紙類], 연질 목재木材 및 전분 등이 쓰이

기도 한다. 유골상자와 용기의 형태는 원통형, 항아리형, 사각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육각형과 기타 특수한 모양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외부는 목제木製, 내부는 도자의 이중 구조로 만든 용기도 있는데, 이때 외부 용기는 이동 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재질로 만든 이중 구조의 용기를 그대로 납골시설에 안치하기도 한다. 용기의 크기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91년 제정·시행된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으로, 가로·세로·높이를 각각 20㎝로 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20~25㎝ 내외의 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도 각각 30㎝ 이하로 정함으로써 대체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4년 현재, 유골용기의 크기는 납골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안치할 때 용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된 납골당이 없던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화장장에서 판매하던 용기는 오동나무로 된 정육면체 유골상자와 납작한 분골상자가 대부분이었다. 산골散骨하는 경우에는 창호지 봉투에 유골가루를 담기도 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 납골묘가 보급되면서 여기에 적합한 도자용기로 유골용기가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목제용기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유골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동나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송·향나무·미루나무 등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목재 그대로 표면에 전혀 도장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또한, 목제용기는 도자용기의 외부 용기로 이용되기도 한다. 목재 유골함은 보존성이 아주 취약한 편이어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나무좀벌레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화재 시에는 함 자체가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재 피해를 확대하기 쉽다.

도자용기의 경우 신라시대 유적에서는 토기土器·옹기甕器나 도자 골호骨壺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상징성과 도자기의 보존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견해에 따르면 원형의 유골항아리가 널리 이용된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원이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자기는 쉽게 파손되는 점만을 제외하면 별다른 취약점이 없으므로, 현대에도 유골용기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에서는 매장 및 봉안 모두 같은 원통형 도자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금속제 용기는 청동 및 황동, 구리, 알루미늄, 철 등으로 만든다. 그리고 고가의 용기로는 은제銀製 납골함도 있다. 우리나라 사리탑이나 불상 등의 유적에서는 금동 사리함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고려시대 유물에서도 유골을 담았던 금속제 유골함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초기가 되면 화장 자체가 소멸하여 이러한 용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금속은 자체 내구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가공성이 뛰어나다. 게다가 합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외관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대량생산이 쉬워 제조 가격 또한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납골용기 재료로 널리 사용한다. 2000년 이후 국내에는 구리銅로 만든 유골함이 등장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봉안용기나 겉면에 칠보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은銀 납골함도 선을 보였다.

보석함은 2000년경부터 화장이 증가하고 고급 납골당이 늘어나면서 등장하였다. 국내외 일부에서 옥·자수정 및 크리스털 등을 이용한 유골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재료 자체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도 많은 공정과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합성수지로 만든 유골함의 경우, 서울 시립 용미리 묘지 같은 무연고 유골을 안치한 시설에서 합성수지인 멜라민 상자를 이용하여 많은 수의 유골을 안치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유골함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외관, 가벼운 무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매 비용, 강한 내습성耐濕性, 쉽게 변질하지 않는 성질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까닭에 집단으로 관리하는 무



골호 | 삼국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연고 납골시설에서 많이 사용한다. 실제로 2010년 9월 KBS-1TV에서 방영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납골용기에 10년 전 화장하여 안치된 무연고 유골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된 점을 확인한 예가 있다. 그러나 이 유골함은 열기에 약하여 화재에 아주 취약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분해성 유골용기의 경우, 화장문화가 일찍 발달한 유럽에서는 생분해성이 높은 다양한 천연 성분의 납골용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재질을 살펴보면 흙으로 빚어 저온 건조한 것, 곡물의 전분으로 만든 것, 종이 재질로 만든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이 도입되면서, 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유골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다양한 생분해성 용기들이 제조·시판되었다. 이와 같은 친환경적 유골용기의 사용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자연환경도 보존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징 및 의의 유골용기는 시대 및 사회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재 및 용도의 유골용기를 필요로 한다. 20세기 말부터 빈번해진 국제교류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재질 및 형태의 유골용기가 도입될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우주장과 같은 초현대적인 장법과 친환경적 자연장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유골용기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속제 납골 봉안용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안명선,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한국고고학사전(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화장 후 납골(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10), 봉안당서비스-용어, (KS S 2027-1, 2005).

필자 박태호(朴台浩)

유산법
流産法

정의 태중胎中의 아이가 떨어질 조짐이 보일 때에 이를 막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의례와 원치 않는 복중의 아이를 떼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방법들.

내용 복중의 아이가 갑작스레 떨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은 아이를 일부러 떼려고도 하는데, 이를 '유산流産'이라 한다. 이 밖에도 유산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다수 있다. 태중의 아이가 떨어졌다는 의미에서 '낙산落産'이라 하기도 하고, 작은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소산小産'이라고도 한다. 또한, 아직 덜 생긴 아이의 출생이라는 뜻에서 '반생半生'이라고 하고,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뜻에서 '실태失胎'라고도 한다. 심지어 사람이 덜 된 가죽의 출산이라는 뜻에서 '혁산革産'이라고도 하고, 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에서 '손신損娠', '상신傷娠'이라 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유산되는 것을 '암산暗産'이라 한다.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뱃속 아이에 대한 관념과 유산의 방법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태중의 아이는 작은 아이, 덜 자란 아이로 본다. 그래서인지 사람이라는 인식보다 '태胎', 또는 '피부[革]'로 표현된다. 또한, 유산은 의도적인 일이라기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한의학에서는 "임신부가 기혈부족氣血不足이면 임신 2~3개월에 자주 유산하는데, 태동불안胎動不安으로 허리와 배가 아프면서 아래로 피가 보이는 증상을 보인다."라고 한다. 임신 초기에 무리하면 유산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속에서는 4개월까지를 유산이 일어나는 시기로 본다. 유산의 원인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없지만, 간혹 '지앙다툼'을 지목한다. 지앙다툼은 한 집에 두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 아이를 관장하는 지앙의 다툼으로 한쪽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유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과 같이 한다. 태중에 아이가 붙어 있기를 바라며, 가는 줄기에 강하게 붙어있는 호박이나 박의 순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신다. 혹은 끈끈한 성질의 밀가루를 물에 개서 먹거나 움켜쥐는 발을 가진 문어를 삶아 먹는다. 유감주술의 원리를 활용한 처방이다. 이 밖에도 혹여 부정을 탔을까 하는 마음에 은가락지나 은비녀, 문고리, 동곳 등을 삶아 그 물을 마신다. 실제 은銀은 강력한 자연 항생제이므로 병원균에 의한 유산에는 실효가 있었을 것이다.

반면,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식구가 많아 아이를 더는 낳을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유산하기도 한다. 젊은이는 될 수 있으면 모두 낳기를 원하지만 노


新東醫寶鑑
洪文和
下胎와 斷産法 평생 잉태않는 處方도

신동의보감-하태와 단산법 | 1974. 7. 31. | 경향신문

산일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아이를 거두기 위해 태중 아이를 없애려고 하기도 한다. 남존여비를 엄격히 지켰던 사회였기에, 딸만 계속 낳는다면 딸의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유산을 원한다. 그러나 유산을 더욱 간절히 원했던 이들은 처녀였다. 처녀의 임신은 치명적인 잘못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임신을 하고 넉 달까지는 태아의 신체가 형성되는 시기로 간주한다. 이 시기에 임신부가 몸에 충격을 받거나 놀라면 유산될 확률이 높다. 진짜로 유산을 원한다면 4개월 이전에 실행에 옮기고 4개월이 지나면 명줄을 타고 난 아이라 하여 그냥 낳았다.

유산을 하는 것은 하늘의 명줄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의논거리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문으로 들리기 마련이었다. 유산을 유도하는 방법은 음식을 먹는 것과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유산을 위한 물리적 방법은 뱃속 아이에게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임신부가 자신의 배를 손으로 꾹꾹 눌러 복중의 아이에게 직접 충격을 가한다. 혹은 높은 곳에서 일부러 구르거나 마루의 모서리나 소나무에 배를 찧어 그 충격으로 유산을 유발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신령의 화를 자초하여 유산이 되기도 한다. 집안의 가신家神 중 가장 큰 신령인 성주의 화를 자초하면 그 벌로 유산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성주동이를 일부러 만지기도 한다. 아이의 생명줄이 배꼽 아래에 존재하므로 이를 막아 유산을 유도하기 위해 풍선껌 등의 끈끈한 물질을 임신부의 배꼽에 붙이기도 한다. 또한, 임신부의 배에 시루를 얹어 놓기도 한다. 시루를 얹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유아가 사망하면 땅에 묻어 아장兒葬한 후에 시루를 엎어 두기도 하고, 호환虎患을 당한 시신 역시 매장 후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두기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죽음을 암시하는 도구로 시루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보편적인 방법은 특별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유산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는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을 먹는다. 집에서 만든 간장 한두 사발을 마시는 것이 가장 흔한데, 햇간장보다 오래 묵은 것이 진하므로 5~6년 정도 묵은 간장을 먹는다. 빙초산이나 간수, 숫돌 간 물, 잿물, 담뱃잎 삶은 물, 지붕 삼대 삶은 물, 볏짚의 뿌리를 태운 재를 탄 잿물 등을 마신다. 이 밖에 독한 꽃과 약초의 뿌리를 찧어 즙을 내거나 삶아서 그 물을 마신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하늘수박 뿌리, 나락 뿌리, 하늘호박 부리, 돌감 뿌리를 사용하고,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달맞이꽃 뿌리, 할미꽃 뿌리, 너삼, 할매수수깨비를 쓴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삼 잎, 담뱃잎, 빗자루 만드는 뱁싸리, 하늘수박 뿌리, 머리에 쓰는 망건, 쑥을 진하게 달여서 만든 쑥꼼을 먹는다.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약쑥을 주로 사용한다.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할미꽃 뿌리, 모시 뿌리, 족두리꽃 부리, 앵두나무 뿌리, 머위 뿌리를 사용하며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할미꽃 뿌리, 하늘수박 뿌리를 즐겨 쓴다. 각 지역에서 언급된 이상의 약초는 모두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약초나 물질이 지닌 약리적藥理的 특성을 고려했다기보다 그저 각 지역에서 독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약초를 사용할 때 잎이나 줄기가 아니라 뿌리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독한 성분이 응축된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방법은 유산의 유발에 별반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임신부의 몸에 해가 되었다고 한다. 간혹 태어나는 아이가 불구가 되기도 하므로, 불가피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의 명줄은 생기는 순간에 만들어지므로, 제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도 별반 효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유산의 방법 이외에 단산斷産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1963년 보건복지부의 신설로 자연스레 해결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단산을 위해서도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울 한가운데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태胎를 태운다(춘천). 이렇게

하면 더는 아이를 갖지 않게 된다고 한다. 또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가 부엌문을 큰소리 나게 닫고 방으로 들어온다(구미). 이러한 방법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실행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에서 유산이나 단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아이는 "하늘이 준 복이다." 혹은 "태어나는 아이는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타고난다."라고 하며, "아이는 삼신이 점지해 주는 것", "유산하는 행위 자체가 삼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을 온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산을 절실히 원하기도 했다. 이율배반적이지만 유산법에는 이러한 양가감정兩價感情이 숨어 있다. 두 가지 모두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유산법에는 유산을 예방하는 방법과 유산을 실행하는 방법이 공존한다. 그러나 인위적 유산이 비윤리적이라는 관념 탓에 유산의 방식은 다양하지 않으며, 그 실행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김효경(金孝慶)

유식
侑食

정의 제관들이 모두 엎드려 신이 충분히 흠향하기를 기다리는 절차.

내용 『주자가례朱子家禮』,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사시제四時祭」 유식侑食 조의 내용이 모두 같다.

영위에게 음식을 권하는 의식으로 첨작과 삽시정저의 두 절차를 통틀어 유식이라 한다. 집사자가 잔에 첨주한 다음 젯메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올려놓되, 손잡이 부분이 서쪽으로 가게 한다. 즉, 주인이 올라가 주전자를 들어 제사장의 고위 술잔을 가득 채우고 향안의 동남쪽에 선다. 주부는 올라가 밥에 숟가락을 꽂으며(자루가 서쪽으로 가게 한다)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고(머리를 서쪽으로 가게 한다) 향안의 서남쪽에 선다. 모두(주인과 주부) 북향하여 재배하는데 주부는 사배한다. 그런 다음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기제사에서는 삼헌이 모두 끝난 뒤 제관들은 모두 엎드려 있는다(유식 또는 부복). 이것은 신이 충분히 흠향하기를 기다리는 뜻이다. 부복俯伏을 마친 다음 몇 숟가락의 밥을 물그릇에 풀고[祭飯] 잠깐 묵념을 올린다. 그런 뒤 수저를 내리고 밥그릇의 뚜껑을 닫고 두 번 절한다.

특징 및 의의 초헌·아헌·종헌을 하여 술을 올린 후 음식 드시기를 권하는 의식으로 신이 생전과 같이 음식을 충분히 흠향하기를 기다리는 후손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첨작 | 경남 장성 하서 김인후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삽시정저 | 경북 고령 점필재 김종직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유월장
踰月葬

정의 사망한 뒤에 달을 넘겨서 장례를 지내는 것.

역사 유월장逾月葬, 踰月葬은 조선 초기인 1417년(태종 17)에 국가에서 사대부들에게 권장하면서 점차 널리 이행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가에 정착되면서 유월장 혹은 삼월장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사라졌지만, 지방의 명문가에서는 그 명맥이 이어졌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시대 유학의 학통을 계승한 큰 학자들에게만 유월장이 적용되었다. 1978년 경남 산청의 김황金榥 선생, 그리고 1988년 경남 합천의 권용현權龍鉉 선생의 장례가 유월장으로 치러진 바 있다.

내용 유월장은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삼월장三月葬과 함께, 돌아가신 이후에 일정 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본래는 석 달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점차 줄어들어서 다음 달에 장례를 지내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조선시대에는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되었는데 근대 이후로는 유월장이라는 말로 통합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먼저 『예기禮記』「왕제王制」에서 천자는 7개월 만에 장례하고, 제후는 5개월 만에, 사대부와 서인은 3개월에 장례를 치르라고 했으며, 『가례家禮』에서는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3개월로 단일화하였다. 반면, 국가 전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대부大夫는 3개월 만에, 사士는 유월逾月, 즉 달을 넘기라고 하면서 구분하였으니, 이는 고례古禮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와 사士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대부라고 하였기 때문에, 두 용어의 적용에는 다소 혼동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예학자들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대부와 사에 대해서 각각 삼월장과 유월장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취하였다. 김장생金長生은 이에 대하여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대부는 죽은 달을 제외하고서 3개월에 장사 지내는 것이며, 사士는 죽은 달을 더해서 3개월에 장사지내는 것인데, 이는 곧 한 달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踰月이라고 한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대부는 석 달을 넘기고, 사士는 석 달째, 즉 석 달 만에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다. 이후 성리학자인 홍직필洪直弼, 조선 말기의 예학자인 전우田愚도 삼월장과 유월장을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이재李縡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사대부는 일단 삼월장을 전제로 하였으며, 만약 유월장으로 하게 된다면 장례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졸곡卒哭만은 3개월을 기다려서 이행하라고 했다. 그리고 유월, 즉 달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30일을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재는 유월의 기간을 앞의 학자들과 약간 다르게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학자들이 삼월장과 유월장을 단순하게 구분하고 해석하는데 치중한 반면, 이재는 삼월장을 우선적으로 취하라는, 더욱 분명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반사대부가에서는 삼월장과 유월장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였다.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장례 기간은 대개 부모가 돌아가실 당시의 형편이나 묘지의 터를 잡는 시기 등에 따라서 석 달을 훨씬 넘거나, 석 달 혹은 한 달 정도만 채우기도 하면서 유연하게 적용되었다.

삼월장과 유월장이란 용어는 조선시대에 혼용되다가, 조선 말기를 지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장례의 기간이 줄어들면서 삼월장이 점차 사라지고 유월장이란 말이 주로 통용되었다. 그러면서 유월장의 의미도 석 달에서 단순히 다음 달의 의미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특징 및 의의 삼월장과 유월장은 돌아가신 부모의 시신을 장사지낼 때까지, 적어도 석 달은 지나야 극도의 애통함에서 벗어나 졸곡卒哭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겨났다. 또한,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전통시대에는 부음을 듣고 문상객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禮記.

필자 김문택(金文澤)

육아의례
育兒儀禮

정의 아이를 낳은 뒤에 성장하기까지 아이의 무병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는 일곱이레, 백일, 돌 같은 일련의 의례.

개관 어느 나라에서든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혼인하고 자손을 두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출산의례, 관례(성년식), 혼례, 장례 등의 각종 의례를 거행한다. 우리는 고려 말기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도입과 조선 후기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보급 및 그 보편적 영향으로, 이들 의례를 전통적으로 사례四禮, 곧 관혼상제冠婚喪祭로 인식해 왔다. 한편, 민속에서는 출산 의례를 포함하여 혼례, 회갑례, 상례, 제례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회계층에서 행해졌다. 이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기까지 일련의 의례가 거행되는데 일곱이레, 백일, 돌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에서 아기를 돌까지 키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돌을 매우 중요시해 잔치를 하는데, 아침에 윗목에 삼신과 떡시루를 해놓고 비손한 뒤에 친지들과 이웃을 초대하여 돌잔치를 벌인다. 아이를 위한 이런 의례는 가정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점은 모두 같다. 또한,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기는 하지만, 의례 형식이 점차 서구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도 아울러 살필 수 있다.

내용 육아의례는 크게 일곱이레, 백일, 돌로 구분하며,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곱이레는 아이가 태어난 후 7주 동안 7일마다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인데, 이를 '일곱이레'라 부른다. 이때는 삼신상(지앙상)을 차리는데, 출산 후 이레째 되는 날에는 밥과 미역국, 물을 각각 한 그릇씩 올려 상을 차린다. 가정에 따라 세이레를 모시기도 하며 모시는 방법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상을 차린 후에 삼신에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비손하고 산모에게 젖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이레째 되는 날 지앙상을 차려 아이의 건강과 무탈함을 기원하는데 보통 세이레까지 차린다. 이레마다 차리는 지앙상에는 미역국, 밥, 물을 각각 한 그릇씩 놓는다. 여기에 시루떡을 쪄서 올리거나 실타래를 놓아두기도 한다. 이렇게 아이를 위해 지앙상을 차려 주는 것을 일러 '지앙을 지낸다'라고 한다.

충청남도 당진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과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7일 주기의 이렛날에 삼신상을 차린다. 이렛날은 보통 세이레(21일)까지 챙기는데, 귀한 아이일 경우 일곱이레(49일)까지 챙기기도 한다. 청수, 밥, 미역국을 상에 차리고 삼신에게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 또한, 금산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의미에서 산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직접 삼신상을 차린다. 삼신상은 윗목이나 산모의 머리맡에 짚을 가지런히 깔고 그 위에 가져다 놓는다. 상 위에는 쌀과 청수를 한 그릇씩 갖다 놓기도 하고 밥·미역국·청수·쌀 각 한 그릇과 생미역을 놓아두기도 한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쌀과 미역만 삼신상에 놓았다가 3일 후에 치운다. 삼신상에 올리는 청수는 매일 새로 떠다 놓는다. 간혹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첫이레와 세이레에 백설기를 찌고 일곱이레에 시루떡을 쪄서 삼신상에 올려 아이가 잘 자라기를 삼신께 빈다. 그리고 삼신상 밑에 깔았던 짚은 평소 제물을 올리지 않을 때에는 삼신상 옆에 세워 두었다가 세이레가 지나면 불태운다.

이렇게 일곱이레를 모시는 데 반해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첫이레가 지나면 찰떡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는 아이가 끈끈한 찰떡처럼 튼튼하게 붙어 넘어지지 말라는 뜻이라 한다. 제주도에서는 귀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사흘째와 일주일째 되는 날에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삼승할망에게 메를 지어 기원하였는데, 이를 각각 '사흘메'와 '일메'라고 하였다.

백일은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 째가 되는 날로, 보통 '백일'이라 부른다. 백일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치르는데, 대개 백일 때는 미역국, 쌀밥, 과일 등을 장만하여 삼신상을 차린다. 이 밖에 흰떡을 해서 백 사람에게 나누어 먹으면 좋다고 하여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실제 백 집에 떡을 돌리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일일이 떡을 나누어 주어 백 사

람을 채우기도 한다.

전남 나주에서는 백일에 지앙을 지내고, 가족끼리 '백설떡[백설기]'과 미역국을 나눠 먹는다. 순천 송광면 대흥리에서는 백일떡을 '백찜'이라고 했는데, 떡에 대추 등을 넣어서 흰떡 백 개를 만든다. 이 떡을 아이에게 먹이면 아이가 자라면서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다고 한다.

충남 당진에서는 아이 백일에 '수수팥단지'를 해서 아기가 부귀하며 무병장수하라는 뜻을 담아 이웃집과 나눠 먹으며 아이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한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백일이 되면 가장 먼저 삼신께 삼신상을 차려 올리고 백설기와 수수팥떡 등을 만들어 작은 잔치를 한다. 이때 수수팥떡은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액을 물리치라는 의미로 생일 때마다 해준다. 또한, 백일떡은 백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여, 수수팥떡을 100인분 준비해서 학교 주변에 가서 돌리기도 한다.

경상남도 진해에서는 과거에 백일잔치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앙판에 물과 밥, 국을 올려서 간단하게 비손하는 것은 반드시 했었다고 한다. 이는 아기를 위한 정성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백일에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었는데 이 백설기는 칼로 자르면 좋지 않다고 하여, 주걱과 손을 이용해 갈랐다고 한다. 영월에서는 백일에 준비한 떡을 백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하여 마을 사람을 모두 청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때 백일 잔칫집에 오는 사람들은 아이의 명이 길어지라고 실을 가지고 온다. 백일 떡으로 '흰무리[백설기]', '수꾸무싱기[수수떡]', 송편 세 가지를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백일에 흰무리와 송편을 하지 않는 대신 이단지(떡)를 했는데, 이단지는 쌀가루로 반죽을 해서 만두처럼 크게 만들고 속에 고물을 많이 넣는다. 속이 꽉 찬 이단지처럼 아이가 생각이 옳고 많기를 바라는 것이다. 잔칫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삼신상을 차려 삼신께 올린다.

돌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로,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돌상을 차려서 이웃 사람과 친지를 초대하여 성대히 잔치를 베푼다. 또한, 이날은 '돌잡이'라 하여 아이의 미래를 점쳐 보기도 한다. 연적과 책, 돈 등을 놓고 아이에게 잡아보라고 하여 연적이나 책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것으로 여기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으로 간주한다. 전남 순천에서는 돌잔치를 각 집안의 형편에 따라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기도 하며 친척이나 이웃을 초대하기도 한다. 돌잔치를 할 때는 미역국과 밥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을 함께 차려 놓는다. 이렇게 차려 놓은 음식은 먼저 선영과 삼신에게 올린 후, 가족이 나누어 먹는다. 돌 음식의 하나로 돌떡을 만들어 친척이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때 돌떡을 받은 사람은 빈 그릇을 돌려주지 않고 돈이나 다른 음식을 담아서 돌려준다. 이때 콩이나 팥을 담아서 주기도 하는데, 아이의 미래가 콩이나 팥처럼 왕성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는 돌이 되면 수수떡과 팥떡을 비롯한 갖가지 음식을 차려 아기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 특히 돈, 실, 책, 연필 등을 올려 아기가 무엇을 먼저 잡는지 보는 돌잡이는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예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충북 청주에서도 먼저 삼신상을 차리는데, 백설기·수수팥떡·과일 등을 푸짐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상 위에 공책, 연필, 돈, 실 등을 올려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 지켜본다.

제주도에서는 과거 백일이나 돌잔치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1960년대에 경제적 여력이 생기자 아이의 돌잔치를 하는 집이 많아졌다고 한다. 아이의 돌상 음식은 국밥을 기본으로 가정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고기, 반찬과 떡을 준비하여 이웃과 친척에게 대접한다. 그리고 마을에 따라 삼신을 위한 상을 따로 차리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일곱이레, 백일, 돌 등의 육아의례는 가정과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아이의 건강과 무병을 기원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과거에는 아이가 아프거나 죽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례를 통해 더욱 절실하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 의례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일곱이레 동안 아이를 궂은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백일에는 미역국, 쌀밥, 과일 등을 장만하여 삼신상을 차리거나 떡을 만들어 주위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돌이 되면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돌상을 차려서 삼신께 바친 뒤에 이웃 사람과 친지를 초대하여 성대히

잔치를 베풀고, '돌잡이'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점쳐 보기도 한다. 모두가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신에게 아이의 무탈을 기원하는 행위로 가장 한국적인 부모애父母愛가 담긴 의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민속원, 200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서해숙(徐海淑)

윤도
輪圖

정의 남북을 가리키는 자침磁針을 활용하여 지관地官들이 음택과 양택 등 풍수를 보거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나침반.

역사 윤도는 흔히 패철佩鐵, 쇠, 나경羅經, 지남반指南盤, 지남철指南鐵이라고도 한다.남쪽을 가리키는 자침의 원리는 중국 한대漢代에 이미 실용화하여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다. 한반도의 낙랑樂浪 고분에서 출토된 식점천지반式占天地盤(1세기)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원반圓盤과 방반方盤의 두 반으로 이루어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났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을 나타냈다. 원반의 중심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그 주위에 12월 신명神名을 둘렀으며, 그다음 원에는 간지가 기입되어 있다. 정방형 방반에는 8괘·10간·28수 등이 배열되어 있고, 그 중심에 원반을 올려놓고 회전하여 점치는 데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윤도의 기본 원리인 중요한 천문학이 삼국시대에 발달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윤도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시대 신라의 천문박사天文博士, 백제의 천문학을 담당하던 일관부日官部,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도 등을 보면, 당시에 음양오행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에 『주역周易』과 천문학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윤도를 쓰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후 통일신라 말기에 승려 도선道詵에 의해 풍수도참 사상이 발달하면서, 윤도는 지상地相을 보는 데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도 풍수도참 사상이 널리 유행해, 고려 건국과 관련된 설화 속에도 풍수 이야기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해와 달을 비롯한 여러 별을 관찰해 천체의 움직임에 관한 지도를 만들고 별자리의 변화에 대한 계산을 해낼 정도로 천문학이 발달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와 시간·농사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천문학의 발달과 윤도의 기본이 되는 『주역』의 활발한 연구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윤도가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이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던 '윤도'라는 명칭이 실록에 등장한다. 1600년(선조 33)에는 명나라 출신의 지리 전문가 이문통李文通이 '나경'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윤도처럼 생겼지만, 윤도보다 더 자세하여 내면과 외면에는 각양의 양식이 갖춰져 있었고 크기도 커서 작은 소반만 하였으며, 해 그림자를 재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문통의 말에 의하면 당나라 때부터 집안에 전해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문통을 통해 지리에 관한 서적을 베끼고 나경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청하니 허락했다. 그리고 이문통이 광화문 안의 어로御路 위에 나경을 놓고 지세地勢를 살폈다. 이 기록에서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윤도가 쓰이고 있었고, 중국의 나경이라는 명칭은 윤도와 같으며, 윤도와 나경은 지세를 살피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조선의 여러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에 윤도가 많이 만들어졌으며, 천문학을 담당하던 관상감觀象監에서 윤도 제작을 맡아 했음을 알 수 있다. 관상감에서 윤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윤도에 별자리로 점을 치는 점성술의 요소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절후節候 등이 있는



윤도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것과 일치한다. 조선시대에는 풍수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윤도가 다양한 용도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뱃사람이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보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천문학자나 일반인의 휴대용 해시계에 정확한 남북을 정하는 데도 윤도가 사용되었다. 거의 모든 휴대용 해시계에는 간단한 윤도를 함께 붙이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사대부들은 부채의 끝에 작고 단순한 모양의 2·3층짜리 윤도를 만들어 매달고 다니기도 했다. 부채에 매단 선추는 12방위 또는 24방위만을 표시한 소형 지남침으로 가장 실용적인 멋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조각과 더불어 조선의 독특한 휴대용 나침반으로 발달하였다. 이렇듯 윤도는 묏자리를 보는 지관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던 생활과학 도구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윤도와 관련된 학문이 미신으로 격하되어 쇠락하면서 윤도 역시 잊히게 되었다. 현재 윤도의 제작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기능보유자 김종대)'으로 지정·전승되고 있다.

윤도를 전라북도 고창 성내면 산림리 낙산洛山마을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약 300여 년 전이다. 조선시대에는 흥덕현에 속해 여기에서 만든 윤도를 '흥덕 패철'이라 했다. 흥덕 패철의 제작과 전승의 계보는 전全씨–한韓씨–서徐씨–한(한운장)씨–김권삼(현 보유자의 조부)–김정의(현 보유자의 백부)–김종대(현 보유자)–김희수(현 보유자의 아들)로 이어진다.

내용 윤도는 자침磁針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숫자에 따라 동심원이 1개인 1층 윤도에서 동심원이 36개인 36층 윤도까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용화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 24방위를 기준으로 8~9층 정도의 윤도를 흔히 사용한다. 윤도의 구성은 중심에 남북을 가리키는 자침이 있고 24방위를 기본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에 음양·오행·팔괘·십간·십이지 및 24절후가 조합을 이루며 배치되는 형태이다. 윤도의 구성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다. 즉, 방향을 잡기 위해 바닷사람들이 사용하는 윤도와 지형과 지세를 보는 풍수가들이 사용하는 윤도는 다르다. 보통 윤도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층수]만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다. 윤도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층수(36층)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윤도의 이용도 단지 풍수가들이 지세를 잡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재 지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윤도는 보통 9층 정도이다. 윤도장 김종대가 만드는 윤도의 층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5층 윤도의 구성: ①8요수曜水–②황천黃泉–③봉침24산蜂針24山–④정침24산正針24山–⑤60투지透地
- 7층 윤도의 구성: ①8요수–②황천–③쌍삼오행雙三五行–④봉침24산–⑤정침24산正針24山–⑥72천산穿山–⑦60투지
- 9층 윤도의 구성: ①8요수–②황천–③쌍삼오행–④봉침24산–⑤정침24산–⑥72천산–⑦중침24산中針24山–⑧60투지–⑨정침120분금正針120分金

이렇게 구성된 윤도는 현장에서 지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세와 지기를 찾아서 자리를 잡는 데 사용된다. 그중 9층 윤도를 현장에서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8요수'는 묏자리나 집터를 잡을 때 등진 방위인 좌를 본다. '황천'은 자리 잡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앞쪽 방향을 잡을 때 쓰인다. '쌍삼오행'으로, 만물을 생성하고 만상을 변화시키는 수·금·화·목·토 오행의 삼합을 본다. '봉침24산' 또는 천반봉침天盤縫針으로 득수得水와 파구破口 등 물의 방향을 살피는 데 사용한다. '정침24산' 또는 지반정침地盤正針은 좌향을 잡는 기본 24방위를 가리킨다. 주로 용(풍수에서 산이나 능선을 용이라고 한다)이 오는 방위를 잰다. '72천산'은 후룡後龍(혈 뒤에 높게 솟은 산)에서 생기가 가장 왕성한 혈로 용이 들어가는 지점인 입수까지 산의 지형을 보는 것이다. '중침24산' 또는 인반정침人盤定針으로 사砂를 볼 때 사용한다. 사는 일정한 땅의 산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혈 주변 환경을 뜻한다. '60투지'로 입수入首에서 혈穴까지의 방위를 본다. 용과 맥이 흐르다가 보통 물을 만나면 멈추는데, 이때 그 멈춘 자리가 기가 모인 곳이다. '정침120분금'으로 정확한 좌향을 결정한다. 하관할 때 오행을 기본으로 망자의 생년을 보아 생生하게 방향을 맞추어 약간 틀어 주거나, 길한 방향으로 관의 좌향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김종대가 제작하는 윤도의 종류는 평철, 선추패철,

면경철, 거북패철 등이다. 평철은 특별한 장식이 없는 원통형 윤도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며 보통 7~9층짜리를 많이 만든다. 윤도를 부채의 고리에 매달아 쓰는 장식품으로 사용한다. 선추의 윤도는 속을 파고, 서랍처럼 만든 기본 24방위만 새겨 넣어 뺐다가 닫을 수도 있다. 이 선추는 방위를 보는 것이 주용도이지만, 해시계로 쓸 수 있게 바늘을 하나 더 달아 실용적이다. 면경철은 선비들의 소지품으로 뚜껑에는 거울을 넣어 비춰볼 수 있게 하고, 몸체에는 방위를 새겨 방향을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표면에는 다양한 문양을 조각하여 선추처럼 멋을 부렸다. 거북패철은 김종대의 선대先代는 만들지 않았던 모양으로, 김종대가 가끔 만들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현존하는 윤도의 완전한 형식은 1848년(헌종 14, 도광道光 28)에 관상감에서 만든 교간본校刊本 24층 윤도 판본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기능보유자인 김종대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판본은 정간과 분금을 하고 각자를 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고의 윤도 실물도 김종대가 소장한 '한씨韓氏 24층 윤도'이다. 이것은 김종대의 조부 김권삼에게 윤도 만드는 일을 넘겼던 '한운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제작 연대는 약 150~200년 전이다. 앞의 관상감 판본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씨의 24층 윤도는 자침 부분이 없어지고, 나무판을 여러 겹 붙여서 만들어 손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전하는 윤도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층수가 큰 24층이라는 점에서 역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과학기술사(전상운, 정음사, 1976),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윤도장(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천진기(千鎭基)

윤회봉사
輪回奉祀

정의 조상제사를 한 자녀가 전담하지 않고 여러 자녀가 나누어 맡거나 해마다 돌아가면서 봉행하는 제사 관행.

역사 윤회봉사는 부계혈연의식이 강하지 않고 부계혈연집단이 조직화하지 않았던 시기에 널리 행해졌던 제사 양식이다.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혼인 후 처가에서 생활하는 서류부가壻留婦家의 기간이 매우 길었고, 재산상속에서도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지 않고 균분해서 상속했던 것으로 보아, 조상의 제사도 여러 자녀가 나누어 맡는 윤회봉사가 널리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에 성리학과 함께 종법사상이 도입되었지만, 조선 초기까지도 종법사상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17세기 중엽까지는 장남봉사와 더불어 여러 자녀가 조상제사를 분담하는 윤회봉사가 양반 사대부 가정에서 널리 행해졌다. 그러나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종법사상이 널리 보급된 17세기 중엽부터 윤회봉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윤회봉사가 거의 사라지고 장남봉사가 보편적인 제사 방식으로 뿌리를 내렸다.

종법은 부자계승, 장자계승, 적자계승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적장자계승원칙은 조상숭배의식을 강화하였고, 조상의 제사를 정중하고 안정적으로 봉행하는 일을 자손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윤회봉사를 버리고 장남이 조상제사를 안정적으로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윤회봉사는 제사의 주체가 분산되어 조상제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사를 분담해야 하는 딸들이 마을을 떠나 멀리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들들 또한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의 혼속 때문에 혼인 후 처가 쪽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사를 담당할 자녀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제사 때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제사에 참례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사당이나 전래 가옥에서 조상제사를 모실 때에도 원지에 있는 자녀들이 때맞춰 제수를 준비하여 수송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해마다 봉사자를 바꾸어 교대로 봉사하는 경우, 수년 만에 돌아오는 제삿날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우려도 없지 않았다. "사대부 집안에서는 조상제사를 돌아가며 지내는 것이 원칙이라고들 하나 우리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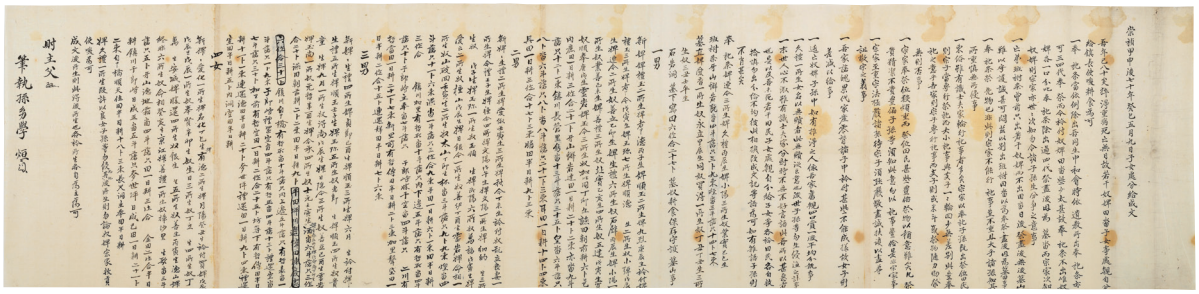
원지에 있어 때맞춰 제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제사를 빠뜨리는 비례非禮를 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는 조상제사를 장남이 전담하기로 한다."라고 한 분재기分財記의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해준다. 이처럼 윤회봉사는 종법사상과 조상숭배의식이 강화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조상제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남봉사가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정착되었다.

분재기에 나타난 제사운행양식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는 장남봉사와 윤회봉사가 공존하였다. 이 시기의 윤회봉사는 모든 아들과 딸이 조상제사를 고르게 나누어 맡는 전형적인 윤회봉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는 윤회봉사의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윤회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만 윤회하는 부분 윤회의 방법이 나타난다. 딸을 제외하고 아들끼리 윤회하는 경우도 있고, 기제사는 장남이 전담하고 묘제만 윤회하기도 한다. 윗대 조상의 제사는 윤회하고 부모 제사는 장남이 전담하거나 반대로 윗대 조상의 제사는 장남이 전담하고 부모 제사만 윤회하기도 한다. 윤회봉사방식의 이와 같은 다양화는 윤회봉사가 점차 소멸되고 장남봉사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윤회봉사는 거의 사라지고 모든 제사를 장남이 전담하는 관행이 일반화된다.

조선 중기에 조상제사의 봉행양식이 윤회봉사에서 장남봉사로 바뀌는 것은 재산상속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을 살펴보면 17세기 중엽까지는 봉사조奉祀條 재산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일반 상속재산은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을 구별하지 않고 꼭 같이 나누어주는 균분상속均分相續에 철저하였다. 딸들도 아들과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혼인한 남자는 처가 쪽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균분상속은 종법사상이 보급되고 조상숭배의식이 강화된 17세기 중엽부터 점차 약화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장남우대, 여자제외의 차등상속差等相續으로 굳어진다. 즉 제사가 장남에게 고정되면서 재산상속도 장남우대 상속으로 이행되어 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산의 균분상속은 조상제사의 윤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균분상속의 전제가 되는 윤회봉사가 소멸하고 장남이 조상제사를 전담하면서 재산상속의 형태도 점차 장남을 우대하는 형태로 바뀌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자녀들이 조상제사를 윤회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조상별로 자녀들이 제사를 나누어 맡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돌아가신 부친, 모친, 조부, 조모 등의 제사를 아들과 딸들이 적절하게 나누어 봉행하는 것이다. 여러 남매가 부모 양위의 제사를 나누는 경우처럼 조상별로 제사를 나누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담당할 수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제사를 모시는 것을 '돌림제사'라 부른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상별로 기제사忌祭祀를 나누거나 절기별로 차례茶禮를 나누는 것을 제사분할, 해마다 돌아가며 윤번제로 봉행하는 것을 윤회봉사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조상제사의 부담을 자손들이 고르게 나누어 맡는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윤회봉사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윤회하는 조상제사는 주로 기제사이다. 그러나 기제사 이외에 묘제나 주요 절기(설, 한식, 단오, 유두, 추석, 동지 등)에 봉행하는 차례도 윤회의 대상이 된다. 제사의 장소는 제사를 담당하는 봉사자의 집인 경우도 있고,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나 조상이 생



분재기 | 1713 | 국립민속박물관
파평 윤씨 윤침이 3남1녀에게 재산을 균분하게 상속한 문서로,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윤회봉사 방식에서 종가 중심으로 봉사조를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

전에 기거하던 가옥이 될 수도 있다.

지역사례 윤회봉사는 18세기 중엽 이후에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장남봉사가 보편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흔적은 현대사회에도 여러 지역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윤회봉사와 비슷한 제사 관행이 남아있다고 보고된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와 경상남도 통영 산양읍 등의 남해안 도서지역, 경상북도 영일에서 영덕, 울진, 삼척에 이르는 동해안 어촌마을, 화전민 마을인 강원도 삼척 도계읍 신리, 그리고 제주도 등이다. 이 지역들은 유교문화의 보급이 지체되었거나 외부 사회와 교류가 적었던 해안도서 지역과 산간지역들이다. 이 지역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랜 세월 동안 윤회봉사를 수용하고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여러 자녀가 조상제사를 나누어 봉행하는 이런 제사 관행을 학자들은 '제사분할祭祀分割'이란 용어로 보고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윤회봉사와 장남봉사는 조선시대 친족제도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윤회봉사를 하다가 장남이 조상제사를 전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의 강화를 의미하며, 자손들의 신성한 과업인 조상제사를 정중하고 안정적으로 봉행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중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적장자계승의 원칙을 강조하는 종법사상이 보급되고 종족 마을과 문중조직이 형성되어 부계친족집단이 조직화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초기 제사계승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정긍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이창기(李昌基)

음복
飮福

정의 복을 탄다는 뜻으로 술과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는 절차.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음복飮福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신辭神과 철상撤床이 끝나면 주인이 제사에 올린 고기와 술을 나누어 그 일부를 이웃에 보낸다. 남녀에 따라 자리를 나누어 앉는데 높은 항렬의 웃어른이 남쪽을 향하여 한 줄로 자리하고, 그 앞에 두 줄로 동과 서로 나누어 앉는다. 웃어른이 앉은 후 같은 세대 한 항렬씩 그 앞에 마주하고 서서 웃어른에게 재배하고, 헌자獻者가 축관祝官의 축사와 함께 술을 올린다. 웃어른이 술을 마신 후 일행이 재배한다. 그 후 웃어른이 그들에게 술을 내리면 다들 마시고 재배한다. 그런 뒤 육식을 먹고 국수와 떡을 먹으며, 술과 제찬을 같이 먹는다. 먹는 것이 끝나면 집사자執事者들과 잔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제찬을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은 재배한다.

내용 '음복'이라 함은 조상이 내리는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본래 제사에 올렸던 술을 마시는 것만을 음복이라 하였으나, 후에 모든 제사음식을 먹는 것도 포함하게 되었다.

유교의 제례는 절차상 반드시 초헌, 아헌, 종헌 등 삼헌三獻으로 의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또한, 술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강신할 때도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는 것으로 제사를 시작했으며, 제례의 절차가 끝나면 음복을 하였다. 여기에서 음복은 제사를 지낸 다음 복을 탄다는 뜻으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이지만, 사실은 술을 마시는 것이 중요했다. 『서경집전書經集傳』에 "제사祭祀에만 이 술을 쓸 것이



음복 | 경북 안동 | 국립민속박물관

니, 하늘이 명命을 내리시어 우리 백성에게 처음 술을 만들게 하신 것은 오직 큰 제사에 쓰게 하려 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음복은 제물에 정성을 담아 조상에게 드리고, 조상은 이를 흠향한 다음, 다시 제물에 복을 담아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다. 음복은 제주만 하지만 제사가 끝나면 제사 참석자들과 이웃까지 음복을 함으로써 조상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참석자들은 일치감을 맛보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적어도 유교의례에서는 나를 위한 술자리는 없다. 술을 마시는 의례인 향음주례鄕飮酒禮에서는 연장자에게 술을 바치는 의례로 항상 절하면서 술을 권하도록 하여 자연히 음주의 예절을 배우도록 했다. 유교제사에서 술이 없는 제사는 상상할 수 없다. 규모가 큰 향교의 석전제釋奠祭이든 종묘사직의 의례이든 술을 올리는 것은 그 제사의 핵심적 봉헌이다. 그리고 제사의 모든 절차의 마무리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음복이라는 것도 술의 의의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참고문헌 書經集傳, 朱子家禮, 한국의 예와 윤리(이희재, 한국학술정보, 2012).

필자 이희재(李曦載)

음양오행
陰陽五行

정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온갖 현상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생성·변화하게 하는 근원으로 여겨지는, 우주 만물의 서로 대응하는 두 가지(음양), 그리고 서로 연관되는 다섯 가지(목화토금수) 바탕 기氣.

내용 음양陰陽은 본래 특별한 의미가 없는 평범한 개념이었다. 인류가 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낮과 밤, 양달과 응달처럼 서로 대응하는 자연현상이었다. 이는 아주 오래되고 소박한 최초의 음양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당시의 음양 관념은 기껏해야 양은 따뜻하고 밝으며, 음은 서늘하고 어둡다는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이런 대응의 짝을 더욱 연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암컷과 수컷, 삶과 죽음 등등 세상은 온통 이런 대응의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전국시대(B.C.E. 403~B.C.E. 221) 무렵부터 음양 관념은 점차 복잡해지고 자연적 속성에서 추상적 사유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영원한 두 세계인 남과 북, 동과 서, 하늘과 땅, 남과 여, 해와 달,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등은 바로 음양의 특성을 함축하는 자연적·추상적 개념들이다.

양	남	동	하늘	남	해	낮	봄	여름
음	북	서	땅	여	달	밤	가을	겨울

양	좌	상	홀수	기쁨	길	선	삶	혼
음	우	하	짝수	슬픔	흉	악	죽음	백

우리나라 상례 풍속에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하여 초상을 치를 때 남자 상제喪制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여자 상제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대나무는 강건한 남성을 상징하고 버드나무는 유순한 여성을 상징한다. 대나무는 강건하지만 한번 잘리면 다시는 새싹을 틔우지 못하는 반면, 버드나무는 비록 연약하지만 아무리 잘라도 다시 새싹이 움트는 자연의 섭리에도 음양의 이치가 담겨 있다.

『성서』 창세기의 첫 구절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그 표현만 다를 뿐 음양의 이치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 하느님이 인간 이전에 가장 먼저 창조한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은 결국 음양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중국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제주도에서 구전口傳해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천지개벽〉 신화에서도 태초의 혼돈 상태에서 음양이 태동하여 만물이 생겨나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두 문헌의 내용적 유사성을 볼 때, 음양 관념은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의 보편적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태초 이전에는 천지가 뒤섞여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는 어둠의 혼돈 상태였다. 이런 혼돈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천지가 개벽하였는데, 하늘에서 아침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물 이슬이 솟아나서 음양이 상통하여 개벽이 시작되었다.

시계 반대 방향(좌선左旋)으로 도는 양陽의 기운과 시계 방향(우선右旋)으로 도는 음陰의 기운이 만들어내는 음양의 운동성은 태극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우리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과도 일치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태극 문양에서 위의 양은 왼쪽, 아래의 음은 오른쪽에 운동 중심이 놓인 것이 양좌음우陽左陰右가 생성된 기본 원리이다.

우리의 민속이나 수상手相·풍수風水 등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남좌여우男左女右', 즉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음이어서 남자는 왼쪽이 소중하고 여자는 오른쪽이 소중하다는 말도 이 같은 음양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세배할 때도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갠다.

풍수지리에서는 산과 물을 음양으로 구분한다. 높낮이를 기준으로 하면 산은 높으므로 양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므로 음이다. 하지만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면 산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음이고 물은 계속 흘러가므로 양이다.

음양은 흑백 논리처럼 고정된 절대의 세계가 아니라 마주 보는 대상과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는 상대의 세계이다. 이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나 ◑가 아니라 ◒이다. 낮과 밤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낮이 지나면 밤이 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으며, 음이 지극하면 양이 되고[陰極陽生] 양이 지극하면 음이 되는[陽極陰生] 것이다. 그러므로 음양의 세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는 상화相和의 세계가 펼쳐진다.

구분	木	火	土	金	水
재질	나무	불	흙	쇠	물
계절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방위	동	남	중앙	서	북
색깔	푸름(青·蒼)	빨강(赤·朱)	노랑(黃)	하양(白)	검정(黑·玄)
맛(味)	신맛(酸)	쓴맛(苦	단맛(甘)	매운맛(辛)	짠맛(鹹)
순환	출생(生)	성장(長)	조화(化)	수확(收)	저장(藏)
성품(五常)	어질음(仁)	예의(禮)	믿음(信)	의리(義)	지혜(智)
천간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지지	寅卯	巳午	辰戌丑未	申酉	亥子

오행五行이란 만물의 기본 요소인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다섯[五] 가지 기운이 행行함을 말한다. 본래 오행은 나무·불·흙·쇠·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기본 물질[五材]'을 일컫는 말이다. 음양과 비슷하게 오행도 처음에는 자연주의적 색채가 농후했으나, 전국시대가 되자 소박했던 오행은 점차 추상화·관념화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지금의 오행 순서인 '목—화—토—금—수'가 비로소 확정되었고, 계절·방위·기후·천체(오성五星)·인체(오장五臟)·덕성(오상五常)·색깔(오방색五方色)·간지干支 등이 오행과 긴밀히 결합되었다. 오행과 계절의 관계를 예로 들면,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에 해당하며, 토는 사계절의 성질을 두루 갖추었다고 본다.

애초 소박한 자연관에 불과했던 음양오행론은 전국 말기 추연鄒衍(B.C.E. 305?~B.C.E. 240?)에 의해 자연주의의 외피를 벗었다. 진한秦漢(B.C.E. 221~A.D.E. 220)시대에 이르러 음양오행론이 크게 흥행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물에 음양오행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 음양오행설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장 방대한 체계를 지닌 사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문마다 항렬行列을 따라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 순서를 따르는 것도 바로 이런 동아시아적 사유 체계의 한 모습이다. 오행에는 '출생[生]—성장[長]—조화[化]—수확[收]—저장[藏]'이라는 생명의 순환적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해와 달, 곤륜산을 그림 주제로 한 〈일월오봉병日月五峯屛〉은 조선의 임금이 앉는 용상龍床의 뒤편을 장식하던 병풍이다.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상징하며, 다섯 개의 산봉우리로 표현된 곤륜산은 왕이 다스리는 국토를 상징한다. 동시에 해와 달은 음양, 다섯 개의 산봉우리는

오행[木火土金水]을 의미한다. 세상 만물의 질서를 통해 국가와 왕실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이 병풍에 음양오행의 조화 사상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좌여우·양좌음우의 이치에 따라 용상에 앉은 임금을 기준으로 왼쪽 붉은 원은 해日, 즉 양이고, 오른쪽 하얀 원은 달月, 즉 음을 의미한다.

오행은 상생相生하고 상극相剋하면서 함께 순환·발전한다. '생'은 낳아서 자라도록 해준다는 의미이고, '극'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생'이 좋고 '극'이 나쁘다는 단순한 의미가 결코 아니다. 상생과 상극은 '상相(서로)'이 의미하는 것처럼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이며 상대적인 관계이다. 상생과 상극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즉, 부모가 자식을 낳아 건강하게 기르면서 한편으로 자식이 반듯한 인격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꾸중을 하고 엄하게 자식을 다스리는 이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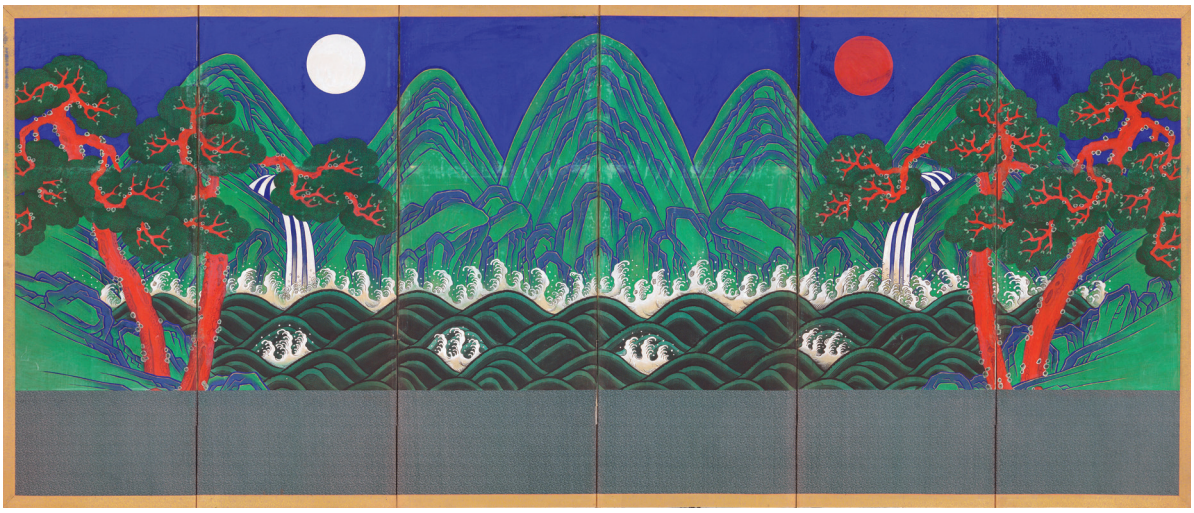
상생相生이란 일방적인 희생이나 도움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살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공존共生共存을 의미한다. 오행의 기본적 상생을 보면, 수는 목을 생하고[水生木], 목은 화를 생하고[木生火], 화는 토를 생하고[火生土], 토는 금을 생하고[土生金], 금은 수를 생한다[金生水]. 이를 초목에 비유하면, 씨앗[水]에서 싹이 움터 자라 줄기[木]가 뻗어나고[水生木], 나무줄기[木]는 그 끝에 잎과 꽃[火]을 활짝 피워내고[木生火], 나뭇잎 사이로 핀 꽃[火]의 암술과 수술이 수정해서 음양의 조화[土]를 이루고[火生土], 조화[土]의 결실로 성숙한 열매[金]를 맺으며[土生金], 열매[金]는 다음 생명을 기다리며 땅에 씨앗[水]을 떨어뜨려 묻어 두는 것[金生水]이다.

오행의 기본적 상극을 보면, 금은 목을 극하고[金剋木], 목은 토를 극하고[木剋土], 토는 수를 극하고[土剋水], 수는 화를 극하고[水剋火], 화는 금을 극한다[火剋金]. 상극相剋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세력의 상대성相對性에 따라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지배하고 활동을 제한한다는 뜻도 있지만, 재목材木과 제련製鍊의 경우처럼 적당한 자극과 함께 다듬고 조절해서 더불어 발전한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꽃나무를 예로 들어 더욱 단적으로 구분한다면, 상생은 온실이고 상극은 들판이다. 시련이 더욱 성숙한 사람을 만들고, 거친 들판이 더 멀리 퍼지고 오랫동안 진한 꽃향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물의 생장과 변화에는 상생뿐 아니라 상극도 반드시 필요한 작용이다.

특징 및 의의 애초 소박한 자연관에 불과했던 음양오행론은 점차 자연과 인간, 사회를 일관一貫하는 유일무이한 해석 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음양오행이라는 틀에 맞춰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문화권에서는 많은 사물에 음양오행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참고문헌 한국 사주명리 연구(김만태, 민속원, 2011),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 양상과 인식체계(김만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필자 김만태(金萬泰)



일월오봉병 | 조선시대 | 국립고궁박물관

의례
儀禮

정의 중국 고대 통치계층의 관혼상제冠婚喪祭 등과 같은 각종 의식절차를 기록해 놓은 책.

내용 『주례周禮』·『예기禮記』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일컬어지며, 유가의 대표적 경전인 구경九經·십삼경十三經의 하나이다.

한대漢代에는 '예禮', '예경禮經', '사례士禮' 등으로 불렸으며, 『의례』라는 명칭은 서진대西晉代에 시작되어 동진대東晉代에 확정되었다. 전통적으로 주공周公의 저작으로 보며, 공자孔子가 수정했다고 전하지만, 실제로는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에 걸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책은 주대周代의 종교적·정치적 의례를 비롯하여 관혼상제 등 사회적 의례까지를 수록하여, 당시의 생활양식과 풍속 등의 연구와 의례의 원칙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사관례士冠禮」·「사혼례士昏禮」·「사상견례士相見禮」·「향음주례鄕飮酒禮」·「향사례鄕射禮」·「연례燕禮」·「대사의大射儀」·「빙례聘禮」·「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근례覲禮」·「상복喪服」·「사상례士喪禮」·「기석旣夕」·「사우례士虞禮」·「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유사철有司徹」의 1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례는 사례士禮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 책으로, 「상복」편을 제외하면 주로 의식의 진행을 규정한 내용이어서 시작에서 끝마침까지의 세부 조목을 모두 들고 있으며, 복장·기구器具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의례 | 국립민속박물관

『의례』의 주석은 후한後漢의 마융馬融이 「상복」편을 주해注解한 것이 처음이고, 정현鄭玄이 비로소 17편 전체를 주석하였다. 이 정현의 주석이 오늘날까지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의 소疏도 중시되고 있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의례경전통해
儀禮經傳通解

정의 송대 성리학자 주희朱熹가 『의례儀禮』를 경經으로 삼고, 기타 예에 대한 고전을 전傳으로 삼아 편집한 예서禮書.

내용 이 책은 '의례=경經', '예기=전傳'이라는 예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주희가 만년에 편찬한 예서禮書이다.

『의례경전통해』는 「가례家禮」·「향례鄕禮」·「학례學禮」·「방국례邦國禮」·「왕조례王朝禮」·「장례葬禮」·「제례祭禮」의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37권이다. 이 중에서 주희가 완성한 내용은 「가례」·「향례」·「학례」·「방국례」의 4편이고, 「왕조례」는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며, 「장례」와 「제례」는 주희 사후에 제자인 황간黃幹과 양복楊復이 보충하여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체재는 한대漢代의 유향劉向과 정현鄭玄이 정한 『의례』의 편차를 기본으로 당나라 때 가공언賈公彦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학례」는 주희에 의해 창안된 부분으로 주희 예학의 의리적義理的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의리론의 기초 아래에서 고례古禮와 시례時禮를 절충한 점, 사례士禮를 왕례王禮의 기초로 보면서도 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입장에서 사례와 왕례를 종합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희는 이 책에서 사事로서의 예와 이理로서의 예를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주자가례』가 주희의 초기 예학을 대표하는 저작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주희의

후기 예학을 대표하는 책으로 주희의 예학을 고찰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의례문해
疑禮問解

정의 조선 중기의 학자 김장생金長生이 예禮에 관한 문답을 적은 책.

내용 김장생이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 문인과 친구의 예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4권 4책으로 된 목판본으로, 1646년(인조 24)에 간행되었다. 책머리에는 1646년에 김상헌金尙憲이 쓴 서문이 있고, 책 끝에는 1643년에 이식李植·신익성申翊聖이 쓴 발문跋文이 있다.

이 책은 주로 『주자가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변례變禮에 대한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문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를 기록하였고, 그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빼놓았다. 이 문답에 참가한 학자는 송준길·이경여李敬輿 등 11명이고, 김장생은 문답에 대하여 『주례周禮』·『의례儀禮』·『가례家禮』·『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가례의절家禮儀節』·『통전通典』 등을 참고로 하고 자기 판단을 덧붙여 대답하였다. 답변에서 인용하여 증거로 삼은 말들은 모두 그 책의 이름과 편목編目을 기록하였고, 자신의 생각은 '안按'이라는 글자로 표시하여 따로 구별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은 가례도家禮圖·통례通禮·종법宗法·관례冠禮·혼례婚禮 등이고, 권2에는 상례喪禮 전반에 관한 내용, 즉 반함飯含·소대렴小大斂·장기杖期 등이며, 권3에는 대공大功·시마緦麻 등 상복喪服에 관한 내용과 허장虛葬·개장改葬 등 장례법葬禮法에 관한 내용이, 권4에는 소상小祥·대상大祥·기일忌日·묘제墓祭 등이 실려 있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의례준칙
儀禮準則

정의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반포한 의례儀禮 간소화 규칙.

내용 193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사회과社會課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번잡한 의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반포한 관혼상제冠婚喪祭 등 의례에 대한 시행규칙이다.

의례준칙에서는 혼례婚禮와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의 적극적 보급을 위하여 의례 해설까지 덧붙였다. 내용상 주요 특징으로는, 혼례의 연령을 남자는 20세, 여자는 17세로 규정한 점, 제례에서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만을 제시하고 제사에 사용되는 공물供物(제수祭需)의 종류까지도 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상례에서도 종래의 삼년상三年喪 기간을 상기喪期와 복기服期로 구분하여 간소화하였다.

이 의례준칙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말살하여 정신적인 면까지도 철저히 일본의 지배 밑에 두고자 하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제는 특히 상제례喪祭禮의 정신을 약화시킴으로써, 상제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민족적 공동체의식의 강화를 막고자 하였다. 이에 가족묘를 없애고 공동묘지를 만들었으며, 전통의례의 내용이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것은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방법의 하나였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의복
義服

정의 상복을 입는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한 의리의 발생으로 인해 입는 상복.

내용 의복을 입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자신을 후사로 삼은 아버지를 위하여 삼년참최복을 입는다.

②다른 이의 후사後嗣가 된 사람의 아내(즉, 양자로 간 사람의 아내)는 본생 시부모를 위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는다.

③질부: 의복소공義服小功을 한다. 출가해도 강복하지 않는다.

④계부와 함께 살고 있되 부자가 모두 대공의 친속이 없는 자(사촌 이내의 친척이 없는 사람)는 의복부장기義服不杖朞(지팡이를 짚지 않고 1년)에 해당한다. 남편이 죽고 처가 젊으며 아들이 어린데, 아들에게 대공의 친속이 없이 아들과 함께 개가改嫁하고, 개가한 곳에서도 역시 대공의 친속이 없으면, 그의 재물로 그를 위해 궁묘宮廟를 지어 해마다 아들을 시켜 제사를 지내게 하되 처는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계부의 도리이다. 동거하면 재최기년복을 입는다.

특징 및 의의 혈맥血脈(핏줄)은 통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의리로 친족관계가 맺어져서 함께 살거나 어머니가 개가하여 부부가 되어 있는 등의 의리로 상복을 입는 것이다.

참고문헌 朱子家禮, 상례 오복제도 연구(김시황, 퇴계학과 유교문화2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필자 김시황(金時晃)

의양 衣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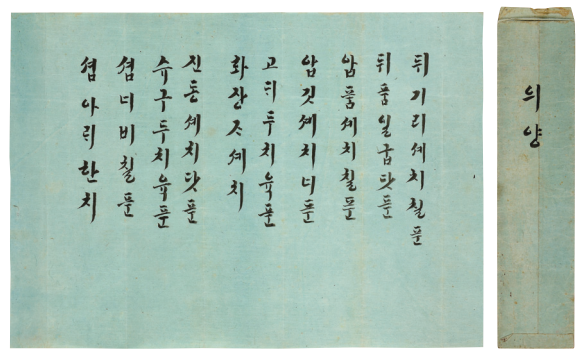
정의 혼례 시 신랑 집에서 신랑의 옷 치수를 적어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 혹은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보내는 신부의 옷 치수를 적은 편지.

내용 혼례시 신랑이나 신부의 관례벗김에 사용될 옷의 치수를 상대편 집안에 적어 보내는 간략한 문서를 '의양', '의양단자衣樣單子' 또는 의제장이라고 한다. '단자單子'란 물품이나 사실을 자세히 적은 문서를 말한다. 전통적인 혼인과정에서는 양쪽 가문이 청혼과 허혼의 과정을 마친 다음, 신랑 집에서 보내는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 허혼의 표시로 혼인 날짜를 받아 신랑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를 '연길서'라고 한다. 연길서를 보낼 때 신부 집에서는 신랑의 의복 치수를 묻는데, 이는 대례大禮를 마친 후 신랑에게 입힐 관례벗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랑 집에서도 신부의 관례벗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 옷 치수가 필요하므로 택일과 함께 연길서와 같이 보내거나 신랑 집에서 나중에 이를 요청할 수 있었다. 『순암선생문집順庵先生文集』 제14권 「잡저雜著」를 보면, "속례俗禮에, 여자 집에서 택일하여 보낸 후에 또 신랑의 옷 치수를 청하는데, 이를 '의양단자'라고 한다. 신랑 집에서도 여자의 옷 치수를 청하는 일이 있는바, 시속에 따라 할 일이다. 부자라서 여유가 있더라도 너무 사치하게 할 일이 아니며,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다면 생략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관례벗김이란 혼인 당일, 신부 집에서 대례를 마치고 신랑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신부의 경우는 현구고례見舅姑禮, 즉 폐백幣帛을 드린 후 시댁에서 받는 패물과 함께 받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한다. 신랑의 관례벗김 옷은 바지·저고리·두루마기·도포·버선이며, 신부의 경우 노랑저고리·다홍치마·버선이 일반적이다.

신랑의 의양단자에는 도포의 길이와 소매, 앞뒤 품, 진동, 섶 등을 적었으나 지역과 가문에 따라 관습이 달라 자세하게 쓰기도 하고 품과 길이만 간략하게 적기도 했다. 때로는 버선과 신발의 모양을 종이에 그린 본本을 함께 넣기도 했다. 종이를 접은 후 봉투 겉[封皮]에 '의양衣樣'이라고 썼고, 단자를 적은 한지를 그냥 접어 보내기



의양단자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도 하였다. 사주단자와 택일단자에서는 한문을 사용하지만 의양단자는 한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징 및 의의 의양을 보내는 절차는 신랑과 신부 두 집안이 서로의 집안에 얼마나 예절을 갖추어 혼사를 진행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실례이다.

참고문헌 順菴先生文集, 생활문화와 옛 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1),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쉼표, 마침표(blog.naver.com/urimal365).

필자 홍나영(洪那英)

의혼
議婚

정의 혼례를 앞두고 혼인을 의논하는 것.

내용 『예기禮記』에서는 혼인의 과정을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로 설명하지만,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의혼·납채, 납폐納幣· 친영의 사례四禮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 말에 『주자가례』를 근거로 한 중국의 혼례가 도입된 이후, 조선시대에는 사대부층에서 『가례』에 근거하여 혼례 규범을 행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바로 그 예로, 『사례편람』에서는 혼례를 의혼· 납채·납폐·친영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민간에서 실제로 행하던 혼례는 의혼·납채·연길·납폐·대례大禮·현구고례見舅姑禮로 나뉘어져 있다. 의혼은 중매를 통해 상대의 의중과 조건을 알아보는 과정이고, 납채는 뜻이 맞아 청혼서請婚書와 사주단자四柱單子, 허혼서許婚書와 연길단자涓吉單子 등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연길은 혼인을 위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 일이며, 혼약이 성립된 뒤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혼수와 혼서지婚書紙가 가는 것이 납폐이고,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신부 집으로 전안례奠雁禮를 올리러 가는 것이 친영이다. 현구고례는 시부모를 뵙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과정에서 의혼은 혼인을 논의하는 단계로, 이때 청혼과 허혼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혼담이 오가는 것을 시작으로 대례가 행해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혼'의 과정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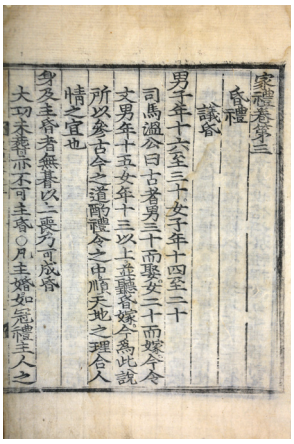
의혼과정에서 양가는 혼인당사자의 연령, 동성동본 여부, 집안의 사정과 가풍, 유전적 질병, 상사喪事의 유무 등을 논의한다. 먼저 혼인연령은 인구학적 재생산과 관련이 있다. 남자는 16세부터 30세까지, 여자는 14세부터 20세까지 혼인당사자와 혼사를 주관하는 혼주가 기년朞年 이상의 복服이 없어야 혼인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사마광司馬光은 "옛날에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에 시집갔다. 지금 법은 남자 15세와 여자 14세 이상을 모두 장가보내고 시집보낸다고 하니, 지금 이 말은 옛날과 지금의 법을 참고하고 예와 법령의 중간을 참작한 것이다. 이는 천지의 이치를 따르며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남녀가 만나는 것은 음양의 화합을 뜻하기도 하였다. 공자는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 "남자가 20세에야 관례冠禮를 치르는 이유는, 남자는 20세가 되어야 남의 아비가 될 단서端緖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며, 여자가 15세가 되어야 시집가는 것은, 여자는 15세가 되어야 남의 아내로서 사는 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나이를 넘어서면 스스로 혼인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생물의 이치가 음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화육化育의 시초가 되는 까닭에, 옛날 성인聖人께서는 시기에 맞추어서 남녀가 작배作配하도록 하여 하늘의 수를 다하게 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적정한 혼인 연령이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이므로 이 나이가 되면 혼인을 허락하고, 의혼은 13세에 한다고 명기하였다. 유장원柳長遠의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도 "강보에 싸여 있는 어린 아이 때 경솔하게 혼인을 허락하기 좋아하고, 또한 배속에 있는 아기를 지적하여 혼인을 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서 어떤 이는 못나고 교활하여 믿을 수 없고, 어떤 이는 몹쓸 병이 있으며, 또 집안이 가난하여 추위에 굶주리고, 상喪을 당해 복服을 입는 일이 잇달아, 마침내 신의信義를 져버리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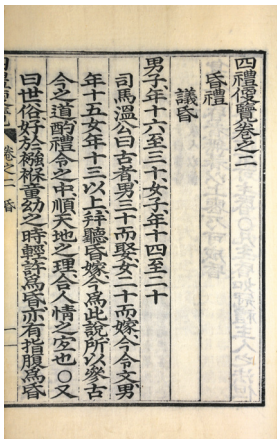
혼인 연령 외에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혼인 규정으로는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의 금기가 있었다. 이것은 혼인관계를 맺을 때 적용되는 부정적 규칙이었다. 송시열宋時烈은 동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서, 본관이 다르다고 같은 성끼리 혼인하는 풍조를

개탄하였다. 남성의 결혼에는 엄격한 동성동본불혼의 규칙을 적용하였지만, 입가入家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동성동본불혼 규칙의 적용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몇몇 반촌班村을 대상으로 한 민족지적 조사에 의하면, 입가한 여성의 촌수로 8촌 자매가 되는 사람이 시집의 5촌이 되는 사람의 집에 입가한 경우, 재종再從자매가 시가의 종숙질從叔姪과 결혼한 경우, 고모와 질녀姪女가 같은 집에 입가한 경우, 6촌 자매가 같은 집안에 시집을 온 경우 등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은 혼담이 오갈 때 상대 집안의 경제적 부를 보고 혼인을 결정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그 예로, 사마광은 "혼인을 의논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그 사위와 며느리의 성품과 행실, 집안의 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하며 구차하게 부귀富貴를 흠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문중자文中子 왕통王通은 "혼인에 재물財物을 말하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것이다. 무릇 혼인이란 두 성씨의 좋음을 합하여 종묘를 섬기고 대를 잇는 것이다. 지금 세속의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은 먼저 여자의 혼수婚需의 많고 적음과 신랑의 예물禮物의 많고 적음을 묻고, 속이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는 거간들이 흥정을 붙이는 일이다. 어떻게 대장부가 할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선왕실이나 근현대 양반들의 혼인에서는 부富와 귀貴가 교환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부유한 하위계급의 여성이 가난한 상위계급의 양반 집안으로 입가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의 농어촌에서는 가족 경제력의 부실과 지역사회의 적정 혼인인구수 변화, 혼인관의 변화 등으로 앙혼仰婚과 낙혼落婚이 다양하게 행해졌다.



의혼 | 주자가례 | 국립민속박물관



의혼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이러한 혼인조건 외에도 사람 됨됨이나 가풍, 예법, 가격家格 등도 고려대상이 되었다. 의혼 과정에서 양가는 혼인조건으로 성품이나 가법家法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을 살피기 위해 '간선看選'이라 부르는 관행이 있었다. 혼인을 통해 집안과 집안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므로 간선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요즈음처럼 연애결혼이 성행하는 시대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관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양가에서는 의혼 과정을 거친 다음 반드시 중매인을 통해 왕래하고, 남자 집에서는 여자 집의 혼인 허락을 기다린 다음에 납채를 한다. 중매를 통해 의혼이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궁합을 본다. 예전과 달리 궁합은 절대적인 혼인조건이 아니며 최근에는 관습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어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신랑의 출생 연월일시를 적은 사주단자를 보내는 '납채'를 하면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택일할 준비를 한다. 택일은 '연길涓吉' 또는 '날받이'라고도 하는데, 삼복이 낀 달, 농번기, 짝수의 달, 양가 부모가 혼인한 달, 6월과 12월 등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피한다. 택일을 한 후 신부 집에서는 연길지涓吉紙와 편지를 써서 신랑 집에 보낸다. 연길지에는 전안奠雁 일시와 납폐 일시를 쓰는데, 납폐 일시는 '혼인 일시'와 나란히 '납폐동일선행納幣同日先行'이라고 쓴다. 택일을 받은 집에서는 혼례일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랑은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납폐란 신랑 집에서 예장지禮狀紙와 채단采緞을 넣은 예장함禮狀函을 함진아비에게 지워 신부 집에 보내는 것이다. 납폐는 혼인일 당일에 먼저 행하기도 하고, 또는 하루 전날 행하기도 한다. 예장지는 금전지金箋紙를 네 귀에 단 검은 보자기에 싸는 것이 보통이며, 채단은 청단과 홍단 두 종류를 준비하여 청홍지로 각각 싸서 넣는다. 근래에는 여러 가지 패물이나 옷감을 함 대신 여행용 가방에 넣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의의 혼인을 논의하여 청혼과 허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민간에서 실제로 행하던 혼례는 의혼·납채·연길·납폐·대례·현구고례로 구분해 그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담이 오가는 것을 시작

으로 대례가 행해지기 전까지의 납채·연길·납폐를 통틀어 의혼 과정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常變通攷, 禮記, 朱子家禮, 경제교환과 사회관계-각성촌락과 동성촌락의 비교연구(박성용, 영남대학교출판부, 2003),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친족과 혼인(정승모, 조선시대생활사, 역사비평사, 2006), 하동혼례(이동후 편, 도산우리예절원, 2013),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서류부가혼속을 중심으로(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필자 박성용(朴晟慵)

이바지음식

정의 혼례 때 도움을 주기 위해 힘들여 갖추어 바라지하는 음식.

역사 17세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혼례 형태였던 '처가살이혼[壻入婚]'은 신랑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부 집에서 묵다가, 신부 집에서 신방을 준비한 삼 일째에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동뢰연同牢宴을 받고 혼인 축하연을 치르는 혼례 형태이다. 처가살이혼은 전적으로 신부 집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신랑 집에서 해야 할 혼례 행사는 거의 없었다. 다만, 신랑 집은 혼례 비용을 도와주기 위해 신부 집에 이바지를 보냈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부여夫餘는 부인을 맞아들일 때 신랑 집에서 이바지로 소와 말을 신부 집으로 보내 납폐納幣하였고, 『북사北史』「고구려전高句麗傳」에서도 고구려는 혼례 때 드는 잔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랑 집에서 돼지와 술을 신부 집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또한 서긍徐兢이 1123년(고려 인종 원년)에 고려를 다녀간 후 이듬해인 1124년에 송 휘종에게 지어 바친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는 귀인貴人이나 사족士族의 집안일 경우에는 신랑 집이 신부 집으로 예폐禮幣를 보내고 서민은 술과 쌀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처가살이혼을 치를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납폐하는 풍속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신랑 집에서 보낸 돼지와 술 등은 신부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통해 모두가 공음공식共飮共食하는 신성한 주식酒食이었다. 두 가족이 한가족이 되는 데 꼭 필요한 혼례식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행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이바지하는 풍속은 처가살이혼이 '시집살이혼[嫁入婚]'이 되면서 서서히 변하였다. 친영례親迎禮라고도 하는 시집살이혼은 고려 말기 정몽주鄭夢周(1337~1392) 등에 의하여 봉건적 신분제도와 가부장제적 질서유지를 강화하고자 행한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실행되면서 서막이 올랐지만, 개혁 조치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옮겨갔다. 조선 왕조는 왕권을 더욱 정치적·사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의 강화라는 노선에 부합하는 도학적 윤리관을 확립하고 『의례儀禮』를 기반으로 한 시집살이혼인 친영례를 국가적으로 채택하였다.

1513년(중종 8) 유학자 김치운金致雲이 최초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신랑 집에서 동뢰연을 치르는 친영례를 행했지만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광조趙光祖(1482~1519)가 처단되면서 친영례는 폐지되었다. 이후 신랑이 신부 집에 간 당일에 동뢰연을 치르고 다음 날 신랑 집으로 와 시부모에게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행하는 반친영례半親迎禮가 명종대(1545~1567)에 사민가士民家에서 치러지기 시작했고 16세기 후반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반친영례에서 신부 집은 대례상大禮床이라 부르는 동뢰연상을 차려놓고 동뢰연을 치르고, 이후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큰상[大床]을, 신부 측 친척과 신랑 측 친척을 위하여 주연상을 차렸다. 동뢰연 다음에 큰상과 주연상을 차려놓고 벌어지는 향응은 두 집안을 한집안으로 결속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향응의 음식 차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신랑 집에서 이바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신랑 집에서 보내는 이바지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었다. 신랑과 신부가 받은 큰상의 음식은 다음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갈 때[于歸], 이바지음식이 되기도 하고, 연회가 끝난 후 그날 온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이 되기도 하였다.

우귀于歸 후에 신랑 집에서는 신부 집에서 가지고

온 이바지음식으로 현구고례를 행했다. 현구고례가 끝난 다음에는 음식을 준비하여 신랑과 신부에게 또 한 차례 큰상을 받게 하였다. 마을의 젊은 부인들은 성장盛裝하고 접대자가 되어 산처럼 높게 고인 음식들로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큰상을 한가득 차리는 것이다. 많이 또 높게 고일수록 신랑과 신부가 복을 받는다 하여 가능한 한 높게 고여 많이 차렸다. 큰상의 음식 또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이바지음식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명종조 이후에 전개된 반친영혼으로 인하여, 혼례를 치를 때 도움이 되도록 힘들여 보내던 이바지음식은 점차 신랑 집과 신부 집 모두가 보내는 일종의 예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내용 조선왕조는 신부 집으로 '함 보내는 일'을 '납징納徵' 또는 '납폐納幣'라 하였다. 1627년(인조 5)에 나온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이바지 성격이 강한 오성유밀과를 포함한 납폐(납징) 예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왕가의 가례이면서 친영례이기 때문에, 동뢰연을 비롯한 향응은 신랑 집에서 치렀다. 그러므로 데릴사위혼 만큼 신랑 집에서 보내는 이바지로서의 성격은 약하지만, 신부 집이 치를 손님 접대용 이바지라고 볼 수 있다. 이 납폐 예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청주淸酒 40병, 오성유밀과五星油蜜果 4부, 1부 마다 적미자赤味子 3기, 백미자白味子 2기, 절육折肉 5기, 백자柏子(잣) 1기, 대추[大棗] 1기, 황률黃栗(말린 밤) 1기, 비자榧子 1기, 생저生猪(돼지) 2마리, 생양生羊(양) 2마리, 현문단玄紋緞 3필, 훈문단纁紋緞 2필

이상의 납폐 물목 가운데 식품 부문은 청주 40병, 오성유밀과 4부, 돼지 2마리, 양 2마리이다. 이 가운데 오성유밀과 1부마다 적미자 3기, 백미자 2기, 절육 5기, 건과류 4기를 담는다고 되어 있다. 오성밀과의 오성이란 목성·화성·토성·금성·수성의 다섯 별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유밀과油蜜果(밀가루에 참기름과 꿀을 넣고 반죽한 다음 모양을 내고 참기름에 튀겨서 집청한 과자)류인 적미자 3기와 백미자 2기를 써서 음陰과 양陽의 법칙대로 운행하는 오성을 나타냈다.

적미자 3기가 양陽이고 백미자 2기가 음陰이다. 이는 납폐 물목 중 현문단(검은색 문단, 양) 3필, 훈문단(분홍색 문단, 음) 2필과 통한다. 현玄이 3, 훈纁이 2인 것은 양陽은 기수奇數, 음陰은 우수偶數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천天(하늘, 3, 玄)과 지地(땅, 2, 纁)에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절육이란 먹기 좋은 크기로 아름답게 오린 포脯를 말하는데 절육이 5기인 것 역시 기수로서 양을 나타내며, 백자·대추·황률·비자를 4기로 한 것은 우수로서 음을 상징한다. 즉, 오성유밀과 1부에서 적미자(양)와 백미자(음)가 한 조가 되고, 절육(양)과 건과(음)가 한 조가 되는 셈이다.

특징 및 의의 조선왕조가 가례 때 신부의 친정으로 보냈던 오성유밀과, 절육(포), 건과류로 구성된 이바지음식은 자연스럽게 민중에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도 이바지음식의 대표는 유밀과, 절육, 과일 등이 되었다. 약과·강정·산자·정과·매작과 등의 유밀과, 오징어오림 등의 절육, 곶감오림·사과·배·수박·참외·멜론·감귤·포도·키위·파인애플·바나나·오렌지 등을 가득 담은 과일 바구니 등이 요즘의 이바지음식 품목이다. 물론 집안에 따라 흰떡·약밥·단자·두텁떡·구름떡·웃기떡·증편·인절미 등의 떡류, 쇠갈비찜·도미찜·홍어찜·대합찜·전복찜·대하찜·문어찜·해삼찜·홍합초·전복초·각색전 등의 찬류도 이바지음식이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 高麗圖經, 北史, 三國志, 增補文獻備考,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조선왕조 혼례연향 음식문화(김상보, 신광출판사, 2003).

필자 김상보(金尙寶)

이장
移葬

정의 매장·봉안·자연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봉안시설·자연장지에 옮겨 다시 장사하는 일.

역사 이장은 원래 묘를 옮겨 새로 장사 지낸다는 것이다. 이미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선조宣祖 안릉安陵을 개장

하면서 복제服制 등을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1012년(현종 3)에 처음으로 목종의 능을 이장한 기록이 나온다. 고려 묘지명墓誌銘에 1024년부터 나타나는 '천장'이라는 용어는 임시 매장도 포함하지만, 대부분 화장하고 원찰願刹에 권조權厝하였다가 본장本葬하는 것을 의미한다. 1410년(태종 10)에는 목조 이하의 능을 개장하면서 복제를 논의하여 시마복緦麻服으로 정한다. 조선에서는 '이장'이라는 용어가 1397년(태조 6)을 시작으로 85회, 개장은 1410년(태종 10)부터 134회, 천장은 1264년(원 지원 원년)부터 180회, 면례는 1673년(현종 14)부터 58회가 등장하는데, 묘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장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발간할 때에야 『가례의절家禮儀節』의 설명을 빌어 비로소 「개장」이 정식 항목으로 다루어졌다. 이어 『광례람廣禮覽』(1893), 『성재집性齋集』(1903)에서도 개장을 다루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도시화로 기존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하고 이를 봉안묘 등에 모시거나 문중묘지, 공원묘지 등으로 옮겨 모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내용 이장이란 여러 연고로 기존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다.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산송山訟이 있거나 왕릉의 경내에 속하면, 또 터가 나쁘거나 주위에 나쁜 환경이 조성되면 묘를 이장하였다. 면례는 묘를 살펴 나쁜 일이 생기면 옮기는 것으로 외부의 영향에 따른 이장이나 개장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무덤이 무너져 시신 유실의 우려가 있을 때 개장하는데 풍수쟁이의 설로 이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풍수설의 발복發福을 믿어 이장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이장은 매장의 절차와 유사하다. 이장이 결정되면 먼저 묘지를 선정하고 관, 염상殮狀, 염을 새로 할 때 시신을 묶는 효絞 등을 준비한다. 묘역을 조성하여 광중壙中을 파고, 개장 하루 전에 사당에 고한다. 개장하는 날 미리 준비해 둔 위차位次에 나가는데, 삼년복을 입어야 할 사람은 모두 시마복緦麻服을 입고 나머지는 소복에 베 두건을 쓴다. 축관이 토지신에게 제사한다. 개장할 묘소에 제사하고 무덤을 연다. 영구를 들어내어 미리 마련한 장소에 안치하고 전奠을 차린다. 새 관을 들여 놓고 대렴 때처럼 염한다. 마치면 새 영구를 상여에 모시고 발인發靷한다. 새 묘소에 도착하면 대기소에 영구를 모시고, 무덤 왼쪽에서 토지신에게 제사한다. 장사 때와 동일하게 의식을 치른다. 장사를 마치면 전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사당에 고하고, 신주를 대청으로 모셔 제사를 지낸다. 3개월이 지난 네 번째 달 초하루에 허위虛位를 마련하여 곡하고 복을 벗는 것으로 개장을 마친다. 개장의 절차는 전통 상례의 장사葬事와 거의 동일하지만, 수의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목욕을 시키지 않아 습襲의 절차가 없다. 상복 역시 간소화하는 차이가 있다.

이장의 사유는 자연재해, 산송, 토지매매, 재산권, 문중 산의 사유화, 능역陵域, 금산禁山, 풍수지리 등 매우 다양하다. 요즘에는 개발이 이장의 가장 큰 이유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는 개장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의 변화는 무덤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국 평균 화장률이 70%를 웃돌면서 관리의 편의성에 따라 흩어져 있는 묘소를 한곳에 모으기도 하고, 기존의 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집단묘지 혹은 봉안당에 모시는 등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묘지 이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성업을 이루어 전통적인 이장 절차는 현대식으로 간소화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이장은 매장을 하는 사회에서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다양한 상황이 무덤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화이다. 이장을 표현하는 용어는 개장改葬·천장遷葬·면례緬禮·면봉緬奉·면리 등으로 다양하다. 이장은 단순히 묘를 옮긴다는 뜻이고, 개장은 묘를 고쳐서 새로 만든다는 뜻이다. 천장 역시 옮긴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고려시대에는 화장 후 권조權厝하였던 유골을 본장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고, 이장과 혼용하였다. 면례·면봉·면리는 같은 뜻으로, 무덤을 살펴서 문제가 있을 때 옮겨서 장사하는 것이다. 땅속의 상황을 잘 모르므로, 매장 후 약 10여 년이 지나 무덤을 확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면리는 면례의 음성 변화이다. 조선 중·후기에 우리나라의 예서에서 개장을 정식 항목으로 다

루게 된 것은 다양한 이유로 개장을 빈번하게 행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참고문헌 家禮, 廣禮覽, 四禮便覽, 喪禮備要, 性齋集,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이혼
離婚

정의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 관계를 해소하는 일.

내용 전근대시대 우리 법은 중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고려시대까지는 『당률唐律』이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을 형률刑律로 사용하였다. 두 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유지이다.

『당률』에서는 이혼으로 화리和離와 의절義絕, 기처棄妻의 세 유형을 제시한다. '화리'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다. '의절'이란 부부는 의로 맺어진 관계인데, 의가 끊어졌으니 혼인관계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절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혼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되었다. 의절 사유는, 처의 조부모·부모에 대한 남편의 구타, 남편과 장모의 간통, 남편의 조부모·부모에 대한 처의 모욕과 구타, 남편의 시마緦麻 이상 친족과 처의 간통, 남편을 대상으로 한 처의 상해 모의 등이 해당하였다. 화리는 오늘날의 '협의이혼'으로,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의절은 사유를 보면 도저히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기처'이다. 기처란 처妻를 버린다는 의미이다. 『당률』 혹은 『대명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처 사유가 '칠거지악七去之惡, 칠출七出'이다. 즉 아내에게 일곱 가지 악행이 있을 때 아내를 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처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거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거나, 음란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때 행해졌다. 또한, 질투가 심하여 처첩제가 운영되기 어렵게 한다거나, 나쁜 병이 있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거나, 말이 많아 대가족제도를 잘 운영할 수 없게 한다거나,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칠거지악에 들었다. 그런데 이 '칠거'는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에 최소한이나마 여성을 보호하려고 둔 것이 '삼불거三不去'였다. 삼불거란 처가 쫓겨나면 돌아갈 곳이 없다거나, 부모의 삼년상을 같이 치렀다거나, 가난할 때 시집와 뒤에 부유하게 되었다거나 할 때는 칠거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도 처를 내쫓을 수 없는 규정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칠출'은 이미 고대부터 보인다. 백제에서는 간음한 여성을 남편 집의 종으로 삼았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은 아들이 없는 왕비를 폐했으며, 신문왕도 아들이 없는 왕비의 아버지가 난을 일으키자 그 왕비를 폐비시켰다. 즉, 고대에도 여성이 간통죄를 범했다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이혼사유였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간통이나 불효 등 칠출 사유로 이혼을 당한 사례가 보인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칠출 사유가 없는데도 출세나 부귀를 위해, 혹은 정치적 이유로 아내를 버린 사례들이 매우 많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불법적인 기처가 많았던 이유는 친족구조에서 처가나 외가와 밀접했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음서蔭敍나 공음전功蔭田이 사위나 외손에게도 허용되었고, 또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으로 처가 가져오는 상속분도 있었다. 사위나 외손의 공이 장인에게도 돌아간 반면에, 반란 등의 죄에도 함께 연좌되었다. 이 때문에 남성들은 부귀와 출세를 위해 더 나은 조건의 여성과 재혼을 꿈꾼다거나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구명救命을 위해 처를 버리는 일이 많았다. 여성들에게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기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이유였다.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기처를 비롯한 이혼이 철저히 억제된다. '삼종지도三從之道'를 강조하며 여성들에게 재혼을 불허하던 시대였기에, 이혼이 쉽다면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칠거지악 중 음란과 시부모에 대한 불효 외에는 거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했다. 더 나아가 고종대에는 칠거 중 아들을 두지 못하는 것과 질투가 제외되어 '오거五去'가 되고, 삼불거 외에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없게 하여 '사불거四不

去'가 되었다. 이처럼 이혼이 어려워지자 남성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아내가 간통을 했다고 무고해 이혼을 관철하려 한다든지, 혹은 아내를 소박疏薄하여 형식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도 남성들은 첩을 두거나 기생집에 가는 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들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이 의절을 범하거나, 남편이 집을 떠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때 외에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혹 남편에게 매를 맞아 뼈가 부러지는 것 이상의 중상을 당했을 때 이혼을 요구하여, 만일 남편이 동의해준다면 이혼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는 지극히 일어나기 어려웠다. 그뿐만 아니라, 설사 이혼을 한다 해도 재혼을 할 길도 없고, 당장 생계 문제가 막연해질 수 있어 이혼을 결심할 수가 없었다.

한편, 서민은 상대적으로 이혼이 쉬웠다. 양반 여성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자손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서민여성은 그런 규제와는 상관이 없었다. 서민의 이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정파의事情罷議와 할급휴서割給休書이다. '사정파의'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가 서로 마주앉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결별의 말을 하여 서로 응낙한 뒤에 이혼하는 것이다. '할급휴서'는 이혼문건 같은 것으로, 칼로 옷옷의 자락을 베어 그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표지로 삼는 것이었다.

특징 및 의의 이처럼 근대 이전의 이혼은 사실상 기처가 대부분이었고, 당사자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여성들이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이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붕괴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일방적인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민법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여기서 '배우자'란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부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이혼은 여성의 지위 변천을 잘 보여준다. 전근대시대에 이혼은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도구'이기를 강요했다. 반면, 현대에 이혼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혼인생활에 동등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시대 혼인제도에 대한 일 연구-이혼을 중심으로(권순형, 이대사원28,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95),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권순형, 혜안, 2006),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장병인, 일지사, 1997).

필자 권순형(權純馨)

일뤠잔치

정의 이레잔치라고도 하며 즉 일주일에 걸칠 정도로 잔치가 여러 날 이루어지는 제주 혼례.

내용 제주의 혼인 관행은 1950년대 중반까지 구식혼례였으나, 1960년대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1970년대 이후로는 신식혼례가 정착되었다. 제주의 구식혼례란 신랑과 하인들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오는 것이었다. 이때 신랑은 사모관대를 착용한 채 말을 탔으며, 하인들은 '호~옹'하고 신랑이 도착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 양가에서는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지금도 혼인을 일컬을 때 잔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혼인식장에 간다고 하기보다는 '잔치 먹으러 간다'는 말이 보편적이다.

혼인의례의 과정에서 잔치라는 이름이 붙은 행사로는 잔치 전날 양가의 '가문잔치', 당일 양가에서 각각 치르는 '잔치', 잔치 다음 날 신부 집의 '사돈잔치', 그다음 날 신랑 집의 '사돈잔치'가 있다. 양가에서 세 번씩 모두 여섯 번의 잔치를 하는데, 대례大禮에 상응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어 의례절차라기보다 친지들과 동네 이웃이 흥겹게 어울려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고, 새로 탄생하는 부부를 축하하는 의미가 강하다. 잔치 준비를 위해 돗(돼지) 잡는 날부터 잔치가 끝난 후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남은 음식을 대접하는 날까지, 모

두 잔치를 하다 보면 여러 날이 걸린다. 반드시 7일 동안 한다기보다 보통 4일 정도 치러진다.

대개 하루나 이틀 전에 돗을 잡고 잔치 음식을 만든다. 돗 잡는 날에 참석하여 술이라도 한 잔씩 나누는 것을 혼사를 치르는 집에 대한 일종의 부조로 여긴다. 가까운 친척이거나 평소 친근한 사이라면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못하면 섭섭하게 여길 정도이다.

혼례식 전날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고 나면, 저녁때쯤 양가에서 각각 가문잔치가 열린다. 이때는 궨당(친인척)끼리 잔치 준비를 끝내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음날의 혼사에 대해 의논한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혼인 준비에 큰 도움을 준 친척이나 이웃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도 있다. 친척들은 둘러앉아 사돈집에 참석할 우시(상객), 대반, 중방 등을 정한다. 특히 신랑 집에서는 예장을 쓰는 등 최종 점검을 한다. 이때 성펜궨당(친가)과 외펜궨당(외가)도 함께 잔치 준비를 하면서 가문잔치에 참여하는데, 주요 결정권은 신랑의 성펜궨당에게 있다. 마을내혼으로 인해, 친가와 외가가 같은 마을이나 인근 마을에 거주하며 집안의 큰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혼인의례에 외척이 참여하는 비중이 한반도 내륙보다 높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가문잔치에 뚜렷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혼인 당일은 아침에 문전제門前祭와 조상제사를 지낸다. 문전제는 '문제', '문전고사'라고도 하는데, 고사상 위에 잔치음식을 진설하고 간혹 돼지머리를 올린 다음, 상방(마루)에서 대문 쪽을 향하여 지낸다. 가내의 주신인 문전신에게 고하는 민간신앙의 자취가 희미하게 엿보이는 의례라 하겠다. 그 절차는 절을 올리고 잡식(상에 진설된 음식을 술잔에 모두 조금씩 떼어 놓는 것)한 다음, '걸맹'(걸명, 잡식한 것을 올래인 대문간 쪽에 뿌리는 것)하는 것이다. 문전제를 지낸 뒤에는 방 안에 들어가 제사상 앞에서 새 사람을 맞이함을 알리는 제를 조상에게 올린다. 민간신앙과 유교의식의 혼재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집안에 따라 문전제와 조상제사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전제만 내는 경우도 있다. 이 절차는 현재도 대부분의 제주도 지역에서 시행한다.

혼인 당일에 신랑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일행은 우시 2인(집안에 따라 3~4인), 마을 하인(마을의 궂은일을 맡아 하는 동네 하인), 하님(마을 하인의 처) 1인 등이다. 우시는 신랑을 데리고 가는 상객으로서, 성펜궨당 중에서 삼촌이나 당숙 같은 근친 한 명, 외삼촌이나 외사촌 형 같은 외펜궨당 한 명이 된다. 성펜궨당을 '수우시'라 하며 관할하는 행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남성과 함께 여성도 참여하며, 여성 우시는 비교적 젊은 숙모, 고모나 이모 또는 신랑의 누나 등이 된다. 우시로 여성과 외삼촌 또는 이모 같은 외펜궨당이 동행하여, 부계친과 외척 및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랑과 궨당들이 신부 집에 도착하여 홍세함을 전달하면 예장 검열을 한다. 신부 부친이 먼저 예장을 읽어보고 신부 측 웃어른들에게 보인다. 만약 예장에 하자가 있으면 받을 수 없다고 정중하게 물린다. 그러면 신랑이 말 위에 앉은 채로 다시 써야 하는데, 신랑 대신 선임우시(수우시)가 지필묵을 꺼내서 작성하기도 한다. 예장 서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이를 접수한다. 예장 접수는 대례가 없는 제주도의 혼례의식 중 양가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 절차이다. 오늘날의 성혼선언과 그 기능이 유사하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며 제주목사였던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 따르면, "교배례交拜禮는 행하지 않는다. 교배의 예는 신랑과 신부가 모두 부끄러워하며, 심지어 우는 자도 있었다. 그 습관이 익숙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를 좋아할 것인데, 지금은 공사가 모두 행하기를 천히 여긴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의 목사 재임 시기인 1702년경에 교배례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대례가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혼례에는 대례 과정이 없었다. 극히 일부에서 '올리친심'(올히친심, 오리친심)이라는, 간소화된 대례과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층에서조차 이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한반도 내륙의 전통혼례를 따르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으나 보편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올리친심'은 신부 집에서 하지만, 신랑 집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올리친심 의식의 형태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대개는 음식, 과일 등이 차려진

상 위에 목각 오리를 올려놓은 다음, 맞절하고 술잔을 주고받는 정도의 형식이다. 기러기 대신 오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서로 절하고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전안례奠雁禮, 교배례, 합근례合巹禮 형식을 혼합하여 마당에서 동시에 치른 것으로 보인다.

예장이 접수되고 신부 집의 문전고사가 끝나야 신랑과 우시는 말에서 내릴 수 있다. 신랑이 신랑방으로 들어가면 'ᄀᆞ진상'이라 하는 식반받기가 준비되어 있다. 'ᄀᆞ진상'은 갖추어진 상이라는 뜻으로 지역에 따라 도임상, 도림상, 식반, 식상이라고도 한다. 혼인날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가 신랑 집에서 받는, 격식을 갖추어 차린 큰 상이다. 신랑이 'ᄀᆞ진상'을 받으면 하님이 신랑상에서 밥을 세 숟가락 떠서 밥상 밑에 놓는다. 이것은 '코시'라고 하는데, 잡귀의 범접을 막는 행위이다. 우시로 함께 온 여성 친족원들은 신부 집(신랑 집에서도 같음)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싸 가서 사돈댁 잔치음식이라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일하는 동네 사람과 근친이 나누어 먹으면서 음식에 대해 품평하였다고 한다.

신랑과 우시들이 식사를 마치면 사돈열맹을 위해 마루로 나온다. 사돈열맹은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행사로, 양측에서 두 번 시행한다. 이는 신랑 측 우시들과 신부 측 근친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서로 사돈을 맺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일종의 혼인을 통한 연맹관계를 확인하는 행사다. 사돈열맹은 먼저 신부 집에서 하는데, 마루 중앙에 주안상을 차린다. 신랑과 신랑 측의 우시, 신부의 부모·조부모·삼촌·고모·외삼촌·이모 등 다수의 남녀 친척으로 구성된 성펜궨당과 외펜궨당들이 소개된다. 이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간단히 술잔을 주고받은 다음 하직한다.

신부 쪽도 신랑 측에서 온 우시와 숫자나 구성을 비슷하게 하여 함께 신랑 집으로 간다. 즉 신부의 부친을 포함한 성펜과 외펜에서 남녀 궨당 네다섯 명 정도가 동행한다. 신랑 일행과 신부 측 우시들이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신랑 집에 가서, 신부는 신부방에서 'ᄀᆞ진상'을 받고, 신부 측 우시들은 신랑 측의 중방 등이 음식을 대접한다. 신부한테 'ᄀᆞ진상'을 가져가는 사람은 하님이나 다복한 손윗 동서, 예펜삼촌(숙모)이다. 신부상은 아무리 무거워도 일단 들면 신부 앞에 놓을 때까지 다른 곳에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관행이다. 신부는 밥 세 숟가락 정도만 먹고 상을 물린다. 남은 음식은 대반이 방문 앞에서 구경하는 아이들 손에 한 숟가락씩 떠 준다. 제주도는 밭농사 중심이므로 쌀이 귀해 쌀밥을 곤밥(보리밥에 비해 고운 밥)이라 하였다. 아이들은 이 곤밥을 명절이나 제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먹어볼 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신부상의 쌀밥 한 숟가락 또는 삶은 달걀 하나 얻어먹는 것은 대단한 기쁨 중의 하나였다. 식사가 끝나면 신랑 측의 근친들과 신부 측 우시들은 신부 집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돈열맹을 한다. 사돈열맹이 끝나고 신부 측 우시들이 떠나기 직전에 신부의 부친 또는 근친 대표가 신부에게 시집살이에 교훈이 될 말을 남긴다. 제주는 마을내혼이므로 사돈집이 멀지 않아 잔치 당일에 이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이후 양가에서는 각각 온종일 궨당들과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온종일 베풀어진다. 신랑 집에서는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신랑 친구들과 친척,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신랑다루기'를 하면서 여흥을 즐긴다.

혼인 다음 날 아침에 신혼부부는 가까운 친척집을 방문하여 인사드리는 열맹을 한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데,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올래알림(골목알림 즉 친척집을 알려준다는 의미)이라 하였으나 문안인사, 조례, 숙기둘레라고도 한다. 시어머니나 숙모, 동서, 시누이 등이 안내하여 가까운 친척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린다. 가까운 친척들은 신랑과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접대하기도 한다. 물론 이 절차는 잔치 다음날 행하기도 하지만 며칠 뒤에 해도 상관은 없다.

잔치를 치르고 난 후에는 사돈끼리만 신부 집과 신랑 집을 서로 방문하여 당사돈끼리 인사를 나누는 사돈잔치를 한다. 잔치 다음 날 신랑·신부와 신랑 부친은 돼지고기, 술 등 음식을 준비하고 신부 집으로 가서 사돈잔치를 한다. 사돈잔치는 '두불잔치'(두번의 잔치)라고도 하며, 신랑 부친은 물론 신랑의 형제나 삼촌 등 근친이 참석하기도 한다. 신랑 부친 및 동행한 신랑 쪽 근친들이 돌아가고 신랑과 신부가 남으면, 신부 집에서도 신랑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네사람들과 친척들이 밤을 새워 여흥을 즐기며 '신랑다루기'를 한다. 결국, '신랑다루기'는 양가에서 두 번 치르는 셈이 된다. 혼인 셋

째 날은 신부의 부친과 신부 측 근친들이 함께 신랑 집을 방문한다. 이때, 신랑 측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준비하고 동행하는데, 사돈잔치를 한 후 신부 부친과 친척들은 돌아간다. 이 사돈잔치를 마지막으로 여러 날에 걸친 잔치의례는 끝나게 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잔치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이했으며, 잔치 전날 연세 드신 친척 어른들께 돼지고기 석 점의 '고기반' 한 접시라도 돌리는 가문잔치가 여전히 행해졌다. 그러나 신식 혼례를 받아들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식당에서 잔치하는 요즈음에는 돗 잡는 일과 가문잔치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사돈열맹 겸 사돈잔치도 혼인 당일에 예식장에서 모두 치러지고 있다. 혼례의 성격이 궨당이나 마을잔치에서 벗어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제주의 혼례는 의례보다 잔치가 더 중심이다. 문중조직이 발달하지 않은 제주에서 혼례는 친인척이 한데 어우러진 궨당잔치이자, 내혼으로 형성된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동네잔치이다. 제주에서 혼인은 개인이나 어느 한 집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제주의 혼례문화는 친족집단 및 마을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외가,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내륙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제주도 가정의 혼인연구(김혜숙,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제주도 가족과 **궨**당(김혜숙,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김혜숙(金惠淑)

일생의례
一生儀禮

정의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기마다 치르는 의례.

역사 일생의례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군신화에 이미 사람의 탄생을 위한 기자祈子의례가 있었음이 나타난다. 이처럼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의례가 행해지며, 출생 후 성장하여 혼례를 치르고 일정 기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산 사람들이 상례를 치른다. 상례가 끝나면 그 사람은 죽은 조상이 되어 제사를 받는다. 이러한 혼례와 상례, 제례는 모두 한 사람의 일생에서 볼 수 있는 의례이다.

일생의례에 대한 내용은 고문헌에도 나타난다. 3세기에 중국의 사가史家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의 혼인제도인 서옥壻屋, 그리고 장례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혼인할 경우, 구두로 혼인을 약속하면 여자 집에서 큰 집 뒤쪽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것을 '서옥'이라고 한다. 사위가 저녁에 여자의 집 문밖까지 도착하면, 스스로 이름을 아뢰고 무릎을 꿇고 절한다. 그런 다음 딸과의 동침을 간청한다. 이와 같은 행동을 두세 번 하면 여자의 부모가 비로소 허락하여, 사위가 작은 집으로 들어가 딸과 동침할 수 있게 한다. 여자 집에 기대어 재물을 축적하고, 낳은 아이가 장성하면 처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풍속은 음란하다. …… 남녀가 혼인하면 이미 장례를 위한 옷(수의壽衣)을 틈틈이 만들어 둔다. 이곳 사람들은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금은보화는 모두 장례를 위해 사용한다.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열 지어 심는다."

고구려 개마대산蓋馬大山의 동쪽에 위치했던 동옥저東沃沮에서는 초분草墳으로 추정되는 장례법을 다음과 같이 행했다. "큰 나무로 겉널을 만든다. 그 길이는 10여 장丈이나 되고, 한쪽을 열어 입구로 삼았다. 방금 죽은 사람은 임시로 매장하되 시체를 가릴 정도의 흙으로만 덮어놓았다가, 피부와 살이 전부 썩으면 뼈를 거두어 겉널 속에 안치한다. 한 가족의 뼈는 모두 같은 겉널에 넣고, 살아 있을 때의 모습처럼 나무를 깎아 형상을 만드는데, 죽은 사람의 수에 따라 형상의 수를 결정한다. 또 흙을 빚어 만든 세 발 달린 솥 속에 쌀을 넣고 새끼줄로 이어 겉널 입구 끝에 매달아 둔다."

이 밖에도 한韓과 변진弁辰, 부여夫餘의 장례법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부여와 고구려, 예濊에서 하늘에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에서는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다. 단편적인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이미 일생의례에 포함되는 각종 의례가 고대



결혼, 돌기념 사진틀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부터 행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관찬 자료에는 왕족의 혼례와 상례, 그리고 제례와 관련된 내용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일생의례의 범주가 관혼상제에서 벗어나 출생의례, 회갑연 등 수연壽宴까지 넓어진 것은 사실상 현대사회에 이르러서이다. 그렇다고 하여 옛사람들이 관혼상제만을 고려하고, 출산의례 같은 다른 일생의례를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미 왕족의 태胎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다만, 출생의례라는 용어를 개념화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내용 일생의례는 한 개인이 평생 거치는 의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관혼상제冠婚喪祭뿐 아니라 출산의례, 수연례도 포함된다. 곧 한 인간이 살면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겪는 의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일생의례를 '평생의례' 혹은 '통과의례'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관혼상제라고 하였다. 관혼상제는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사례四禮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례家禮 또는 사례라 불리는 내용을 관혼상제라 하는데,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기마다 치르는 의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일 가운데 어른이 될 때, 혼인할 때, 죽었을 때, 그리고 죽은 다음, 즉 죽은 조상을 대할 때의 의례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 성장해 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곧 그 밖의 개인이 겪는 일 가운데서 출생과 돌, 회갑 같은 것보다 이 네 가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사례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출생의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였다는 내용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관혼상제는 유교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구려와 동옥저 관련 기록에서 보았듯이 우리 식의 일생의례가 있었으나 고려시대에 성리학과 함께 수입된 주자의 『가례家禮』의 영향으로 우리 관혼상제는 유교의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식의 예법이 필요함에 따라 『사례편람四禮便覽』 등 예서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관혼상제의 사례四禮가 수록되어 있지만, 가례의 이론적 근거였던 효윤리孝倫理는 우리나라에서 숭조보근崇祖報根을 강조하는 면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위로는 조상제사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손을 보존하는 것을 효의 으뜸으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로 아들 얻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생긴 출산의례가 가례와 비슷한 비중으로 발달하였다.

전통적으로 관혼상제의 네 가지 예법은 한민족의 일생의례를 규정하는 규범이었지만, 오늘날 관혼상제라는 예법으로 한국인이 평생 겪는 의례를 담기에는 미



대례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회혼례도첩 | 국립중앙박물관

흡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생의례는 시대가 요구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평생의례는 한 개인이 평생에 반드시 거치는 의례라는 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결국 '일생'과 '평생'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뜻이다. 통과의례라는 용어는 반 게넵(A. Van Gennep)이 쓴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라는 책의 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반 게넵의 『통과의례』에서도 사람의 일생의례를 담고 있는데, 우리 관혼상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출생의례를 비롯하여 우리 관례와 대비될 수 있는 성인식, 그리고 혼례와 상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기독교 문화권에 제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의례에서 다루지 않은 경계의례, 계절의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통과의례는 인간 생활에서 주기성을 띤 것이든 임시성을 띤 것이든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의하여 생기는 생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달한 의례를 일컫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일생의례와는 구별해야 한다. 즉 우리 일생의례를 통과의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인의 일생의례』에서는 오늘날 일생의례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일생의례의 종류를 출산의례, 혼례, 수연례, 상장례, 제례의 다섯 종류로 나누고 의례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상류층의 의례도 있겠으나, 일반 서민의 민속으로서의 일생의례 관련 내용이 더욱 많은 양을 차지한다. 기존의 관혼상제와 비교할 때 출산의례와 수연례를 포함한 반면, 관례는 일찍이 사라졌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 관례는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행하던 제한적인 일생의례로서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쇠퇴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간혹 큰 문중에서 장손의 관례를 치르거나 유림儒林이 주관하여 관례 행사를 하기도 한다. 아이를 갖는 일부터 아이를 낳고 산후까지의 과정을 담은 출산의례는 크게 기자의례祈子儀禮, 산전産前, 산후産後, 해산解産, 산후의례産後儀禮로 나누어 세분화한 항목을 소개했다. 그리고 육아 문제를 다룬 사례도 있다.

혼례는 전통혼례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혼인을 청하여 허락해주기를 바라는 절차인 의혼議婚을 시작으로 크게 납채納采·연길涓吉·납폐納幣·혼례식·신행新行·현구고례見舅姑禮·재행再行·근친覲親으로 나누어 세분화한 항목을 설명했다. 그리고 끝으로 기타 항목을 두어 시집살이, 쌍둥이 혼인, 민며느리와 데릴사위혼, 사후혼死後婚, 재혼再婚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수연례壽宴禮는 회갑이 중심이 되었으며 회혼례回婚禮를 조사·보고한 사례도 있다.

상례는 상례와 장례를 구분하여 상장례라는 항목으로 하고, 크게 초종初終, 염습殮襲, 성복成服과 발인發靷, 치장治葬, 우제虞祭와 탈상脫喪으로 나누어 세분화한 항목을 설명했다. 그리고 기타 항목을 두어 초분草墳, 이장移葬, 화장火葬, 상엿집, 객사자와 미혼자의 죽음, 어린아이의 죽음, 전염병에 의한 죽음, 쌍둥이의 죽음, 임산부의 죽음, 상례 관련 계契 등 죽음과 관련된 민속을 수록했다. 제례는 차례와 기제사忌祭祀, 묘제墓祭 등 세 종류의 제례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묘제는 시제時祭를 뜻한다.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임자 없는 조상에 대한 공동



급묘 | 경북 청도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기제사 | 경북 예천 전주 정씨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제사를 서술했다.

이상의 분류가 일생의례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통해 예서에 담긴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의례의 관행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일생의례라면 자칫 전통적인 관혼상제가 중심이 되어 실제 관행과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의례마다 예서에서 볼 수 없는 민속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현장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일생의례에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녹아있다. 출산의례는 예서에는 없지만, 관행으로 다양한 내용이 나타난다. 혼례와 상례, 제례는 예서를 근거로 한 관혼상제와 우리나라에서 펴낸 『사례편람』 등을 기본으로, 실생활의 관행을 예법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정착하였다. 일생의례 가운데 혼례의 변화가 가장 크고 상례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제례는 종류가 축소되었지만, 그 내용은 지속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오늘날 전통적인 출산의례는 퇴색하여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병원 출산에 적절한 새로운 민속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양태는 달라지지만, 일생의례는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생의례는 과거 한국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좌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관혼상제(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1), 국역 사례편람(우봉이씨대종회, 1992), 사람의 한 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삼국지(진수, 김원중 역, 신원문화사, 1994), 조선전(이민수 역, 탐구당, 1984), 통과의례(A. Van. Gennep, 서영대 역, 인하대학교출판부, 1986),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풍속지(양재연 외, 을유문화사, 1971).

필자 김명자(金明子)

임종
臨終

정의 사망하기 직전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일.

역사 임종은 전통적인 의례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임종을 상례의식으로 채택한 예가 발견된다. 그 구체적인 의절로 병환이 심해지면 정침正寢으로 옮기는 일, 군주나 친우들이 문병하는 일, 오사五祀에 소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 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망하기 바로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독례통고讀禮通考』에서 '질병疾病(병환이 깊어지다)', '정종正終(죽음을 바르게 맞이하다)'이라는 절차를 마련하여 초종初終 이후의 절차와 구분하는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임종이 상례의 독립된 절차로서 등장한 것은 1934년 총독부에 의해 반포된 「의례준칙」이 처음이다. 이후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절차로서 임종이 확인된다. 전자에서는 임종에 대해 "병환이 위독해지면 근친자가 곁에서 모시고 안팎을 안정시키며, 운명하면 사자의 신체와 수족 등을 정제하여 뒤틀리지 않도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상례의 초종의식 가운데 습襲 이전까지의 의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략화한 초종의식이

라 볼 수 있다. 후자에서는 "병자가 위독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다음의 일을 진행한다. ① 병자에게 꼭 물어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병자가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한다. ②가족은 속히 직계 존·비속 및 특별한 친지에게 기별하고, 병실에 모여 병자의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다만, 어린이의 병실 출입은 삼간다."라고 하였다. 이후 '수시收屍'와 '발상發喪'의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사망하기 직전에 진행되는 일련의 의절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내용 임종의 사전적 의미는 '장사將死', 즉 '죽음에 임해서', '사망하기 바로 전에'라는 뜻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임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죽음을 앞둔 부모의 손발을 잡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의식이다. 둘째는 첫째 의미가 일반화된 것으로, '숨을 거둔다'는 뜻이다.

병원에서 임종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던 임종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병세가 악화하여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안방 아랫목으로 옮겨 눕힌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자식들은 환자의 손발을 잡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이때 가족들은 방을 비우지 않고 환자가 유언하면 주의 깊게 받아 적는다. 임종이 임박한 듯 보이면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 문 옆에 눕히고, 환자의 코와 입 사이에 새솜을 놓아서 그 움직임 여부를 통해 죽음을 확인한다. 죽음이 확인되면 가족들은 흰옷으로 갈아입고 몸에 지녔던 비녀와 반지 등을 빼놓은 뒤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자녀들이 곡을 하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손으로 망자의 얼굴을 내리 쓰다듬어서 눈을 감기고 햇솜으로 입과 코, 귀 등을 막아 둔 뒤 홑이불로 망자의 몸을 덮는다.

특징 및 의의 임종의 과정은 『가례家禮』에 규정한 초종의식과 많은 부분 중첩되어 있다. 드물기는 하나 중국에서도 임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초종의식 이전, 즉 사망하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과정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참고문헌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三禮通論(錢玄, 南京師範大學出版社, 1996).

필자 장동우(張東宇)

입관
入棺

정의 염을 한 시신을 관에 넣는 것.

내용 습襲이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것이라면, 소렴小殮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이고, 대렴大殮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묶어 입관하는 의식이다. 습에 쓰이는 옷인 습의襲衣는 원래 사의死衣로 오늘날의 수의壽衣라 할 수 있다.

입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을 시상屍牀 서쪽에 놓아두고, 관 밑바닥에 칠성판七星板을 깔고 이불을 편 다음 대렴금大殮衾을 펴놓고 소렴한 시신을 그 위에 모신다. 이를 장포로 묶어 시신을 관 속에 넣는데 조금이라도 기울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때 다섯 주머니에 담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깎아 넣은 주머니를 관 좌우와 위아래에 넣는다. 그리고 관 속 공간에는 생전에 입었던 옷 등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보공의補空衣'라 한다. 요즈음에는 옷 대신 휴지를 넣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삼일장을 하므로 사망 다음날 입관한다. 그러나 장례 기간이 길었던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천자는 7일 만에 빈殯하고, 제후는 5일에 만에 빈하고,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은 3일 만에 입관하였다. 공자는 죽은 지 3일(만 2일)이 지난 뒤 입관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소생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니 적어도 3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복이나 관과 같은 장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데 적어도 3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멀리 있는 친척들이 부음을 듣고 찾아오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미리 시신을 묶어 관 속에 넣어버리면 친척이나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의 얼굴이라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시대 유계兪棨(1607~1664)는 『가례원류家禮源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예기禮記』에

서는 3일에 염한다고 하였으나, 조간자趙簡子는 죽은 지 열흘이나 되어 구더기가 혀와 귀에 생겼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으므로 3일 전에 입관하는 것은 살인의 기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3일 이전에 입관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고 하였다.

초상이 나면 먼저 주선하는 것이 관을 만드는 일이다. 관棺은 초상을 당해 만들기도 하지만 생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경우도 많았다. 초상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므로 적당한 관목을 구하기가 어렵고, 옻칠도 해야 하므로 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의와 관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송사의 도로서, 수의와 관곽이 어버이를 위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관을 만드는 재료는 소나무·오동나무·버드나무·뽕나무 등이 있다. 그러나 유삼油杉이 제일 좋고, 그다음이 잣나무, 소나무 순이다. 유삼은 익계목으로 전나무와 비슷하며 매우 기름지고 내구성이 강하여 가장 좋게 여겼다. 전나무는 귀신을 모으는 성질을 가져 관재로 많이 쓰여, 소나무로 만든 널 값이 천 냥이면 전나무로 만든 널 값은 만 냥이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재로 가장 많이 쓰인 나무는 소나무였다. 소나무나 오동나무 관목을 구하기 힘든 서민들은 버드나무를 사용하기도 했다. 관의 크기, 즉 높이와 길이는 시신의 길이와 부피에 맞도록 한다. 관의 모양은 머리 쪽이 넓고 발 쪽이 좁은 두광족협頭廣足狹의 형태로 상판[천판]과 좌우 측판의 접합부는 못[鐵釘] 대신 나비장(나비 모양의 나무 조각)을 끼워 결합하고, 앞뒤 측판은 요철[凹凸] 모양으로 파서 고정한다. 일반인의 관은 나비장이 한쪽에 두 개씩 양쪽 모두 네 개이며, 임금의 관은 한쪽에 세 개씩 모두 여섯 개를 쓴다.

비어 있는 관棺을 '친櫬'이라 하고, 시체가 들어 있는 것을 '구柩'라 한다. 관과 곽槨을 쓰는 것은 부모의 몸이 흙으로 화할 때까지 흙이 쉽사리 부모의 피부에 닿지 않게 하려는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내관과 외관을 사용하였다. 관 바닥에는 칠성판을 깔고 시신을 안치한다. 칠성판은 송판에 북두칠성 모양 구멍을 일곱 개 뚫는다. 이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하는 한편,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신에 빌어 광중壙中의 잡귀를 쫓기 위한 것이다.

조선시대 관곽은 귀후서歸厚署에서 제작하여 팔고 예장에 공급하였다. 귀후서는 고려시대에 관곽색이었다가 조선 태종대에 귀후소歸厚所로 명칭이 바뀐 관청이다. 귀후소란 죽은 사람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임금의 관은 '재궁梓宮'이라 하며, 옻칠을 여러 번 칠해 벽돌처럼 단단하다 하여 '벽椑'이라고도 한다. 재궁은 국왕으로 즉위한 해에 소나무의 황장판을 사용하여 공조에서 만들어 옻칠을 백 번 하고, 해마다 한 번씩 덧칠한다.

특징 및 의의 입관은 원래 안방 혹은 정침正寢에서 상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였다. 그러나 장례를 전문적으로 치르는 장례식장이 생기면서부터 혼을 모신 빈소가 아닌 별도 입관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염습하여 입관한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에서는 초혼·수시·습(목욕)·소렴·대렴 등 입관 절차를 3일이란 시차를 두고 행하였지만, 오늘날 장례식장에서는 목욕과 소렴, 대렴, 입관을 사망한 다음 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입관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참고문헌 家禮源流, 國朝喪禮補編, 禮記, 조선초기 상장의례연구(정종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필자 정종수(鄭鍾秀)

입맷상

정의 큰 잔치를 치를 때 큰상을 차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차려 대접하거나, 큰상을 받는 주인공이 먹을 수 있도록 앞에 작게 차려주는 음식상.

내용 혼례, 수연례壽宴禮, 회혼례回婚禮 같은 큰 잔치를 할 때 이를 맞이하는 주인공에게 축하의 뜻으로 경사스럽고 화려하게 큰상을 차려주는데, 이 상은 의례가 끝날 때까지 차려진 음식을 바라만 보는 망상望床이므로, 잔치의 당사자들이 의례를 치르는 동안 입맛을 다실 수 있게 조금 먹어보는 용도로 앞에 입맷상을 차려준다. 예를 들면 혼례 시, 대례大禮를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간 신랑이 대례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요기할

수 있도록 차려주거나, 대례가 끝난 신랑·신부가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차려준다. 또한, 대례大禮를 치른 신부가 시댁으로 갔을 때 시부모가 새로 맞이한 며느리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표시로 큰상을 차려주는 신부례新婦禮를 행하는데, 이때에도 신부 앞에 입맷상을 차려준다.

입맷상은 흔히 장국상으로 간단하게 차린다. 주로 국수장국상[麵床]인데, 집안에 따라 함께 차리는 음식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개 입맷상에는 큰상에 오르는 조과·유과·생과 등을 골고루 조금씩 담고, 국수장국을 비롯한 전유어, 편육, 떡, 화채 등을 놓는다. 조선시대 왕의 종친으로 서울 반가班家의 음식문화 특징을 보여주는 '맹현가孟峴家'에는 입맷상 음식차림 품목을 적은 『음식발기』가 전해온다. 이에 따르면, 입맷상으로 면, 신선로, 찜, 전, 편육, 회, 생실과, 조과류, 떡, 화채 등 35종의 음식을 차려주는데, 이 또한 국수장국상이다. 국수로는 메밀국수와 밀국수를 쓰고, 온면 대신 냉면을 쓰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 차리는 음식에 차이가 있는데, 경남에서는 입맷상에 국수보다 떡국을 놓는 장국상을 차린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입맷상은 큰상을 받는 주인공들이 의례가 끝날 때까지 간단히 요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로 국수장국상을 차림으로써, 잔치를 경하하고 길이가 긴 국수처럼 수복壽福이 길게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즉, 혼례 시 입맷상의 국수는 수복과 더불어 혼인관계, 다시 말해 결연結緣이 오랫동안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회갑례의 경우는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것이다.



입맷상 | 1999 | 이길표

참고문헌 서울의 전통음식-북촌 맹현음식을 중심으로(이귀주,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이조궁정요리통고(한희순·황혜성·이혜경, 학업사, 1957), 한국음식-역사와 조리(윤서석, 수학사,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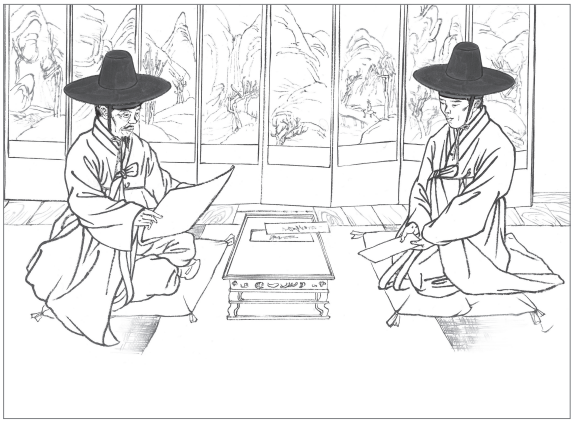
필자 정현미(鄭賢美)

자관자례
字冠者禮

정의 관례冠禮를 행할 때에 관자冠者의 자字를 지어주던 의식.

역사 성리학 도입과 함께 널리 보급된 관례의 시행 단계에서 행하는 자관자례字冠者禮 역시 조선 중기 이후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고려시대부터 관례의 기록은 나타난다. 즉, 『고려사高麗史』에는 광종·예종·의종대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하면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예서禮書에 따라 관례를 행하였지만, 대부분 예서보다 간소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근래에는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단발령으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고, 다만 여자들의 계례笄禮만 구식 혼례식에 흡수되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은 시가례·재가례再加禮·삼가례三加禮 등 삼가三加를 하나로 합하고, 축사祝辭 또한 한 번으로 그치게 하는 등 간소화를 추구하였지만, 정약용丁若鏞은 고례에 따라 이 셋을 분리하여 예를 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자관자례는 성인으로서의 혹은 인격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마지막 단계이기에 생략할 수 없었던 의식이었다.

내용 관례를 행할 때 삼가례와 초醮(술 한 잔을 내리는 의식)를 마친 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행하는 의식이 자관자례이다. 빈賓은 층계를 내려와 동향(대청 서쪽에 해당함)하고, 주인은 층계를 내려와 서향한다. 관자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조금 동쪽으로 가서 남향한다. 빈이 자字를 지어주는데, "백○○○보伯某父(보父는 보甫이니, 남자의 미칭美稱이다)"라고 한다(둘째면 중仲, 셋



자관자례 | 국립민속박물관

째면 숙叔, 막내면 계季). 관자는 대답하기를 "○○○가 비록 불민不敏하오나 감히 밤낮으로 공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다. 관자가 절할 때 빈은 답배하지 않는다. 관자에게 자를 지어주는 축사식祝辭式(축하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 "빈이 혹 따로 글을 써서 자字를 지어주는 뜻을 일러주는 것도 좋다. 예의禮儀를 갖추어 좋은 달 길한 날에 너의 자字를 밝게 고하노라. 이 자字는 매우 좋아 모사髦士(뛰어난 선비)에게 마땅하고 크게 어울리니 길이 간직하여라."

계례를 행할 경우에도 자관자례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즉, 족두리와 비녀를 꽂아주고 난 후 이어서 술 한 잔을 내리는 초醮 의식이 끝나면, 바로 자관자례를 진행한다. 빈과 주인이 함께 층계를 내려가는데, 주인은 동쪽으로 빈은 서쪽으로 내려간다. 계자笄者가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조금 동쪽으로 남향해 서면, 빈은 축사祝辭하고 '○○'라고 자字를 말하면 계자는 네 번 절하고 빈은 답배하지 않는다. 이때의 축사식은 남자의 자관자례 축사식과 동일하나, 다만 '모사髦士(뛰어난 선비)' 대신에 '여사女士'로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생략한 경우가 많았다.

특징 및 의의 술로써 예를 행하는 정화의례淨化儀禮가 끝나면 시행하는 것이 자관자례이다. 이 의절은 관례자에게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주어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례이다. 예로부터 이름은 그 사람에 어울리고, 자字는 그 이름에 어울리기를 바랐다. 성인이 되는 시점에 새로운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기성사회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합의례가 된다는 점에 자관자례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與猶堂全書, 朱子家禮, 관혼상제(이민수, 을유문화사, 1975), 조선시대 관혼상제-1(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조선의 관혼상제(사회과학원, 중심, 2002),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필자 박홍갑(朴洪甲)

자리걷이

정의 발인發靷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죽음이 발생한 집안에서 죽음의 부정不淨을 없애고 망자를 위로하며, 아울러 탈상脫喪 전까지 망자를 모시는 상청喪廳의 자리를 망자에게 묻는 무속 죽음의례.

내용 자리걷이는 서울, 경기, 황해, 영동 등지에서 행해지는 무속 죽음의례의 하나이다. 여러 지역에서 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아직 서울·경기 지역 사례 외에는 조사된 바가 없다. 서울, 경기 지역 자리걷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경기 지역 자리걷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리걷이는 망자의 시신을 매장하고 돌아온 날 밤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발인 전에 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관을 놓고 명정銘旌과 망자의 옷 한 벌을 시신 위에 덮어 놓고 무당을 불러 자리걷이를 한 다음에 출상하였다고 한다. 이를 '관넋이'라고도 한다. 그러다가 양주 지방에서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당일 저녁에 망자가 운명한 자리, 즉 망자기 기거하던 방에서 자리걷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자리걷이를 '관넋이'와 동일시하는 것과 달리, 서울 무속에서는 '관넋'과 자리걷이가 구분되거나 아예 '관넋'이란 의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자리걷이는 발인 당일 저녁에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집에서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리걷이는 진오기굿으로 알려진 서울·경기 지역 무속의 죽음 관련 굿보다 규모가 더 작은 의례이다. 복잡한 의례절차와 내용을 가진 큰 굿인 진오기굿과 비교할 때, 자리걷이는 일종의 약식의례라 할 만큼 작은 규모의 의례이다. 다양한 춤이나 노래, 음악이 수반되지 않으며, 큰 굿처럼 전문 악사가 반드시 음악을 담당하지도 않는다. 서울·경기 지역 자리걷이의 경우, 일반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리짝을 이용해서 진행한다. 자리걷이의 절차 역시, 진오기굿의 절차를 따르나, 바리공주 신화를 구송하는 말미와 도령돌기 같은 진오기굿의 핵심절차를 행하지 않는다.

자리걷이에서 중심이 되는 절차는 대내림과 영실이다. 대내림은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일반 사람이 대를 잡아 망자의 넋을 내리는 것이다. 대내림을 통해 망자는 자신의 한스러움을 말하고 자기가 살던 집안과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살펴본다. 영실 역시 망자의 넋이 무당에게 실려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다. 대내림과 영실을 통해 망자는 못다 한 이야기나 자기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삶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망자와 유족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응어리를 풀고 화해하며,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한편, 자리걷이를 통해 망자는 탈상 때까지 자신이 모셔질 상청의 자리를 정한다. 이외에도 자리걷이에서는 진오기굿에서 행해지는 저승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제삼성이나 베가르기, 망자의 환생을 확인하는 절차도 행해진다.

자리걷이는 전담 무당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넋대신'을 몸주로 모시는 무당들이 자리걷이를 전담한다. 자리걷이 무당들은 다른 무구巫具나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리짝을 사용한다. 이들은 넋대신을 무신도 또는 고비전이라고 하는 오린 종이 형태로 모신다. 넋대신 무신도는 신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서울·경기 지역 무속인 자리걷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른 지역 무속의례로는 제주도의 귀양풀이를 들 수 있다. 귀양풀이는 장례를 지내고 돌아온 날 밤에 집에서 행하는 의례로서, 무당의 입을 빌려 망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영개울림'을 하며, 저승차사에게 망자를 저승까지 고이 데려가도록 기원한다.

특징 및 의의 자리걷이의 일차적 특징은, 무속 죽음의례의 하나로서 진오기굿과 일정한 절차를 공유하면서도, 의례 공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진오기굿은 죽음의 부정 때문에 망자의 집에서 행하지 않는다. 자리걷이는 무속의 죽음의례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망자의 집, 망자기 기거하던 방에서 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집가심', '방가심'이란 이칭에서도 잘 드러나듯 자리걷이는 죽음이 발생한 망자의 집과 망자의 방에서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을 가시기 위한 의례이기 때문이다. 자리걷이가 행해지는 발인 직전과 직후의 시간은 죽음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다. 이 시간은 죽음이 발생한 집과 망자가 기거하던 방에서 죽음의 부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때이다. 무속에서는 죽음 발생 이후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죽음의 부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진부정'이라 한다. 이처럼 죽음으로 인한 진부정을 집 안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 자리걷이이다. 이런 이유에서 자리걷이는 집 안, 그중에서도 망자가 기거하던 방에서 행해진다.

자리걷이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무속의 죽음의례와 유교 상례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자리걷이는 장례 직전에 관을 두고 행하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발인을 마치고 온 당일 밤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자리걷이를 행하는 시점은 그것이 유교식 상례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행해짐을 보여준다. 또한, 자리걷이를 통해 망자를 탈상 때까지 모시는 상청의 자리를 정하는데, 이 역시 자리걷이가 유교 상례와의 관련 속에서 행하는 죽음의례임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무속의 죽음의례는 유교 상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무속의 자리걷이는 유교 상례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행해짐으로써, 무속 죽음의례를 유교 상례를 비롯한 타 종교 죽음의례와의 상호 연관관계에서 접근해야 함을 확인해 준다.

참고문헌 서울지역 자리걷이 연구(김헌선, 서울진오기굿-바리공주연구, 민속원, 2011), 서울지역 자리걷이 연구(이명숙, 실천민속학연구8, 실천민속학회, 2006), 장제와 관련된 무속연구(이두현, 문화인류학6,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5).

필자 이용범(李龍範)

자연장지
自然葬地

정의 화장한 유골을 분골粉骨하여 수목·잔디·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그대로 묻거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골용기에 담아 장사하는 것, 혹은 장사하는 터.

역사 자연장의 한 유형인 산골散骨은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기록으로 남아있다. 신라 문무왕은 681년 7월 1일에 사망했고,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골이 경주 앞바다 대왕암에 수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대왕암을 탐사한 결과 골호나 유골을 안치했을 만한 흔적을 찾지 못해 문무왕의 유골은 바다에 산골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어 효성왕孝成王(742년 화장)의 경우, "동해에 뼈를 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비슷한 기록이 선덕왕·진성왕·경명왕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육두품六頭品이었던 김지성金志誠(652~720)의 부모와 가문 전체가 불교식 화장을 하여 동해에 산골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산골은 후대로 이어져 고려시대에도 유골을 산이나 강물에 뿌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고려 말기인 1389년(공양왕 원년)의 사헌부 상소에는, "요즈음 불교의 화장법이 성행하여 …… 심한 자는 뼈를 태워 그 재를 날려 물고기와 새들에게 보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산과 물에 산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 시대에 걸쳐 화장이 금지되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2년 화장 금지가 해제되었다. 이후 여러 기록에 산골하던 모습이 남아 있다.

현대에도 화장은 곧 산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TV드라마와 영화 등에 산골 모습이 많이 등장하였다. 그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산골을 금지하려고 "의법 조치한다."라는 경고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1월 10일 자로 시행된 조례를 통해 '산골'을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2003년 5월 1일부터는 경기도 파주 용미리 제1묘지에 '추모의 숲'이라고 명명한 산골 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제도화된 산골이고, 공식적인 산골 장소였지만, 2008년 자연장이 법제화된 후 산골이라는 용어만 삭제하고 장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이 시기에 스위스에서 시작하여 독일 등에서 성행하던 '수목장'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수목장 단체 등의 집중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언론에서 수목장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그 와중에 불법 수목장 사업자까지 등장하였다. 논란 끝에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오랜 역사를 가진 산골은 제도화되지 못하였고, 외국에서 도입된 자연장과 수목장림은 제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반 인천에서는 정기적으로 배를 띄워 바다에서 산골을 행하고 있다.



인천 가족공원 수목장림 | 인천 부평 | 2009 | 박태호

내용 자연장의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면, 먼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을 해야 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흙·용기 외에 유품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골분을 지면으로부터 아래로 30㎝가 넘는 깊이에 매장하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흙과 섞어 묻어야 한다.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성

수지제품·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고, 수분으로 용기 형체가 허물어져야 하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한 그루당 한 개만 설치하고, 면적은 150㎠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이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동표지의 경우는 부부, 가족, 종중 또는 문중, 종교단체, 불특정 다수인의 종류가 있다. 표지에는 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연고자 이름,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록한다. 표지를 대신한 전자 칩에는 자연장지의 위치 및 고인의 인적 사항, 업적 또는 회고록 등 고인과 관련된 정보 및 설치자(연고자)의 인적 사항을 저장할 수 있다.

자연장지는 공설 자연장지와 사설 자연장지로 구분하는데, 공설 자연장지는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고시한 수목장림과 보통 자연장지를 말한다. 사설 자연장지는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한 자연장지로 구분된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급경사지에는 조성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한 금지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관련법에 의한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과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보호구역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급하고 있는 자연장의 모델은 독일의 수목장림과 영국 묘지의 메모리얼 가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각 나라 자연장의 유래나 특징 등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및 미국의 자연장(Natural burial)은 생분해성 수의 및 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그대로 온전하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토지(묘지)에 매장한다. 자연장주의자들은 적지 않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화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자연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화장협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묘지 등에 산골하는 것도 자연친화적인 장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자연장(Naturbestattung)은 묘지 내부시설과 묘지 밖 산림에 설치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자연의 산림에 따로 설치된 자연장지는 우리 장사법상 수목장림에 해당된다. 그리고 묘지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한 잔디 형태의 자연장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자연장은 화장을 전제로 하며, 바다에 산골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묘지 안에 있는 자연장지는 넓은 잔디밭 또는 다년생풀로 꾸며진 정원 모습이고 화초 형태의 자연장지는 그리 흔치 않다.

일본의 자연장은 바다 산골과 수목장으로 구분되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바다 등에서 상당한 격식을 갖추어 행하는 산골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방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목장은 묘지로 사용 허가를 받은 지역에 수목형 자연장지를 마련하고, 그곳에 유골을 매장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독일과 구분된다. 그 밖의 육지에 산골하거나 묻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자치단체 조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일반적인 장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장自然葬'이라는 말은 시민운동단체인 '장송의 자유를 추진하는 모임(본부 도쿄)'이 1991년 2월 출범에 즈음하여 내건 '설립 취지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이 운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면서 1995년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대표적인 일본어사전에 등재됨으로써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스웨덴의 묘지에는 대체로 하나 이상의 미네슬룬드(minneslund, 추모의 작은 '터' 또는 '숲')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묘역이 바로 자연장지이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된 것은 스톡홀름 시에 있는 스코그스키르코고르덴(Skogskyrkogården, 영어명 Woodland Cemetery) 묘지의 미네슬룬드로 이와 같은 작은 숲 형태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잔디 형태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부 화초 형태도 있다.

여타의 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산골을 허용하고, 또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공공용지나 도심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라도 서면 동의만 있다면 산골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으며, 공해상

같은 제한적인 장소에만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바다 산골은 해안으로부터 3마일 밖 한적한 곳에서 산골하도록 하는 경우가 흔하다. 대체로 중앙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산골을 허용하고,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 등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특징 및 의의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하반기부터 집 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부모·가족의 뼛가루를 묻는 자연장自然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2012년 11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3%인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자연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연에서의 산골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도 산골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제도화가 그리 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기법 연구(산림청, 2006), 자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김수봉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자연장의 유형 분류 및 시각적 선호도(김철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자연장제도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이필도·김혁우, 장례문화연구4-2, 한국장례문화학회, 2007), 한국 자연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안우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화장 후 납골, 봉안·자연장 등의 발전방안 연구(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10).

필자 박태호(朴台浩)

작명
作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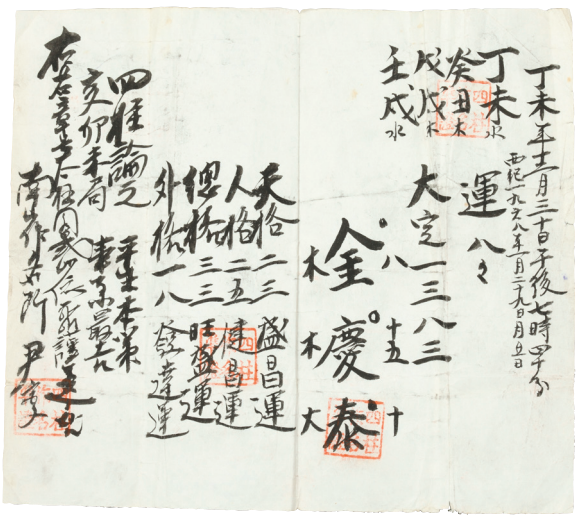
정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등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

역사 보통 이름이라 하면 성姓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名]이지만, 성과 이름을 모두 합쳐 이름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한국인의 이름, 즉 성명姓名은 부계 혈통을 나타내는 성姓과 개인을 가리키는 명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은 본관과 결합하여 가문을 나타내고, 명은 항렬을 통하여 가문의 대수를 나타낸다. 지배층에서 성명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초기부터이며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다변화되며 친족공동체가 분화됨에 따라 성과 본관도 세분화를 거듭해 왔다.

본디 한국인의 이름은 토착어인 알타이제어(Altaic languages)로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자漢字의 유입과 성姓의 보급에 따라 고려시대에서 점차 후대로 올수록 토착어 이름을 짓는 경우가 줄어들며 한자식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왕족도 토착어 이름을 갖는 경우가 많았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양반, 심지어 양민인 경우에도 한자식 이름을 짓는 경향이 많아졌다.

『예기禮記』「곡례曲禮상上」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라의 이름으로 짓지 않으며, 해와 달로 짓지 않으며, 질병의 이름으로 짓지 않으며, 산천의 이름으로 짓지 않는다名子者 不以國 不以日月 不以隱疾 不以山川."라고 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법에 대해 적고 있고, 『춘추좌전春秋左傳』「환공桓公」 6년 조條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짓는 방법을 신信·의義·상象·가假·유類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하륜河崙(1347~1416)이 아들의 이름을 '구久'라고 지으면서 이름에 담긴 뜻에 대한 글을 적었듯이, 예전에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름에 담긴 의미를 함께 적어서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내용 한국인에게 이름은 단순히 호칭 부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술적 부호의 역할도 한



작명문서 | 1968 | 국립민속박물관

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에 대한 장래 희망과 기원을 담아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한번 지어지면 수없이 불리는 이름은 공감원리(sympathetic principle)에 근거하여 이름에 담긴 뜻과 소리 등을 통해 당사자의 입신출세와 부귀영화, 무병장수, 행복 등을 유도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우선 부르기 쉽고 듣기 좋으며 뜻이 좋게 짓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렇지만 전문 작명가들은 그 밖에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수리數理·사주四柱·역상易象 등도 반드시 참고해서 길한 이름을 짓는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전문 작명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작명 방법은 대략 아홉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역상易象 성명학, 수리數理 성명학, 음령오행音靈五行 성명학, 용신用神 성명학, 삼원오행三元五行 성명학, 측자파자測字破字 성명학, 곡획曲劃 성명학, 신살神殺 성명학, 소리 성명학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수리 성명학과 음령오행 성명학이다.

한국사회의 작명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각 가문의 항렬자를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이다. 항렬자를 따르는 방식은 주로 양민 이상의 남성에게,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짓는 방식은 노비나 여성에게 적용되었다. 항렬자를 따르는 경우도 다시 세분되는데 오행五行을 기준으로 하기, 천간天干을 기준으로 하기, 지지地支를 기준으로 하기, 숫자數字 순서로 하기, 덕목德目 문구로 하기, 절충하기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항렬자를 따라 짓는 경우에는 대부분 오행의 상생 배열을 따르고 있다.

- 오행 상생: 木–火–土–金–水
  남양홍씨(당홍계): 桂–熙–重–鉐–淇–東–然–喆–商–求
- 숫자: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반남 박씨: 雨–天–春–憲–吾–章–虎–謙–旭–平
- 덕목 문구 → 오행 상생
  양성 이씨: 聖–賢–仁–義–禮–智–洙–來–煥–奎–鎬–濟–柄–燦–基–鍾
- 천간 → 오행 상생
  고령 박씨(부창정공파): 九–炳–河–成–紀–慶–新–重–癸–根–爀–奎–鐸–求

항렬자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출생 상황(태몽·시기·장소·서열)을 반영하기, 부모의 소망·감정을 반영하기, 외모·재능의 특징을 반영하기 등으로 구분된다. 요즈음에는 순우리말로 짓기, 믿는 종교의 인명을 빌려서 짓기, 영어로 말하기 좋게 짓기 등의 경향도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부모의 희망에 따라 개성 있는 이름으로 작명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이름의 주인공인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는 개별성個別性,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중복성重復性, 성과 항렬자 등을 통해 가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계통성系統性 등이 있다.

기복신앙祈福信仰의 관점에서 작명은 다섯 가지 특성이 있다. 즉, 주술성呪術性—역설逆說과 유사類似 주술, 음양오행의 중화中和 및 상생相生 중시, 상수역학象數易學의 길수吉數 중시, 고유성固有性과 운명성運命性, 현세現世 중시 및 세속성世俗性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작명은 '주술성—역설과 유사 주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어난 아기가 장차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부모는 우선 아기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한다. 좋은 이름은 부를 때마다 잘되라는 축복이 되며 나쁜 이름은 망하라는 욕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천명위복賤名爲福'이라 해서 귀한 아이일수록 오히려 아명을 비천하게 지어 주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귀邪鬼들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종高宗의 아명은 '개똥이'였고, 황희黃喜 정승의 아명은 '도야지'였다.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본래 소망대로라면 '길동吉童'이나 '귀동貴童', '금동金童', '옥동玉童'이, '좋은 아이', '귀한 아이'란 뜻이므로 이름으로 적합하겠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동介同', '계동季同'이란 이름을 붙여서 잡귀의 질투를 예방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몽골에서도 역신疫神을 속이기 위해 집에서 사용하는 '이상한' 이름이 따로 있다. 남자아이가 여자 이름을 가지거나, 심지어 개의 이름을 가지기도 한다. 딸아이에게 '끝년'이나 '말숙이', '종희', '막녀' 등으로 이름을 붙여 자녀의 출산을 중단하고자 했으며, 아들이 귀한 집에서는 딸아이에게 '붙들이'나 '바래', '후남後男'

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끝'이나 '말末', '종終', '막莫'은 마지막이란 뜻으로 단산斷産을 기원하는 것이고, '붙들이'나 '바래', '후남'은 사내아이를 붙들어 오거나 사내아이를 바라는 것이며, 다음[後]은 꼭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는 것으로, 이상은 모두 유사 주술적 행위이다. 이러한 주술적 이름 짓기 풍속은 티베트에도 있으며 구약성서시대에도 귀신들이 매력적인 아이를 소유하려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혐오감이 느껴지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천명위복'의 작명 행위는 초자연적 존재인 귀신을 사람이 직접 속이고 조작·통제하려는 주술 행위이다. 예쁜 아기를 보고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놈 밉게 생겼다."라고 반대로 말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딸아이에게 '말', '종', '후남' 등의 이름을 붙여서 단산이나 득남을 기원하는 행위는 유사 주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언참言讖 사상과 말의 주력呪力을 믿는 관념이 함축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각 가문의 항렬자를 따라서 이름을 짓느냐 여부가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이름의 주술적 효력을 믿고서 아이에 대한 장래의 희망과 기원을 담아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다.

참고문헌 성명학에 대한 인식(김백만, 새국어생활1-1, 국립국어원, 1991), 이름의 의미와 성서시대의 작명법(권혁승, 활천54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98), 티베트 출산풍속의 생태학적 이해와 환생의 생명관(임재해,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한국 일생의례의 성격 규명과 주술성(김만태, 정신문화연구34-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이복규, 온지논총16, 온지학회, 2007), 현대 몽골인명의 민속학적 일고찰(박환영, 한국민속학36, 한국민속학회, 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방법과 특성에 관한 고찰(김만태, 종교연구65, 한국종교학회, 2011).

필자 김만태(金萬泰)

잔반
盞盤

정의 제례 때 술을 올리기 위한 술잔과 그 받침대.

내용 술잔과 그 받침대를 말한다. 사전에서는 받침대만 잔대라고 하나, 경상도에서는 잔반을 '잔대盞臺'라고



잔과 받침대 | 국립민속박물관

도 한다. 역사적으로 금, 은, 사기沙器, 유기鍮器, 목기木器 등 다양한 재료의 술잔과 잔대가 사용되었다.

조상제사의 중심 의례인 기제사에서는 세 번의 술을 올린다.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이 그것이다. 술은 제례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최소한 '주과포酒果脯'만 마련되면 제례를 모실 수 있다는 향언鄕諺에서도 과果나 포脯보다 술이 더 먼저 언급되고 있다. 잔반은 이러한 술을 담아서 신께 올리는 도구이다.

헌작獻爵 때 잔반의 사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이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오른쪽 집사가 신위 앞에 놓인 잔반을 받들어 주인에게 주고 주전자를 잡아 술을 잔에 따른다. 주인은 이것을 왼쪽 집사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오른쪽 집사가 다시 신위 앞의 잔반을 받들어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잔반을 받아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茅沙 그릇에 세 번 조금씩 기울여 따르고, 잔반을 다시 집사에게 주어서 제자리에 놓게 한다."

술은 모두 집에서 빚어서 사용했으나, 근대에 들어서서 주세법酒稅法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술 빚는 것을 금지하면서 양조장이나 공장에서 만든 술을 사서 쓰게 되었다. 최근 주세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가양주家釀酒, 즉 집에서 술을 빚어서 쓰기도 한다. 가정에서 술을 빚는 일은 모든 전통음식과 마찬가지로 장시간의 노동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다.

특징 및 의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 가운데 하나가 술이다. 잔반은 이 술을 올리는 데에 쓰는 술잔과 잔의

받침인 잔대를 말하며, 신위 수만큼 잔반을 준비한다.

참고문헌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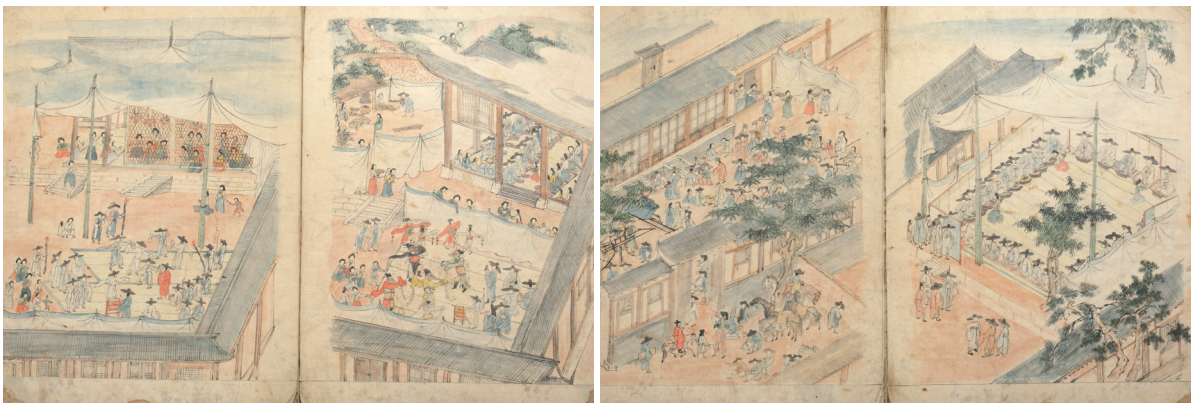
정의 일생의 특정한 날에 가족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념하는 일.

개관 잔치는 대개 집안 단위의 기념행사를 지칭한다. 또한, 집안에서 특정한 사람이 관습적·의례적으로 내려오는 특정한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를 사회적으로 공지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해당자가 있는 집에서 술과 음식 등을 장만하여 아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대접하는 것을 일컫는다.

내용 요즈음 잔치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확대되어 일생의례一生儀禮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예가 많다. 꽃잔치, 노인잔치, 큰잔치 등 잔치가 축제를 대신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본래 잔치라는 말은 사람의 일생에서 반드시 거치는 일종의 매듭, 즉 일생의례의 수행양식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잔치는 반드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단위로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초청 대상과 범위는 정해진 바 없다. 또한 형식 역시 특정한 방식이나 예법이 굳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성의나 능력 등에 따라 더 다양한 것이 일반적이다.

잔치는 정일 잔치와 비정일 잔치가 있다. 정일 잔치는 매년 정해진 날에 치러지는 잔치를 일컬으며, 생일잔치가 가장 대표적이다. 생일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쇠게 되는데,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족은 물론 친구나 친지를 중심으로 임의적인 행사를 마련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다. 생일잔치의 일종이면서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잔치도 있다. 돌잔치나 회갑잔치가 그것이다. 또 혼례 관련 기념일도 잔치를 동반하는 예가 있다. 혼인잔치에는 으레 국수를 먹기 때문에, 결혼을 언제 하느냐고 묻는 의미에서 언제 국수를 먹여줄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 혼인잔치는 말할 것도 없이, 요즈음은 결혼기념일을 챙기며, 또한 결혼한 지 60년이 지나면 회혼잔치를 크게 벌이기도 한다. 이는 특정한 날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정일 잔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비정일 잔치도 있다. 백일잔치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잔치이다. 또 예전에는 과거에 합격하면 삼일유가三日遊街를 비롯해서 크게 마을 잔치를 벌였으며, 근래에는 사법고시 같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마을 잔치를 벌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비정일 잔치에 속할 것이다. 요즈음은 백일잔치가 일반화되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흰옷만 입히다가 백일이 되면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히고, 배냇머리를 깎아도 된다. 또 몸무게가 두 배가 되는 등 아이에게도 백일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래서 친지들을



담락연첩 | 1747년경 | 국립민속박물관
1724년 갑진년에 있었던 월성 이씨 집안의 잔치를 묘사한 그림 및 글을 수록한 화첩

모시고 백일잔치를 치른다. 이때 삼신상을 차려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원한다. 또 여러 가지 떡을 장만하는데, 백 살까지 장수를 누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백설기를, 붉은색이 부정을 막고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서 수수팥떡을, 단단하고 차지게 자라라는 뜻으로 인절미를, 속이 꽉 차라는 뜻으로 송편을, 그리고 속이 넓어지라는 의미에서 속이 빈 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이제 색깔 옷을 입어도 되기 때문에 옷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금반지 등을 선물한다. 또 백일에는 오래 살라는 뜻으로 흰떡 백 개를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친지나 이웃 사람들이 가져온 실을 아이의 목에 걸어주며, 외할머니는 아이를 업는 포대기를 가져온다.

돌잔치도 이와 비슷하지만, 돌잔치에는 미역·백미·실 등을 올린 삼신상부터 차린다. 특히 돌잔치 때는 돌상을 차린다. 돌상에는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놓는다. 또 여러 가지 과일을 함께 놓기도 하지만, 쌀·돈·책·연필·무명실 등을 놓기도 하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자나 바늘을 놓기도 한다. 이것은 아이를 돌상 앞에 앉혀 무엇을 집는지를 보고 장래를 점치기 위한 것인데, '돌잡이'라고 부르는 이 풍습은 중국, 한국, 오키나와 등에 전해지는 돌잔치 풍속의 하나이다. 쌀이나 돈을 집으면 부유하고, 책이나 연필을 집으면 학문을 하여 귀하게 되며, 무명실을 집으면 오래 살고, 여자아이의 경우 자나 바늘을 집으면 바느질을 잘한다고 한다. 돌잔치 선물로는 금반지가 일반적이다. 또 이웃에 돌떡을 돌리기도 하는데, 돌떡을 받은 집에서는 답례의 뜻으로 쌀이나 팥, 실 등을 담아 돌려보낸다.

전통적으로 나이에 따른 별도의 이름들이 있었다. 20세는 약관弱冠, 30세는 이립而立, 40세는 불혹不惑, 50세는 지천명知天命, 60세는 이순耳順 등으로 불리며, 61세는 환갑還甲 또는 회갑回甲, 화갑華甲, 66세는 미수美壽, 70세는 칠순七旬 또는 고희古稀, 77세는 희수喜壽, 80세는 팔순八旬 또는 산수傘壽, 중수中壽, 88세는 미수米壽, 90세는 구순九旬 또는 졸수卒壽, 99세는 백수白壽, 100세는 백수百壽라고 한다. 이에 따라 출생 날짜를 기준으로, 가족이 중심이 되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회갑잔치 때는 큰상을 마련하여 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이 큰절을 올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또 이웃과 친지를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한다. 회갑 잔치 때 부모는 결혼식을 할 때 입었던 혼례복을 입기도 하고, 자식들은 어렸을 때처럼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기도 한다. 근래에는 고령화 추세로 회갑잔치가 예전에 비해 조촐해졌다. 대신 자녀들이 회갑을 맞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회갑잔치 이후에도 부모가 칠순, 팔순, 미수의 생일을 맞이하면 자식들이 부모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다시 잔치를 열어준다.

특징 및 의의 잔치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축의 자리로서의 성격이 강한 축제이다. 특히 일생의례에 속하는 돌잔치, 혼인잔치, 회갑잔치 등이 대표적으로, 탄생·결혼·장수 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잔치의 의미는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특정한 매듭에 대해 그 성격을 부각·공유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삶에 활력을 불어넣은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생의례라는 측면에서 주술·종교적 기원과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이기도 하다. 특히 일생의례의 일종으로서 행해지는 잔치는 순환적인 시간관에 근거한 주기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원시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나경수(羅景洙)

장례
葬禮

정의 상례喪禮의 한 절차로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

역사 삼국시대 및 삼국 이전의 장례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된 장법이나 극히 제한된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상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과 『후한서後漢書』에 보인다.

부여夫餘에서는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지내고, 장사 때 사람을 죽여서 매장하는 순

장제를 실시하였다. 또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데, 곽槨은 사용하나 시신을 넣는 관棺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가능한 한 장례기간을 길게 하는 것을 예禮로 알아 5개월 동안 장례를 행하였다. 동옥저東沃沮의 장례는 부여와는 달리 뼈만 추려 묻는 이중장二重葬을 행하였다. 이는 일차장이라고 생각되는 빈의 과정을 거쳐 육탈肉脫하면 뼈만 취하여 커다란 목곽 속에 일가의 뼈를 넣는 이중장법이다. 동옥저 사람들은 장사를 지낼 때 큰 덧널[大木槨]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끝, 즉 머리 쪽을 열어서 문으로 삼는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시체를 임시로 매장하여 가죽과 살이 모두 썩게 한 다음,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하되, 한 가족의 유골을 하나의 곽에 넣어 보관한다. 변한弁韓과 진한辰韓에서는 장사를 지낼 때 관 밖의 덧널에 큰 새의 깃털을 꽂았다. 삼한은 장사 때 소와 말을 잡아 사용하였다. 장사 때 곽에 새의 깃털을 꽂는 것은, 새가 영혼을 현세와 천상 세계로 운반하는 매개자의 기능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는 천상의 인도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말은 죽은 자의 영혼을 지하에서 명계冥界, 즉 천상세계로 운반하는 매개 동물로 생각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가매장하였다가 삼년이 지나면 길일을 택해 장사지내고, 부모와 지아비는 3년, 형제는 3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다. 운명하면 슬피 울지만 장사지낼 때는 북치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장송葬送하였다. 또한, 장례는 성대하게 지내는데, 금은의 재물을 모두 장사에 소비하며,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잣나무를 그 주위에 벌려 심었다. 백제에서는 부모와 남편이 죽으면 고구려와 같이 삼년복을 입었으나, 나머지 친족은 장례를 마치면 바로 복을 벗었다. 이처럼 부모와 남편의 상복이 3년인 점으로 보아, 백제의 장례 풍속은 고구려의 유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관을 사용하여 염하고 장사를 지냈는데, 분릉分陵을 설치하거나, 혹은 불교의 예에 따라 화장하여 장골藏骨을 하기도 하고,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기도 하였다. 불교가 들어와 공인된 23대 법흥왕 이전까지는 토장土葬을 실시한 반면, 그 이후로는 화장과 토장을 병행하였다. 신라의 화장법은 30대 문무왕 때 시작되어 34대 효성왕 때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불교식 화장법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크게 성행을 하다가 고려 말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배척받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융성으로 화장과 같은 장법이 계승되었다. 고려의 불교식 화장법은 사망—불사佛寺 부근에서의 화장—습골拾骨—권안權安(권빈權殯이라고도 하며, 일정 기간 절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매장埋骨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부모의 해골을 임시로 절에 두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매장하지 않으면 해당 관리가 이런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되, 집이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관가에서 장례 비용을 대주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토장묘과 함께 화장묘와 석실묘가 성행하였다. 통일신라 때는 주로 골호骨壺를 사용하였으나, 고려에서는 골호 대신 1m 내외의 소형 석관을 사용하였다. 석관은 조립식이며 뚜껑이나 관의 네 면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같은 사신도四神圖 혹은 성운도星雲圖를 양각하거나 석관에 명문을 새기기도 하였다. 장례 기간도 고려는 조선과 달리 일반적으로 백일이었다. 심지어는 삼일장을 하기도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공후公侯 이하는 3일 만에 장사한다."라고 하였으며, 태조 4년 6월 헌사憲司에서 올린 내용에서도 "모든 전·현직 관원은 삼년상을 지내고, 삼일장과 화장을 금지하며 신분에 따라 삼월장과 유월장踰月葬을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장례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왕실은 한漢나라 이후 일반적으로 왕실에서 사용되던 역월제易月制, 즉 하루를 한 달로 바꾸어 행하는 단상제短喪制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역월단상제는 고려 4대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5대 경종, 11대 문종비 인예태후, 12대 순종, 15대 숙종, 16대 예종, 17대 인종, 24대 원종 등이 역월제를 행하였다. 한漢의 문제文帝의 유조에 의해 비롯된 역월제를 기초로 한 단상제는 사실상 고려왕조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14세기 말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는 단순한 성씨의 교체가 아니었다.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왕조 교체기는 고려의 불교를 대신하여 주자학적 유학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아 사회 여러 부분이 크게 변화한 시기였다.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사대부에서부터 일반 서인까지 『주자가례朱子家禮』가 관혼상제의 규범서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장례 및 상례

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예서는 성종조에 『주자가례』를 본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있고, 중엽에 예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상례비요喪禮備要』와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재의 『사례편람』은 『주자가례』와 『상례비요』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로 예를 실천하는 데 편리하도록 서술하여 대부분의 가정이 다 구비할 만큼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시대에도 화장을 금지하고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식 상장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는 초상이 나면 상여를 맬 향도를 불러 모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며 상주를 위로하였다. 당시는 초상을 성대하게 치렀으며, 장사 치르기 전날 밤에는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주악을 베풀어 빈객을 즐겁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으며, 돈이 없어 빈객을 대접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사를 연장하기까지 하여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도록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10명 중 6~7명은 매장이 아닌 불교식 화장을 하였다. 비록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하였다가도 뒤에 묘를 파 유골을 화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화장을 금지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예조와 사헌부가 화장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철저히 감독하여 죄를 물도록 했다. 이와 같은 화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주자가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성종 집권 후반기에는 화장이 감소하고 대신 유교식 장법인 토장이 점차 일반화하였다. 한편, 고려에서 행했던 역월단상제는 조선에서도 이어졌다. 문무백관의 상복 기한은 송宋나라의 역월제를 써서, 즉 하루를 한 달로 바꾸어 13일에 소상小祥하고, 25일에 대상大祥, 27일에 담제禫祭를 지내도록 하여 형식상으로는 삼년상을 마쳤다. 태조 이성계의 국상을 맞아 시행된 역월단상제는 세종이 태종의 국상을 주관하면서 폐지되었으나 연산군대에 부활했다가 성종대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처럼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치르는 역월제는 국상 기간의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왕권의 안정을 꾀하고, 지방관에게 현지에서 왕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하여 왕권 교체기에 있을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고려시대 및 조선 세조 이전까지는 석실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조는 자신의 능실에 석실대신 회격灰隔을 쓰도록 하여 세조의 광릉부터 조선의 능묘는 모두 석실분에서 회격묘로 바뀌었다.

유교식 상장례는 일제강점기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제는 1912년 6월 총독부령으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온 매장 풍습은 화장장과 공동묘지라는 새로운 문화를 등장시켰다. 또 조선총독부는 1934년 11월 10일 「의례준칙」을 제정·공포하여 조선의 관혼상제례를 인위적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특히 일제의 「의례준칙」은 조선시대 상장례 규범서의 하나인 『사례편람』의 상례절차 및 내용을 대폭 축소·간소화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까지는 일제의 장묘법제가 시행되었고, 건국 이후에는 1961년 12월 2일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묘지설치 장소, 묘지면적, 묘지시설물, 분묘의 형태 등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매장·화장의 기준과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금지지역을 명문화했다.



고종 국장 행렬 | 1919 | 서울역사박물관



행상 | 충남 태안 | 1961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장례는 '장의葬儀' 또는 '양의襄儀'로 불리기도 한다. 시신의 처리 방법은 땅에 매장하는 토장, 불에 태우는 화장, 땅 위 혹은 나무에 놓는 풍장風葬, 물속에 넣는 수장水葬, 시신을 토막 내 독수리 먹이로 주는 조장鳥葬, 나무 위에 시신을 매달아 두는 수상장樹上葬 혹은 현장懸葬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장과 화장을 주로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장례는 '장사葬事 지낸다'고 한다. 장葬자는 '감춘다[藏]'는 뜻이다. '장藏'자를 풀면 '艸+死+艸'가 된다. 시신을 묻지 않고 들에 그대로 방치한 모양의 무덤이 바로 '장葬'자의 모습이다.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서는 "옛날에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들에다 두고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고 나무나 봉분도 하지 않았다. 상복을 입는 기간도 결정되지 않았다. 후세에 성인이 이를 고쳐서 관곽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시신을 묻지 않고 그냥 들에 두다 보니 부모의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활을 가지고 지키기까지 했다. 조弔자의 형상이 바로 시체를 풀로 덮어 장사 지내고 활을 들고 짐승을 쫓는 모양이다. 점차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하고 효 관념이 생기면서 방치했던 시신을 구덩이를 파고 묻기 시작하였다. 봉분은 물론이고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은 무덤의 형태가 '묘墓'자로, 시신을 땅속에 매장하고 봉분 없이 평지처럼 한 것을 이른다.

『맹자孟子』에 의하면 "상고에 부모가 죽어도 장사 지내지 않는 시대가 있었는데, 부모가 죽자 시체를 들어다가 구덩이에 버렸다. 뒷날 그곳을 지나다 여우와 살쾡이가 시체를 뜯어 먹고, 파리와 모기가 엉겨서 빨아 먹는 모습을 보자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길을 돌리고 바로 보지 못했다. 곧 집으로 돌아와서 들것과 가래를 가지고 돌아와 흙으로 시체를 덮었다."라고 했다. 이처럼 상고시대에는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매장법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은대殷代에도 매장지가 없었으며, 주周나라 문왕과 무왕의 무덤도 분구가 없는 평지묘였다. 『한서漢書』「유향전劉向傳」에도 옛날 무덤은 봉분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평평한 형태의 묘는 시신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무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덤인 분墳으로 바뀌었다. '분'자를 풀면 '土+十+十+十+貝'로서 흙과 조개껍질 30짐을 쌓아 봉분을 갖춘 무덤임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조개껍질 속에 시신을 묻거나 흙과 섞어 봉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자에 조개 '패貝'를 쓴 것이다. 흙과 조개껍질이 30짐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많다는 뜻으로 이 정도면 봉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날과 같은 봉분 형태의 분구식墳丘式 무덤은 춘추시대 말기에 처음 만들어져 전국시대에 보편화하였다. 공자도 옛날에는 묘를 수리하지도 않고 봉분도 하지 않아, 후에 묘를 찾기가 힘들어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봉분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무덤은 들에 시신을 버리는 것과 같은 장葬의 형태에서 봉분이 없는 평지묘平地墓로, 평지묘에서 봉분을 한 분墳으로 발전하였다. 즉, 무덤은 장葬—묘墓—분墳의 형태로 변천한 것이다.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곽과 상복을 마련하고 장지를 선정하는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장기葬期'라 한다. 오늘날에는 삼일장이 가장 보편적이다. 3일은 되어야 최소한의 예를 갖춰 장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각기 신분과 지위에 따라 장기를 달리했다. 『예기禮記』에 "천자는 7일 만에 빈하고 7개월 만에 장사 지내고, 임금과 같은 제후는 5일 만에 빈殯하고 5개월 만에 장사 지내며, 대부·사·서인은 3일 만에 빈하고 3개월 만에 장사 지낸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왕은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유월장踰月葬)을 치렀다.

출상 행렬은 맨 앞에 방상이 서고 이어 명기와 복완—명정銘旌—혼백—만장輓章—공포功布—상여喪轝—삽—주상—상주—복인—존장—무복친—조문객의 순으로 나

간다. 상여가 묘역에 도착하면 방상이 먼저 광중에 들어가 네 모퉁이를 창으로 치고 잡귀를 몰아내고, 하관 시간에 맞춰 머리가 북쪽으로 가게 안장을 한다. 하관을 마치면 명기와 지석을 묻고, 석회·황토·모래를 섞은 삼물三物로 회격을 만들고 흙으로 광중을 메운다. 요즈음은 흙에 석회만을 섞어 광중을 메운다. 흙을 한 켜 넣고 다지고, 다시 적게는 3켜, 많게는 5켜까지 흙을 넣으면서 외광을 완전히 다진다. 이렇게 다지는 것을 '달구질' 또는 '회다지'라 한다. 봉분이 완성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평토제平土祭(성분제 또는 제주제라고도 함)를 올린 후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를 '반혼返魂'이라 한다. 이로써 장송의례가 끝나게 된다.

특징 및 의의 1990년대에는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 위주의 장례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시적인 매장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60년까지만 묘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장례 장소가 집이 아닌 장례식장인 경우가 증가했다. 특히 전문장례식장과 병원장례식장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한, 상여나 우마차로 시신을 운구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자동차로도 장지까지 운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신을 운반하는 이른바 영구차는 당시로서는 대표적인 신문화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망자의 유언에 의해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 후 납골 혹은 산골散骨하는 식으로 장묘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三峯集, 世宗實錄, 禮記, 周易, 增補文獻備考, 의례준칙, 조선초기 상장의례연구(정종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중국고대능침제도연구(양관, 상해고적출판사, 1985).

필자 정종수(鄭鍾秀)

장례미사

정의 가톨릭 장례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장례일) 하느님께 고인을 맡긴다는 의미로 하는 미사.

역사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의 장례에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고대 로마의 관습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반영되었다. 운명·수시·매장 등 장례의 과정을 통해 슬픔과 위로가 위령미사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매장 후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관습도 포함되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음복과 위령미사가 모두 시행되다가 위령미사만 드리게 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이나 수도원별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다양한 장례와 매장 예절이 정리되어 로마교회 안에 공포된 것이 1614년 『로마예식서』이다. 20세기 초까지 사용된 이 예식서는 성당에서의 행하는 사죄赦罪예식을 중심으로 하며, 장례절차가 고인의 집, 성당에서의 예절, 묘지 예절 등 세 부분으로 간소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이 예식서는 유럽문화 중심으로 서술되어 다른 민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선교를 둘러싸고 1636년부터 100여 년 동안 의례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조상제사와 공자 숭배로 대표되는 중국의 유교식 의례가 인정되지 않아, 그 결과로 중국과 한국에서는 가톨릭 신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다. 가톨릭에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인정하게 된 것은 예식서가 개정된 20세기 초기 이후의 일이었다. 1939년 교황청의 신앙포교성에서는 일본의 신사참배와 중국의 공자 화상이나 위패에 대한 존경, 시신이나 고인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지역의 문화로 인정함에 따라 다소의 허용이 이루어졌다. 이후 1962년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신도들의 장례예식에서 지역문화의 정신과 풍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1969년 새로운 장례 예식서가 공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에 이미 로마의 표준예식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기도인 연도煉禱를 수록한 『천주성교예규』가 있어, 이에 따라 장례를 거행하고 있었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방침에 따라 1976년 『장례예식서』를 발간하였고, 2003년 주교회의에서는 1864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천주성교예규』를 현대 감각에 맞추어 『상장예식』으로 새롭게 발간하였다. 오늘날 장례의 지침이 되는 『상장예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맞게, 무덤이나 죽은 이의 시신 혹은 이

름의 패 앞에서 절과 분향, 음식 진설을 허용하였다. 또한, 우제를 인정하는 등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따른 상례·제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용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성인들의 통공通功에 의해 부활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에게 인간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장례미사를 비롯한 모든 장례절차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파스카적(Pascha的) 성격을 지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례미사가 핵심이 되는 가톨릭의 장례절차는 고인이 집을 떠나는 출관예식과 성당에서 거행하는 장례미사와 고별식, 그리고 묘지로 가는 운구예식, 무덤 축복과 매장, 하관예식 등으로 구분된다.

『상장예식』에 의하면, 가톨릭의 장례절차는 임종과 운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죽음이 임박하면 가족들은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임종을 앞둔 사람의 옷을 갈아입힌 다음, 임종을 맞이할 장소로 옮긴다. 그런 다음 상황에 따라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유언과 축복을 청하며, 또한 사제를 청하여 병자성사(종부성사)를 받는 순으로 임종예식을 거행한다.

죽음을 앞둔 이가 운명하게 되면 곧 죽음을 확인하고 운명예식을 거행한 뒤에, 수시收屍를 하게 된다. 먼저 정갈한 물로 얼굴을 씻어주고, 손과 발을 가지런히 펴주며, 두 손에 십자가나 묵주를 쥐여 주어 가슴 위에 얹어 놓는다. 시신 위에 홑이불을 덮고 검은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려 세운 후, 향상香床을 차려 놓고 촛불과 향, 성수를 준비하여 상주부터 분향한다. 빈소는 영정 사진과 꽃으로만 장식하는 것이 보통이나, 가정의 관습에 따라 과일과 떡을 올리기도 한다. 수시를 전후로 교회와 친지들에게 알려 공동체의 기도를 청하며, 이때부터 문상을 받을 수 있다.

문상은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으로 예의를 갖추며, 빈소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 후 고인과 상주에게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도록 한다. 이후에 장례기간 내내 고인을 위해 한국 가톨릭 고유의 위령기도[煉禱]를 바친다.

보통의 경우, 죽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장례 2일차에 염습과 입관을 한다. 염습은 시신을 깨끗하게 씻긴 다음 수의를 입히는 과정이며, 입관은 염습한 시신을 관에 넣는 것을 말한다. 염습과 입관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장례지도사가 담당하며, 사제나 장례 봉사자의 주도로 예식을 거행한다.

염습과 장례가 끝나면 본격적인 장례절차가 시작된다. 장례절차는 크게 빈소에서 나와 성당으로 향하는 출관, 장례미사와 고별식, 그리고 묘지로 이동하면서 바치는 운구예식, 무덤 축복과 매장으로 이어지는 하관예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장 장엄한 예식은 장례미사이다. 제대諸臺에 깔끔한 꽃장식을 하고 부활초를 켜며, 사제는 흰색이나 보라색 또는 검은색 제의를 입는다. 그리고 성당으로 입장하기 전에 영구 앞에 와서 가벼운 묵례로 고인과 유족에게 인사한 뒤에 관에 성수와 향을 뿌리며 함께 기도를 올린다. 이어 성가와 함께 십자가를 선두로 복사단과 사제가 입당하며, 그 뒤를 고인의 관을 밀며 연령회원들이 입당하고, 다음으로 상주와 유가족들이 성당 안으로 입당하게 된다. 제대 앞에 관을 놓고, 관 앞에는 따로 작은 십자가와 영정사진, 이름을 쓴 지방을 배치한다. 그리고 양쪽으로 촛대를 각 세 개씩 여섯 개를 놓는다. 유족들이 맨 앞에 자리를 잡으면 미사가 시작된다.

미사 중에 말씀의 전례와 보편지향기도는 장례미사 경본에 의하여 바쳐지지만, 성찬의 전례부터는 일반적인 미사와 같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끝나면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따라 고별식이 이어진다. 이는 발인 전이나 매장 전에 신자공동체를 떠나는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예식이다. 고별식에서 유족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관 주위를 둘러서며 집전 사제는 기도와 향을 드린다. 이때 참석한 신자들이 고별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유가족들과 친지들은 관 앞으로 나와 분향을 하며 고별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식은 끝이 난다.

뒤이어 묘지나 화장장으로 가는 운구예식이 있다. 매장의 경우, 무덤에 도착하면 무덤 축복 이후 유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가운데 하관예식이 거행된다. 성수를 뿌리고 독서와 청원기도, 유가족을 위한 기도로 장례미사는 마무리된다. 화장으로 모시는 경우, 화장장에 도착하여 시신을 사르기 전에 기도와 성경 봉독, 화답송을 바치고, 화장하는 중이거나 쇄골 또는 습골할


입관예절


장례미사


고별예식


운구

고 김수환 추기경 장례미사 | 서울 중구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때에 위령기도를 바친다. 납골이나 산골散骨을 할 때에도 예식서에 따라 기도를 바치며,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장례는 마무리된다.

특징 및 의의 장례미사를 비롯한 한국가톨릭의 장례예식이 가진 특징은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우제虞祭 허용, 염습 과정, 명정銘旌을 쓰는 방법, 고인의 시신이 들어갈 영구靈柩를 하나의 실처럼 꾸며 광중에 안치하는 매장의 방법, 절을 하는 문상 방법 등은 우리 고유의 상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장례기간 내내 우리 고유의 가락으로 구성된 연도를 드린다는 점이나 장례를 공동체의 일로 간주하는 정신 등은 우리 문화와 가톨릭의 결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참고문헌 선종(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한국 천주교 상제례 문화의 토착화(허윤석, 사목연구10,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2).

필자 김영수(金榮洙)

장례식장
葬禮式場

정의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데 소요되는 물품 판매, 용역·장비 및 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나 장지葬地 알선 등을 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업소.

역사 불교가 성하던 고려시대에는 절이 장의사葬儀社는 물론 장례식장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절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불교 방식에 따라 절에서 화장까지 포함한 장례의 모든 과정이 거행되었다. 화장한 다음에는 유골을 관이나 항아리에 담아 절 부근 산에 마련한 묘에 안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풍습은 고려 말기와 조선 전기에 조정에서 유교식 가례家禮를 강력히 보급하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사례편람四禮便覽』이나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운명殞命에서부터 발인發靷까지 전부 집[家]에서 거행하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모든 장례 준비를 직접 해야만

했다. 따라서 보통 양반가에서는 묏자리를 미리 잡아두고 관과 수의 같은 용품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다. 또한 향촌에서는 향약鄕約이나 두레 같은 지역공동체나 상포계喪布契, 문중 같은 혈족집단 등의 참여와 지원 속에 무리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도성에서는 국영장의사라고 할 수 있는 귀후서歸厚署가 있어 관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었다. 이 관서는 사실 고려 왕실의 장례를 담당하던 12색色 가운데 하나인 관곽색棺槨色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태종대에 이 관서는 이름이 관곽소棺槨所로 바뀌고, 주로 관곽을 만들어 왕실과 양반 관료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전부터 장례의식을 담당해오던 승려들을 관 만드는 일에 동참시켰다고 한다. 1410년(태종 10)에는 상장과 능묘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관곽소를 시혜소施惠所라 하였다가, 다시 귀후소歸厚所로 바꾸었다. 1443년(세종 25)에는 현재의 용산 인근 한강변에 관곽을 만드는 곳을 마련하여, 백성들이 졸지에 초상을 당했을 때 관곽을 준비하기 어려운 점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1463년(세조 9)에는 귀후서歸厚署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 관청의 위상이 승격되었다. 귀후서의 설치 목적은 미리 관곽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사다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사람마다 장사 지내는 예의를 알게 하고자 한 데 있었다. 따라서 귀후서의 기능은 예장에 쓰는 공용公用 및 양반과 일반 백성의 사용私用 관곽을 공급하는 데 있었다. 귀후서는 관곽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판매함으로써 화장 금지와 유교식 매장문화의 보급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부정과 민폐 등이 문제가 되어 1777년(정조 1) 9월에 그 간판을 내리고, 소관 업무는 선공감繕工監으로 이관되었다.

그 밖에 도성에는 장례용품을 세놓거나 판매하면서 인력을 알선하는 민간 장의사 기능을 가진 업소(사람)가 있었다. "신당리와 아현리 두 화장장의 심부름꾼들은 장의사葬儀社와 결탁하여……"라는 1924년 3월 31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같은 해 11월 24일자 "광화문통 네거리에서 조선장의사朝鮮葬儀社라는 간판을 세운……"이라는 기사, 또 1930년 3월 10일자 8개 장의사의 인부 150여 명이 동맹파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도시 민간 장의사의 흔적을 전한다. 1986년 말에는 이러한 장의사가 전국에 2,500여 개소나 영업하고 있었다는 통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교적인 관념에 의해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정신적인 바탕에는 오복五福 가운데 다섯 번째인 '고종명考終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사람이 제명대로 살다가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운명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했다. 이 고종명에 따른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집 밖에서 죽는 객사客死였다. 객사한 주검은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집 밖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르곤 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면 집으로 옮겨 운명하게 하던 것이 다반사였다. 병원의 '영안실'은 원래 종합병원에 설치하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한, '시체를 위생적으로 소독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냉장 보관'하던 '시체실'을 미화한 용어였다. 사고사한 시신의 안치 같은 특별한 경우, 영안실 부근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것이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변한 시초라고 보면 된다. 대략 1930년대부터 병원 영안실이라는 말이 신문에 보이기 시작한다. 1947년 7월 22일자 경향신문의 여운형 암살사건 기사에는 "……20일에는 대학병원 영안실에서 관계 각 방면의 검사와 일반정당 사회단체들의 조문을 받은 다음……"이라는 글이 나타난다.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후 여러 신문의 장례 기사 및 부음訃音을 보면, 점차 전국의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1973년에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제5조에 장례식장과 장의사 허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장례식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장례식장의 시설 기준에 "위치는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도심에서 장례식장 역할을 하던 병원 영안실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병원 영안실 영업은 그다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확산의 길을 걸었다. 병원에서의 사망이 증가하면서 객사 관념과 병원 영안실에서 치르는 장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희박해져갔기 때문이다. 또 1960년대 초 처음 나타난 아파트처럼 장례를 치르기 부적절한 공동주택이 급속하게 보급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19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장례식


教會葬으로 牛耳洞에
天道教의 完成者
교회장으로 우이동에 | 1922. 5. 20 | 동아일보

장 시설 기준에서 장례식장의 도심 입지를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병원 영안실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1983년 말 경기도 파주 광탄면 용미리 공원묘지 안에 '제1명복관'이 개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장례식장이 등장하였다. 1993년 법률 개정으로 종전에는 허가제이던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로 완화되고, 장의사의 영업허가제는 폐지되어 장의용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7월 법률 시행령에서 병원 부설 장례식장에 대한 예식실, 화장실, 주차장 등의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전환되는 길이 완전하게 열렸다. 1996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장례식장 육성정책은 전국 대부분의 장례식장 시설이 현대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99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완전하게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영안실 초기에는 장의사들이 대부분의 병원 영안실을 임대(위탁)받아 운영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병원 측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바뀌어 갔다. 그런데 장례식장의 성장과 반대로 장의사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도시의 생활주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2014년 현재, 대체로 도시에는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이 많고, 농촌지역에는 독립 건물을 가진 전문 장례식장을 흔히 볼 수 있다.

내용 2010년대 현재, 국내 대부분의 장례식장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시신을 안치하는 냉장실, 시신을 목욕시키고 염을 하는 염습실 및 유족 참관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상담실과 장례용품 전시실이 있다. 영정 및 제물을 진설하고 조문을 받는 빈소와 조문객들을 접대하는 접객실, 주방 공간 및 휴게실에다 유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면假眠 공간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영결식과 같은 현대적인 고별의식을 거행하는 예식실과 발인 장소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장례식장에는 원거리에서 장례에 참여하는 친인척들을 위한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기도 한다. 그 외 부대시설로는 매점, 공동식당, 관리시설 등이 있다.

그렇지만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시체실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었다. 시체실 앞 적당한 공간에 차일遮日을 치고, 병풍 앞에 영좌靈座와 제단 등을 진설하여 빈소로 삼았던 것이다. 상주 이하 모든 이들은 맨땅에 자리를 깔고 온전한 장례 절차를 치렀다. 1973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초의 장례식장 시설 기준을 보면, ①장례식장의 위치는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을 것, ②시체의 안치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출 것, ③시체의 운반에 필요한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④시체를 염하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⑤예식실마다 출입문이 복도에 면한 측에 두 개 이상 있을 것, ⑥예식실이 복도의 양측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복도의 폭을 3m 이상으로 할 것, ⑦예식실에는 적당한 환기, 채광, 보온 및 방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소에는 예식실의 좌석수를 감안하여 적당한 규모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⑧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등이 있다.

장례식장의 시설 기준이 2010년대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1994년부터였다. 이때 비로소 ①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갖출 것, ②예식실, 예식실에는 장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③빈소, 조문을 행할 수 있는 빈소를 설치할 것, ④화장실,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⑤주차 시설, 주차장법이 정하는 주차 시설을 갖출 것, ⑥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장례식장에는 나목·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기타 사항은 건축법·소방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장례식장의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례용품 전시실, 염습실 및 참관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였다.

특징 및 의의 21세기에는 화장률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장례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장례

절차의 형해화形骸化와 전통적인 조문 풍습의 소멸이다. 번다함을 느낄 정도였던 유교식 장례절차는 골격만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밤샘으로 대표되던 조문 풍습은 적어도 도시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에, 장례에 전혀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기도 한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입관 절차와 서구적인 고별식만 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으며, 시신 얼굴에 화장을 하는 시신 메이크업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는 장례가 서구의 문화를 흡수한 결과이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례의 역사(박태호, 서해문집, 2006), 조선 전기 장례문화와 귀후서(한희숙, 조선시대사학보31, 조선시대사학회, 1999),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필자 박태호(朴台浩)

장명등
長明燈

정의 왕릉이나 묘에 세우던 석등 형태의 석물.

역사 장명등은 왕릉이나 묘에 설치하던 석물의 하나로 불교의 석등에서 유래하였다. 외형이나 기능은 석등石燈과 거의 동일하다. 석등이 사찰에서 불법佛法을 온 누리에 밝히는 도구라면, 장명등은 능묘에서 망자亡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의 장생발복長生發福을 기원하는 도구이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장명등을 세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시대에는 태조太祖 현릉顯陵을 비롯한 일부 왕릉과 대신大臣의 묘에 장명등을 세웠다. 고려 말 사찰의 부도浮屠 앞에도 장명등이 설치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명등과 석등의 명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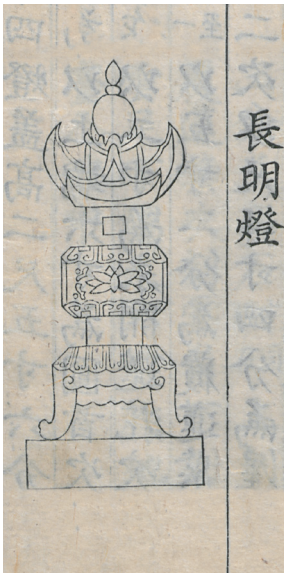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시대에 장명등과 석등의 명칭이 정확히 구분되었다. 장명등은 왕릉과 묘에 설치한 석등의 의미로 국한하여 부르게 되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조선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을 비롯한 역대 왕릉과 고위 관직을 지낸 사대부의 묘에 많은 장명등이 세워졌다.

중국에서 장명등이란 명칭은 송대宋代의 문헌인 『보각총편寶刻叢編』, 『유설類說』과 명대明代의 법률인 『명회전明會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모두 사찰에 세운 장명등, 즉 석등을 의미한다. 우리와 달리 중국의 역대 황릉이나 묘에 세운 장명등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내용 조선시대 장명등은 세운 위치에 따라 왕릉 장명등과 묘 장명등의 두 가지로 나뉜다. 왕릉 장명등은 1474년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거하여 8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758년 완성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따라 4각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숙종의 왕릉 석물 간소화 정책이 이때에 반영된 것이다.

8각 장명등은 크게 정자석頂子石, 개석蓋石, 체석體石으로 구성된다. 이 중 체석은 다시 화사火舍, 상대上臺, 중대中臺, 하대下臺로 구분된다. 화사의 화창火窓에서는 실제로 참기름에 심지를 꽂고 불을 밝히는 연등燃燈을 행하기도 하였다. 4각 장명등은 개석과 체석으로 구성된다. 왕릉 장명등은 왕실에서 편찬한 각종 『의궤』에 제작 과정과 관련 도설圖說이 잘 남아 있다.

1424년(세종 6) 예조에서 무덤 제도 때문에 백성에게 폐해가 미치니 묘 장명등도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었다. 묘 장명등은 조선 초기부터 4각으



장명등 | 국조상례보편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공효공 박중순 묘의 장명등(보물 제1323호) | 경기 파주 | 2014 | 이민식

로 제작되었으나 간혹 8각도 나타난다. 규모나 장식 문양이 왕릉 장명등에는 못 미치나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며 조형성이 우수한 묘 장명등이 많이 생산되었다.

대표적인 묘 장명등은 2001년 보물 제1323호로 지정된 '파주坡州 공효공恭孝公 박중손朴仲孫(1412~1466) 묘 장명등'으로, 이것은 장명등 중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공효공 박중손 묘는 쌍분으로 조성된 부부 합장묘이다. 장명등은 각각의 봉분 앞에 1기씩 총 2기가 세워져 있다.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4각형이다.

박중손 봉분 앞 장명등 화창의 남북은 사각형이고 동쪽은 원형이며 서쪽은 반달 모양이다. 사각형은 땅을, 원형은 해를, 반달은 달을 상징한다는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관을 화창에 잘 표현하였다. 이러한 장식은 유례가 없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부인 봉분 앞 장명등의 화창은 4면 모두 사각형이어서 서로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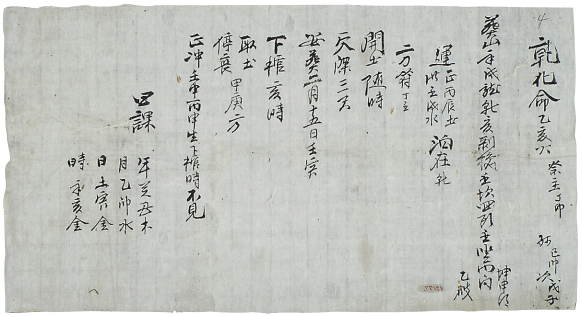
특징 및 의의 묘에 장명등을 세우는 유교적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력만 있으면 누구나 세울 수 있으므로 값싼 중국산 제품이 대량 수입되어 전국 각지에 산재한 묘를 장식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장명등은 조형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개인 저택의 정원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훔쳐가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참고문헌 경기 묘제 석조 미술 상·하(경기도박물관, 2007·2008), 서울 경기 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김우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여주의 능묘와 석물(여주군향토사료관, 2005), 용인의 분묘 문화(용인문화원, 2001),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김민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이민식(李敏植)

장사택일지
葬事擇日紙

정의 지관地官이 장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망자의 가족에게 건네는 문서.



장사택일지 | 조선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일진에 따른 하관 시간, 분금, 방위, 상문살 등을 기록.

역사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는 '묏자리를 시초로 점친다[筮宅]'는 규정과 '장례 날짜를 거북으로 점친다[卜日]'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개원례開元禮』에는 '택조宅兆를 시초로 점치는 것[筮宅兆]'과 '매장일을 시초로 점치는 것[筮葬日]'이, 『서의書儀』에는 '택조와 매장일을 거북으로 점치는 것[卜宅兆葬日]'이 소개되어 있다. 『가례家禮』의 경우에는 '택지擇地'와 '택일擇日'이 소개되었고, 본주의 말미에 "옛날에는 장지와 장일을 모두 복서卜筮로 결정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점법을 알지 못하니 우선 시속을 따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택지와 관련해서 『가례』는 "묘지의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이지 음양가들이 말하는 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와 함께 훗날 도로가 되지 않을 곳, 성곽이 되지 않을 곳, 개울이나 못이 되지 않을 곳, 권세가에게 빼앗기지 않을 곳, 밭을 가는 소가 다니지 않을 곳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택일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택일과 관련하여 『예기禮記』「곡례曲禮」에서는 "점치는 날짜가 열흘 밖의 날이면 '멀리 있는 아무 날'이라고 하고, 열흘 이내의 날이면 '가까이 있는 아무 날'이라고 한다. 상사喪事에는 멀리 있는 날을 먼저 점치고, 길사吉事는 가까이 있는 날을 먼저 점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진호陳澔는 "이것은 슬픈 마음을 강제로 빼앗는 뜻이 있는데 상주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상주는 다만 어쩔 수 없으므로, 우선 멀리 있는 날짜를 택하여 급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임으로써 효심을 간접적으로 펼친다."라고 해석한다. 날을 택할 때 멀리 잡은 날을 먼저

점치는 것은 망자를 보내지 않으려는 자식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날을 점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주의 마음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화복禍福과는 관련이 없다.

내용 한대漢代 이후 장지와 장일은 복서가 아니라 풍수지리설에 의해 결정되어, 장지와 장일의 선택이 자손의 화복이 연관된다고 보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송대宋代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가례』의 본주에서는 "세속에서는 장사葬師의 설을 믿어 연월일시를 선택할 뿐 아니라 산수의 형세를 선택하면서 자손의 빈부, 귀천, 현우賢愚, 수요壽夭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화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손으로서 어찌 자신의 부모가 냄새를 풍기며 밖으로 드러난 채 있도록 방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를 어기고 의리를 손상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장사택일지이다. 이는 망자의 사주, 시신이 묻힐 장지, 안장할 날과 시에 대한 택일, 방향과 방위, 지세地勢 등을 살펴 장례 일시를 선택하고 상주에게 작성해 준 문서이다.

특징 및 의의 현재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관이 하관 일시를 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고문헌 家禮, 禮記, 儀禮, 장택지에 나타난 조선후기 장례풍속(정승모, 역사민속학1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장동우(張東宇)



장지
葬地

정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는 장소 혹은 땅.

역사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인과 신석기인이 장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무렵부터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및 관념이 생겨남에 따라, 장지가 인위적으로 선택되었다. 적절한 입지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지 선정의 흐름은 풍수가 영향을 주기 이전의 시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풍수 성행기, 그리고 근대·현대의 세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고고학의 발굴 성과에 의하면, 고조선 및 삼한시대의 장지는 주로 하천 근처, 해변 평지, 둔덕의 대지였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장지는 처음에 강변 인근의 산허리에 축조되다가 차차 강변의 평지로 내려왔다. 가야 왕릉은 산 능선을 따라 줄지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제의 공주와 부여의 왕릉지에 이르러, 비로소 장지에서 풍수지리적 입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통일신라시대의 경주에서도 후대로 가면 풍수의 영향을 받아 평지 입지에서 산기슭 입지로 변한다.

고려시대에는 장지 전후좌우의 지형지세를 고려하는 풍수적 입지 경향이 뚜렷해졌다. 조선시대의 장지는 청룡靑龍·백호白虎·주작朱雀·현무玄武를 갖추는 풍수적 입지로 정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로 가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모든 계층에 널리 확산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의해 공동묘지가 장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묘지 부족으로 화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기독교식의 장례문화가 확대되어 풍수사상이 쇠퇴하면서, 장지의 선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전통적인 매장지가 아닌 봉안당 혹은 납골묘를 이용하거나, 수목장 같은 새로운 매장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내용 장지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형태나 장소가 달랐는데, 장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 차이 때문이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생겨난 선사시대부터 장지는 인위적으로 선택되기 시작하였고, 시대사상과 문화관념 및 사회관계 등에 의해 장지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례 방식은 풍장·화장·토장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장지 문화는 주로 토장 방식에서 형성되어 발달하였다.

장지의 입지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강가·바닷가·평

지·구릉지·산지 등으로 나뉜다. 고대의 장지는 강가·바닷가·평지·둔덕·산 능선·산기슭 등으로 다양하게 위치하였으나, 고려시대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풍수의 영향력이 커져 산기슭 혹은 산록의 완만한 경사면에 장지가 위치하게 되었다. 무덤이 산에 쓰이면서 조선시대 이후로는 무덤을 산소山所라고 부르게 되었다.

장지는 개인 장지와 집단 장지의 구별이 있다. 집단 장지는 계층에 따라 왕릉지, 문중묘지, 일반 공동묘지 등으로 나뉜다. 조선왕조의 동구릉東九陵은 대표적인 집단 왕릉지이다. 문중 묘지는 조선시대에 종중宗中, 문중이 집단 단위의 사회조직으로 일반화되면서 형성된 종족의 집단 장지이다. 공동묘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근대화 및 도시화된 장례문화의 산물이다. 장례문화가 사회적으로 중시되고 발달하면서, 장지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되었으며, 선택 과정에 다양한 문화요소가 개입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풍수는 장지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상인데, 특히 풍수는 장지의 지형적 입지조건을 고려하고 따지는 한국적 정체성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유학자는 장지를 선정할 때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견해를 지침으로 삼았다. 주자는 「산릉의장山陵議狀」에서,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풍수를 활용하여 장지를 정하라고 하였다. 자손으로서 조상의 유체遺體를 잘 갈무리하려면 삼가 신중하고 정성껏 공경하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세主勢의 강하고 약함, 풍기風氣의 모이고 흩어짐, 수토水土의 옅고 깊음, 혈穴의 치우침과 바름, 역량의 온전함과 그렇지 않음을 논하고 나서 그 땅의 아름답고 추함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장지를 고르라는 것이었다.

또한, 정자는 「장설葬說」이란 글에서, 장지로 인해 생기는 '다섯 가지의 우환[五患]'을 말하며 장지를 정할 때 삼가 경계토록 하였다. 다섯 가지 우환은 후일에 도로가 되지 않을 것, 성곽이 되지 않을 것, 도랑이나 연못이 되지 않을 것, 권세 있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 농경지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특히 조선시대는 유학의 효 관념과 결합한 풍수사상이, 장지의 길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써 장지의 입지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풍수적으로 좋은 장지를 뜻하는 명당明堂과 길지吉地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유행하였고 일반인들의 의식을 지배하였다. 길하거나 좋은 장지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세에 주산主山과 전후좌우로 산이 에워싸고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이며, 물이 솟거나 뱀이 나오는 경우는 흉하거나 나쁜 장지로 여겼다.

조선시대의 풍수교과서인 『금낭경金囊經』에는, 장지로 쓰지 못하는 산으로, 헐벗은 산[童山], 장지로 이어지는 맥이 끊어진 산[斷山], 돌투성이 산[石山], 맥이 머물러 모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산[過山], 홀로 우뚝 떨어져있는 산[獨山], 터가 좁은 산[逼山], 기울어진 산[側山] 등을 들고 있다. 장지에 풍수적인 부족함이 있으면 숲이나 나무 등을 조성해 비보裨補하기도 하였다.

장지가 좋지 않으면 이장하는 경우도 흔하였다. 조선왕실에서는 풍수적 길흉 및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세종의 영릉英陵, 중종의 정릉靖陵, 순조의 인릉仁陵 등 10기의 능이 이장되기도 했다. 문중과 개인의 묘도 풍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장하는 일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장지의 사회적·문화적 중요성이 커지자 계층 집단 간 혹은 문중 간에 장지의 선점과 확보를 위한 산송山訟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명당을 차지하기 힘들었던 일부 평민은 후손의 사회적 신분 상승을 바라는 마음으로, 명당으로 알려진 터에 시신을 암장暗葬하거나, 남의 묘지에 은밀하게 도장盜葬 혹은 투장偸葬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양반 세도가는 힘없는 평민의 좋은 묘지나 터를 강제로 빼앗아서 장지로 삼는 늑장勒葬을 하였다.

화장문화의 성행으로 기존의 토장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장지의 형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납골묘 같은 전통적인 토장 방식을 응용한 형태가 있고, 수목장으로 장지를 마련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으며, 봉안당처럼 인공적인 납골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징 및 의의 장지의 입지 선택에 전통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은 유교와 풍수사상이다. 두 사상은 조선시대에 서로 결합하여 한국의 독특한 장지문화를 낳았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조상숭배와 효 의식의 영향으로 장례의식과 장지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풍수가 좋은 장지

에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발복發福한다고 생각하여, 장지의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하였다. 흉하다고 평가된 장지는 이장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풍수사상은 장지의 전형적 입지 형태를 형성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장지가 산에 주로 쓰이면서 무덤을 산소山所라는 일반명사로 부르게 된 것도 한국적 묘지문화가 가진 공간적 특징의 하나이다. 이상적인 장지를 가리키는 명당과 길지는 조선사회를 풍미한 용어이자 담론이었다. 장지를 선정하는 직업적 전문가로서 지관地官이 왕실이나 민간에서 다수 활동하였으며, 장지의 길흉을 따지는 풍수설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하였다.

참고문헌 풍수학 사전(김두규, 비봉출판사, 2005), 한국의 풍수와 비보(최원석, 민속원, 2004), 한반도의 고분(강인구, 아르케, 2000).

필자 최원석(崔元碩)

재가례
再加禮

정의 관례冠禮를 행하는 데 있어 두 번째 관을 씌우는 예禮.

내용 성리학 도입과 함께 널리 보급된 관례의 시행 단계에서 행하는 재가례再加禮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관례」에 따른 재가례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賓이 읍揖하면 관자冠者는 자리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빈이 내려가면 주인도 내려가고 빈이 손을 씻으면 주인이 읍하고 올라가 함께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執事者가 모자를 담은 반盤(쟁반)을 올리면, 빈은 층계 두 단을 내려와 이를 받아 집고서 관자 앞에 나아가 축사祝辭하고(이때 찬자贊者는 복건幅巾과 치포관緇布冠을 벗겨 치운다) 이에 무릎을 꿇고 모자를 씌우면 찬자는 끈을 매어 준다. 일어나 제자리로 가서(관자도 일어난다) 읍하면, 관자는 방에 가서 심의深衣(선비가 입는 소매가 넓은 흰 윗옷)를 벗고 조삼皁衫(검은 색깔의 흑단령黑團領이라 부름)에 혁대革帶를 두르고 가죽신을 신고 방을 나와 선다. 재가례를 행할 때 축사식祝辭式(축하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 "길한 달 좋은 날에 너에게 관을 거듭 씌우니, 너의 위엄 있는 모습을 신중히 하고 너의 덕을 잘 삼가 만년토록 오래 살아 큰 복福을 받아라."



재가례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관례의 절차는 준비, 시행, 종결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재가례는 시행 과정의 절차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비롯한 정통적인 예서에는 시가례, 재가례, 삼가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도 주창한 것처럼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시가례, 즉 초가례初加禮로 끝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고례古禮에 따라 이 셋을 분리하여 예를 행하게 하였으며, 그의 저서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관례」에서 가난한 선비와 경대부 집안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던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與猶堂全書, 朱子家禮, 관혼상제(이민수, 을유문화사, 1975), 조선시대 관혼상제-1(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조선의 관혼상제(사회과학원, 중심, 2002),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필자 박홍갑(朴洪甲)

재계
齋戒

정의 제사를 지내기 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행위.

내용 제사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혼백과 귀신을 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재계齋戒가 필요하다. 이 재계를 '정화淨化'라고 달리 표현해도 좋다. '재齋'란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고, '계戒'란 "우환을 방지하다."라는 의미이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자기와 인연 있는 혼백과의 만남을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할 것이다.

귀신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재계하고 밝고 깨끗이 하고 단정히 옷 입고 공경과 정성으로 생각한다면 좌우에 존재하는 듯한 경지가 되니 비로소 경건한 제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첫째, 산재散齋는 마음속으로 조상을 생각하는 것이다. 제사가 다가오면 평소의 일에서 점점 손을 떼고 고인을 생각하는 것이 산재이다. 둘째, 치재致齋는 본격적으로 출입을 삼가고 음식을 삼가고 경건하게 집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을 삼가고, 몸을 깨끗하게 하며, 의복을 단정히 입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의 음식이나 주변을 깨끗이 하여 조상의 혼백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목욕재계: 목욕이야말로 중요한 재계로 지금도 '목욕재계'하는 것은 어떤 경건성을 상징하는 행위로 남아 있다. 가정의 제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마을 제사에서는, 특히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청결을 요구했다.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부정을 탄' 사람으로 주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산제에 임해서는 항상 몸을 정결히 하기 위해 목욕을 해야 한다. 또 제물을 살 때와 만들 때도 값을 깎거나 맛을 보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정월 열 나흗날 밤에 모시는 당산제 전에 각 가정에서 자기 조상께 올리는 제상을 차려서는 안 된다. 또 가장 어려운 일로서는 제물을 만들 때나 그전에라도 화주가 목욕할 때는 반드시 찬물로 목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제물은 반드시 일정한 정수淨水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 현재까지도 존속하는 별신굿이나 부락제에서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청결은 매우 중요시된다. 가령 대변을 보고 나서는 곧바로 목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변의 경우도 세수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화주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②근신勤愼: 재계를 할 때에는 남을 조상弔喪하지 않고 긴요하지 않은 출입을 삼가며, 혹 외출을 하였더라도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남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무엇이든 먼저 양보하여 트집을 피하며 부당한 행패를 만나더라도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다. 이런 근신이란 추모의 정을 갖기 위한 것이다. 평소의 오락이나 유희, 사업 등 세속적 이해에 몰두해 있다면 결코 제사 지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음의 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③음식물을 깨끗하게 함: 청결은 재계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적극적으로는 청결을 추구하고 소극적으로는 부정을 타지 않아야 한다. 재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삼가는 것이다. 특히 술과 고기 그리고 냄새나는 음식을 삼갔다. 이러한 음식은 정신을 혼탁하게 한다고 보았다. 제사를 앞두고는 평소의 음식이 비록 술과 고기, 훈채葷菜라 하더라도 이를 삼갔다. 그래서 이를 '변식變食'이라고 한다. 제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술과 고기, 훈채 등을 삼가는 동시에, 제사에 올릴 음식을 지극히 청결하게 마련해야 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수를 먼저 먹거나, 개나 고양이나 쥐 등에 의해 제수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다.

④청소: 몸과 옷, 음식을 깨끗이 함은 물론 주변을 청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제삿날은 혼령이 와서 집의 구석구석까지 두루 둘러보고 간다고 한다. 그 때문에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심지어 우물까지도 물을 퍼내어 청결히 하는 집이 있다.

마을 제사에서는 마을 어귀, 당산, 우물, 화주 집 등에 금줄을 치고 금토(황토)를 깔아 아무나 마음대로 금줄 안을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집안이나 마을이 청결하지 않아 부정하면 재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전통제례에서 재계란 제사의 준비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도덕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제사의례는 한국인에게 뿌리 깊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유교를 반대하는 이들이 기일에 지내는 추도식 자체도 하나의 변형된

제례에 불과하다. 절을 하지 않고 음식을 진설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식의 근저에서는 이미 고인과 후손들의 교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제사의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계를 하거나 제수를 손수 마련하는 정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일률적으로 제례의 모형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일이다. 그렇지만 제례의 정성과 음복을 통해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에 재계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大戴禮, 聞韶家禮, 禮記, 禮疑類輯, 二禮畧解,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예와 윤리(이희재, 한국학술정보, 2012).

필자 이희재(李曦載)



재실
齋室

정의 재계齋戒하기 위하여 묘소 아래에 지어놓은 집.

내용 재실은 제사 지내기에 앞서 목욕재계하는 집이다. 보통 묘소 아래에 지어놓는다. 이곳에서는 제사 전에 족속들이 모여 재계하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살림집을 부설하여 묘소를 수호·관리하기도 한다. 『송자대전宋子大全』에 따르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쌍청당雙淸堂 송유宋愉의 묘역 옆에 있는 부모의 묘 앞에 부모의 재실을 지었는데, 주자의 한천정사寒泉精舍와 유정劉亭의 제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한다. 한천정사는 주자의 어머니 축씨祝氏의 묘 앞에 지은 재실이며, 유정은 주자가 찾은 선현의 유적인 유환劉煥의 묘에 지은 장절정壯節亭을 말한다. 쌍청당의 묘 앞에 지은 재실은 오가옥五架屋 세 칸짜리에 부엌 다섯 칸을 세웠다고 하였다.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은 덕곡德谷에 세 칸짜리 집을 지어 묘사 때 제사 지내는 장소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순암집順菴集』에서 묘제의墓祭儀와 재실의 내력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고찰하였다. "『개원례開元禮』를 보면, '삼대三代 이전에는 묘제가 없다가 진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무덤 옆에 재실을 지었는데, 한漢이 이를 이어받자 그 후로 풍습이 되었다. 그러다가 당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한식날 왕공王公 이하의 배소拜掃의식을 정하였다. …… 신도神道는 그윽함을 숭상하므로 영역塋域에 접근하여 더럽힐 수 없기에, 영역 남쪽의 산문山門 밖에다 깨끗한 자리를 설치하여 제위祭位를 만들고, 멀리 바라보면서 시찬時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평소에 즐겨 들던 음식으로 한다.'라고 했다. …… 이것이 묘제의 시작이다. 이처럼 제사는 반드시 묘소 앞에서 지내지 않고, 영역 남쪽의 으슥한 곳에다 마련한 재실에서 지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암은 『가례』가 예禮의 본뜻을 좀 더 얻은 『개원례』만 못한 듯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실은 묘제를 지내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송대에도 이어져 묘제를 묘정墓亭에서 지냈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도 재실의 필요성에 대해 퇴계에게 문의한 바 있다. 『가례고증家禮考證』을 보면, 사계는 "묘제가 한둘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많게는 8, 9위에 이르는데, 동쪽 서쪽 산등성이를 오르내리자면 지쳐서 소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며 진종일 비가 오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묘소 옆에 재실을 지어서 시제時祭의 의식에 따라 합제合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이에 대해 "어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에서도 김부륜金富倫이 "족장族葬한 여러 묘위墓位에 차례로 제사를 올리자면 근력이 지치고 정성과 공경이 해이해지며 제물祭物도 다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분소墳所에 나아가 잔을 올려 혼령을 인도하여 와서 지방紙榜으로 재궁齋宮에서 합제合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으니, 퇴계가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또 "정결한 곳에 단을 설치하고 합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더욱 좋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답을 통해서 순암은 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비가 온다면 곤란할 것이니, 결국 제청을 짓는 것만큼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여 재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재실은 보통 묘소나 선산 혹은 종산 근처에 세운다. 그 인근에는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답位畓을 설정한다. 이러한 재실과 위답은 문중의 공유

재산이다. 재실은 향과 축문을 보관하는 향대청 및 제청, 헌관과 집사 등이 재계하는 집사청, 제사음식을 준비하는 신주神廚, 제기 등을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묘소와 재실 및 위답을 수호·관리하기 위해 묘지기나 산지기가 생활하는 살림집을 부설하였다.

재실의 본래 기능은 묘제를 지내는 것이었데, 조선에서는 묘제를 묘소 앞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세속에서는 정조正朝, 한식, 단오, 추석에 모두 산소에 가서 소분掃墳하고 절하니, 지금은 이를 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날이 되면 아침에 사당에 나아가서 천신하고 이어 산소로 가서 전奠을 올리고 절한다."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사계 김장생도 이를 따르고 『동춘당집』에서도 이를 인용하였다. 이렇듯 당시에는 사계절의 묘제가 풍속이 되어 우리나라 선현들이 많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묘제에 비가 올 때에는 재실에서 지방을 써서 신위를 마련하고 제사를 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재실은 시제時祭와 묘사墓祀를 준비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제사음식을 준비할 뿐 아니라, 족속들이 모여 재계를 행하는 장소였다. 시제에서는 재계를 3일 전에 하도록 하였다. 재계 3일은 산재散齋 2일과 치재致齋 1일로 구성된다. 산재 때에는 근신하는 자세로 생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그것은 술을 마시지 않고,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으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더럽거나 나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다. 산재 장소는 남자는 바깥채, 여자는 안채이며, 치재 하루를 이 재실에서 행한다. 치재 때에는 오직 제사祭事에 관한 일만을 하도록 하였다. 묘제에서는 재계를 하루 전에 재실에서 하도록 하였다.

재실에서 지내는 시제는 조천祧遷한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이들의 위패를 재실에 모시고 지내니, 이는 묘가 바라보이는 곳에 단을 만든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묘제에 대한 논란이 국휼國恤 때 계령戒令의 한 조항인 정제停祭에 대한 해석으로 분분했던 적이 있다. 정제는 대·중·소의 모든 국가제사와 사제私祭를 정지하는 것이다. 그 기간은 초상에서 졸곡까지이다. 사가에서는 인산因山 전에 경대부와 사서인의 우제는 행할 수 있으며, 기제와 묘제·연제·상제는 졸곡 후에 행하도록 허락했다. 이 중에서 당시의 선유先儒들은 묘제를 졸곡卒哭 전에 행할 수 없다는 조목에 대해 제각각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곧 간략하게나마 제사를 지내야 한다거나, 마땅히 폐하여야 한다고 하고, 혹은 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어느 한쪽으로도 귀결되지 못했지만, 묘제를 드러내지 않고 재실에서라도 지내야 한다고 할 만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재실은 제사뿐 아니라, 제사 준비와 재계 및 음복 혹은 문중회의가 행해지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문중 중심의 체계적인 제사 관행이 형해화形骸化·개별화함으로써 재실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宋子大全, 順菴集,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재우제
再虞祭

정의 초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유일柔日에 지내는 제사.

내용 재우제再虞祭는 원래 초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유일의 질명質明(날이 밝을 무렵)에 지낸다. 유일은 십간十干에서 음陰에 해당하는 짝수 간지, 즉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가 들어간 날로, 부드러운 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개 장례 다음 날 지내며, 의식과 절차는 초우제와 같다. 『의례儀禮』「사우례士虞禮」에 "재우는 모두 초우처럼 한다."라고 하였다. 축문에서는 '초우'를 '재우'로, '상향尙饗' 위의 '협사'를 '우사虞事'라고 쓴다. 만약 묘소가 멀어 도중에 유일을 만나면 머무르는 곳에서 재우제를 행한다.

특징 및 의의 재우제는 '강불재우剛不再虞'라 하여 반드시 유일, 즉 음일陰日에 지내야 한다. 그러므로 재우제는 초

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유일에 지낸다. 그러나 요즈음은 장례 다음 날 지낸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旅軒先生文集, 儀禮, 개정증보판 한국 의례의 연구(송재용, 박문사, 2010), 우리의 전통예절(은진송씨대종중, 향지문화사, 1994).

필자 송재용(宋宰鏞)

재최
齋衰

정의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서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상제가 입는 복服.

내용 망자가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과의 친소원근親疏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의거하여 유복친有服親들은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오복五服을 착용한다. 재최복齋衰服은 오복 중 두 번째로 중한 복服으로, 재최齋衰는 흔히 '자최齊衰'라고도 한다. '자齊'는 옷자락을 꿰매어 마름질한다는 뜻으로 옷의 끝단을 꿰맨 상복을 말한다. 정복正服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사士의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3년을 입는다. 남자의 재최복은 재최관齋衰冠·의衣·상裳·중의中衣·행전行纏·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삭장削杖·리履 등으로, 여자의 재최복은 소素족두리 또는 개두蓋頭·대수장군大袖長裙·전계箭笄(비녀)·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삭장削杖·리履 등으로 구성된다.

재최는 이 밖에도 재최장기齋衰杖朞, 재최부장기齋衰不杖朞, 재최오월齋衰五月, 재최삼월齋衰三月 등 친족親族·인족姻族의 친소에 따라 복을 입는 기간이 다르게 제정되었다. 재최장기齋衰杖朞는 만 1년간 상복을 입는 복으로, 정복은 적손이 아버지가 죽고 조부가 살아계실 때 조모를 위하여 입는다. 차등생포次等生布(중간 생포)로 지어 입고, 상제는 삭장削杖을 짚는다. 재최부장기齋衰不杖朞는 만 1년간 상복을 입는 복으로, 정복은 조부모를 위하여 입는데, 여자는 시집갔더라도 강복降服하지 않는다. 재최장기보다 다음 등급의 생포를 사용한 재최복을 입고, 삭장削杖을 짚지 않는다. 재최오월齋衰五月은 5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복으로, 정복은 증조부모를 위한 것이다. 재최삼월齋衰三月은 3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복으로, 정복은 고조부모를 위한 것이다. 재최오월과 재최삼월은 재최부장기와 동일한 등급의 생포를 사용한 재최복을 입고, 삭장削杖을 짚지 않는다.

남자의 의와 상, 여자의 대수장군大袖長裙은 조금 줄인 발이 굵은 생포(차추생포次麤生布, 가공하지 않은 베)를 사용한다. 남자의 의는 윗부분과 옆과 아랫단을 모두 꿰매는데 이때 솔기는 밖으로 향한다. 의衣의 길이는 상裳을 가릴 정도로 만들고, 가슴에는 최衰라는 포편布片(베 조각)을 단다. 그리고 의衣의 양어깨에는 깃에 부착하는 포편인 벽령辟領, 등에는 부판負版, 상의上衣의 몸체 아래에는 대帶만 한 크기의 다른 포를 덧대어 아래로 드리운 대하척帶下尺, 양 겨드랑이의 아래에는 임衽이 있다. 상裳은 앞 세 폭, 뒤 네 폭으로 매 폭을 연결하여 꿰매고, 솔기는 안으로 향하게 하며, 앞과 뒤는 서로 붙이지 않는다. 중의中衣는 속칭 중단의中單衣로 최복衰服에 받쳐서 입는 것으로, 의상衣裳과 같은 재료로 만들며 아랫단을 꿰맨다.

재최관齋衰冠은 참최관斬衰冠과 모양은 비슷하나, 재료의 승수升數가 다르고, 무武와 영纓을 베[布]로 만든다. 머리에 얹는 수질首絰의 둘레는 7촌寸(치) 남짓, 허리에 두르는 요질腰絰의 둘레는 5촌 남짓, 교대絞帶의 둘레는 2촌 정도이다. 모두 시마枲麻(씨 없는 삼)로 만든다. 상장은 오동나무로 만든 삭장削杖을 짚는다. 리履로 소구疏屨(거친 신)를 신고, 재최부장기, 재최오월과 재최삼월과 같이 삭장削杖을 짚지 않을 때는 마구麻屨(삼신)를 신는다. 여자의 재최복은 남자 의衣와 같이 옆과 아랫단을 모두 꿰매는데, 이때 솔기는 밖으로 향한다. 최·부판·벽령 등도 모두 남자와 동일하다. 머리에 쓰는 개두 또한 재최와 동일한 승수의 베를 사용하며, 평상시와 달리 개암나무로 만든 전계(비녀)를 쓴다. 수질·요질·교대·장杖을 만드는 제도는 남자와 동일하다.

특징 및 의의 옷의 끝단을 꿰매는 특징이 있으며, 참최와 비교하여 재료의 승수에서 차이가 난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조우현(趙又玄)

재행
再行

정의 혼례 후 신랑이 처가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절차.

역사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전통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만큼, 재행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고려시대에도 남귀여가의 풍속은 처가에 머무는 기간만 조금 짧아졌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왕조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하여 친영례親迎禮를 도입하고 반친영을 장려하면서 혼인 후 처가 체류 기간이 3일 정도로 짧아지자, 첫날밤을 지낸 후 이웃 마을에서 자고 다시 신부 집으로 가는 인재행引再行을 하거나, 아예 재행을 신행 후로 미루어 신부의 근친과 함께 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근대 이후까지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갖춘 가문에서는 남귀여가의 전통에서 비롯된 '달묵이' 또는 '해묵이' 신행을 행했으므로, 신부의 신행 이전 신랑이 처가를 방문하는 재행의 습속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재행은 근대 이후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 신식 혼례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점차 사라졌다.

내용 재행은 처가에서 혼례를 치르고 본가로 돌아간 신랑이 처음으로 처가를 방문하는 절차이다. 재행은 통상 신부의 신행 이전에 가는 것으로, 신랑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처가 쪽에서 사람이 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행한다. 재행에는 혼례식을 위한 신랑의 첫 번째 처가 방문, 즉 초행初行 다음으로 하는 처가 방문이라는 의미가 있다. 처가 중심의 혼속인 남귀여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의 고구려 기사에서 읽을 수 있다. 곧 혼담이 성립되면 여자 집에서는 사위를 위한 집인 서옥壻屋을 세우고, 저물녘 사위가 와서 딸과 동숙할 것을 간청하면 여자의 부모는 그를 서옥으로 안내하여 자기 딸과 동숙하게 하였으며, 사위는 돈과 폐백을 제공하고 자녀가 장성하면 처자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사위가 처가에 머무는 혼속이라고 하여 이것을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고도 한다. 일단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부부가 처가에서 생활한 것이니,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모처母處—부처제父處制의 거주형태이다. 이 전통은 근대 이후에도 달묵이 또는 해묵이 신행의 형태로 계속되었다. 곧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식을 하고 신방을 치른 다음 신부를 처가에 두고 혼자만 본가로 돌아왔다가 달포나 해를 넘긴 다음에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다. 달묵이 또는 해묵이는 신부가 시가로 들어오는 신행을 달이나 해를 묵혀서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달묵이나 해묵이를 할 경우에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하는데 이것을 재행이라고 한다. 묵신행을 할 경우 신랑의 재행은 몇 번이고 거듭될 수 있다.

그런데 친영례는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혼례를 올린 후 부부가 그 집에서 계속 산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처가살이가 전제된 남귀여가혼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조선의 여러 왕들이 친영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대부 양반층조차 이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주저했다. 결국 조선 중기에는 처가에서 혼례식을 하는 전통은 그대로 따르되 삼일우귀三日于歸를 하는 '반친영'이 장려된다. 이것은 혼례식을 올린 지 3일 만에 신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혼을 하던 당시로서는 반가에서 어린 딸을 혼자 시가로 보내는 일이 심정적으로 쉽지 않았고, 또 빨라진 신행에 맞추어 혼수나 상속 재산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컸으므로, 묵신행 전통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신부의 신행 시기는 시대와 지역 또는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신행이 늦어질수록 신부 집에서는 혼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서민층에서는 자연 삼일우귀 쪽을 더 선호하게 된다.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리고 바로 시가로 가는 당일우귀까지 생겨난다. 당일우귀는 민간에서 혼례 후 바로 돌아서 간다고 '도신행'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당일우귀나 삼일우귀가 점차 혼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재행은 혼례식과 신부의 신행 사이에 행하는 것이므로, 삼일신행을 할 경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특히 신랑 집과 신부 집이 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날밤을 신부 집에서 지내고 다음날은 인근 마을에서 잔 뒤에 다시 신부 집으로 재행을 하는 인재행引再行의 습속이 생겨났다. 처가와 본가가 가까울 경우에는 첫날밤을 자고 신랑 혼자 본가

로 갔다가 재행하여 신부를 데려가기도 하였다.

당일우귀 또는 삼일우귀가 자리 잡으면서 신행 후에 재행을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진다. 신행 후 3일 또는 1주일 안에 재행을 가는 것인데, 이때도 신부 집에서 사람이 데리러 오면 신랑 혼자서 가거나 부부가 함께 간다. 이것은 신행이 빨라지는 바람에 생겨난 변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례家禮』의 절차와 정신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혼례는 오랜 전통대로 여자 집에서 올리더라도 신부가 시부모와 사당을 먼저 알현한 후에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뵙는 것이 유교적 규범에 더 합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례』 권3 「혼례」의 친영親迎 조를 보면, 신랑 집에서 혼례를 올린 후, 신부가 시부모를 뵙는 '부현구고婦見舅姑', 사당을 알현하는 '묘현廟見'의 예를 마친 다음 날,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뵈러 가는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의 절차가 있다. 따라서 신행 후에 재행을 가는 것은 친영례의 '서현부지부모'의 절차를 따른 것으로 유교적 음양의 도리에 합당하다고 인식되었다. 신행 후 달이나 해를 넘겨 부부가 함께 재행을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재행을 신부의 근친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신랑이 장인과 장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는 것은 재행 때이다. 그런 만큼 재행 시에는 폐백이 따르기 마련이다. 혼례 후 곧장 재행을 갈 때는 술 한 병과 닭 한 마리 정도의 선물로 충분하지만, 달이나 해를 넘겨서 근친과 함께 갈 경우에는 떡, 술, 고기 등의 이바지 음식을 마련해서 간다. 신부 집에서도 그것에 상응하는 이바지로 답례한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것을 '정성'이라고도 일컫는다. 재행 때 '동상례東床禮'를 행하는 곳도 있다. 동상례는 신부 집이 있는 마을의 청년들이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 동년배들이 모여서 하는 '신랑 다루기'로,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지혜를 시험한답시고 여러 가지 난처한 질문을 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벌로 신랑의 발바닥을 몽둥이로 치거나, 신랑으로 하여금 술과 음식을 대접하게 하는 일종의 놀이이다. 또 재행 시에는 신부의 부모가 신랑을 신부의 친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며, 신부의 친족이 신랑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재행은 신랑이 처가 부모와 친척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절차이다. 이때 동상례를 행하거나 친척 및 동리 사람들과 인사와 음식을 나누는 것도 사위가 신부 집, 친족, 마을공동체에 빨리 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장치이다. 재행은 혼속의 변화에 따라 신부의 신행 이전 또는 신행 이후에 행하는 변이가 나타난다. 남귀여가 전통의 지속으로 볼 수 있는 묵신행에서 신행 이전에 신랑이 재행을 가는 것은 처가살이의 일환, 또는 처가에 거주하는 신부와 만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신행 후에 재행을 가는 것으로의 변화는 처가妻家 중심의 혼속에서 시가媤家 중심의 혼속으로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즉, 처가살이혼에서 시집살이혼으로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신랑의 재행이 신부의 묵신행처럼 달이나 해를 넘겨서 행해지거나 신부의 근친과 함께 행해지게 된 것도 혼인에서 여자 집보다 남자 집을 더 중시하게 된 변화를 반영한다. 신식 혼례에서 신혼여행 후에 대체로 신부 집을 먼저 들리는 것을 재행 습속의 잔영으로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관혼상제에 관한 연구(장철수, 집문당, 1995), 사람의 한 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천혜숙(千惠淑)

재혼
再婚

정의 불법적인 혼인으로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 다시 혼인하는 일.

내용 고대에 혼인제도가 성립한 이래 재혼은 별 규제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1389년(공양왕 1) 최초로 여성의 재혼 규제가 보인다. 도당都堂에서 "산기散騎 이상 관리의 처로서 봉작封爵을 받은 자는 재가하지 못하게 하며, 판사判事 이하 6품 관원의 처는 남편이 죽은 후 3년 이내에는 재가를 하지 못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절개를 잃은 것으로 논죄하자."라는 건의를 올렸다. 이는 말 그대로 '건의'였고 고려가 곧 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재가금지 문제는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406년(태종 6) 6월 대사헌 허응許應 등이 "부부는 인륜의 근본으로 부인에게는 삼종지의三從之義는 있어도 재혼할 수 없다. 대소 양반의 정처正妻 중 세 번 혼인하는 자는 고려의 법에 따라 자녀안恣女案에 올려 부도婦道를 바르게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혼이 아니라 삼혼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재혼 금지문제는 다시 성종 때 재론된다.

1477년(성종 8) 7월 조정 회의에서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 대부분의 관료들은 "어려서 과부가 되어 수절守節하고 싶어도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 부득이 수절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세 번 혼인하는 것 외에는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성종은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를 강조하며, 무려 46인의 대신 중 42인이 반대한 재가금지를 왕의 전지傳旨로 입법화한다.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재가 실행 부녀의 자손 및 서얼庶孼 자손은 문과 생원生員·진사과進士科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실리게 된다. 이 법조문의 특징은 재혼한 부녀자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문과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양반의 거의 유일한 관직 진출로인 과거를 응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양반으로 사는 삶의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여성 자신에 대한 처벌보다 몇 배나 가혹한 처사로서, 이후 양반층에서 여성이 수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는 갈수록 재가 자체를 악덕시하여 재가를 주선한 자까지 처벌이 확대 적용된다. 1528년(중종 23)에는 양재 찰방良才察訪 정유鄭裕가 청상靑孀이 된 딸을 개가시켰다가 조정에서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삭탈관직削奪官職된 사례까지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다 보니,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보쌈'이라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재혼을 하기도 하였다. 즉 양가가 합의 하에 과부를 납치하여, 사실혼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민층 이야기이다. 양반층에서는 자식의 장래를 망치면서까지 재혼을 하는 여성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수절해 열녀烈女가 되면, 가문의 영광이자 집의 세금 면제라는 실질적인 혜택도 주어졌으니 여성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재혼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보면, 성욕을 풀길 없었던 과부들이 밤중에 은밀히 종을 시켜 남자를 납치했다가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자루에 넣어 남자를 납치했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사례도 보인다. 이 보쌈은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었다. 즉 딸이 과부가 될 팔자를 타고났다는 점쟁이의 말을 들으면, 부모들이 생면부지의 남자를 보쌈하여 딸과 신방을 치르게 한 뒤 남자를 죽여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신랑이 한 번 죽은 셈 치고 딸을 다른 곳에 시집보냈다. 영조가 잠저潛邸 시절 미행을 나갔다가 보쌈에 걸려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희귀한 사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여성이 재혼할 수 없어 발생한 '범죄'였다 하겠다.

그런데 아들의 과거 응시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양반 여성들에게나 의미가 있었지 상민 이하의 여성들은 별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하층민들은 별 규제 없이 재혼을 해왔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점점 서민 이하 계층까지 전파되면서 이들 여성도 수절을 하게 된다. 이에 '양반은 다첩多妾하고, 과부는 수절'하여 가난한 남성들은 처를 얻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된다.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에 '청춘과부의 재혼을 허락하라'는 문구가 있음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여성의 재혼이 합법화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이다. "과녀의 재가는 귀천을 물론하고 자유에 맡긴다."라는 조항으로 여성을 억압하던 오랜 족쇄가 풀리게 된다. 이후 현대에 들어와 여성들은 자유로이 재혼하게 되었지만, 남성과 달리 '재혼 금지기간'이라는 것이 있었다. 즉, 아이의 출생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혼 후 6개월간은 재혼을 못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여성 차별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200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로써 여성의 재혼에 대한 법적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즉 전근대 시대에 여성의 재혼을 금지한 것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부계혈통의 가족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여성이 재혼한다면,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는 부계에 귀속되는가 아니면 모계에 귀속되는가, 새로운 아버지와 그 아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조선왕조는 아예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여 아이는 무조건 부계에 속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현대에 재혼한 여자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를 가리려는 것도 이러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은 폐지되었다. 아이의 귀속처는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를 길러주는 '지금의 부모'이다. 그리고 아이의 성씨도 선택할 수 있다. 재혼의 변천사 역시 우리 사회 여성의 위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成宗實錄, 中宗實錄, 이조여성사(박용옥, 한국일보사, 1976).

필자 권순형(權純馨)

적 炙

정의 제례에서 신에게 올리는 찬 또는 안주按酒로, 양념하여 구운 고기.

역사 『의례儀禮』「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에는 공이 대부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예가 기술되어 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앉아있는 손님인 빈賓을 위하여 음식을 내놓을 때 가장 존귀한 밥반찬은 소·양·돼지로 만든 구이인 적炙이었다.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에 의하면 1609년(광해군 원년) 조선정부에 최고의 손님인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에도 가장 존귀한 밥반찬으로 낸 것은 다섯 가지 어육魚肉을 구워서 한 그릇에 담아 올린 '오색적합성五色炙合盛 1기器'였다.

「공식대부례」에 등장하는 쇠고기적[牛炙]·양고기적[羊炙]·돼지고기적[豕炙]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꼬치에 꿰어 양념하여서 굽는 형태였는데, 이 꼬치구이적은 1609년에도 적용되었다.

내용 신을 위하여 향연을 베푸는 것이 제례祭禮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손님인 신神 역시 「공식대부례」 속의 빈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모시고, 향찬을 차려 올릴 때에도 가장 존귀한 밥반찬 또는 술안주는 '적'이 된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길례吉禮에 속하는 기신제나 시제 등에서 신께 음식을 차려 올릴 때 '적'을 가장 존귀한 찬품으로 설정하였다.

이재李縡(1680~1746)가 쓴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이것의 영향을 받아 그 후에 나온 『증보사례편람』, 『사례집의四禮集儀』, 『광례람廣禮覽』 등과 같은 가례서家禮書에 등장하는 제사상 차림 물목에서도 '적'은 신께 올리는 가장 존귀한 찬품이 되었다.

'적'은 원래 꼬치에 꿰서 양념하여 굽는 것이었다. 1800년대 말에 나온 필사본 조리서 『시의전서是議全書』 「제물부祭物部」에서는 삼적三炙을 하는데, 그중 싸리나무로 만든 꼬치에 손바닥 두께로 저민 쇠고기를 꿰서 구운 것을 '육적'이라 하였다.

구이와 적을 나누어 보면, '구이류'에는 가리구이·가지구이·간산적구이·갈비구이·갈치구이·게구이·계란구이·김구이·골뚜기구이·꽁치구이·꿩구이·너비아니구이·대합구이·더덕구이·도루묵구이·도미구이·동태구이·돼지갈비구이·민어구이·방어구이·방자구이·병어구이·복어구이·뱅어포구이·비웃구이·붕어구이·삼치구이·상어구이·생복구이·생치구이·소라구이·숭어구이·양구이·염통구이·오리알구이·


육적


어적


계적

적 | 충남 논산 사계 김장생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잉어구이·자라구이·장어구이·조기구이·제육구이·죽순구이·콩팥구이·편포구이·표고버섯구이 등이 있다. 그리고 '적류'에는 가지적·굴적·낙지적·누름적·닭섭산적·닭적·도라지산적·동아적·마작적·반적·복어적·북어적·산대적·산적·상어산적·생선적·생치적·설리적·설하멱적·소적·송이산적·쇠고기산적·계적·승검초산적·아저적·약산적·어산적·우두적·움파산적·쇠지라적·잡누름적·잡산적·장산적·족적·파산적·게적 등이 있다.

1975년에 나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는 제사 때, 3적에서 8적까지 올렸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두툼하게 저며서 조미하여 나무 꼬치로 꿰서 지진다. 갈비적은 갈비 3대를 붙인 채로 적틀에 맞추어 잘라서 양념하여 지진다. 생선적은 조기나 숭어 세 마리를 소금으로 간하였다가 함께 나무 꼬치로 꿰서 양념하여 찐 다음, 달걀지단채와 버섯채를 고명으로 얹어 머리를 동쪽으로 가게 하여 육적 위에 놓는다. 8색으로 할 경우에는 두부전·생선전·쇠고기간·천엽·집느리미 등을 썼다. 대체로 꼬치에 꿰서 구운 형태를 보여준다.

특징 및 의의 현재 '적'을 '구이[炙伊]'라고도 한다. 수조육류·어패류·가지·더덕과 같은 채소류에 소금으로 간하거나 또는 갖은 양념을 하여 불에 구운 음식의 총칭이다. 그중 고기를 두둑하게 저며서 양념하여 꼬치에 꿰어 구운 것을 '적'이라 하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廣禮覽, 國朝續五禮儀, 四禮便覽, 世宗實錄, 是義全書, 迎接都監儀軌, 儀禮, 增補四禮便覽,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5).

필자 김상보(金尙寶)



적기
炙器

정의 육적肉炙(쇠고기), 어적魚炙(주로 조기), 계적鷄炙(혹은 봉적鳳炙, 닭 또는 계란), 그리고 소적蔬炙(두부)을 담는 제기.

역사 『의례儀禮』, 『예기禮記』, 『가례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 따르면 초헌에는 간肝, 아헌과 종헌에는 구운 고기(『의례』에서는 번육燔肉, 『가례』에서는 적육炙肉, 『사례편람』에서는 육적肉炙)를 올린다고 하였다. 술안주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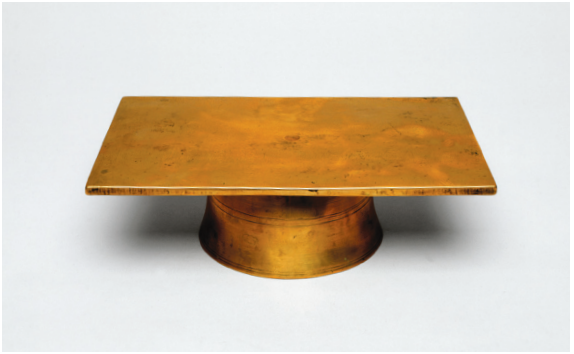
『사례편람』에서 고기는 가축이나 산짐승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고, 생선은 물에서 사는 것이면 모두 사용하였으나 잉어는 제사에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책에서 초헌初獻에는 간적을,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에는 육적을 올린다고 하였다.

내용 가문에 따라 전, 곧 육전, 어전, 소전을 고임의 형태로 각각 쌓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도적都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사계 김장생金長生 종가), 쇠고기 토막, 생선(주로 조기) 온마리, 익힌 닭을 각각의 제기에 담아 3적의 형태로 올린다.

고례에는 희생犧牲을 중시하였으나, 후세에는 적육炙肉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천위不遷位 제사 때는 생牲을 도살하여 조리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종가에서는 마당에 솥 세 개를 설치하여 고기를 삶거나 데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 의성 김씨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종가의 불천위제사의 제물은 흰밥·갱·면·숙채·산채·침채·쌈·포·식혜·도라지정과·청포묵·편·약과·산자·도적·미수·오탕·실과 등이다. 도적은 1단부터 북어 40마리, 고등어 12마리, 방어와 상어는 17×4×2㎝ 크기로 각각 40토막, 조기 6마리, 쇠고기는 5×4×1㎝로 저며 대나무 꼬치에 꿴 것 10꼬치. 그리고 닭 두 마리를 맨 위에 얹는다. 이 종가의 경우, 어적, 육전을 담은 적기는 보이지 않고 도적을 담은 도적기뿐이다. 이처럼 안동 지역의 도적은 육적, 어적, 계적, 곧 편적片炙을 별도로 진설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제물이다.

특징 및 의의 제사에 날고기를 올리는 것은 산 사람의 음식과는 다른 방식이며, 조상을 산 사람과 다르게 인식한 조상관에 따른 결과이다. 서민의 기제사에는 날고기



적기 | 국립민속박물관

가 오르지 않는다. 불천위제사와 같이 큰 제사의 경우만 생육을 올린다. 안동 지역 불천위제사의 도적은 생육生肉과 숙육熟肉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제사의 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설할 때는 생동숙서生東熟西라고 하여 날 것은 오른쪽[東]에 차리고, 익힌 것은 왼쪽[西]에 놓는다.

참고문헌 식생활 기명기구(윤덕인 외, 한국음식대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종가의 제례와 음식 1-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종가의 제례와 음식2-서흥김씨 한훤당 김굉필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필자 윤덕인(尹德仁)

전
奠

정의 죽은 이를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아침저녁 및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상례 절차에 따라 영상靈床에 음식을 올리는 의식.

역사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전은 치제置祭, 곧 제사를 드리는 일반적인 동작을 지칭한다. 『예기禮記』「단궁하檀弓下」의 공영달孔穎達 소疏에는 사람이 죽은 뒤부터 장례를 치르기 이전까지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를 전이라고 하고, 『예기』「제통祭統」의 정현鄭玄의 주석에서는 '제사 지내는 시기가 아닌데 제사 드리는 것'을 전이라 하였다. 이처럼 전은 장례를 치르기 이전에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 또는 임시로 올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장례 때까지만 전奠이라 칭하고, 이후는 제祭라고 한다. 또한, 전을 상제喪祭라 하고, 우제부터는 길제吉祭라고도 구분하기도 한다.

내용 전은 상례절차에 따라 복復 후에 처음 올리는 시사전始死奠, 습전襲奠, 소렴전小殮奠, 대렴전大殮奠, 성복전成服奠, 조전弔奠, 조전祖奠, 견전遣奠, 친빈전親賓奠, 급묘전及墓奠, 제주전題主奠 등이 있고, 아침저녁 및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조전朝奠, 석전夕奠, 삭전朔奠, 망전望奠 등이 있다. 전은 장례 때까지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초우제初虞祭 후에 조전과 석전을 파하고, 삭전과 망전은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한다.

『가례家禮』 및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습襲 이후에 시사전을 한다고 하였으나, 『상례보편喪禮補編』에서는 "고례를 따라 전을 행한다."고 하여,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서는 복 이후에 시사전을 한다고 하였다. 이때 전의 절차는 "집사가 탁자에 포脯와 해醢를 놓고 조계阼階로 올라가면, 축은 술을 따라 시신의 동쪽 어깨쯤에 올리고 보로 덮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은 형상이 없어 전의 진설을 통해 의지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이 처음 죽었을 때, 예로써 보면 새것을 따를 겨를이 없고, 정으로써 보면 차마 옛것을 바꿀 수 없는 까닭에 찬장에 남아있던 포와 해로 전을 행한다."라고 하였다.

습과 소렴의 전은 모두 시신 곁에 두는데, 대렴부터는 실내에 차려두고 시신에게는 하지 않는다. 성복 이후에는 매일 아침 상복을 입고 곡한 다음 조전을 하는데, 이때 축관이 분향, 헌작을 하면 모두 재배하고 곡한다. 저녁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석전이라 하는데, 이를 합하여 조석전이라 한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조전에 술과 과일, 포를 올리는데, 초하루에 올리는 것을 삭전, 보름에 올리는 것을 망전이라 하며, 초하루와 보름에 올린다고 하여 합하여 삭망전이라 한다.

조문에도 전을 하는데, 이를 조전弔奠 또는 치전致奠이라 한다. 이때 향·차·초·술·과일을 쓰는데, 떡이나 닭 등의 찬물이 있으면 별도로 제문祭文을 작성하여 고한다. 발인發靷 하루 전날 아침에는 복인들이 모여 영좌에 조전朝奠을 차리고 축관이 헌작하고 영구를 옮긴다는 고축을 하면 복인이 모두 곡하고 재배한다. 도빈塗殯을 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열 때 따로 별전別奠을 한다. 그리고 발인 전 저녁에는 영결을 고하는 조전祖奠을 행

한다. 그리고 발인하는 날 아침에 영구를 상여에 옮겨 실으면, 복인들을 곡하고 축관은 영좌를 상여 앞에 놓고 견전遣奠을 올린다. 행상 중에는 친구나 친지의 집 앞에서 친빈전, 또는 노전路奠을 행한다. 영구가 묘지에 도착하면 축관이 혼백을 받들어 영악에 모셔 영좌를 설치한 다음 다시 급묘전을 차린다. 그리고 하관 후 제주가 끝나면 제주전을 행한다.

전을 올릴 때 차리는 음식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포, 해, 소채, 실과 등이다. 단지 삭망전에는 떡과 면, 메와 갱 등을 올리는데, 생시와 같이 메를 좌측, 갱을 우측에 진설한다. 그리고 생전처럼 항상 모신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참신과 강신의 절차가 없이 상제들이 다 같이 곡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전에는 강신, 뇌주酹酒와 헌작 후 삼좨三祭를 하지 않고, 초우제부터는 이를 행한다.

특징 및 의의 전은 생시와 같이 섬기므로 그 예禮를 매우 간략하게 하였다. 슬픔으로써 꾸밀 수 없고, 새로 죽은 자에게 차마 급하게 귀신鬼神의 예로써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주가 슬프고 애통하여 스스로 전을 행할 수 없어서 축과 집사가 주인을 대신해서 술, 과일 등을 차려 놓고 전을 행한다. 그리고 전에는 축이 상주의 우측에서 서향하여 독축하는데, 졸곡卒哭부터 상주의 좌측에서 동향하여 독축한다. 또한, 상주의 호칭은 제주전부터 졸곡까지는 '고애자孤哀子'로 칭하지만, 부제부터 소상·대상·담제禫祭·길제까지는 '효자孝子'로 칭하여, 장례를 전후로 전奠과 제祭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說文解字, 禮記, 삼년상과 상중 제사(최순권, 그 따뜻한 이별의 기억-김언석 기증 충남 상례 사진전, 국립민속박물관, 2010), 상례의 전과 제사의 성격에 관한 연구(유춘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필자 최순권(崔順權)

전안례
奠雁禮

정의 전통 혼례 때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

역사 고대 중국의 주周나라 또는 진秦나라, 한漢나라에서는 기러기를 혼례에 사용했다고 짐작되는 내용이 후한後漢의 『백호통의白虎通義』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백호통소증白虎通疏證』을 보면 기러기는 양陽을 따르는 새로, 아내가 지아비를 따르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又是隨陽之鳥, 妻從夫之意也].

그러나 전안례의 풍속은 그 후 중국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에서 기러기가 혼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고조선을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돼지고기나 음식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기러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볼 수가 없다. 조선시대에 전안례가 성행한 것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아마도 살아있는 기러기를 이용했겠지만, 점차 귀해진 탓으로 일반 서민들로서는 손에 넣기가 너무 힘들어 나무기러기를 조각하여 혼례에 사용했을 것이다.

내용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을 '초행醮行'이라 하는데, 이때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가서 처음 행하는 것이 전안례奠雁禮이다. 이 전안례부터 의식의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절차를 적은 홀기笏記를 읽는 노인을 내세워 순서를 읽게 한다. 전안례를 위해서 신부 집에서는 미리 대문 안 적당한 곳에 멍석을 깔고 병풍을 두른 앞에 작은 상을 놓고, 상 위에 붉은 보자기를 덮어 놓는다. 이 상을 '전안상'이라 하며 전안상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준비해 놓은 곳을 '전안청奠雁廳'이라 한다.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오면 전안청으로 안내한다. 홀기의 부름에 따라 신랑이 전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기러기를 들고 온 사람이 기러기를 신랑에게 들려준다. 신랑이 이것을 받아 상 위에 놓고 읍揖을 한 다음 일어서서 큰 절을 두 번 한다. 신랑이 절을 하는 사이에 신부 어머니는 기러기를 치마로 받아들고 신부가 있는 안방에 던진다. 이때 기러기가 누우면 첫딸을 낳고, 일어서면 첫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지역사례 강원도 정선에서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기러기를 주고 이배二拜를 하면, 아버지는 기러기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신부에게 전하고 신부는 나와 이배로 답례한다. 전라북도 순창에서는 기러기를 들고 온

사람이 신랑에게 기러기를 주면 신랑은 이것을 상에 놓고 진사배進三拜 퇴삼배退三拜를 한다. 중부지역에서는 신랑이 기러기를 상에 놓고 북향사배北向四拜를 하면 그 사이에 신부 어머니가 절이 끝나기 전 모르는 사이에 치마로 받아 안방으로 가져간다.

전라남도 강진에서는 홀기에 따라 의식이 진행되는데 전안례 부분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신랑이 대반對盤의 안내를 받아 전안청 앞에 선다[替揖壻人]. 이때 중방이 기러기를 가져오면, 신랑은 기러기를 받아든다[從者奉雁授之壻]. 이때 교배상交拜床이 아닌 작은 상을 전안상으로 마당 가운데 놓은 다음, 상 위에는 정화수를 놓고 뒤에는 임시로 병풍을 쳐 놓는다. 초도草島의 경우 전안상은 같은 모양이나 정화수 외에 쌀 한 사발을 놓는다. 신랑은 기러기를 들고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는다[壻執雁北向跪]. 그런 다음 기러기를 상 위에 놓는다[置雁於地, 奉雁置于卓上]. 기러기를 놓고 일어서서 북향재배를 한다[俛伏興再拜]. 이로써 의례의 첫 부분인 전안지례가 끝난다. 이 지역은 기러기를 오리로 통칭한다. 이 밖에 여러 곳에서도 오리라고 표현한다.

순창 지방에서 행하는 전안지례는 다음과 같다. 신랑이 문전에 와서 말에서 내리면 '팔머리대반'이 신랑을 맞아 세 번 읍한다. 신랑도 역시 세 번 읍하여 답례하고 안상安床으로 인도된다. 이때 안부雁夫가 신랑 앞에 가서 기러기를 주면 신랑이 받아서 안상에 놓고 진삼배進三拜 퇴삼배退三拜한다. 이때 신부 집 유모가 기러기를 안아다가 신부 앞에 놓는다. 이것을 전안례라 하며 친영親迎 중 제일 중요한 의례이다.

충청북도에서는 나무기러기를 상 위에 놓고 북향재배한다. 나무기러기를 받는 사람은 지방에 따라 다르다. 신부어머니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때로는 혼주나 깨끗한 남자가 받기도 한다.



전안례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생태학적으로 기러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하여 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평생 사랑을 지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러기를 사람에 빗대어 혼인을 하면 기러기처럼 평생을 사랑하고 다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전안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겨울에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고 봄에는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이것은 음양에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러기처럼 음양의 도를 따라 양陽인 남자와 음陰인 여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기러기가 신의를 천성으로 지키는 새이므로 본받기 위해 전안례를 행한다고 한다. 경상남도에서는 기러기가 겨울철에는 남으로, 여름철에는 북으로 철을 따라 이동하는 수양조隨陽鳥이고, 한번 교미하면 한 쌍이 내내 같이 살아 깨끗한 정절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白虎通疏證, 白虎通義, 四禮便覽, 禮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전북·충남·충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의례의 연구(송재용, 제이엔씨, 2007), 한국인의 일생(이광규, 형설출판사, 1985), 木の雁-韓國人の人と家(竹田旦, サイエンス社, 1983).

필자 최인학(崔仁鶴)

접촉주술
接觸呪術

정의 접촉 혹은 감염에 기반한 주술.

내용 영국의 사회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인 프레이저(J. Frazer, 1854~1941)는 유감주술 혹은 모방주술과 함께 접촉주술·감염주술이 주술을 구성하는 양대 주술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접촉주술은 접촉 혹은 감염의 법칙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접촉했던 물체에 모종의 행위를 가하면, 그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모종의 행위와 같은 결과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된다.

접촉주술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모방주술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접촉주술 혹은 감염주술의 가장 보편적인 예는, 머리카락이나 손발톱과 같은 인간 신체의 일부분을 손에 넣은 사람은 그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의 주인을 어느 곳에서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어느 곳에서나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호주 원주민은 성인식을 치르며 소년의 치아를 뽑는다. 하지만 소년과 치아 사이에 여전히 공감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원주민들은 치아를 강이나 샘 가까운 나무껍질 속에 넣어 둔다. 만일 껍질이 잘 자라서 치아를 덮거나 치아가 물속에 떨어지면 만사가 잘 된다고 믿는 반면, 치아가 노출되어 그 위에 개미가 모여들면 소년은 입병을 앓게 된다고 한다.

탯줄과 태반이 신체와 공감적 결합을 유지한다는 믿음도 접촉주술을 가능하게 한다. 탯줄이나 태반이 잘 보존되면 부귀영달을 누리고 훼손되면 재난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 에식스 지방의 주민들은 칼에 베이면 도끼날에 기름을 바르고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둔다. 도끼날에 묻은 기름이 마르면 칼에 베인 환부도 잘 아물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칼과 상처가 관련된 접촉주술은 멜라네시아나 호주 원주민 사이에서도 보인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접촉주술을 행하였다. 다래끼가 난 사람이 자신의 눈썹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의 돌 위에 놓았을 때 그 돌을 가장 먼저 찬 사람에게 다래끼가 옮겨간다고 믿는 것이나, 아이 낳기를 원하는 여인이 출산한 집에 찾아가 산모가 입었던 치마를 얻어다 입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특징 및 의의 접촉주술 혹은 감염주술은 프레이저도 인정하듯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방주술 혹은 유감주술과 함께 사용된다. 인간이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한, 기술문명의 발전 속에서도 접촉주술을 포함한 주술은 종교와 함께 민속문화의 하나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김경희 역, 동문선, 1993), 황금가지(J. Frazer, 신상웅 역, 동서문화사, 2007).

필자 강정원(姜正遠)

정복
正服

정의 상례 오복제도에서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따른 상복.

내용 상례 오복제도에서 정복正服을 입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참최삼년斬衰三年: 부친상을 당하여 참최복(상복의 아래 단을 접어 올리지 않음)을 입는 삼년상으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처妻, 아들, 며느리, 아버지가 죽고 없는 경우 아버지 대신 손자가 삼 년간 입는다. 증손과 현손의 경우도 이와 같다. 출가하지 않은 딸, 첩, 아버지도 대를 이은 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②재(자)최삼년齋[齊]衰三年: 모친상을 당하여 재최복(상복의 아래 단을 접어 올림)을 입는 삼년상으로, 아들·며느리·딸·어머니가 대를 이을 맏아들을 위하여 입는다.
③재최장기齊衰杖朞: 재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기년상을 입는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입고, 아버지가 있을 때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부재모상父在母喪).
④재최부장기齊衰不杖朞: 기년복으로 1년간 입으며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손자, 손, 종자從子(조카), 출가하지 않은 질녀, 형제, 자매, 백숙부모, 고모, 부모가 여러 아들을 위하여, 할아버지가 맏손자를 위하여 입는다. 증손·현손도 이와 같다. 시부모가 맏며느리를 위하여 입는다.
⑤대공구월大功九月: 손부, 질부, 사촌형제, 출가하지 않은 사촌 누이, 할아버지가 여러 손자를 위하여 입는다. 남편

의 백숙부모, 시부모가 여러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다.
⑥재최오월齊衰五月: 증손, 증손녀가 입는다.
⑦소공오월小功五月: 종손자, 종손녀 낭자, 종질, 종질녀 낭자, 종숙부모, 종고모 낭자, 종조부모, 종고모, 재종형제, 재종자매 낭자, 형수제수, 시숙, 시이모, 시누이, 시고모가 입는다.
⑧재최삼월齊衰三月: 현손, 현손녀, 종복이 종손宗孫을 위하여 입는다.
⑨시마삼월緦麻三月: 증손부, 현손부, 종손부, 종질부, 종형제수, 종증조부모, 재종손, 재종손녀 낭자, 재종질, 재종질녀 낭자, 재종조부모, 재종숙부모, 재종고모 낭자, 삼종형제자매가 입는다.

특징 및 의의 오복의 차례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3년, 조부 형제간과 삼촌 등이 돌아가셨을 때는 1년, 사촌 등은 대공 9월, 5촌·6촌 등은 소공 5월, 7촌·8촌 등은 시마 3월이지만 가복·강복 의복 등이 있어서 조금씩 달라진다. 오복제도를 통해 친족 관계를 확인하며 친족 간의 의리와 화목 단결을 더욱 굳게 한다.

참고문헌 朱子家禮, 상례 오복제도 연구(김시황, 퇴계학과 유교문화2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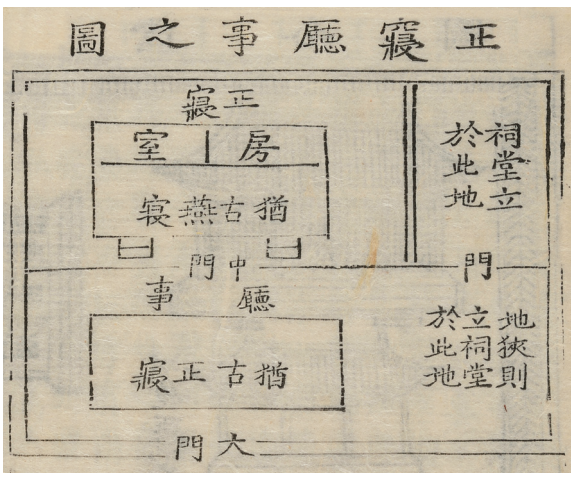
필자 김시황(金時晃)

정침
正寢

정의 평소에 거처하는 살림채 및 제례를 거행하는 장소.

내용 정침正寢의 사전적 의미는 '제사를 지내거나 일을 보는 몸채의 방'으로 입식 생활을 하는 중국의 가옥구조에 입각하여 벽돌바닥 위에 침상을 둔 공간이다. 예서에서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천거정침遷居正寢'이라고 하여 병이 깊어진 환자를 정침으로 옮기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군주(제왕)의 경우 반드시 정침에서 승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종正終'이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천자·제후·경대부·사士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갖추고 있는 시설이지만, 온돌과 마루에서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의 가옥에는 중국의 정침에 해당하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중국의 정침 개념을 수용할 때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정침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길례 등을 거행하는 제사청이나 재숙소齋宿所를 의미하는 것, 둘째, 연거燕居의 공간으로 정당正堂이나 안채를 의미하는 것, 셋째, 궁궐 내의 의례를 거행하는 전각이나 군주의 승하 장소를 의미하는 것 등이다. 이로 볼 때 정침은 일상의 거처공간이자 크고 작은 의례를 수행하는 행례 장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역시 정침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전당前堂을 언급하며 '집안에 제사상을 차리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라 했다.

참고로 우리 궁궐건축에서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 창덕궁의 선정전宣政殿, 창경궁의 문정전文政殿, 경희궁의 자정전資政殿 등이 정침에 해당한다. 총 다섯 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세 칸, 양쪽으로 각각 한 칸씩 구분된 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정침은 역대 왕들의 승하 장소로 이용된 적이 전혀 없다. 왕들은 대부분 침전 용도의 공간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울러 사정전의 바닥은 마루였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이 되면 온돌방이 있는 만춘전萬春殿(사정전 동쪽에 위치)과 천추전千秋殿(사정전 서쪽에 위치)을 왕의 집무실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바닥에 벽돌을 깔아 입식 생활을 하는 중국의 가옥구조와 달리 온돌방을 주된 거처공간으로 삼았던 우리 생활습속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궁궐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온돌이 확산된 민간가옥과 달리 조선 중기



정침청사지도 | 가례증해 | 국립민속박물관

까지만 하더라도 벽돌과 마루로 된 건물이 주를 이루었고 온돌이 마련된 곳은 내전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다 보니 정침이 아닌, 온돌이 설치된 별도의 건물을 왕의 침전 및 승하 장소로 이용했던 것이다. 또한,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심원深源이 온돌과 마루를 겸비한 전각을 건립하여 왕의 연거燕居공간으로 삼을 것을 청하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고례에 의거하여 정침제도를 수용했으나 생활습속의 차이로 곤혹을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침은 중국과 달리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이었다. 다만, 중국의 정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제청·사랑채·안채가 있으며, 특히 천거정침遷居正寢 장소로서의 정침은 안방을 일컫는 듯하다. 즉, 중국의 정침은 접객과 행례, 천거정침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한국에서는 마루가 깔린 대청에서 제례와 접객을 거행하여 천거정침을 수행하는 공간이 안방으로 되었던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정침은 입식 생활을 하는 중국의 가옥구조에 근거하여 설정된 공간이었으므로, 좌식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의 가옥구조에 적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朝鮮王朝實錄,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조선왕실의 정침 개념과 변동(조재모, 대한건축학회논문집20-6, 대한건축학회, 2004).

필자 김미영(金美榮)

제관
祭官

정의 헌관獻官·축관祝官·집사자 등 제사에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사람.

내용 제관은 제사가 진행될 때 술을 올리는 헌관과 축문을 읽는 축관, 제사의 진행을 돕는 집사자 등을 말하며, 간혹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헌관은 신위에 잔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유교식



제관 | 경북 안동 겸암 류운룡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제사에서는 여말선초 성리학의 등장과 함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전래되어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삼헌관三獻官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오늘날까지 제례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종묘제례에서는 삼헌관 이외에 왕의 묘에 배향되는 공신에게 잔을 올리는 공신헌관功臣獻官, 칠사七祀에게 잔을 올리는 칠사헌관七祀獻官을 두기도 했다. 고대 종묘제사에서는 구헌九獻을 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주자가례』에서 초헌은 반드시 적장자인 주인主人(종손)이 하며, 아헌은 주부主婦(종부)가 맡고, 종헌은 친척이나 귀한 손님이 맡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거행되는 제례에서 주부가 아헌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주로 집안의 연장자가 아헌을 하고 사위나 귀한 손님이 종헌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는 기제사에서는 주부의 참제參祭가 이루어지나, 불천위不遷位 제사에서는 종부가 아헌하는 사례가 드물다. 예컨대, 경상북도 안동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종가의 종부는 불천위제사 때는 아헌을 하지 않지만, 기제사 때는 아헌으로서 헌작獻爵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천위제사가 후손 아닌 사람도 참제하는 사회적 의례이므로, 내외 윤리에 따라 외부 남성들과 종부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초헌관은 제사에서 신위에 가장 먼저 잔을 올리는 사람이다. 초헌관이 잔을 올린 다음 적炙을 올리고 밥의 뚜껑을 연다. 이때 축관이 초헌의 서쪽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초헌관은 재배하여 초헌의 절차를 마친다. 아헌관은 초헌관 다음으로 신위에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사람이며, 종헌관은 아헌관 다음으로 신위에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사람이다. 축관은 초헌례에 축문을 읊는 사람으로 집안의 연장자 가운데 학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 맡는다. 집사자는 한 명 또는 두 명을 두어 계반개啓飯蓋·헌다獻茶·철시복반撤匙覆飯 등 제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대규모 제사에서는 세분된 임무를 맡는 제관들이 있다. 예컨대, 2014년에 의성 김씨 청계 김진金璡(1500~1580)의 불천위제사를 올릴 때, 임무가 부여된 제관은 초헌, 아헌, 종헌, 축祝, 찬자贊者, 진설陳設,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奉爵, 전작奠爵, 봉반奉盤 등이었다. 또한, 2013년 안동 전주 유씨 임당시사林塘時祀의 제관은 상기上記한 청계 불천위제사 때와 한 항목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봉반이 빠지고 사준司罇이 들어갔던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제관은 제사에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헌관·축관·집사자로 구성된다. 유교식 제사에서 헌작은 세 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헌관은 초헌·아헌·종헌 세 명의 헌관을 원칙으로 하되, 헌관의 유고 시에는 초헌관이 석 잔을 모두 올린다. 제사가 가가례家家禮이긴 하나 제관의 구성은 다르지 않다.

참고문헌 제사와 제례문화(박원재·유권종·배영동 외, 한국국학진흥원, 2002),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201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배영동(裵永東)

제기
祭器

정의 제례祭禮에서 사용하는 그릇 및 관련 도구.

역사 조선시대 제례는 크게 관을 중심으로 거행하던 것과 일반의 사사로운 집단을 중심으로 행하던 것으로 나누어진다. 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제례公共祭禮에는 왕가와 종묘, 관가와 대성전大成殿 및 향교, 그리고 유림儒林과 서원 등의 제례가 포함된다. 반면에 사사로운 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사제례私事祭禮에는 일반적인 조상숭배의 제례가 포함된다. 공공제례의 경우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사제례는 권위보다 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을 추모하거나 애경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기도 공공제례에서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종류와 수량도 많은 데 비하여, 사사제례의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형태가 몇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제기는 용도에 따라 술과 물을 다루는 데 쓰이는 제기, 제물이나 제찬 같은 제수祭需를 담는 제기, 그리고 그 밖의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제례와 사사제례의 제기의 차이도 형태와 제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에서 지내는 제사의 경우, 중국식의 제기와 옛날 음식이 중심이 된 공공제례의 제기와는 달리 비교적 그 종류와 생김새가 단순하다.

집에서 지내는 제사에서 목기木器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제자의 질문에 송시열宋時烈은 검소하고 값이 비싸지 않아 무방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는 목기도 집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놋쇠 제기는 비교적 부유한 계층에서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격도 물론 높거니와, 깨끗이 닦아 사용하는 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제기가 시중에 나타나고 있다.

제기는 일반적으로 사당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 주희朱熹의 『가례家禮』에 의하면, 제기는 목적에 따라 따로따로 준비하고, 사당 밖에 주고廚庫를 세워 제물을 장만하는 신주神廚와 함께 의물衣物·유서遺書와 제기를 각각



제기 | 의성 김씨 학봉 종택

보관하며, 자물쇠를 채워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 중기의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의하면, 가난하여 집터가 좁을 경우에는 한 칸 사당 안의 서쪽에는 유서와 의물을, 동쪽에는 제기를 궤에 넣어 보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곡례曲禮』에서는, 군자는 가난할지라도 제기를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말고, 남에게 빌려서 사용하지 말며, 제기를 먼저 마련하지 않고서는 연기燕器(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릇)를 장만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제기를 못 쓰게 되면 땅에 파묻으며 아무것이나 제기로 대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예법대로라면 군자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제기는 팔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난하여 제기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는 평생 썼던 것이므로 연기를 제기로 써도 무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요즘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 특별한 형태의 제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그릇을 제기로 대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기를 중히 여겨 집집마다 반드시 장만하여 소중히 보관하였다가 제삿날에만 꺼내 사용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제기가 있는 집 이외에는 대개 상용하는 그릇을 제기로 대용한다.

내용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예서의 하나인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나와 있는 제기와 요즘 사용하는 제기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물이나 제수를 담는 제기로는 우선 밥을 담는 반기飯器가 있다. 형태는 일상생활에서 '꼭지바리'라고 불리는 그릇 모양의 제기로서, 낮은 굽이 달리고 뚜껑이 있다. 『세종실록』 오례지五禮志의 도해에 나오는 반발飯鉢과 똑같은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국을 담는 제기로는 『사례편람』에 갱기羹器가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보이는 갱접羹楪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례편람』에는 뚜껑이 있다고 하나 『세종실록』에는 뚜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일반적으로 국그릇을 대접으로 사용하며, 위에서 말한 갱기나 갱접은 탕기湯器라고 하여, 탕을 담아 올리는 데 사용된다.

형태는 사발에 좀 높은 굽이 달려 있으며 뚜껑이 없다. 그리고 국수를 담아 올리는 데 사용하는 제기로 『사례편람』에 면기麵器가 보이는데, 사발[椀]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떡을 담아 올리는 병기餠器로는 대접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사례편람』에 의하면, 대접은 적炙을 담는 적기炙器와 적을 물리는 데 사용하는 철적기徹炙器, 그리고 채소 반찬을 담는 소채기蔬菜器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떡은 떡틀, 적은 적틀이라고 하여 낮은 굽이 달린 사각의 나무 모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종실록』에 의하면 소채기는 소채포해접蔬菜脯醢楪, 적기는 적접炙楪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따로 찬접饌楪이 나타나고 있다. 이 찬접은 『사례편람』에 나타나는 장기醬器일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는 종지鍾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물고기나 고기를 담는 어육기魚肉器로는 사발 또는 접시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접시 종류의 제기로는 초를 담는 데 쓰이는 초접醋楪과 숟가락·젓가락을 올려놓는 시저접匙箸楪이 있다. 이 시저접을 『세종실록』에서는 시접匙楪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과일 담는 과기果器, 포를 담는 포기脯器, 젓갈을 담는 해기醢器가 『사례편람』에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수조시受胙匙(수조할 때에 사용하는 숟가락)·수조반受胙盤(수조할 때에 사용하는 제기로 접시를 사용함)·수조석受胙席(수조할 때에 앉는 자리)·숟가락[匙]·젓가락[匙箸楪]이 있으며, 제수를 장만할 때 사용하는 제기로 가마솥[釜]·시루[甑]·구기[勺]·둥근광주리[篚]·모난광주리[筐]·도마[俎板]·주발[椀]·동이[盎]·소반[盤]·칼[刀]·화로·적쇠[炙鐵] 등이 있다.

술과 물을 다루는 제기로는 『사례편람』에 술병, 술주전자[酒注], 술잔과 잔대[盞盤], 물병[玄酒甁], 모반茅盤(띠풀을 묶은 모속茅束을 담는 제기로서 네모난 바리), 술상[酒架] 등이 보인다. 제기는 그 재료가 나무·사기·놋쇠이다. 아마도 나무로 만든 제기는 가볍고 운반하기가 쉬워 주로 묘제墓祭에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집에서는 주로 사기와 놋쇠 제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제물을 담는 데 사용하는 그릇들이며, 평상시 쓰는 그릇과 구분하기 위해 굽을 높게 하였다. 평소에 잘 갈무리하여 두었다가 제사 때 잘 닦고 정비하여

사용한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 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권삼문(權三文)

제기함
祭器函

정의 제기를 갈무리하여 담아 두는 상자.

내용 제사에 사용되는 수저, 잔반, 밥그릇, 국그릇, 편대, 적대, 접시 등 각종 제사용 그릇과 모사기, 향로, 향합 등의 제기를 담아 두는 상자이다.

주로 나무 상자인 반닫이가 사용되었다. 반닫이는 전면前面 상반부를 상하로 여닫는 문판門板(젖혀 열게 된 문짝의 널)을 가진 장방형의 단층의류궤單層衣類櫃이다. 의류뿐만 아니라 귀중한 두루마리·서책·유기류鍮器類·제기류祭器類 등의 기물을 보관·저장하는 가구로도 사용하였다.

주희朱熹의 『가례家禮』에서는 사당 밖에 주고廚庫를 세워 제기를 보관하며, 자물쇠를 채워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7세기의 향촌 자료에는 "종가에서는 먼저 사당을 건립하고 사당 앞에 별도의 창고를 지어 여러 가지 제기를 저장하고 절대로 밖에 두지 말고 또한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라宗子家, 先立祠堂, 堂前別建庫間, 入藏祭時所用各件器用, 切勿外置, 又勿私用."는 표현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의 여의치 않아 대개 사당에 제기함을 두었다. 즉, 조선 중기의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의하면, "가난하여 집터가 좁을 경우에는 한 칸 사당 안의 서쪽에는 유서와 의물을, 동쪽에는 제기를 궤에 넣어 보관한다."라고 하였다.



제기궤 | 국립민속박물관
탕기, 병기, 수저 등 보관용품의 개수가 적혀 있음.

특징 및 의의 제기함은 사당을 갖춘 집에서는 사당에 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평소에는 사당에 주로 두었으나, 도적이 날뛰거나 전란 등의 경우에는 천장 위와 같이 쉽게 찾기 어려운 곳에 제기를 갈무리하였다는 제보 등을 통해 제기를 소중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향촌의 유교문화 일기(권삼문, 민속원, 2014).

필자 권삼문(權三文)

제례
祭禮

정의 조상숭배 의례의 하나로 제사 지낼 때의 예절.

역사 제례는 『가례家禮』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四禮의 하나이다.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정성의 표시이다.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이 마치 계신 듯이 모신다事亡如事存."라고 하여, 사당은 대체로 집의 동쪽에 위치하며, 사당 안에는 서쪽부터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순으로 4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셨다. 그리고 '고서비동考西妣東'이라고 하여 아버지 신위는 서쪽, 어머니 신위는 동쪽에 모셨다.

그래서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아뢰고,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인사드리는 것처럼 뵙고, 매달 초하루 및 보름에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절기마다 천신하며, 봄·여름·가을·겨울에는 시제를 지낸다. 또한, 기일에는 기제를 모신다. 이와 같이 사당에 조상이 계신 듯이 제사에 정성을 다하여,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후손에게 효성과 공경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당을 두지 못한 집에서는 벽감壁龕이나 별도의 감

실 형태의 장을 만들어 신주를 모시거나, 조상이 마치 살아계신 듯이 추모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의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로 사당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제례의 규범서가 된 『가례家禮』에는 사당을 중심으로 사시제四時祭·초조제初祖祭·선조제先祖祭·녜제禰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 의 여섯 가지 제례가 제시되어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에 한 차례씩 4대친(고조·증조·조·고)을 모시는 사시제는 사계절이라는 자연의 운행에 따라 사당이나 정침에서 지낸다. 왕실 조상의 경우는 맹월孟月(1월·4월·7월·10월)에 길일을 택하여 종묘에서 제례를 지내는데, 사대부 및 서민의 경우는 중월仲月(2월·5월·8월·11월)에 길일을 택하여 사시제를 지낸다.

동지에 시조를 모시는 선조제는 동지가 양陽의 시작임을, 입춘에 시조 이하 고조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선조제는 만물이 생장을 시작하는 봄을, 중추에 어버이를 모시는 녜제는 사물이 익는 가을을 상징하여 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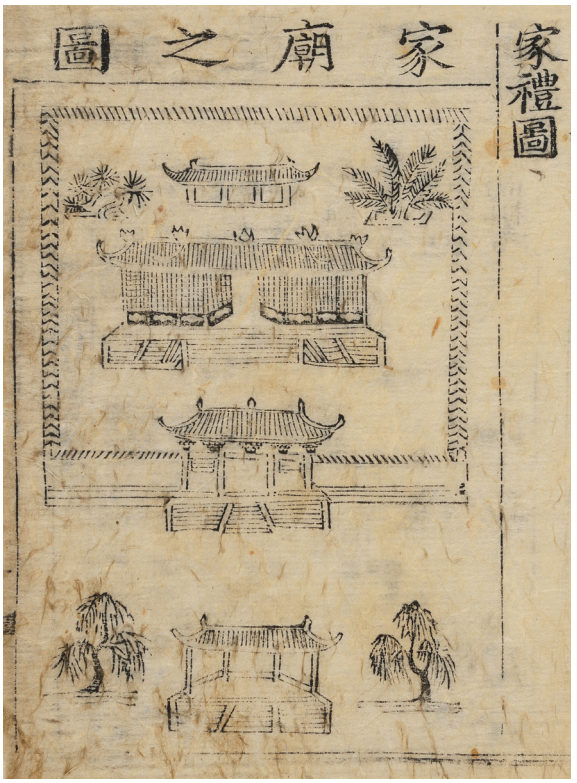
반면에 기일제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조상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그를 추모하는 의례이다. 기제사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례를 말한다. 기제를 지내는 대상은 고조까지이다. 기일은 피눈물을 머금을 만큼 슬퍼 다른 일에 미칠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술을 마시지 않으며 고기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음악을 듣지 않는다.

묘제는 시간보다는 무덤이라는 공간적 관념이 강하기는 하지만,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례로,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한다. 3월과 10월에 모시는 묘제는 초목이 처음 자라고 처음 죽는 시절을 만나면 자연스레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차례는 사당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 명절 및 조상의 생일 등에 지내는 간략한 의식을 말하는데, 차사茶祀 또는 다례라고도 한다.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중국의 『소학小學』과 『가례』가 사대부의 실천 규범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에 유교식 제례가 점차 보급되었다. 『가례』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기제와 묘제를 중시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및 『상례비요喪禮備要』 등에서는 크게 사시제, 기제, 묘제만을 주요 제례로 규정하였다. 이들 예서에서 가장 크게 여긴 제사는 정침[청사]에서 지내는 사시제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묘소를 중시하여 사당보다는 설·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四名日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왔다. 사당에서의 사시제와 사명일의 묘제가 절기상으로 겹치거나, 묘제 관행이 성행함에 따라 사시제는 점차 사라졌다. 이에 사당에서는 4대 조상을 중심으로 기제 및 명절 차사를, 묘소에서는 3월 또는 10월에 지내는 묘제(세일사) 및 사명일에 지내는 절사를 지내게 되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의 제정으로, 기제는 2대에 한하여 지내고, 차례는 설과 추석에, 묘제는 한식·추석·중구, 또는 적당한 날을 잡아 행례하게 하였다. 그러나 관행적으로는 4대친에 대한 기제와 아울러, 설과 추석(또는 중구) 등의 차사와 성묘가 중요한 제사라는 인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시제는 한식 또는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 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에는 핵가족화로 기제와 설, 추석의 차례가



가묘지도 | 가례 | 국립민속박물관

조상 제례로 인식되었다. 특히 설과 추석이 법정 휴일로 정해져 가족과 친족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라는 점 때문에 차례는 기제사보다 훨씬 더 화려한 제물을 차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사 등으로 제사 일수를 줄이고, 제사 시간도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기일 저녁 시간으로 옮기는 추세이다. 또한, 제물의 준비나 운반 등의 어려움으로 제사 대행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내용 제례 준비는 하루 전날 재계齋戒하고 제청祭廳에 신위神位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례를 지낼 장소로는 형편에 따라 안채 또는 사랑채의 대청이나, 별도의 제청을 이용하는데, 앙장仰帳과 병풍을 치고 자리를 깔며, 교의交椅·제상·향탁·향로·향합 등을 준비한다. 제청 등에 문이 없으면 발[簾] 또는 병풍 혹은 휘장 등을 마련한다.

저녁에서는 주인이 중심이 되어 시도기時到記 또는 시도록時到錄을 가지고 헌관 및 축, 집례, 집사자 등을 정하는데, 이를 기록한 것을 분정기分定記 또는 파록爬錄이라 한다. 주인이 초헌을, 주부가 아헌을 하나, 종헌은 주인의 동생이나 집안의 연장자가 한다. 요즘에는 아헌과 종헌은 집안의 연장자가 한다.

분정이 끝나면, 분정에 맞게 사당, 안채 및 사랑채 대청, 제청 등을 청소하고, 교의·제상·병풍·제기 등을 제청에 옮겨 놓는다. 그리고 안채에서는 주부를 중심으로 집안 친척이 모여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

진설陳設은 다음날 새벽 아침(자정 이후)에 나물과 과일과 술과 제물을 차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례편람四禮便覽』 등 예서에는 과일부터 진설을 하는데, 진설에는 대체로 찬 음식 및 잔과 시접 등을 올려놓는다.

1차 진설이 끝나면 조상을 모시기 위해 사당으로 가서 신주를 모셔오는 것을 '출주出主'라고 한다. 주인이 향을 피우고 출주고사出主告辭를 고한다. 출주고사가 끝나면 감실에서 고위考位 신주를 주독主櫝에 거두어 정침에 모신다. 주인은 주독을 열어 신주를 내어 교의交椅 위에 모시고 신주갑[韜]을 벗긴다. 이를 '계독啓櫝'이라 한다. 비위妣位의 경우는 주부가 받든다. 『가례』 및 『사례편람』에는 기일에 드는 한 신위만을 모시는데, 이를 '단설'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에 인정상 두 분을 모셔도 무방하다는 것에 따라, 대부분 기일에 드는 사람의 배위配位까지도 함께 모시는데, 이를 '합설合設'이라 한다. 합설에도 각 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 각설各設, 또는 한 상에 두 분을 함께 모시는 공탁共卓을 한다.

참신參神은 주인 이하가 조상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주인 이하 자리가 정해지면 참사자 전원이 참신재배를 한다. 신주는 그 자체가 신체임으로 조상으로 여겨 바로 참신을 먼저 한다. 반면에 지방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강신을 하고 나서 참신을 한다. 지방은 임시로 한지에 이름을 쓴 것이어서, 지방에다 신을 의뢰해야 한다.

강신降神은 하늘과 땅에서 조상의 혼백을 인도하는 의식으로, 주인이 신위전에 나아가 하늘에서 혼魂(양기)을 모시기 위해 향을 사른다. 『상례비요』에는 분향하고서 분향재배를 한다고 하여, 이를 준행하고 있다. 하늘의 혼에 이어서, 이번에는 땅에서 백魄(음기)을 모시기 위해 술을 따라 모사기茅沙器에 붓는다. 즉, 띠풀과 모래로 땅을 상징하는 모사기에 술을 부음으로써 땅의 백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에 주인은 하늘과 땅에서 혼백이 모두 오셨다고 하여 강신재배를 한다.

강신이 끝나면 주인과 주부가 생선과 고기, 떡과 국수, 국과 밥 등 더운 음식을 올리는 진찬進饌을 행하는데, 이를 2차 진설이라고도 한다. 이를 모두 마치면 주인 이하가 모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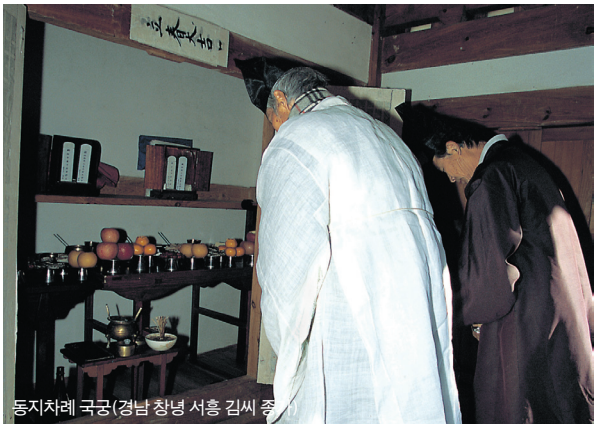
초헌初獻은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인데, 주인이 한다. 『가례』 및 『상례비요』, 『사례편람』 등에는 주인이 직접 신위전에서 잔을 내려서 침주斟酒를 하고 전작奠爵도 하며, 다시 술잔을 내려 모사기 위에 세 번 조금씩 붓는 좨주祭酒를 한다. 하지만 『국조오례의』 및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주인이 신위전에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가 침주斟酒, 전작奠爵으로서 첫 번째 잔을 올리기도 한다.

헌작 후에 집사자가 간肝을 화로에 구워 올리는 진적進炙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간肝 대신에 육적(소고기)을 주로 올리며, 도적都炙의 경우는 진찬 때 미리 올리기 때문에 삼헌에 진적이 생략된다. 이어 밥뚜껑을 여는 계반개啓飯蓋를 한다. 『가례』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으나, 『상례비요』에 이때 밥뚜껑을 열어 그 뚜껑을 그릇 남쪽에 놓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축관이 축판을 들


기제사 출주(대전 동춘당 송준길 종가)


기제사 분축(대구 달성 한훤당 김굉필 종가)


기제사 진설(경북 예천 권씨 종가)


동지차례 국궁(경남 창녕 서흥 김씨 종가)


차례(대구 백불암 최흥원 종가)


차례


묘제(대전 서구 도산서원)


묘제(부산 동래 정씨 종가 묘역)

제례 | 국립민속박물관

고 주인의 왼쪽에 서서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 독축讀祝을 한다. 독축이 끝나 축관이 일어나면 주인이 재배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다른 그릇에 술과 간적을 물리고 잔은 먼저 자리에 놓는다. 축관이 없으면 주인이 스스로 읽는다.

아헌亞獻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아헌은 주부가 한다. 주부가 없을 때에는 동생이 아헌을 한다. 아헌은 초헌과 같은데, 다만 독축이 없으며, 진적에 적육炙肉을 올린다. 적육으로 닭고기 또는 숭어를 올리기도 한다. 주부는 사배를 한다. 집사자가 다른 그릇에 술과 적을 물리고 잔은 먼저 자리에 놓는다.

종헌終獻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형제 중의 맏이나 장남, 친척 중에 연장자가 한다. 종헌은 아헌과 같다. 다만, 초헌과 아헌에는 다음의 헌작을 위해 재배 후에 바로 술을 퇴주기에 물리지만, 종헌에는 다음의 유식侑食을 위해 술잔과 적을 그대로 둔다. 『가례』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만, 『사례편람』에는 종헌에 퇴주와 적을 물리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종헌에 전작하기 전에 좨주를 하기도 한다. 즉, 유식의 첨작을 위해 술을 조금 퇴주기에 붓고 올리는데, 이를 '제작除酌'이라 한다. 또는 유식의 첨작을 위해 침주에 술을 조금만 붓고 올리기도 한다.

유식侑食에는 주인이 식사를 권유하는 의미로서 잔에 술을 더 채우는 첨작添酌을 한다. 지역에 따라서 주전자 대신에 술병을 쓰며, 또는 미리 마련한 첨작용 잔이나 밥뚜껑에 술을 따라 잔을 채우기도 한다. 그리고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 삽시정저插匙正箸를 한다. 주인과 주부는 북향하여 재배하는데, 주부는 사배한다.

합문闔門은 식사를 하시도록 축관이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이다. 축관이 문을 닫으면, 주인 이하 여러 남자는 동문에 서서 서쪽을 향하고, 주부 이하 여러 부녀자들은 서문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선다. 엄숙하게 한 식경食頃을 기다린다. 문이 없을 경우에는 발을 내리거나,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고 참사자 전원이 한참 동안 엎드리는 것으로 합문을 대신하기도 한다.

계문啓門은 축관이 세 번 헛기침을 하여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식사 후에 숭늉을 마시는 것처럼, 주인과 주부는 국을 물리고 차를 받들어 올리는데, 이를 '진다進茶', '헌다獻茶'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귀하였기 때문에 차 대신에 물을 올리며, 숭늉의 의미로서 물에 밥을 세 번 떠서 말고 그릇 안에 숟가락을 걸쳐 놓고 잠시 기다리거나 국궁을 하기도 한다.

기제에서는 사시제四時祭와 같이 주인이 나와 복주福酒와 조육胙肉을 먹는 음복수조飮福受胙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 서향하여 서고, 축祝이 올라가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예가 끝났음을 고하는 이성利成을 외치기도 한다.

사신辭神은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상이 떠나시는 것처럼 주인 이하 모두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축문을 불사르는데, 이를 '분축焚祝'이라 한다.

주인이 신주를 받들어 신주독에 거두어 사당에 다시 모시는데, 이를 '납주納主'라 한다. 지방으로 제사를 지내면 제거하여 불사른다. 주인이 올라가 신주를 받들어 주독 앞에 모시고 다시 사당 안에 봉안한다. 신주를 먼저의 자리에 편안히 모시고 발을 내려 문을 닫고 물러난다.

제사가 끝나 제사상의 음식을 모두 치우는 철찬撤饌을 한다. 기제에는 사시제와 달리 음복이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 음식으로 음복을 하며, 이날에 성묘를 하고 곡하기도 한다. 주부는 철찬하는 것을 지켜보며, 잔 및 퇴주기에 있는 술을 병에 따라 봉한다. 그리고 과일과 소채, 고기는 모두 평상시에 쓰는 그릇에 담고, 제기를 씻어 보관한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에 이러한 『가례』의 제례 내용을 수용하여 사대부의 실천윤리로 실천하면서 각 지방 또는 문중에 따라 행례 방식이 다른 '가가례家家禮'를 형성하게 되었다. '가가례'가 형성된 이유는, 『가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또 『가례』의 제례 방식이 중국적 특수성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석하거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용하여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알기 쉬운 명절제사와 차례(문화재청, 2006),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2005), 조상제례(임돈희, 대원사, 1990),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최순권(崔順權)

제례홀기
祭禮笏記

정의 제례祭禮를 거행하기 위한 의식儀式절차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글.

내용 제례홀기는 제례의 의식 절차를 기록하여 큰 소리로 읽음으로써 제례에 참여하는 참례자參禮者들이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을 알려주기 위한 식순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제례홀기로는 종묘제례홀기宗廟祭禮笏記와 문묘제례홀기文廟祭禮笏記, 釋奠笏記 등이 있다. 주로 서원書院이나 사당祠堂같이 규모가 큰 제례에서 홀기를 읽으며 제례의식을 진행한다.

제례홀기는 제례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성義城 김씨金氏 학봉鶴峯 종가의 기제홀기忌祭笏記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주出主 및 참신례參神禮

  주인이하서립재배主人以下序立再拜: 주인 이하는 모두 차례로 서서 두 번 절하시오.

  관세盥洗: 손을 씻으시오.

  축계독祝啓櫝: 축관은 신주독을 여시오.

  주인예향안전궤主人詣香案前跪: 주인은 향안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분향焚香: 향을 피우시오.

  고사告辭: 축관은 일을 고하시오.

  부복흥평신俯伏興平身: 주인은 부복했다가 일어나시오.

  축거주강자서계취정침祝擧主降自西階就正寢: 축은 신주를 받들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정침으로 나아가시오.

  주인이하복위主人以下復位: 주인 이하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참신재배參神再拜: 신위를 맞이하여 두 번 절하시오.

- 행강신례行降神禮

  주인관세主人盥洗: 주인은 손을 씻으시오.

  주인예향안전궤主人詣香案前跪: 주인은 향안 앞에 나아가 끓어 앉으시오.

  분향焚香: 향을 피우시오.

  뇌주酹酒: 강신술을 모사기茅沙器에 부으시오.

  부복흥재배俯伏興再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시오.

  복위復位: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진찬進饌: (식어서는 안 되는) 제수를 올리시오.

- 행초헌례行初獻禮

  주인관세主人盥洗: 주인은 손을 씻으시오.

  예선조고위전궤詣先祖考位前跪: 선조 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침주斟酒: 술을 따르시오.

  좨주祭酒: 집사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술잔을 받아 올렸다가 다시 집사에게 주시오.

  전주奠酒: 술잔을 신위전에 올리시오.

  집사자수잔전우고처執事者受盞奠于故處: 집사는 잔을 받아 본래 자리에 올리시오.

  진간접進肝楪: 간접(간적肝炙)을 올리시오.

  계반개啓飯盖: 메 뚜껑을 여시오.

  차예선조비위전궤次詣先祖妣位前跪: 다음은 선조 비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침주斟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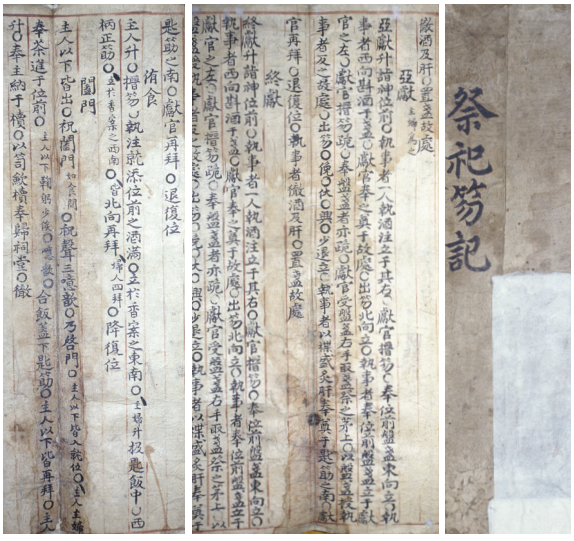
  좨주祭酒

  전주奠酒

  집사자수잔전우고처執事者受盞奠于故處

  진간접進肝楪

  계반개啓飯盖



제사홀기 | 경북 예천 예천 권씨 종가 | 1999 | 국립민속박물관

주인예향안전궤主人詣香案前跪

주인이하개궤主人以下皆跪: 주인 이하 모두 꿇어앉으시오.

독축讀祝: 축은 축문을 읽으시오.

축집판입어주인지좌궤독지祝執版立於主人之左跪讀之: 축은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주인부복흥재배主人俯伏興再拜

복위復位

- 행아헌례行亞獻禮

아헌관세亞獻盥洗: 아헌관은 손을 씻으시오.

예선조고위전궤詣先祖考位前跪

침주斟酒

좨주祭酒

전주奠酒

집사자수잔전우고처執事者受盞奠于故處

진육접進肉楪: 육접(육적肉炙)을 올리시오.

차예선조비위전궤次詣先祖妣位前跪

침주斟酒

좨주祭酒

전주奠酒

집사자수잔전우고처執事者受盞奠于故處

진육접進肉楪

아헌예향안전재배亞獻詣香案前再拜: 아헌관은 향안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시오(주부가 아헌이면 네 번 절함).

복위復位

- 행종헌례行終獻禮

종헌관세終獻盥洗: 종헌관은 손을 씻으시오.

예선조고위전궤詣先祖考位前跪

침주斟酒

좨주祭酒

전주奠酒

집사자수잔전우고처執事者受盞奠于故處

진어접進魚楪: 어접(어적魚炙)을 올리시오.

차예선조비위전궤次詣先祖妣位前跪

침주斟酒

좨주祭酒

전주奠酒

집사자수잔전우고처執事者受盞奠于故處

진어접進魚楪

종헌예향안전재배終獻詣香案前再拜: 종헌관은 향안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시오.

복위復位

- 행유식례行侑食禮

주인집주취첨잔중주主人執注就添盞中酒: 주인은 주전자를 들고 술잔에 첨작하시오.

삽시정저揷匙正箸: 숫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을 바로 놓으시오.

주인예향안전재배主人詣香案前再拜: 주인은 향안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시오.

복위復位

주인이하개출主人以下皆出: 주인 이하 모두 밖으로 나가시오.

합문闔門: 축관은 문을 닫으시오.

계문啓門: 축관은 문을 여시오.

진다進茶: 숭늉을 올리시오.

점다點茶: 메를 숭늉에 개시오.

국궁鞠躬: 몸을 굽히시오.

평신平身: 몸을 바로 펴시오.

낙시落匙: 수저를 내리시오.

합반개闔飯蓋: 메 뚜껑을 덮으시오.

주인이하재배사신主人以下再拜辭神: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신위와 작별하시오.

축분축문祝焚祝文: 축관은 축문을 불사르시오.

송주送主: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시오.

철찬撤饌: 제사 음식을 상에서 내리시오.

예필禮畢: 예를 모두 마치시오.

위의 홀기는 사당의 신주神主를 내어 제사 지내는 경우이다. 신주 없이 지방紙榜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출주절차가 없고 강신降神을 먼저 하고 참신參神을 나중에 하는 등, 행사의 사정에 따라 가감하여 시행한다.

특징 및 의의 제례를 거행할 때 모든 제례 참례자가 의식절차를 질서 있게 거행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식순의 일종으로 제례의 규모나 가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우리의 생활예절(전례연구위원회, 성균관, 1980),

종가의 제례와 음식1(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필자 도민재(都民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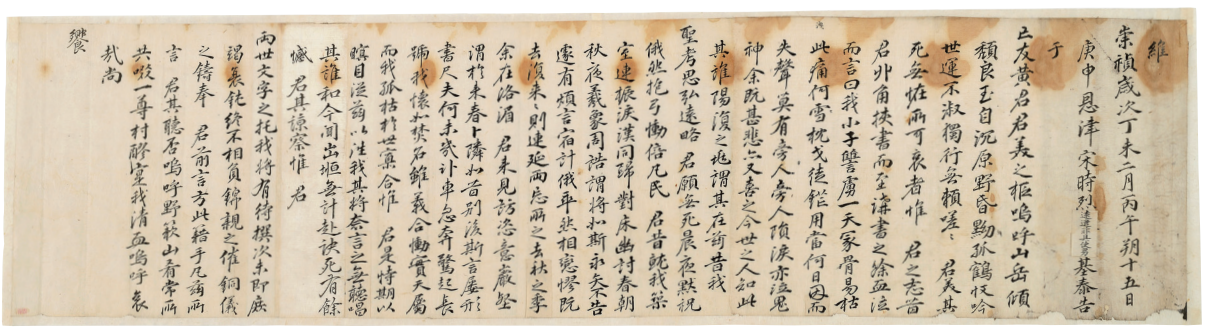
제문
祭文

정의 천지신명天地神明이나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낼 때 작성하는 글.

역사 제문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고 재액災厄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기도문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다가 중세 이후부터 인간의 언행을 칭송하는 제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명나라의 서사증徐師曾 역시 『문체명변文體明辯』에서 "제문이란 친우親友를 제사 지내는 글이다. 옛날의 제사는 흠향歆饗하기를 고하는 데 그쳤으나, 중세 이후에는 언행言行을 기리고 애상哀傷의 뜻을 의탁하는 것을 겸하게 되었으니 대개 축문이 변한 것이다."라고 했다. 즉, 신에 대한 기도문에서 출발했던 제문은 중세 이후에 고인의 행적을 칭송하고 그 죽음에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모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고대의 제문은 신들에게 경건함을 표시하고 조상에 대해 공순恭順함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경덕왕 때 승려인 월명사月明師가 지은 10구체 향가 〈제망매가祭亡妹歌〉를 제문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그 외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와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등도 제문으로 본다. 다만, 이들 작품은 제문으로서의 형식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반면, 신라 말엽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제오방문祭五方文〉, 〈축양마성제토지문築羊馬城祭土地文〉, 〈제참산신문祭巉山神文〉, 〈제초주진망장토문祭楚州陳亡將士文〉, 〈한식제진망장토문寒食祭陳亡將士文〉 등의 5편은 비교적 형태를 갖춘 제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문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엽부터다. 현재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고려시대의 제문은 총37편으로, 이규보李奎報의 〈제처문祭妻文〉, 최해崔瀣의 〈대권일재제모문代權一齋祭母文〉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문의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을 가져온 시기는 성리학의 도입에 의해 사림의식이 크게 성장한 조선 전기라고 할 수 있다. 가묘家廟의 설치가 법제화되고 혈통의식에 기초한 유교식 상제례의 시행과 더불어 소학과 향약 등 유교의 예속화禮俗化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스승·친구 같은 인간에 대한 짙은 애상이 담긴 제문 창작이 활발히 행해졌던 것이다.

내용 제문의 범주에는 제사를 올릴 때 읽는 고문告文과 축문祝文, 불교나 도교 의식儀式에서 사용하던 재사齋辭·원문願文·초사醮辭·청사靑詞를 비롯하여 제사와 상관없이 인물이 살았을 때의 행적을 기록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뇌誄·애사哀辭·조문弔文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성황신, 산신, 수신水神 등에게 바치는 글은 축문에 해당하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인귀人鬼에게 올리는 글은 제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되는 편이다. 축문은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제문은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와 생시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이기 때문에 대개 축문보다 길게 작성된다. 축문의 경우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연유로, 무엇을 올리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 제사의 거행시기인 연월일을 알리는 '유세차維歲次'로 시작하여 '신명께서 제물을 받으소서'라는 뜻의 '상향尙饗'으로 끝난다.



송시열이 제자인 황진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제문 | 1677 | 국립민속박물관

제문은 제사를 거행할 때 읽는 애제류哀祭類 문장 양식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죽음을 대상으로 지어진 글은 비지류碑誌類, 전장류傳狀類, 애제류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애제류는 작자의 슬픈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고인의 행적을 기록해둔 비지류, 전장류와 구분된다. 애제문은 애사哀辭, 제문祭文, 뇌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다만 애사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고, 뇌는 시호諡號를 짓기 위한 자료의 역할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문과 차이를 드러낸다. 이처럼 정형화된 축문에 비해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심정을 표출하는 제문은 문학적 가치 또한 높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하는 문집에는 축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제문은 다수 실려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상례의 조弔·천구遷柩·발인에는 제문이 작성되며, 치장治葬·급묘及墓·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祔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에는 축문만이 있으며, 제례의 사시제四時祭·녜제禰祭·기제·묘제에도 축문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과 대상에는 축문뿐만 아니라 제문도 짓는 경우가 많다.

제문은 초월자인 신을 달래기 위해 올리는 제신문祭神文과 죽은 인간을 애도하기 위해 올리는 제망인문祭亡人文으로 구별되는데, 제신문은 국왕이 주재자가 되어 공식적으로 거행하는 국가 제사의 제문과 군현 단위의 제사나 개인 차원에서 짓는 일반 제신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신문은 신에게 실상을 아뢰고[告由]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祈願]하는 식으로 전개된다면, 제망인문은 죽은 이의 성품이나 업적을 기리면서[稱頌] 그 죽음을 슬퍼하는[哀悼]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초기의 제문들은 제신문이 주를 이루었지만, 16세기에 사림파들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유교식 상제례를 보급하고 교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지치至治와 정치政治의 기반으로 소학의 도道 및 향약의 도 등을 내세워 혈연·지연·학연 의식을 강조했던 까닭에 제망인문이 급속히 증가한다. 제망인문 중에는 임금이 신하의 죽음(혹은 제사)에 하사하는 사제문賜祭文 또는 치제문致祭文과 각종 응교應敎 형태의 제문, 특정 문인집단이 연서連書로 작성하는 제문, 개인이 올리는 제문 등이 있다.

제문은 서두와 본문, 결어로 이루어져 있다. 서두에는 언제 누구를 위해 제사가 거행되고 있는지를 밝힌다. 본문은 죽은 이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망자의 성품과 행적을 칭송하고 죽음을 애도한다. 결어는 술을 한 잔 올려 신명神明이 제물을 받는 흠향이 이루어지기를 권하고 '상향'을 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서두가 '유세차'로 시작하여 마무리가 상향으로 끝나는 것은 축문의 격식과 유사하지만, 글자의 수효는 축문보다 훨씬 더 길다. 정해진 길이는 없으나 대략 300~600자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유학幼學 이상위李相渭가 서른 전에 죽은 부인 장씨張氏의 탈상 때 작성한 제문은 1,000여 자의 긴 글이다. 또 정경세鄭經世의 『우복집愚伏集』에는 〈제종숙참봉문祭從叔參奉文〉이 실려 있는데, 무려 1,320여 자나 된다.

특징 및 의의 축문이 제사를 올리는 연유緣由를 고하는 것이라면, 제문은 죽은 이의 성품과 행적을 칭송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격을 지닌다.

참고문헌 東文選, 四禮便覽, 愚伏集, 망자를 위한 진혼문(이종호, 제사와 제례문화, 한국국학진흥원, 2005), 제문 양식적 슬픔의 미학(이은영, 태학사, 2004).

필자 김미영(金美榮)

제물
祭物

정의 제사 때 조상을 봉양하고자 후손들이 올린 의례 음식.

역사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차리는 것은 "귀신은 형상이 없어 전을 진설하여 의지하게 한다."라는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형상이 없는 조상신은 자손들이 섬기는 마음에서 올린 음식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제례의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은 여러 항목 가운데서도 제물에 가장 적합한 말인 듯하다. 제사의 절차나 방식은 예서禮書를 비롯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가정마다 크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다. 그러나 제물의 종류·양·진설 등은 차이가 있어 특정 가문에 한해 차별성과 정체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자가례』에 의하면, 제사상에는 "과일 여섯 가지, 채소·포·해 각각 세 가지, 육어·만두·떡 각각 한 쟁반, 국과 밥 각각 한 주발, 간 각각 한 꿰미, 고기 각각 두 꿰미"를 차리도록 하여, 제물의 양이나 가짓수를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종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품계에 따라 제물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두었는데, 여기에 퇴계 선생은 형편에 따라 구하기 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니, 분수에 맞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주자가례』에 없는 해醢·침채沈菜·장醬 등이 추가되었다. 예서에 나오는 제물은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것이지만, 실제 거행되는 제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예서」에서 제시하는 제물과 같지 않다. 제물 가운데 메·갱羹·편餠·적炙·탕湯·주酒·과果·포脯 등은 제사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제물을 차릴 여건이 되지 않거나 약식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주·과·포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신분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물을 갖추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같은 종류의 음식일 때는 수량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제례의 제물장만이 오히려 표준화되기 시작했다. 산업화 이후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조리하지 않아도 되는 제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점차 전·적·편 등 조리된 완성품 제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물 일체를 구입하는 맞춤형 제사상까지 등장하였다.

내용 제물은 제사에 사용되는 의례 음식이다. 제물을 장만할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련해 둔 제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다. 제물을 살 때는 말을 아끼고, 가격 흥정을 하지 않으며, 제물을 조리할 때는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음식의 간을 따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조상이 노한다.'라든지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례이다. 『주자가례』에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사람들이 제물을 먼저 먹거나, 고양이·개·벌레·쥐가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정마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의 가짓수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메·갱羹·탕湯·면麵·포脯·장醬·적炙·침채沈菜·숙채熟菜·쌈·편餠·과果·주酒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상에는 올리는 밥은 쌀밥으로, 이를 '메'라고 하여 일상과 차별화하고자 했다. 제사상에 오르는 국은 '갱'이라고 하는데, 예서에는 보통 소고기·양고기·돼지고기를 사용한 고깃국이었으나,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콩나물과 무를 넣은 국을 사용한다. '탕'은 메, 갱과 함께 빠지지 않는 제물인데, 고례에는 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서에는 제물 진설을 4열로 규정하고 있으나, 탕을 사용함으로써 5열로 차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탕의 종류로는 어탕魚湯·육탕肉湯·계탕鷄湯·조개탕·소탕蔬湯이 있는데, 보통 하나의 그릇에 함께 넣어 올리는 단탕單湯과 3탕·5탕이 있다. '적'은 구운 고기를 말하며, 육적·어적·계적의 3적이 있다. 불천위不遷位 제사와 묘제 등의 큰 제사에는 3적을 괴어 적틀에 쌓아 올린다. 탕과 적은 '우모린羽毛鱗'이라고 하여 깃털이 있는 날짐승 고기, 털이 난 네발짐승 고기, 생선을 기본으로 한다. 도적을 쌓을 때는 하단에서부터 생선, 네발짐승 고기, 날짐승 고기 순으로 쌓는데, '우모린개羽毛鱗蚧'라고 하여 가장 하단에 바다에 사는 패각류貝殼類를 추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수중지하계·수중계 동물성 음식, 지상계 동물성 음식, 천상계 동물성 음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적 수직 구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제사상에서 떡은 '편'이라고 하는데, '본편'이라고 불리는 시루떡을 가장 많이 쌓은 다음 그 위에 갖가지 떡을 층층이 괴어 높인다. 시루떡 위에 올리는 갖가지 떡은 외형상 본편을 장식하는 형상으로 모양, 색, 재료, 만드는 방법 등이 다양하다. 숙채는 기본적으로 고사리·도라지·시금치·무·콩나물·미나리 등으로 구성되고, 삼채소라고 하여 세 가지 나물을 준비한다. 침채는 김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물김치(백김치)를 사용한다. 쌈은 제물에서 김이나 천엽을 의미한다. 경북 안동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종가에서 쌈으로 곰취 나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과일은 『주자가례』에서 여섯 가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종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밤·대추·배·감을 기본으로 하여 제철 과일을 추가하기도 한다. 포는 말린 고기로 육포는 쇠고기, 어포

는 대구·문어·북어 등을 사용하고 명태·홍합·오징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술은 과일·포와 함께 제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술은 '정종'으로 불리는 청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대부분의 가정에서 청주를 빚어 제주祭酒로 쓰기 위해 보관해 두었다.

제물 진설은 일반적으로 신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줄에는 잔·수저·메·갱을 놓고, 두 번째 줄에는 탕, 세 번째 줄에는 왼쪽에서부터 면·고기·적·생선을 올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편을 차린다. 네 번째 줄에는 왼쪽에서부터 포·장·채소·해를 차리고 가장 오른쪽에 식혜를 차린다. 다섯 번째 줄에는 일반적으로 과일을 차린다.

지역사례 제례가 가가례인 만큼 제물의 종류와 양·진설 등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다만, 금기 사항으로 제사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경북 안동의 퇴계 종가에서는 기름에 튀기는 유밀과油蜜菓를 사용하지 않는데, 평소 검약하기로 소문난 퇴계 선생의 뜻에 따른 것이다. 서애西厓 종가에서는 서애 선생이 생전에 즐겨 드신 '중개'라는 밀가루 과자를 괴어 서애 선생의 제사에만 올리기도 한다. 이 밖에도 동해안에서는 고래 고기를, 서해안에서는 조기를 주요 제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경북 북부지역 가운데 생선의 공급이 어려웠던 곳은 삭히거나 소금에 절인 생선을 즐겨 먹어왔는데, 제사상에도 올린다. 보통 돔배기(상어 고기)를 쓰는데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간고등어를 제물로 쓰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제물은 제례에 사용되는 의례 음식이다. 조상 제사에 제물을 올리는 것은 조상을 봉양하고 음복飮福을 통해 복을 먹고 받기 위함이다. 제물은 지리적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종류에 차이가 있으며, 가정의 예법에 따라서도 제물의 종류와 가짓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경북의 민속문화(국립민속박물관, 2009), 안동지역 일상음식과 제사음식 비교(배영동, 제사와 문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제사와 제례문화(박원재·유권종·배영동 외, 한국국학진흥원, 2002), 조상제사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김미영, 지방사와지방문화사 9-1, 역사문화학회, 2006),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201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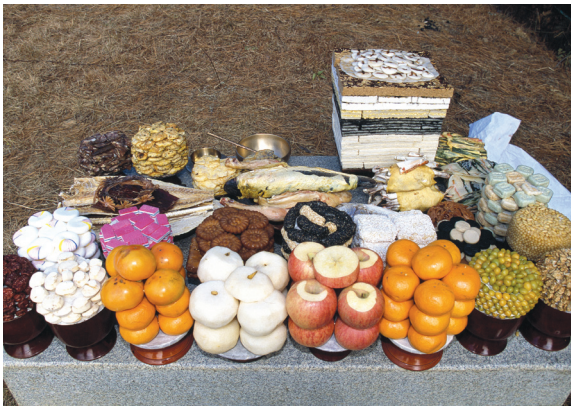
필자 배영동(裵永東)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경북 예천 예천 권씨종가


경남 남해 물건마을

기제사 제물 | 국립민속박물관



묘제 제물 | 대전 동구 은진 송씨 묘소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제복
祭服

정의 제례 때 특별히 갖추어 입는 복장.

역사 제례는 신명을 받들고 복을 받고자 하는 의미로 국가에서도 거행해 왔다. 국가에서 거행하는 제례에 착용하는 제복은 참여자의 신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고려 말엽 중국에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통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제사의 대상이 조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시대 제례는 조상을 섬기는 예이자 효의 실천으로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제례 때 착용하는 복장을 평상복과 구분하여 마련하였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공복公服에 복두幞頭를 착용하였으나, 관직에 없는 사람은 심의深衣에 복건幅巾, 도포道袍에 유건儒巾을 제례복으로 착용하였다. 제례복을 착용하기 전에는 목욕재계를 하고 몸을 정갈하게 하였다.

제례복은 평상복과 구별해 입었고, 제례복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비로소 평상복을 마련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례복이 공복·심의·도포·두루마기·양복 등으로 현실에 맞게 바뀌기는 했지만, 복장을 정갈하게 준비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내용 제례에는 사당제祠堂祭, 사시제四時祭, 녜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의 다섯 가지가 있다. 각 제사에 따른 제례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당제 중 신알례晨謁禮는 집안에 마련된 사당에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 사당의 외문 안으로 들어가 뵙는 것이다. 이때 주인은 심의를 입고, 허리에는 대대大帶를 두르고, 머리에는 복건幅巾이나 치관緇冠을 쓰고, 조리絛履를 신는다.

사당제 중 참례는 정조正朝, 동지, 초하루, 보름에 사당에 참례하는 제사로, 주인 이하 모두 성복盛服을 한다. 관직이 있으면 공복公服을 착용한다. 단령團領인 공복에는 대帶를 두르고, 머리에는 복두幞頭를 쓰며, 화靴를 신는다. 진사進士라면 남색 또는 옥색의 난삼襴衫에 대를 두르고, 머리에 복두를 쓴다. 처사處士일 경우, 조삼皁衫에 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복두를 썼다. 벼슬이 없는 경우에는 삼衫에 대를 두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자帽子를 썼다. 일반인의 경우 심의나 양삼凉衫을 입으면 성복으로 간주했으나, 관직이 있는 사람이 삼에 모자를 하고 참배하면 성복했다고 하지 않았다. 또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는 단령, 홍직령紅直領을 주인 이하의 성복으로 입는다고 하였다.

참례에서 부인婦人은 피帔, 대의大衣와 장군長裙을 성복으로 입었다. 피는 맞고름에 소매가 없고, 양옆이 벌어진 웃옷으로 배자와 비슷한 형태이다. 대의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매우 크고 둥근 소매가 달렸으며, '대수大袖' 또는 '원삼圓衫'이라고도 하였다. 희생을 올리는 궤식례饋食禮 때에는 소의宵衣를 입는다. 소의는 검은색 옷으로 염의袡衣와 같은 것으로, 순의純衣라고도 하였다. 미혼인 여자의 경우 배자褙子를 입고 관자冠子를 썼다. 중첩衆妾은 배자를 입고 가발假髮을 한다. 배자는 치마를 덮을 정도로 긴 길이의 소매 없는 옷이다.

사시제는 계절의 중간 달인 2월, 5월, 8월, 11월 4회에 걸쳐 지내는 제사로, 시제 때마다 주인은 심의를 입고 주부는 배자를 입는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는 관직이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 단령, 품대品帶를 하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단령, 조대를 하며, 부인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데, 선명한 색상이나 화려한 것이 아니면 된다고 하였다.

녜제禰祭는 부모에게 올리는 제사로 가을인 9월에 올리며, 주인과 부인 모두 성복盛服을 한다. 예서에 기록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행되지 않았던 제례였기 때문에, 성복의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남은 바는 없다.

기일제忌日祭는 4대조인 고조까지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사이다. 기일 전날 신위를 설치하고 제찬祭饌을 갖추어 놓으며, 당일에는 소채蔬菜와 과실果實, 제주祭酒, 제찬을 진설한 뒤 주인 이하 모두가 옷을 갈아입는다. 이를 '변복變服'이라 한다. 고비高妣의 기제일 때, 주인은 포심의布深衣를 입고, 백포대白布帶를 두르며, 머리에는 참포립黲布笠 쓰고, 조화皁靴를 신는다. 부인은 담황색 피帔와 백대의白大衣를 입는다. 조고비祖考妣의 기제에서는 주인은 흑립黑笠을 쓰고, 소대素帶를 두르고, 조화를 신었다. 부인은 현피玄帔에 옥색 상裳을 입는다.

또 『격몽요결』에서는, 기제 때 제례복은 관직의 유

무와 부모나 조부모 및 방계친 등 각 촌수에 따라 구분해서 착용하였다고 한다. 부모의 기제인 경우 관직에 있는 사람은 호색縞色 모자에 각脚을 늘어뜨리거나 각을 늘어뜨린 것을 쓴다. 또 옥색 단령에 흰 베로 싼 각대를 한다고 하였다. 관직에 없는 사람은 흰색 입자笠子나 검푸른색 입자[黲色笠]를 쓰고, 옥색 단령에 백대白帶를 하고 모두 백화白靴를 신는다. 부인은 호색縞色 피帔, 백의白衣, 백상白裳을 착용한다. 조祖 이상이면 관직이 있는 사람은 오사모烏紗帽에 옥색 단령를 입고 흰 베로 싼 각대를 한다. 관직에 없는 사람은 흑립, 옥색 단령, 백대를 하였다. 부인은 현피玄帔(검은 帔), 백의, 옥색 상裳을 착용하였다. 방친傍親의 제사에서 관직에 있는 사람은 오사모, 옥색 단령, 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고, 관직에 없는 사람은 흑립, 옥색 단령, 흑대를 착용하였다. 부인은 그저 화려한 복장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다.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는 『가례家禮』와 같이 제복을 설명하며 부친의 제사에서 주인과 그 형제는 참포삼黲布衫에 포로 감싼 각대를 띠고 참사복두黲紗幞頭를 쓴다고 하였다. 조부 이상과 방계 친척이면 참사삼黲紗衫을 입는다. 주부는 쪽을 찔 뿐 꾸미지 않으며 백대의白大衣에 담황색 피帔를 한다고 하였다. 그 외의 사람은 화려한 복장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다.

묘제는 3월 중에 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제사로, 묘제의 제관은 모두 남성이며 제사 당일에 주인은 심의를 입는다. 그 외에는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는다. 또 『격몽요결』에서는 주인 이하는 모두 소복素服에 흑대黑帶를 두르고 현관玄冠을 쓴다고 하였다.

차례는 예서에는 없는 제례로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다르지만, 설날·정월대보름·한식·단오·칠석·추석·중양·동지 등에 지낸다. 그중 설날과 추석에 가장 많이 지낸다. 제례복으로 도포나 두루마기를 원칙으로 하며 머리에는 유건儒巾을 쓴다.

지역사례 경상남도 거창 초계 정씨 종가의 경우, 제주는 제례복으로 도포에 유건을 쓰고, 주부는 천담복淺淡服인 옥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다. 경상북도 안동의 영천 이씨 종가에서는 백색의 세모시로 된 홑도포에 세조대細條帶를 두르고 유건을 쓴다. 풍산 류씨 종가 제례복은 담황색 모시 도포에 세조대를 두르며, 종손은 탕건宕巾에 갓을 쓰고 행전行纏을 친다. 친지들은 유건을 쓴다.

전라남도 해남의 해남 윤씨 종가에서는 담황색의 고운 견으로 만든 홑도포를 착용했었고, 백색으로도 만들어 착용하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의 죽산 박씨 종가에서는 백색 무명의 홑도포를 착용해 왔고, 현재는 백색과 청색의 무명 겹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있다. 여기에 세조대를 두르고, 유건을 쓰고, 행전을 쳤다. 전남 영광의 영월 신씨 종가에서는 소색 세모시 깨끼의 광수廣袖 홑도포에 세조대, 유건을 착용했었고, 현재는 백색 무명의 착수窄袖 겹두루마기만을 착용한다.

특징 및 의의 제례는 주로 조상을 섬기는 의례로 조선 후기에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 농업생산 중심의 농촌에서 상공업 중심의 도시로 바뀌면서 4대 조상의 제사를 모두 한날 밤에 올리는 합제合祭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차례 대신 성묘가 제례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각 제례 때 착용하였



월성 손동만 종가 종부의 옥색 치마 저고리
경주 월성 손동만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충재 권벌 종가 제관과 참사자들의 제복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던 단령, 직령, 도포, 심의 등의 제례복이 도포와 두루마기, 단령 등으로 변하고, 유건이나 갓을 착용하는 정도로 간략화되었다. 일반 가정에서는 기제사나 성묘 등에 색이 강하지 않은 일상복을 정갈하게 입는 정도로 하여 제례복을 대신하고 있다. 제례복을 따로 마련해 착용할 때에는 저고리, 바지를 갖추어 입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제실이 있는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제례복을 갖추어 놓고 있으나, 직접 가정에서 제작하여 집안의 유풍을 간직한 제례복이 아니라 기성품 등을 구입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輯覽, 擊蒙要訣, 四禮便覽, 禮記, 儀禮問解, 제례(장철수, 한국민속대관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종가의 제례복식에 관한 연구(마유리 외, 한국복식학회지58, 한국복식학회, 2008),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김영재(金永才)

제사도구
祭祀道具

정의 제례를 올리는 데 필요한 도구의 총칭.

역사 제사가 간소화되면서 제사도구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제사도구는 제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고, 또 한국 고유의 것을 살리면서 제사도구를 변천시켜 왔다. 제사도구를 크게 분류하면 중국식 제구와 한국 고유의 제구로 나눌 수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제기도설祭器圖說」을 보면, 중국식 제구는 변籩·두豆·보簠·궤簋 등을 비롯하여 약 40종이 있다. 이들은 과거 종묘·사직·산천山川·문묘·서원 등에서 사용하였다.

내용 넓은 의미에서는 제기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제기를 제외한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그중 주요한 것들만 거론하자면, 위패位牌인 신주神主, 신주를 올려놓는 교의交椅, 제물을 차리는 상인 제상祭床, 향을 피우는 데 쓰는 향로香爐, 향을 담아 두는 향합香盒, 모사기茅沙器 등을 올려두는 향상香床 술병, 퇴주기退酒器 등을 두는 주가酒架, 제물의 진설, 철상 때 쓰는 소반小盤, 촛대, 축문을 두는 축판祝板, 자리 등이 있다.

한국의 제구는 『사례편람四禮便覽』「제례」에 보면, 교의交椅(위패를 모시는 의자), 제상祭床, 역帟(제상 위를 가리는 작은 장막), 막幕(제상 주위를 가리는 장막), 병풍, 촉대, 모속茅束, 모반茅盤, 주병酒甁, 주전자, 잔반盞盤, 현주병玄酒甁(물병), 초접醋楪, 시저匙箸, 시저접匙箸楪, 과기果器, 포기脯器, 해기醢器(젓갈 그릇), 소채기蔬菜器, 장기醬器, 반기飯器, 갱기羹器, 어육기魚肉器, 병기餠器, 면기麵器, 적기炙器, 철주기撤酒器, 철적기撤炙器, 수조반受胙盤(제관이 음복을 분배받는 쟁반), 수조시受胙匙, 수조합受胙盒, 결척기潔滌器, 향안香案, 향로, 향합香盒, 향시香匙 등이 있다.

그 밖에 『사례편람』에 보이는 제기로는, 교의交椅, 좌욕坐褥(교의 위에 까는 천), 제상[大卓], 좌면지座面紙(제상 위에 까는 기름칠한 종이), 소탁小卓, 대상大床, 행주수건[拭巾], 향안, 향로, 향합, 향, 향시, 부젓가락[火筯], 촛대, 초, 역막帟幕, 평장平帳이라고도 하는 휘장), 병풍[屛], 발[簾], 상자[笥], 개좌蓋座, 신주를 사당에서 내어 모실 때 받치는 대), 축판祝板(축문을 받치는 판), 축문지祝



제사도구 | 국립민속박물관

文紙, 벼루[硯], 붓, 먹, 배교环珓(날짜를 점치는 도구), 배교반环珓盤, 설거지통[潔滌盆], 횃불[炬], 세숫대야[盥盆], 동이받침[盆臺], 세수수건[帨巾], 수건틀[巾架], 목욕통[沐浴盆]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상·교의·향안·향합·촛대·축판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의 것들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일상적인 사용이 거의 없는 제사용 도구들은 오늘날에도 그 형태와 기능에 변화 없이 꾸준히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국역 국조인물고(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제사분할
祭祀分割

정의 자손들이 조상제사를 나누어 지내는 방식.

역사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인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상속과 제사계승은 남녀 및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적자嫡子의 자격을 갖춘 모든 자녀는 동일한 분량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 두었다. 이처럼 자녀균등상속 관행이 실시되는 가운데 조상제사 역시 자녀들이 공평하게 지내는 관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자녀윤회봉사子女輪回奉祀라고 한다. 『중종실록中宗實錄』에 "적자가 있으면 지손支孫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예禮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풍속에서는 자기 어버이의 기일을 맞아 신주는 내버려두고 지방紙榜을 만들어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했듯이, 당시에는 자녀들이 순서를 정해 조상제사를 지내는 습속이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었다. 또 최재석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상속내역을 명시해둔 분재기分財記에 "제수祭需는 장자, 부모 기제忌祭는 중자仲子, 외조부모 명일제明日祭와 4중삭제仲朔祭는 말자末子", "본종봉사本宗奉祀는 장자, 처변봉사妻邊奉祀는 종자終子, 부모봉사는 차자次子"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로 볼 때 제사분할은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전승되던 습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현재까지 제사분할 관행의 전승이 확인된 곳은 주로 제주도, 경상남도 통영, 경상북도 영덕·울진·포항·대구 달성, 전라남도 진도, 강원도 인제·삼척 같은 해안지역과 산간지역이다. 당시 이들 전승지역에서 수집된 명칭은 '제사분할', '분할제사', '제사분담', '분담제사', '제사분짓', '제사모셔가기' 등이다.

제사분할의 일반적 형태는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개 아버지제사는 장남이 모시고 어머니제사는 차남이 지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명절차례는 장남이 맡는다. 제사를 분할한 뒤 한 세대를 내려가면 장남의 아들(장남)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제사를 모시고, 아우가 어머니제사를 물려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제사를 가져간 차남의 집에서는 그의 장남이 할머니제사와 자신의 아버지제사를 지내고, 아우가 어머니제사를 물려받는 것이다. 대체로 이들 지역에서는 조부모까지의 양대봉사兩代奉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장남은 두 분의 기제사를 모시고, 차남은 한 분의 기제사를 지내게 된다. 제사분할의 시기는 탈상을 하고 첫 기제사를 지낸 후인데, 여기까지의 모든 의례는 장남이 담당한다. 또 어머니제사를 모셔갈 기회는 차남에게 먼저 부여된다. 즉, 차남을 제치고 3남이나 4남이 앞서 요청할 수 없으며, 만약 차남이 포기하면 3남과 4남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제사분할의 대상은 부모의 기제사만이며, 그 윗대의 기제사는 일단 분할이 이루어지면 이동하지 않고 그 자손에게 계승된다. 그리고 제사를 물려줄 때는 반드시 윗대에서 아랫대로 이어지는 수직적 이동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형제끼리 지내던 제사를 서로 물려주는 수평적 이동은 금기시하고 있다.

제사분할 관행의 생성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제사분할 관행은 주로 해안지역과 산간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상속재산의 중심을 이루는 토지의 면적이 대체로 넓지 않은 편이다.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여 자녀들

에게 물려줄 마땅한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 자연히 제사분할이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해안지역과 산간지역의 경우,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탓에 농촌과 달리 풍부한 토지를 조성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장남이 유일하게 특권을 누리는 것은 가옥의 상속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노후부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얻게 되는 반대급부이다. 따라서 봉제사를 위한 별도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상제사를 부담 지우기란 여러모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유교적 가족이념 아래서 행해지는 장남의 조상제사 단독계승은, 재산상속에서 '봉사위奉祀位'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재산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관행이다. 반면, 재산상속에서 특별히 우대를 받은 자녀가 없으면 조상제사 역시 한 자녀에게 독점적으로 계승되지 않고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나누어 지내게 되는 것이다. 둘째, 제사분할 관행이 발견되는 이들 지역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유교이념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요인 역시 제사분할 관행의 전승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짐작한다. 사실 유교이념에서 볼 때 조상제사의 분열은 곧 집안의 분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들(적장자)에게 제사를 무사히 물려줌으로써 집안의 단절을 막았으며, 또 제사를 나누지 않고 독점적으로 지내게 함으로써 집안의 분열을 피했다. 그런데 제사분할 관행으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 전남 진도, 기타 해촌과 산촌은 부계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부계친족의 응집체인 문중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가족생활과 친족생활 등에서도 양계적兩系的 속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궨당眷黨'이라는 친족범주에는 혈통(부계친, 모계친, 진외가친)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포함되며, 일상생활의 교류 및 협력 관행도 '궨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제사분할은 유교의 종법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전승되던 것으로 자녀균등상속에 의해 성립된 관행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제사분할은 자손들이 조상제사를 나누어 지내는 것으로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전승되었던 습속이다. 현재 제사분할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주로 해안지역이나 산간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유교이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부계적 친족관념이 미약한 곳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中宗實錄,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김미영, 민속원, 2008), 동해안 어촌 마을의 제사분할(이창기, 사회와역사62, 한국사회사학회, 2002), 제주도의 친족조직(최재석, 일지사, 1979),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김미영(金美榮)



제상
祭床

정의 제례 때 제물을 올려두는 상.

내용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따르면, "제상[食床]은 널빤지로 면을 만드는데 길이는 다섯 자, 너비는 석 자쯤이다. 네 둘레도 또한 판자로 하는데 높이는 한 자 두 치이다. 두 치 아래에도 판자를 대는데 면은 검을 한다."라고 하였다.

제상은 높이가 비교적 높고, 제사 시 음식을 차리는 장방형의 상을 말한다. 이 상은 중국의 영향으로 명나라 때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요즈음의 테이블보다 더 높다. 소반의 대부분이 좌식용坐式用이지만, 이 제상만은 의자 생활을 하는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 같다. 주칠朱漆을 한 찬탁饌卓은 초례용醮禮用이고, 흑색의 찬탁은 제사용이다.

제상에 제물을 진설하는 데는 복잡한 격식이 있다.



제상 | 국립민속박물관

신위神位 앞에 시접匙楪(수저를 담은 그릇)과 잔반盞盤(술잔과 받침)을 놓고, 그 왼편에 반飯(젯메), 오른편에 갱羹(국)을 놓는데, 이것이 첫째 줄로서 '반갱줄'이라 한다. 다음 줄에는 한가운데 적炙을 놓고 왼편에 육전, 오른편에 어전을 놓으며 다시 육전 왼편에 면麪, 어전 오른편에 편을 놓는데, 이것이 둘째 줄로 '적줄'이라 한다. 다음 줄에는 왼편에서부터 육탕肉湯·소탕素湯·어탕魚湯의 순으로 놓는데 이것을 '탕줄'이라 한다. 넷째 줄에는 왼편에서부터 포·숙채熟菜·간장·침채沈菜(김치)·어해魚醢(생선젓)·식혜의 순으로 놓으며, 이를 '포혜줄'이라고 한다. 맨 끝줄에는 실과實果와 조과造果를 놓는데, 이것을 '과실줄'이라 한다. 이 가운데서 육전·어전·편·면·반·갱은 강신降神 후에 올리고, 초헌初獻에는 간적肝炙을, 아헌亞獻에는 육적을, 종헌終獻에는 다시 육적을 올리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편의상 한꺼번에 차려놓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다. 진설을 규정하는 말에 '좌포우혜左脯右醯', '어동육서魚東肉西', '두서미동頭西尾東', '홍동백서紅東白西' 등이 있다. 한 사람만 제사하는 경우를 '단설單設', 내외를 함께 제사하는 경우를 '합설合設'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사당에서와 같이 교의交椅를 쓰는 경우에는 교의와 높이가 같은 높은 제상이 쓰이며, 교의가 없이 지방을 쓰는 일반 가정에서는 낮은 교자상交子床을 주로 쓴다. 이는 중국의 입식문화와 한국의 좌식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두산동아, 1995), 문화원형 용어사전(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제주
祭酒

정의 제사의 헌작獻爵에 올리는 술.

역사 제주祭酒로 많이 사용되어 온 청주淸酒를 간혹 일본 술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부산에 청주 공장을 세우고 '정종'이라고 술 이름을 붙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청주는 우리 전통 약주로, 일본 『고지키古事記』는 백제의 인번仁番이 오진 일왕(재위 270~312) 때 쌀로 술을 빚는 기술을 일본에 전파해 그를 술의 신으로 모셨다고 기록하였다. 쌀로 빚는 술인 미주米酒는 청주의 전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내 제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주류의 '백화수복'을 비롯해, 국순당의 '차례주', 배상면주가의 '차례술' 등의 약주가 있다.

내용 제주로는 청주나 약주 등 맑은 술과 현주玄酒, 그리고 예주醴酒 등이 고루 쓰인다. 조상에 지내는 제사의 기본 제주는 쌀과 누룩으로 만든 가양주家釀酒인 탁주와 청주가 있다. 청주는 최고급 술로, 겨울에 술을 빚으면 여름이 되어야 만들어진다. 정화수인 현주를 올릴 수 있고, 감주만 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주가 제주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대봉사四代奉祀하거나 윗대 조상들을 함께 모시는 시제時祭에는 대개 약주류의 전통주를 제주로 쓴다. 독한 소주를 제사상에 올리면 독한 후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소주는 고려 때 원나라에서 들어온 술이므로, 제사라는 규범이 생기고 보급될 무렵에는 소주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역사례 한산 소곡주, 아산 외암리의 연엽주, 금산 인삼주, 해남 진양주, 청양 구기주, 경주 교동 법주, 문경 호산춘 등 지역별로 제주로 삼을 만한 전통 약주들이 있다. 이 술들은 밀주 단속이 심하던 금주령시대에도



첨작 | 경북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끈질기게 생명력을 보존하여 지금은 문화재가 되었다. 이 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제주였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받들기 위해 소중하게 이 술들을 지켜온 결과이다. 예안 이씨 종가의 아산연엽주(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는 찹쌀과 멥쌀, 누룩, 솔잎, 연잎, 감초로 약주를 빚어 제사를 모실 때 제물로 올린다.

특징 및 의의 술은 예로부터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음식으로 믿어져 제사에 꼭 필요한 음식이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제사에 앞서 직접 집에서 술을 빚어 제주로 이용하였으나, 요즈음은 대부분 상품화된 청주, 약주 등을 구입해 제주로 이용한다.

참고문헌 사직대제(지두환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7),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출판사, 1999), 종가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2001), 종묘제례(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8).

필자 윤덕인(尹德仁)


제주


제주전

제주 | 경북 청도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제주
題主

정의 하관 후 신주에 죽은 이의 이름을 쓰는 의식.

내용 죽은 이의 이름을 신주에 쓴다고 하여 제주라 한다. 하관 후 신주의 함중陷中과 분면粉面에 죽은 이의 이름을 써서 신주에 혼령을 불어 놓는 의식이다. 『가례家禮』에 실린 제주 과정을 보면, "집사자는 탁자를 영좌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놓고 벼루와 붓과 먹을 놓는다. 탁자의 맞은 편에 세숫대야와 수건을 같이 놓는다. 주인이 그 앞에 서서 북향한다. 축이 손을 씻고 신주를 꺼내 탁자 위에 누여 놓으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손을 씻고 서향하여 먼저 함중에 글을 쓰고, 이어 분면에 글을 쓴다."라고 되어 있다.

신주의 함중에는 작위와 성명을 쓴다. 『가례』에서 아버지는 '송고모관모공휘모자모제기신주宋故某官某公諱某字某第幾神主', 어머니는 '송고모봉모씨휘모자모제기신주宋故某封某氏諱某字某第幾神主'라 쓰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및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서는 아버지는 '고모관모공휘모자모신주故某官某公諱某字某神主', 어머니는 '고모봉모씨휘신주故某封某氏諱神主'라 쓴다. 함중의 내용은 새로 신주가 들어오거나 추증할 경우에도 고치지 않는다.

신주의 전신 분면에는 속칭屬稱을 쓴다. 『가례』에서 속屬은 고증조고高曾祖考를 말하고, 칭稱은 관官 혹은 호號를 말한다. 아버지는 '황고모관봉시부군신주皇考某官封諡府君神主', 어머니는 '황비모봉모씨신주皇妣某封某氏神主'라 쓰며, 관직이나 봉호가 없으면 생시에 부르던 것으로 쓴다. 그런데 원대元代 대덕大德 연간에 성부省府에서 '황皇'자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황자 대신 '현顯'자를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례도』 신주식神主式에서 아버지는 '현고모관봉시부군신주顯考某官封諡府君神主', 어머니는 '현비모봉모씨신주顯妣某封某氏神主'라 쓰였고, 『국조오례의』 및 『가례집람家禮輯覽』 등에서도 '현'자를 썼다.

관직명 표기에서도 중국에서는 실직實職을 먼저 쓰고 증직贈職을 나중에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증직을

먼저 쓰고 실직을 나중에 쓰기도 한다. 관직이 없을 경우에는 학생學生, 처사處士, 수재秀才 등 각기 마땅한 바에 따라 쓰고, 부인의 경우는 9품직에 해당하는 유인孺人으로 썼다. 부인의 경우 성씨만을 쓰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향관鄕貫을 써서 구별하였다. '효자모봉사孝子某奉祀'는 제주하는 사람의 방향에서 분면 아래 왼쪽 면에 쓴다.

제주를 마친 후에는 제주전을 행한다. 제주가 끝나면 축이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고 혼백을 상자 안에 넣어 그 뒤에 놓으며,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 다음에 축판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에서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축과 함께 참석자 모두가 재배한다. 제주전을 마치면 새로 만든 신주와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반곡反哭한다.

특징 및 의의 『가례』에는 제주와 제주전의 구분이 없으나, 『국조오례의』에 제주전이 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대례大禮로 여기고 이를 행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필자 최순권(崔順權)

조매
桃埋

정의 친진親盡한 5대조의 신주神主를 땅에 묻는 일.

내용 유교의 종법제도에 따르면 별자別子의 차남 이하 아들은 자신이 시조가 되어 소종小宗을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오세즉천五世卽遷의 원칙에 따라 고조부모까지의 조상만 포함된다. 그리하여 이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행함으로써 비로소 사대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사대봉사를 주관하던 봉사손이 사망하면 그의 고조, 곧 새로운 봉사손의 5대조에 해당하는 조상은 사대봉사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매桃埋를 하거나 방계傍系의 현손玄孫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인 최장방最長房에게 체천遞遷한다. 『가례家禮』에서는 대상大祥이 끝나고 묘소 옆에 묻는다고 했으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길제吉祭의 절차를 추가하여, 이



조매 | 경북 영덕 갈암 이현일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때 묘소 옆에 묻도록 명시하였다. 길제는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들이는 절차이면서 친진한 5대조의 신주를 사당 밖으로 내보내는 의례이다. 길제를 올리고 나면 조매를 할 신주 앞에서 고유告由한 뒤 곡哭한다. 고유가 끝나면 밤나무로 미리 만들어 둔 상자에 신주를 넣는다. 상자를 든 봉사손 이하 일행이 묘소로 향하면, 부인들은 곡하면서 대문까지만 배웅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묘소 오른쪽에 구덩이를 파서 신주가 든 상자를 안치하고 뚜껑을 열어두고 재배한다. 그런 다음 상자 뚜껑을 닫고 흙을 덮는데, 이때 묘소의 서북쪽 봉미峯尾에 한 자 정도의 깊이로 신주의 머리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시신과 동일한 방향) 한다. 신주를 묻으면 고사축告辭祝을 읽는 것으로 의례를 마친다.

〈埋主告辭式〉

維

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五代孫某敢昭告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之墓世次迭遷

神主已祧情雖無窮分則有限式遵典禮埋于

墓側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특징 및 의의 조매는 친진한 신주를 사당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일컬으며, 이로써 기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게 된다. 이는 사당에 모신 신주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조문
弔問

정의 상주를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식.

역사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서는 조문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군주에게 부고하면 군주가 사람을 시켜 조문하고 수의를 기증'하는 절차를 '목욕 · 반함' 이전에 기술하고 있다. 『서의書儀』에서는 목욕하고 습襲한 뒤 명정銘旌과 혼백을 설치하는 절차 다음에 '조弔 · 뢰酹 · 부수賻襚'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다. 『가례家禮』에 '조문[弔] · 전奠 · 부의[賻]'의 절차가 규정된 것은 『서의』를 따른 것이다. 조선의 학자들은 대부분 『가례』를 따라 조문을 독립된 의절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조문[弔] · 전奠 · 부의[賻]'를 '조문'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절차를 하위 절차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내용 『예기禮記』「곡례曲禮」에 "상주를 알면 조문하고, 죽은 사람을 알면 애도[傷]한다. 상주를 알고 죽은 사람을 모르면 조문하고 애도는 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을 알고 상주를 모르면 애도하고 조문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원대의 진호陳澔는 "조문은 예의를 갖추어 위문하는 것이고, 애도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조문의 시점과 관련하여 『의례』「사상례」에서는 습을 마치고 국군國君에게 부고하는 과정에서 "조문객이 와 있으면 이때(부고할 때)를 이용하여 그에게 배례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가례』에서는 '초종初終'의 단계에서는 조문을 허용하지 않은 채, 습과 반함飯含을 끝내고 영좌와 혼백 그리고 명정을 설치한 뒤에 "친구와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은 이때에 들어가 곡해도 좋다."라고 규정하였다. 『예기』의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서는 "조문하는 예는 상주가 옷을 바꾸어 입기 전이라면 조문하는 사람은 길복吉服을 한다. 상주가 이미 복을 바꾸어 입은 뒤에는, 조문하는 사람이 조복朝服을 착용하고 있더라도 무武(관의 테두리)에 수질首絰을 더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성복成服을 하기 전에도 조문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준邱濬은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는 "주인이 아직 성복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곡하는 사람은 소담색素淡色의 옷을 입으면 된다. 살펴보건대, 고씨가 말하기를 '고인들은 조상弔喪할 때 시신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예가 아니다.'고 하였다. 지금은 성복하기를 기다린 뒤에 조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라고 비판한다.

『예기』「잡기雜記」에서는 "조문하는 것은 상주를 뒤에서 따르기 위함이 아니다. 40세까지는 상여 끈을 붙잡는다. 같은 향촌 사람으로 50세가 된 이는 상주가 반



상주와 인사하는 조문객 | 경남 창녕 | 1993 | 국립민속박물관



장지에서의 조문 | 경북 청도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곡反哭하는 행렬을 뒤에서 따른다. 40세까지는 무덤을 흙으로 덮는 것을 마친 다음에 물러나온다."라고 하였다. 이는 조문이란 단순히 상주를 위로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주의 일을 직접 돕는 것임을 의미한다. 조문할 때 주인이 절해도 답배하지 않는 것도, 조문하는 일이란 상사喪事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지 빈주賓主의 예를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례는 물론 『가례』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조문 항목에 부의賻儀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가례』에 따르면, 조문할 때는 모두 흰옷을 입고, 전奠을 올릴 때는 향·차·초·술·과일을 쓴다고 하였다. 또한, 부의賻儀는 돈과 비단으로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명함[刺]을 갖추어 통성명한 뒤, 들어가서 곡하고 전을 올리며, 마치면 조문하고 물러나오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징 및 의의 전북 익산 지역의 경우, 조객이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영좌에 향을 피우고, 망자에게 절을 두 번 올린 다음 상주와 맞절한 뒤, "천몽지택을 당했으니 얼마나 애통하시냐" 혹은 "상사를 당했으니 얼마나 애통한가"라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보고가 있다. 조문하는 사람은 성복 이전에는 향상 앞에서 분향하고 곡한 뒤 상주에게만 절하고, 성복을 마친 뒤에는 영좌를 향해서 두 번 절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家禮, 禮記, 儀禮,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장동우(張東宇)



조상숭배
祖上崇拜

정의 가족, 씨족, 민족 등의 공동체가 죽은 사람을 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

역사 '조상숭배'의 관념은 아마 정의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거의 정의되지 않은 채 연구되었다. '조상'이란 죽은 사람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일정한 범위와 자격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고, '숭배'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경배가 아니라 죽은 영혼 등에 대한 '신앙'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길성은 조상숭배를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하므로, 조상숭배를 광의의 사자의례와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다. 장철수도 같은 의견, 즉 협의로 조상숭배를 정의하였다.

반면, 장주근張籌根은 조상숭배의 개념을 광의로 보았다. 그는 조상숭배가 농경민족에서 널리 보이는 시조, 조상신, 죽은 자, 사령 등 조상의 영이나 사자의 영에 대한 종교적 숭배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조상숭배는 가장 보편적인 종교형태의 하나로, 언제나 정령신앙精靈信仰(animism)을 포함하며, 때로는 토테미즘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조상숭배가 유교적 영향을 받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상을 숭배하던 본래의 모습이라고 광의로 정의하였다.

조상숭배 연구는 주로 영혼사적·종교학적 연구·인류학적 연구이다. 제사의 역사적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조상숭배가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와 갈등했다는 사실이다. 양자의 갈등은 종교적 대립이었고, 문화적 충돌이었다. 유교에서는 죽은 자를 욕구를 가진 존재로 여겨, 사람이 거처하는 가까운 곳(사당이나 정침)에 신주로 모셔 제일祭日이나 명절名節 등에 제사를 지냈으며,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여겼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제사가 종교적인 의식儀式으로서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즉 기독교에서 죽은 영혼은 신주나 어떠한 물체에 빙의하는 일 없이 하늘이나 땅 밑으로 멀리 가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는 부정되었다. 결국, 조선왕조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기독교 신자인 윤지충尹持忠, 권상연權尙然 등이 순교하였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제사 문제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역사가 있다. 그러다가 1939년 12월 18일 로마교황 비오 12세가 유교의 조상숭배는 하나의 시민적 의식일 뿐 종교적 의식은 아니라는 내용의 교서를 공표하여 조상숭배를 허용하였다. 이것은 기독교가 토착화를 위해서 전통적 신앙이나 사상을 수용한다는 뜻이었다.

내용 조상숭배는 제사, 즉 상속과 관련된 가족제도의 맥락에서 문헌적·역사적으로 연구되었다. 변태섭邊太燮은 가족공동체 안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자손의 의례로서, 유교 이전에 이미 유교적 제사와 비슷한 조상숭배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혈통주의 가족공동체를 제사집단으로 보았다. 김두헌金斗憲은 농경민족이 대가족제도를 형성한 곳에는 반드시 조상숭배가 있으며, 고대의 그리스, 로마나 중국, 일본은 물론 한국의 조상숭배도 이러한 농경민족의 가정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유교의 보급에 따라 민족의 생활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규李光奎는 이러한 가족주의적 조상 관념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유교적 제사의 지역성을 밝혔다. 그는 조상숭배가 가족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봉사자奉祀者와 향제자享祭者를 구분하여 상호관계로서 행해지는 의례, 즉 자손과 조상의 관계를 더욱 분석적으로 밝혔다. 임돈희는 유교제사를 모델로 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라는 시각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조상숭배의 미래상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조상숭배는 제사의 지방적 형태로, 또는 양반에 대한 상민, 즉 중앙문화에 대한 하나의 변형 내지는 주변적인 문화로 처리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지방 중심으로 유교 제례가 어떻게 수용되어 갔는가에 관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여중철, 전경수, 유명기, 다케다, 이토, 후쿠도메, 최길성 등의 연구에서는 유교 모델과는 거리가 먼 '임자 없는 제사' 같은 제사상속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즉 제사의 분할상속 같은 유교적 모델에서 벗어난 형태가 실행된 예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조상숭배는 종법이라는 종교사회적 측면과 제사라는 의례적인 측면을 가진다. 제사상속에 관한 연구에서, 조상은 생존 시 일정한 계보로 맺어진 자손이 있기 때문에 자손은 조상에 대해 일련의 종교적 신념과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손이나 문중이란 기반 위에 일정한 인간관계가 연속되고, 일정한 의례에 의해 존중될 때 조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조상숭배는 부모와 자손의 관계, 즉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당 내부 | 대구 달성 한훤당 김굉필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조상은 조상숭배라는 의식으로 모셔져야 한다. 5대조 이상은 시제를 지내고, 제사의 책임은 아버지로부터 장남에게 전달된다. 그렇지만 장남은 최대 4대조까지만 제사 지낸다. 조상숭배의 조상은 부父와 부父의 부父로 연결된다는 계보 의식 아래에서, 신위에 오른 다음에는 후손을 걱정하고 보살펴 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대조 이상의 조상은 문중 차원의 조상일 뿐, 가족원으로서의 성격이 없는 존재로서, 다만 불천위만이 가제家祭의 대상이 될 뿐이다.

조상숭배는 할아버지를 바탕으로 한다. 할아버지는 손孫과 대칭점에 존재한다. 부자父子관계가 직접 연결되었다면, 조손祖孫관계는 한 세대 떨어져 있다. 혈연관계에서 볼 때 부자父子보다 멀다. 그러나 조祖는 자子나 손孫의 혈연적인 원천, 즉 원조라는 의식에서 우월하며, 자子와 손孫은 세대의 차이는 있어도 조祖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같다. 다만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자보다 조손이 애정적인 면에서 더 친밀하다. 흔히 부모 앞에서 자기의 자식(祖의 孫)을 귀여워한다든지 하는 애정의 표현은 금기이다. 부자관계는 양육과 훈육이 중심이라면, 조손관계는 애정이 강조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손관계를 바탕으로 조상숭배가 계승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귀여움과 사랑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는 예의범절과 노동을 배운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어린이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상에 대한 관념은 이러한 한국인의 사회구조나 가족구조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아버지는 추상화된 것, 즉 '조성祖性'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신인 동시에 지역의 신인 경우가 있다. 할망당·할르방당(제주도), 할아버지당산·할머니당산(전라북도 부안), 골매기할배·골매기할매(경상도) 등이 그렇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이란 신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확대되어 마을의 신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무속의 조상숭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교제례와 대조적이다. 유교제사에 의하면 향제자와 봉사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유교에서는 조상숭배가 주축을 이룬다. 그렇지만 무속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상숭배보다는 사자의례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속에서 조상신은 많은 신 가운데 하나이고, 사령제는 사자의례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유교와 무속의 조상숭배를 비교하면, 향제자와 봉사자는 유교에 밀착되어 있으나 무속은 그렇지 않다. 또, 유교의 조상은 비교적 분명한 카테고리이지만 무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유교 제례는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효'와 신앙적인 숭배가 복합되어 있으나, 무속의 사령제는 주로 신앙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유교는 강한 부계원리에 의한 것이지만, 무속에서는 부계원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제례는 산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기본이다. 개성적인 조상관은 무속신앙에서 더욱 뚜렷하다. 또 유교 제례가 남성중심 부계사회를 강조하는 데 반하여, 무속은 유교와 부계사회에 의해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보완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조상제사와 효(최길성, 민속원, 2010), 친족집단과 조상숭배(이광규, 한국문화인류학9, 한국문화인류학회, 1977), 한국민간신앙의 조상숭배(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Fortes, Meyer, In Newell(ed.), Ancestors(Paris: Mouton Publishers, 1976).

필자 최길성(崔吉城)

조상신
祖上神

정의 조상은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를 말하지만 주로 죽은 선조를 뜻하며, 조상신은 죽은 선조가 신격화된 존재.

역사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 조에는 "시월에 하늘에 제사하고 국중대회를 하니 이름하여 '동맹東盟'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수혈'이라 한다. 국중대회에서 수신隧神을 맞아서 나라 동쪽 위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목수木隧는 나무로 새긴 굴의 신상을 뜻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주서周書』와 『북사北史』에는 "신묘 두 곳이 있으니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며 나무로 깎은 부인상을 만들었다. 하나는 등고신이라 하니, 이는 시조인 부여신의 아들이라 한다. 같이 관사를 두고 사람을 보내서 수호하는데, 아마도 하백녀河伯女와 주몽朱蒙을 말하는 것이리라."라는 기록이 있다. 동명은 동맹과 같은 의미로, 고구려의 시조신인 주몽이며, 하백녀는 주몽의 어머니이다. 시조신과 그의 어머니가 시조신으로 모셔지는 것이다. 신라의 김알지金閼智 신화에 나오는 황금궤 역시 시조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상숭배 형태로 보고 있다. 이처럼 조상을 신격화하여 모시기 시작한 것은 오랜 역사성을 지니는데, 시조신에 대한 숭배는 자연스럽게 조상숭배로 이어졌다.

우리 민족의 조상에 대한 봉사개념은 유교식 제례형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자에 대한 두려움과 외경은 시작되었으며,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이 있는 자가 죽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과 외경이 종교적 심성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죽은 자가 신년의 절기와 같은 특별한 날에 그들의 가족에게 되돌아온다는 신앙은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 이는 곧 사자가 신으로 현현顯現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례는 신과 인간의 세계를 매개시켜 주던 종교행위로서, 반드시 사제자에 의하여 주재되어 왔다. 그러나 조상숭배 사상이 보편화함에 따라 죽은 조상이 신으로 추앙되면서 제례 역시 널리 일반에게까지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제자의 역할을 종손이 제사 때에만 임시로 맡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례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매개시켜 주는 상징적인 종교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교의 종교성을 말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내용 조상신은 공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의

연속성에 따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조상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죽어 조상신이 되는 것은 마치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조상이 되는 데에 죽음은 필수조건이지만, 생물학적 현상이 선조를 조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생의례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전이가 의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시신을 안장하고 그 죽음을 애통하며 혼을 위로하는 상례를 수행할 때 비로소 죽은 자와 산 자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해마다 제삿날에 지방에 현고조고, 현증조고, 현조고, 고 등의 호칭을 불러줄 때 조상은 등장한다. 즉, 조상은 제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사회적인 지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생의례에서 제사는 초월적인 대상을 숭배하는 의례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죽음의 세계 이후에도 유지시키는 의식이다.

죽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영혼은 조상이 아니라 여귀厲鬼이다. 중국이나 조선 사람들은 제사를 받지 못하는 혼백이 나무나 바위에 의탁하여 여귀로 출몰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후사가 없는 사람은 양자를 들여서라도 제사를 받으려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라에서 이들을 제사 지내 주었다. 조선시대 각 군현에 설치된 여단은 바로 이러한 여귀를 위로하는 곳이었다.

여귀의 해악은 그의 본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제사는 자신의 근원을 찾아 만나는 의례일 뿐 아니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방황할 조상의 혼령을 안착시키고 조상신으로 받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상은 후손의 제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조상신으로 자리를 잡는다. 조상신은 유교 제례를 받는 조상신, 가신으로 모시는 조상신 그리고 무속의 조상신이 있다. 이들은 조상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상은 좀 다르다.



신주 |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우선 유교 제례를 받는 조상신은 혈연 중심으로 1대 조상, 2대 조상, 또는 사대봉사 등과 같이 서열이 명확하다. 가령 종가의 장손은 집에서 사대봉사를 하고 5대 조 이상의 조상신에게는 묘소에서 음력 10월 시제時祭로 모신다.

가신으로서 조상신은 직계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유교의 종법宗法에 따른 조상신이지만 혈연보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서열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사대봉사라는 개념은 없고 윗대 조상부터 최근에 세상을 떠난 조상까지 다양하다. 주로 한恨이 많거나 색다르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조상신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제석帝釋, 세존단지 등 불교적인 명칭으로 일컫기도 한다.

무속의 굿, 조상거리에는 제 명을 살지 못해 죽은 불행한 사령死靈이 조상신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당대 조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 대수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조상이 신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유교 제례의 조상신과 가신으로서 조상신의 한계가 모호할 수도 있다. 유교 제례를 받는 조상신의 신체는 사당에 신주로 모셔지기도 하는데, 가신처럼 어떠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신으로서 조상신은 후손을 보살펴 주는 신으로, 그 자리는 대체로 안방의 윗목 벽 밑으로 상정된다. 신체神體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집안에 따라서는 고리짝 또는 조상단지 등을 신체로 한다. 조상신에게는 차례 때 성주와 더불어 조상상을 놓는다. 또는 햇곡이 날 때 천신상薦新床을 올린다.

차례 때 대접받는 조상신은 대체로 유교 제례의 대상이 되는 신이다. 천신薦新 등 집안고사 때 모시는 조상신은 유교 제례를 받는 조상신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가신으로서 조상이다. 유교 제례의 조상과 가신으로서 조상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영덕 영덕읍 창포리에서는 조상당세기를 귀신당세기라고도 하는데, 김길자 씨 댁의 귀신당세기는 윗대 조상을 모신 것이라 한다. 이 댁의 경우 먼 윗대 조상들은 윗동서가 다 가지고 있어서 김씨는 시아버님의 귀신당세기만을 모신다. 귀신당세기 신체는 버드나무 고리이며 그 안에는 한지와 천 원짜리 돈을 넣어두었다. 동지나 정월대보름에 음식을 올리고, 설날과 추석 양 명절 때와 조상제사를 드릴 때 같이 모신다. 이때 귀신당세기에 먼저 제를 올리고, 차례나 조상제사를 지낸다.

강선오(남, 69세) 씨에 따르면 귀신당세기는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원종가에는 틀림없이 있고, 그다음에 차남이나 삼남이 살림을 나서 이를테면 새로운 가계 구성이 되었을 경우 후손들이 모시게 된다는 것이다. 강선오 씨는 귀신당세기를 5대까지 모시고 5대가 지나면 내보내고 새로운 조상을 모시게 된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면 조상신을 상징하는 귀신당세기는 가신일 뿐 아니라 유교제례의 조상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교식 제례에서는 신위나 지방 등 신주를 신체로 제상 앞에 놓는데, 귀신당세기도 유교제례의 조상신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조상신은 유교 제례, 가신제, 무속의 굿거리에도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유교 제례에서 조상신은 가신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혈연을 중심으로 후손과 조상이라는 연속성에 의한 존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가신으로서 조상신 역시 유교 제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교 제례에서 조상신은 후손의 제례를 받는 신격으로, 후손은 제례를 통해 조상과 관계를 결속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가신신앙과 외래종교의 만남(김명자, 민속문화가 외래문화를 만나다, 집문당, 2002), 우주와 역사(M. Eliade, 정진홍 역, 현대사상사, 1976), 조상(김시덕, 가정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1), 조상제사 왜 지내는가(이욱, 여성문제연구13,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4), 조선전(이민수 역, 탐구당, 1974), 창포마을의 가정신앙(김명자, 농사짓다 고기잡는 창포마을의 민속, 민속원, 2008),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장주근, 집문당, 1995),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필자 김명자(金明子)

조석전
朝夕奠

정의 상중喪中에 죽은 이에게 아침저녁으로 술과 과일, 포 등을 올리는 의식.

내용 『가례家禮』에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아침에 술과 과일, 포를 올리는 것을 조전朝奠, 저녁에 올리는 것을 석전夕奠이라 하였는데, 이를 합하여 조석전이라 한다. 『가례』에 따르면, 조전朝奠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인 이하 모두 상복을 입고 자리에 나아가 존장자尊長者는 앉아서 곡하며, 비유자卑幼者는 서서 곡한다. 그리고 시자侍者는 관을盥櫛 도구를 영상靈床 곁에 진설하고 혼백魂帛을 받들고 나아가 영좌靈座에 나아간다. 그런 후에 조전을 행하는데, 집사는 소蔬, 과果, 포脯, 해醢를 진설하고 축은 분향하고 술을 따른다. 주인 이하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석전도 조전과 같은데, 조석전이 끝나면 주인 이하 혼백을 받들고 들어가 영좌에 나아가며 곡하며 슬픔을 다한다. 『가례』에서는 조석곡朝夕哭과 조석전朝夕奠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곡한 뒤에 전을 행하는 의식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후대에는 대부분 조석곡전朝夕哭奠을 조석전으로 이해하였다.

조석전朝夕奠에는 소, 과, 포, 해를 진설하는데, 아침 해가 뜨면 조전을 올리고, 저녁에 해가 진 뒤에 석전을 올린다. 조전이 끝나면 석전까지 음식을 두고, 석전이 끝나면 조전까지 음식을 둔다. 만약 더운 날이면 음식이 상할 수 있어서 식사할 정도의 시간에 맞추어 물리고 차와 술, 과일 등만 남겨놓는다. 조석전은 초우제初虞祭 후에 하지 않고 상식上食만 한다.

특징 및 의의 부모의 신神이 양陽을 따라 온다고 여겨, 조석전은 해가 뜨는 아침과 해가 지는 저녁에 지냈는데, 음양이 교접하는 시기에 그 어버이가 생각나기 때문에 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침저녁에 곡하면서 재배하지 않는 것도 상생像生을 뜻하는 것이라 한다.

참고문헌 家禮, 喪禮備要, 常變通攷.

필자 최순권(崔順權)

조전
祖奠

정의 발인發靷 전前에 영결을 고하는 의식.

역사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는 조전祖奠의 조祖에 대해 "『의례』「기석례旣夕禮」 주소注疏에는 장차 길을 떠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라 하며, 『예기』「단궁檀弓」에는 영구靈柩를 옮기는 것이 길을 떠나는 시초가 된다고 하여, 이를 조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서漢書』「임강왕전臨江王傳」의 안사고顔師古 주에서는 "유람하기를 좋아한 황제黃帝의 아들 누조累祖가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후인後人들이 그를 행신行神(도로의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고, 『백호통白虎通』에는 "공공共工의 아들 수脩가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으므로 그를 조신祖神으로 삼아 제사 지낸다."라고 하여, 조는 여행자旅行者를 전송하는 제사로 해석하기도 한다.

내용 『가례家禮』에 따르면, 발인하기 하루 전 조전朝奠에 천구遷柩를 고하고, 영구를 받들어 사당을 뵈며, 일포(16~18시)에 조전을 행한다고 한다. 일포에 지낸다고 하여 '일포제日晡祭'라고도 한다. 이때 조전과 같이 포脯·해醢·과果·소蔬의 찬과 시접 등을 올린다. 주인 이하가 제자리로 나아가 슬픔을 다하면, 축이 영좌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북향하여 "영원히 옮기려는 예를 행함에 좋은 날은 머물러 있지 않으니, 이제 상여를 받들어 길 떠날 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라는 고사告辭를 고한다. 고사가 끝나면 주인 이하는 곡하면서 절한다.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는 저녁 상식上食을 올린 뒤에 조전祖奠을 차리면서 석전夕奠도 겸하여 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나,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는 상식과 겸하여 행하는 것은 예禮가 아니라고 하여 조전 뒤에는 다시 석전을 차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다른 곳에서 조전과 견전遣奠을 해서 집으로 왔더라도, 발인하기 전에 다시 조전과 견전을 해야 하며, 영구가 집에서 발인하여 또 다른 곳에 빈소를 차렸다가 장사를 지낸다면, 집에서 이미 조전과 견전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조전은 사자死者가 집을 장차 떠나갈 때 술상을 받는 것이라든가, 행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서 조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참고문헌 家禮, 常變通攷, 疑禮問解.

필자 최순권(崔順權)

조혼
早婚

정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한 혼인 연령보다 더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풍속.

내용 고대나 고려 전기까지의 사서史書에서 조혼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 간섭기가 되면서 공녀貢女 징발 문제로 조혼이 행해지고, 예서제預壻制가 성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리학이 국시國是가 되었는데, 성리학에서는 가계 계승을 중시해 조혼 가능성이 높아졌다. 1440년(세종 22) 조정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해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혼인 연령을 정하였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성문화되었고, 예외적으로 양가 부모 중 한 사람이 병이 있거나 나이가 50세가 되었는데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상이면 관에 고하고 혼인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부모 생전에 자식이 후사를 볼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갑오개혁甲午改革에서는 남자 20세, 여자 16세로 혼인 연령을 규정하였는데, 전근대 시대에 비해 남성의 혼인 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질 나이가 되어야 혼인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던 당시 지식인들의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1896년의 『독립신문』 사설에서도 부부간의 화합이나 태어날 자녀의 건강 등과 함께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남자의 혼인 연령이 조선시대에 비해 갑자

기 크게 높아져 현실성이 없자, 1907년 8월 14일의 소칙 20호 조혼 금지에 관한 건에서 남자 17세, 여자 15세로 연령을 변경하였다. 이는 일본 민법에서 따온 것으로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혼은 지역이나 성별,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시 체제로 재편되고 징병과 징용, 정신대 징발 등 사회가 불안했던 1930년대에 조혼은 더 심해진다. 유산 계급은 남자의 조혼이 많은데, 1928년의 통계를 보면, 5~9세에 혼인을 하거나 심지어 2~3세에 혼인한 경우도 보인다. 이렇게 조혼을 한 경우, 남성은 여성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남성이 신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부부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무산계급 여자가 유산계급 남자와 혼인한 경우는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입 하나 줄이려, 혹은 대가를 받고 딸을 판 것이었다. 어린 나이의 딸을 민며느리로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신랑의 나이가 많아 14세 여자가 60세 넘은 남자와 혼인하거나, 14세 미만 여자가 30, 40대의 장년 남자와 결혼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부부간에 연령이 맞지 않는 조혼은 범죄로 이어졌다. 가출이나 방랑, 자살과 더불어 남편 살해나 방화 같은 여성 범죄가 일제강점기 내내 줄을 이었다. 아내와 형식상의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신여성과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역시 조혼의 폐해라 할 수 있다.



꼬마신랑(영화 포스터) | 1970 | 양해남

특징 및 의의 조혼은 시대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전근대 시대에 가계 계승이 중요했을 때는 자손을 빨리 보기 위해 조혼이 행해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사회불안과 경제적 궁핍으로 조혼이 행해져 가정 범죄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오히려 만혼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혼인 연령도 남녀동등의 사회 관념을 반영하여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개화지식인들의 조혼에 대한 인식(박경, 여성과 역사16, 한국여성사학회, 2012), 일제하 조혼 문제에 대한 연구(김경일, 동아시아문화연구4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7), 조선 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장병인, 일지사, 1997), 조선의 조혼과 및 그 기원에 대한 일고찰(김두헌, 진단학보2, 진단학회, 1935),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권순형(權純馨)

졸곡
卒哭

정의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친다는 뜻.

내용 졸곡제는 장사를 마치고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나서 석 달이 지난 뒤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의 강일剛日을 택하여 거행한다. 빨리 장사를 지내면 우제도 빨리 지내 신을 편안하게 해야 하지만, 오직 졸곡만은 반드시 장사 후 석 달을 기다렸다 지내야 한다. 이로부터 수시로 하던 곡을 멈추고 아침, 저녁에만 한다. 비록 아침과 저녁 사이에 슬픔이 있어도 곡하지 않는다.

졸곡을 '성사成事'라고도 하며, 졸곡 이후의 제사는 '길제吉祭'라 한다. 이는 상제喪祭가 대체되어 점차 길례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곡을 '길제'라고 하는 것은 우제에 비하여 길제라는 의미로서, 담제禫祭 이전


분향


졸곡 상차림


독축


아헌 좌주

졸곡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은 모두 '상제'라 일컫는다. 졸곡 하루 전에 제상을 설치하고 제구를 준비하고, 날이 밝으면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나물과 과일)와 주찬酒饌(술과 안주)을 진설한다. 축관이 신주를 내어오면 상주들은 곡한다. 축관이 곡을 그치게 한 뒤 집사자의 지시에 따라 분향강신·초헌·독축·아헌·종헌·유식侑食·삽시揷匙(제사 때 숟가락을 메에 꽂는 의식)·합문闔門(모두 밖으로 나간 뒤 문을 닫음)·사신 순으로 제를 지낸다.

특징 및 의의 졸곡 이후부터는 사자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생자를 섬기는 예가 아닌 귀신을 섬기는 예로써 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졸곡 전의 제사 축문에는 상주가 자신을 애자哀子·고자孤子·애손哀孫·고손孤孫이라 부르지만, 졸곡 후에는 효자孝子·효손孝孫이라 부른다.

국상國喪에서는 졸곡을 기준으로 제사·음악·혼인·도살 등을 금지하였다가, 졸곡 후에는 이를 허용하였다. 또한, 상주들은 거처에 자리를 깔고 목침을 베고 자게 된다. 그리고 조문 온 사람들에게 편지로 감사 회신을 보낸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四禮便覽, 禮記, 儀禮.

필자 정종수(鄭鍾秀)

종가 宗家

정의 특정한 혈연집단에서 대대로 적장자嫡長子를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의 정통성이 계승되어 온 집.

역사 종가는 특정 가문의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적장자로 계승되어 온 집을 말한다. 종가는 종법제도宗法制度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종법은 동질성이 있는 하나의 혈연집단을 피라미드 체계 속에서 안정되게 운영하는 논리이자, 그 집단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이다. 종법에 따르면, 전체 부계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대종大宗과 고조부 이하의 각 조상을 중심으

로 하는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소종小宗이 있다. 대종의 종가를 대종가,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라 한다. 이론상으로 시조로부터 적장자로만 이어진 대종가도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종가는 거의 없다. 종법이 조선 중기에 도입되어 점진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종법에 없는 파종派宗의 개념에 기초한 파종가派宗家가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종가이다. 파종가는 조선시대에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공적을 쌓았거나 덕망이 높아서 불천위不遷位로 추대된 현조顯祖로부터 성립된 종가이다. 그러므로 적장자로 이어지는 집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집만이 자타가 인정하는 종가로 인식된다.

불천위는 국가를 위한 공헌과 학문적 업적에 따라 임금이 시호를 내리면서 신주를 사당에서 옮기지 않고 자손 대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불천위로 추대된 인물은 사회적으로 업적과 덕망을 공인받은 사람이다. 초기에 불천위로 추대된 인물은 대개 주자학(성리학)에 몰두한 사림파였으며, 차츰 후대로 올수록 높은 관직에 올랐거나 붕당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거 불천위로 추대되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문중별로 불천위 조상처럼 가문을 빛낸 두드러진 조상을 중심으로 종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가는 영조英祖 이전 국불천위國不遷位를 받은 중시조 또는 파시조를 제사 지내는 집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천위는 국불천위, 유림불천위, 문중불천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서원에 배향되어 있거나 현조가 있는 문중의 큰집까지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16세기 즈음 종가는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역과 가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7~18세기에 문화적 전형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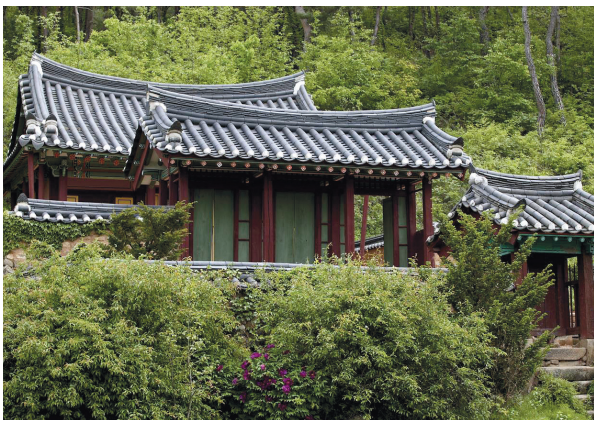
내용 종가는 종법제도에 따라 적장자 중심으로 부계 혈통이 계승되는 집을 말한다. 몇 가지 요건을 더 거론하면, "현조顯祖를 중시조 혹은 파시조로 하여 오랜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가?", "불천위 조상이 있는가?", "사당·고택·위토位土 등을 갖추고 있는가?", "문중이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공인을 받았는가?" 등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을 때, 오늘날 종가로서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다만,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가문의 사정에 따라 종가로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종가의 종손宗孫과 종부宗婦의 삶에는 몇 가지 책무와 실천이 수반된다. 종손의 가장 큰 의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계를 계승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종가의 가계 계승을 위해 각 문중의 종친회나 화수회花樹會 등에서 족보族譜를 간행한다. 족보 간행은 혈통을 계승하고 가문을 잇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가의 조상제사로는 불천위제사·묘제·기제사 등이 있다. 안동 권씨 시조인 권행權幸의 묘제에는 전국에 있는 후손들이 묘제 하루 전날 묘가 있는 경상북도 안동 서후면 성곡리의 능동재사陵洞齋舍에 모여 숙박을 하며 다음날 묘제에 참석한다. 묘제에 참석하는 사람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임에도 조상을 존숭하고 조상제사에 참여하여 혈족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종가에서는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을 중요하게



충재 권벌 종가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충재 권벌 종가 사당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생각한다. 조상제사뿐만 아니라 종가를 방문하는 수많은 지손들과 손님들을 정성껏 접대하는 것 또한 종가의 실천과 의무인 것이다. 특히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종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종가를 대표하는 종손과 종부는 문중 성원들의 관심 속에서 보호와 우대를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종가는 긴 역사적 시간 속에서 문중 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종손과 종부의 노력으로 가문마다 종가문화를 형성해 왔다. 종손과 종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지손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베풀어야 할 책무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먼저 나아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춘궁기에는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등 문중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솔선하는 것,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주체가 종가이며, 종손과 종부였다. 아울러 종손과 종부는 종가의 가풍과 조상의 유훈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진다. 이들은 차종손次宗孫과 차종부次宗婦의 교육에도 적극적이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종가의 체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썼다. 비슷한 지체의 가문과 혼인을 통한 혈통의 계승, 학문 활동을 통한 학통의 계승,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가 재산의 관리 등이 바로 그러한 노력이었다.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보면, 종가는 종택, 내림 음식, 가정교육, 의례, 고문서, 고문헌 같은 수많은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이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손, 종부, 문중 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결속하여 종가문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가는 오늘날 실생활에서 한국의 유교문화와 전통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 의무를 지키는 종가의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경북 경주 최부잣집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훈이 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재산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 것, 손님을 후하게 대접할 것, 흉년에 다른 사람의 전답을 매입하지 말 것, 집안 며느리는 시집온 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을 것,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등이다. 여기에서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봉제사접빈객'에 의거한 나눔과 사회적 배려의 정신이다.

경북 영양 석계 종가의 석계 이시명의 부인 장계향張桂香(1598~1680)은 이사를 하는 곳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아이, 늙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과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등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근심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었다. 그리고 산에 도토리나무를 심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웃을 도와주는 구황식救荒食으로 썼다.

특징 및 의의 종가는 한 혈연집단에서 누대에 걸쳐 적장자로 이어온 집을 가리킨다. 개별 종가의 출발이 되는 조상은 대부분 중시조에 해당하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종가는 일반적으로 파종가이다. 종가는 종손이 사는 집으로서, 두드러진 종가는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부터 출발한 집이다. 그러므로 종가는 500여 년 이상 한국의 유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한 역사·문화의 총체적 산물이다.

참고문헌 가족사회학(조정문 외, 아카넷, 2000), 경상북도 종가문화연구(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경상북도, 2010),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8), 종가문화의 특징과 의의(이종성, 인문학연구8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종가의 사당을 통해 본 조상관(배영동,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한국의 명문 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배영동(裵永東)



종계
宗契

정의 종중 또는 문중 조상의 분묘 수호와 묘제 봉행 및 후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역사 조선시대의 종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고려시대의 조직으로, '의장義莊' 혹은 '의전義田'을 토대로 하는 의장계義莊契가 있었다. 이 의장계는 중국 북송의 범중엄范仲淹이 처음으로 창설한 것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의례인 종법제도에 따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가정에서는 당내堂內(=동고조 8촌), 즉 4대조인 고조高祖까지 기제사와 차례를 지냈다. 그러나 이 당내를 넘어서는 조상, 즉 5대조 이상의 분묘 수호와 묘사 봉행을 위해 종계(종약)를 구성하여 별도의 종중재산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내용 종계는 주로 부계중심의 친족이 조직화하여 사대부에게 일반화되는 17세기 중반 이후 형성된다.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에서 주요 관심사는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인데, 종계는 '봉제사'와 관련이 있었다. 5대조 이상 선대의 묘제를 지속해서 유지하려면 재산관리와 인적관리가 필수적인데, 그 운영을 통해 재생산을 지속시켜주는 조직이 바로 종계 또는 문중계이다. 종계 규약은 주로 제사 및 위토位土의 관리, 종계 구성원 간의 권선징악이나 상부상조, 절제와 검약, 인화 등을 강조하였다. 종계의 참여자 명단인 종계안(문중계안, 족계안)을 통해서 해당 문중의 정착과정이나 향촌의 동향들을 알 수 있다. 종계일기나 제향록祭享錄을 통해서는 종계의 행사 때 집행을 담당한 집사자, 참석자와 불참자, 계에 낸 예전禮錢이나 벌전罰錢 및 미수금의 내용과 액수 등 종계 운영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조상의 묘제墓祭를 지낼 비용의 염출은 종손의 기부나 공동 갹출을 통해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한 위토位土를 소작하여 나온 재물로 봉제사 외에 선산을 관리하고, 묘지를 개보수하며, 재실을 관리·운영한다. 보통 종손이나 문중의 연장자이자 항렬이 높은 문장門長이 종계를 대표한다. 그 아래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유사有司라고 하는데, 문중 재산과 선산을 관리하며 산직山直이나 묘직墓直을 감독하고 묘제를 준비하는 일을 맡는다. 통상 연 1회 또는 봄가을에 묘제를 지내는데, 봄에는 한식 전후에, 가을에는 추석 후에 행한다. 계원들은 대체로 해마다 한두 차례 대체로 시제時祭를 지낸 뒤 회의를 가진다. 묘제는 묘지나 비석을 큰 규모로 하고, 제사를 성대하게 차리며, 재실을 크게 만들어 종중 구성원의 조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에 가문의 위세와 신분적 우월성 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종계에 참석하는 인원과 토지소득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이 생겨났다. 특히 종계 활동에 갈등이 발생할 때, 과거에는 종중 내의 위계질서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거나 중재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종중 구성원이 증가하고 토지소유 양상이 변화하며 평등 관념이 확대되어 관습적 위계질서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중 간에 결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종계에서는 과거의 관습적 위계질서에 의한 운영방식에 벗어나 절차에 따른 합리적 운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느슨한 규범이었던 종계의 규약을 세부적으로 성문화成文化하고, 임원·임기·선출방식·기능·의결기구 등을 정비하였으며, 종중 즉 종계의 재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통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종중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종중재산 보호의 기능을 높임으로써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사례 1649년에 작성된 해남 윤씨 가문의 「선조묘위답입권先朝墓位踏立券」은 종계가 조직되기 이전의 묘제 운영방식을 보여 준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해남 윤씨 가문은 내외손 성인에 한하여 각기 정목正木 한 필과 정미正米 한 말을 내었고, 묘 근처의 부계자손으로 매년 두 사람이 미포를 관리하고 매년 9월 15일에 제사를 올렸다. 6대 조고비와 5대 조고비의 묘 앞에 각각 일탁一卓을 놓아 합설하고,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일탁을 마련하는 이 방식이 조선시대 명문가의 제례라 할 수 있다. 이후 제위답이 확보된 후에는 종계조직 운영체계로 전환되었다.

1878년에 작성된 전라남도 해남 김해 김씨 집안의 「사족안私族案」과 「과계안科稧案」에 따르면, 문중의 자손



종계문서 | 1784 | 국립민속박물관
청주 한씨 문중에서 묘제를 지내기 위하여 조직한 계에 관한 문서.

중에 가문을 현양시킬 과거급제자를 배출하기 위해 묘제봉사와는 별도로 종계에서 계를 구성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한 내용이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종계는 지연공동체가 아니고, 부계중심의 혈연을 통한 제사공동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종계의 조직은 5대 이상의 선조에 대한 묘제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결합범위가 당내, 즉 동고조 8촌을 넘어선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소종小宗의 대종화大宗化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부단히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소종의 경우와는 달리,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인 조직체라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조상의 묘제를 통해 종중 또는 문중(족내) 구성원이 공통된 가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고 후손들의 친목을 다지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20세기 김천지역 연안이씨 종중의 지속과 변화(이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고문서집성39-해남 김해김씨(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1), 조선후기 지역사회 구조 연구(정승모, 민속원, 2010).

필자 박경하(朴京夏)

종법
宗法

정의 친족조직 및 제사의 계승과 종족宗族의 결합을 위한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

역사 종법은 중국 주대周代에 성립한 종족宗族의 조직규정으로 적장자상속제 확립을 위하여 생긴 제도이다. 중국의 종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 말기로, 주자학 수용과정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행이 주장되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종법이 더욱 주목된 것은 조선 전기이나, 당시의 예제는 사가私家보다는 왕가王家의 예禮가, 『주자가례』보다는 『예기禮記』가 주목받았으며, 조선왕실의 전례를 집대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도 바로 이러한 영향 속에서 편찬되었다. 특히 조선 전기는 성리학의 보급으로 고려시대의 불교의례와 비종법적인 친족체제가 점차 성리학적 예제禮制로 개혁되는 과도기였다.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혼인에서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었다. 게다가 친족의 인식범위나 제사 및 재산의 상속 같은 제반 사회관습에서도 과도기적 성격은 부부, 자녀, 친손과 외손을 동일시하여 양계친족兩系親族, 즉 비부계친족체계非父系親族體系를 존속하게 하였다. 이처럼 남과 여,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대하는 친족체계의 관행 덕분에 자녀균분상속, 자녀윤회봉사가 일반화하였고, 족보도 자계子系와 여계女系가 동일한 체계와 비중으로 나이 순서에 따라 기재되었다.

그러나 16~17세기에 사림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지배층으로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교화를 강조함에 따라 『주자가례』는 과거의 왕실 전례와는 다른 계통의 가례, 즉 4례로서 사족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조오례의』보다 『주자가례』나 고례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후 17세기에 종법질서나 친족의식이 변화하였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나 상속제도가 대체로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종법제도와 같은 형태라고 보았다. 그들은 남녀차별, 동성불혼, 장자봉사, 대가족제 같은 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제도나 상속제도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일반적이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사회사 연구에 힘입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적장자 중심의 부계친족체계로 친족결합이 강화된 것은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사족들의 성리학 이해가 심화하고 『주자가례』가 적극적으로 보급되면서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제 역시 기왕의 부부, 부모, 자녀라는 수평관계에서 아버지, 남편,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수직관계로 재편됨으로써, 부부夫婦·부자父子·군신君臣·적서嫡庶·주노主奴·장유長幼의 철저한 상하 주종관계가 수립되었다. 17세기 중엽 이후 적장자 중심의 친족체계 아래에서 제사상속 및 분재에서의 장자우대 경향, 족보의 친족 수록범위 축소, 입양제도의 변화, 그리고 동족 마을의 형성 등으로 예제 차원에서의 관계 재편이 예증되었다. 부연하면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부계친족 중심의 문중 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가족결합 또는 친족결합의 새로운 양상이 정착되었던 것이다.

내용 종법은 우리나라 부계 친족조직의 근본을 이루는 법이며, 특히 집에서 행하는 기제와 밖에서 행하는 시제를 구분해 준다. 무엇보다 당내친의 범위를 정하고, 문중의 조직과 활동에 기본이 되는 법이 종법이다. 중국 주대의 종법제도는 동일혈족의 제사조직으로, '종宗'의 내부는 다수의 '족族'으로 구성되었고, 혈통에 따라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되었다. 일반적으로 대종大宗은 적장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조상을 모시는, '백세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종[百世不遷宗]'을 말하며, 같은 시조를 둔 종족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이다. 이에 비하여 소종小宗은 별자로서 고조·증·조부·부·자의 5대를 일족으로 하여 '5세五世마다 바뀌는 종[五世而遷]'이다.

소종은 '고조종高祖宗' 또는 '당내'라고도 하는데, 흔히 일상용어로 '집안'이라 할 때 이 당내의 범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고조의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집단으로 삼종형제까지 포함된다. 대종의 범위는 성씨에 따라 다르며, 과거에 번창하였던 성씨들은 대종 내에 수백, 수만 명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미상으로 체계는 단일하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조직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일괄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친족제도상의 '파'이며 친족조직상으로는 '문중'이다.

조선 후기 이후로 일반화된 대종은 같은 시조를 둔 친족조직 전체를 집단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들 '파派'가 대종의 역할을 한다. '파'란 고관대작이나 유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널리 알린 조상, 즉 파조派祖를 기점으로 형성한 하위집단을 말한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유명하여 한 파의 파시조가 되면, 다른 형제들은 다른 파의 시조들이 되는 것이다. 파시조는 문중의 중심인물이고, 파시조의 시호·호·관직·후손집거지 등을 상징화한 것이 파명派名이었다. '문정공파', '송암파', '승지공파', '청양파'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문중을 형성한 명문가들은 향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배력을 보장받는 방편으로, 혹은 자체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중, 종중 조직을 강화하였다. 대부분의 명문가는 17세기 초반~중반에 족계, 혹은 종계로 불리는 친족 조직을 창설, 자신들의 현조顯祖를 내세워 가문의 위세를 강조하고, 종가·선영·재실·서당 등 여러 족적 기구들과 상징적 기반들을 만들며, 종토宗土, 位土 등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다. 나아가 종중의 조직력과 위세를 배경으로 종중에서 배출한 인물의 추숭, 서원과 사우의 건립, 파보·족보·문집의 간행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종법에 의하여 이룩된 친족집단인 종중의 대표는 종손이다. 종손은 적장자손으로 종법에 따라 직계조상의 제사를 거행한다. 종손은 이처럼 문중의 대표자로서 제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계조상 제사의 초헌관은 반드시 종손이 맡는다. 종손의 부인은 종부로, 집안에 따라서는 대종중의 종부에게 큰 권한을 주는 집도 있다.

문중 조직의 기본은 재산이다. 문중의 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필요할 경우 종손宗孫이나 문중의 재력가가 기부하거나 족인들이 갹출한다. 이와 함께 제사를 위한 위토와 묘소가 있는 선산, 묘소의 각종 석물石物, 그리고 제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문중은 이러한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계宗契를 구성하는데, 종계는 족계·종약·화수계花樹契로도 불렸다. 이들 자료에는 임원의 선출이나 의무, 구성원의 자격, 공동재산의 관리나 운영, 범칙자에 대한 처벌 등이 기록되었고 이와 함께 좌목, 규약이나 치부책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의의 종족사회란 종법을 근간으로 한 혈연집단이 촌락 또는 향촌사회를 주도해 가는 사회체제로 동양사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으로부터 종법을 수용함에 따라 전개된 한국의 종법질서는 중국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 내용은 아주 다르다. 중국의 종법은 부계혈통의 적장자가 가계를 계승하기는 하지만, 종족 내부 또는 타 종족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강한 수직적 구조와 상하 위계질서를 중시하여 종족 내부에서 적서의 차별이 엄격하였고, 장자와 차자 나아가서는 종손과 지손의 지위나 경제적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다. 적손嫡孫들의 서손庶孫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어, 서손들의 가계계승권 보유는 원천적

으로 봉쇄되었고, 부모의 재산상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장자의 절반 또는 그 이하의 재산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적장자로 계승되는 종손宗孫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손의 절대적 지위는 단절되지 않았으며, 조상에 대한 제사권과 종산 및 종가 건물의 상속권은 종손의 고유 권한이었다.

참고문헌 16~17세기 하회 풍산류씨가의 종법 수용 과정(김명자, 대구사학 96, 대구사학회, 2009), 조선시대 예학사상사(고영진, 한길사, 1995), 조선에 있어서 주자 종법 사상의 계승과 변용(이승연, 국학연구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조선전기의 종법제도 이해과정(지두환, 태동고전연구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84), 조선후기 문중화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이해준, 역사와 현실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이해준, 동양학2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3), 종법제의 역사적 고찰과 그 사회적 역할(이홍순, 유학연구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5),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이해준(李海濬)



종헌 | 경북 안동 농암 이현보 종가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종헌 終獻

정의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복을 구하려고 올리는 세 번의 잔 가운데 마지막 술잔.

내용 종헌은 제사에서 삼헌三獻으로 규정된 헌작의 세 번째 순서로 중국 주대周代부터 행해져 왔다. 종헌이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올리는 술이라는 뜻으로 도교에서는 '삼헌三獻'이라고도 한다. 삼헌하는 방법은 침주斟酒와 좨주祭酒, 진적進炙, 재배再拜의 순서이다. 초헌에 비해 독축讀祝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침주는 술잔에 술을 부어 신위에게 바치는 헌작으로 『가례家禮』의 방식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방식 두 가지가 전한다.

이곡李穀(1298~1351)이 쓴 도교 제사에서 올리는 초소醮疏의 삼헌문은 종헌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다. "하늘이 어찌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묵묵히 만생萬生의 재앙과 복을 관장하시니, 신神이 가장 귀중한 것은 음양으로 팔정八政을 주관하여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건대 미약한 자질로 그릇 크나큰 서통을 이어받아서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느라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나이다.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려면 모름지기 십진十眞(전지전능全知全能의 절대적인 진재眞宰)의 보호를 의뢰해야 하겠기에 소림炤臨하실 만한 곳을 택하여 청결한 의식을 베푸오니, 흠향하시고 빨리 보우保佑를 더해 주시어 육기六氣가 어기지 않아서, 바람과 비가 알맞고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워서 삼농三農이 성취되어 잡초는 썩고 곡식은 무성하며, 병기를 거두고 감추어지게 해서 천하를 화평하고 편안하게 하소서." 이처럼, 이 글은 '앞으로 잘 보살펴 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에서는 『국조오례의』 방식의 종헌을 하여 종헌에서 좨주를 하며 이를 제작除酌이라고 한다. 『국조오례의』 방식 헌작법의 종헌에서는 원래 적炙을 올리지 않지만, 안동의 학봉 종택에서는 미수味需라는 적을 올리는데, 이를 '삼미탕三味湯'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종헌이란 삼헌의 마지막으로 올리는 잔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종헌관終獻官은 연장자나 귀한 손님이 올리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성혼成渾(1535~1598)은 "정구鄭逑(1543~1620)가 말하길 '삼헌은 모두 주인과 주부와 장남이 해야 하며 비록 백부나 숙부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주인이 초헌하였는데, 제부諸父가 존항尊行으로서 그 다음이 되어 존비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종헌은 연장자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東國李相國集, 禮記, 儀禮, 林下筆記,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좨주

정의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땅에 제사하는 의미로 술을 올리는 것을 뜻하지만, 실제 제례에서는 헌작할 때 술을 세 번으로 나누어 물리는 행위.

내용 술을 올렸다가 잔을 내려 바닥에 조금씩 세 번 지우는 '삼제우지三除于地'라고도 한다. 강신 때 세 번 지우는 것은 조상의 신을 청하는 '뇌주酹酒'이고, 술잔을 올릴 때마다 세 번 지우는 것은 매번 조상께서 술을 드시는 것을 상징하여 '좨주'라고 한다.

좨주의 절차는 제주가 초헌·아헌·종헌할 때마다 헌작했던 술을 모삿그릇 혹은 퇴주기에 세 번으로 나누어 완전히 붓는 것이다. 집사자가 술잔을 내려 제주에게 주고 술을 따른다. 제주는 술을 조금씩 세 번으로 나누어 모사기 혹은 퇴주기에 붓는다. 본래는 땅의 신에게 올리는 의식이었지만, 오늘날은 모사기에 술을 물리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고양 율곡 이이 종가


전남 해남 고산 윤선도 종가

좨주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좨주 또는 뇌주酹酒는 퇴주할 때 세 번을 퇴주기에 나누어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뇌주'라고 할 경우는 '강신하다'는 뜻이 강하고, '좨주'라고 할 경우는 모사기나 퇴주기에 나누어 부으므로 '땅에 제사 지내다'는 의미가 강하다. 세 번 술을 붓는 것을 삼좨三祭라 하면 '세 번 땅에 제사지내는 것'이 된다.

참고문헌 朱子家禮,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필자 이희재(李曦載)

주과포
酒果脯

정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제물인 술·과일·포.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초록된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수로왕首露王의 17대 후손이 시조 제사를 지낼 때의 제물은 술·감주·떡·밥·차·과라고 하였다. 포脯는 보이지 않으나, 술·과일과 평소의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제사를 지낼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과포라도 차려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말처럼 주과포는 제물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오늘날의 정조차례正朝茶禮에서도 메와 갱 대신에 떡국을 올리지만 주과포는 빠지지 않는다. 묘제와 추석의 성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과포 중 가장 으뜸인 제물은 청주, 약주 등의 술이다. 『의례儀禮』, 『가례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공통적인 술은 현주玄酒, 곧 물이다. 현주는 정화수井華水로, 술이 귀했던 시절 냉수를 올렸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후 그 전통을 이어받아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현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의례』와 『예기禮記』 등의 고례에는 예주醴酒도 자주 등장하는 데, 이는 단술을 의미한다.

과일 역시 기본 제물에 속한다. 밤, 대추, 감, 배와 수박, 참외 등을 올리며, 진설은 일반적으로 조율시이棗栗柿梨로 하는데, 그 기원의 일설은 "대추는 씨가 하나이므로 임금, 밤은 한 송이에 세 개가 열리므로 삼정승三政

丞, 감은 씨가 여섯 개이므로 육판서六判書, 배는 씨가 여덟 개이므로 팔도八道 관찰사觀察使를 상징하여, 이러한 위계에 따라 조율시이의 순서대로 진설한다."라고 전해진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도 서쪽부터 조율시이 순으로 놓는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는다.

포는 육포와 어포로 구분된다. 『의례』와 『예기』에는 소·사슴·노루·토끼로 만든 육포가 주로 등장하며, 꿩고기포도 보인다. 향교나 서원에서는 육포를 제물로 올리고 있다. 어포로는 대구포·북어포·오징어포 등을 올린다.

지역사례 충청남도 논산 교촌마을의 파평 윤씨 노종파 명재明齋 윤증尹拯 종가에서는 "우리 집은 소론少論이기에 과일 놓는 순서는 조율이시로 놓는다."라고 하며, 겨울 차례상에 미처 밤이 준비되지 않자 감자를 밤 대신 올리고, "감자도 종자고 밤도 종자이므로 직접 농사지은 것이면 된다."라고 하여 제사의 기본 정신을 보여준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대구포와 북어포를 주로 올리지만, 불천위不遷位 제사와 같이 규모가 큰 제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구포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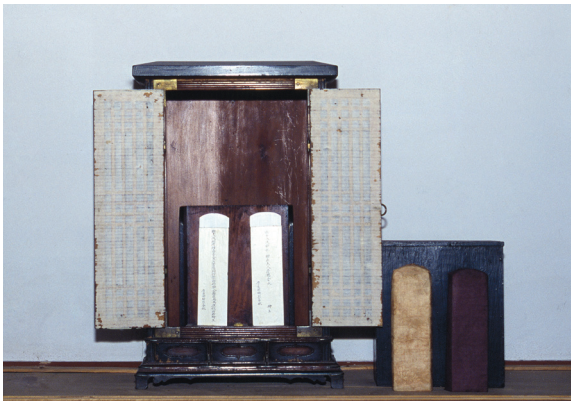
특징 및 의의 『가례고증家禮考證』에서는 "제주는 전주奠酒라 하여 땅에 붓지 않고 제사상에 올리는 것으로, 귀신이 스스로 마실 수 없으므로 제관들이 대신 마신다."라고 했다. 『의례』와 『예기』 같은 고례에 등장하는 과일은 대추와 밤뿐이다. 특히 『가례』와 『사례편람』 등 예서의 진설도에는 '과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각색 과일로 해석한다.

참고문헌 식생활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출판사, 1999),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종가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2001).

필자 윤덕인(尹德仁)

주독
主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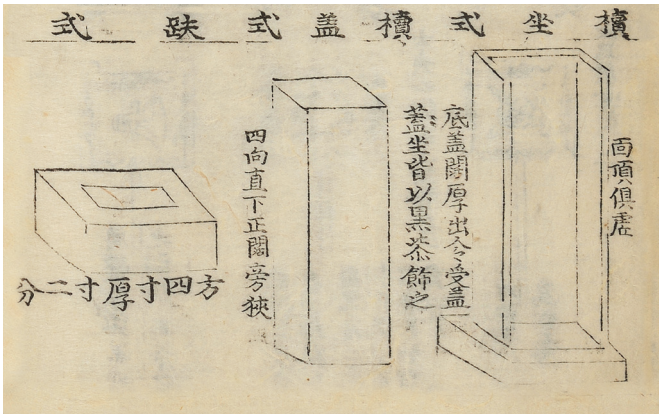
정의 사당 안에서 신주를 모셔두는 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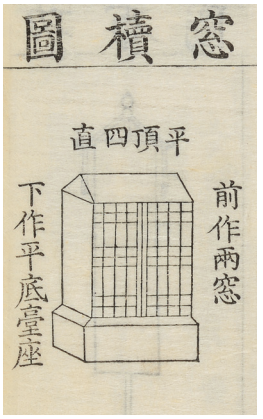
양창독과 신주 | 전남 나주 다시면 회진리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주독은 사당 안 감실에 신주를 모셔두는 궤로, 『가례』 가례도家禮圖에 독도자식櫝韜藉式 및 독식櫝式으로 제시되어 있다. 독은 독좌櫝座와 독개櫝蓋로 구성된 궤독櫃櫝으로, 흑칠黑漆을 한다. 독좌는 사각의 다리 모양을 한 받침대[趺] 위에 앞면이 없는 3판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 안에 신주를 놓는다. 독개는 4면과 위가 막혀 있고 아래가 터진 상자로 독좌를 덮는다. 이러한 독에 대한 설명은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에 근거한 것이다. 『가례도』 신주식에서는 "사판祠版 아래에 받침대[趺]가 있는데, 도韜로서 주머니로 삼고, 자藉로서 깔개를 삼으며, 부군夫君과 부인夫人은 단지 한 개의 갑匣만을 사용하는데, 지금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였다. 실제 사마광司馬光도 "소상小祥 때 율목栗木으로 사판과 받침대를 만드는데 모두 상판桑版의 제도와 같으며, 고考는 자색紫色 주머니, 비妣는 비색緋色 주머니로 덮고 각기 자藉로서 칠갑漆匣에 깔개로 둔다."라고 하였다. 『가례도』에는 이것 이외도 양창兩窓이 있는 독식櫝式을 함께 그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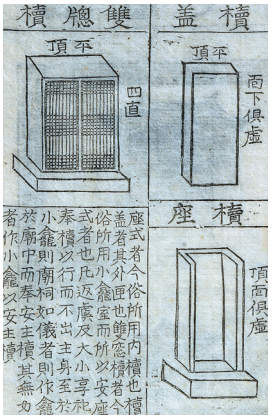
그러나 『가례의절家禮儀節』 및 『삼재도회三才圖會』의 신주도에서는 좌개식을 생략하고 양창독만 독식으로 제시하였고, 『국조오례의』에도 『가례도』에 따라 좌식, 개식, 독식(양창)을 그려 놓았다. 성혼成渾도 "『가례도』에 좌식의 구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신주독이고, 양창독은 속칭 장欌"이라 하였다. 『가례』에서는 "기제忌祭에 하나의 신위를 모시는데, 좌식은 각각 하나의 신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각기 좌식을 설치한다면 장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둘 다 사용한 것으로 여겼다. 신식申湜(1551~1623)도 "신주를 좌식에 안치



독좌식 독개식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창독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쌍독도 | 사의 | 국립민속박물관

하였다가 다시 양창독에 보관하는 것은 귀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선인들이 이미 사용하던 독을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고 하였다. 『성재선생문집性齋先生文集』에서는 "쌍창독雙窓櫝은 우리나라의 작은 감실小龕子과 같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장생金長生은 "좌식坐式과 양창독兩牖櫝의 그림이 『가례도』 권수卷首에 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에 둘 다 사용한다든지, 좌식坐式만 사용한다든지, 양창兩牖만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더불어 "옛날에는 신주를 좌식에 두어 비단으로 만든 도幬로 덮었고, 개를 더하여 독에 두었는데, 오늘날에는 간편함을 따라 좌식과 양창독을 둘 다 사용하지 않고 단지 좌개만을 주독이라 하여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말년에 남옹南雝의 가례본家禮本을 보고서 비로소 "좌식坐式이 사마공가司馬公家에서 사용한 것이고, 양창兩牖은 한위공가韓魏公家에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가례』에서 이른바 독이란 것은 단지 사마씨의 제도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송인宋寅이 좌식坐式을 폐하고 오로지 양창독兩牖櫝만을 사용하며, 단지 출입에만 좌식坐式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례의 본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가례집람』과 『상례비요』 도설에는 양창독의 그림을 생략하고 독좌식, 독개식 그림만 제시하였다.

이에 송시열宋時烈은 "좌坐는 그 밑바닥에 신주를 놓는 것이고, 개蓋는 위로부터 덮어놓는 것이다. 좌와 개를 합한 것이 독이다. 양창 또한 독이다."라고 하여, 좌식만을 독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좌개를 독으로 볼 경우, 이것은 신주가 독에 들어갔다가 다시 독에 들어가는 모순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있은 후에도 『사례편람』 및 『가례원류』에는 여전히 '독좌도', '독개도' 및 '창독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례보편』에는 『국조오례의』에 제시된 양창독은 생략하고 '독좌' 및 '개' 그림만 제시하였고, 『가례증해』에도 「독좌도」, 「독개도」만 제시하였다. 『사례집요』에는 개좌식의 독을 옆면으로 제시하였다.

특징 및 의의 개좌蓋坐나 양창독兩牖櫝은 신주를 보관하는 곳이지만, 후대에 양창독은 주독을 보관하는 감실龕室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개좌는 기제사를 위해 출주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源流, 家禮儀節,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輯要, 四禮便覽, 三才圖會, 喪禮補編, 喪禮備要, 性齋先生文集, 신주고(최순권, 생활문물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최순권(崔順權)

주례
主禮

정의 혼인예식에서 예식을 맡아 주장하여 진행하는 사람.

내용 전통혼례는 혼례절차를 잘 알고 한문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 홀기笏記를 읽으며 진행한다. 혼례 때 홀기를 읽어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을 보통 '주례' 또는 '집례執禮'라고 한다. 전통혼례에서 주례는 홀기를 부르는

창홀자唱笏者이면서 예식의 집례자로서 혼례를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홀기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할 때부터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를 마칠 때까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홀기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주례는 한문으로 말한 뒤에 쉬운 말로 다시 말하여 신랑·신부나 시자侍者 및 참석자들이 다 알 수 있게 한다.

교배례와 합근례 홀기의 한 예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신랑취대례청新郎就大禮廳(신랑은 대례청으로 와서 동쪽에 서시오.) ②신랑동향립新郎東向立(신랑은 동쪽을 향하여 서시오.) ③신부출新婦出(신부는 서쪽 자리로 나오시오.) ④관수집건盥水執巾(신랑은 남쪽에 있는 대야에, 신부는 북쪽에 있는 대야에 손을 씻고, 시자는 수건을 주시오.) ⑤신부재배新婦再拜(신부는 신랑에게 두 번 절하시오.) ⑥신랑답일배新郎答一拜(신랑은 답으로 한 번 절하시오.) ⑦신부우재배新婦又再拜(신부는 다시 두 번 절하시오.) ⑧신랑우답일배新郎又答一拜(신랑은 다시 답으로 한 번 절하시오.) ⑨신랑신부궤新郎新婦跪(신랑과 신부는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⑩근배례재행여지巹杯禮再行如之(합근례를 행하시오.) ⑪대례필大禮畢(대례가 끝났습니다.)

전통혼례에서 주례는 홀기대로 예식을 진행한 뒤에 신랑·신부를 대례상大禮床 앞에 세우고 주례사主禮辭를 하기도 한다. 신혼예식에서는 주례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 신혼예식에서 사회자가 주례를 소개하면 주례는 예식장의 단상에 선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신랑이 입장하고, 그 뒤에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한다. 사회자가 알려주는 식순에 따라 주례는 신랑·신부가 맞절을 하게 한 다음 혼인 서약을 하고 이어서 성혼선언을 한다. 그다음에 신랑·신부가 새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주례사를 하고, 양가 부모와 내빈에게 인사를 시킨다. 주례는 신랑·신부가 자기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 중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존경할만한 분을 골라 모신다. 주례를 맡는 분들을 보면, 전에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같은 유명인사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신랑·신부가 가르침을 받은 은사恩師, 출석하는 교회나 성당의 목사나 신부, 직장의 상사 등으로 자기들과 인연이 있는 분을 모시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주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혼례식은 홀기 또는 식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예식의 분위기나 주례사의 내용은 주례의 학식과 가치관, 예식 진행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주례가 분위기를 다잡아 혼례식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삶의 지침이 될 알찬 내용의 주례사를 하면 참석자들은 축하의 마음이 커지고, 신랑·신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지표를 얻게 된다. 신랑·신부는 살아가는 동안 주례와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주례의 언행과 삶의 태도를 본받는다. 그러므로 주례는 혼례식의 집례자이면서 신랑·신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이다. 신랑·신부는 주례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고, 주례를 맡는 사람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락해야 한다.

참고문헌 서울민속대관4(서울특별시, 1994),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한국인의 삶과 문화(최운식, 보고사, 2006).

필자 최운식(崔雲植)

주병
酒甁

정의 제례 때 헌작獻爵에 쓰이는 술을 담아두는 병.

역사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비롯한 각종 예서禮書에는 주주酒注 또는 주전자酒煎子로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전자를 많이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술병과 주전자가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토도류土陶類의 주병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대 이후에는 병에 담아서 파는 공장제 술을 제주로 사용하면서 술병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병술을 쓰는 경우에는 주전자에 술을 담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 술을 담아두었다가 헌작 때 잔에 술을 붓는 용기로, 대개 주전자의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술은 모두 집에서 빚어서 사용했으나, 근대에 들어서서 주세법酒稅法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술을 빚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양조장이나 공장에서 만든 술을 사서 쓰게 되었다. 최근 주세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가양주家釀酒, 즉 집에서 술을 빚어서 쓰기도 한다. 가정에서 술을 빚는 일은 모든 전통음식과 마찬가지로 장시간의 노동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다.

흔히 '정종'이라고 불리는 청주淸酒가 가장 보편적인 제사용 술이다. 정종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의 청주 상표인 '국정종菊正宗'의 다른 이름이다. 즉, 상표가 술의 이름으로 와전된 것이다. 한때 조미료가 '아지노모토味の元'로 알려졌던 것처럼 잘못된 표현이다.

청주는 다른 재료로도 만들었지만 주로 쌀을 주재료로 술을 빚어서 대나무로 만든 용수를 술 항아리 가운데 박은 후, 걸러져 나온 맑은 술만을 뜬 것이다. 막걸리는 청주를 뜨고 남은 찌꺼기에 물을 타서 거른 것이다. 소주는 청주를 고아서 물기를 거의 제거하고 남은 도수가 높은 독한 술이다. 이 전통 증류주인 소주를 제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징 및 의의 제사용 술인 제주祭酒를 담아 두었다가 헌작 때 술을 따르는 도구로서 병술이 나오기 전에 주로 사용했으며, 이후 주전자 등으로 대체되었다.



주병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주술기자
呪術祈子

정의 주술성을 강하고 담고 있는 기자의례祈子儀禮의 한 방법.

역사 주술은 주문呪文·주구呪具, 그리고 주적행위呪的行爲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은 언어행위로서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전하는 김수로왕金首露王 탄생 신화와 관련된 〈구지가龜旨歌〉와 〈서동요薯童謠〉·〈해가海歌, 海歌詞〉는 대표적인 예이다.

주구는 주술에 쓰이는 물질적 요소를 가리키는데, 이는 인간으로부터 모든 도구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주적행위는 주문과 주구로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주술이란 말은 주적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술기자는 아이를 갖기 위해 주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지가는 주문呪文으로서, 김수로왕의 탄생을 비는 주술성을 지녀 주술기자의 원류로 볼 수 있다.

내용 주술은 인간이 초자연적인 힘을 조작하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이다. 영어의 magic이란 말은 영국인들이 페르시아 사제자들이 행하는 의식을 지칭하던 말에서 왔는데 동양에서는 주법呪法·주저呪詛 등으로 표기해 왔다.

주술은 그 성격에 따라 백주술과 흑주술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주술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황금가지(The Golden Bough)』를 쓴 프레이저(J. Frazer)는 주술의 기저에 깔린 원리를 유사의 원리와 접촉의 원리로 분류했다.

유사의 원리란 결과가 원인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이에 의한 주술을 '모방주술' 또는 '동종주술'이라고 한다. 접촉의 원리란, 전에 한번 접촉했던 사물은 물리적 접촉이 끝나도 계속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이에 의한 주술을 '감염주술' 또는 '접촉주술'이라고 한다.

주술기자는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기자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유사의 원리나 접촉의 원리 역시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지닌다.

주술기자는 특정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방법을 취하여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한 물건은 대개 남성을 상징하거나 생산을 상징하는 주술적인 물건을 말한다. 가령 아이를 갖지 못한 부인이 아기 낳은 집 대문에 걸어놓은 금줄을 몰래 훔쳐와 자기 집에 모셔두면 아이를 갖는다고 한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의 속옷을 가져다가 입거나,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 낳은 집의 배내옷을 얻어 입히면, 그 기운을 받아 아이를 가지거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의 진 자리옷을 가져다 입는다든가,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의 생리대를 훔쳐다 사용하는 것 등은 접촉주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부녀자들이 밤에 몰래 남근석에 음부를 비벼대며 기도하거나 또는 여근석에 돌을 돌리면서 비벼 돌을 붙이는, 모의 성행위는 모방주술이자 접촉주술의 기자의례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부적, 특히 성性과 관련된 부적을 지니거나 은이나 쇠, 나무로 만든 도끼를 속옷 끈에 달고 고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한다. 특히 도끼나 고추는 성기를 상징하는데, 이는 굳이 말하자면 모방주술이지만 접촉주술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도끼가 성기와 관련됨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원효불기元曉不羈 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원효가 어느 날 상례를 벗어난 행동을 하며 거리에서 "그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려는가. 나는 하늘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며 노래를 부르니, 아무도 그 노래의 뜻을 알지 못했으나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스님은 필경 귀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賢人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후 요석궁瑤石宮에 있는 과부 공주와 인연을 맺어 설총을 낳았다.

여기서 자루는 남자의 성기, '자루 없는 도끼'는 과부를 뜻한다. 그런데 도끼 자체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작두의 날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쇠를 가지고 조그맣게 도끼를 만들어 아들을 원하는 여자가 몸에 지니거나 깔고 자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도 있다. 더 큰 효험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성姓을 가진 집에 가서 여물을 써는 숫쇠를 훔쳐다가 작은 도끼를 만들어 요 밑에 깔고 잔다. 이 때 아이를 원하는 부인이 모르게 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 이밖에도 아들을 잘 낳는 집의 작두에서 쇠를 하나 빼 오는 습속도 있다. 그런데 이는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이 몰래 해 주어야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작두의 날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쇠를 베개 속에 넣는 방법도 있다. 특히 도끼 모양의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남자의 양기陽氣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고추 모양의 장신구를 이불 네 귀퉁이에 달아두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있다. 친정어머니가 준 은장도를 치마 끝에 달고 다니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문턱 밑에 석 달간 묻어 두었다가 꺼내어 허리에 차고 다니는 방법도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임신할 때까지 옷 속에 구슬을 간직하기도 한다. 남편이 아들 삼형제를 둔 집의 수저를 훔쳐다가 부인의 베개 밑에 몰래 감추어 두는 방법도 있다. 붉은 고추나 알밤 또는 은행을 주머니에 넣어 치마 속에 차고 다니거나 남편 베개 속에 몰래 숨겨두며 호랑이 발톱이나 수탉의 생식기를 지니고 다니기도 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이 아들을 많이 낳은 여성에게서 '태몽'을 사오기도 한다. 또 아들을 갖고자 할 때 아들이 많은 집에 가서 몰래 바가지를 훔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한 후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의 백일떡을, 훔쳐온 바가지에 담아 주인 모르게 살짝 되돌려 준다. 때로는 밤 같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를 심기도 한다. 다산의 열매는 곧 생산, 아이의 임신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아이를 갖기 위해 열매가 많이 나는 식물을 이

용한 사례가 있다.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던 강원도 양구 고대리의 한 가정에서는 밤나무 천 그루를 심는 덕행을 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여력이 닿는 대로 밤나무를 심었더니 아들을 보게 되었다.

강원도 고성 문암리의 여성황당에 봉안된 목근木根은 수태를 못 하는 여성이 아이를 갖는 데 효험이 있다고 여겨졌다. 문암리에서는 백도 앞 해안에 여성의 성기를 닮은 구멍 난 기암괴석을 여성황당으로 모시고 있다. 매년 정월 초사흘에 마을의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여성황에게 한복 한 벌과 버선을 바치고 발그스름한 색이 나는 오리나무나 향나무로 깎은 목근木根에 천과 실을 묶어 바위에 끼우는 봉안을 한다. 여성황당에 끼운 목근을 안고 자면 수태를 못 하는 부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성황당에 봉안된 목근이 많이 사라져 한동안 성황당 근처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목근을 안고 자는 것은 곧 남녀교합을 상징하므로 모방주술이자 접촉주술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곡성 오산면 봉두리 부들마을의 한 제보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친정마을에서 작두의 고달이를 훔쳐와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한다. 작두의 고달이는 작두가 위 아래로 움직이며 작두질을 할 수 있게 하는 고리같은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작두질을 할 수 없다. 고달이를 훔쳐 올 때에는 남들이 모르게 해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주술기자는 기자의례의 한 방법으로 주술성을 강하게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치성기자라 할지라도 주술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술기자는 상대적으로 주술성이 한층 두드러진다. 주술기자는 기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면서 상징성을 나타내는 기자의례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부여의 민간신앙(이필영, 부여문화원, 2001), 증보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97),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 유형(이필영, 샤머니즘연구3, 한국샤머니즘학회, 2001),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황금가지1·2(J. Frazer, 박규태 역, 을유문화사, 2005).

필자 김명자(金明子)

주육례
周六禮

정의 주대周代에 정립된 혼인의 여섯 가지 의식으로,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절차.

역사 육례六禮의 의식은 중국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서 비롯되어 주대周代 이후 행해지던 것이었으나, 송대宋代에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주자朱子가 지은 『가례家禮』에서 육례가 의혼議昏·납채·납폐納幣·친영親迎의 네 가지 절차로 축약된 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큰 줄거리에서는 변동이 없다. 동암東巖 유장원柳長源(1724~1796)이 쓴 『상변통고常變通攷』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육례가 있었는데 『가례』에서 문명, 납길, 청기의 절차를 생략하고 단지 납채, 납폐, 친영의 절차만 사용하여 간략하게 줄였다. 이제 문명을 납채의 절차에 넣고, 납길과 청기는 납폐 절차에 함께 넣어 육례의 조목을 갖추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의례』「사혼례」의 납채 절차는 『가례』의 의혼 과정과 납채 과정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으며, 『의례』의 문명·납길·청기는 『가례』에서 간략히 의미만 언급되고 있다. 반면, 『의례』의 납징은 『가례』의 납폐에 해당되며 친영은 일치된다. 이로 보아 『가례』의 네 가지 절차는 육례와 똑같지 않지만, 육례의 절차는 대체로 계승되었다고 하겠다. 이로 인해 후대에도 혼인 절차를 말할 때는 그 본래의 뜻을 살려 육례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내용 납채는 『의례』에 제시된 육례의 첫 번째 절차이다. 신랑 집에서 중매인을 신부 집으로 보내 혼인에 대한 의사를 밝힌 다음에 신부 집에서 혼인 의사를 받아들이면, 신랑 집에서는 예물로 기러기를 준비해 납채의 예를 행한다. 납채의 '채采'는 채택의 뜻이므로 납채란 채택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문명은 두 번째 절차로, 신랑 집에서 보낸 빈賓이 예물인 기러기를 들고서서 신부 이름을 청하여 묻는 것이다. 납길은 세 번째

절차로, 앞서 알아온 신부 이름을 가지고 혼인의 길흉을 점쳐서 길함을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 집에 알리고 기러기를 예물로 보내는 것이다. 납징은 네 번째 절차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납징의 '징徵'은 이루어짐[成]을 뜻한다. 납길을 통해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확정된 셈이므로 납징은 그 표시로 현훈속백玄纁束帛과 녹비鹿皮 한 쌍의 폐백을 신부 집으로 보낸다. 청기는 다섯 번째 절차로, 신랑 집에서 기러기를 예물로 준비하여 신부 집에 혼인 날짜가 언제가 좋을지 물어본 후 신부 집의 주혼자가 겸손히 혼인 날짜의 결정을 사양하면 신랑 집에서 점을 친 날짜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날짜를 청하다'는 의미의 청기라 일컫는다. 친영은 여섯 번째 절차로, 신랑이 직접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예식이다. 『의례』에 기록된 친영은 신랑이 신부 집에서 전안奠雁을 한 뒤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공뢰共牢와 합근合巹의 의식을 치르고, 다음 날 신부가 시부모를 뵙는 예를 행하는 것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의례』와 『가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풍습을 참작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가례작의嘉禮酌儀』를 저술하였다. 『가례작의』에도 육례의 절차인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의 절차가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기술된 납채와 문명은 사자使者가 구두口頭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이 서신으로 신랑과 신부의 생년월일을 적은 단자單子를 보내고 받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납길과 청기는 모두 서신과 답서를 보내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납징은 혼례 하루 전에 행한다. 한편 당시 풍속은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경성京城의 귀가貴家에서는 하루 사이에 신랑은 전안을 하고 신부도 시부모를 뵙고 예물을 드렸는데, 이를 '당일신부當日新婦'라 부른다고 하였다. 다산은 이 역시 친영의 일환이지만, 합근의 예를 신부 집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약간 바로잡는다면 훌륭한 고례古禮가 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주육례는 혼례와 관련된 고례의 원형을 연구하는 데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자료이다. 아울러 혼례를 통한 윤리와 질서의 확립이라는 의례 혹은 예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주육례를 통해 조명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嘉禮酌儀, 常變通攷, 儀禮,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허인욱, 돌베개, 2012), 한국민족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필자 최배영(崔培英)

주자사례
朱子四禮

정의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제시된 혼례의 네 가지 의식으로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절차.

역사 『가례』가 저술된 시대인 송대宋代는 귀족사회가 붕괴된 후 사대부 중심의 관료사회 구축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국가의 정책에 힘입어 민생을 중시하는 흐름이 있었고, 지식계층은 관직에 연연하기보다 사회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기풍이 강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학술에 투영되어 예제禮制를 확충하고 인륜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례古禮는 고증하기 어렵고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예禮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시의성을 살린 새로운 예제가 요청되었다. 이에 주자朱子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윤리사상을 기저로 예제의 기틀을 잡아나갔고, 여러 경전과 학자들의 예설을 참고하여 『가례』를 저술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가례』는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여 이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조선시대 신진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가례』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관혼상제는 인륜을 두텁게 함은 물론 풍속을 옳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였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학자들 사이에 『가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전개되면서 조선사회의 실정에 맞는 예제로서 시의를 도모하는 예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예서들의 구성 내용 가운데 주자사례는 혼례의 네 가지 의식절차를 규정하는 혼례의 전거가 되었다.

내용 주자사례의 첫 번째 절차는 의혼이다. 남자의 나

이 16~30세, 여자의 나이 14~20세가 되면 중매인을 통해 혼인을 의논한다. 이때 혼인당사자와 주혼자는 기년朞年 이상의 상喪이 없어야 혼인을 할 수 있다. 의혼을 통하여 신부 집의 허락을 기다린 후 혼인하기로 결정이 되면 납채를 행한다.

두 번째 절차인 납채는 채택하는 예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언정言定'이라고도 한다. 신랑 집 주혼자는 서신을 써서 사당에 고한 뒤 사자使者를 통해 신부 집으로 이것을 보낸다. 이를 받은 신부 집의 주혼자는 사당에 아뢴 후 답신을 사자에게 주고 그를 대접한다. 조선 후기의 혼례 풍습을 반영하여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저술한 도암陶菴 이재李縡(1680~1746)는 납채 때 서신을 함에 넣어 보자기로 싸서 가져간다고 기록하였다.

세 번째 절차는 납폐이다. 납폐를 위해 신랑 집에서는 서신과 폐백을 갖추어 사자를 신부 집으로 보낸다.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인 납폐의 폐백은 색이 있는 비단을 사용하고 빈부에 따라 하되 적어도 두 끝은 되어야 하고, 많아도 열 끝은 넘지 않도록 한다. 신부 집에서는 서신과 폐백을 받은 후 답신을 주고 손님을 대접한다. 『사례편람』에는 납폐 때 함을 두 개 마련하여 하나에는 서신을, 다른 하나에는 폐백을 담아 각각 보자기로 싸서 성복盛服을 한 담폐자擔幣者가 가지고 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네 번째 절차는 친영으로 하루 전 신부 집에서는 사람을 시켜 신랑이 머물 방을 정돈한다. 이튿날 신랑 집에서는 예식을 치를 실室에 자리를 마련하고, 신부 집에서는 대문 밖에 장막을 설치한다. 초저녁에 신랑이 성복盛服을 하면 신랑 집 주혼자는 사당에 아뢴 후 아들을 초례醮禮하고 신부를 맞이해 앞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갈 것을 이른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 집을 향해 간다. 신부 집에서도 주혼자가 딸을 초례한 뒤 앞으로의 가정생활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한다. 신부 집의 주혼자가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은 들어가 전안奠雁을 행한다. 그런 뒤 신부를 인도하여 신랑 집으로 향한다. 집에 이르면 신랑과 신부는 교배交拜와 합근合巹의 예를 행한다. 다음날 신부는 시부모를 뵙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묘현廟見을 행한다. 그 이튿날 신랑은 신부 부모를 찾아 뵙는다.

특징 및 의의 주자사례는 예의 본질로 애경愛敬을 행함과 동시에 시의에 맞는 혼례의 의식절차들을 제시한 특징을 지닌다. 이는 주자학을 사상적 지주로 삼았던 조선시대 예서들에 영향을 주어 가정 생활윤리의 견지에서 혼례를 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근거가 되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가례서를 통해 본 혼례관 연구(최배영,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필자 최배영(崔培英)

준
餕

정의 제사의 참여자들이 조상에게 올리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절차.

내용 '준餕'은 먹다 남긴 밥을 뜻하는 말로, 제사를 지낸 후 신에게 올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을 일컫는다. 이때 '준'은 단순히 '신이 먹다 남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축복이 내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신이 제물을 흠향하면 제물로 차린 음식이 성화聖化된다고 믿었으므로, '준'은 신의 축복을 나누는 행위가 된다. '수조受胙'를 통해 주인이 신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제사에 참가한 참례자들은 '준'을 통해 신의 복을 나누어 받는다. 이때 참례자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신의 복을 함께 받기도 한다.



준 | 경북 안동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제사가 끝난 후 철상하면 주인이 제물을 나누어 합盒에 담고 술도 동봉하여 하인을 시켜 편지와 함께 친구나 가까운 이웃에게 보낸다. 그런 뒤 자리를 펴서 남녀와 항렬의 고하를 구분하여 동쪽을 상석으로 하여 앉으면, 집사자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잔대를 들고 선다. 술을 받는 사람은 홀을 꽂은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주전자를 받아 술을 따른 다음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받는다. 축관이 "제사가 이미 끝나 조고祖考께서 기쁘게 흠향하셨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모친某親은 오복을 갖추어 응하셔서 일가를 보전하고 집안을 편안하게 하소서."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참여자 모두에게 두루 술을 따르고 식사를 시작한다. 『논어論語』「향당鄕黨」에서는 "이날의 음식은 미천한 자에게도 고루 나누어 그날 모두 없앤다. 고기는 3일이 지나면 부패하여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 이는 귀신이 남긴 것[鬼神之餘]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일제忌日祭에서는 준을 행하지 않는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따르면 "사시제四時祭에는 수조에 해당하는 하사暇辭와 준을 행하지만 기일제에서는 하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준 역시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기일제는 상중喪中과 같은 날로 여겨 본디 삼가며 근신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조와 준을 함께 일러 '음복례'라고 하여 기일제의 중요한 절차로 여기고 있다. 이는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조상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조상의 덕을 이어받겠다는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음복을 통해 조상의 생전 모습과 덕을 기리고,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준'은 신이 남긴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의미를 지닌다. 상중喪中의 일종으로 여기는 기일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규범이지만, 오늘날에는 널리 행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유교 제례의 구조와 의미(도민재, 동양철학연구42, 동양철학연구회, 2005),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김미영(金美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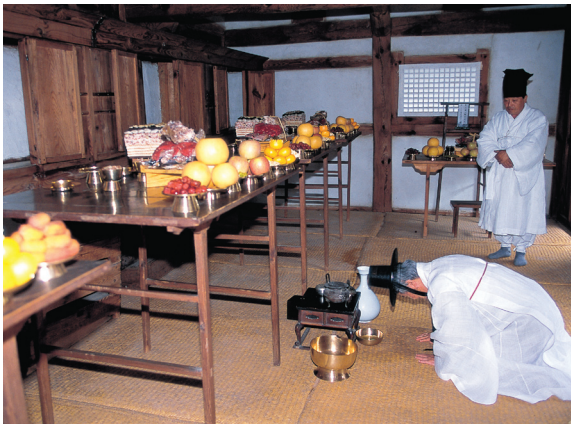
중구 차례
重九茶禮

정의 음력 9월 9일에 조상들에게 지내는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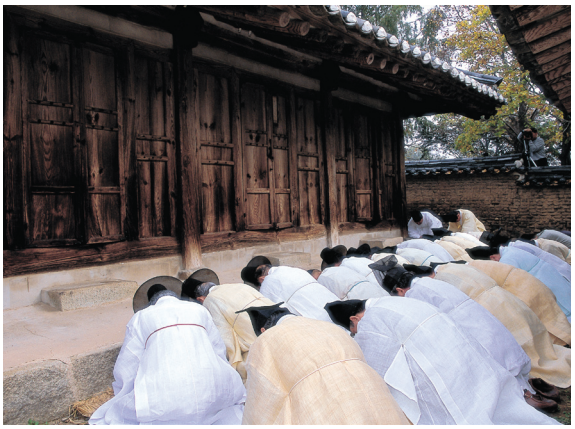
역사 중구重九는 9가 겹친 것을 뜻하며, 9가 양수陽數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쳤다고 하여 '중양重陽'이라고도 한다.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9를 양수의 극이라고 하여 한대漢代 이래로 이날을 큰 명절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에는 중구일에 임금과 신하들이 안압지의 임해전臨海殿이나 월상루月上樓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시가를 즐긴 듯하다. 고려시대에는 나라에서 중구일마다 공식적인 행사로서 잔치를 벌였다. 이 축하연에는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송나라·탐라耽羅·흑수黑水의 손님들까지 참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봄(3월 3일)과 가을(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노인잔치를 크게 베풀어 경로사상을 드높였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다.

내용 9월 9일은 양수가 겹치는 날이므로 길일로 인식되었다. 민간에서는 삼짇날 날아온 제비가 이날 다시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옛날에는 노란 국화 꽃잎으로 술을 담그고 떡을 빚어 먹었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중구일에 조상을 찾아 성묘하고 시제를 지내기도 한다. 특히 이날은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거나, 횡사한 조상들을 위해 차례를 지내는 집이 많다. 또한, 지역에 따라 중구일에 '올벼심리(일 년 동안 농사를 지은 새 곡식을 먹기 전에 조상에게 먼저 대접하는 제의)'를 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에서는 이날을 중양절이라고 하며, 많은 집에서 '구일제' 또는 '구일차례'를 지낸다. 구일제는 5대조 이상의 산소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경상도 일대에서도 중구일에 사망 일자가 확실하지 않은 조상들에게 '구일차례'를 지낸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대에서도 이날을 '귀일'이라고 부르고, 생사불명이 된 조상이나 자손이 없는 조상들을 위해 '귀일제'를 지낸다. 충청도에서도 중구일에 '구일차례'라고 하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집이 많다.









중구 차례 | 경북 안동 하회마을 | 국립민속박물관

또, 추석에도 나락이 익지 않아 올벼심리를 하지 못한 집에서는 이날 올벼심리를 하며, 추석에 올벼심리를 했어도 중구일을 명절로 여겨, 따로 음식을 장만하여 선영에 상을 차리기도 한다. 경상도 일대와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에 걸쳐 중구에 올벼심리를 하는 예가 많이 보인다. 전남 곡성에서는 중구일에 하는 올벼심리를 '귀일차례'라고 부르며, 이때는 이미 추수가 끝난 상태라 오히려 추석 차례보다 더 성대히 치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중구일은 중양절이라고 하여, 예로부터 설, 추석과 더불어 큰 명절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중구일에는 조상에게 차례 지내기, 국화주 담그기, 산에 올라가는 등고登高 같은 풍속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중구일을 명절로 보는 생각은 거의 없어져, 과거와 같이 다양한 풍습을 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집안에 따라 이날 시제를 모시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구일이 명절이라는 의식은 약화됐지만, 길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참고문헌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한미옥(韓美玉)

중매인
仲媒人

정의 신랑·신부 양가兩家 사이에서 혼인婚姻을 성사시키는 사람. 즉, 혼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배우자를 결정하는 자유혼(연애혼)이 아닌, 중매혼仲媒婚에서 양가 부모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사람.

내용 양가의 혼인이 성사되기까지의 모든 중매 과정을 '중매한다', '매혼媒婚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중매인'이라고 한다. 보통 중매인을 '중매장(쟁)이', '중매꾼', '중매자', '중파仲婆', '매쟁이'(전라남도 강진), '새악시새'(제주) 등으로도 부르는데, 여

기서 중매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중신애(아)비', '중신잽(잡)이'라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중신애미', '중신할미', '매파媒婆'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중매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매혼은 한국 전통사회의 지배적인 혼인 방식으로, 고려시대 조혼早婚 풍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조혼 풍속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고려 말기에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원나라가 '공녀정책貢女政策'을 시행하자 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10세 전후가 되면 혼인을 시키고 관청에 신고하는 풍속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 말엽 이전까지 성행하였던 자유혼은 점차 사라지고 중매인에 의해 이루어지던 조혼 풍속이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념인 '가계 계승'과 '남녀 간의 엄격한 사회적 격리',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해방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 어린 남녀 간의 혼인은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부모 의사에 의해 결정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혼기婚期에 이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중매인을 놓았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혼례 중 첫 번째 절차인 의혼議婚을 할 때는 반드시 중매인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매인 중에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흔했으니, 이들을 '매파', 또는 '중파'라 불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매인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두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친척이나 지인知人이 맡았다. 이러한 중매인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여자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서는 여자가 중매하면 혼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여자 중매를 피하고 남자 중매를 원했다고 한다.

중매인은 두 집안을 왕래하면서 신랑 또는 신부 될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양가의 부모를 설득하였다. 이를 '간선揀選'이라고 한다. 간선이란 양가의 문벌, 가풍, 재산, 기타 집안 사정을 비롯하여 배우자의 인물, 행동, 용모, 재능, 성정性情 등을 파악하여 양가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왕가에서는 간택揀擇한다고 한다. 한편, 중매는 원래 양쪽 집안의 형편을 고려하지만, 중매 그 자체가 혼인 성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간혹 약간의 과장이 있게 마련이다. 중매인이 가까운 친척일 경우에는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 늘 집안을 출입하는 전문 중매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한쪽의 부탁을 받기 때문에 과장하여 중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 중매인이 중매를 시작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과객過客으로 가장假裝시켜 상대방의 품행과 집안 사정을 수소문하기도 하였다.

중매인의 노력으로 혼사가 결정되면 대개 신랑 집에서는 중매인에게 약간의 보답을 하였다. 우리 속담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말이 있듯이 중매인에 대한 보답은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중매인에 대한 보답으로 대개 버선이나 옷 한 벌 정도를 주었으며, 곡물이 귀한 제주에서는 쌀 한 말을 사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흡족한 며느릿감을 중매하였을 경우에는 약간의 금전과 함께 두고두고 그 집안의 식객食客으로 왕래함은 물론, 오갈 때마다 노잣돈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중매인에게 양복 한 벌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매인에 의한 이러한 중매혼은 자유혼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개항 이후 서구의 남녀평등 사상과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일부 지식층을 중심으로 자유혼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특히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이러한 자유혼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중매인에 의한 중매혼은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에서 주로 행해졌던 중매인에 의한 중매혼은 혼인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양가 집안을 잘 아는 중매인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지는 집안 간의 혼인 형태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는 자유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혼인 당사자들이 연애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더라도 부모에게 소개하여 동의를 얻거나 반대로 부모가 중매인을 통해 자녀의 배우자를 물색하여 자녀에게 소개한 후 교제할 시간을 주어 서로를 알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혼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중매혼도 자유혼도 아닌 이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한 '절충혼'의 혼인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결혼과 가족(최신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8), 한국 가족의 사적 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 가족제도 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한국민속대관1-사회구조·관혼상제(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학연사, 1983), 한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관호(李官浩)



중매혼
仲媒婚

정의 혼인당사자보다는 부모나 가문의 의사에 의해 배우자가 선택되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

내용 혼례는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중심으로 한 구식혼례와 일제강점기 이후 유입된 신식혼례로 나눌 수 있다. 구식혼례에서는 중매로 의혼議婚이 시작되고 중매인은 혼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양가를 오가며 의견을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매인은 지역에 따라 중매쟁이, 중신아비, 중파仲婆 또는 매파媒婆 등으로 불렸는데 두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知人이 주로 담당하였다.

집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절, 중매인 없이 혼기가 찬 남녀가 혼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1930년대까지 농촌에서 중매로 혼인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첫날밤을 치렀다. 중매인에 의해 혼담이 오가고 혼사가 거의 결정될 무렵 양가 부모가 상대편 마을에 가서 혼인당사자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 정도였다.

중매혼에서는 혼인당사자 간의 성격이나 인품이 맞는지보다는 두 집안의 문벌이나 가풍이 맞는지, 경제적 사정이나 그 밖의 가정 사정이 비슷한지가 더 중요했다. 이런 것이 맞고 혼인당사자 간의 궁합이 맞아야 비로소 혼인이 결정되었다.

한국사회에서 혼인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가계 계승이 주된 목적이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이것은 변함이 없었다. 오로지 혼인은 집안을 위한 것이었지 혼인당사자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중매혼은 조선시대 이래 전통사회의 전형적인 혼인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1920년대 초 '신여성新女性'이라고 불리는 지식인 계층에 의해 자유연애혼自由戀愛婚이 보급되어 확산되고, 혼인이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 아닌 두 남녀의 결합으로 바뀌어 가면서 배우자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혼인을 해야 했던 중매혼은 점차 연애혼에 그 자리를 내줘야 했다. 현대사회에서는 중매인의 역할도 이전의 그것과는 달리 혼인당사자를 서로 소개해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중매혼을 하더라도 혼인의 결정권이 더 이상 집안이나 부모에게 있지 않고 혼인당사자에게로 옮겨온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혼인의 의미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에서 개인 대 개인의 결합으로 바뀌면서 중매혼의 의미나 중매인의 역할 또한 혼인당사자에게로 맞춰지고 있다.

참고문헌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이배용,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현대사연구학회, 1999),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김경일, 푸른역사, 2012),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필자 박동철(朴東喆)



중상
重喪

정의 삼년상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해서 상喪을 당하거나, 특정한 날에 장사葬事를 지내면 상액喪厄이 겹쳐서 든다는 말. 또는 삼년상의 무거운 상이라는 뜻.

역사 중상이란 용어는 이미 『가례家禮』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고 『조선왕조실록』이나 『가례언해家禮諺解』, 『사의士儀』 등에 보인다. 이들 문헌에서는 주로 상喪이 겹쳐서 들었을 때 무거운 상복喪服과 가벼운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가례언해』「상례」 상복 조에 따르면 중상이란 대공大功 이상의 무거운 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교식 상례에서는 무거운 상의 의미로 중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내용상 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상이 겹친다는 의미로도 함께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 유교식 상례와는 달리 중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장사를 치르는 날이 '중상일重喪日'이라는 것, 즉 상喪이 거듭[重] 생길 일진日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무거운 상이라는 개념보다는 거듭 초상날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다시 말해, 생기복덕生氣福德에 따라 상喪이 연달아 일어날 일진이 있는 날을 중상일이라고 한 것이다. 중상일과 함께 중일重日과 복일復日도 역시 꺼렸다. 중일과 복일은 무엇이든지 거듭된다는 의미가 있어, 이날 장사를 지내면 '줄초상 난다'고 하여 기피했다. 그러나 중일과 복일에는 흉사를 하면 더욱 흉하고, 길사를 하면 더욱 길하다는 뜻이 있어,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중상을 피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고 귀하게 해주는 길기吉氣인 정록正祿의 길함이 장사라는 흉한 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갑록甲祿은 인寅에 있기 때문에, 인월寅月인 정월正月에는 갑일이 중상일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상의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월별 중상일과 복일, 중일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단, 중일은 월별 구분 없이 사일巳日과 해일亥日이 해당된다.

구분	1월(寅)	2월(卯)	3월(辰)	4월(巳)	5월(午)	6월(未)
중상일	甲	乙	己	丙	丁	己
복일	庚	辛	戊	壬	癸	戊
중일	巳亥	巳亥	巳亥	巳亥	巳亥	巳亥

구분	7월(申)	8월(酉)	9월(戌)	10월(亥)	11월(子)	12월(丑)
중상일	庚	辛	己	壬	癸	己
복일	甲	乙	戊	丙	丁	戊
중일	巳亥	巳亥	巳亥	巳亥	巳亥	巳亥

중상의 상액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쓴다. 첫 번째는 출관出棺할 때 영구靈柩로 바가지를 깨 소리가 크게 나도록 하여 잡귀와 함께 중상의 액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이를 '중상의 양밥'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출관할 때 방의 네 모서리에 영구를 밀어 넣으면서 "중상이요!"라고 세 번씩 외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중상의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부적을 넣는 방법도 있다. 흰 종이에 월별로 정해진 사자부四字符를 붉은색 글씨로 두 장 써서 한 장은 시신 허리쯤 되는 위치의 광중壙中 바닥에 놓는다. 다른 한 장은 시신의 가슴 우측 부위에 얹는다. 월별 부적의 글귀로 1월·3월·6월·9월·12월은 육경천형六庚天刑, 2월은 육신천연六辛天延, 4월은 육임천로六壬天牢, 5월은 육계천옥六癸天獄, 7월은 육갑천복六甲天福, 8월은 육을천덕六乙天德, 10월은 육병천양六丙天陽, 11월은 육정천음六丁天陰이라고 쓴다. 일설에 월정사 조실 탄허呑虛(1913~1983) 스님이 만들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중상의 액을 피하기 위해 깬 바가지 | 충남 논산 | 1992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중상일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조합에 따라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이 생긴다는 생기복덕론生氣福德論에 근거한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장삿날이 늦춰지거나 빨라지는 등의 일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크게 가리지 않는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근로 주기가 달라져 휴일이 길일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널리 보편화한 삼일장三日葬도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諺解, 四禮便覽, 士儀, 喪禮備要,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증보사례편람
增補四禮便覽

정의 후기에 도암 이재李縡(1680~1776)가 편찬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1900년에 황필수黃泌秀가 교정하고

증보하여 발간한 책.

내용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은 1844년(헌종 10)에 간행된 이재의 『사례편람』을 1900년(광무 4)에 황필수가 증보한 예서이다.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사례편람』이 간행된 이후 목판이 많이 마멸되어 지송욱池松旭의 부탁에 따라 『사례편람』의 본문을 교정하고, 당시 실정에 맞게 추가할 사항들을 증보하였다고 한다. 책의 체제는 『사례편람』의 체제를 그대로 준용하여 8권 4책을 유지하였다. 권1에는 관례와 계례, 권2에는 혼례, 권3에서 권7에는 상례, 권8에는 제례가 수록되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통례, 각종 고사 및 축사의 서식書式, 도식圖式 등을 보유補遺로 추가하였다. 내용 가운데 황필수가 증보한 부분은 '신증新增'이라는 말을 문장 앞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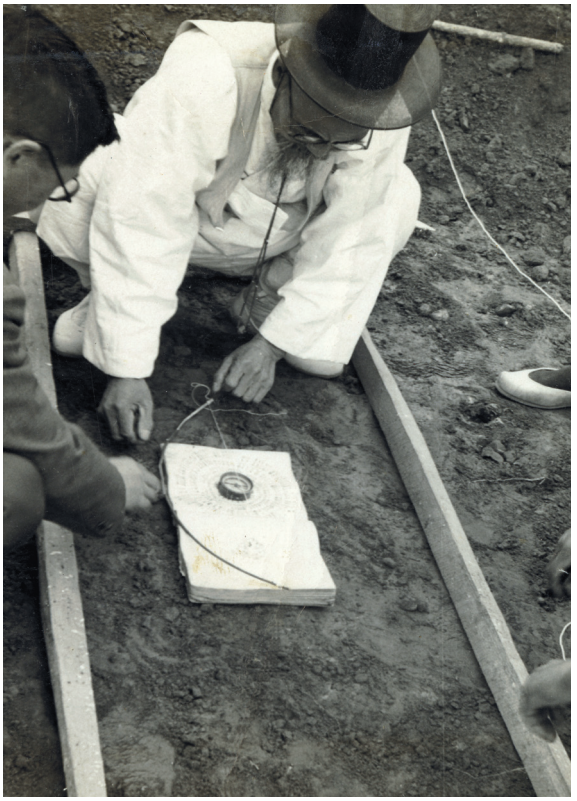
저자 황필수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에 활동한 의원이자 유학자로서, 이 책 외에도 지송욱의 부탁으로 『상제유초喪祭類抄』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1900년 무렵 지송욱은 책의 발행인으로서 사람들의 수요가 큰 전통 예제에 대한 책의 발간을 구상하였고, 그 적임자로 황필수에게 책의 편찬을 부탁한 것이다. 『증보사례편람』의 발간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례편람』은 간행된 지 6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그 목판이 마멸될 만큼 많은 양의 책이 간인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따라서 책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시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한 책의 발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지관 地官

정의 풍수風水의 길흉을 고려하여 장지나 택지를 정하는 전문적인 사람 또는 직업.

역사 지관은 풍수론에 기반하여 집터와 묘터를 정하거나 길흉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풍수지리가 오랫동안 성행하면서 고려시대부터 다수의 지관이 활동하였다. 나말여초의 도선道詵, 조선 초기의 무학無學, 조선 중기의 남사고南師古 등은 한국의 유명한 지관으로 민간설화에도 곧잘 등장하였다.



패철로 좌향을 보는 지관 | 충남 태안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고려와 조선왕조에서 지관은 과거를 통해 선발되었다. 서운관書雲觀 혹은 관상감觀象監이 선발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지관을 양성하였다. 제도권에서 활동한 지관으로는 고려시대에 지리생地理生, 지리정地理正, 지리박사地理博士, 지리사地理師 등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지리학교수地理學教授(종6품),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종9품) 등이 있었다.

현대에는 풍수사상의 쇠퇴, 도시화로 인한 화장의 일반화, 기독교 장례문화의 확산 등의 이유로 지관의 숫자가 급감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지관이 여전히 일부 사회지도층의 묘지를 선정해 주거나 풍수를 자문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도 드물게 동네 지관이 활동하고 있다.

내용 보통 지사地師·감여가堪輿家·풍수가·풍수사·풍수라고도 부르며, 풍수쟁이·작대기풍수는 지관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과거를 통해 선발·양성된 전문적인 관리를 지관地官이라고 하고, 민간에서 생업을 겸하면서 풍수를 보는 사람을 지사地師라고 구별했으나, 일반적으로는 지관이라 통칭하여 일컬었다.

고려시대에는 승려가 주로 지관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에 풍수가 성행하면서 승려, 유학자, 관료, 평민, 천민 등 다양한 계층 출신의 지관이 생겨났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자연마을에는 지관을 소재로 한, 많은 풍수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지관의 역할은 집터나 묘터를 풍수이론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고려왕조의 지관은 천도지遷都地, 이궁지離宮地, 사찰지, 왕릉지, 기우제터 등을 선정하는 역할을 했고, 『해동비록海東祕錄』 같은 풍수도참서風水圖讖書도 편찬하였다. 조선왕조의 지관은 궁궐, 왕릉, 태실胎室 등의 왕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방관아의 입지 선정에도 관여했다. 민간에서 활동한 동네 지관은 주로 장지를 선택해주고 매장 과정에서 의식절차를 주관하였다.

조선 후기의 몇몇 지관은 전국의 주요 명당을 답사하고 『유산기遊山記』 혹은 『명당록明堂錄』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지관은 터를 정하고 묘지의 좌향坐向을 결정하는 데에, 풍수이론서를 참고하고 풍수를 보는 도구인 나경羅經(패철佩鐵)도 활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지관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풍수문화가 성행하면서 생긴 전문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풍수의 사회적 유행으로 말미암아 관료, 유학자, 승려, 평민 등 다양한 계층의 출신들이 지관으로 활동하였다. 동네 지관은 주택이나 묘지를 잡아주고, 장례 과정에서 매장의식을 주관하는 일도 겸하였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관의 사회적 존재와 일생의례에서의 문화적 역할이 풍수와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 사회문화사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한국풍수사상사연구(이몽일, 일일사, 1991).

필자 최원석(崔元碩)

지방
紙榜

정의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기제사나 차례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

역사 사당을 짓고 신주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 『가례家禮』에는 지방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가례』 소주에 "형의 집에는 신주를 설치하지만, 동생은 신주를 세우지 못하니 다만 제사 지낼 때만 즉시 신위를 설치하되 지방紙榜으로 신위마다 표기하고 제사를 마치면 불사른다."고 하여 지방의 사용 사례가 보인다. 그리고 『가례』의 위패位牌에 대해서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운회韻會』를 인용하여 방榜으로 해석하였고, 『가례원류家禮源流』에서는 지방紙榜으로 해석하여 사당이 없으면 영정을 그려놓거나 글로 써서 위패를 세운다고 하였다.

고려 말부터 『가례』의 수용으로 영당을 대신해서 가묘를 세우고, 영정 대신에 신주를 모시도록 권장되었다. 하지만 1401년(태종 1) 12월에는 가묘 설립 및 신주 사용을 권장하면서, 외방으로 나가는 수령이 적장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현의 사당에서 지패紙牌를 써서 행



지방 쓰기 | 강원 속초 청호동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례行禮하도록 하였고, 1472년(성종 3)에는 성종이 사대부들의 집에서 사당을 세우지 않고 지방紙牓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예조로 하여금 각별히 검찰檢察하게 하였다. 또한, 윤회봉사 관행 등으로 일일이 신주를 받들고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때, 지방이나 지표紙標 등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성혼成渾(1535~1598)의 『우계선생집牛溪先生集』에 "우리나라 풍속은 오직 시제時祭만을 종자宗子가 행하고 그 나머지 기제忌祭와 시속의 명절名節에 지내는 묘제墓祭는 내외의 여러 자손이 돌아가며 행하였다. 기제 때에는 종자가 여러 자손과 함께 제사를 지낼 차례가 된 집에 가서 지방紙榜을 써 붙여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제사하였다."라고 하거나, 이이李珥(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묘제와 기제를 세속에서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니, 예가 아니다. 묘제는 돌아가면서 묘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히려 괜찮지만, 기제를 신주에 지내지 않고 지방에 지내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문건李文楗(1494~1567)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도 서울에서는 가묘에서 신주로 봉사하였지만, 유배지인 경북 성주에서는 집에서 지방을 써서 봉사하기도 하였다. 김종직金宗直(1431~1492)은 『점필재집佔畢齋集』에 수록된 『이존록彝尊錄』「선공제의先公祭儀」에서 후사가 없는 외조外祖에 대해 사당제가 끝난 후에 별도로 정침에 지전紙錢으로 신위를 표기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당이 사라짐에 따라 지방으로 신주를 대신하거나 요즘같이 사진으로 신주를 대신하여 조상에 대한 예를 보이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의례준칙儀禮準則』에도 신주와 지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신주를 보통 가주假主 또는 지방이라 칭하고 폭 2~3촌, 길이 6~7촌 되는 백지에 제신祭神의 칭호신위稱號神位를 묵서하며, 제사 때마다 이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배우자는 항상 합사合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종이쪽에 '조고주신위祖考主神位', '조비김씨신위祖妣金氏神位'라 쓰게 하였으며, 지방은 보통 독櫝에 넣어 내면에 붙이거나, 독이 없을 때에는 병풍 또는 토벽土壁에 붙여서 제사 지내게 하고, 또한 사진寫眞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관련 유물 가운데에는 지방을 붙일 수 있게 만든 족자 또는 병풍 형태의 사당도祠堂圖나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 지방틀 등이 전해져와 지방을 사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내용 사당이 없을 때 신주 대용으로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은 지방紙榜을 사용하였다. 『가례』의 소주에서는 "지방으로 신위마다 표기하고 제사를 마치면 불사른다."라고 하였는데,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이를 하나의 변례變禮로 여겼다. 그리고 졸곡 이후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부제祔祭의 경우에도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서 조부를 계승하는 종자와 따로 살면, 종자가 그를 위하여 조부에게 아뢰고,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제사 지내고, 제사를 마치면 치운다."라고 했는데, 『가례의절』에서는 패위牌位를 마련하면 제사를 마치고서 태운다고 했고, 『상례비요』에서는 허위를 설치할 때는 지방紙牓을 쓴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례유집家禮類輯』에서는 여묘살이로 반혼返魂하지 못하여 부제를 해야 할 때, 또는



지방 서식

종가가 멀리 있어서 종자가 사당에 고하고 상가에는 허위를 설치하여 부제를 지내야 할 때, 멀리서 상을 당하거나 출가한 딸이 기일 등에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재李縡(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부제조에는 제구諸具로 "지방을 쓸 종이는 후백지厚白紙로 하되, 크기는 적당하게 하고, 종이 중앙에 해서楷書로 가늘게 쓴다. 임시로 제사를 지낼 때 교의 위에 붙이고 신위마다 각기 쓴다. 지방식紙牓式에는 '현모고모관부군신위顯某考某官府君神位', '현모비모봉모씨신위顯某妣某封某氏神位'로 하는데, 조비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별도로 종이를 갖추어 각자 쓰며, 내상內喪일 경우 조고위祖考位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지방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지방에는 보통 신주 분면 격식과 같이 고인의 직위와 칭호를 쓰는데, 신주와 달리 신위神位라고 쓴다. 지방에는 고인과 제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 고조부모는 '고조고高祖考', '고조비高祖妣'라 하는데, 앞에 '현顯'자를 써서 '현고顯考', '현비顯妣', '현조고顯祖考', '현조비顯祖妣', '현증조고顯曾祖考', '현증조비顯曾祖妣'라고 쓴다. 남편은 '현벽顯辟'이라고 쓰며, 아내는 '현'을 쓰지 않고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형은 '현형顯兄', 형수는 '현형수顯兄嫂', 동생은 '망제亡弟' 또는 '고제故弟', 자식은 '망자亡子', 또는 '고자故子'라고 쓴다.

고인의 직위에 벼슬을 한 남자는 최종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서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등의 호칭을 쓴다. 벼슬이 없는 남자는 '학생學生'이라 쓰고, 부인은 '유인孺人'이라 쓴다. 고인의 칭호에 남자는 '부군府君'이라고 쓰며, 여자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을 쓴다. 또한, 지방은 신주와 같이 각각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를 함께 모실 때에는 '좌고우비左考右妣'의 원칙에 따라 종이 한 장에 오른쪽(동쪽)에는 어머니, 왼쪽(서쪽)에는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특징 및 의의 지방은 임시방편적인 신체神體였기 때문에 신주로 제의를 지낼 때와 절차를 달리하였다. 즉, 신주는 조상의 혼령이 깃들어 있는 신체로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신주 앞에서는 먼저 참신參神을 하지만, 지방은 강신降神을 한 이후에야 신이 깃든 것처럼 여기어 참신하고, 사신 후에는 불사른다. 하지만 종이로 신주 마냥 접어서 만들어 쓰기도 한다.



지방틀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家禮源流, 家禮輯覽, 擊蒙要訣, 默齋日記, 四禮便覽, 喪禮備要, 禮疑類輯, 牛溪先生集, 佔畢齋集,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필자 최순권(崔順權)

지방함
紙榜函

정의 종이로 만든 신주神主인 지방을 붙이는 나무 상자.

역사 반드시 사당을 짓고 신주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 『가례家禮』에는 지방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지방은 하나의 편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지방이 언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신주는 사당을 갖춘 양반계층에서만 중요시되었을 뿐, 일반 평민층에서는 지방으로 신주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방은 신주 대신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방함 역시 신주함의 형식을 빌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 신주神主(위패位牌)는 밤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평소에는 사당 또는 벽감壁龕에 모셔 둔다. 사당을 갖춘 경우에는 사당에 모셔진 신주(위패)를 모시고 나와서 제사를 받든다. 사당이 없는 경우에는 대청이나 방에 벽감을 설치하여 신주를 모셔두었다가 제사 때 제장祭場으로 모시고 나와서 제사를 받든다. 하지만 사당도 벽감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으므로 종이에 신위를 기재한 지방으로 신주를 대신한다. 이 지방을 붙여 두는 나무상자를 지방함이라고 한다.

지방은 위패를 모실 형편이 못 되는 경우에 종이에 신위를 써서 대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신주라 하지 않고 신이 앉으실 자리라 하여 '신위神位'라고 쓰며, 제사가 끝나면 태워서 없앤다. 이같이 지방은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차례나 기제사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이다. 보통 신주의 크기와 같이 창호지를 오려서 신주의 분면粉面(분을 바른 앞쪽)에 격식대로 적어 제사에 모셨다가, 제사가 끝나면 축문과 함께 태워 버린다.

특징 및 의의 위패를 대신하는 지방을 붙이는 나무상자이다. 위패를 담은 신주함에서 그 형태가 비롯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필자 권삼문(權三文)

지석
誌石

정의 망자亡者의 이름·본관本貫·생몰년生沒年·계보系譜·행적行績 등의 인적 사항과 무덤의 좌향坐向 등을 적은 판석板石이나 도판陶板을 말하는 것으로, 무덤에 묻어 두는 장례용구葬禮用具.

역사 지석은 중국에서 발생하여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 전래했다고 추정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최근까지도 지석을 만들어 묻는 풍속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지석은 일반적으로 정방형의 석판에 명銘과 망자의 인적 사항 등을 새겨 뚜껑을 덮은 다음 무덤의 석 자[尺] 앞이나 무덤 안에 넣는 것을 말한다. 애초 지석은 비석의 대용물이었다.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석곽이나 황사에 묘명墓銘을 새겼고, 전한시대前漢時代에는 앞선 묘명의 전통을 이어받은 관명棺銘과 청동기에 묘명을 새긴 정명鼎銘이 나타났다. 이후 독립된 판석에 망자의 벼슬과 이름만 새긴 지명誌銘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정형화된 형식의 운문체인 명문銘文과 망자의 가족 관계에 대한 자료도 묘지에 나타났다. 위진시대魏晉時代에는 지석의 형태가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망자의 일대기를 산문으로 적은 지문誌文을 사용하고, 두 개 판석이 개석蓋石과 저석底石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지석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 당시의 지석문화가 삼국시대에 전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후 유송시대劉宋時代에는 지석에 명문과 지문이 함께 새겨지기 시작하였고, 전형적인 정방형 지석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지석은 고구려의 동수冬壽 지석(357년), 모두루牟頭婁 지석(5세기 중엽)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의 매지권買地券(6세기 전반)도 지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밖에 7세기의 고구려 천남생泉男生 지석(679년), 백제 부여융扶餘隆 지석(682년), 8세기의 고구려 고자高慈 지석(700년), 천헌성泉獻誠 지석(701년), 천남산泉男産 지석(702년), 천비泉悲 지석(733년) 등이 중국에 남아 있다. 한편,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있는, 발해渤海의 제3대 왕인 문왕의 딸 정혜공주貞惠公主(738~777)의 비석도 지석으로 볼 수 있다. 이 비석은 대형 석실분 속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초기 지석으로 간주된다. 지석이 비석의 대용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고려시대의 지석은 일반적으로 가로가 긴 대형 장방형 판석에 글자를 새긴 형태이다. 조선시대가 되면 방형 판석에서 방형 도판으로 바뀌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다. 조선 전기만 해도 사대부층에서 지석을 만들어 묻었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중하층 사람들도 지석을 만들어서 묻었다. 사대부층의 지석은 행적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중하층 사람들의 지석은 기록 내용이 간단한 편이다. 이 밖에도 신분이 낮고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옹기, 벼루, 필통 등의 형태에 글자를 새겨 묻은 것과 주발의 유약을 갈아내고 붓으로 기록한 다음 지워지지 않게 재를 담아 묻은 것도 발견된다.

내용 지석은 망자의 삶을 기록하여 남기는 수단이다. 그리고 봉분이 유실될 경우 분묘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돌뿐만 아니라 도기·석기·옹기·자기·토기 등 단단하거나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면 지석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석의 재료는 반드시 돌이어야 한다는 중국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 대개 돌에 새긴 지석이 많았지만, 조선시대에는 지석의 재료가 다양해져 먹으로 글을 쓴 사발을 석함이나 나무 궤에 넣기도 했다. 지석의 형태는 정방형이 기본인 중국과 달리 평면형, 입체형도 있는데, 그 안에서 각양각색의 형태로 나뉜다.

지석은 내용의 구성 방식에 따라 표제문表題文만 있는 것, 표제문과 지문이 있는 것, 표제문과 지문·명문을 함께 적은 것으로 나뉜다. 표제문은 서문의 형태로 누구의 지석인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며, 지문은 망자의 일대기를 산문체로 쓴 것이고, 명문은 운문체로 망자의 공적과 인품 등을 찬양한 것이다. 지석에 실리는 문체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지석에 실린 문체에 따라 묘지명墓誌銘·묘지명병서墓誌銘幷序·묘지墓誌·묘명墓銘 등으로, 장례법에 따라 권조지權厝誌·속지續誌·귀부지歸祔誌·천부지遷祔誌 등으로 나뉜다. 후대로 갈수록 지석의 내용은 망자의 이름, 벼슬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형태가 많아졌다.

①묘지명은 지석에 지문과 명문이 함께 실려 있는 것으로, 지문은 산문체, 명문은 운문체이다. 지문체에는 사실을 기록한 정체正體와 논의論議를 덧붙인 변체變體가 있다. 지문체에는 삼언三言·사언四言·칠언七言·잡언雜言·산문체가 있다. ②묘지명병서는 지문과 명문뿐만 아니라 표제문인 서문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문만 있고 명문이 없는 것을 별체別體라 하는데, 서문·지문 또는 서문·명문의 형태이다. ③묘지는 지석에 실린 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혹 지석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분해야 한다. ④묘명은 명문銘文만 있는 것이나, 지誌라고 하고선 명銘만 있는 것, 명銘이라고 하고선 지誌만 있는 것, 명銘을 지誌 또는 지誌를 명銘이라고 표제를 부친 것 모두 별체이다. ⑤권조지는 시신을 가매장한 이후 그 사연을 적은 것이다. ⑥속지는 이미 지석을 만들었으나 나중에 보완하거나 변경할 내용이 있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이다. 대개 부부를 합장할 때나 개장할 때, 후손이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다. ⑦귀부지는 타향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시신을 옮겨와 장례를 치를 때 만드는 것이다. ⑧천부지는 장례를 치렀다가 시신을 옮길 경우 만드는 지석이다. 이 경우도 합장이나 개장할 때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개석蓋石에 새긴 개석문, 벽돌에 새긴 묘기墓記, 목판에 새긴 분판문墳版文, 불승의 지석인 탑명塔銘, 장지葬誌, 분기墳記, 분지墳誌, 광명壙銘, 곽명槨銘, 매명埋銘, 장명葬銘, 석지石誌, 묘석墓石, 석명石銘, 묘지墓志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지석은 망자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무덤에 묻어둔 것이다. 재료와 제작 방법, 내용의 구성 방식, 문체, 내용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명칭이 있다. 지석



신립 지석 | 1688 | 국립민속박물관



그릇형 지석 | 1850 | 국립민속박물관

의 내용 가운데에는 가족 또는 인척 관계가 자세한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 후 장례를 치른 시기나 지석의 제작 및 매장 시기 같은, 비석이나 행장 등의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서 주목된다. 내용의 구성 방식과 내용 및 문체는 국문학·한문학 연구에, 제작 방법과 재료 및 형태는 미술사(도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상장례 풍속과 혼인 관계, 친족 제도 등은 역사학·민속학 연구에 값진 자료이다.

참고문헌 발해묘지 양식의 형성배경과 영향(박재복, 동양고전연구34, 동양고전학회, 2009). 조선시대 묘지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연구(최호림, 고문화2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4), 조선시대 지석의 성격과 변천(배영동, 조선시대 지석의 조사연구, 온양민속박물관, 1992), 지석의 명칭과 종류에 대한 일고찰(장철수, 두산 김택규교수 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1989), 지석의 발생에 대한 일고찰(장철수, 의민 이두현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1989).

필자 배영동(裵永東)

지요
地褥

정의 대렴大殮할 때 칠성판七星板 위에 까는 요[褥].

역사 비단으로 겉감과 안감의 색을 달리하여 만들며 안에는 솜을 넣는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요'라고 표기하였고, 길이와 폭은 관 속에 놓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색증色繒을 이용해 만들며, 칠성판 위에 까는 것이라고 했다. 정문공正文公 김수근金洙根(1798~1854)과 충문공忠文公 김병학金炳學(1821~1879)의 장례 기록인 『신종록愼終錄』을 보면, 겉감은 자지공단紫芝貢緞, 안감은 남공단藍貢緞 지요[地褥]를 사용했다. 또한, 김정규金貞圭의 부인 한산韓山 이씨李氏(1865~1915)의 『신종록』에서는 겉감으로 홍자선수紅紫綫綉, 안감으로 남공단藍貢緞을 사용하여 지요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발행된 『조선봉재전서』에서는 '디요'라고 표기하였고, 자쥬[자주] 공능[貢綾]으로 만든다고 했다. 1942년 발행된 『사례의절四禮儀節』에는 '지요'라는 단어가 나온다. 2014년 현재 장례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지요는 '지금地衾'이나 '요'로 불리고 있고 삼베로 만든 것이다.



지요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조선시대 출토 유물 가운데 대표적인 지요로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의원군과 부인 안동 권씨의 유물을 들 수 있다.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1661~1722)과 안동 권씨(1664~1722)의 지요는 겉감과 안감으로 화려한 문단을 사용했고, 안에는 얇게 솜을 두었다. 의원군 이혁의 지요는 위쪽 폭과 아래쪽 폭 모두 60㎝, 길이 195㎝의 직사각형이다. 안동 권씨의 지요는 위쪽 폭 45㎝, 아래쪽 폭 37.5㎝, 길이 183㎝의 사다리꼴로 관의 형태이다. 색상은 바래서 알 수 없으나, 멱목이나 악수 같은 겉감은 검은색, 안감은 홍색으로 추정된다. 의원군의 4대손인 이연응李沇應(1818~1879)의 지요는 초綃로 만들었고, 너비 52㎝, 길이 202㎝이다. 2001년 출토복식 연구회에서 제시한 지요는 너비 36㎝, 길이 209㎝로 천금天衾과 같은 크기이며, 명주나 무명을 이용하여 겹으로 만든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지금의 상례喪禮와 조선시대의 상례를 비교하면, 소렴과 대렴의 절차가 간단해지면서 염습용구도 생략되거나 사용 순서가 변한 경우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요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의 기록에 의하면, 관 속에 염포殮布를 깔고 그 위에 지요를 깔며, 지요 위에 베개를 놓은 다음 시신을 모시고 그 위에 천금을 덮은 후 염포로 시신을 묶어준다. 현대에는 지요가 대렴금大殮衾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일생의례(경기도박물관, 2002),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정종수·이은주 외, 신유,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진기
陳器

정의 제기祭器를 정해진 자리에 진설陳設하는 것.

내용 제기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이 제기들은 진설하기 전, 미리 깨끗이 닦아서 불결함을 제거해야 한다. 수리해야 할 제기는 수리하고, 없는 제기는 만들거나 구입한다. 사정에 따라서는 친척이나 이웃에게 빌려 오기도 한다. 진기陳器는 보통 하루 전에 진설하며, 용도와 음식의 종류에 따라 진설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사시제四時祭에서는 제사 하루 전에 그릇을 진설한다. 향안을 당 가운데에 진설하고 향로와 향합을 그 위에 놓는다. 띠풀 묶음과 모래 두엄을 향안의 앞과 매 신위 앞의 땅 위에 놓는다. 술시렁을 동쪽 계단 위에 진설하고, 별도로 탁자를 그 동쪽에 놓고서 주전자 하나, 뇌주잔 하나, 쟁반 하나, 수조반受胙盤 하나, 비匕 하나(조육을 들어내는 데 사용함), 수건 하나(술병의 주둥이를 닦는 데 사용함), 다합茶合, 다선茶筅, 찻잔, 찻잔받침, 소금그릇(구운 간과 고기를 가미하는 데 사용함), 간장병을 그 위에 놓는다. 화로, 탕병, 향시香匙, 화저火箸를 서쪽 계단 위에 놓는다. 별도로 탁자를 그 서쪽에 놓고서 축판을 그 위에 진설한다. 세숫대야와 수건을 각각 두 개씩 동쪽 계단 아래의 동쪽과 서쪽에 진설한다. 그 서쪽의 것에는 대가臺架가 있다. 또한, 음식을 진설할 큰 상을 그 동쪽에 놓는다. 여기에서 향로와 향합은 각각 서쪽과 동쪽에 놓는다. 띠풀 묶음과 모래 두엄을 향안 앞 땅바닥에 놓는 것은 강신하고 뇌주하는 까닭이며, 신위마다 그 앞의 땅바닥에 놓는 것은 초헌 때 좨주[祭酒]하는 까닭이다.

초조제初祖祭에서는 과일접시 여섯 개, 쟁반 세 개(모혈반毛血盤·수심간폐반首心肝肺盤·숙육반熟肉盤), 대접 여섯 개(반우飯杅·대갱우大羹杅·형갱우鉶羹杅 각 두 개), 작은 쟁반 세 개(절간반切肝盤 한 개, 절육반切肉盤 두 개), 술잔·받침·숟가락·젓가락 각 두 개, 기름 쟁반 한 개, 술주전자와 뇌주의 쟁반과 잔 한 개, 수조반과 숟가락 한 개를 준비한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혹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편함을 따랐다. 신위는 부들자리에 짚자리를 씌운 것을 사용하는데, 모두 가장자리선이 있다. 혹 자주색 욕석褥席을 쓰기도 하는데, 모두 길이는 다섯 자, 너비는 두 자 반이다. 병풍은 침병枕屛의 제도와 같게 하여 자리의 3면을 둘러쌀 수 있어야 한다. 음식상은 널빤지로 면을 만드는데, 길이는 다섯 자, 너비는 석 자쯤이다. 네 둘레도 또한 판자로 하는데, 높이는 한 자 두 치이다. 두 치 아래에도 판자를 댄다. 면은 모두 검은 칠을 한다.

선조제先祖祭에는 채소와 과일을 담는 접시가 각 열두 개, 큰 쟁반이 여섯 개, 작은 쟁반이 여섯 개이다. 이 제기는 조고와 조비의 신위 앞에 각각 진설하며, 나머지는 초조제와 같다. 네제禰祭는 시제와 같으며, 기제는 네제와 같다.

묘제墓祭에는 진기 없이 음식을 진설한다. 『담헌서湛軒書』에서는 묘제의 제찬을 다음과 같이 갖추도록 하였다. 밥과 국 각 한 그릇, 떡과 면 각 한 그릇, 시과時果 다섯 그릇, 포脯와 식혜 각 한 그릇, 숙채熟菜 한 그릇, 침채沈菜 한 그릇, 청장淸醬 한 그릇, 어육魚肉의 탕湯 각 한 그릇, 삼색三色 구이[炙]를 합쳐 놓는 그릇 하나, 시저를 같이 놓는 그릇 하나 등이다. 두 위[兩位]에는 오직 국·밥·떡·면을 각각 진설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설合設한다.

특징 및 의의 제기는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물의 통칭이다. 이 기물들의 용도와 자리 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의미 또한 파악하고 난 다음 제사에 임하는 것이 도리이다.

참고문헌 家禮箚錄, 湛軒書, 石灘集,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진새례

정의 온 품삯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청년의 집에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는 마을잔치.

내용 음력으로 6~7월은 식물의 성장이 가장 왕성하며 일손이 바쁜 철이다. 농경의례로 보자면, 6월의 유두流頭, 7월의 칠석과 백중百中 등은 모두 성장의례가 치러지



들돌들기 | 전북 임실 덕치면 | 국립민속박물관

는 명절이다. 유두(음력 6월 15일)와 백중(음력 7월 15일)은 보름으로서 만월의 기운이 가득하며, 칠석은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말해주듯 음양의 화합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인생에 비유하면 가장 왕성한 청·장년기에 해당할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세시풍속이자 일생의례로도 볼 수 있는 진새례가 치러진다. 진새례는 매년 마을 단위로 치러진다. 나이를 정해둔 마을도 있지만, 나이 제한 없이 대개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아들을 둔 집에서 자기 아들이 온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 싶으면 마을 사람들과 협의하여 진새례를 치른다. 진새례는 주로 명절날 치르지만, 마을에 따라 다르다. 보통 유두·칠석·백중 중에서 하루를 골라서 진새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이러한 명절에 하지 않고, 부잣집을 골라 마지막 논매기를 하고 풍장놀이(만드리, 장원질)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모두 한여름에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대개 진새례를 할 때는, 해당하는 청년이 있는 집에서 술 한 말과 안주 등을 내놓는다. 마을에 여러 명의 해당자가 있으면 그만큼 술과 안주가 풍부해진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정자나무나 마을회관 등 일정한 곳에 모이면 진새례를 치를 후보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집에서 마련해준 술과 안주를 내놓는다. 흥이 나면 농악을 울리기도 하며, 또 마을에 따라서는 들돌놀이를 함께 하기도 한다. '들돌'이란 전부터 내려오는 일정한 크기의 큰 돌로, '들돌놀이'란 곧 마을의 정자나무 밑에 둔 들돌을 진새례를 치를 후보자들이 마을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들어 올리는 것이다. 들돌을 일정하게 들어 올려 통과하면 그때부터 온 품삯을 받게 된다.

이러한 들돌놀이와 함께 진새례는 일종의 성년의례의 성격을 가진다. 양반집에서는 관례를 치러서 성년식을 올리지만, 일반 농촌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인정하는 일종의 성년식인 진새례를 치름으로써 성년이 되는 것이다. 진새례에 술과 안주를 내놓기 때문에 '진세턱' 또는 '진새내기'라고도 부른다. 진새례를 마을에 따라서는 '진사례' 또는 '진사턱'이고도 한다. '진사'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과거 시험에서 소과小科에 급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대과 또는 문과 시험을 보아서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소과'라는, 일종의 예비고사를 통과하여야 하였는데, 바로 이 소과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불렀다. 농부들 사이에서도 진새례를 치른 사람은 본격적인 일터에 나가서 어른들로부터 일을 배우게 되며, 두레를 낼 경우는 한 사람의 몫을 차지하게 된다.

지역사례 진새례는 전라도와 경상도 등 남부지역에 주로 전승되는 풍속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경지가 넓어 예전부터 인구밀도가 높았으며, 또 논농사가 비교적 많아 남성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요구되었으므로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또 두레를 내거나 품앗이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 또는 교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일종의 성년식의 장치로서 전라도와 경상도 양도에서 이러한 풍속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지역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전라남도 여수의 경우이다. 다른 지역에서 진새례라고 부르는 농촌마을의 성년의례를, 여수에서는 '손두둠'이라고 부른다. 여수에서 '진새례'라 부르는 것은 형식은 유사하지만, 주체가 다르다. 마을에 세 살이 된 남자아이가 있는 집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내놓는데, 이를 '진새내기'라고 한다. 즉, 칠월칠석날 마을에서 대청소며 우물 청소를 하면서 풍악을 울리는데, 일을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면 세 살 된 남아가 있는 집에서 술과 음식을 내와 마을 사람들을 대접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부모에게 건강하게 키우라는 덕담을 건낸다. 10여 년 전부터는 남자아이만 아니라 여자아이도 진새내기를 한다. 또한, 출향민 중에서도 성의가 있는 사람은 칠석 때 마을을 찾아와 진새를 낸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풍흉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농촌사회에서 일손은 풍흉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요소이다. 좋은 일손은 그만큼 풍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집약적 노동력이 요구되는 논농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성년 남성의 일손이 가진 가치는 절대적이었다. 비교적 논농사가 많은 전라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진새례의 분포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논농사에 필수적인 남성 노동력의 집약화 및 극대화에 진새례가 일종의 문화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진새례의 자격 요건으로 들돌들기가 행해지기도 하는데, 이 역시 노동력과 관련된 의례적 놀이로 볼 수 있겠다. 즉, 양반가에서 성년의 례로서 관례를 치르고, 관례를 치를 즈음에 진사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농가에서도 한몫을 할 수 있는 성년의 자격이 있는지 그 힘을 시험하는 것이다. 양반가의 자제가 글공부를 통해 진사에 급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의 자제 역시 일과 힘의 능력을 검증받아 자격을 부여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참고문헌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나경수(羅景洙)

진설
陳設

정의 제구祭具와 제기祭器, 제수祭需 등을 차리는 절차.

내용 진설陳設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제구祭具와 제기祭器, 제수祭需 등을 차리는 절차이다. 이때 수저와 잔盞을 비롯하여 식어도 상관없는 포脯·실과實果·채소菜蔬 등을 먼저 올리고, 메와 갱羹, 탕湯 등과 같이 더운 음식은 진찬進饌 때에 올리며, 적육炙肉은 헌작獻爵 때에 각각 올리게 되어 있으나 지금은 한꺼번에 올리기도 한다. 포, 실과, 채소 등을 진설하는 것을 설소과設蔬果라고도 하는데, 이른바 1차 진설에 해당한다.

제수의 진설은 『가례家禮』,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는 4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탕湯이 포함되어 5열로 진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례편람』을 보면 "제상의 남쪽 끝에 과일 접시를 진설하고, 그다음 줄에는 채소와 포와 식혜를 차리고, 북쪽 끝에 잔대와 초접醋楪을 놓되, 잔은 서쪽, 접시는 동쪽이다. 시저匙箸는 첫 줄의 중앙에 놓는다. 다른 상 위에 현주玄酒와 술병을 두되, 현주는 서쪽이다."라고 4열로 되어 있는 반면, 『율곡전서栗谷全書』 「제의초祭儀鈔」에는 탕이 포함되어 5열로 되어 있다.

진설방식은 예서禮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제의초」에 탕이 추가된 것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우선 신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줄인 제1열에 잔과 수저, 밥과 국을 차린다. 제2열에는 면, 떡, 적炙, 생선이 올라간다. 적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생선을 차리고, 그 줄의 양쪽 끝으로 면과 떡이 각각 놓인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적을 '도적都積'이라고 하여, 적틀의 가장 하단부터 비늘이 있는 고기, 털이 있는 고기, 깃털이 있는 고기라는 의미의 우모린羽毛鱗의 순서로 쌓는다. 제3열에는 탕을 차린다. 「제의초」에 "살림이 궁해서 다섯 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 가지라도 좋다."라고 했으며,


경북 경주 월성 손동만 종가


경북 고령 점필재 김종직 종가

진설 | 국립민속박물관

형편에 맞게 장만하되 홀수로 하도록 했다. 탕의 종류는 채소로 만든 소탕素湯,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육탕肉湯, 생선이나 조개 등 해물로 만든 어탕魚湯으로 나뉜다. 탕의 위치는 집안에 따라 2열에 놓기도 한다. 제4열에는 포, 숙채熟菜, 식해食醢를 올린다. 포는 육포·건어·건치·문어·전복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5열에 과실을 차린다.

진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위를 중심으로 좌우左右를 구별하는 것인데, 이때 신위의 좌우는 산 사람의 좌우와 반대이다. 따라서 신위를 중심으로 좌우를 정하면 대체로 무난하다. 참고로 홍동백서紅東白西·조율이시棗栗梨柹 또는 조율시이棗栗柹梨·좌포우해左脯右醢·어동육서魚東肉西 등의 진설방식은 예서에 규정된 바가 없다.

특징 및 의의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진설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특히 과실의 경우 '과果'라고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진설의 대표적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은 후대에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유교 제례의 구조와 의미(도민재, 동양철학연구42, 동양철학연구회, 2005),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조선시대 제례 진설에 관한 연구(김용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김미영(金美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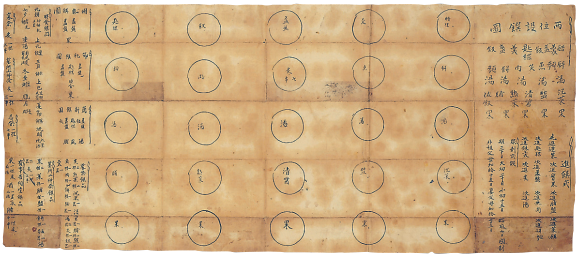
진설도
陳設圖

정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음식의 배열 위치를 그린 그림.

내용 일반적으로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을 제수祭需라 하고, 제사상에 제수를 배열하는 것을 진설陳設이라고 하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진설도陳設圖라 한다. 제례의 기본서인 『가례家禮』를 비롯하여 『가례의절家禮儀節』·『격몽요결擊蒙要訣』·『상례비요喪禮備要』·『사례편람四禮便覽』 등 예서禮書에는 '설찬도設饌圖'라고 되어 있지만, 국가제례의 경우에는 '설찬도'와 '진설도'를 혼용하고 있다. 이밖에 제찬도祭饌圖·진찬도進饌圖·제사찬품도祭祀饌品圖·제찬진설도祭饌陳設圖라고도 한다.



시제매위설찬도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설찬도 | 190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가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예서에는 사시제四時祭가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진설도를 그려 놓았다. 사시제의 진설도는 부부 두 분을 모시는 합설合設이나, 한 분만 고려하여 각 상을 그린 진설도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대부사서인시향大夫士庶人時享'이라 하여 품계에 따라 제찬의 수를 달리하거나, 부부 두 분의 겸상을 고려한 공탁共卓 진설도를 제시하였고, 이현보李賢輔(1467~1555)의 『농암선생문집聾巖先生文集』에서도 이를 따라 진설도를 그려 놓았다. 류운룡柳雲龍(1539~1601)의 『겸암선생문집謙菴先生文集』에는 정지삭망참례도正至朔望參禮圖·속절천시식도俗節薦時食圖·사시제도四時祭圖·녜제도禰祭圖·기제도忌祭圖·묘제도墓祭圖·후토제도后土祭圖 등 제사의 종류에 따라 진설도를 그려 놓았다.

진설도의 제사음식은 천생지양지물天生地養之物로 정성껏 마련한다. 제사의 기본이 되는 『가례』 진설도는 사시제 제찬祭饌으로 고위와 비위를 함께 진설하는데, 1열에 과果 6품品, 2열에 소채蔬菜·포해脯醢 각 3품, 3열에 육肉·어魚·면식麵食·미식米食 각 1반盤, 간적肝炙 1곶串, 육적肉炙 2곶, 4열에 반飯·잔반盞盤·시저匙箸·초醋·갱羹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례』의 제사음식이 중국의 생활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재해석

하거나, 『국조오례의』의 품계에 따라 제찬의 수를 달리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용하여 준비하였다. 그래서 『격몽요결』 제례초 진설도에는 1열에 과果 5품, 2열에 좌반佐飯(포脯 대용)·숙채熟菜·청장淸醬·해醢·침채沈菜, 3열에 탕湯 5기, 4열에 면麵·육肉·적炙·어魚·병餠, 5열에 시접匙楪·반飯·잔반盞盤·갱羹·초접醋楪으로 되어 있다.

제사절차는 예서마다 같으나, 행례 내용이나 제사음식은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진설도도 달리 그려져 있다. 하지만 대강의 제사음식 진설 원칙을 보면, 과일[果]은 대추·밤·배·감을 기본으로 조율이시棗栗梨柹 또는 조율시이棗栗柹梨, 아니면 붉은 과일은 동쪽, 하얀 과일은 서쪽에 진설하는 홍동백서紅東白西로 한다. 기타 시과時果(시절 과일)나 약과·다식·산자 등의 조과造果를 진설한다. 소채蔬菜는 '생동숙서生東熟西'라고 하여, 생채 또는 침채沈菜는 동쪽에 숙채熟菜(나물)는 서쪽에 놓는다. 그리고 '좌포우해左脯右醢'라고 하여 포는 좌측에 해는 우측에 놓으며, '건좌습우乾左濕右'라고 하여 마른 것은 좌측, 젖은 것은 우측에 놓는다. 어육魚肉은 '어동육서魚東肉西'라고 하여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으며, '두동미서頭東尾西'라고 하여 생선의 머리는 동쪽(우측), 꼬리는 서쪽(좌측)에 놓는데, 배를 신위 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떡과 국수는 미식米食과 면식麵食의 대표 음식으로, '병동면서餠東麵西'라 하여 떡은 동쪽에, 국수는 서쪽에 놓는다. 밥과 국[飯羹]은 '갱동반서羹東飯西'라고 하여 생시와 반대로 밥은 서쪽에, 국은 동쪽에 놓는다.

이러한 진설을 쉽게 하려고 제사상의 크기에 맞는 유지油紙에 제사 음식의 배열 위치를 표기한 좌면지坐面紙가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설찬도는 제사상 크기에 맞게 제사음식의 배열 위치를 그린 것으로, 한지를 여러 겹 붙여 두껍게 하고 기름을 먹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에 25개의 원을 그려 그 안에 한 분의 기제사忌祭祀 음식을 표시하고, 왼쪽에는 삭참朔參, 절사節祀, 천신薦新의 찬도饌圖와 묘제墓祭 시식時食 등의 찬품饌品을, 오른쪽에는 양위설찬도兩位設饌圖와 진찬식進饌式을 적어 놓았다.

특징 및 의의 제수의 진설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가례家家禮라고 하여 집안마다 제수 진설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당파, 가문의 자존심 등에 기인하지만, 각종 예서에 실린 진설도에 구체적인 제수 명칭이 없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참고문헌 家禮, 擊蒙要訣, 謙菴先生文集, 國朝五禮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설찬도에 대한 고찰(최순권, 생활문물연구25, 국립민속박물관, 2009).

필자 최순권(崔順權)

진설법
陳設法

정의 제사상에 제물을 차리는 규칙.

역사 『예기禮記』에 식사를 올릴 때 음식을 놓는 자리를 지정한 것을 보면 이미 당시부터 상차림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종 예서禮書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사 상차림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왔다.

내용 상차림의 기본은 고위와 비위를 함께 차리는 합설合設을 할 때 하나의 탁자를 쓰는 공탁共卓인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상을 사용하는 각탁各卓인가로 나뉜다. 각탁일 때에는 단설單設처럼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탁일 때에는 일위一位 분량의 제물을 차리고 양위兩位 분량의 잔과 메·갱을 따로 차리거나, 각탁처럼 양위 분량의 제물을 각각 차리는 방법이 있다.

진설陳設의 원칙은 4열 혹은 5열로 나누어 제물을 차리는 것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대부사서인시향大夫士庶人時享」에서는 5열 진설법陳設法을 제시하고 있다. 신위로부터 제1열에는 잔, 제2열에는 밥·국·시저匙箸, 제3열에는 면·생선·적간炙肝·육肉·떡, 제4열에는 채소·식해食醢·포脯, 제5열에는 과일을 차린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는 고비 각탁 5열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1열에는 시접·반·잔반·갱, 제2열에는 면·육·적·어·병, 제3열에는 다섯 종류의 탕, 제4열에는 포·숙채熟菜·청채靑菜·해·침채沈菜, 제5열에는 다섯 종류의 과일을 차리도록 하고 있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네 줄을 기본으로 고위와 비위를 각탁으로 진설하도록 하였다. 신위로부터 제1열에는 밥·잔반·시저·초·국을, 제2열에는 면식·육·적간·어·미식을, 제3열에는 포해脯

醢·소채 각 2기씩을, 제4열에는 여섯 종류의 과일을 차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4열로 차리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열에는 반·잔반·시저·초접醋楪·갱, 제2열에는 면·육·적·어·병, 제3열에는 포·소蔬·장·침채·해·식혜食醯, 제4열에는 네 종류의 과일을 차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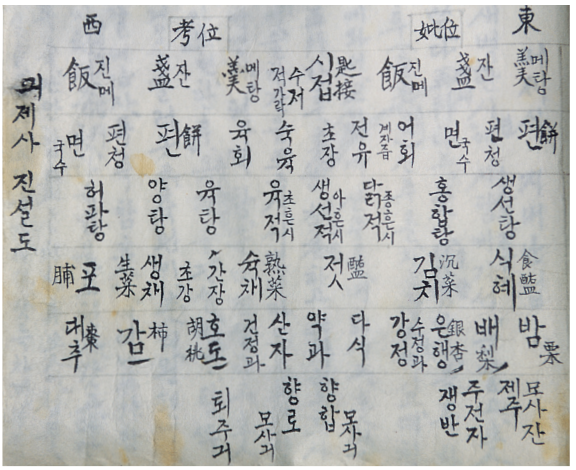
이러한 예서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경상북도 안동 농암聾巖 종가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는 양위 합설을 원칙으로 여섯 줄로 차리도록 하였다. 제1열에는 시접·식혜·잔·반·갱·잔·반·갱, 제2열에는 국수·매자반(2)·도적·편적·떡·편청餠淸, 제3열에는 소탕·육탕·계탕·어탕·어탕, 제4열에는 배추·고사리·가지·청장·무·콩나물·도라지·김치, 제5열에는 귤·참외·수박, 제6열에는 밤·감·잣·호두·사과·배·대추·포의 순서로 차린다. 5열과 6열은 아마 공간이 모자라 겹친 것으로 이해된다. 율곡栗谷 종택의 상차림을 보면 공탁의 양위 합설이며 5줄의 좌우 대칭으로 차린다. 제1열에는 시접·반·잔·갱·초채醋菜, 제2열에는 면·육회·적·어회·떡, 제3열에는 육탕(2)·계탕·어탕·소탕, 제4열에는 포·시금치·간장·식혜·침채, 제5열에는 대추·밤·배·감·사과의 순서로 차린다. 『격몽요결』과도 다름을 알 수 있다. 학봉鶴峯 선생 불천위제는 각탁 합설을 하며 각각 여섯 줄로 차린다. 제1열에는 메·잔반·시접·갱, 제2열에는 난탕·면·소금·간장·어탕·어탕·어탕·육탕, 제3열에는 간적·도적·편(餠)·편청, 제4열에는 포·청채·호박잎·침채·숙채·식혜, 제5열에는 수박·참외·초·사과·약과·토마토, 제6열에는 대추·밤·호두·땅콩·산자·배·곶감의 순서로 차린다. 과일의 수가 많아 5열과 6열이 넘나든다. 학봉의 후손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1827~1899)의 『가제의家祭儀』에서 제시한 공탁 양위 합설은 물론 상차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1열에는 반·잔·갱·시저·반·잔·갱, 제2열에는 초미적접初味炙楪·이미탕二味湯·삼미탕三味湯·염·장·초미적접初味炙楪·이미탕二味湯·삼미탕三味湯, 제3열에는 육탕·어탕·어탕·육탕·어탕·어탕, 제4열에는 면·대육·대어·포탕泡湯·병餠, 제5열에는 좌반佐飯·소蔬·해醢·교채交菜·지혜旨醯·침채, 제6열에는 여섯 종류의 과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설의 원칙은 음양陰陽의 원리를 따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예기』에서는 하늘은 양이니 하늘에서 나는 것은 홀수이고, 땅은 음이니 땅에서 나는 것은 짝수이므로, 어육은 홀수, 과일과 채소는 짝수로 차리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채소만 세 종류를 써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진설법을 기억하기 쉽도록 하였지만, 기준이 애매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신위의 위치에 관한 성어가 있다. 즉, 고위는 서쪽, 비위는 동쪽이라는 고서비동考西妣東이다. 두 번째는 과일의 진설법 관련 성어이다. 제상의 서쪽에서부터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로 차리는 조율이시棗栗梨柹와 붉은색 과일을 동쪽에 흰색 과일을 서쪽에 차리는 홍동백서紅東白西가 있다. 세 번째는 생선과 고기의 진설법 관련 성어이다. 포는 왼쪽에 젓갈은 오른쪽에 놓는다는 좌포우해左脯右醢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묘 속절제俗節祭의 진설법으로, 동쪽의 변籩에 담는 마른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일반 조상제사와는 반대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포를 서쪽에 차리는 서



시제진잔치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진설도 | 대전 동충당 송준길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포동해西脯東醢이다. 또한 생선은 동쪽, 육류는 서쪽에 놓는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차리는 두동미서頭東尾西가 있으나 『의례儀禮』에서는 생선의 머리를 오른쪽(서쪽)으로 가도록 하여 차이가 있다. 네 번째는 밥과 국의 진설법 관련 성어이다. 밥은 왼쪽(동), 국은 오른쪽(서)에 차린다는 반서갱동飯西羹東과 우반좌갱右飯左羹이 있다. 『가례家禮』의 밥을 서쪽, 국을 동쪽에 차리는 규정과는 반대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은 음식을 올릴 때는 왼쪽에 효殽, 오른쪽에 자胾를 놓고, 밥은 사람의 왼쪽에, 국은 사람의 오른쪽에 놓는다는 『예기』의 이론에 따라 『가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날 음식은 동쪽에, 익힌 음식은 서쪽에 차리는 생동숙서生東熟西, 떡은 동쪽, 면은 서쪽이라는 병동면서餠東麵西, 마른 음식은 왼쪽, 젖은 음식은 오른쪽에 차리는 건좌습우乾左濕右 등이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자성어는 좌우, 동서 등이 섞여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습관을 따른 것도 있어 문제가 있다. 예서에서는 의례를 행할 때 신위를 기준으로 방위와 위치를 설정하여 혼란을 방지하였다. 그러므로 화자의 위치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절대 위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방위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진설법은 일정한 원칙이 있으나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집안에 따라서 진설도陳設圖라는 그림을 제상에 펼쳐놓고 진설하기도 한다. 이 진설도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油紙로 만들거나 두꺼운 장지壯紙로 만들어 기름을 먹이기도 한다.

지역사례 가가례家家禮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물과 그 진설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예서조차 진설법이 통일되지 않아 집안, 학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진설법이 전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집안에서는 포를 가운데에 놓는 중포中脯, 농암 이현보李賢輔 집안에서는 좌포左脯(동쪽), 학봉 김성일金誠一 집안에서는 우포右脯(서쪽)를 써 차이가 있다. 탕의 위치, 과일의 위치와 숫자, 수저의 위치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차이가 있어 지역적 사례를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징 및 의의 진설법은 제사상에 올리는 제사 음식의 절제와 통일성을 위해 지극히 정제된 유형화의 산물이다. 지나치게 소략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성대하게 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진설법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설법은 매우 합리적임에도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제상을 보는 기준이 신위 중심임에도 봉사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다 보니 나타난 혼란이다. 진설의 기본 원칙이 예서에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예서는 물론 집안, 지역, 학파에 따라 다양한 진설법이 전승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진설법은 말 그대로 가가례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김시덕 외, 민속원, 2012), 조상제사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안동지역 불천위제사의 제물과 진설을 중심으로(김미영, 지방사와 지방문화9-1, 역사문화학회, 2006), 한국의 제사음식 문화(김상보,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11-2,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6).

필자 김시덕(金時德)

진적
進炙

정의 적炙을 헌작獻爵할 때마다 안주용으로 바꾸어 올리는 절차.

내용 적炙은 구이로서 제사음식에서 중심이 되는 특별한 안주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적은 육적肉炙으로 쇠고기구이이다. 어적魚炙은 생선구이로 생선 2~3마리를 양념해 익힌 것이다. 계적鷄炙은 통닭구이이다. 소적素炙은 두부지짐이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적을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때마다 따로 올리는 것이다. 초헌 때는 주로 헌작한 다음 육적肉炙을 올리고 다시 철수한다. 아헌 때는 어적魚炙을 올리고 다시 철수한다. 종헌 때는 계적鷄炙을 올리고 그대로 둔다.

초헌 때는 육적肉炙을 적상炙床에 올린다. 집안 제사에서는 쇠고기를 살짝 익히지만, 문묘나 서원에서는 익히지 않고 날것을 올린다. 적상은 적을 올리기 위하여 1차 진설 때에 제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미리 준비해 두는 작은 상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따르면, 초헌에는 간적, 아헌

과 종헌에는 육적을 올린다고 하였다. 김굉필金宏弼의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에서는 제사상의 중앙에 적을 놓았는데 아래로부터 어적·육적·계적을 차례로 쌓았다. 도동서원에서 매년 보내오는 몇 가지 제물이라고 한다. 그 품목은 쇠고기 열 근, 문어 한 마리, 어물 세 마리이다. 초헌 때 집사는 밥그릇 뚜껑을 열고, 육적을 올린다. 아헌 때 육적 대신 어적을 올리고, 종헌 때 헌작 후 계적을 올린다. 계적은 보통 통닭을 올린다.

박세당朴世堂 종가에서는 초헌한 다음 한 그릇에 담은 적첩을 올린다. 적첩은 아래로부터 소적, 육적, 어적을 한 그릇에 담은 술안주용 제수이다. 이 집안에서는 초헌례 때만 진적하고 아헌례와 종헌례 때는 생략해 간소화하였다.


초헌에 집사자가 육적을 올린다.(경기 고양 율곡 이이 종가)


아헌에 집사자가 어적을 올린다.(경기 고양 율곡 이이 종가)


종헌에 집사자가 계적을 올린다.(충남 논산 사계 김장생 종가)

진적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술에는 안주가 필요한데, 안주를 상징하는 것이 적炙으로 우羽, 모毛, 린鱗을 갖추어야 한다. 우羽란 날개가 있는 고기를 말한다. 꿩이 제일 좋지만, 닭으로 대신할 수 있다. 모毛는 털이 있는 고기를 말한다. 쇠고기가 많이 쓰인다. 린鱗은 비늘이 있는 해산물을 말한다. 제사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신령을 대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고기와 생선을 구이로 만들어 술과 함께 올림으로써 신령을 후하게 대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참고문헌 家禮輯解, 禮疑類輯, 二禮畧解, 종가의 제례와 음식1~3(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4).

필자 이희재(李曦載)

진찬 進饌

정의 제향祭享 때 신령에게 찬饌을 올리는 예禮로 어육류의 찬을 올리는 절차.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진설 다음에 출주出主하고 참신參神, 강신降神한 뒤에 진찬進饌한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태묘太廟의 진찬 절차 때 헌가에서 풍안지곡豐安之曲을 연주했다. 제향의 영신迎神·전폐奠幣에 이어서 세 번째로 거행하는 진찬 절차에 노래와 관현반주가 따른다. 조선 초기 종묘제향宗廟祭享에서 진찬할 때는 풍안지악豐安之樂을 연주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사시제四時祭」 진찬조進饌條는 다음과 같다. "주인이 오르고 주부는 따른다. 집사 한 사람이 소반으로 어류와 육류를 바치고, 한 사람은 소반으로 미식米食과 면식麵食을 바치며, 한 사람은 탕국과 메를 올린다. 고조의 신위 앞에 이르러 주인은 육류를



진찬 | 경북 안동 겸암 류운룡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잔대 남쪽에서 바치고, 주부는 면식을 육류 서쪽에 드리며, 주인은 어류를 초접醋楪 남쪽에 드리고, 주부는 미식을 육류 동쪽(둘째 줄)에 드린다. 주인이 초접 동쪽에 국을 드리고, 주부는 잔대의 서쪽에 밥을 드린다. 여러 정위正位에 차례대로 드리고, 여러 자제에게 각기 부위祔位에 진설하도록 한다. 다 마치면 주인 이하 내려와 자리에 간다."

내용 주인과 주부가 생선과 고기, 떡과 국수, 국과 밥 등 더운 음식을 올리는 것을 '진찬'이라 한다. 주인이 올라가면 주부가 따른다. 집사자 한 사람은 쟁반에 생선과 고기를 받들고, 한 사람은 쟁반에 떡과 국수를 받들고, 한 사람은 국과 밥을 받들어 따라서 올라간다. 신위 전에 이르면 주인은 고기를 받들어 잔과 잔받침의 남쪽에 놓고, 주부는 국수를 받들어 고기 서쪽에 놓는다. 주인은 생선을 받들어 초접 남쪽에 놓는데, 머리를 오른쪽으로 배를 앞쪽으로 올린다. 주부는 떡을 받들어 생선 동쪽에 놓는다. 주인은 국을 받들어 초접 동쪽에 놓고, 주부는 밥을 받들어 잔과 잔받침의 서쪽에 놓는다. 모두 마치면 주인 이하 모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요즘에는 집사들이 주로 진찬을 한다.

경상북도 안동의 퇴계退溪 종가, 서애西厓 종가, 학봉鶴峯 종가 등에서는 진찬 때 소고기·생선·닭고기 등을 쌓아 올린 도적을 올린다. 그러나 상주의 우복愚伏 종가, 고령의 점필재佔畢齋 종가, 대구의 한훤당寒暄堂 종가, 경주의 경주 손씨 종가에서는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마다 소고기·생선·닭고기 적炙을 달리 올린다.

특징 및 의의 조상님께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 진찬이다. 조선시대의 잔칫날에 먹었던 음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차례
茶禮

정의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에 4대 조상을 범위로 낮에 사당에서 올리는 제사.

역사 차례茶禮는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에 지내는 제사지만, 오늘날 절기 차례는 거의 사라지고 설과 추석의 명절 차례만 전승되고 있다. 다만, 사당이 있는 종가에서는 중양重陽(음력 9월 9일)과 한식寒食에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명절 차례는 애초 '속절俗節 제사'라고 불리던 것으로, 예법에 있는 제사는 아니다. 어떠한 예서에도 명절 차례에 대한 전례가 수록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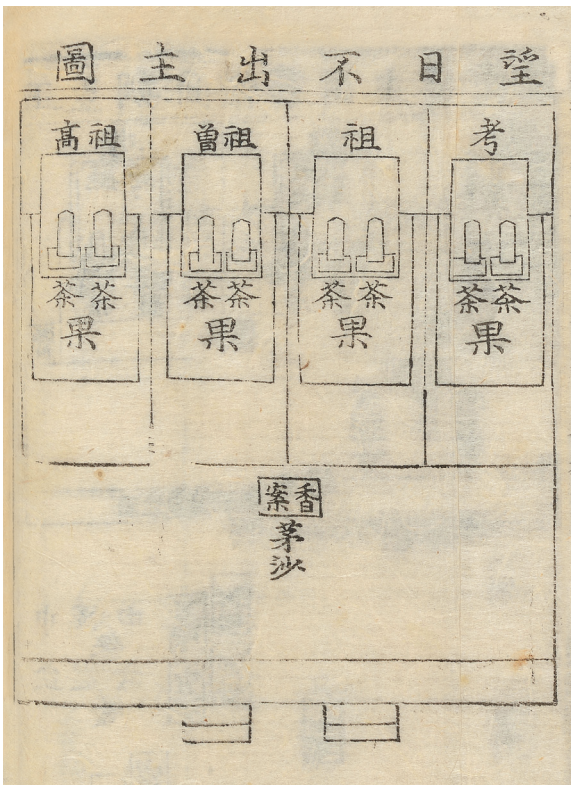
『가례家禮』에 명시된 제사는 사계절의 첫 달인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사시제四時祭·시조始祖에 대한 초조제初祖祭(초조)·시조와 고조 이하를 위한 선조제先祖祭(선조)·아버지에게 올리는 네제禰祭·기일에 지내는 기일제忌日祭·묘소에서 행하는 묘제墓祭의 여섯 종류이다. 반면,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사시제·네제·기제·묘제의 네 종류를 제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것은 기제와 묘제이다. 네제는 기일제와 중복되는 성격을 지닌 까닭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시제는 비록 자취를 감추었지만, 명칭은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날 음력 10월에 묘소에서 지내는, 시제時祭·시사時祀·묘제墓祭·묘사墓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제례祭禮가 이것이다.

그런데 시제는 애초 사시제四時祭로 불리면서 사계절의 해당 달마다 고조부모 이하의 조상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지내던 제례였다. 반면, 묘제는 매년 음력 3월 상순에 묘소에서 거행하던 것으로 시제와

는 전혀 그 성격이 달랐다.

명절의 차례는 "초하루와 보름의 참례 중 보름에는 차를 올린다."라는 『가례家禮』「사당祠堂」의 기록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차례는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명절 차례에서는 차 대신 술을 쓴다. 그런데 조상에게 차를 올리는 풍습은 우리나라에 차가 전래한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매달 보름에 차를 올리고 사당에 참배하였으므로, 이 풍습이 신라에 들어옴으로써 차를 올리는 차례 풍습이 생겼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명절 차례는 사당祠堂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사당이 우리나라에 전래한 것은 삼국시대이지만, 우리나라에 정착한 것은 조선 중기에 유학이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부터이다. 또한, 차례가 중시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시제가 쇠퇴하면서 차례가 제사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사례편람』 등에서는 시제를 속절, 곧 명절에 올려도 무방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망일불출주도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보름날 신주를 내놓지 않고 제사 지내는 그림.

내용 『가례』에 의하면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참배하는 의례가 있다. 이 중에 보름에는 술잔을 올리지 않고 찻잔만을 올리게 되어 있다. 아마도 가장 소략하게 지내는 이 보름의 사당 참배에서 차례가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명절에 올리는 제사에는 그 명절에 먹는 특별한 계절식을 올리는 것이 관례였다.

사당에서 올리던 차례는 정월초하루 설과 대보름, 매월 초하루와 보름·한식·단오·칠석·추석·중구·동지 등 각종 명절과 절기에 지냈는데 이를 합하면 1년에 무려 30여 회에 이른다. 그러나 사당이 사라지면서 차례는 명절의 제사로만 남게 되었다. 그나마 오늘날에는 명절 중에서도 설날과 추석에만 차례를 지낼 뿐이다.

차례를 지내는 대상은 기제사로 모시는 조상과 같다. 예를 들어 고조까지 사대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 그리고 부모 등 여덟 분의 조상이 차례 제사의 대상이 된다. 간혹 2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조부모와 부모 네 분에게 차례 제사를 올린다.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낸다.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 설날에는 집에서, 한식과 추석에는 묘소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설날과 추석 차례 모두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추석 성묘는 계속 이어지는 반면, 한식 성묘는 점차 퇴색하는 분위기이다.

차례의 제사는 일종의 약식 제사이므로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술은 한 번만 올리고 축문도 사용하지 않는다. 또 떡국이나 면·떡 등 계절에 절식으로 먹는 음식을 올리고 밥과 국은 올리지 않는다. 가정에서 차례를 지낼 때의 제구 설치나 제수 준비는 기제사나 시제 때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차례는 기제사의 대상인 여러 조상에게 모두 지내야 하기 때문에, 종류는 같아도 숫자가 많다. 고조부모를 포함한 사대를 봉사하는 경우 신위를 모시는 교의交椅, 제수를 차릴 제상, 제수를 담을 각종 그릇이 모두 네 벌 있어야 하고, 그 밖의 병풍·향안·향합·소탁·자리 등은 한 벌씩 있어야 한다. 차례는 제사 대상을 한꺼번에 모시므로 같은 공간에 신위를 배



중구 차례 강신 | 경북 안동 겸암 류운룡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추석 차례 합문 | 전남 해남 고산 윤선도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열하고 제수를 진설하려면 교의와 제상祭床이 네 벌 필요하다. 그러나 교의와 제상을 따로 준비하기 어려우면 윗대 조상부터 차례대로 여러 번 지내도 무방하다.

차례는 날이 밝은 아침에 지내므로 촛불을 켜지 않는다. 상차림은 기제사忌祭祀와 같으나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적炙은 고기와 생선, 닭을 따로 담지 않고 한 접시에 담아 미리 올린다. 차례에서는 잔 드리기를 한 번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법禮法에서는 밥과 국을 놓는 자리에 설날에는 떡국을 놓고 한식과 추석에는 비워 둔다고 하나, 요즘은 밥과 국을 올리기도 한다. 절식節食으로 추석에는 토란과 쇠고기,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과 송편, 한식 차례 때에는 화전이나 쑥떡을 올린다.

명절 차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①재계齋戒: 하루 전부터 집안 안팎을 청소하고 목욕재계하며 차례를 지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②제상과 집기의 설치, 제수 준비: 하루 전에 지낼 장소와 위치를 정하고 제구와 제기를 설치할 준비를 하며 제기를 닦고 제수를 마련한다.

③제복 입고 정렬하기: 명절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복을 차려입고, 제구를 설치한 후 정해진 위치에 선다.

④제상 차리기와 신위 봉안: 식어도 무방한 제수를 먼저 차리고, 교의나 제상 위에 윗대의 조상 신위부터 순서대로 신주나 지방을 모신다. 산소에서 차례를 지낼 때에는 이 절차가 없다.

⑤신내리기[강신]: 주인이 읍하고 꿇어앉아 향을 세 번 사르고 강신의 예를 행한다. 제주가 읍하고 꿇어앉아 있으면 집사가 잔반에 따라 주는 술을 모삿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고 재배한다. 산소에서는 땅바닥에 한다. 그리고 산소에서 차례를 올릴 때에는 먼저 합동 참배한 후 신 내리기를 행한다.

⑥합동 참배: 강림한 신에 대한 인사이다. 주인 이하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 번 절한다. 산소에서는 신 내리기에 앞서 합동 참배한다.

⑦제찬祭饌 올리기와 잔 올리기: 식어서는 안 될 모든 제수를 윗대 조상의 신위부터 차례로 올린다. 제주가 주전자를 들어 고조부모에서 부모까지 각 잔에 차례로 술을 가득히 붓는다. 주부는 고조모에서 부모까지 차례로 숟가락을 떡국(설의 경우)에 걸치고 젓가락을 골라 시접에 걸쳐 놓는다.

⑧식사 권유: 주인이 주전자를 들어 각 신위의 잔에 첨작한 후 참례자 일동이 7~8분간 조용히 부복하거나 시립侍立한다.

⑨수저 걷기와 합동 배례: 주부가 윗대의 신위부터 차례로 수저를 내려 시접에 담는다. 합동 배례는 마지막 인사로 참사자 전원이 일제히 두 번 절한다.

⑩신주 들여 모시기: 신위를 사당으로 모시는 절차이다. 지방을 사용한 경우에는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는다. 산소에서 제사를 올릴 때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

⑪제상 정리와 음식 나누기[음복]: 제사 음식을 제상에서 내려 정리하고 제구와 제기를 잘 정비하여 보관한다.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유덕을 기린다.

특징 및 의의 명절 차례는 예서에 없던 것으로 산 사람들만 즐겁게 지내기 미안하여 마련한 일종의 약식제사이다. 예전에는 속절俗節제사라고 불리던 것으로 그 절차

가 매우 간소하였다. 술은 한 번만 올리고 축문도 사용하지 않으며 떡국이나 면, 떡 등 그 계절에 절식으로 먹는 음식을 올리는 것은 다른 제사와 구별된다. 또한, 기제사 때처럼 음식을 나누어 보내거나 친지·이웃을 초청하여 연회를 벌이지 않고, 제사에 참석한 가족이 음복하며 조상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家禮, 禮記, 국역 사례편람(우봉이씨 대종회, 1992),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필자 김명자(金明子)

참례
參禮

정의 설날과 동지, 초하루와 보름에 사당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는 의식.

역사 『가례家禮』 사당조祠堂條에서는 "설, 동지, 초하루, 보름에는 참례를 한다正至朔望則參."라고 하였다. 참례參禮는 처음에 "속절에는 시절 음식을 바친다俗節則獻以時食."는 속절제 또는 천신薦新과 구분되어, 이이李珥(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 제의초 및 조임도趙任道(1585~1664)의 『간송선생문집澗松先生文集』에서는 참례의參禮儀와 천헌의薦獻儀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속절이 초하루 또는 보름에 있고, 그 절차와 내용이 삭참朔參 의식과 같으므로 이익李瀷(1681~1763)의 『성호전집星湖全集』에는 "정조正朝(설), 상원上元(정월대보름), 중삼重三(삼월삼짇날), 단오端午, 유두流頭, 추석秋夕, 중양重陽(중구), 동지冬至 및 초하루와 보름에는 모두 참례를 행하되, 절일節日에는 시절 음식을 올린다."라고 하여 속절제俗節祭를 사당에서 지내는 참례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곽종석郭鍾錫(1846~1919)의 『육례홀기六禮笏記』 중 차례는 정조(설)·추석·동지·단오나 천신薦新 등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당에서 간략하게 지내는 참례·천신 등을 통상 '차례'라고 칭하였다.

내용 『가례』에 따르면 원래 설과 동지, 초하루에는 아침 일찍 사당 안 감실龕室마다 과일과 술·차를 진설하며, 주독을 연 다음 신주를 받들어 주독 앞에 두고 참례를 행한다. 반면에 보름에는 과일과 차만을 진설을 하며, 주독을 열고 참례를 행한다. 그래서 참례절차는 설과 동지, 초하루에는 분향재배, 강신재배, 참신재배, 헌작, 점다, 주인주부재배, 사신재배 순으로 하고, 보름에는 점다, 주인주부재배, 사신재배 순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속에 차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격몽요결』 제의초에서는 참례에 차 진설과 점다 절차를 삭제하고, 보름에는 분향만 하는데, 동지에는 팥죽, 설에는 떡국을 별도로 진설하고, 동지에 시제를 지내면 참례는 지내지 않는다. 한편으로 류운룡柳雲龍(1539~1601)의 『겸암선생문집謙菴先生文集』이나 『성호전집星湖全集』에는 초하루와 보름에 동일한 사례를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하여, 초하루와 보름의 구분 없이 차 없이 술로 참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상중에는 장례 이전이면 참례를 지내지 않지만, 졸곡卒哭 이후에는 복服이 가벼운 사람이나 이미 복을 벗은 사람이 참례를 지내며, 기일이 삭망과 일치하면 기제만 지낸다.


동지 차례 삽시


동지 차례 팥죽

참례(동지 차례) | 경남 창녕 서흥 김씨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참례는 달의 변화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조상에게 예를 드리는 의식으로, 집안에 조상이 있는 것처럼 시절에 따른 음식을 바치고 인사를 드렸으나, 후대로 오면서 사당이 사라지면서 설과 추석의 차례만이 참례의 대표적인 제사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家禮, 澗松先生文集, 擊蒙要訣, 謙菴先生文集, 星湖全集, 六禮笏記.
필자 최순권(崔順權)

참사자
參祀者

정의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을 비롯하여 의식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

내용 유교식 제사의 기본형인 기제사忌祭祀에는 제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참사자가 함께 제의를 거행한다. 제사 의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을 참사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자가 많아 제사 공간이 부족했다.", "참사자는 많은데 부녀자들이 부족해 고생이다."라는 말로도 뒷받침된다. 조선시대 『주자가례朱子家禮』 이후 18세기부터 기제사는 고조高祖까지의 사대봉사四代奉祀를 원칙으로 하였기에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집단이 당내堂內의 친족으로 구성된다. 당내의 친족은 복服을 함께 입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인 '유복친有服親'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계혈통으로 이어지는 형제들 가운데 8촌 이내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기제사에는 해당 조상의 직계 후손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까운 형제와 친인척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고조부의 제사에는 8촌 이내의 친족까지 참석하고, 증조부의 제사라면 6촌 이내의 친족, 조부의 제사에는 4촌 이내의 친족들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가까운 친족을 비롯하여 외손들·이웃·사위 등도 참석할 수 있다. 기제사에 참여한 참사자들이 제관의 책임을 부여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의에 참여하여 예禮로써 조상을 받들어 모시고 음복飮福까지 마치는 것을 큰 의미로 생각한다. 간혹 직계 자손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가 거행되는 시간에 제사가 거행되는 곳을 향해 망배望拜를 하거나 묵념을 한다. 차례茶禮 시에도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당내의 사람들이 참석해 제의를 지낸다. 시조의 묘제는 전국에 분포한 시조의 자손들이 참사자로 참석하는 문중의 대규모 제사이며, 입향조入鄕祖의 묘제는 입향시조의 후손들이 참사자로 참석하여 입향조를 기린다.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의 경우에는 기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물의 종류와 양도 많으며, 참사자의 범위도 넓고 참사자의 수도 많다. 자연히 불천위제사 때에는 참사자들을 대접하느라 바쁘지만, 참사자들 가운데도 제사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기제사는 보통 당내 친족이 참사자로 참여하지만, 불천위제사는 직계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방계손, 외손까지도 참여한다. 나아가 불천위 조상의 제자 가문 사람들도 참여하기도 하고, 이와 관계없이 불천위 조상을 흠모하는 사람들까지도 참여한다. 제사에 참사자가 많은 것은 집의 위상과도 맞닿는다. 그러므로 의례 절차를 잘 준수하고 제물 준비를 성대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산업사회 이후 사회구조와 문화가 변화되면서 의례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특히 산업화 이후 먹을 것이 넉넉해지고, 자손들이 도시로 흩어져 살다 보니 참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전통적 제사의 절차는 복잡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가 끝난 뒤에 제물은 남은 음식이 되어, 제사에서 사치가 되었다. 이에 1973년 정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가정의례준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준칙에 따르면, 제례의 경우 기제사, 설과 추석 절사節祀로 제한하였으며, 묘제는 제물을 사용하지 않는 성묘로 대신하도록 했다. 제사의 봉사 범위는 2대까지 제한하였고, 참사자는 직계 자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인식은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가정에 따라서 봉사 대수를 줄이는 경우는 있다. 참사자 또한 불천위제사에서는 대체로 전통적 관행을 따르고 있으나, 기제사에서는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특징 및 의의 유교식 제사에서 참사자는 초헌관을 위시하여 조상을 섬기고 그 뜻을 기리는 사람들이다. 특히 불천위제사에서 직계 자손이 아닌 참사자는 제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을 때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불천위제사는 기제사보다 참사자의 수가 더 많고 범위가 더 넓다. 결국 제사의 위상과 종류에 따라 참사자의 범위가 다르다.

참고문헌 우리의 전통예절(김득중·유송옥·황혜성,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8),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8), 제사와 제례문화(박원재·유권종·배영동 외, 한국국학진흥원, 2002),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배영동(裵永東)

참신
參神

정의 신神을 뵙는 제례 절차.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 『상례비요喪禮備要』 모두 출주出主 뒤에 참신參神 재배하고 강신降神한다고 하였다. 신주는 그 자체가 신체神體이므로 조상으로 여겨 참신을 먼저 한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신위를 마련하여 신주가 없으면 먼저 강신하고 뒤에 참신한다. 묘제墓祭 역시 그러한데 『주자가례』에는 '우선 참신하고 나중에 강신한다.'라고 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묘제에는 먼저 강신한다.'라고 하니, 아마 옳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서 기일이나 사시의 합동제사에 참신을 먼저 하게 한 것은 과거에 제사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신주를 내어 모셨기 때문인 듯하다. 신주는 평소에 조상의 영혼이 깃든 표상이기 때문이다. 신주를 의자에 모시면 조상이 좌정하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곧장 참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 주인 이하가 조상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주인 이하 자리를 정하면 참례자 전원이 참신재배한다. 부 녀자는 사배四拜가 항식恒式이다. 참신재배 후에는 나이 드신 어른과 병든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쉰다.

지방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강신하고, 뒤에 참신한다. 지방은 임시로 한지에 이름을 쓴 것이어서, 지방에다 신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강신을 통해 지방에 신을 의뢰하여 조상으로 받드는 것이다.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만, 강신을 먼저하고 참신하는 경우도 있다. 즉,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설날·동지·정월초하루·정월대보름에 사당에서 신주독神主櫝을 열고 참례할 때에는 강신하고서 참신하듯이, 집안별로 신주의 유무 및 신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참신과 강신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미리 메를 올리지 않고, 참신 뒤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인이 육·어·갱을 올리고, 주부가 면·편·메를 올린다.

특징 및 의의 조상의 신주를 모셔 내오면 조상을 뵙는 것처럼 먼저 재배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집이 거의 없으므로 제사에 대부분 지방을 사용한다. 이처럼, 지방을 사용하는 제사에서는 강신 절차를 먼저 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방은 평소에 조상의


경북 안동 농암 이현보 종가


전남 해남 고산 윤선도 종가

참신재배 | 국립민속박물관

혼령이 깃든 물건은 아니다. 임시로 종이를 재단하여 글씨로 신위를 써놓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방을 사용하는 제사에서는 강신절차를 먼저 행해야 한다. 신이 강림하지도 않았는데 참배를 먼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례』에서 시조나 선조에 대한 제사에 강신을 먼저 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주를 모신 사당의 참례에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그 뒤에 하도록 한 것은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참최
斬衰

정의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서 제일 중重한 상복喪服.

내용 상복은 사망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죽은 사람에 대한 주인·주부·유복자有服者의 친소원근親疏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따라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오복五服을 착용한다. 참최복斬衰服은 오복 중 제일 중한 복服으로 '참斬'이란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생포의 가장자리를 바느질하여 마무르지 않은 채 만든 상복을 말한다.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3년을 입는다. 가복加服은 아버지가 이미 죽은 뒤에 조부 또는 증조·고조가 사망하여 적손이 승중承重했을 때 입거나, 후사가 될 적자가 죽었을 때 살아 있는 아버지가 입는다.

남자의 참최복은 참최관斬衰冠·의衣·상裳·중의中衣·행전行纏·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저장苴杖·리履 등으로 구성된다. 여자의 참최복은 소素족두리 또는 개두蓋頭·대수장군大袖長裙·전계箭笄(비녀)·수질·요질·교대·저장·리 등으로 구성된다. 남자의 의衣와 상裳은 가장 발이 굵은 생포(극추생포極麤生布, 가공하지 않은 베)를 사용한다. 의 옆과 아랫단은 꿰매지 않고 윗부분만 꿰매며, 이때 솔기는 밖으로 향한다. 의의 길이는 상을 가릴 정도로 만들고, 가슴에는 최衰라는 포편布片(베 조각)을 단다. 그리고 의의 양 어깨에는 깃에 부착하는 포편인 벽령辟領(효자가 부모의 상을 당하여 경황이 없음을 상징), 등에는 부판負版(슬픔을 짊어진다는 의미), 상의上衣의 몸체 아래에는 대帶만 한 크기의 다른 포를 덧대어 아래로 드리운 대하척帶下尺, 양 겨드랑이의 아래에는 임衽(제비 꼬리 모양으로 치마의 옆구리를 덮음)이 있다. 상裳은 앞 세 폭, 뒤 네 폭으로 매 폭을 연결하여 꿰매고, 솔기는 안으로 향하게 하며, 앞과 뒤는 서로 붙이지 않는다. 중의中衣는 속칭 중단의中單衣로 최복衰服에 받쳐서 입는다. 의상衣裳과 같은 재료로 만들며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다. 관冠은 의상보다 조금 더 올이 가는 생포生布를 종이로 배접하여 싸서, 앞뒤에 세 개씩 주름을 잡고 모두 오른쪽을 향하여 가로 꿰맨다. 너비 3촌寸에 길이는 정수리 앞뒤를 걸칠 정도이다.

머리에 얹는 수질의 둘레는 9촌, 허리에 두르는 요질의 둘레는 7촌이며, 교대의 둘레는 요질의 반이다. 모두 저마苴麻(씨 있는 삼)로 만든다. 상장은 대나무로 만든 저장을 짚는다. 리로 관구菅屨(솔새 풀로 만든 신)를 신는다. 여자의 참최복인 대수장군은 소매가 넓은 저고리에 좌우 세 폭, 도합 여섯 폭을 잘라 만든 열두 폭의 상이 달린 의상연의衣裳連衣의 형태로 만든다. 사용하는 베의 승수升數와 삭폭削幅의 꿰매고 꿰매지 않는 것과 부판·벽령·최 등은 모두 남자와 동일하다. 다만, 대하帶下가 없고 임衽이 없다. 그러므로 '최'라고만 말하고 '상'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머리에 쓰는 개두 또한 최와 동일한 승수의 포布(베)를 사용한다. 그리고 평상시와 달리 대나무로 만든 죽차竹釵(비녀)를 쓴다. 수질·요질·교대는 남자용과 같으나 모양이 조금 가늘다. 다만 요질에는 산수散垂가 없다. 구屨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문이 없으나, 남자와 동일했던 것 같다.

특징 및 의의 참최는 오복 중 가장 중한 상복이므로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거친 소재를 사용하며, 봉제도 최소화한다. 가슴에 붙이는 최는 부모의 상을 당하여 끝없는 슬픔을 억누르는 쇠붙이를 의미하며 효자의 지극한 마음을 상징한다. 재최 이상만 최를 부착하는

데, '최'를 붙였기 때문에 상복의 상의를 최의라 불렀다. 『가례家禮』에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이르기까지 문헌상의 '최'는 모두 왼쪽 부분에 위치하는데 이는 사람의 정감은 마음, 곧 심장에서 발원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와 함께 벽령, 부판 등은 슬픔과 부모님에 대한 효를 상징한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常變通攷, 喪禮備要,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조우현(趙又玄)

천구 遷柩

정의 발인發靷 하루 전에 발인하기 위해 빈소에 있는 영구를 사당 앞으로 옮겨 조조朝祖하고 나서 청사로 옮기는 절차.

내용 천구遷柩는 발인 하루 전에 행한다. 시신이 안치된 관을 움직이는 일이므로 먼저 그 사실을 영좌靈座에 고해야 한다. 조전朝奠 때 고유告由하는데, 예에 따라 음식을 차린 후에 축이 술을 따르고 북향하여 무릎 꿇고서 "지금 좋은 날에 관을 옮깁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한다. 그런 다음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주인 이하는 곡으로 슬픔을 다하고 재배한다.

처음에는 영구를 빈소에서 사당 앞으로 옮긴다. 조조朝祖하기 위해서이다. 영구를 들 역자役者가 들어오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주인과 여러 상주들은 지팡이를 들고 서서 살핀다. 축祝은 상자에 혼백을 모시고 앞서서 사당 앞으로 간다. 집사는 전奠과 교의交倚, 탁자를 받들어 다음에 가고, 명정銘旌이 다음에 간다. 역자가 관을 들고 다음에 가고, 주인 이하가 따라가며 곡한다.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부인은 왼쪽으로 간다. 복이 무거운 사람은 앞에 있고 복이 가벼운 사람은 뒤에 있으니, 복으로 각각 차례를 삼는다. 시자는 끝에 따라간다. 복을 입지 않는 친척의 경우 남자는 남자의 오른쪽, 여자는 여자의 왼쪽에 있는데, 모두 주인과 주부의 뒤에 순서대로 선다. 부인은 모두 머리가리개를 한다. 주인 이하의 차례는 음양과 소목昭穆, 장유長幼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당 앞에 이르면, 조조朝祖를 행한다. 집사가 먼저 자리를 깔면 역자들은 그 위에 영구를 놓는데,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서 나간다. 부인은 머리가리개를 벗는다. 축이 집사를 거느리고 영구의 서쪽에 영좌와 전을 동향하여 놓는다. 주인 이하는 자리로 나아가 서서 곡으로 슬픔을 다하고 그친다. 이 예는 『예기禮記』「단궁檀弓」에서 "상을 치를 때 조묘祖廟에 가서 뵙는 것은 죽은 자의 효심孝心에 순응한 것이니, 그가 자기가 거처하던 곳을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고祖考의 사당에 이르렀다가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는 대개 평소에 외출하려면 반드시 어른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본뜬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영구가 조상을 뵙는 의례를 마치면, 드디어 청사로 옮긴다. 『가례의절』에서도 "축이 '청사로 상구를 옮기겠습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집사가 청사에 휘장을 친다. 역자가 들어오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축이 혼백을 모시고 영구를 인도하여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의례儀禮』「기석례旣夕禮」의 소疏에, 오른쪽으



천구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로 도는 것은 편함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주인 이하의 남녀는 곡하면서 앞서와 같이 따라간다. 청사에 이르면 집사가 자리를 깐다. 역자는 자리 위에 영구를 놓되, 머리를 남쪽으로 하고 나간다. 축은 영좌와 전奠을 영구 앞에 남향으로 진설한다. 주인 이하는 자리에 나아가 곡하고 거적자리를 깐다.

특징 및 의의 천구는 말뜻 그대로 영구를 옮긴다는 것이니, 묘소에 도착하여 옮기는 일 등도 천구의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발인을 준비하는 절차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참고문헌 家禮儀節, 家禮箚錄, 沙溪全書, 石灘集, 禮記, 주자가례(임민혁, 예문서원, 1999),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임민혁(任敏赫)

천금
天衾

정의 대렴大殮 때 시신을 관에 모시고 대렴과 보공補空이 끝난 후 관 안을 덮는 이불.

역사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대렴 때 오낭五囊으로 관 모서리를 채우고, 관의 빈 곳을 옷으로 말아 꽉 차게 보공을 한 후, 천금으로 관 안을 덮는다. 천금의 구체적인 옷감과 색상 등은 각 가문의 상례에 대한 기록인 『신종록愼終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문공正文公 김수근金洙根(1798~1854)은 남대공단藍大貢緞 천금을, 문헌공文獻公 김병학金炳學(1821~1879)은 남한단藍漢緞 천금을, 김정규金貞圭의 부인 한산韓山 이씨李氏(1865~1915)는 남자선수藍紫綃繡 천금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봉재전서』에는 '천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옷감에 대한 기록은 없고 남자 수의의 품목에 빠져 있다. 1942년 발행된 『사례의절四禮儀節』에는 '천금' 관련 기록이 있다. 2014년 현재 장례업체에서는 대부분 삼베로 만든 천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은 천금이지만, 사실상 조선시대 대렴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천금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조선시대 대렴을 살펴보면, 관 안에서 대렴을 행하는 것과 관 바깥에서 대렴을 행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떠하든, 조선시대에는 대렴이 끝나면 비로소 종교縱絞와 횡교橫絞로 단단히 시신을 묶었다. 시신을 묶고 난 다음에는 옷이나 옷감으로 관의 빈 곳을 채우는 보공을 했다. 보공이 끝난 후, 천금으로 관 안을 덮고 관 뚜껑을 닫았다. 천금은 관 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보통 겹으로 만들며 이불깃과 동정이 없었다.

조선시대 출토 유물 가운데 대표적인 천금은 경기도박물관 소장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1661~1722)과 그의 부인 안동 권씨(1664~1722)의 유물이다. 의원군과 안동 권씨의 천금은 겉감과 안감으로 화려한 문단을 사용했고, 솜을 얇게 두었다. 크기는 의원군 이혁의 천금이 너비 61㎝, 길이 212.5㎝이고, 안동 권씨의 천금이 너비 59㎝, 길이 171㎝이며, 형태는 직사각형이다. 색상은 바래서 알 수 없으나 먹목이나 악수 같은 겉감은 검은색, 안감은 홍색으로 추정된다.

2001년 출토복식연구회에서 제시한 천금은 너비 36㎝, 길이 209㎝로, 지요[地褥]와 같은 크기이며 명주나 무명을 이용하여 겹으로 만들었다. 2014년 현재 판매되는 장례업체 관련 수의용품에는 천금이 포함되어 있다. 너비 33㎝의 삼베 두 폭을 연결하여 폭은 66㎝이고, 길이는 194㎝이다.

특징 및 의의 요와 이불이 생시에 덮는 것이라면, 저승이라 할 수 있는 관에서는 지요와 천금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조선시대에는 대렴이 끝난 후 관의 빈 곳을 채워 마지막으로 덮는 용도로 천금이 사용되었다면, 21세기에는 지요와 더불어 천금이 대렴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2014년 장례업체에서 제시하는 염습구 가운데

천금은 '천금'이나 '이불'로 불리고 있다. 지금의 상례와 조선시대의 상례를 비교하면, 소렴과 대렴의 절차가 간단해 지면서 염습용구도 생략되거나 사용 순서가 변한 경우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천금과 지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 · 정종수 · 이은주 외, 신유,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천기대요
天機大要

정의 조선 후기 관민官民에 걸쳐 널리 읽힌 2권 1책의 방서方書로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의거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길흉일吉凶日을 가리는 방법을 기술한 책.

내용 이 책의 편찬 내력을 보면, ①중국 명나라의 임소주林紹周가 편찬하였고, ②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636년(인조 14) 성여춘成如橚이 이를 도입하여 간행하였는데, 호란으로 유실되어 1653년(효종 4) 다시 발간하였다. 마침 이때는 고려 말부터 3세기 동안 써오던 대통력大統曆을 시헌력時憲曆으로 바꿔 쓴 첫해이기도 하다. 시헌력은 인조조부터 10년간이나 준비해오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해에 성여춘이 『천기대요天機大要』를 다시 손질하여 중간하였다는 것은 당시 국가가 상당한 정도로 역수曆數에 의지해 국태민안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③1737년(영조 13) 음양과陰陽科 출신인 지백원池百源이 다시 보충하여 증보본을 관상감에서 간행하였다. ④1763년(영조 39) 다시 그의 손자 지일빈池日賓 등이 혼효중성昏曉中星을 바로잡아 『신증천기대요新增天機大要』라는 표제로 신증본을 관상감에서 간행하였다. ⑤1902년(광무 6) 지송욱池松旭이 다시 이를 증보하여 증보신본을 간행하였다. 이 밖에 다른 사람들도 약간씩 변형하여 출판한 것들이 있다.

지일빈 등이 간행한 신증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머리에는 태극팔괘 · 하도낙서 · 선후천수 · 오행 · 간지합 · 둔월둔시법 · 역가비결 등 술수의 기본 항목을 기록했다. 그다음에는 상장喪葬 · 기조起造 · 혼인의 삼문을 주로 설명한다. 상장문은 음택을 고르고 안장하는 택일 · 택방의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천묘遷墓(이장)에 필요한 길흉도 설명하였다. 기조문은 양택의 자리를 정하고 건축하는 데 필요한 택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택길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혼인문은 혼인에 필요한 길흉선택의 법을 설명하였다. 그 뒤는 기타사항으로 입택 · 이사 · 상관부임 · 상장上章 · 입학 · 제사 · 기복 · 재의裁衣 · 구의료병求醫療病 · 진인구進人口 · 구사求嗣 · 납노비納奴婢 · 연락宴樂 · 입권교역立券交易 · 출행出行 · 상고흥판商賈興販 · 행선行船 · 조장造醬 · 천우비穿牛鼻 · 납묘견納猫犬 · 벌목 · 양잠 등의 의일 · 기일의 선택법과 피흉추길避凶趨吉의 방법을 수록하였으며, 그리고 길흉신 일람과 음양변론 등을 수록하고 있다.

새로 증보한 부분인 방로房勞 · 양자납서養子納壻 · 세두목욕洗頭沐浴 · 체두剃頭(이발) · 소아단유小兒斷乳 · 온귀瘟鬼(염병) · 상사喪事 · 종시種蒔(씨뿌리고 모내기) · 재식栽植 · 목양牧養 등은 마지막에 실려 있다.

필자 김만태(金萬泰)



천기대요 | 1738 | 국립민속박물관

천도굿

정의 사람이 죽은 다음 이승의 모든 한과 원을 벗고 풀은 후, 저승으로 무사히 옮겨가 극락왕생極樂往生하기를 기원하는 무속의례.

내용 한국인에게 죽음은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조금 전까지 이승에서 생활하고 호흡하던 가족이 저승으로 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대 사건으로, 이러한 죽음의 충격을 수용할 수 있는 일련의 의식절차가 나름의 틀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 대부분의 무속의례는 초점을 이승에 맞춘 채, 현실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반면에, 저승으로 떠나간 망자亡者의 무사 천도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굿은 저승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의식이다. 이 천도굿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무당이 주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주재하는 여느 상례喪禮·장례葬禮 의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망자가 무사히 저승으로 가기를 기원한다는 측면에서 이승과 저승을 모두 아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천도굿은 망자가 이승에서 탈 없이 떠나가기를 기원하는 부분과 저승에서 여러 신령의 도움으로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자를 일러 '이승굿'이라 하는데, 이승굿 부분에서는 이승을 관장하는 여러 신령에게 망자가 갑작스럽게 이승을 떠났음을 아뢰고 망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든 한이 풀리기를 기원한다. 후자는 '저승굿'이라 하는데, 저승의 여러 신령이 망자를 무난하게 저승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원하고, 망자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다양한 의례로 보여준다. 천도굿을 통해 남은 가족들은 망자와의 갑작스러운 작별을 수용할 수 있고, 죽음의 모습을 직접 인식하면서 슬픔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천도굿을 한 뒤에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천도굿 이전과 상당히 다르다.

지역사례 천도굿은 지역에 따라 명칭과 굿거리 짜임, 죽음을 바라보는 의식이 꽤나 다르다. 대표적인 천도굿으로는 서울 지역의 '진오기굿', 호남 지역의 '씻김굿', 동해안 지역의 '오구굿' 등이 있다. 이 밖에 익사자를 위한 '넋건지기굿', '수망굿'이 있으며, 혼인을 올리지 못하고 죽은 이를 위한 '혼사굿'이 있다. 이처럼 명칭이 다양한 것은, 죽음이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 충격을 풀어주는 과정과 절차가 다양했음을 의미한다.

서울 지역에서 행하는 '진오기굿'은 굿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과 망자가 이승을 떠나가는 부분, 망자가 저


새남굿 도령돌기


통영 오구새남굿


진도씻김굿

천도굿 | 국립민속박물관

승으로 들어가는 부분, 굿의 마무리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보여준다. 저승사자가 와서 망자를 놀린 후 저승으로 데려가는 과정과 바리공주의 뒤를 따라 망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는 과정 보여주기, 베를 갈라 망자가 저승으로 무사히 갔음을 알리기, '말미상'의 흔적을 통해 망자가 새로운 존재로 변환되었음을 알려주기 등 다양한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망자의 천도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의 바탕에는 죽었다고 해서 곧장 망자가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승과의 단절을 위한 의식이 있어야 저승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또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 굿이라는 의례를 거쳐 이승의 삶이 죽음이라는 저승의 또 다른 삶으로 완전하게 탈바꿈한다는 의미가 서울 진오기굿에 내재되어 있다.

동해안 '오구굿'은 굿의 시작 부분과 망자를 불러 모시는 부분, 망자가 이승을 떠나는 부분, 저승으로 들어가는 부분, 망자를 축원하는 부분, 굿의 마무리 부분으로 이뤄진다. 이 굿은 강신무가 아닌 세습무가 주재하는 굿이어서, 망자를 불러 모시거나 축원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망자를 굿판에 불러 모시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망자가 죽어서 이승을 떠났다는 의미이다. 아직 완전하게 저승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망자를 불러내야 굿이 진행된다고 믿는다. 망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조상굿도 망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데기의 이야기를 구송口誦하는 〈발원굿〉이 남아 있지만, 망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는 〈극락다리놓기〉가 먼저 나온다. 오구굿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보다는 망자가 저승으로 잘 가기를 비는 축원에 치중한다. 〈판염불〉에서 이러한 의미가 확인되는데, 불교 염불을 암송하는 이 부분은 굿만으로 망자를 저승으로 말끔히 보낼 수 없어서 '축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다. 오구굿에서는 죽음과 삶이 다른 차원이고, 죽음이 오면 삶은 곧장 단절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미 이승을 떠난 망자의 혼령을 굿판에 모셔와야만 했다. 삶이 갑작스럽게 단절되어 충격을 받은 망자의 혼령을 다시 모셔와 위로해주는 것이 오구굿의 의미이다.

호남 지역의 '씻김굿'은 굿의 시작 부분과 망자가 이승을 떠나는 부분, 망자를 굿판에 청하는 부분, 망자가 저승에 들어가는 부분, 망자를 축원하는 부분, 굿의 마무리 부분으로 이뤄진다. 역시 세습무가 주재하는 굿이어서 망자를 굿판에 청하고 축원하는 부분이 있다. 씻김굿은 굿 이름 그대로 망자를 씻어 보내는 데 중점을 둔다. 넋을 올려 망자를 굿판에 불러 모신 후 다양한 제차第次를 통해 망자의 천도를 보여준다. 먼저 고를 풀어 망자가 가진 한과 원이 말끔히 풀리고 있음을, 그다음으로 망자를 상징하는 영돈을 물로 씻어 망자의 한이 말끔히 씻기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길을 닦아 망자가 저승으로 무사히 가고 있음을 각각 보여준다.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의례를 강조한 것이 씻김굿이다. 결국, 씻김굿은 삶과 죽음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과 함께, 삶의 세계에 속했던 망자가 온전하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천도굿의 특징은 망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진오기굿에서는 바리공주의 뒤를 따라 저승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도령돌기〉를 통해 보여주고, 베를 갈라 온전한 죽음이 이루어졌음을 알린다. 동해안 '오구굿'에서도 극락다리를 놓고 길을 갈라 저승으로 망자가 갔음을 보여준다. 호남의 '씻김굿'에서는 고를 풀고, 씻긴 후 길을 닦아 저승으로 망자를 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에, 이처럼 시각화한 의례가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천도굿의 의의로는 다양한 굿거리의 짜임을 통해 망자와의 작별을 체계화시켰다는 점, 죽음이 주는 공포와 불안감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점, 죽음이 삶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죽음을 수용하게 해준다는 점, 작별한 가족이 무사히 저승으로 들어가 새로운 존재로 변모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실의 모든 것들은 눈앞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만큼은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천도굿이 행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굿은 계속 행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동해안 망자혼례굿(윤동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동해안 수망오구굿(윤동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서울 진오기굿(홍태한, 민속원, 2005), 씻김굿 무가(이경엽, 박이정, 2000), 전남 영암씻김굿(이경엽,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황해도 진오기굿(홍태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필자 홍태한(洪泰漢)

천도재
薦度齋

정의 망자亡者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

역사 천도재薦度齋는 고대 인도의 조령제祖靈祭를 불교에서 수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인도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프레타(pręta)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조령祖靈이 되는데, 조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를 지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의 프레타는 귀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굶주려 있고 미혹과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생전에 지은 선악과 무관하게 조상으로 좌정하는 유교 조상신과 달리, 종교적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불교에서도 중유中有의 존재는 음식 냄새를 맡음으로써 생을 이어간다고 보면서 조령제를 수용하였다. 그 뒤 중국불교에서는 굶주린 아귀에게 음식을 베푸는 법회라 하여, 이를 '시아귀회施餓鬼會'라고 불렀다. 이처럼 조령제는 윤회사상에 입각한 불교 중유설의 성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망혼을 위한 의례에 종교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시아귀회를 거쳐 오늘날의 천도재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망자를 위해 재를 올린 기록이 등장하며, 고려시대 이후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사십구재四十九齋인 칠칠재七七齋에서부터 기재忌齋에 이르기까지 상례喪禮·제례祭禮 기간에 다양한 천도재가 활발하게 치러졌다. 이 외에도 970년(광종 21)에 수륙재水陸齋를 행한 기록과 1106년(예종 원년)에 우란분재盂蘭盆齋를 행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데, 당시 시왕신앙十王信仰이 성행한 점으로 미루어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또한 고려시대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중반까지는 망자를 위한 불교의례를 주로 '추천追薦'이라 불렀다. '천도薦度'라는 용어는 고려 말에 처음 등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혼상제를 비롯한 모든 생활규범이 유교적 질서로 대체되는 가운데 사후구제를 제시하는 천도재는 유교의 상례·제례와 더불어 나란히 존속해왔다. 1420년(세종 2)부터 불교식 상제喪祭에 해당하는 모든 천도재를 수륙재로 치르도록 하는 등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도 천도재는 조선시대 내내 성행하였다. 18세기 이후 기존의 문헌들을 간추려 펴낸 『범음집梵音集』·『작법귀감作法龜鑑』 등의 의식집 내용이 천도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말해준다.

내용 불교에서는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의례를 '재齋'라 하며, 망자를 위해 올리는 재를 '천도재'라 한다. 천도薦度의 '천薦'은 '천거하다', '도度'는 '법도'의 뜻이다. 글자 자체의 뜻만으로도, 천도는 불보살의 힘으로 망혼을 극락과 같이 좋은 곳에 보내줄 것을 천거하는 법식임을 알 수 있다. 장례



천도재(봉원사 영산재) | 서울 서대문구 | 구미래



천도재(진관사 수륙재) | 서울 은평구 | 구미래

를 마친 이후 망혼에게 지내는 불교의례는 모두 천도재에 해당하며, 기일이나 명절에 사찰에 와서 지내는 제사도 '재'로 수용되면서 '천도'의 뜻을 지닌다. 특히 임종 후 중유에 머무는 동안 치르는 사십구재는 천도재의 핵심을 이룬다. 이 기간에 천도재를 지냄으로써, 망자의 영혼이 더욱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천도재는 의례의 목적과 양상에 따라 사십구재·수륙재·영산재·생전예수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십구재는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 중유로 머무는 49일 동안 치르는 천도재이며, 수륙재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한 무차평등無遮平等의 천도재라 할 수 있다. 영산재靈山齋는 석가모니가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하던 당시 법회의 환희를 재현하여 치르는 천도재이며, 생전예수재는 내세를 위해 명부세계의 심판관인 시왕[十王]을 모시고 생전에 미리 천도재를 올려 공덕을 쌓는 의례이다. 이 밖에 백중百中이자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는 날인 음력 7월 보름에 승려들을 공양하면서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우란분재의 경우는 특정한 날에 치르는 천도재에 해당한다. 이들 천도재는 대부분 고려시대부터 성행했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각 사찰에서는 명절이나 특정한 때에 다양한 천도재를 지내고 있다.

천도재는 의례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치러지지만, 기본적인 의례구조는 유사하다. 가장 간략한 구도를 살펴보면, 천도재의 대상을 의례공간으로 청해 모시고, 생전에 지은 업을 씻는 정화의식을 거친 다음, 불보살 앞으로 나아가 공양과 불공을 올리며, 망혼에게 시식施食을 대접하고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의례를 마친다. 이때 극락천도를 위해 불보살에게 올리는 기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망혼을 향해 끊임없이 법문을 들려줌으로써 미혹한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천도재에는 유교제사의 음식공양과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공양法供養이 결합되어 있다. 이처럼 민간의 제사를 재에 접목했기 때문에, 망혼을 모신 영단 앞에서 치르는 시식의 단계는 제사와 거의 흡사하다. 그러나 불교의 재齋는 제사와 뚜렷이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재齋는 불佛·법法·승僧이라는 삼보三寶의 범주 속에서 이루어진다. 불보살[佛]을 모시고 승려[僧]의 집전과 불법[法]의 염송으로 의식을 치르므로, 영단 앞에서 유족이 올리는 의식은 일반제사와 다를 바 없으나 승려의 염송 내용이 곧 제사의 의미를 규정하는 텍스트의 구실을 한다. 둘째, 제사의 의미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효의 실천이라면, 재는 이에 더하여 망혼을 더욱 좋은 내세로 인도하기 위한 천도의 의미를 지닌다. 천도의 방식은 불보살의 가피加被를 기원함과 동시에, 망자에게 불법을 들려줌으로써 스스로 깨우침을 얻도록 하는 불교 특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셋째, 개인을 위한 천도재라 하더라도 천도되지 못한 채 떠도는 모든 고혼孤魂과 지옥중생을 함께 의례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불교에서 중시하는 회향廻向의 실천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이 지은 선행의 공덕을 중생을 위해 돌리는 것이다. 넷째, 상차림에서 육류·어류와 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곧 불교 재물齋物과 일반 제물祭物의 기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다.

특징 및 의의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후의례는 유교식 상례·제례가 주축을 이루었지만, 불교 천도재와 무속 넋굿이 각기 담당하는 영역은 비교적 뚜렷하였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의식의 변화로 사후의례가 약화됨에 따라, 천도재가 점차 전통적 죽음의례에서 통합적 구실을 담당해가고 있다. 불교적 믿음과 무관하게 탈상脫喪을 위해 사십구재를 선택하는가 하면, 집에서 제사를 치르기 힘든 이들이 사찰에 의뢰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생전의 문제로 눈을 감지 못하는 망혼의 해원解寃은 무속의 넋굿이 맡아왔으나, 무속환경이 위축되면서 이러한 기능을 천도재에서 폭넓게 수용해가고 있다. 죽음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할지 몰라도,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념적 문제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본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도재는 사회적·문제적 죽음에 대응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공동체적 제의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갈등으로 초래된 문제적 죽음을 맞아, 종교를 초월한 일종의 위령제로 망혼을 천도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천도재

는 사찰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사회단체와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실행되고 있어, 의례의 당위성을 공감하는 공동체구성원이 모두 의례주체가 되는 천도재의 궁극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하는 폐쇄적 구도에서 벗어나 광장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현상은, 불교의 죽음의례가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성찰하며 화합으로 이끄는 자생적 힘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도재가 앞으로 어떠한 변화의 경로를 거칠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불교 상제례 안내(대한불교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출판사, 2011), 불교 제례의 의미와 행법-시아귀회를 중심으로(정각, 한국불교학33, 한국불교학회, 2002), 여말선초 불교의례의 축소와 천도재의 역할(이응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불교 천도재의 중층적 위상(구미래, 역사민속학28, 역사민속학회, 2008), 한국불교의 일생의례(구미래, 민족사, 2012).

필자 구미래(具美來)

천인천자문
千人千字文

정의 새로 태어난 아들의 무병과 장수, 번성을 바라며 1천 명에게 천자문千字文 중 한 자씩을 쓰게 하여 만든 천자문 책.

내용 천인천자문千人千字文은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천 명의 지인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탁하여 한 글자씩을 받아 만든 책이다. 천인의 지혜가 아이에게 전해져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뜻을 지니며, 흔히 돌을 맞이하는 아이의 돌상에 놓는다. 예로부터 이렇게 하면 천인의 식견이 모두 아이에게 전해진다고 믿었다. 특히 과거 급제를 한 진사進士나 생원生員을 찾아다녔는데, 글을 빌려 만들었다 하여 '걸자乞字 천자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썼기 때문에 만인문萬人文, 혹은 글을 익혀서 머리가 세도록 장수를 빈다는 의미로 백수문白首文이라고도 하였다.



천인천자문 | 1934 | 국립민속박물관

천인천자문은 천 사람의 글씨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체가 모두 다르다. 글자를 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글자의 맨 왼쪽에 써야 했으므로, 1인 한 글자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다. 천자문 중 한 자씩 글자와 훈訓을 직접 쓰고 이름과 서명(혹은 인장)을 찍었는데, 날인한 도장도 각양각색이다. 또한, 지인이라고는 하지만 천자문의 순서대로 한 글자씩을 받으면서 빈손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큰 결례였다. 그래서 조기나 북어 같은 어물魚物이나 술을 준비해 부탁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징 및 의의 천인천자문은 자식의 훌륭한 장래와 학문 성취,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천 명이나 되는 지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정성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풍속이다. 또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한 글자를 정성껏 써주는 애정이 돋보이는 민속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불과 민속-천인천자문, 만인문화의 진수(장장식, 화재안전점검120, 한국화재보험협회, 2007), 생활문화와 옛 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0).

필자 이해준(李海濬)

철상
撤床

정의 제상祭床 위의 모든 음식과 제기를 치우는 일.

내용 철상撤床은 사신辭神과 납주納主를 행하고 나서 제사음식과 제기를 치우는 일이다. 국가제사에서는 음식 중의 하나를 옆으로 조금 옮겨놓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나, 가례家禮에서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로서 이를 행한



철상 | 경기 파주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다. 술을 먼저 치우고 음식을 나중에 치운다.

술을 거두는 일은 주인의 부인인 주부가 담당한다. 주부는 사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잔과 주전자 및 다른 그릇에 남아있는 술을 거두어서 모두 병에 넣고 봉한다. 이 술을 '복주福酒'라고 한다.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서는 "우선 단술과 술을 거두고서 북쪽을 향해 서며, 그 나머지는 먼저 진설한 것부터 거둔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 고기 등 음식은 모두 평상시에 쓰는 그릇에다 옮기는데, 처음 진설한 것을 먼저 옮긴다. 주부는 제기를 씻어 보관하는 것을 살핀다.

복주와 음식은 친우와 가족 등의 대접에 사용한다. 주인은 복육福肉을 살펴서 나누고 종류별로 조금씩 합에 넣어 술과 함께 모두 봉한다. 종에게 글을 주어 보내서 친우에게 제사음식을 전하게 한다.

그러고는 족속들의 자리를 마련한다. 각자 자리가 정해지면, 헌수獻壽와 수작酬酌을 한다. 자제 중 어른 한 사람이 조금 앞으로 나와 서면, 집사 한 사람이 주전자를 들고 오른쪽에 선다. 한 사람은 쟁반과 잔을 가지고 왼쪽에 선다. 헌수하는 사람은 홀笏을 꽂고 무릎을 꿇고서 주전자를 받아 술을 따른다.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받아 "제사가 이미 끝나 조고께서 기쁘게 흠향하셨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모친某親께서는 오복을 갖추어 응하셔서 일가를 보전하고 집안을 편안하게 하소서."라고 축사하고, 잔을 드는 자에게 주어 존장의 앞에 놓는다. 장자는 홀을 꺼내 든다. 존장은 술을 들어 마신다. 마치면, 장자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가 자리로 돌아가서 뭇 남자들과 함께 모두 재배한다. 네제禰祭에 대해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는 "모여서 먹기만 하고 경례慶禮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존장이 주전자와 장자의 잔을 가져오도록 명하여 앞에 놓고 직접 술을 따르며 "제사가 이미 끝났으니 오복의 경사를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축사한다. 집사에게 명하여 차례로 자리에 나아가 술을 두루 따르게 한다. 장자가 나아가 무릎을 꿇고 받아서 마신다.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가서 선다. 뭇 남자도 나아가 읍하고 물러나 서서 마신다. 장자는 뭇 남자와 함께 모두 재배한다.

부녀들은 안에서 여존장女尊長에게 헌수한다. 남자들의 의례처럼 하는데, 무릎만은 꿇지 않는다. 마치면, 육식을 드린다. 모든 부녀는 남존장에게, 남자들은 여존장에게 헌수한다. 곧 면식麵食을 드린다. 마지막 헌수는 내외 집사가 각각 내외 존장에게 행하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술을 따르고 모두 들기를 기다렸다가 재배하고 물러간다. 미식米食을 드린다. 그런 뒤에 두루 주례酒禮를 행하고 간간이 제사음식을 드린다. 술과 음식이 부족하면 다른 술과 음식으로 보탠다. 장차 파하려 할 때, 주인은 사내종에게 제사음식을 나누어주고, 주부는 제사음식을 내집사에게 나누어준다. 미천한 자에게도 두루 미치게 하여 그날로 모두 없앤다. 받은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곧 자리를 치운다.

그런데 기일에는 철상하고 남은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도 않는다. 이것은 기제忌祭를 상례喪禮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구준邱濬은 "철준撤餕은 단지 모여서 먹기만 할 뿐, 축하하는 예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철상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긴 음식은 술이다. 술 자체가 귀했을 뿐 아니라, 신령의 기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주이며, 이를 족속들이 골고루 나누어 마시는 것을 조상이 내려준 복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家禮儀節, 國朝五禮儀, 星湖全集,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철시복반
撤匙覆飯

정의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의 뚜껑을 닫는 절차.

내용 철시복반撤匙覆飯은 수저를 걷고 메의 뚜껑을 덮는다는 의미이다. 제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어 제주祭主나 참가자들이 신령을 보내드리는 절차인 사신辭神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철갱진수', 즉 탕 그릇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 후, 숭늉에 밥을 세 숟가락을 떠서 말고 숟가락을 숭늉 그릇에 둔다. 잠시 기다린 후, 숭늉 그릇에 놓인 숟가락을 시접匙楪에 옮겨 놓고, 시접의 젓가락을 '정저', 즉 가지런히 정돈하여 시접에 다시 놓은 후, 메의 뚜껑을 덮는다.

특징 및 의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술이지만, 한국인의 일상적 밥상처럼 메(밥)와 갱(국)도 제사에서 필수적이다. 신령이 모든 제수를 다 흠향할 수는 없지만, 메와 갱에 수저와 젓가락을 이용하여 신령에게 올린 뒤 다시 수저와 젓가락을 물리침으로써 살아있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조상 신령에게도 음식을 잘 대접하려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숭늉에 밥말기(경북 상주)


메 뚜껑을 닫음(경북 봉화 충재 권발 종가)

철시복반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禮疑類輯, 종가의 제례와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5).

필자 이희재(李曦載)

첨작
添酌

정의 음식 드시기를 권하면서 술을 세 번 따라 술잔을 채우는 의식.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사시제四時祭」 유식조侑食條의 첨작添酌은 모두 같다. 주인이 주전자를 가지고 올라가 모든 신위의 술잔에 가득 부어 채우고 향안의 동남쪽에 선다. 『사례편람』의 주에서는 부위부짐祔位不斟(부위에는 따르지 않는다)과 반주고처反注古處(주전자는 제자리에 놓는다)한다고 하였다.

내용 음식을 권하는 유식侑食에는 첨작과 삽시정저揷匙正箸가 있다. 첨작은 종헌終獻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祭主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가 주전자를 들어 종헌 때 7부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 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제주가 신위 앞에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다른 술잔에 술을 따라 제주에게 준다. 제주가 받아 다시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종헌 때 술을 채우지 않은 잔에 세 번 나누어 따르고 두 번 절한다. 첨작은 제주가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도 무방하다.

특징 및 의의 종헌이 끝난 지 얼마 후 제주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가 주전자를 들어 종헌 때 7부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 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우는 의식이다.


첨주잔으로 술을 부어 첨작(경기 고양 율곡 이이 종가)


메 뚜껑에 술을 부어 첨작(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첨작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첫국밥

정의 임신부가 출산 후에 처음으로 먹는 미역국과 쌀밥.

내용 미역국과 쌀밥은 먼저 삼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정성을 바치고, 그것을 내려 받아 산모가 먹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후산後産까지 한 뒤에야 첫국밥을 먹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첫국밥은 삼신이 내린 복福 있는 음식이다. 일종의 음복飮福이라 할 수 있다. 산모는 첫국밥을 먹음으로써 삼신의 가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산통産痛이 시작되어 산실産室을 꾸미려면 우선 짚자리를 들이고, 윗목에는 미역·쌀·간장 등으로 삼신상을 보아둔다. 삼신에게 순산을 빌기 위함이다. 다행히 순산하면, 임신부는 삼신상의 미역과 쌀 등을 내려 마련한 첫국밥을 대접받는다. 첫국밥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또는 산모를 구완하는 사람이 끓이는데, 때로는 남편이 하기도 한다. 첫국밥은 산모가 먹기 전에 먼저 삼신에게 바쳐서 순산의 고마움을 표한다. 이렇게 한 뒤에 산모가 첫국밥을 먹는다. 삼신상에 올렸던 미역과 쌀 등을 내려서 첫국밥을 마련했지만, 이를 다시 삼신에게 먼저 올린 다음 산모가 먹었던 것이다. 즉, 첫국밥은 삼신이 두 차례에 걸쳐 내려 준 복福 있는 음식인 셈이다.

첫국밥의 미역국은 육류를 일절 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간장으로 간을 하여 소국(맹미역국)으로 끓여낸다. 삼신은 맑은 신령이기에 비린 것을 넣지 않아야 한다. 만일 육류를 넣으면 부정 탄다고 한다. 그러나 동해안 남부지역에서는 미역국에 명태나 옥돔 등을 넣기도 한다. 첫국밥의 미역은 줄기를 걷어내고 잎으로만 끓인다. 산모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미역을 볶으면 아기 얼굴에 부스럼이 난다고 하여, 미역도 기름에 볶지 않는다. 물은 맑은 물만 쓰고, 쌀뜨물을 쓰지 않는다. 가정 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산모가 첫국밥을 먹기 전에 참기름을 뿌려 주기도 한다.

이러한 첫국밥은 단순한 미역국과 밥이 아니다. 삼신이 산모에게 내려 준 음식이기에, 여기에는 여러 신비한 힘이 내재하여 있다. 첫국밥을 먹을 때에 손 없는 방위를 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첫국밥은 산모가 먹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조금이라도 먹어야 할 음식이다. 출산의 고통으로 기진氣盡했다 해도 미역국을 몇 숟가락 정도라도 떠서 먹여야 한다. 그래야 삼신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하여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었다.

첫국밥은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젖의 다과多寡에 영향을 미친다. 첫국밥을 잘 먹어야 산모의 젖이 잘 돌기 시작하고, 아기도 무탈하게 자랄 수 있다. 이후의 젖에 대한 걱정을 덜려면, 첫국밥을 먹기 전에 미역국의 국물을 유두乳頭에 대략 세 차례 바른다. 이는 젖꼭지에 직접 삼신이 내린 미역국을 접촉하는 상징적 행위이다. 첫국밥은 수태 능력도 지닌다. 불임 여성이 산가의 첫국밥을 얻어먹으려는 이유이다. 그러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첫국밥 내어주기를 꺼린다. 자칫 잘못하면 산모가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첫국밥은 아기의 눈을 밝게 하는 힘을 지닌다고 한다. 그래서 산모는 미역국을 세 차례 떠먹은 다음, 산모의 혀로 아기의 눈을 세 번 핥아준다. 아기에게 형제가 있으면, 첫국밥을 먼저 형이나 언니에게 먹여야 새로 태어난 아기를 시샘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아우 타지 말라고 첫국밥을 형들에게 우선 먹이는 풍습이다. 첫국밥 다음의 두 번째 국밥부터는 상대적으로 그리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후로는 미역을 기름에 볶거나 고기를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해산국밥일 뿐이다.

지역과 집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950~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미역은 쉽게 구하기 어려웠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역국 대신에 맑은장국·뭇국·감잣국·시래깃국·배춧국·된장국·호박죽·수제비 등도 첫국밥으로 많이 먹었다. 제주도에서는 메밀수제비나 옥돔·다금바리 등을 넣은 미역국을,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김국을 첫국밥으로 흔히 먹었다.

산모가 훗배앓이를 한다면, 첫국밥을 먹기 전에 차가운 꿀물을 먼저 먹는다. 따뜻한 꿀물을 먹으면 태가 올라붙는다 하여 삼갔다. 또 막걸리를 먹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첫국밥은 출산 후 산모가 먹는 첫 번째 음식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순산을 기원하기 위하여 삼신상에 올렸던 미역과 쌀은 이미 삼신이 흠향했던 제물이다. 이 제물로 마련한 미역국과 쌀밥이 첫국밥이다. 이 첫국밥을 다시 삼신에게 바치고, 삼신이 먹었던 첫국밥을 내려서 산모가 먹는다. 첫국밥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삼신의 흠향이 있었다. 이를 산모가 취하는 것은, 삼신의 가호를 받고 그의 능력을 전수받는 또 다른 의미의 음복이기도 하다. 따라서 첫국밥에는 삼신을 산모와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새 생명을 온전하게 키워내려는 의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9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필영(李弼泳)

첫나들이

정의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는 행위.

내용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와 아이는 삼칠일 동안 집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조심히 생활하였다. 삼칠일이란 일종의 금기기간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삼칠일 동안 대문에 금줄을 쳐서 새 생명이 탄생한 공간과 외부세계를 격리하였다. 갓 태어난 아기는 외부세계의 부정不淨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 아이를 오염된 일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였던 것이다. 태어난 지 삼칠일이 지나야 비로소 집 밖을 나갈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개는 백일이 지나야 처음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었다. 아프지 않고 백일을 무사히 넘겨야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아프거나 탈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나들이는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첫나들이를 할 때는 아이가 입은 상의의 목덜미 부분에 바늘로 고추를 꽂아 혹시 모를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갓 태어난 아이가 첫나들이를 가는 곳은 주로 외가인 경우가 많았다. 이때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아이의 콧등이나 이마에 솥 밑의 숯검정을 묻혀서 내보냈다. 아이를 부정한것으로 부터 방지하는 방법이었다. 외가에 도착해서도 곧바로 방으로 향하지 않고 일부러 변소를 거쳐 방으로 들어갔다. 혹 오는 길에 아이에게 붙었을지도 모르는 부정한 것을 변소에 모두 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첫나들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는 행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때 '집 밖'이라 함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상징적 공간을 의미한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외부의 부정한 기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 삼칠일 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하여 신성한 탄생 공간에서 아이를 보호하였다. 삼칠일이 지난 뒤부터는 서서히 바깥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첫나들이는 아이가 처음으로 안전한 공간을 벗어나 오염된 세속의 세계로 나갔음을 의미한다. 집 밖의 좋

지 않은 기운이 첫나들이하는 아이를 해할까 염려하여 아이의 얼굴에 숯검정을 묻히거나 옷에 바늘과 고추를 꿰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부정한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삼칠일(구미래,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인의 일생의례-경기도2(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필자 조선영(曺善映)

첫날밤

정의 혼인한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함께 지내는 밤. 또는 혼례를 마친 신랑이 '관례벗김' 옷을 입고 신랑·신부가 처음으로 같이 하는 화촉華燭의 밤.

내용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년)이 『가례작의家禮酌儀』에서 우리나라 풍속은 신부 집에서 혼례를 행한다고 한 것처럼, 대개 신랑·신부는 첫날밤을 신부 집에서 맞이하였다. 그러나 간혹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당일 우귀于歸를 하게 되면 첫날밤을 신랑 집에서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 말의 혼례를 기록한 『광례람廣禮覽』에서는 신방제구新房諸具로 병풍 대·중·소 각 하나, 등메 한 쌍, 책상, 연갑硯匣(벼루함), 벼루, 붓, 먹, 색간지色簡紙(색깔이 있는 편지지), 침석寢席, 이불, 요, 베개, 자적보紫的褓(이불보로 사용), 관건盥巾, 빗, 요강, 촛대, 부용향芙蓉香, 초립草笠(갓끈도 갖춤), 복건幅巾, 청도포靑道袍(푸른 모시로 만들어 반가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입던 도포), 녹대綠帶, 색혜色鞋 등을 신부 집의 신방에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방에 놓는 병풍은 꽃, 나무, 새 등을 그린 화조도花鳥圖 병풍을 사용하는데 특히 암수 새들의 모습을 다정하게 표현하여 부부간의 화목과 행복을 기원했다. 촛대에는 붉은색 홍촉을 꽂아 첫날밤을 밝혔는데 이것을 '화촉華燭'이라 하며, 경사스러움의 의미를 가진다. 즉 '화촉을 밝힌다'는 말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같이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신랑·신부의 이불과 요는 다복多福한 사람이 만들었다. 초야初夜에 덮고 베고 자는 원앙금침鴛鴦衾枕의 바탕은 청색, 깃은 적색으로 만들어 부창부수夫唱婦隨를 상징했다. 덧붙여 전쟁이 일어나면 금침衾枕을 모두 뜯어 군복軍服을 지었다고 한다. 만약 긴급을 알리는 봉화烽火가 오르면 여염閭閻의 부인네들은 이불 겉을 뜯어서 전복戰服을 만들고, 이불속은 바지와 저고리, 이불깃은 주의朱衣, 周衣(웃옷과 웃속은 여분의 바지와 저고리, 붉은색 요디는 동달이협수夾袖의 소매통을 만들었다. 그리고 베갯잇은 한 켤레의 행전行纏, 베개는 전통箭筒(화살통)을 만들어서 지아비가 전장戰場에 출전케 했다. 우리 선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난 극복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신방의 제구 가운데 초립, 복건, 청도포는 신랑의 '관대벗김'에 쓰이는 것이다. 혼례식이 끝난 후 신랑은 신방으로 안내되어 잠깐 대좌臺座시키는 방합례房合禮 후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지어놓은 청도포를 입힌다.

북부지방의 신랑·신부가 교배交拜 뒤에 함께 먹는 첫날밤의 상차림 음식에 대해 『조선요리법朝鮮料理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신부 집에서 신랑과 신부



동방화촉 | 국립민속박물관



촛대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봉황무늬 베갯모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가 받는 첫날 저녁상의 음식은 밥(흰 찰밥, 팥밥 각 한 그릇), 국(미역국, 곰국 각 한 그릇), 김치, 깍두기, 생선조림, 자반(암치나 건대구, 약포, 북어피움 등), 장아찌(무숙장아찌, 오이장아찌 등), 나물(미나리, 숙주, 콩나물 등), 구이(가리, 너비아니 등), 편육, 전유어, 조치(고추장찌개, 젓국찌개), 젓갈(명란젓, 새우젓 등), 간장, 초간장 등이다. 상은 밥, 국 각 한 그릇과 신랑·신부의 수저 두 벌을 나란히 놓아두고, 곁상에 밥, 국 각 한 그릇을 놓는 겸상으로 차리고, 흰 찰밥은 미역국, 팥밥은 곰국과 함께 놓았다. 즉 부부가 함께 겸상할 수 없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란히 앉아서 밥과 국 각 한 그릇을 신랑·신부가 나누어 먹도록 준비한 상차림이다. 첫날밤의 상차림에는 신랑·신부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고, 순조로운 자녀 생산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신부가 신방新房에 들어가기 전에 살매기떡(쌀가루와 팥으로 된 설기, 공방떡, 살떡)을 쪄서 장독 위에 시루째 가져다 놓았다가 이웃과 나누어 먹었는데, 그 이유는 공방空房이 풀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첫날밤을 치를 시간이 되면 방 윗목에 주안상을 차렸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주안상에는 과일, 떡, 유과 등의 안주 이외에 쌀·물·실·돈·술 등을 그릇에 담아 놓고 각각 뚜껑을 덮어놓았다. 이를 '신랑상 잡기'라고 하는데 뚜껑을 덮어놓은 그릇 가운데 신랑이 무엇을 먼저 열어보는가에 따라 신랑·신부의 미래를 점쳤다. 즉, 뚜껑을 연 그릇에 쌀이 있으면 부부가 굶지 않고 무탈하게 살고, 물이 있으면 시원하게 잘 살며, 실이 있으면 명이 길고, 돈이 있으면 재물이 많을 것이라고 여겼다. 반면술이 있으면 신랑이 술을 좋아해서 신부가 힘들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빈 그릇에 뚜껑을 덮어 놓기도 했는데 이것을 먼저 열면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점쳤다.

신방 윗목에는 주안상, 아랫목에는 원앙금침을 폈다. 그리고 신랑은 동편, 신부는 서편에 자리를 잡았다. 수모手母는 신랑·신부를 정해준 자리에 앉히고, 신부에게 신방에서의 몸가짐을 알려준 다음 나간다. 신랑은 신부가 옷 벗는 것을 도와주고, 신부도 신랑이 겉옷 벗는 것을 도와준다.

전라북도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주안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같이 술[합환주合歡酒]을 마시며 한마음 한뜻이 되는 믿음을 다지는 혼속婚俗이 있었다. 신랑·신부는 주안상을 물린 후 촛불을 밝히고 방문 쪽으로 병풍을 두르고 나서야 자리에 들었다. 이 첫날밤에 일가친척들은 문밖에서 창호지를 뚫고 신방을 엿보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신부를 보쌈해가는 일 같은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방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신방 앞을 서성거리며 신랑과 신부가 잠들 때까지 지켰다고 한다. 또한 신방지킴이 부녀들은 신방의 불이 꺼지면 자리를 떠서, 신방을 차린 집안의 주위를 밝게 함으로써 변(좋지 않은 일)을 막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채와 바깥채 처마에 꽃장등-長燈을 달았다.

특징 및 의의 신랑·신부의 첫날밤은 두 사람의 백년해로와 행복한 미래를 염원하는 시간이므로, 첫날밤을 위한 신방 준비와 절차 하나하나는 부부의 화합과 건강, 다산多産을 소망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家禮酌儀, 廣禮覽, 四禮便覽, 기러기 아범의 두루마기(강재철,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원앙금침(이길표, 우리나라 혼례에 나타난 색 배합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13, 성신여자대학교, 1980), 조선요리법(조자호, 경성가정여숙, 1939), 한국의 혼속연구(김종홍, 대성문화사, 198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길표(李吉杓)

청기
請期

정의 주육례周六禮의 다섯 번째 혼례 절차로, 신랑 집에서 기러기를 예물로 준비하여 신부 집에 혼인 날짜가 언제가 좋을지 물어본 후 신부 집의 주혼자가 겸손히 혼인 날짜의 결정을 사양하면 신랑 집에서 점을 친 날짜를 알리는 의식.

역사 청기請期는 중국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이 저술했다는『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이르러『가례家禮』의 혼례가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네 가지 절차로 축약되면서『의례』의 청기는『가례』에서 간략히 의미만 언급되고 있다.

내용 『의례』의 기록에 따르면 청기 때는 기러기를 예물로 삼는다. 빈賓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들이는 길일을 정할 것을 청하고, 신부 집의 주혼자가 이를 사양하면 신랑 집에서는 점을 친 길한 날짜를 알린다. 그 의식절차는 납징納徵의 예와 같다. 청기 때 사자가 말하기를 "제가 이미 여러 번 삼가 어른의 명을 따랐나이다. 다만, 삼족三族에 걸쳐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가 저를 보내어 빠른 시일 내에 길일을 확정하기를 바라옵나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신부 집의 주혼자가 "제가 이전에도 신랑 집 어른의 뜻을 따랐으니 이번에도 명을 받자올 따름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면 사자가 "○○○가 저에게 명을 내리기를 어른께서 결정하시도록 청하게 하였나이다."라고 한다. 이에 신부 집의 주혼자가 "저는 단지 명을 받잡길 바랄 뿐입니다."라고 답한다. 사자가 말하기를 "○○○가 저를 보내어 어른께서 길일을 정하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마다하시니 그럼 제가 감히 신부를 맞이할 날짜를 알리겠나이다."라고 한 뒤, ○일에 신부를 맞아가겠노라고 아뢴다. 그러면 신부 집 주혼자가 "어찌 삼가 기다리지 않겠나이까."라고 답한다. 『가례』에서도 청기의 의미에 대해 성혼成婚할 기일을 청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년)은 『가례작의嘉禮酌儀』에서 "며칠이 지난 뒤에 청기의 예를 행한다. 고례古禮에는 청기에 기러기를 썼다. 청기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할 날을 청하는 것으로 신부 집에서는 일단 이를 사양한다. 그러면 신랑 집에서 날을 정하여 알리는 것이다. 청기의 예는 납징 뒤에 하는 것이나, 지금은 풍속을 따라 먼저 청기를 한 다음 납징納徵을 한다. 『가례』에는 청기의 절차가 없다. 양신제陽信齊는 "혼례에는 육례六禮가 있는데 『가례』에는 문명問名과 납길納吉을 생략하고 납채와 납폐만을 취하여 간편하게 하고 있으나, 친영례 이전에 청기의 절차가 하나 있으니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서신을 보내는데, "어른께서 명을 주시어 거듭 명을 받자왔습니다. 이제 길일을 청합니다. 사양하시면 길일을 고할 수밖에 없사오니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쓰고 종이 끝에 '○년 ○월 ○일'이라고 쓰거나 따로 종이를 사용해 속례俗禮대로 한다. 답서는 "○○○는 이미 명을 받자왔으니 오직 명을 따를 뿐입니다. 이제 길일을 일러주셨으니 공손히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행하였으므로, 신부 집에서 날을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1893년경에 저술된 『광례람廣禮覽』에서는 신부 집에서 택일하여 신랑 집으로 보내는 연길涓吉에 대해 "대간지大簡紙 한 폭을 써서 겉봉을 만들고 여기에 '연길'이라는 두 글자를 쓴다. 종이를 접어 가운데 '전안奠雁 ○월 ○일'이라 쓰고 그 옆에 나란히 '납폐동일선행納幣同日先行'이라고 쓴다. 봉하고 싸는 것은 주단柱單처럼 해서 신랑 집으로 보낸다. 신랑 집에서는 신부 집에서 사주단자를 받을 때와 같이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924년경의 활판본인 『현토주해사례편람懸吐註解四禮便覽』에서도 신부 집에서는 사주단자를 받은 뒤 납폐와 전안하는 날을 쓴 연기涓記를 신랑 집에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주육례에서는 신랑 집에서 혼례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신부 집에 혼인날을 청하지만 사실상 신랑 집에서 점을 친 날짜를 알리는 청기가 납징 뒤에 이행된 것이다.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행하였으므로 주혼자는 납채 과정에서 받은 신랑·신부의 사주를 토대로 택일하여 연길단자를 신랑 집으로 보내고, 이후에 납폐를 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家禮, 嘉禮酌儀, 廣禮覽, 儀禮, 懸吐註解四禮便覽, 조선시대 혼례문화콘텐츠(최배영, 이노북스, 2013).

필자 최배영(崔培英)



청장 淸醬

정의 종지에 담아 진설하는 맑은 간장.

역사 장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로서 우리 음식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장醬'은 '장將'이라고 했다. "모든 맛의 으뜸이요, 인가의 장맛이 좋지 않으면 비록 좋은 채소나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좋은 요리가 될 수 없다. ……가장은 모름지기 침장에 뜻을 두고 오래 묵혀 좋은 장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여름의 침장과 겨울의 김장을 다 같이 인가일년지계人家一年之計라고 하여 장 담그기를 중요시하였다. 이처럼 장 담그기는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연중행사였으며, 제사 음식에서도 장은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 16세기의 『수운잡방需雲雜方』의 조장법造醬法에서는 콩을 삶고 조선간장을 넣고 다시 졸이면 간장 맛이 매우 달다고 하였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장醬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장은 예로부터 음식의 으뜸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율곡이 『제의초祭儀鈔』에 제찬祭饌으로 보충하였고, 그 후 우리나라 예서禮書에서는 대부분 청장 혹은 간장을 포脯와 해醢, 침채沈菜, 숙채熟菜 사이에 놓고 있다. 청장은 해醢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가례家禮』에는 장이 있으면 초醋는 없어도 된다고 하였다.

내용 청장은 장을 담근 지 1년 된 맑은 간장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은 대개 음력 10월경에 메주콩 대두 한 말로 메주를 여섯 덩이 정도 되게 빚어 매달아 말려 띄운다. 봄에 장을 담을 때에는 메주를 깨끗이 씻어 하루 정도 말리고, 소금물은 전날 풀어서 가라앉힌다. 신일辛日과 오행五行의 수일水日은 피하고, 말날인 오일午日을 택한다. 정월장이면 물 한 동이에 소금 소두 석 되를 푼다. 메주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고 소금물을 부어서 60~90일 정도 두는데 고추 세 개·참숯 세 개·대추 세 개를 띄운다. 장독에 퍼붓는 날은 손 없는 날인 10일, 20일, 그믐날 또는 말날이나 돼지날로 한다. 간장은 무쇠 솥에서 달여 장독에 담아 보관했다가 30여일 지나면 먹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간장은 모든 음식의 간을 맞추는, 음식의 으뜸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제사의 제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명문종가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2003), 아시아 장류문화 연구(윤덕인, 비교민속학34, 비교민속학회, 2007), 우리나라 식생활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출판사, 1999),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5), 한국음식대관5-제례(윤숙경,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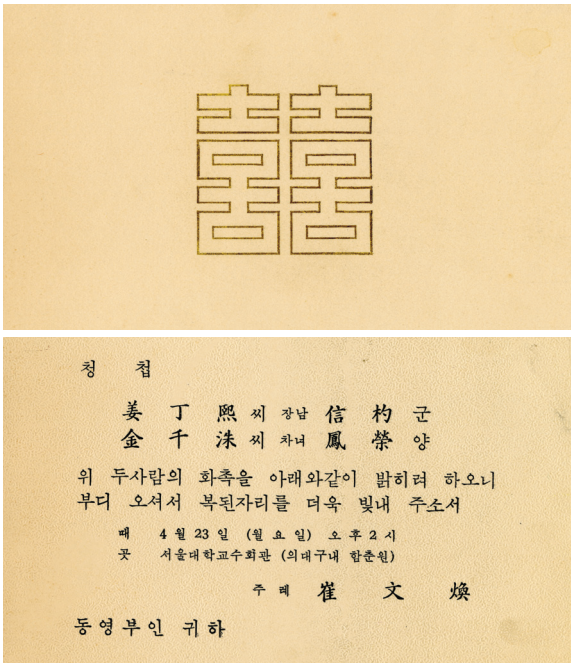
필자 윤덕인(尹德仁)

청첩장
請牒狀

정의 혼례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

내용 청첩은 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글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 잔치만이 아닌 돌잔치, 회갑잔치 등에 쓰이는 초대장은 모두 '청첩장'으로 불려야 맞다. 1973년 「새가정의례준칙」에 "혼례, 수연의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생긴 것으로 보아, 1970년대 이전에는 회갑잔치에도 청첩장을 돌리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돌잔치, 회갑잔치 등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혼례식에 초대하는 문서만을 보통 '청첩장'으로 부르고 있다.

청첩장은 공문서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매우 신중하게 보내는 것이 예의에 맞다. 보통 결혼식의 날짜와 시간, 장소, 예식장에 오는 길과 차편 등을 기록하며, 혼인 당사자의 부모와 당사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결혼식 참석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신랑·신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청 첩

姜 丁 熙 씨 장남 信 杓 군
金 千 洙 씨 차녀 鳳 榮 양

위 두사람의 화촉을 아래와같이 밝히려 하오니
부디 오셔서 복된자리를 더욱 빛내 주소서

때 4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곳 서울대학교수회관 (의대구내 함춘원)

주례 崔 文 煥

동영부인 귀하

청첩장 | 1999 | 국립민속박물관

의지 등을 함께 표현하기도 한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제3의 인물인 청첩인을 내세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의 청첩장을 보면, 청첩하는 주체는 신랑·신부의 부모, 즉 혼주인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가 청첩의 주체가 되어 직접 보내는 형식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청첩장에 청첩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결혼 당사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직접 청첩인이 된다는 것은 혼주의 역할이 비교적 축소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첩장 안내문의 이러한 변화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집안의 행사에서 개인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2010년 이후에는 인터넷 통신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친소관계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간단하게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종이로 된 청첩장을 대신하는 예가 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방편의 하나일 뿐, 결혼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종이로 된 청첩장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2012 아시아문화 기획전 혼례 전시도록(국립민속박물관, 2012), 청첩장을 통해 본 결혼 문화의 단면과 사회(손세모돌, 한국언어문화5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필자 은현정(殷賢貞)

청혼서
請婚書

정의 혼인을 요청하는 편지.

내용 중매자를 통해서 혼인하기로 합의했으면 남자 집에서 먼저 편지로 청혼請婚한다. 청혼서는 혼담婚談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내기도 하고 납채納采 과정에서 사주四柱와 함께 보내기도 한다. 청혼서를 받은 집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혼인을 승낙하면 답서答書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려준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의 혼례에서는 청혼서를 보내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 이전에는 대개 아래의 서식처럼 한자로 쓴 청혼서를 보냈으나, 오늘날에는 한글로 써서 보내기도 한다. 청혼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요즈음은 대개 비슷해지고 있다. 청혼서의 내용은 서두의 계절인사, 자식의 혼인을 바라는 말, 그리고 작성한 연월일과 혼주의 거주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호칭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기술해야 한다.

1월: 맹춘孟春, 2월: 중춘仲春, 3월: 계춘季春, 4월; 맹하孟夏, 5월: 중하仲夏, 6월: 계하季夏, 7월: 맹추孟秋, 8월: 중추仲秋, 9월: 계추季秋, 10월: 맹동孟冬, 11월: 중동仲冬, 12월: 계동季冬(이상 음력)

〈청혼 서식1: 안동〉

伏惟季秋
尊體候以時萬重 仰素區區之至
弟家兒親事 年及如冠 尙無指合處
近聞 某洞某氏家閨養 淑哲云 能其勸誘 使結秦晉之誼如何
餘不備禮 謹拜上狀
○○○○年 ○月 ○日
○○洞 ○○○拜上
○○○ 座前

삼가 늦가을에
존체 요즈음 편안하시길 저의 작은 정성스런 마음이오나 우러러 바랍니다.
저의 아이 혼사는 나이가 들어 관례를 했으나 아직 합당한 곳을 정하지 못했는데
근간에 들으니 모 동 모 씨 댁 처녀가 현숙하다고 (중매인이) 권하오니 사돈지간의 정의를 맺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예를 갖추지 못하고 삼가 글을 올립니다.
○○○○년 ○월 ○일
○○동 ○○○ 올림

〈청혼 서식2: 경주〉

慶州 金○○ 再拜
伏惟孟冬
尊體動止萬重 仰溸規規
就家兒親事 旣承頷可私家之慶幸
玆修剛儀 兼呈柱單 早晩成禮惟命 恭竢耳
謹宣伏惟 尊察謹再拜 上狀
庚午 正月 拾五日

경주 김○○ 절하고 아뢰옵니다.
초겨울을 맞이하여
존체후 만안하심을 간절히 비옵니다.

저의 자식 혼사는 이미 언정言定을 받았으니 우리 집의 경사이옵니다.
이에 편지를 쓰고 겸하여 사주단자를 드리오니 언제든지 혼례를
치르도록 명하여 주시길 공손히 기다리겠습니다.
삼가 펴노니 모쪼록 높으신 뜻으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삼가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경오 정월 15일

특징 및 의의 신랑 집에서 청혼을 하면 신부 집에서 허혼을 하는데, 이를 편지로 주고받는다. 청혼과 허혼은 의혼議婚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납채納采 과정에서 청혼서를 보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하동혼례(이동후 편, 도산우리예절원, 2013),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서류부가혼속을 중심으로(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필자 박성용(朴晟慵)

체천
遞遷

정의 친진親盡한 신주를 최장방最長房에게 옮기는 것.

내용 조상의 신주가 4대代를 넘어가는 것을 '친진親盡'이라고 하며, 그 신주를 '조주祧主'라고 한다. 그런데 사대봉사四代奉祀를 따르는 경우 5대조의 신주를 모시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므로, 조매祧埋하는 것이 합당하였다. 그러나 우선 4대 이내의 자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 곧 최장방最長房에게 신주를 옮기는데, 이를 '체천遞遷'이라 한다. 대개 이런 경우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별묘別廟로 옮기며, 이때부터 기제사忌祭祀는 최장방이 지내게 된다. 이후 제사를 모시던 최장방이 사망하면 다음 최장방에게 옮기는데, 현손 항렬이 모두 사망하여 옮길 곳이 없으면 비로소 신주를 땅에 묻는다. 4대를 넘긴 신주를 체천할 때의 고사축告辭祝은 다음과 같다.

〈遞遷告辭式〉

維
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五代孫某敢昭告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古人制禮祀止四代心雖無窮分則有限神主當祧不勝
感愴謹以酒果百拜告辭尙
饗

체천이라는 용어는 친진을 다한 신주를 옮기는 것 외에도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들이거나 기존 신주의 감실을 옮길 때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기 위해 고하는 의례인 부제祔祭와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의례인 길제吉祭에서 발생한다. 부제는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들인다는 사실을 조고비위祖考妣位에게 알리는 의례이다. 사당에 모신 조고비위를 체천하여 제사상의 중앙에 봉안하고 새로운 신주를 동남쪽에 놓은 뒤 죽은 사람(손자)을 사당에 들일 것을 고한다. 길제 때는 사당의 모든 신주를 체천한다. 새 신주가 사당에 들어오면[遷主] 기존의 신주들은 자리를 옮기며[迭遷] 친진한 신주는 사당을 나간다. 그리고 사당을 나가는 신주의 경우, 봉사손과는 친진을 다했더라도 방계후손 가운데 현손玄孫 항렬에 해당하는 자손이 있으면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 곧 최장방에게 체천된다. 그런 뒤 제사를 모시고 있던 최장방이 사망하면 다음 최장방에게 옮기는데, 이를 '천사遷祀'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체천遞遷은 봉사손으로부터 4대代를 넘겨 친진親盡한 신주를 방계의 현손玄孫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 곧 최장방最長房에게 옮기는 것을 일컫지만, 부제祔祭나 길제吉祭 때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들이거나 기존 신주의 감실을 옮길 때에도 사용한다.

참고문헌 유교의 상례에 관한 연구(최기복,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김미영(金美榮)

초분
草墳

정의 주검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돌이나 통나무 위에 관을 얹어놓고 이엉 등으로 덮어놓은 초가 형태의 임시 무덤.

역사 주검을 매장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는 빈장殯葬의 한 형태로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



초분 | 전남 완도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된다. 일부 문헌 기록에 초분草墳에 대한 기록이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와 흔적은 찾기 어렵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위생법의 제정과 화장의 장려 및 초빈草殯의 금지로 점차 사라졌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서남해안 지역 일부 섬에서 초분이 계속 만들어졌다.

내용 초분은 마을 근처의 산 중턱이나 밭에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주검을 정식으로 땅에 묻지 않고, 입관한 뒤 돌 축대나 통나무 위에 관을 올려두고 이엉 등으로 덮어서 만든다. 이엉 등으로 관을 덮은 위에 다시 용마름을 올려 초가지붕을 얹듯이 새끼줄로 엮어 매고, 사방으로 끝에 돌을 묶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 마무리한다. 그리고 소나무가지를 엮은 울타리로 주변을 둘러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초분은 해마다 이엉을 교체하여 보수하였다. 초분을 만든 지 2~3년 또는 그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살이 썩어 없어지면 뼈만 골라 깨끗이 씻은 후에 다시 관에 넣어 땅에 묻는다. 즉 초분은 유골을 처리하기 전에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골장洗骨葬의 한 형태이다. 또한, 본격적인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행하는 빈장의 일종이며 복장제復葬制의 유습이다.

초분을 만드는 까닭은 조상숭배와 관련이 깊다. 초분은 조상에 대해 예의를 다하는 것으로 살아계시는 부모님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야 한다고 믿어, 명절이나 기일 등 특별한 날에는 초분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풍습은 조선 말기까지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초분이 행정적으로 금지되자, 주로 서남해안의 섬 지역에서 유지되었다. 특히 전라남도 완도 청산도, 여수 금오도·안도·개도, 고흥 나로도, 신안 증도·도초도·비금도, 영광 송이도, 군산 무녀도, 부안 계화도 등 전라도 남해안과 서해안 섬 지역에 초분 풍습이 이어졌다. 초분은 본장本葬을 치르기 전에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고 번거로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만들기가 어려웠다. 초분의 모습은 풍장과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르다. 풍장은 그 자체로 주검을 처리하는 완결된 의례이나, 초분은 본장을 치르기 전에 하는 일차장一次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징 및 의의 주검을 땅에 묻기 전에 육신을 썩혀 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엉 등을 엮어 만든 초가 형태의 임시 무덤이다. 본장을 치르기 전에 행하는 빈장이며, 복장제의 일차장이다.

참고문헌 영원한 만남 한국 상장례(국립민속박물관, 미진사, 1990), 옛무덤의 사회사(장철수, 웅진출판, 1995), 한국의 초분(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김영관(金榮官)

초우제
初虞祭

정의 혼백을 모시고 장일葬日에 지내는 제사.

내용 초우제初虞祭는 장례 당일에 반혼返魂 후 즉시 지낸다. 초우제는 낮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혼이 늦을 때에는 저녁 상식上食과 겸하여 지내기도 한다. 만약 당일 돌아올 수 없어 유숙할 경우에는 도중에 숙소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초우제는 장례 당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초우제를 지내려면 상주 이하 모두 목욕을 하되, 머리는 빗질하지 않는다. 제사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주인 이하 모두 목욕한다(단, 머리 빗질은 안 한다). 집사자執事者는 제기를 진설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로는 채소와 과일을 올린다. 축관祝官이 영좌靈座로

신주神主를 모셔내고 주인 이하 모두 들어와 곡한다. 참신參神 · 강신降神 · 진찬進饌 · 초헌初獻 · 아헌亞獻(주부가 하는 집안도 있고 주인의 바로 아래 동생이 하는 집안도 있다) · 종헌終獻 · 유식侑食 · 합문闔門 · 계문啓門 · 주인 이하 곡主人以下 哭 · 사신辭神 · 매혼백埋魂帛 · 파조석전罷朝夕奠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그리고 축문에서는 '상향尙饗' 위에 '협사祫事'라고 쓴다. 그러나 개장改葬하고 지내는 초우제는 묘소에서 행한다.

특징 및 의의 초우제는 장례 당일에 꼭 지내야 한다. 『예기禮記』「단궁檀弓」에 "장일葬日에 우虞를 하는 것은 차마 하루도 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에야 전奠을 우虞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즉, 초우제에는 신주를 편안하게 모신다는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禮記, 개정증보판 한국 의례의 연구(송재용, 박문사, 2010), 육례이야기(권광욱, 도서출판 해돋이, 2000), 한국 고전의례 상식(정경주, 신지서원, 2000).

필자 송재용(宋宰鏞)

초접
醋楪

정의 식초를 담는 제기.

역사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고례에 근거하여 청장淸醬을 소채蔬菜와 포脯, 해醢 사이에 놓으며, 청장은 해를 대신하고 장이 있으면 초는 없어도 된다고 하였다. 식초의 옛날 한문 표기는 '초酢'였는데, '초醋'로 표기가 달라졌다. 그 원인은 '초'에 '조치식독지공措置食毒之功'이 있어, 조措의 오른쪽 방旁인 '석昔'에 부수部首 '유酉'를 붙여 새 글자를 만든 것이다. '조措'는 '처리한다'는 뜻이 있고, '쫓아가 잡는다'는 뜻도 있다.



초접 | 국립민속박물관

따라서 주술적으로 "사독을 쫓아가 잡아 없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음식으로서 초는 어원에서 보이는 주술적 의미보다 기본 조미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신 술로 초를 만드는 것은 편법이고, 쌀·보리·밀·겨 등 곡식으로 초를 빚기도 하고, 매실·복숭아·연꽃·창포·도라지 등으로 초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의 주재료는 무엇보다도 곡물이다. 15세기 문헌 『산가요록山家要錄』에서는 "식초는 보리나 찹쌀, 멥쌀, 밀 등 곡물에 누룩을 넣고 술을 담가 봉한 후 며칠 동안 양지쪽 따뜻한 곳에 두면 말갛게 식초가 된다. 길일을 택하여 식초를 담갔다."라고 했다. 식초가 우리 식생활에 중요한 조미료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사음식에도 중요한 기본 품목이 되었다.

내용 초접 또는 제종지祭終止라고도 한다. 초접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 식초를 종지에 담아 진설한다. 초장은 초간장으로 육적肉炙을 올릴 때 함께 올린다. 『산가요록』에는 진초·진맥초·대맥초·창포초·고리초·병정초·전자손초·사절초·사시급초 등이 보인다. 사절초는 병일丙日 동틀 무렵에 길어 온 정화수 두 말과 좋은 누룩가루 석 되를 살짝 볶아서 항아리에 담고 단단히 봉해 둔다. 이튿날 정일丁日에 날이 밝기 전, 찹쌀 한 말을 깨끗이 씻어서 푹 쪄내어 더운 기운이 채 가시기 전에 항아리에 담는다.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휘젓고 단단히 봉하고 두껍게 싸서 양지쪽에 놓아두었다가 맑아지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귀신을 쫓는 복숭아 가지의 사용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초 빚는 가장 적기는 7월 7일 칠석날이다. 여름 삼복중三伏中에 빚어야 빨리 빚어지고 맛이 있다. 칠석에 초를 담은 다음 7일 만에 한 번 젓고, 14일 만에 다시 한 번 저으면 21일째 초가 된다. 7이라는 숫자는 음양의 역학에 기인한 것이다. 곧 초는 양陽이고, 7도 양기가 왕성한 양수이다. 아마 양으로 양을 보강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고 양질의 양이 형성된다는 믿음 때문인 것 같다.

참고문헌 다시 보고 배우는 산가요록(한복려 저, 전순의 옮김, 궁중음식연구원, 2007), 식생활 기명기구(윤덕인 외, 한국음식대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우리의 음식이야기(이규태, 기린원, 1990).

필자 윤덕인(尹德仁)



초종
初終

정의 사망 전후 특정 단계까지 진행되는 상례 의식.

역사 초종初終이라는 말에는 '막 사망하다'의 뜻과 '사망 전후 특정 단계까지의 상례 절차'라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와 정현鄭玄의 『삼례목록三禮目錄』에는 모두 초종이라는 용어 대신 '시사始死' 또는 '시졸始卒'이라는 말을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대漢代 이전에는 '막 사망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시사'와 '시졸'이 사용되고, 초종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망 전후 특정 단계까지의 절차'의 의미로 초종이 사용되는 최초의 사례는 당대唐代 『개원례開元禮』에서 찾을 수 있다. 『개원례』에서는 초종이 사망 전 그리고 사망한 뒤 '복復'을 하기 전까지의 절차, 예를 들면 '정침에 병자를 모시는 일', '병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 '안팎을 청소하는 일', '시중드는 사람이 병자의 수족을 부축하는 일', '유언을 적는 일', '촉광屬纊을 하는 일', '사망을 한 뒤 침상을 치우고 땅에 눕히는 일', '주인主人과 중주인衆主人들이 곡을 하는 일', '남자와 부인이 옷을 갈아입는 일' 등을 부속 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절차의 의미로 사용된다. '막 사망하다'의 의미로는 여전히 '시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송대宋代 『정화오례신의政和五禮新儀』에 이르면 초종의 범위는 '습襲'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는 초종이 사망하기 전과 사망 당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는 『개원례』를 따라 초종을 '병환이 심해져 막 사망할 때까지의 절차' 즉 '복' 이전의 절차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가례家禮』는 '습' 이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청대淸代 서건학徐乾學 의 『독례통고讀禮通考』에서는 '질병疾病(병환이 깊어지다)', '정종正終(죽음을 바르게 맞이하다)', '초종'을 구분하여, 사망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초종'에서 제외하고, '막 사망하다[始死]', '복을 하다[復]', '시신을 옮기다[遷尸]', '설치와 철족을 하다[楔齒綴足]', '휘장을 친다[帷堂]', '부고를 명하고 빈에게 배례하다[命訃拜賓]', '곡위를 마련하다[哭位]', '국군이 사신을 보내 조문하다[君使弔]', '부의를 보내다[致襚]', '명정을 만들다[爲銘]', '구덩이를 파다[掘坎]', '복과 기물을 진설하다[陳服器]', '시신을 목욕시키고 얼음을 진설하다[沐浴及設氷]', '반함을 하다[飯含]', '습을 하다[襲]', '모를 진설하다[設冒]', '머리카락과 손톱을 매장하다[埋髮爪]', '중을 설치하다[設重]' 등 사망 이후 소렴小斂 이전까지를 초종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초종을 사망 당일까지로 한정한다는 점에서는 『정화오례신의』와 동일하지만, '질병', '정종' 등 사망 이전의 절차를 초종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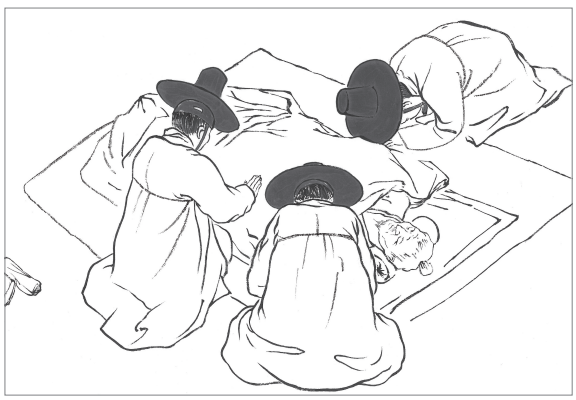
조선의 학자들은 대부분 『가례』를 따라 습 이전까지를 초종의 범위로 규정했다. 김장생金長生의 『상례비요喪禮備要』,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 유장원柳長源의 『상변통고常變通攷』,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는 물론 정약용丁若鏞의 『상의절요喪儀節要』의 경우도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허전許傳의 『사의士儀』는 '초종' 이전의 절차로 '신질愼疾'을 설정하고, 『의례』「사상례」의 '적실에서 사망한다[死于適室]'로부터 『가례』의 '상주를 세운다[立喪主]'는 절차 이전까지로 '초종'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와는 달리 19세기 말 예서인 『광례람廣禮覽』은 '초종' 항목에 '습', '소렴', '대렴', '입관'까지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내용 『가례』의 규정에 따라 습 이전까지를 초종으로 본다면, 초종은 ①병환이 심해지면 정침으로 거처를 옮긴다. ②숨이 끊어지면 이에 곡을 한다. ③초혼을 한다. ④상주喪主와 주부主婦와 호상護喪과 사서司書와 사화司貨를 세운다. ⑤이에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⑥관을 만든다. ⑦친척, 동료, 친구에게 부고한다.라는 세부적인 의절을 포함한다.

①에서 정침은 평상시에 거처하는 곳인 연침燕寢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사政事를 처리하고 조회朝會를

보는 곳이며, 재계齋戒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도 거처하는 공간이다. 이곳으로 옮기는 이유는 죽음을 앞두고 재계를 할 때처럼 몸가짐과 마음가짐[情性]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③은 '복復'으로 '떠나가는 신혼神魂을 불러 체백體魄으로 되돌리려는 것[招魂復魄]'이다. 초혼을 한 뒤에도 소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죽음을 처리하는 일들을 시행한다. ④는 상례를 진행할 때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절차이다. '상주'는 상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맏아들 또는 맏아들이 없는 경우 맏손자가 승중承重하여 궤전饋奠을 받드는 일을 담당한다. 조문객을 예대禮待하는 일은 친속 가운데 항렬이 높은 사람이 맡는다. '주부'는 망자의 아내 또는 상주의 아내가 한다. '호상'은 자제 가운데 예를 알고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상례에 관한 일은 모두 그에게 물어보고 처리한다. '사서'는 부고를 쓰거나 상례에 사용되는 물건과 돈의 출입 그리고 친척과 조문객들의 부의의 수량을 기록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화'는 상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자제나 집안의 일꾼이 맡는다. '상주를 세운다'는 조항은 고례에 보이지 않는다. 『주자가례』는 『서의』를 따라, 상주를 세우는 것이 초혼을 마치고 주부와 호상 그리고 사서와 사화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나 『상의절요』에서는 초혼 이전에 상주를 세우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부와 호상 그리고 사서·사화를 세우는 것과는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⑤의 경우에는 아내·자식·며느리·첩이 모두 관과 정장을 벗고 머리를 푼다. 남자는 상의의 앞섶을 꽂고 맨발을 한다. 나머지 복服이 있는 사람은 모두 화려한 장식을 제거한다. 자식들은 3일 동안 먹지 않는다. 기년과 9개월 동안 상복을 하는 사람은 세 끼를 먹지 않는다. 5개월과 3개월 동안 상복을 하는 사람은 두 끼를 먹지 않는다. 친척이나 이웃이 미음과 죽을 쑤어 줄 때, 어른들이 권하면 조금 먹어도 괜찮다. ⑥에서 호상은 장인에게 나무를 골라 관을 만들도록 명한다. 관의 제도는 반듯하고 곧게 하되, 머리 쪽은 크고 다리 쪽은 작게 하여 겨우 몸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높고 크게 하지도, 허첨虛簷(관의 사방을 처마처럼 장식한 것)과 고족高足(다리처럼 관을 괴는 받침)을 만들지도 못하게 한다. 안팎으로 모두 회칠하고, 안에는 다시 역청을 녹여 바르는데, 두께는 반 치 이상으로 한다. 불에 태운 차좁쌀의 회를 네 치쯤 되는 두께로 바닥에 깔고 칠성판七星板을 놓는다. 바닥의 네 귀퉁이에 각각 큰 쇠고리를 박아 두고 이동할 때에는 굵은 새끼를 고리에 꿰어 든다. ⑦의 경우에는 호상과 사서가 주인을 대신해 서신을 발송한다. 호상과 사서가 없을 때에는 주인이 직접 친척에게 부고하는데, 동료와 친구에게는 부고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서신과 위문은 모두 중지한다. 서신으로 조문한 사람에게는 졸곡卒哭이 지난 뒤에 답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상례의 초종 의식은 임종臨終, 초혼招魂, 수시收屍, 사자상使者床, 상주喪主·호상護喪, 수의壽衣·관棺·장지葬地 준비 등의 의절로 구성되어 『가례』에서 제시한 소렴小斂 이전의 절차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다.



초종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가례』에 규정된 초종의 의절에 대해 조선의 학자들은 몇 가지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상례비요』에서는 ③의 절차를 이어 "치아를 떠받치고 발을 묶는다[楔齒綴足]."라는 규정을 『의례』「사상례」에 근거해서 보충했고, 『사의』에서는 ③의 절차를 이어 "시신을 시상尸床에 옮기고, 시신을 바르게 하는데 머리를 남쪽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예기』「상대기」에 근거하여 보완했다. 이는 조선학자들에게 『가례』가 단순히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보완의 대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완은 고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⑤와 관련하여 정장을 대신하여 갈아입을 옷에 대해 『가례』에서는 본주本註에서 "심의深衣를 입고 성복 때까지 바꾸어 입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지만, 부인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에 대해 『상례비요』는 "심의가 없으면 직령의直領衣를 사용하고, 여자들은 흰 장옷을 사용한다."라고 하였고, 『사의』는 "만약 심의가 없다면 흰 베로 된 도포로 대신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해석했다. 이는 『가례』를 기준으로 하되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시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현지화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의 『가례』 연구 또는 수행은 고례를 통해 『가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조선의 시속을 반영하여 현지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增解, 開元禮, 讀禮通考, 四禮便覽, 士儀, 常變通攷, 喪禮備要, 禮記, 儀禮, 政和五禮新儀.

필자 장동우(張東宇)

초행
初行



초행 | 김홍도 | 18세기 후반 | 국립중앙박물관

정의 혼인날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 집으로 가는 것.

내용 초행은 혼례식인 대례大禮를 올리기 위해 신랑 일행이 신부 집으로 가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신랑이 혼례 후 본가本家에 갔다가 다시 처가에 가는 절차인 재행再行과 대조되는 말이다. 흔히 초행을 '초행걸음' 또는 '초행걸음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간혹 신부 집이 가난하여 혼례식을 신랑 집에서 치르는 경우에는 초행 절차가 생략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초행을 떠날 때는 신부 집과의 거리를 보아 전안지례奠雁之禮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 시각을 조정한다. 따라서 신부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침 일찍 출발한다.

신랑 일행은 혼례 날 아침 신부 집으로 초행을 떠나기 전에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경기도 시흥 지방에서는 이를 '별고사' 지낸다고 한다. 이 밖에도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는 조상신 대신 성주신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비손을 한다. 경기도 여주 지방에서는 무당을 초청하여 빌기도 하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문 앞에 상을 차려 놓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린 다음, 마루 옆에서 이 음식을 먹고 길을 떠나기도 한다. 이처럼 신앙심이 강한 집에서는 초행길을 떠나기에 앞서 조상신에게 고하거나 무당을 모셔와 치성을 올림은 물론, 푼주에 물을 담아 그 위에 바가지를 띄워 촛불을 켜 놓고 비손함으로써 초행길이 무사하기를 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바로 초행길에 오르는데, 신랑과 함께 초행길을 떠나는 사람으로는 상객上客(신랑 집의 높은 손님), 후행後行(신랑 뒤에 따라가는 사람), 함진아비, 교자군轎子軍, 하인下人 등이 있다. 여기서 상객은 혼주婚主라 하여 신랑 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신랑의 아버지나 할아버지·큰아버지·작은아버지·형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후행은 '후객後客'이라 하여 친척 중에서 유복有福한 사람 2~3명으로 구성하며, 함과 관복·오리를 가지고 가는 함진아비(혼수아비)와 중방은 첫 아들을 낳고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이 담당한다. 이 밖에도 청사초롱을 든 소동小童과 가마꾼, 그리고 하인 등이 뒤를 따라서, 초행 행렬은 많으면 수십 명에 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행 행렬의 구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즉, 전라도와 충청도 서해안

지역에서는 상객으로 신랑 아버지 대신 숙부나 당숙 등 가까운 친척이 동행하였으며,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요객'이라 하여 상객을 모시는 사람이 함께 따라가기도 하였다. 한편 초행길을 떠날 때 일반적으로 상객은 가마를 탔고, 신랑은 말을 탔으나, 말이 없을 때에는 신랑 역시 가마를 타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개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모두 걸어서 초행길을 떠났다.

신랑은 처음 초행길에 오를 때부터 혼례복을 입기도 하였으나 길을 갈 때는 일반 한복과 두루마기를 입었다가 혼례를 치를 때 혼례복으로 갈아입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서울의 경우 신랑은 처음부터 혼례복을 입고 초행길에 올랐으며, 함진아비는 홍철릭에 붉은색의 갓을 썼다. 전라남도 산간지방에서는 처음부터 예복을 입고 합죽선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가마를 타고 갔는데, 이때 신랑이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여 신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랑을 중심으로 한 초행 행렬은 많은 사람들이 의기가 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라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거리 행진과 관련하여 마주 오는 초행 행렬과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길을 비켜 주지 않고 기 싸움을 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신랑 일행이 신부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 집에서 '대반對盤' 또는 '인접人接'이라 부르는 안내자가 나와 이들 일행을 '정방定房'으로 안내한다. 여기서 정방이란 신랑 일행이 잠시 여장旅裝을 풀고 쉬는 곳으로 신부 집을 지나지 않은 이웃집 사랑채나 방 하나를 빌려 사용하는데, 이러한 정방을 '사처방·사초방·새처방(경기·강원)', '반녀집(충남)', '주점·경방청(경북)'이라고도 한다. 신랑 일행이 정방에 머무는 동안 신부 집에서는 이들에게 간단한 술상과 함께 국수 등 음식을 먹이고 대례를 치를 준비를 하도록 도와준다. 이때 차리는 상을 '요기상療飢床'이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요기상을 '입매상(경기 고양)', '의안상(강원)'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요기상을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서해안 지방에서는 큰 상으로 차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 일부지방에서는 대례를 지내기 전에는 절대로 신부 집의 음식을 먹지 않고 신랑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다. 한편, 신랑은 정방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한 후 사모관대紗帽冠帶 등 혼례복으로 갈아입고 대례를 치를 준비를 한다.



초행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정방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납폐納幣 시간에 맞춰 함진아비가 먼저 함을 신부 집에 전해 주러 간다. 이를 '함 판다'고 한다. 함을 팔 때 함진아비는 잠시 뜸을 들여 함을 쉽게 주지 않으려고 승강이를 벌이기도 한다. 따라서 함진아비는 미리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오징어 등을 쓰고 가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함진아비가 신부 집에 함을 건네주면, 신부 집에서는 수고했다 하여 푸짐한 음식과 함께 노잣돈을 두둑이 주기도 하였다.

신부 집에서 함을 받을 때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편 다음, 병풍을 쳐 놓고 돗자리 위에 상을 놓아 함을 받기도 하였고, 대청마루에 상을 놓고 함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 신부 측에서는 다복한 여자가 함을 받아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깔고 앉으면서 "복 많이 왔네."라고 소리친다. 그러면 신부 어머니는 함에 손을 넣어 처음 잡히는 옷감의 색이 무슨 색인가를 보아 신부의 앞날을 점치기도 하였는데, 청색 종이에 싼 옷감을 잡으면 첫딸을 낳고, 홍색 종이에 싼 옷감을 잡으면 첫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혼례를 치를 시간이 되면 신랑은 함진아비의 안내로 정방에서 나와 신부 집으로 들어간다. 이때 신랑 몸에 묻은 나쁜 것들을 쫓는다 하여 신부 쪽 마을 사람들은 신랑에게 바가지를 깨고 들어가게 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행위를 시키기도 한다. 즉, 재를 담은 봉지나 콩·팥·쇠똥 등을 신랑에게 던지거나(경기 양평·고양 지역), 짚불을 놓아 건너가게(충청도 지역) 함으로써 액을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초행 절차가 끝나면 신부집 안마당이나 바깥마당에 대례청大禮廳을 차려놓고 혼례식을 거행한다.

특징 및 의의 자유혼이 일반화된 오늘날에 초행이란 혼인 절차는 근대화와 함께 급속히 사라져, 신랑과 그 친구들에 의한 '함 팔기' 의례로 변형·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중매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사회에서 초행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실질적인 첫 번째 의례로, 신랑과 신부사이에 있어서 첫 만남의 예비 절차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신랑 집 출발로부터 신부 집 인근 정방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절차까지의 모든 의례는 신성함과 새로움이라는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특히, 요즘처럼 자유혼에 의해 남녀가 서로를 미리 알고 혼인하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초행이란 절차는 번거롭고 힘든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가족이란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평생을 함께 하는 준비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증보 한국민속학 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3), 한국민속대관 1-사회구조·관혼상제(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학연사,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민속(김성배, 집문당, 1980),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혼속의 친영에 대하여(안병태, 한국민속학5, 한국민속학회, 1972).

필자 이관호(李官浩)

초헌
初獻

정의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복을 구하려고 세 번 올리는 술잔 가운데 첫 번째 술잔.

내용 초헌初獻은 제사에서 삼헌三獻으로 규정된 헌작獻爵의 첫 번째 순서로 중국 주대周代부터 행해져 왔다. 초헌은 침주斟酒와 좨주[祭酒], 진적進炙, 계반개啓飯蓋, 독축讀祝, 재배再拜의 순서로 진행한다. 술잔을 올리는 헌작 방법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방식과 『가례家禮』 방식의 두 가지가 전해온다.

이곡李穀(1298~1351)이 쓴 도교 제사의 초헌문은 "우러러 영전靈躔(해와 별이 운행하는 궤도)을 살피건대, 직요直曜가 손방巽方에 드리워 마침 좋은 절후에 당하였으므로 신일辛日을 가리어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오니, 하늘에서 굽어 돌아보시어 정성스런 잔을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초헌의 의미는 '시기에 맞춰 제사를 올리게 된 것이 다행'임을 알 수 있다.



초헌 | 국립민속박물관

초헌에서 좨주를 하는 것은 제사의 대상 외의 잡신에게 고수레하는 일이고, 진적은 술을 올렸으니 안주를 올리는 개념이다. 계반개를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으니 모든 제물 그릇의 뚜껑을 열어 신이 흠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독축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연유를 고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배再拜하는 것은 초헌을 올리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인사로서 절을 올리는 것이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에서는 『국조오례의』 방식의 초헌을 한다. 『국조오례의』 방식의 초헌에서는 원래 적炙을 올리지 않지만, 안동의 학봉鶴峯 종택에서는 미수味需라고 하는 적을 올려 차이가 있다. 집안에 따라 초헌할 때 계반개啓飯蓋를 하지 않고, 유식侑食 때에 밥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에 꽂는 계반삽시啓飯插匙를 하는 집안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초헌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구복을 청하는 첫 번째 절차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초헌관初獻官은 반드시 장자長子로서 주손冑孫이 맡았다. 물론 부득이하게 대행하기도 한다. 초헌이 처음으로 올리는 술이기 때문에 술을 올리는 연유를 고하는 독축을 하고 나서 주인이 재배한다.

참고문헌 家禮,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禮記,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촛대

정의 제례祭禮 때 불을 밝히는 초를 꽂는 대.

역사 예전에는 초가 고가高價의 제품이었으므로 일반 민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촛대 역시 사찰, 향교와 서원, 그리고 상층계급에서만 사용하였을 것이다. 초가 고가이면 촛대 역시 비싼 재질에 화려한 장식을 한 고가의 촛대를 사용했다. 백동 촛대, 도자기 촛대 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민가에 널리 보급되자, 놋쇠로 만들어진 촛대도 널리 사용되었다.

내용 촛대는 초를 꽂아 세우게 한 도구이다. 국가 제향 때 많은 테를 둘러 화려하게 꾸민 촛대를 '와룡촛대臥龍燭臺'라 하였다. 내실용으로는 등잔걸이와 겸용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초는 비싸서 아끼고 보통 때는 등잔불로 지냈다. 초는 파라핀을 굳혀서 실을 박아 불을 켜게 한 것이다. 옛날에는 벌통에서 꿀을 뜨고 난 후 그 조각을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상류층에서나 사용하였다.

초는 고사, 축원, 제사, 불공 등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속의 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화淨化의 상징이며, 신령을 일깨우는 빛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신령 앞에 드러내 보임을 뜻한다.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촛불을 밝혀 주위의 악귀를 쫓아내고 정화한 후에 신주를 모신다. 제사상에 올리는 촛대[燭臺]는 두 개가 한 조를 이룬다.



촛대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제상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며, 불로 제장祭場을 정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촛불을 밝히는 데 쓰는 도구이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 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 미의 재발견-목칠공예(솔출판사, 2005).

필자 권삼문(權三文)

최장방
最長房

정의 4대代 이내의 자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

내용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최장방最長房의 '방'은 무슨 뜻입니까?" 하는 물음에 "주자朱子의 설로 볼 때, 옛사람이 여러 대代가 한 대문 안에 같이 살 경우 자손들이 각각 사방私房을 두는데, 『의례儀禮』에서 말한 남궁南宮·북궁北宮과 같은 것이다. 사당에 만약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가 있다면 당연히 조천祧遷해야 하지만, 가족 중에 아직 대수가 다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그중 최장방인 자에게로 옮겨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최장방이란 최고 어른의 방이라는 의미로, 집안에서 최고 어른이 거처하는 방을 일컬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는 친진親盡한 신주의 4대代 이내 자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사대봉사를 주관하던 봉사손奉祀孫이 사망하면 그의 고조, 곧 새로운 봉사손의 5대조는 사대봉사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매祧埋를 하거나 최장방에게 체천遞遷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장방에서 다시 친진하면 다음의 최장방에게로 옮겨가는데, 이를 '천사遷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방계傍系의 현손玄孫 가운데 최장방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신주는 조매祧埋되지 않고 체천을 거듭한다. 한편, 최장방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 차례를 맡게 될 자손을 '차장방次長房' 혹은 '차최장次最長'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항렬이 높은 연장자라는 뜻이다. 친진을 다한 신주를 최장방에게 옮겨갈 때의 고사축告

辭祝은 다음과 같다.

〈遷主最長之房告辭式〉

維
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五代孫某敢昭告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玆以先考某官府君喪期已盡禮當遷主入廟先王制禮
祀止四代心雖無窮分則有限
神主當祧遷于某親某之房不遷之位則去某親某之房爲別室尙
饗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길제吉祭에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실 때 친진한 신주를 조매하거나 체천하지만, 『가례家禮』에는 길제가 없으므로 대상大祥의 절차에서 "그 지자支子인데 족인이 친함이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축판祝板에 운운한다. 아뢰는 일이 끝나면 최고 어른의 방으로 옮기고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라고 했다.

특징 및 의의 최장방은 집안에서 최고 어른이 거처하는 방이라는 뜻이지만, 관행적으로는 친진한 신주의 4대代 이내 자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家禮, 儀禮,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김미영 외,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추도식
追悼式

정의 죽은 이를 기리는 한국 기독교(개신교) 의식.

역사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상제사는 유교의 제례가 갖는 정치적·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인륜도리 실천의 지침으로서 효孝 사상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조상제사의 바탕에는 '효'가 있으며, 효는 살아 있는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제사를 경건하게 지냄으로써 실천된다. 한편 제사는 제사를 받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내포한다.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일반적으로 신神이라고 부르는데, 동양의 신 관념은 상제上帝로부터 조상신까지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므로 서양의 유일신 관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조상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체화하여 오랜 기간 쟁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되자, 제사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천주교는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었던 유교적 세계관과 서로 대립하였는데, 그 정점에 조상제사 문제가 자리하였다. 1791년 전라도 진산珍山의 선비 윤지충은 모친이 별세했을 때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이 유교이념을 국시國是로 하는 조선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박해를 가하였다. 조상제사 문제가 박해를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조상제사 문제로 천주교와 전통사회의 갈등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동양문화에 대한 교황청의 이해 부족이었다. 1636년부터 백여 년간 조상제사 같은 중국의례의 허용을 놓고 여러 수도회에서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중국의례를 금하였고, 이는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금령이 해제된 1939년(교황 비오 12세 재위기)부터 천주교에서는 동양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죽은 이의 시신이나 상像, 혹은 단순한 이름이 기록된 패 앞에서 행하는 제례의식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천주교에서는 반함飯含, 합문闔門, 고복皐復, 사잣밥 이외의 제사의식을 허용한다. 조상제사의 근본정신은 선조에게 보은의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각인하는 것이다. 또한,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가족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달성하는 것이다. 전통제례의 아름다운 정신은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하여 계속 살려 나가되, 그 표현양식은 시대에 맞게 개선한다는 천주교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기독교에서는 조상제사 문제를 낡은 세계의 모든 체계를 유지하는 본질적인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계속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모펫(Moffet), 기퍼드(D. L. Gifford), 언더우드(H. G. Underwood), 게일(Gale) 등 초대 외국 선교

사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선교사들은 자국, 특히 미국에서 형성된 교파교회의 성격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공동체적인 면보다는 교파별 특성이 강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경건주의적, 복음주의적 성격이 짙게 형성되었다.

19세기 후반 한국에 파송된 기독교 선교사들은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와 복음전파 노력으로 큰 공헌을 이루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유산 일체를 서구 기독교 문화로 대치해야 할 '이교문화' 또는 '우상종교문화'로 속단하는 큰 잘못을 범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기독교 전래 직후부터 제사문제가 언급되었다. 1893년에 성립되어 교계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였던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04년에 부모의 생존 시에는 효를 다하되 사망했을 때는 엄숙한 장례식만 하고, 조상숭배인 제사는 추도식으로 대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날까지 이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조상제사는 참다운 효가 빠진, 명분과 허식에 치우친 형식적인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입장은 신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실천적 관점에서 제사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된다.

1920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권○○가 사람이 예수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자, 가책을 느낀 아내 박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실천적인 접근에서 벗어난 신학적 논쟁이 시작되었으나 획기적인 결론 없이 기존 입장이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있다. 다만 논쟁의 과정에서 십계명의 다섯 번째인 부모공경의 계명과 동양의 효사상을 결부시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였고, 제사를 대신하는 교단 나름의 대안적인 예식이 모색되었으나, 아직은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별로, 신도들에 따라 추도예배가 행해지는 상황이다.

내용 추도식追悼式은 인정 여부를 떠나 한국 기독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실제 의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부터 논란이 적지 않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도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추모追慕와 추도追悼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추모식·추모예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추도식은 교회나 특정한 단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소천召天했을 때, 교회나 단체가 주최할 수 있다. 그리고 교단에서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지낸다. 보통 부모나 조상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장례 후 1년이 되는 날이나 그 이외의 날에 조상의 공덕을 기린다. 또한, 한식·추석·설날처럼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함께 기도를 올리며 망자를 추모한다. 이러한 추도식이나 추도예배는 하나님에게 올리는 것이므로, 자손들이 효도를 통해 하느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중요한 기회이며, 선교나 자식 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다.

추도일이 다가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참석자를 정한 후에 교역자를 초청한다. 구체적인 순서나 절차는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역자의 묵상과 개회기도, 신앙고백(사도신경) 찬송·성경 말씀 봉독과 뜻 새김·대표기도·찬송·고인에 대한 추모 말씀·성령 안에서 고인과의 대화·주의 기도·마침기도 등으로 이어진다. 추모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참석자들의 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한국사회에서 추도식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단 내에서 조상숭배가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지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조상제사의 기독교적 변용으로서, 추도식은 우리 문화와 깊이 있게 균형을 이루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독교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상제사는 현대에 서민화되었다. 오늘날의 조상제사는 조선시대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보다는 복잡하게 변한 삶에 맞추어 간소하게 바뀌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단에서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기독교 가정에서 추도예배를 드리는 사례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 의미를 잘 제시하여, 추도

식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참고문헌 개신교 추도예배의 발전가능성 연구(최영석,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기독교와 조상숭배(배춘섭, 목양, 2010), 한국기독교사(민경배, 대한기독교서회, 1980), 한국전통제례와 추모식에 대한 연구(박병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김영수(金榮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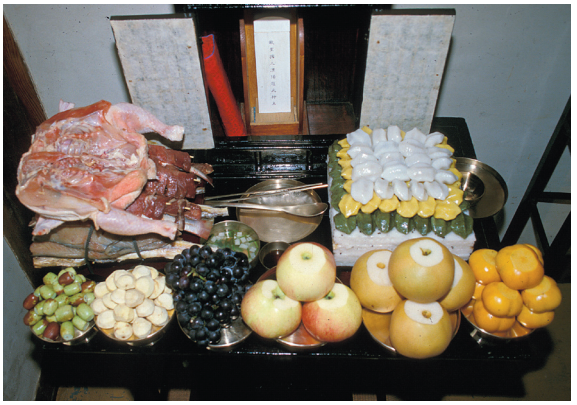
추석 차례
秋夕茶禮

정의 추석날 아침에 4대代 조상을 범위로 지내는 제사.

역사 『당서唐書』「동이전東夷傳」 신라조新羅條에는 "신라인들은 8월 보름이면 크게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을 모아 활쏘기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북사北史』「신라전」에는 "8월 보름에 음악을 울리고 관리들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여 상으로 말과 포목을 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의례를 행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8월 보름이 각별한 날, 곧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추석 명절에 대한 내용은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 유리왕」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추석은 고대 농경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신라시대에는 이미 일반적인 명절로 자리 잡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추석은 고려에서도 큰 명절로 여겨져 9대 속절俗節에 포함되었다. 이 명절들은 조선시대로 이어졌고 조선시대에 추석은 설날·한식·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로 꼽혔다.

내용 추석秋夕 차례茶禮는 추석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내는 제사이다. 그 대상은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조상과 같다. 기제사처럼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과 가문의 예법에 따라 추석에는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추석 차례를 모두 집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화하였으며, 추석 차례를 지낸 후 성묘를 가는 분위기이다.

『가례家禮』에 의하면 매월 보름에는 술잔을 올리지 않고 찻잔을 올린다. 보름에 지내는 사당참배에서 차茶를 올리는 예禮가 차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추석 차례는 약식제사로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였다. 술은 한 번만 올리고, 축문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밥과 국 대신 추석에 절식으로 즐겨 먹는 송편 등을 제사 음식으로 올렸다.



추석 차례 제물 | 경북 안동 학봉 김성일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추석 차례는 이른 아침에 지내므로 촛불을 켜지 않는다. 상차림은 예법禮法대로 간략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제사와 비슷하다. 대신 음식을 담는 방법 등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적炙인 고기와 생선, 닭은 따로 담지 않고 한 접시에 담는다. 그리고 송편으로 밥을 대신할 경우 진다進茶의 절차가 생략되었다. 특히 추석 차례에는 햅쌀로 지은 밥을 올리고 쌀가루에 해콩, 밤, 대추 등을 넣고 찐 모듬떡을 놓기도 한다. 그리고 추석이 너무 빨라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면 한 줌의 벼를 베어 밥 대신 놓기도 하며, 영남 북부지역에서는 추석 대신 중구 차례로 대신하기도 한다. 차례가 끝나면 성묘를 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추석을 전후하여 벌초와 성묘를 겸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추석 차례는 무축단잔無祝單盞으로 진행하며, 시절 음식으로 대부분 송편을 올린다.

경기도 남양주 조안리 밀성 박씨 주부공파 종가 종손인 박○○씨 댁에서는 한식날에 송편을 올려 산소에서 차례를 지냈으나 1970년 전후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 씨 집에서는 과거 사당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차례를 지냈다. 사당에서 지냈을 때에는 10촌까지 참여했으며 여덟 집을 돌며 차례를 지냈다. 이후

로는 8촌까지 모이고 조부의 형제간 네 집을 도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명절에는 종갓집 박광유씨 집에서 시작하여 서열 순으로 돈다. 아침 일곱 시부터 시작했으나, 요즈음은 일찍 모이기 힘들어서 여덟 시에 시작한다. 마지막 집에서는 12시 정오가 되어서야 차례를 올린다. 많이 모일 때에는 집 안에 제주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마당에 멍석을 펴 놓는다. 기제사에서 모시는 4대조 내외분을 모두 합설한다. 내외 하나씩 네 개의 지방을 붙인다. 서고동저西高東低에 따라 가장 왼쪽에 고조부, 고조모 순으로 제수를 진설한다. 설에는 떡국을 올리고 추석에는 메와 갱을 올린다. 떡으로 설에는 인절미를 쓰고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제사는 무축단잔無祝單盞으로 진행한다. 장손 제주가 대표로 단잔을 올린다. 제사에 참여한 남성은 모두 음복하는데 이때 제상의 술 8잔을 항렬 순서대로 마시고, 부족하면 제주祭酒를 담은 병에서 따른다. 안주로 고기 산적 또는 대추나 밤을 먹는다. 대추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다. 차례가 모두 끝나면 오후에 묘소를 찾아 절을 올린다.

도곡리 순천 박씨 박○○ 씨의 집에서는 명절날 아침 8시에 제사를 시작한다. 마을 내에 친척이 있을 때에는 10촌까지 돌아가며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부모와 조상을 먼저 모시고자, 1980년 중반부터는 각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있다. 추석에는 메와 갱 대신 송편을 올린다. 단설로 하므로 조부모 내외를 모시고 난 후 부친과 모친을 모신다. 차례를 마치고 바로 산소를 찾는다. 예전에는 주·과·포를 챙겨갔으나 제사 후 바로 가기 때문에 절만 하고 온다.



추석 차례 성묘 | 국립민속박물관

도심리 재령 이씨 이○○ 씨는 명절 때 6촌 친척 네 집을 돌며 차례를 지낸다. 제사에 참여하는 자녀들까지 따지면 8촌까지 참석한다. 큰집에서 오전 여덟 시 반에 시작하여 점심때가 되어 마지막 집에서 제사를 끝낸다. 추석 때에는 송편을 올리는데, 편을 놓는 자리에 떡을 따로 놓지 않는다. 조상들을 합설하여 모신다. 차례가 끝나면 주·과·포를 가지고 성묘를 간다. 단잔을 올리고 재배한 뒤 음복하고 내려온다.

특징 및 의의 추석은 풍성하고 좋은 계절을 맞아서, 그동안 힘든 농사를 마쳤다는 농공감사제農功感謝祭를 지내는 날이다. 따라서 추수감사제와는 다르다. 추수감사제는 음력 10월 상달에 지내는 상달 고사告祀를 들 수 있는데, 추석에는 올벼가 나오지만, 아직 완전한 수확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기에 추석 차례는 햇곡식을 조상에게 천신薦新하는 의미가 있다. 곧 농공을 감사드리는 천신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家禮, 사례편람(우봉이씨 대종회, 1992),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인의 일생의례-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필자 김명자(金明子)

축문
祝文

정의 제례祭禮나 상례喪禮 등에서 신에게 축원祝願을 드리는 글.

내용 축문祝文은 제례나 상례 등 신神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儀禮에서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을 말한다. 의식에서 신에게 아뢰는 글들을 축문·축사祝辭·고사告辭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축祝이라는 말로 구별 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축문만이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축사는 신에게 드리는 글이 아니고 의식을 행한 사람에게 주는 글이며, 고사는 어떤 사실을 신에게 고하는 글이다.

축문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를 고하고 제수祭需의 흠향을 권하는 글이다. 축문의 내용은 제사를 지내는 시간,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제사를 받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유와 사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문漢文으로 된 축문 형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기제사일 경우

維
歲次(年干支) ○月(月干支)朔 ○○日(日干支)
孝子 ○○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氏 歲序遷易
顯考學生府君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이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아룁니다. 해가 바뀌어 ○○년 ○○월 ○○일에 아들 ○○은 돌아가신 아버님과 돌아가신 어머님 부인 ○○○씨 앞에 감히 아뢰옵니다. 해의 차례가 바뀌어 아버님의 돌아가신 날을 다시 당하오니, 돌이켜 추모하는 마음이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을 모르겠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간략한 음식을 차려 정성을 다해 제사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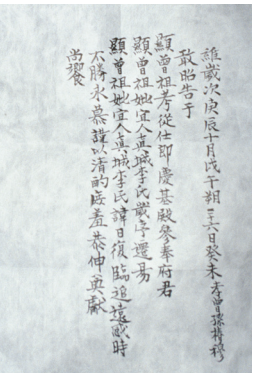
축문을 쓰는 형식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한 칸 위로 올려 쓰는데, 돌아가신 조상을 존중하고 신성시한다는 의미이다. '효자孝子 ○○'은 봉사자奉祀者를 기록하는 부분으로, 부모의 제사면 '효자孝子', 조부모의 제사면 '효손孝孫'이라고 쓴다. '현고학생부군顯考學生府君'과 '현비유인○○○씨顯妣孺人○○○氏'는 제사를 받는 대상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부모일 때에는 '현고顯考'와 '현비顯妣', 조부모일 때에는 '현조고顯祖考'와 '현조비顯祖妣', 증조부모일 때에는 '현증조고顯曾祖考'와 '현증조비顯曾祖妣', 고조부모일 때에는 '현고조고顯高祖考'와 '현고조비顯高祖妣' 등으로 바꾸어 쓴다. '호천망극昊天罔極'은 조부모 이상의 제사일 때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함)', 방계조상의 제사일 때에는 '불승감창不勝感愴(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함)'으로 바꾸어 쓴다.

축문은 제사를 다 지낸 후에 불에 태워버리는데, 이를 '소지燒紙'라고 한다. 불에 태운 축문이 신들이 거주하는 천상天上의 세계로 올라가서, 제사가 신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때 축문을 태운 연기와 그을음이 하늘 높이 올라가도록 손바닥으로 날려 보낸다. 가정 내의 제사뿐 아니라, 마을에서 지내는 동제洞祭 등에서도 축문을 읽는데, 이때는 기우祈雨나 기풍요祈豐饒 같은 제사의 목적에 알맞은 내용의 축문을 써서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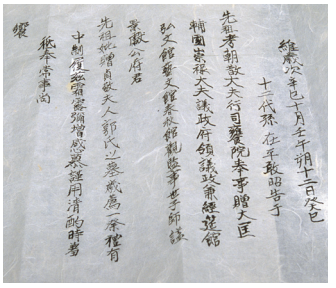
특징 및 의의 축문은 상례와 제례 등의 의례에서 제사를 올리는 연유와 감회 등을 표현하고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만을 올리고 축문을 읽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제례에서 축문은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輯覽, 四禮便覽,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도민재(都民宰)



기제사 축문 | 경북 예천 예천 권씨
국립민속박물관



묘제 축문 | 대전 동구 은진 송씨
국립민속박물관

축판
祝板

정의 제사에서 축관祝官이 읽는 축문祝文을 얹어놓는 판.

내용 축판祝板의 크기에 대해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축판은 길이가 한 자, 높이가 다섯 치[寸]의 판으로 만드는데, 종이에 축문을 적어 그 위에 붙이고 끝나면 떼어서 태운다."라고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축판은 소나무로 만들며, 길이는 한 자 두 치이고, 넓이는 여덟 치이다."라고 하여, 『주자가례』와는 차이가 있다. 『가례회성家禮會成』에서는 "축판은 정해진 법은 없으니, 조금 높거나 커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축판은 축문보다 조금 크게, 약간 두꺼운 판자를 이용해 만든다. 향탁처럼 만들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축문을 적은 종이를 축판에 붙여서 서쪽 계단 위의 주전자 탁자 위에 놓아둔다. 초헌례初獻禮에서 먼저 주인이 술을 올린 뒤 향탁 남쪽에서 신주神主를 향해 부복俯伏하면, 축관이 축판을 가지고 주인 왼쪽으로 가서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축문을 읽는다. 이때 참가자 모두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축관이 축문을 다 읽고 난 뒤 향안香案 위의 향로 북쪽에 축판을 놓고 일어나면, 주인이 두 번 절하고 자기 자리로 물러난다. 제사가 끝나면 축문은 떼어서 불에 태운다.

특징 및 의의 축판은 신에게 올리는 글인 축문을 신성神聖하게 보관하기 위한 의례기구이다.



축판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家禮, 家禮輯覽, 家禮會成,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필자 도민재(都民宰)

출산금기
出産禁忌

정의 출산을 전후하여 산모 또는 그 가족이 지켜야 하는 금기.

역사 금기禁忌가 과학 이전의 속신에 근거한 것이고, 출산금기出産禁忌와 연관이 있는 태교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출산금기는 긴 역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유중림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의 『규합총서閨閤叢書』,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의 『태교신기胎教新記』 등에 태교와 더불어 출산금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바 있다. 이를테면 『증보산림경제』에는 개고기, 토끼고기, 닭고기, 달걀 등 20여 가지 금기음식을 각각의 이유와 함께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동의보감』과 『규합총서』에는 산모 못지않게 남편의 근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합방이나 살생 등과 같은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 있다. 16세기 중기에 기록된 이문건李文楗의 일기에도 종복이 태항아리를 향向을 잘못 묻고 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다시 고쳐 묻게 했다는 내용이 전한다. 따라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출산금기는 태교와 함께 강한 전승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후 서양의학이 도입되고 병원 출산이 늘어나면서 출산금기는 대체로 보건과 위생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주거를 비롯한 생활상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금기도 많다. 그러나 과학성이 없더라도 궂은 장소에 대한 금기나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음식금기들은 여전히 그 기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내용 금기는 민속신앙적인 관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려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지 않게 지키는 일로, 민간에서는 속신 또는 속설로 전승되어 온 일종의 행위관습이다. 옛날에는 출산은 늘 부정不淨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은 아기가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으로 이어졌다. 출산금기는 임산부와 가족들

의 그러한 불안을 다스리고,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게 될 불행을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단계별로 산전금기와 산후금기로 나뉘며, 내용은 음식과 행위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출산 전의 산모는 특히 음식을 삼가고 가려서 먹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금하는 음식은 오리고기·개고기·토끼고기·닭고기·오징어·상어고기·돼지고기 등이다. 산모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 손발이 오리처럼 붙고, 토끼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눈이 붉어지거나 언청이가 되고, 상어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피부가 거칠어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부종이 잦고, 달걀을 먹으면 아기가 종기가 잦고, 문어를 먹으면 뼈 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고기를 먹으면 목이 짧은 아기가 태어난다고 여겼다. 음식금기는 대부분 과학적 근거보다는 식품 재료의 형상이나 속성이 태어날 아기에게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런데도 이런 종류의 음식금기가 오랫동안 지켜진 것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이 바로 태중의 아기에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상가나 제삿집 등에서 온 궂은 음식, 모양이 비뚤거나 나쁜 냄새가 나는 음식도 금기시되었다. 상가나 제삿집은 죽음에 대한 연상을, 그리고 바르지 않는 모양과 악취는 유감주술적으로 부정적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 전의 임산부는 말고삐·체·불·부삽·도마등을 타고 넘거나 빗자루를 깔고 앉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체등을 타고 넘으면 출산이 더디고,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쌍둥이를 낳고, 불을 타 넘으면 아기가 경기를 자주 한다고 여겨 금기시되었다. 임산부는 남의 상가나 잔치, 산 짐승을 잡는 곳, 불난 집 등에 가서도 안 된다. 상가나 불난 집 등은 부정함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안전이나 위생 면에서 기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전의 행위금기에는 임산부의 남편이나 가족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가족들은 상가 등의 궂은 곳에는 출입을 하지 않으며, 난산·사망·사산이란 단어나 그런 뜻이 담긴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며, 산 짐승을 잡지 않으며, 땔감을 마련 시에도 낫이나 도끼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산달에 아궁이나 굴뚝을 고치면 아기가 언청이로 태어나고, 문구멍을 바르면 난산을 하고, 빨래를 삶으면 아기의 피부가 나빠진다고 여겨 그런 행위들을 금했다. 집안의 살림이나 간장을 남에게 주는 행위도 태어날 아기가 박복해진다고 하여 금기시되었다.

출산이 임박하면 산방産房을 정하고 길한 방향을 잡아 둔다. 길한 방향을 가려잡는 것은 불길한 방향을 피하는 것이니 더 적극적인 의미의 금기행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궁중의 산실청에서도 간지로 방향을 표시한 24방위도를 붙이고 길한 방향을 골라 순산을 기원했다. 민간에서는 출산할 때 산모의 머리는 북향으로, 아이는 남향으로 서로 반대로 누워야 길하다는 말이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자오묘유일생子午卯酉日生의 산아는 서남향이 길하고, 무신축미일생戊辰丑未日生의 산아는 동남향이 길하고, 인신사해일생寅申巳亥日生의 산아는 서북향이 대길하다는 속신이 전해진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대문에 금줄을 달아서 산방을 금기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출산금기와 연관이 있는 행위이다. 금줄은 아기의 출생을 알려서 부정한 기운이나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줄이 쳐져 있는 동안에는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가족이라도 궂은일을 본 경우에는 산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아기에게 붉은 반점이 돋는다고 하여 조심한다. 금줄과 관련해서는 금줄을 칠 때 못을 박아서도 안 되고 기간이 지난 금줄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출산 후의 금기禁忌도 음식과 행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산후 몸조리를 하는 산모는 특히 딱딱하고 차고 맵고 짜고 무른 음식을 삼가해야 한다. 딱딱한 음식, 흰죽, 무, 호박, 두부 등은 치아를 상하게 하고, 냉수를 마시면 부종이 생기고, 매운 음식은 위를 상하게 하고, 닭고기는 젖이 나빠진다고 하여 금한다. 산후의 음식금기들은 해산한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것이거나 태어난 아기의 수유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과학적·경험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밖에도 상가 및 제삿집의 음식이나 남의 집 음식을 금하는데, 산전금기속과 마찬가지로 주술종교적 이유 때문이다. 한편으로 산모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조처로 금하는 행위들이 있다. 대개 산모는 금줄이 쳐져 있는 동안은 일을 삼가고 산후조리를 하였는데, 이때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찬바람을 쐬어서는 안 된다. 가족들도 상가집 등의 부정한 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 가족이 상가 등 궂은 곳에

다녀오거나, 집안에 부정한 사람이 출입하면 산모의 젖이 마르거나 아기가 탈이 난다고 여겨 조심한다. 또 집안에서 가축의 살생이나 아궁이 수리, 악취를 피우거나 울음소리를 내는 행위 등도 금기시된다. 그러나 금줄을 치는 기간이 집집마다 또는 성별에 따라 달라서 산후 조리기간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민촌에서는 출산 후 3일 만에, 또는 출산하자마자 바로 일하러 나간 경우도 많다. 그리고 수조육류에 걸친 음식금기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당시는 그런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다고 말하는 여성도 많다. 또 출산 시 사용한 물건이나 태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특히 탯줄은 예전부터 생산과 생명을 뜻하는 '삼줄'로 불렸던 만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태나 태 항아리는 길한 곳에 묻거나, 손 없는 길한 방향으로 놓고 태우거나 물에 띄워 보낸다. 살생과 같은 부정한 행위뿐 아니라 아궁이 수리와 같은 일상적 행위까지 금지된 것은 이 기간이 산모와 아기를 일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의례적 전이기轉移期이기 때문이다.

산방은 일상의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삼신의 수호 아래 생명을 출산한다는 점에서는 신성이 깃드는 곳이지만, 피 부정이 수반되는 점에서는 불결하고 부정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방은 집 안이더라도 일상의 영역과 멀리 떨어진 곳이 선호되었다. 집이 아닌 외진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제洞祭 기간과 출산이 맞물릴 때는 마을에 부정이 든다고 여겨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해산막 또는 피막을 지어 출산하게 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역으로 출산 행위 자체가 부정으로 금기시되는 것이다. 출산금기와 관련해서는 출산속 전반에 관한 조사와 더불어 출산금기 사례들이 보고되었을 뿐 분석적 연구로 심화되지 못하였는데, 최근 출산속의 단계별 전략과 행위주체별 통과의례적 의미에 관한 논의(한양명), 출산의례의 근대적 변환에 대한 도시민속학적 접근(주영하)이 이루어져 참고할 만하다. 출산금기 문화에 관한 온전한 해명을 위해서는 실제 출산금기 사례가 더 축적되어야 하고, 병원 출산과 산후조리원 출현 이후 출산금기속의 변화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금기는 주로 의례의 시공간에서 작동한다. 출산도 산모나 태아 그리고 가족의 입장에서 하나의 통과의례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에 따라 갖가지 금기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금하는 음식과 행위는 일상으로부터 분리와 구분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음식이나 행위를 가리고 삼감으로써 산모는 일상의 다반사인 부정이나 오염으로부터 자신과 아기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금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로서 '상가'가 계속 강조되는 곳은 그것이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맥락에서 죽음은 가장 큰 기휘忌諱 대상이다. 정淨과 부정不淨, 청정과 오염, 길吉과 불길不吉이라는 민속신앙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본다면, 출산금기는 부정, 오염, 불길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청정하고 길한 상태에서 새 생명의 출산을 보장받기 위한 문화적 장치이다. 그러나 출산금기에는 이러한 주술종교적 국면 외에 실제적 국면도 존재한다. 썩은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금하는 것은 실제적 경험에 의한 것이다. 또 경사에 속하는 혼사나 생일잔치에 가지 말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금기는 태교와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태교가 유가적 교육의 성격이 강한 데 비해, 금기는 산모와 태아에 대한 부정과 불길을 예방하기 위한 주술적 속신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음식을 삼가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조심함으로써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다르지 않다.

참고문헌 부정관념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최길성, 한국인과 한국문화, 삼설당, 1982),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환(주영하, 한국문화연구7, 경희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3),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1999).

필자 천혜숙(千惠淑)

출생의례
出生儀禮

정의 한 인간의 탄생을 전후하여, 새 생명의 잉태를 기원하거나 태어난 생명을 무탈하게 키워내기 위하여 행

하는 각종 의례.

내용 일생의례一生儀禮는 한 인간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생의 단계마다 치르는 각종 의례이다. 여기서 인생의 단계란, 개인의 탄생·성장·노쇠·죽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전환되는 인생의 각 시기 또는 계기를 뜻한다. 이러한 일생의례의 첫 단계가 출생의례이다. 출생의례出生儀禮를 통하여 아기는 태아에서 신생아로 그리고 아기로 그 지위를 바꾸어가며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임신부에서 산모로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지위로 되돌아간다.

출생의례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된다.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여 그 태아가 자궁 안에서 열 달 동안 무사히 자라고, 순산을 통하여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첫 번째 생일인 돌이 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육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의례가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로서 충분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반 게넵(A. Van Gennep)의 분리分離—전이轉移—재통합再統合이라는 세 단계는 한국의 출생의례에도 대체로 적용된다.

이러한 출생의례는 다음과 같이 기자—산전—출산—산후—삼칠일·백일·돌잔치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①기자祈子: 새댁의 수태는 가정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조혼早婚, 영양실조, 생리 불순 등으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흔했다. 그렇다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신령이나 그 밖의 초월적 힘에 의지하지는 않았다. 먼저, 과학적으로 원인을 살피고 온갖 노력을 해야 했다. 과거에는 가정 형편이 부유하면 한의원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대개 민간요법으로 치유하고자 했다. 대체로 불임의 원인은 여성에게 있다고 여겨서, 체질이 허약하고 특히 자궁이 냉한 여성은 구절초·익모초·인진쑥 등을 달여 마시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치성을 드리거나 삼신을 받거나 각종 뱅이 등을 행한다. 치성은 신불神佛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지극정성으로 올리는 기도祈禱이다. 이들의 호의나 선처만을 일방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대개 불임不姙 여성은 시집이나 친정 부녀자들, 때로는 무당이나 법사와 함께 명산이나 인근의 산에 가서 쌀·떡·명태·실타래 등을 제물로 차리고 정성껏 기도를 드린다. 산 중에서도 반드시 샘이나 계곡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 고여 있는 물은 당연히 피하고, 솟거나 흐르는 물로 간다. 어떤 이들은 절에 가서 불공佛供을 드린다. 마을 주변이나 다소 멀리 떨어진 인근 지역에는 기자에 영험靈驗을 보이는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바위나 바위 그늘, 고목古木, 기자석祈子石, 남근석男根石, 굴窟, 바위 구멍(알구멍)이 있는 알터 등이기도 장소이다. 삼신받기도 널리 행해진다. 간혹 삼신이 집안을 뜨면 수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삼신을 다시 받아서 집안에 모셔 들여야 한다. 또한, 여러 뱅이(방법)들도 행해진다. 다산多産한 여성의 속곳을 얻어 입기, 산부産婦의 서답(월경대) 훔치기, 산가産家의 첫국밥을 얻어먹거나 금줄 훔쳐오기, 조그만 도끼 모조품을 착용하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②산전産前: 태기가 있으면 임신부 본인은 물론 식구들 모두 일체의 부정不淨을 멀리하며 각종 금기禁忌를 지킨다. 특히 산달이 가까워질수록 금기는 강화된다. 금기는 대부분 '무엇을 하면 어떤 나쁜 상황이 생기므로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신부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주된 대상이다. 이는 임신부와 태아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발이 오리 발처럼 붙는다.'거나 '산달[産月]에 굴뚝이나 방의 구들을 고치면 언청이를 낳는다.'는 등의 금기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금기는 내용 자체의 축자적逐字的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뜻도 함께 지닌다. 즉, 임신부의 음식과 행위 등에 조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본질이다.

임신하면 무엇보다 배 안의 태아胎兒가 사내아이인지 계집아이인지를 궁금해 한다. 다양한 태아의 성性 감별법鑑別法이 민간의 습속으로 전승된다. "임신부 뒤태가 고우면 딸, 배가 축 처지면 아들", "앞배가 불룩하면 딸, 배가 두리두리하거나 옆으로 부르면 아들" 등이 그러한 속신이다. 태몽胎夢은 본인이 직접 꿀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식구나 친인척도 꾼다. 태몽을 통해서 남녀 성性은 물론 아이의 장래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임신해도

안타깝게 유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미가 보이면 오이 넝쿨, 호박 넝쿨, 우물의 두레박줄 등을 삶은 물을 마신다. 오이나 호박 넝쿨 줄기가 올라가듯, 우물의 두레박줄이 올라가듯 태아도 자궁으로 올라붙는다고 한다. 만약 유산하였다면 태아를 잿간(거름으로 쓸 재를 모아 두는 헛간)에 묻는다. 그래야만 곧바로 다음 아이를 가질 수 있다.

③출산出産: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임신부가 기거하던 방이나 안방에 산실産室을 꾸민다. 여름이라도 방에는 약간의 불을 때서 찬기를 없앤다. 수건, 가위, 대야, 배냇저고리, 걸레 등 각종 출산용품을 마련하고, 윗목에 삼신상도 놓는다. 산실은 되도록 어둑어둑하게 한다. 방 안 창호에 빛이 많이 들어 환하면, 검은 치마 등으로 가려서 어둡게 한다.

해산 준비에서 미역을 장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미역은 부정 타지 않도록 새벽 장에서 보아 온다. 미역을 구부리거나 접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의 손을 타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 한집안에 두 임신부가 있다면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특히 다른 성씨를 잉태한 며느리와 시집간 딸이 한집안에 있을 때는 꺼리는 것이 많다. 삼신은 하나의 성씨만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산달이 거의 겹치면, 임신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집으로 내 보낸다. 이는 한 임신부에게만 집중하여 산바라지를 하기 위한 현실적 고려에서 생겨난 습속이다.

산실에는 삼신짚이라 하여 깨끗한 볏짚을 깔아놓고, 여기에서 몸을 풀도록 한다. 해산 시에 쏟아진 피와 분비물을 볏짚에 편하게 받아낸다는 실제적 용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볏짚이 지닌 생명력 또는 생장력으로 순산을 유도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출산할 때에는 큰 비명을 내지 않도록 한다. 비명을 이웃이나 동네에서 들으면 아이가 더디 나와서, 난산難産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집을 짓고 3년 안에 출산하게 되면, 일종의 뱅이로서 반드시 부엌에서 해산하도록 한다.

난산은 오랜 임신 기간의 마지막 관문에서 맞닥트리는 위기이다. 난산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절망감과 무력감은 형언하기 어렵다. 이때에도 어쩔 수 없이 초자연적인 대상과 방법을 통하여 난산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아이가 더디 나와 점차 난산 때문에 고생이 심해지면,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여 산실에 남편이 들어가 산모를 구완한다. 아버지가 부재중이면, 아버지의 옷이나 양말을 임신부에게 접촉하여 순산을 유도한다. 후산後産이 잘 안 될 때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뱅이가 있다.

④산후産後: 아기를 키워낸 생명줄인 태는 매우 지극한 감사와 존숭의 대상이다. 태를 가르는 일부터 자른 태의 안치까지 당연히 일정한 격식에 맞추어 온갖 정성을 다한다. 태는 배꼽에서 한 뼘쯤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아기 쪽으로 세 번, 산모 쪽으로 세 번 피를 훑은 다음 무명실로 묶고 자른다. 이때 칼이나 가위 같은 금속성 도구는 피한다. 되도록 대나무 칼을 쓴다. 잘라 낸 태는 후산後産한 태반과 함께 짚으로 싸서 산모의 머리맡에 두었다가 대체로 3일 후에 태운다.

출산 전후로 미역, 쌀, 간장 등으로 삼신상을 차려 삼신에게 올린다. 그리고 몸을 풀면 이를 내려서 산모가 먹을 첫국밥을 마련한다. 첫국밥은 삼신이 내려 준, 복 있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즉, 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출산한 산모는 삼신의 가호를 받는다. 삼신을 정성껏 모시려면 출산 후 초사흘, 첫이레와 세이레, 그리고 백일과 돌에도 삼신상을 차린다.

산가産家의 대문에는 깨끗한 볏짚으로 금줄을 꼬아서 드리운다. 일체의 부정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아들을 낳았다면 금줄에 거멍(숯)과 고추를 끼우고, 딸이라면 거멍과 솔잎을 끼운다. 그러나 길지吉紙는 꽂지 않는다. 금줄은 대개 삼칠일에 거두어서 대문 옆에 둔다.

젖은 육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젖이 부족하면 다양한 젖타기 뱅이를 한다. 주로 샘이나 우물 등의 용왕에게서 젖을 타 온다. 젖이 충분하여 남는다고 해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장광, 굴뚝, 낙숫물로 패인 흙 구멍, 우물, 냇물 등에 버려야 이후에도 젖이 마르지 않는다.

갓난아기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간단히 씻긴 후, 쌀깃[繈褓]으로 둘둘 싸 놓는다. 초이레가 지나면 배냇저고리를 입힌다. 새 생명의 첫 시간에, 새 몸에 처음으로 입히는 옷이다. 새 생명의 힘찬 기운이 가득 배어있는 옷이다. 그래서 배냇저고리는 나중에 각종 시험에서 합격하고 송사訟事에서 승소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참하는 옷이었다.

바깥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아기의 첫나들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안에서 집밖으로 나감으로써, 시간적·공간적인 최초의 이동移動을 이루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기를 외부의 해로운 초자연적 존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한다. 아이의 얼굴에 가마솥 밑의 검정을 여러 군데 발라준다. 귀신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로 참으로 보기 싫고 괴이하게 만든다. 또한, 어머니 손으로는 부지깽이를 힘주어 꼭 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부지깽이이다. 부지깽이는 칼이나 창 이상의 무서운 무기가 된다.

아이가 명이 짧고 좋지 않은 운세라고 하면, 아이에게 수양收養어머니를 삼아준다. 수양자식은 평생토록 수양어머니의 생일이나 각종 명절 등에 친자식처럼 찾아뵈며 효도를 다한다. 수양어머니가 별세하면 친부모와 마찬가지로 상복喪服도 입는다.

아이가 목에 탯줄을 걸고 태어나면, 중(스님)의 삼신이 점지한 아기라고 여긴다. 이런 경우에는 동전 몇 닢을 받고 아이를 절에 판다. 아이가 얼굴에 피를 묻히고 태어나도 뱅이를 한다. 대개 무당이 살풀이를 해 준다. 또 집안 부엌의 식칼을 푸줏간에 주는 풍습도 보편적이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갓난아이를 잠시 오쟁이에 넣었다가 꺼내거나, 갓난아이를 담은 오쟁이를 시렁 위에 잠시 올려놓았다가 내려놓는다. 귀한 자식을 이렇게 바리데기처럼 잠시 버리는 흉내를 내면, 아이가 평생 겪어야 할 재액을 모두 때우게 된다고 한다.

⑤삼칠일·백일·돌잔치: 출생에서 첫돌까지 몇 차례 의례 또는 잔치를 치른다. 아이가 태어난 지 초이레에는 쌀깃을 벗기고 배냇저고리를 입힌다. 동여맸던 팔 하나도 풀어준다. 이날에 삼신상을 차려서 삼신을 정성껏 위해준다. 두이레는 대체로 마음으로만 기억하고 지나가지만, 삼신에게 물이라도 떠 놓고 비손하기도 한다. 세이레에는 다시 삼신상을 차린다. 그리고 대문에 드리웠던 금줄을 치우며, 일가친척에게도 아기를 보여준다. 그동안 어둑어둑한 산실에서 지냈던 아기를 이때부터 조금씩 햇빛에 노출한다. 외가에서 누비포대기를 해 오는 것도 이날이다.

백일은 아기가 태어난 지 백 일째 되는 날이다. 백일잔치는 상징적으로 온전한 날수를 살았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례이다. 시간상으로 첫 고비를 잘 넘긴 셈이다. 이날도 역시 삼신을 지극정성으로 위한다. 백색 흰무리떡으로 아기의 복을 빌고, 붉은색 수수팥단지로 아기의 액살厄煞을 소멸한다. 이날 배냇머리를 깎아주는데, 특별히 아기의 고모가 깎아 주면 좋다고 한다. 식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아기의 배냇머리를 조금씩 자르기도 한다. 배냇머리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부엌 아궁이의 방고래 구멍에 넣어 태운다. 또 아기에게 처음으로 색깔 있는 옷을 입힌다.

돌은 아기가 태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즉 아기가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다. 당연히 백일보다 돌잔치를 크게 한다. 돌상을 크게 차리고 아기에게는 돌빔을 입힌다. 돌상에는 돌잡이를 위한 여러 가지 물건을 올린다. 남자아이의 돌상에는 붓·연필·활·책 등을, 여자아이의 돌상에는 가위·자·바늘 등을 추가로 차린다. 식구들과 친인척들이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돌잡힌다'고 하여, 돌상의 물건을 아기가 임의로 집도록 한다. 이때 돈이나 곡식을 집으면 부자가 되고, 책·먹·붓을 집으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며, 국수나 실을 집으면 장수하고, 활·화살 등을 집으면 군인이 된다고 여겼다. 여자아기가 가위 등을 집으면 살림을 잘하겠다고 말한다. 돌잡이는 축하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장 재미있고 정겨운 대목이다.

특징 및 의의 임신부는 홑몸이 아니기에 비정상적 인물로 간주하여, 일상으로부터 상징적이며 실제적 차원에서 분리된다. 열 달의 임신 기간을 거쳐 마침내 몸을 풀면,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삼칠일과 백일 그리고 돌을 지나면서 점차 산모는 일상의 주부主婦로 되돌아가고, 신생아는 갓난아기에서 한집안의 아기로서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한다. 이렇게 아기의 생물학적 탄생을 사회학적 탄생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그리고 태아를 갓난아기에서 아기로 그리고 임신부를 산모에서 어머니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데에 출생의례의 의의와 역할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9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필영(李弼泳)

출입고
出入告

정의 주인이나 주부가 외출하거나 귀가했을 때 반드시 사당에 출입을 고하는 의식.

내용 『가례家禮』 사당조祠堂條에 "출입을 하면 반드시 사당에 고한다出入必告."라는 내용이 있어서 '출입고出入告'라고 한다. 『가례』에 따르면, 주인과 주부가 가까운 데 나가거나 들어오면 대문에 들어가 첨례瞻禮를 하며,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면 분향하고 재배한다. 멀리 나가 10일 이상을 지내면 재배하고 분향하며 "모가 장차 모처로 떠나기에 감히 고합니다."라고 고한 후 다시 재배하는데,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하되, 다만 고할 때, "모가 오늘 모처로부터 돌아와 뵙습니다."라고 한다. 달을 넘겨 돌아오면 중문中門을 열고 계단 아래에 서서 재배하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분향하며, 출입을 고한 후 재배하고, 또 계단 아래 자리로 내려와 재배한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 다만 중문을 열지 않고 한다. 이이李珥(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는 다른 곳에 사는 지손의 경우에는 가까운 데 나가면 반드시 절하고 고할 필요는 없으나, 멀리 나가면 사당에 가서 절하고 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종성李宗城(1692~1759)의 『오천선생집梧川先生集』에는 『가례』의 본뜻에 따라 출입고 의식을 대략 덜어서 생략하고 있다.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면 첨례를 하며, 며칠을 지내고 돌아오면 재배한다. 달을 넘겨 돌아오면 재배하고 분향하며 "모가 장차 모처로 떠나기에 감히 고합니다."라고 고한 후 다시 재배하는데,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하되, 다만 고할 때, "모가 오늘 모처로부터 돌아와 뵙습니다."라고 한다. 그리고 지손들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을 지내고 돌아오면 종손에 의해 출입고를 행하는데, 이때는 중문을 열지 않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외출하거나 귀가할 때 집안 어른에게 고하는 것처럼, 주인과 주부가 사당에 계신 조상에게 출입을 고하는 출입고 의식에서 조상숭배 사상을 잘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擊蒙要訣, 常變通攷, 梧川先生集.

필자 최순권(崔順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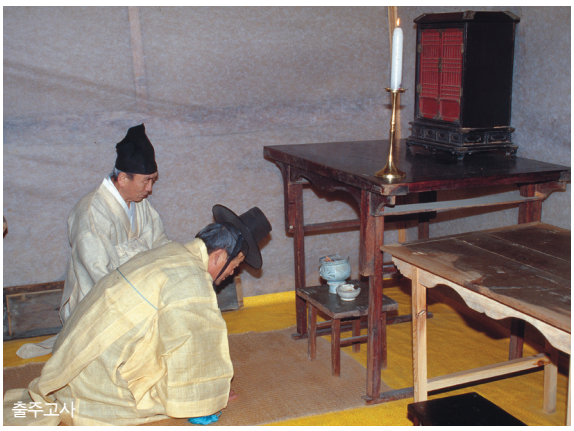
출주
出主

정의 사당祠堂에서 신주를 정침正寢으로 모시는 절차.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분향하고 고사를 아뢰고 주독主櫝을 정침으로 모셔와 주독을 열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주독을 열고 신주를 사당으로 모셨다.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주자가례』와 똑같이 하였다.

내용 사시제四時祭에서 출주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날이 밝으면 신주를 모셔 자리로 내온다. 주인과 주부 이하 각기 성복成服하고 손을 씻고 사당 앞으로 가 서열에 따라 서되 삭망朔望의 의식대로 한다. 자리가 정돈되면 문을 열고 발을 걷는다. 주인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 분향하고 꿇어앉아 고사를 아뢴다. 구부렸다가 일어나서 주독主櫝을 거두어 정위正位와 부위祔位를 각기 한 상자에 담아 집사 한 사람씩 모셔 주인이 앞에서 인도하고 주부는 뒤에서 따르며, 어린이는 다시 그 뒤를 따라간다. 정침正寢에 이르러 주독을 서쪽 계단 탁자 위에 놓으면 주인이 주독을 열고 할아버지들의 신주를 모셔 자리로 나아가고, 주부는 할머니들의 신주를 모셔 동일하게 한다. 그 밖의 부위祔位는 자제 중 한 사람이 모신다. 끝나고 나면 주인 이하 모두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에서는 기일에 드는 한 신위만을 모시는데, 이를 '단설單設'이라 한다. 그러나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 인정상 두 분을


출주고사


신주모시기


출주

출주 | 경북 예천 예천 권씨 종가 | 1999 | 국립민속박물관

모셔도 무방하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기일에 드는 사람의 배위配位까지도 함께 모신다. 이를 '합설合設'이라고 한다. 합설에는 각각 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 각설各設을 하기도 하며, 한 상에 두 분을 함께 모시기도 한다.

그리고 출주고사出主告祀를 읽을 때 감실龕室의 문을 닫으며, 고사가 끝나면 감실문(또는 주독문)을 열고 신주를 내어 모시는데, 충재 종가나 퇴계 종가에서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문(또는 주독문)을 열고 출주고사를 읽기도 한다.

고사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효손 아무개는 이제 중순의 달로 공경하옵는 고조할아버지 무슨 벼슬 부군, 공경하옵는 고조할머님 무슨 봉호 무슨 성씨께 일이 있어, 아무 할아버지 무슨 벼슬 부군, 아무 할머니 무슨 봉호 무슨 성씨로 곁들여 대접하고자, 감히 신주를 정침으로 모시려고, 공손히 드리는 예를 폅니다."

삭망차례朔望茶禮는 삭차례朔茶禮와 망차례望茶禮로 나누며, 각기 방식이 다르다. 삭차례는 주독보主櫝褓를 열고 개독開櫝하여 출주出主하지만, 망차례는 출주하지 않고 개독만 하고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사당은 종손만이 열 수 있으며, 문을 열면 허배虛拜, 즉 재배한다. 여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사배四拜한다.

특징 및 의의 신주를 정침으로 모실 때, 살아 있는 조상님을 모시듯이 미리 고사를 하고 정중히 모시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충이
充耳

정의 망자의 귀를 막는 솜, 또는 솜으로 메우는 일.

역사 조선시대 문헌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충이充耳에 대해 신면新綿을 사용하여 대추씨[棗核] 정도의 크기로 귀를 막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예기禮記』 「사상례士喪禮」를 인용하여, "진鎭은 백광을 사용하는데, '진'이란 귀를 막는 것을 말한다. '충색充塞'이라고도 한다. 살았을 때 임금은 옥, 신하는 상아로 했는데, 이것은 참소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신면, 『가례언해家禮諺解』에서는 '흰플소음'을 사용한다고 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백광白纊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 설면雪綿을 사용한다고 했다. 정문공正文公 김수근金洙根(1798~1854)의 장례 기록인 『신종록愼終錄』에는 충이의 기록은 없다. 문헌공文獻公 김병학金炳學(1821~1879), 김정규金貞圭의 부인 한산 이씨韓山李氏(1865~1915)의 장례 기록인 『신종록愼終錄』에서는 설면자雪綿子를 충이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충이는 시신의 귀를 막는 한 쌍의 솜을 말한다. 염습구의 일종으로 염습할 때 사용하며, 시신의 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물질을 흡수하는 용도이다. 주로 깨끗한 솜으로 입과 코, 귀를 막아 시신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벌레 등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염습 시에 충이는 대부분 반함飯含하고 뒤이어 망건과 복건을 한 다음에 사용한다. 충이를 사용한 뒤에는 명목을 한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의 출토 복식 가운데 충이는 크기도 작고 시신의 귓속에 들어 있어, 수습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현재까지 김흠조(1462~1528) 묘에서 수습된 것이 유일하다. 김흠조 묘에서 출토된 충이는 비단솜을 뭉쳐서 풀어지지 않도록 실로 감아 놓은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일생의례(경기도박물관, 2002), 상장례-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김진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판결사 김흠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영주시, 1998),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정종수·이은주, 신유,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취토
聚土

정의 장사 지낼 때 하관下棺 후 광중壙中을 메우기 전에 길방吉方의 흙을 퍼서 광중의 네 모서리에 넣는 의례. 또는 하관 후 회삼물灰三物을 내리기 전에 상주들이 먼저 옷자락에 흙을 담아 횡대 위에 세 번 나누어 던지는 의례.

역사 취토聚土에 관해 기록한 최초의 문헌은 윤증尹拯(1629~1714)의 『명재유고明齋遺稿』로 '취토하는 위치와 흙을 파는 위치,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영조가 즉위한 1724년에 산릉에서 취토한 기사와 취토승지取土承旨라는 임시 관직, 취토의 길방 기사가 나타나 조선 말까지 관련 기록이 이어진다. 『홍재전서弘齋全書』에도 취토 기록이 있다.

내용 취토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광중을 메우기 전에 광중 네 모서리에 흙을 넣는 절차이다. 둘째, 하관 후 광중을 메우기 전에 상주가 옷자락에 흙을 싸서 영구 위에 던지는 절차이다. 셋째, 광중의 흙 빛깔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일이다.

매장의 절차를 보면 취토를 이해할 수 있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여 하관 시간이 되면 영구를 광중에 내린다. 이어 상주가 현훈玄纁을 드리면 횡대를 덮는다. 상주들이 옷자락에 흙을 싸서 세 번으로 나누어 횡대 위에 뿌린다. 이를 마치면 광중을 메우기 시작한다. 국상國喪의 임시 관직 취토승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였다. 광중에 넣을 흙을 채취하는 길방을 정하고 흙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재궁梓宮의 흙 상태


경기 용인


경남 김해

취토 | 국립민속박물관

를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길방에서 채취한 흙을 직접 광중에 넣는 것이었다. 취토하는 사람은 사대부 집안에서는 상주가, 왕실에서는 취토승지가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사례 취토하는 관습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집안에 따라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주가 옷자락에 싼 흙을 세 번으로 나누어 던지는 방법, 한 번만 던지는 방법, 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예서禮書에는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토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로서 상례에 융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취토는 깨끗하고 좋은 흙으로 시신을 덮기 위한 행위이다. 그리고 상주가 직접 조상을 매장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관습화된 의례이다. 현재 취토는 모든 종교식 상례喪禮에 융합되어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禮記, 중국민속학의 이해(陶立璠, 김종식 역, 집문당, 1997),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 일생의례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김시덕, 비교민속학39, 비교민속학회, 2009).

필자 김시덕(金時德)

치성기자
致誠祈子

정의 자식을 갖기 위해 치성致誠을 드리는 기자의례祈子儀禮의 한 방법.

역사 치성은 인간의 원초적인 신앙행위로서 이미 역사의 이른 시기 때부터 있어왔다. 『삼국유사』 기이紀異에는 웅녀熊女가 신단수神檀樹 아래에서 아기 갖기를 빌어 단군檀君을 낳았고, 북부여의 왕 해부루解夫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대를 이을 아들을 산천에 빌어 곤연鯤淵에서 금와金蛙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단수 아래 또는 나무나 산천에서 빌었다는 행위는 모두 치성기자에 해당된다.

고소설에도 치성기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춘향전〉에서 "월매가 춘향을 얻기 위해 지리산 정상에 제단을 쌓아놓고 산신에게 빌었다."라는 내용이나 〈심청전〉에서 "곽씨부인이 석불미륵과 태상노군 후토부인에게 정성껏 빌어 심청을 얻었다."라는 내용은 모두 치성기자와 관련되어 있다. 영웅소설 〈유충열전〉에서. "유씨 부인이 삼칠일 목욕재계를 한 다음, 제물을 준비해 남악산南岳山(지리산)에 들어가 형산산신에게 빌어 충렬을 얻었다."라는 기록에서도 치성기자의 사례를 볼 수 있다.

내용 치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있는 정성을 다함, 신이나 부처에게 정성을 드림을 말한다. 집안이나 절, 산 등에서 신앙적인 기원을 드리는 것을 '치성을 드린다' 또는 '정성을 드린다'고도 한다. 이처럼 치성은 곧 정성을 드리는 것인데, 주로 기도와 절을 하는 형식이 중심을 이룬다. 치성은 무당과 같은 전문적인 종교 사제자가 주부와 동행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아이를 갖고자 하는 주부가 중심이 되어 치성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

소원을 이루고자 빌거나 배례하는 치성의 대상은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나 자연물 또는 부처 등이다. 자연물은 주로 나무, 산, 물 등인데 이러한 자연물도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의례와 마찬가지로 치성을 드릴 때에도 제물을 차리는데 이때에는 정화수井華水만 올리거나 쌀밥과 정화수를 함께 올리기는 등 제물은 비교적 간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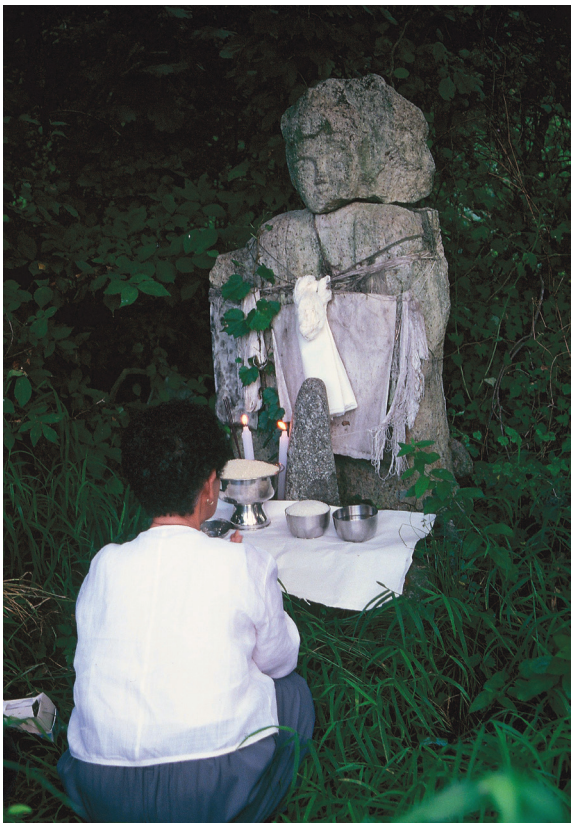
치성기자에는 산이나 남근석처럼 색다르게 생긴 바위 혹은 큰 바위, 거목이나 괴목 등 자연물에 치성을 드리는 산치성, 절에 가서 부처님이나 산신山神에게 비는 절치성, 집에서 칠성신·조왕신竈王神·삼신에게 비는 집안치성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아이 갖기를 원할 경우 병원을 찾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집 안을 비롯하여 절이나 산천 등지에서 치성을 드리거나 무당을 불러 비손을 하기도 했다. 아기를 갖기 위해 산신이나 그밖에 자연물을 대상으로 비는 것을 '산치성'이라 하고 또 치성기간을 설정하여 100일간 하는 '백일치성'도 있다.

치성을 드리는 주체나 방법은 다양하다. 주부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주부가 무당과 동행하여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집안에서 할 경우 집안의 정결한 곳에 정화수를 올린 후 주부가 성심껏 기도하고 절을 하며 아이를 기원한다. 가정에 따라서는 집안 뒤꼍에 칠성단이 있는데 이곳은 치성기도의 주요한 자리이다. 또 삼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삼신 앞에 정화수를 올리고 기도한다. 절을 찾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로 삼성각이나 칠성각을 찾아 기도한다. 집안이나 사찰이 아닌 경우 아이를 갖게 하는 영험靈驗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진 특정 장소를 찾기도 한다. 대개는 산중에 있는 산신각, 또는 계곡이나 강변 등의 용왕당, 산의 큰바위나 고목, 서낭당, 당산나무, 미륵, 남근석, 공알 바위 등을 찾는다.

치성을 드릴 때에는 치성 드리는 장소 앞에 촛불을 밝히고 쌀과 정화수를 올린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정화수만 올리기도 한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치성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물에 치성을 드리는 것은, 용왕에게 치성을 드린다고 하여 '용왕삼신 치성'이라고 한다. 용왕삼신에게 치성을 드려 아이를 낳은 경우, 잉태를 기념하여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장소로 찾아가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바위치성 | 강원 삼척 | 국립민속박물관

치성을 전후하여 매사에 조심하는데, 이를테면 남들과 말도 삼가고 행동을 조신하게 하는 식으로 스스로 금기한다. 기자치성을 드릴 때 산신이나 부처님, 서낭당이나 당산나무, 큰 바위 앞에서 아이 갖기를 비는 까닭은 이들이 모두 민간의 신앙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이하거나 수명이 긴 것을 신성시神聖視한다. 산신이나 부처님, 서낭님은 모두 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이다. 또한, 아주 크거나 기묘하게 생긴 바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수백 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사는 나무는 특이성과 영속성을 지닌 것들이기에 신성시한다. 아이 갖기를 비는 여인들은 이들 앞에서 치성을 드림으로써 신성神聖에 감응되어 잉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치성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수시로 드리지만 특별히 날을 받는 수도 있다. 정초와 음력 3월 3일 삼짇날, 4월 초파일,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구重九와 같이 특별한 날에 많이 드리기도 한다. 이 중 설은 새해가 시작되는 명절이므로 인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비롯하여 온갖 치성을 드린다.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므로, 절 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치성을 드린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설과 초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모두 전통적인 명절로서 홀수가 겹친 날이다. 수에는 홀수와 짝수가 있는데, 홀수는 양陽이고 짝수는 음陰으로 본다. 홀수가 겹치는 날로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어서 양기를 받아 잉태하고자 치성의례를 행한다.

치성기자는 염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어서 정기적인 의례는 아니다.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의례여서 절실할 때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지역사례 치성기자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는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주부나 부부, 또는 무당에서 스님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의례 방법도 다양하다.

경상북도 안동 금소리에는, 방앗간 집 옆의 양조장 정자 뒤 절터에 탑과 불상이 있었는데, 탑 하단부를 도둑맞아 지금은 탑신만 남아있다. 예전에는 이곳이 기자치성의 장소였다. 여인들이 밤에 몰래 나와 백세百歲 살라는 의미에서 백편을 찌고 정화수와 밥 한 그릇을 깨

꼿하게 지어 쟁반에 올려서 불상 밑에 놓고 마음속으로 아들 낳기를 빌었다.

충청남도 금산 불이리의 한 제보자를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용왕[물가]이나 절, 바위 등을 찾아 치성을 드린다고 한다.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2~3일 전부터 부정을 타지 않도록 남의 초상집이나 산가産家에는 왕래하지 않는다. 당일 주부는 머리를 감고 정성껏 시루떡을 찌는 등 제물을 장만한다. 주부 혼자 치성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도 한다. 용왕에 도착하면 준비해온 제물을 진설하고 치성을 드린다.

전라남도 영암의 제보자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바위나 샘 등에 제물을 차리고 치성을 드리곤 했는데 이를 '공 들인다'고 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직접 공을 들이며 장소는 바위, 샘, 절 입석 등으로 다양하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절에서 백일 동안 공을 들이며 아이 낳기를 기원하는데 이를 '백일공'이라고 한다.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인근 마을에 위치한 바위나 샘에서 공을 들이거나 단골을 찾아가 치성 들일 장소를 결정하기도 한다. 공을 들이는 행위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는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매우 개인적이며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

영암 영암읍 용흥리에는 남근석과 여근석이 자리하고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곳의 남근석과 여근석은 용흥리 내의 노인요양시설인 소로원 뒤편의 월출산 계곡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자바우'[바위]와 '공알바우'[바위] 또는 '여자바우'라고 한다. 여자바우는 커다란 바위가 가운데 골이 나 있어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펼쳐져 있어, 여근의 형상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 가운데의 골 끝은 평평한데, 이곳을 자궁의 입구라고 하며 과거에는 작은 돌이 있어서 치성을 드릴 때 이 앞에 제물을 차려 놓고 비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자바우는 남자바우에 치성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하산하면서 간단히 제물을 놓고 치성드린 곳이며, 실제로 기자 치성을 드리는 바위는 남자 바위였다고 한다. 여자바우를 지나 계곡으로 따라 오르면 계곡 옆 수풀 사이로 커다란 바위가 솟아 있는데, 이 바위가 남자 바우이다. 남자바우는 그 형상이 큰 바위의 중간에 또 다른 바위가 튀어나와 있어 마을 사람들은 남자가 남근을 드러내고 서 있는 모습으로 여긴다. 마을 내에서 이 남근바위는 매우 영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여기에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게 된다고 믿는다.

특징 및 의의 기자의례 중 치성기자는 치성을 드림으로써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특히, 치성 방법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가신은 삼신이라 여겨 삼신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부엌신인 조왕신 역시 삼신과 함께 아이를 돌보아 주는 신이고 칠성신도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지만 육아의 중심이 되는 신은 아무래도 삼신이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면 삼신이 점지해 주었다고 말한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난산극복을 위한 민속적 대응(이필영, 역사민속학41, 역사민속학회, 2013), 묵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이복규, 민속원, 1999), 서미마을 삼신신앙의 위상과 강한 전승력(백민영,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6~2008),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김명자(金明子)

치장
治葬

정의 장사葬事를 위한 광壙을 조성하고 그 안에 함께 매장할 지석誌石·명기明器 등을 준비하는 일.

내용 치장治葬은 장사를 준비한다는 말이다. 주자朱子는 장사에 대해, "장葬이라는 말은 '장藏(감추다)'의 뜻이다. 조고祖考의 유체遺體를 감추는 것이다. 자손으로서 그 조고의 유체를 감춘다면, 반드시 삼가고 신중하며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을 바쳐 안전하고 단단하며 오래가도록 할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형체를 온전하게 하고 신령이 편안하게 된다면 자손이 번성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곧 시신을 감추는 일이 정성스럽고 장구할 수 있도록 자손들이 준비하는 일을 '치장'이라 하는 것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제시한 치장은 먼저 땅을 골라 영역塋域을 열며, 광을 파 회격灰隔을 만들고, 지석誌石을 새기며, 명기明器와 하장下帳·대여大轝·삽翣·신주神主를 만드는 것 등이다. 장사는 석 달 만에 지내기 때문에, 기일 전에 장사지낼 만한 땅을 고른다. 장지가 정해졌으면, 길일을 택하여 영역을 연다. 주인은 아침에 곡하고서 집사를 거느리고 구해놓은 땅에 가서 무덤을 판다. 이것이 굴혈掘穴 혹은 굴조掘兆이다. 굴조는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 "땅의 사방 모퉁이를 파서 영역을 만드는 것을 이른다. 조兆라는 것은 혈穴을 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네 귀퉁이의 흙은 밖으로 파내고 가운데 흙은 남쪽으로 파내며, 각각 푯말을 하나씩 세운다. 흙을 남쪽으로 파내는 것에 대해,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의 소疏에서는 "시신의 발이 있을 곳에 두는 것"이라 하였다. 남쪽 문에 해당하는 곳은 푯말 두 개를 세운다. 그러고는 무덤의 조성 사실을 후토씨后土氏에게 고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만약 선영先塋에 부장祔葬할 경우에는 따로 주과酒果로 선조께 고한다."라고 하였다. 『동춘당집同春堂集』에서도 "복이 가벼운 자에게 주과를 차려 놓고서 고하게 한다. 참신參神과 강신降神의 절차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영에 모신 조상들에게도 그 사실을 고해야 하는 것이다.

고유告由가 끝나면, 광을 파고서 회격을 만든다. 회격의 조성은 먼저 재를 광의 밑바닥에 깔아 두께 2~3치를 쌓아 다진다. 그 후에 석회와 가는 모래, 황토를 골고루 섞은 것을 그 위에 펴는데, 그 비율은 석회 셋에 나머지 두 가지는 각각 하나씩이 좋다. 두께 2~3치를 쌓아서 다지고 특별히 얇은 판으로 곽槨의 모양처럼 회격을 만든다.

지석은 돌조각 두 개에다 매장된 사람을 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의 관직과 성명·생몰년·장사처 등을 새긴 돌이다. 명기는 수레와 말, 각각 봉양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하인과 시녀의 모습 등을 나무로 깎은 것으로, 평상시의 생활을 형상화하여 작게 만든 부장품이다. 『예기禮記』「단궁檀弓」의 주에 "명기를 만들어 죽은 자를 전송하는 데 쓰게 함"은 신명神明의 도로써 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장은 상牀, 장막, 마차에 까는 깔개, 자리, 의자, 탁자 등속을 말한다. 이것 역시 평상시의 생활을 형상하되 작게 만든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하장은 아마도 상복上服에 대비하여 말한 것"으로 몸 아래에 쓰는 물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포苞·소筲·앵甖은 술과 음식 등을 담는 용기로서, 역시 명기 중의 하나이다. 대여는 영구를 싣는 큰 상여이다. 삽도 나무로 만든 치장治葬 제구諸具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그 종류로는 보삽黼翣, 불삽黻翣, 화삽畫翣이 있다. 신주는 정처 없이 떠도는 혼령이 깃들어 의지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만든 물건이다. 재질은 밤나무이다. 신주를 넣을 독櫝도 만드는데, 검은 칠을 한다.

『상례비요』에서는 폄장窆葬의 제구諸具로서, 현훈玄纁과 풍비豐碑 및 하관에 필요한 녹로轆轤·불紼·하관포下棺布 등도 들고 있다. 현훈은 폐백으로서, 현 여섯, 훈 넷이다. 길이는 각각 한 발 여덟 자이다. 풍비는 하관하기 위해 무덤의 사방에 세워놓는 나무 기둥이며, 하관한 뒤에는 이를 사방에 묻었다.

특징 및 의의 죽은 조상의 생활공간과 기물을 준비하는 것은 조상이 내세에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를 염원하는 자손들의 마음에서 기인하였다. 오랜 역사적 경험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자손들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끝없음도 보여준다.

참고문헌 家禮儀節, 家禮輯覽, 禮記, 儀禮,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치전
致奠

정의 전통 상례에서 친척·스승·벗이 제물祭物을 올리고 제문을 마련하여 문상하는 일. 또는 왕이 신하의 상례에 관원을 보내 부의賻儀와 제문을 마련하여 문상하는 일.

역사 예서禮書의 규정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치전致奠 기사는 『고려사高麗史』에 처음 등장한다. 내용은 주로 왕이 신하의 죽음에 제문, 부의 등과 함께 관원을 보내

문상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393년(태조 2)에 윤호尹虎(?~1393)의 빈소에 관원을 보내 치전한 기록을 비롯하여 관련 기록이 170여 차례 등장한다. 주로 왕이 신하의 상례에 관원을 보내 부의를 전달하고 제문을 올려 별도의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다. 1429년(세종 11)에는 치전의식을 제정하고, 『오례의五禮儀』에 사제의식賜祭儀式을 규정할 정도로 중요시하였다. 현재도 전통상례를 치르는 종가 등에서는 소상小祥이나 대상大祥, 기일忌日에 고인의 딸, 친인척, 벗 등이 치전을 한다.

내용 치전은 별도의 제물, 제문을 올리고 문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고려나 조선에서는 신하의 상례에 왕이 직접 가거나 관원을 보내 특별히 문상하는 것을 일컬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은 신하를 위하여 제사를 내리는 사제賜祭, 부의賻儀를 내리는 사부賜賻, 시호諡號를 내리는 사시賜諡를 의주儀註(여러 의례의 상세한 절차 혹은 이를 기록한 서첩)로 규정할 정도로 중요시하였다. 1421년(세종 3)에는 치제의致祭儀를 정했는데, 내용은 문상 예절과 유사하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소상과 대상, 기일에 지차 자손이 따로 제물과 술을 마련하여 가공加供(덧붙여 올림)이라 하여 유식侑食 뒤에 올리는데, 더럽힘이 심하다. 정情을 펴고자 한다면 제물을 마련하는 데에 보태주는 것이 제물 중 좋은 것을 종자宗子에게 바치는 헌현獻賢에 합치된다."라고 하여 치전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록에는 없지만 조선시대에도 현재 전승하는 형태의 치전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정을 붙여 드린다는 뜻으로 치전을 '기정드린다'고 한다. 경상남도 김해에서는 고인을 위해 별도의 제문을 지어 읽는다는 뜻으로 치전을 '독제문'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치전은 문상의 특별한 형태이다. 통상 문상할 때는 분향하고 헌작獻爵한 후 재배하고, 상주와 인사하는 정도이다. 기정을 드리거나 독제문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제물을 마련하고 제문을 지어 올리는 형태여서 일반 문상과는 다르다. 치전을 하는 사람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주로 시집간 딸이 많이 했고, 사위가 별도로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차자, 친지, 생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치전을 했다. 직접 제물을 마련하지 못할 때 치전제수致奠祭需라는 제물 비용을 주고 상가에 부탁하는 사례도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四禮便覽, 五禮儀, 朝鮮王朝實錄, 삼년상-소운 김시인(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삼년상-화재 이우섭(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친영
親迎

정의 본래 중국의 혼인의례인 육례六禮 중의 하나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를 맞아와 자신의 집에서 혼례를 진행하는 절차.

역사 친영은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으로 이루어진 육례의 마지막 절차로 중국의 전형적인 혼인예법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 후기 이후로 본래의 의미가 약화되다가 일제강점기에 신부 집에서 혼례를 진행하는 속례의 혼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질되었다. 『의례儀禮』·『예기禮記』 등에 수록된 육례는 춘추시대에 마련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흔히 '고례古禮'로 통칭된다. 송대에는 고례의 예문이 번쇄煩瑣하다 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육례를 의혼議婚·납채·납폐納幣·친영의 사례四禮로 간소화하였다. 중국의 혼인의례는 한국·일본·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학자들에 의해 혼인절차의 이상적인 형식으로 수용되었다.

내용 친영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신랑의 아버지가 사당에 고한 후 아들에게 술을 따라주며[초례醮禮] 신부를 맞아올 것[친영]을 명한다. 신부의 집에서도 신부의 아버지가 사당에 고하고 신부에게 술을 따라주며 시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한다. 신랑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신부 집에 가서 기러기를 전하는 전안례奠雁禮를 행한 후 먼저 말을 타고 떠나면 신부 수레가 뒤따른다. 신

랑 집에 도착하면 서로 맞절하고[교배交拜] 술잔을 주고받으며[합근合巹] 함께 음식을 먹는[동뢰同牢] 의식을 행하는데, 이 절차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대면하여 인사하는 상견례相見禮로 성혼의 마지막 절차이다. 친영은 한국의 전통혼례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과 혼인 절차상 충돌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친영혼에서는 혼인 당일 신랑 집에서 상견례를 한 후 동침하고, 혼례 다음날 시부모를 뵙고 신랑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남귀여가혼에서는 성혼 첫날 동침한 후 3일째 되는 날에야 정식 상견례를 하고 신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부모를 뵙는 현구고례見舅姑禮는 후일 별도의 날을 잡았다.

고려시대에 간혹 왕실에서 친영례를 시행한 일이 있지만 친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조선시대에 시작되었다. 혁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통치원리를 사회 각 방면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혼인에서도 『주자가례』에 따라 친영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신랑을 신부보다 앞세우는 '남선어녀男先於女'의 관념을 내포한 친영의 의리가 천지·군신의 의리와 동등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신부 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남귀여가혼의 거주제居住制와 신랑·신부가 동침부터 먼저 한 후 3일째에야 상견례를 치르는 혼인절차도 예의에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친영례 시행의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친영은 왕실혼에만 모범적으로 시행되었을 뿐 사士·서인庶人의 경우에는 전통적 혼인제를 고수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세종대에 『주자가례』에 준한 혼례로 의혼·납채·납폐·친영 등의 의주儀註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남귀여가혼의 혼인절차를 따름으로써 마지막 성혼 절차인 친영만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친영례의 시행은 고려시대 이래로 남녀균분상속제男女均分相續制나 음서제蔭敍制 등과 결부된 오랜 습속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데 대한 거부감과 급하게 혼수나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큰 저항에 부딪쳤던 것이다.

전통적 남귀여가혼이 완강히 고수되자 사대부들은 전통적 혼인방식을 따르되, 혼인절차의 일부만이라도 친영 절차에 가깝게 바꾸는 타협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방안이 남귀여가혼의 절차 중 외설스럽다



평생도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고 지적받는 3일째의 상견례를 성혼 당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였던 것은 서경덕徐敬德과 조식曺植으로, 당일상견례는 중종대에 서경덕 아들의 혼인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명종대·선조대를 거치며 이황李滉, 조식, 정구鄭逑 등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계속 그 시행이 독려되었다. 이후 사대부의 혼례는 대부분 당일상견례에 의한 남귀여가혼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이러한 방식이 새로운 속례(이하 신속례)가 되었다.

당일상견례가 어느 정도 사족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자 다시 반친영이라는 새로운 방안이 등장했다. 반친영은 혼례를 신부 집에서 행하되 당일상견례를 시행한다는 점과 혼인 다음날 시부모를 뵙는 의식인 명일현구고례를 치른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반친영은 서울의 일부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널리 시행되지 못하였다. 명일현구고례의 시행을 위해 신랑 집과 신부 집의 거리가 당일 왕복할 만큼 가까운 거리라야 한다는 물리적 제약 때문이었다.

17세기 예학의 심화와 함께 고례의 시행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면서 반친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친영제의 요소를 좀 더 보강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인조대 무렵 나타났으니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가 바로 그것이다. 가관친영의 절차는 『주자가례』에 소개되어 있는데 당일에 친영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원거리 혼인인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양가 사이에 임시장소를 빌려 '관소館所'라 칭하며 양가를 대신하게 한 것이다. 본래의 친영이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맞아와 신랑 집에서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면, 가관친영은 혼례식의 장소가 어디인가와 관계없이 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아와 혼례식을 치른다는 데 초점을 맞춘 혼례방법이었다. 가관친영에는 관소를 신부 집 가까운 곳에 마련하여 신랑을 혼인 전날 관소에 미리 가 있도록 하는 방법과 신랑 집 근처에 관소를 마련하여 신부를 미리 관소에 가서 대기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자들이 원용한 가관친영은 주로 신부 집 근처에 관소를 설치하여 친영례를 시행하는 방법이었다. 즉, 관소에 미리 와 있던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관소에 돌아와 합근연·동뢰연을 행하는 형식이었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마친 후 신혼부부가 돌아가는 곳은 주로 신부 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 신부 집을 '서관壻館'이라 하여 신랑 집으로 가장하고 신부를 먼저 관소로 보낸 후 신랑이 관소에 가서 신부를 맞아 서관(신부 집)으로 돌아와 혼례를 치르는 제3의 방법이 조선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되기도 하였으나, 널리 행해지지는 않았다.

가관친영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조대부터 50여 년간 호서湖西 사림을 중심으로 시도되다 중단되고 말았다. 18세기에 들어오면 '반친영'이나 '가관친영'이라는 변형된 형태로라도 친영례를 시행하려던 사대부들의 노력조차 중단되고, 신속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낙착이 되었다. 이렇게 당일상견의 절차를 밟은 남귀여가혼이 조선 후기 혼례의 주류가 되었던 사실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8세기~20세기의 사대부 문집이나 일기 등에 신부 집에서 혼인 당일에 상견례를 한 후 신랑만 본가와 처가를 오가고 신부는 1년~2년 친정에서 머물다 시집으로 가는 사례가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친영이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친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선 건국 이래의 강박의식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마침내 친영이라는 용어의 의미마저 바꾸고 말았다. 친영의 의미를 희석시켜서라도 친영을 시행했음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18세기에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가 그대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신속례 방식에 의한 혼인조차 친영의 절차와 같이 당일상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친영이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친영이라는 용어는 점차 '신랑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맞아와 혼례를 치르는 것'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로 신랑이 '신부 집에 (혼례를 치르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풀이처럼 친영은 신랑이 혼례를 위해 신부 집에 간다는 의미로 더욱 단순화되었다.

특징 및 의의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친영은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발달한 혼인방식이다. '남자가 여자에 앞선다男先於女'라는 가부장적 관념을 내세운 친영은 상고시대부터 발달한 중국의 '종법제宗法制'적 질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대의 한국이나 무가武家정권 이전의 일본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부 집에서 혼례와 신혼

생활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친영이 전통적 혼인습속의 저항으로 조선 후기까지도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친영을 실시하려는 사대부층의 끈질긴 노력은 혼인 후 신부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이르면 1~2년 이내에 시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남녀균분상속 관행의 약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김경미,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장병인, 일지사, 1997),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가관친영례의 시행을 중심으로(장병인, 조선시대사학보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반친영의 실체와 그 수용여부를 중심으로(장병인, 역사와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 2005),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필자 장병인(張炳仁)

친진
親盡

정의 봉사손奉祀孫으로부터 4대代를 넘기는 것.

내용 제사를 지내는 대代의 수를 넘겼다고 해서 '대진代盡'이라고도 한다. 유교의 종법에 따르면 별자別子의 차남 이하 아들은 자신이 시조가 되어 소종小宗을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오세즉천五世卽遷의 원칙에 따라 고조-증조-조-부로 이어지는 4대까지의 조상만 포함된다. 즉, 소종에 속하는 최대 범위는 4대 조상에 해당하는 고조부모까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행함으로써 비로소 사대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사대봉사를 주관하던 봉사손이 사망하면 그의 고조, 곧 새로운 봉사손의 5대조에 해당하는 조상은 사대봉사의 범주를 벗어나는데, 이를 '친진親盡'이라고 한다. 또 봉사손으로부터 친진을 다한 조상의 현손玄孫 항렬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으면 '친미진親未盡'이라고도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향제자享祭者의 범위를 신분에 따라 제한했는데, 이 때문에 친진의 범위도 각각 달랐다. 임금은 4대, 6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 지내게 했으므로, 그에 따른 친진의 범위도 각각 5대·4대·3대·2대가 되었다. 그러나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과 더불어 사대봉사가 보편화함에 따라 신분과 상관없이 친진의 범주가 봉사손의 4대조까지 확대되었다. 친진이 다 했다는 것은 더는 기제사의 대상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친진을 다한 신주는 사당을 나가서 조매祧埋가 되거나 최장방最長房에게 체천遞遷된다.

『가례家禮』에서는 "대종大宗의 집안에서 시조가 친함을 다하면 그 신주를 매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2세 이하의 조상이 친진하거나, 소종의 집안에서 고조의 친함이 다하면 청하여 내가고, 친함이 다하지 않는 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고 했다. 한편,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주자가례』에는 나타나지 않는 길제吉祭를 추가했는데, 이는 새로운 신주와 사당에 모신 신주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친진을 다한 5대조의 신주를 조매하거나 최장방에게 체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다.

특징 및 의의 친진은 봉사손으로부터 4대代를 넘기는 것으로, 이때 친진을 다한 신주는 조매되거나 방계의 현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인 최장방最長房에게 체천된다.

참고문헌 家禮, 經國大典, 四禮便覽,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김미영(金美榮)

칠성판
七星板

정의 북두칠성北斗七星을 본떠 일곱 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염습殮襲한 시신을 눕히기 위해 관棺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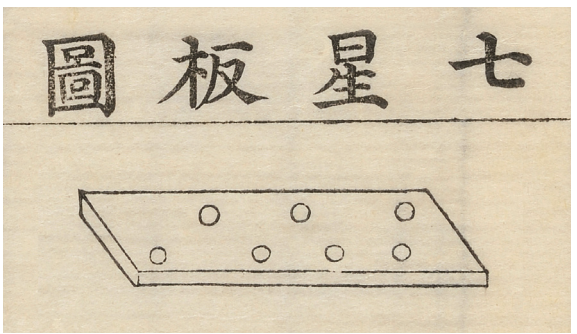
내용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입관할 때 지역에 따라 바로 입관하기도 하고 칠성판七星板에 묶어 입관하기도 한다. 염습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관 바닥에 까는 칠성판은 송판으로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는 관의 크기에 맞추어 만든다. 두께는 대개 다섯 푼 정도이며, 북두칠

성 모양으로 7개의 둥그스름한 구멍을 뚫고 옻칠을 한다. 칠성판 위에 시신을 눕히고 칠성칠포, 즉 일곱 자 일곱 치로 된 베로 감는다.

이익李瀷(1681~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칠성판은 방상方相이나 무덤 앞에 세우는 석인石人처럼 묘터의 지기地氣를 억누르거나 사귀邪鬼를 쫓기 위한 것이며, 칠성판에 북두칠성 모양의 구멍을 뚫는 이유는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신北斗神에게 빌어 죽음을 구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칠성판은 전한前漢 대에 왕망王莽이 북두칠성의 위엄을 빌려 군대를 압복시키기 위해 다섯 섬의 구리로 두 자 반 정도 크기의 북두칠성 모양을 만들어 '위두威斗'라고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능화李能和는 『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에서 "우리 조선 풍속에 사람이 죽으면 송판에 일곱 구멍을 뚫어서 북두 형상과 같이 만들거나 종이에 북두 형상을 그려서 시신을 받쳐 놓는데, 이것을 '칠성판'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장원柳長源(1724~1796)이 지은 예서禮書인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말을 빌려 칠성판에 북두 형상으로 구멍을 뚫는 까닭이 "남두성은 인간의 삶을 맡고 북두성은 인간의 죽음을 맡기 때문南斗司生 北斗司死故"이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석관을 쓸 때에 칠성판을 사용하지 않았다. 상례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치르기 시작한 조선 초부터 칠성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자가례』에서는 초상에 칠성판을 쓴다고는 하였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칠성판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칠성판 | 1524 | 국립민속박물관

청동기시대 고조선 사람은 무덤인 고인돌 뚜껑 위에 북두칠성을 새겨 넣었다. 이를 본받은 고구려 사람은 무덤 속에 북두칠성을 크게 그려 넣었으며, 고려 사람도 무덤 속에 별자리를 그렸는데, 북두칠성을 더욱 중요하게 그렸다. 이처럼 고려 후기까지 고인돌과 무덤 속 천정 등에 표현되던 북두칠성은 조선조에 이르러 칠성판으로 그 모습이 전이되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칠성판은 고려 후기까지 고분에 나타났던 북두칠성 별자리 그림의 또 다른 연속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조선조 이후 상례에 비로소 등장하는 칠성판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인간을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로서 북두칠성을 신앙하던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삶—죽음—무덤(북두칠성)—불멸 염원'이라는 관념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북두칠성은 산신山神과 함께 우리 민속에서 중심적인 신앙 대상이다. 그래서 북두칠성에 있는 삼신할머니에게 명줄을 받아 태어난다고 생각했고, 죽으면 북두칠성을 본떠 넣은 칠성판을 지고 저승길에 가야만 염라대왕이 받아준다고 믿었다. 칠성판에는 북두칠성이 사람의 수명을 주관하며 망자를 내세로 인도하는 존재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김만태, 동방학지1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조선도교사(이능화, 동국대학교, 1959), 풍수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정종수, 웅진닷컴, 2000), 한국 민속의 세계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김만태(金萬泰)

침주
斟酒

정의 술잔에 술을 따르는 행위.

내용 제사를 지내며 술을 따르는 때는 강신降神과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인데 이를 '침주斟酒'라고 한다. 제주祭主가 신위 앞에 나아가면 집사자가 술 주전자를 들고 제주의 오른쪽에 선다. 집사자가 제주가 들고 있는 잔에 술을 따르면 제주는 이를 받들어 올린다. 제주가



침주 | 충남 논산 의정공 김국광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주인이면 직접 신위 앞에 잔을 내려서 침주할 수 있다.

대체로 제주가 신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왼쪽의 집사자가 잔과 잔 받침을 내려 제주에게 주고, 오른쪽의 오른쪽 집사자가 술을 따르며, 다시 제주가 술잔을 들어 읍揖하였다가 왼쪽의 집사자에게 술잔을 주면 오른쪽 집사자가 술을 올린다. 이렇게 술을 따르는 것을 '침주'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침주는 술을 따르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제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는 것도 침주라고 한다. 제사 때 참신參神하기 위해서 술을 따르고 모든 헌작獻爵 시 술을 따르는 데, 실제로는 제사를 돕는 집사자들이 술을 따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家禮輯覽, 四禮便覽, 朱子家禮.

필자 이희재(李曦載)

큰상받기

정의 잔치 때에 주인공에게 장수와 재복을 내려 주는 신을 대접하는 상을 주인공 앞에 차리는 일.

역사 간반看盤은 고대 동아시아의 향연에 나타난 것으로 한대漢代의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다. 고대의 향연은 왕이 제사를 매개로 인간과 귀신을 만나게 했던 제사에서 출발하였다. 즉, 제사 후 음복飮福이 향연이었다. 모든 향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인 신에게 음식을 차려 제사를 드린 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었다. 제3잔의 배사杯事가 있는 혼례의 동뢰연同牢宴 때에 제1잔이 좨주祭酒가 되는 것은 고대 향연의 흔적이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최상의 사치는 산해진미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향연의 주인공에게 복을 내려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손님인 신이 강림해 잡수도록 상을 성대하게 차리는 일이 향연에서는 가장 중요하였다. 신을 위한 이러한 음식상 차림을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보는 장식적 성격의 상'이라고 보고 '망상'이라 했다.

우리나라에서 간반이 맨 처음 등장하는 문헌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의 팔관회八關會 관련 기사이다. 조상신을 알현하는 것이 주목적인 팔관회의 소회小會에서는 연회 시작과 더불어 간반인 과안果案을 올리고 차[茶]를 헌상한다고 하였다. 고려왕실의 간반은 조선왕실이 고려왕조의 예제를 속례俗禮로 받아들임에 따라 조선왕조로 이어졌다.

조선왕조는 왕실의 가례나 진연·진찬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행사의 기록물인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진찬의궤進饌儀軌』·『진연의궤進宴儀軌』 등을 보면 모든 연향에서는 시작과 더불어 반드시 간반에 해당하는 과반果盤을 올렸다. 과반은 대탁大卓·연상宴床이라고도 했으며, 민간에 전해져 큰상[大床]이라 불렸다.

내용 조선왕조의 가례 때의 연상을 1744년에 거행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가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가례의 중심인 동뢰연을 할 때는 왕세자 실室(방)의 북쪽 벽에 남쪽을 향하게 총 4행으로 중박계·홍산자·백산자·홍마조·유사마조·각색 과일 등의 고임음식을 진설한 연상을 차렸다. 연상의 오른쪽에는 역시 4행으로 홍마조·유사마조·송고마조·백산자·소홍산자·백미자아·운빙·송고미자·유사미자아·적미자아 등의 고임음식을 진설한 우협상右挾床을, 왼쪽에는 4행으로 홍망구소·유사망구소·백다식·전단병·유사망구소·소홍망구소·유사미자아·송고미자아·백미자아·적미자아·운빙 등의 고임음식을 진설한 좌협상左挾床을 차리고, 연상의 맞은편에는 4행으로 채소·건치·상어·문

어·대전복·중포·숙전복·생치·숙란·계아·생안·소작·구자·중생선·장후각·압자로 구성된 면협상面挾床을 차렸다. 또한, 좌협상 옆에는 삶아 익힌 돼지 한 마리가 주가 되는 대선상大膳床을, 대선상 맞은편에는 삶아 익힌 양 한 마리가 주가 되는 소선상小膳床을 차렸다.

연상·우협상·좌협상·면협상·대선·소선을 한 조로 삼아, 동쪽 편에는 신랑을 위한 한 조, 서쪽 편에는 신부를 위한 한 조를 차린 이유는, 동쪽의 한 조가 신랑에게 복을 내려 주는 신(조상신)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고, 서쪽의 한 조가 신부에게 복을 내려 주는 신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상·우협상·좌협상에 차린 유밀과油蜜菓와 과일 위에는 견사絹絲로 만든 대봉大鳳 8개, 공작孔雀 4개, 소봉小鳳 15개, 백학白鶴 15개, 나화초충蘿花草蟲 10개, 실과초충實果草蟲 5개로 구성된 상화床花를 꽂았다.

조선왕실의 연상은 사대부와 백성의 혼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조대正祖代(1776~1800)의 서민 혼례 기록인 『동상기東廂記』에는 궁중 가례의 영향을 받은 서민 혼례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잘 묘사되어 있다.



신부잔쌍바든모양 |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모든 일은 끝냄이 있어야 하니 …… 봉상시奉常寺(조선시대에 제사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숙수熟手(조리사) 몇 사람을 급히 불러 음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증병, 인절미, 권모, 백설기, 송편, 유밀과, 홍산자, 중박계, 다식, 약과, 양색요화, 각색 강정, 능금, 유행柳杏, 자두, 배, 황률, 대추, 참외, 수박, 아가위, 화채, 난면卵麵, 산면酸麵, 어만두, 어채, 구장狗醬, 연계유軟鷄濡, 어회, 육회, 양지머리 수육, 전유어, 누르미, 저육猪肉, 백육白肉, 잡탕, 탕평채 등을 숙수가 맡아 내놓았다. 수파련水波蓮을 꽂지 않을 수 없었으니 …… 두꺼비가 받은 큰상과 같았다.

『동상기』의 큰상차림도 음식을 높게 고여서 차렸다. 서민 혼례를 위해서 관官에서 보낸 봉상시의 숙수가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으로 궁중 연향을 본떠서 차려서, 상화로 수파련을 꽂았다.

이렇듯 정조의 치세 이후 백성의 혼례는 궁중 가례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다. 1939년 장승두張承斗는 『조선(朝鮮)』에 「이조사회의 혼인의식에 관해서」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는 조선왕실 가례의 영향을 다분히 받은 서민의 큰상차림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왕실의 가례에서는 큰상을 차리는 시기가 동뢰연 때이지만, 장승두의 글에서는 동뢰연 이후에 전개되는 향응에 큰상을 차린다. 그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차리지 않고 하나의 상으로 차렸다.

큰상을 차릴 때는, 시중들기 위해 따라온 사람인 후행後行을 대접하는 후행상後行床, 후행 접대의 역할을 맡은 대객待客을 위한 후행대객상後行待客床신랑과 신부를 접대하는 역할을 맡은 대객을 위한 대객상이 사각형 형태로 한 조가 되도록 배치한다. 북쪽 벽 서쪽에 남향으로 신부대객상을 차리고, 북쪽 벽 동쪽에 신랑대객상을 차린 다음, 신부대객상과 신랑대객상을 마주 보도록 신부와 신랑을 위한 큰상을 남쪽에다가 북향으로 차린다. 그리고 신부석 왼편 서쪽에 동향으로 후행대객상을 차리고 후행대객상 맞은편인 동쪽에 서향으로 후행상을 차린다. 인원 구성도 밝혀져 있다. 신부대객 1명, 신랑대객 1명, 신부 1명, 신랑 1명, 후행대객 34명, 후행 34명으로 구성되었으니, 총 72명이 향응에 참석한 셈이다. 송기떡·인절미·절편 외에 각색 떡을 그릇에 담아



큰상 | 1999 | 이길표

고여서 사방에 차리고, 신랑과 신부를 위한 큰상에는 건시·귤·사과·배·대추·밤·포脯·과자·산자·다식·빙사과·약과·지짐·행적·족적·두부적·전유어·수란·계적·어적·육산적을 높게 고여 담고, 여기에 종이로 만든 조화인 목단화 열두 송이와 국화 아홉 송이를 상화로 꽂았다.

특징 및 의의 동뢰연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복을 내려 주는 신을 위해 차렸던 큰상은 동뢰연을 치른 다음에 전개되는 향응 때 신랑·신부가 받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버렸다. 다시 말해 '큰상올리기'가 '큰상받기'로 변질한 것이다.

1975년에 나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 혼례 때 차렸던 큰상 역시 '큰상받기'의 형태였다. 각종 과일, 백편, 꿀편, 계피가루를 섞어 만든 찰편, 흑임자를 섞어 만든 찰떡으로 구성된 편[餠](떡), 정과류 등을 높이 고여 담았다. 원산도元山島의 경우, 큰상을 차릴 때의 떡은 큰떡이라 하여 절편은 손바닥만큼 크게 만들고, 인절미도 같은 크기로 크게 만들어 목기木器에다 수북이 고임음식으로 담아 차렸다. 그러나 부여든 원산도든 공통으로 큰상 외에 입맷상인 장국상과 떡국을 차려 주인공이 먹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 高麗史, 東廂記, 進宴儀軌, 進饌儀軌, 사도세자를 만나다(김상보, 북마루지, 2011), 조선여속고(이능화, 동양서원, 1927), 조선왕조 음식문화를 사상으로 만나다(김상보, 북마루지, 2014), 조선왕조 혼례연향 음식문화(김상보, 신광출판사. 200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5).

필자 김상보(金尙寶)

탈상
脫喪

정의 삼년상이 모두 끝나 상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내용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기재된 상례喪禮의 마지막 절차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는 담제禫祭이다. '담禫'은 '담담하니 평안하다'는 뜻이다. 사마광司馬光은 "노나라 사람 중에 아침에 대상을 치르고 저녁에 노래하는 자가 있어 자로子路가 웃자, 공자는 '한 달이 지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대상을 치르고 5일 만에 거문고를 타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10일이 지나서야 생황으로 노래하였다. 「단궁檀弓」에, 담제를 지내고서 달이 바뀌면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법령에서 삼년상은 모두 27개월 만에 복을 벗는다고 하였으니, 어길 수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담제를 행하여 삼년상을 모두 마쳐야 상복을 벗는다는 것이다.

담제에서는 사신辭神에 이르러서도 곡으로 슬픔을 다하지만, 이것으로 상례를 마치므로 신주를 전송하여 사당에 이르러서는 대상 때와는 달리 곡하지 않는다. 담제의 사신으로 삼년상의 모든 예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예기禮記』「간전間傳」에서 "담제를 지냈으면 섬纖을 입고 패佩를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담제 후에는 길복吉服으로 갈아입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송자대전宋子大全』에서, 담제 지낼 달에 미쳐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 달수가 지났더라도 이를 탈상脫喪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비롯한 조선의 각종 예서에서는 길제吉祭를 상례의 마지막 절차로 기술하고 있다. 『예기』「상대기喪大記」에서 "길제를 지내면 침소로 돌아간다."라는 고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자가례』에서는 사당의 조고祖考 이상의 신주의 개제改題와 체천遞遷을 대상大祥 전날에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동춘당집同春堂集』을 보면, 주자가 만년에 "대상을 마치고 궤연几筵을 철거하고서 조묘祖廟에 합사하였다가 협제祫祭를 지내고서 체천한다."라고 하였다

는 말이 있다. 신주의 체천은 협제 뒤에 한다는 것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도 "대상 후에 날을 가려 증조고曾祖考의 신위 및 새 신주를 진설하여 제사를 지낸 다음 다시 본감本龕에 넣어 두었다가 길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고先考를 정위正位로 삼아 네 번째 감실龕室에 안치하되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라 하였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도 "담제의 뜻이 비록 슬픔이 가시고 담담하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뜻이지만, 효자의 마음은 오히려 차마 서둘러 침실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또 반드시 달을 넘겨 길제를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에 "담제를 지낸 뒤에 달을 넘겨 길제를 지낸다."라고 하였고, 길제 하루 전에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서 체천遞遷과 개제改題를 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상례비요』에서는 "천주遷主와 복침復寢은 길제 뒤로 옮겼으니, 이는 실로 주자 이후에 정리된 의론들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주자의 말을 가리킨다.

> 장횡거張橫渠(장재)의 설에 삼년상을 마치고 난 뒤 태묘太廟에 협사祫祀를 지내고 나서 '제사를 마치고 신주를 환봉還奉한다.'라는 것을 고유하는 기회를 통해, '드디어 조묘祧廟로 옮길 신주는 받들어 협실夾室로 돌려보내고 자리를 옮길 신주와 새 신주는 사당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예에 잘 맞는 듯하다.

따라서 협제는 길제이며, 이때 신주의 체천이 이루어져 탈상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길제의 법식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 길제는 담제 다음날에 날을 가려서 행하였다. 사흘 전에 재계를 하며, 하루 전날에 먼저 신주를 옮긴다는 사실을 사당에 고한다. 고유告由를 마치면, 조고 이상의 신주의 분면粉面을 고쳐 써서 본래의 자리에 봉안한다. 당일에 사당의 신주를 한꺼번에 모시고 합사合祀하는데, 시제時祭와 같이 한다. 참신—강신—진찬—삼헌—유식—합문—계문—수조—사신의 절차대로 지낸다. 마치면, 신주를 사당에 들여 봉안하는데, 고가 조고, 조고가 증조고, 증조고가 고조고로 올라가고 고조고는 친진親盡되어 조천祧遷하며 새 신주를 동쪽에 모신다. 이 길제는 사당 내의 모든 신주들이 합식合食하는 경사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다. 끝나면, 음복을 마치고서 정침正寢으로 돌아가니, 이로써 상주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탈상의 시기를 놓고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례』와 주자의 만년의 언급이 서로 달라 빚어진 혼선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선의 유자들은 협제의 의미와 결부지어 길제를 상례의 마지막 절차로 보았다.

참고문헌 同春堂集, 沙溪全書, 四禮便覽,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임민혁(任敏赫)



탕 湯

정의 고깃국에 생선이나 채소를 넣어 조리한 음식.

역사 '탕湯'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예서禮書는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쓴 『제의초祭儀鈔』이다. 율곡은 탕을 제찬祭饌으로 제시하면서 고기나 생선, 채소를 넣어서 만들고 그 수는 형편에 따른다고 하였다. 도암陶菴 이재李縡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탕에 어와 육을 쓰면 갱에서는 채를 쓰고, 만일 탕에 어육을 쓰지 않으면 갱에 육을 쓴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관행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 『사례편람』의 진설도에는 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례 현장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탕 만드는 법을 보면 쇠고기를 삶은 국에 무를 넣어 맛을 더하여 갱을 만들고, 갱에 두부·생선·다시마 등을 넣고 더 끓여서 만든다. 그릇에 담을 때 갱은 국물을 주로 담는데 비해, 탕은 무와 두부[소탕素湯], 생선과 다시마[어탕魚湯], 쇠고기와 무[육탕肉湯] 등으로 건더기를 구분하여 담는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탕이 그려진 진설도陳設圖로 미루어 볼 때, 탕은 예서와 상관없이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던 우리 고유의 습속이라 할 수 있다. 『가례증해家禮增解』에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가례』에서 말하



탕 | 경북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는 어육은 어탕과 육탕을 뜻한다고 하였으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가례』에서 말하는 어육이 탕이라고 명시된 문장은 없다고 하였다. 그는 『가례』에서 어육만을 말했을 뿐, 이것이 탕인지, 자胾(고깃점, 고깃덩어리)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고례에서는 태갱太羹(고깃국), 형갱鉶羹(고기와 나물을 넣은 국)을 서직黍稷(기장)과 짝지었으므로, 『가례』의 어육은 갱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나 일반 기제사忌祭祀에서 콩나물과 무로 끓인 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동 지역 전체 50위의 불천위제사 중에서 32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27사례에서 콩나물과 무로 끓인 갱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퇴계 종가를 비롯한 5사례에서는 쇠고기와 무를 넣은 탕국을 갱으로 사용한다. 탕국을 갱으로 이용하는 관행은 전국에서 보편적이다.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종가에서는 오탕五湯을 무·방어·고등어·상어·부아·북어·물·소금·달걀·새우(대하)·문어·쇠고기를 잘게 썰어 넣고 끓인다. 봉탕鳳湯은 무를 건져 탕기에 담고 삶은 달걀을 반으로 가른 것을 위에 얹고, 어탕은 무를 건져 탕기에 담고 찐 대하를 저며 위에 얹고, 잡탕雜湯은 무와 삶은 문어 썬 것과 부아를 위에 얹는다. 육탕은 무와 삶아 익힌 쇠고기를 같은 크기로 썰어 얹는다.

강원도 강릉 지역 정월초하루 차례상에는 갱으로 미역국, 탕으로 쇠고기탕, 명태나 열기 등을 넣고 끓인 해물탕, 무를 끓인 것 위에 삶은 달걀을 얹은 계란탕의 3탕을 올린다.

특징 및 의의 제사의 탕은 일상식의 탕과 달리 국물이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음복飮福을 할 때에는 국물이 포함된 탕을 차린다. 어동육서魚東肉西의 원리대로 어탕은 오른쪽, 육탕은 왼쪽, 소탕은 가운데에 놓는다. 고례의 제물 진설은 4열이었는데, 요즈음은 탕을 대부분 차리기 때문에 5열이 보편적이다.

참고문헌 강릉지역 일부 가정의 추석 차례상 진설법과 제례음식에 관한 연구(윤덕인, 관동대학교논문집24, 관동대학교, 1996),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5), 종가의 제례와 음식1-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한국음식 오디세이(정혜경, 생각의 나무, 2007).

필자 윤덕인(尹德仁)

탕기
湯器

정의 제례祭禮 때 제물인 탕湯을 담는 그릇.

내용 탕기湯器는 제사상에 각종 탕이나 찌개를 담아 올리는 제기로, 사발 모양에 높은 굽이 달려 있으며 뚜껑이 없어 '굽다리 탕기'라고도 한다.

탕이 나타나지 않는 고례古禮와 달리 오늘날의 조상제사에서 탕은 주된 제물로 간주된다. 실제로도 많게는 5탕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탕이 제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탕은 국과 거의 유사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나타난다. 탕은 국보다 국물이 더 적은 것으로 보면 된다. 탕은 육고기를 재료로 한 육탕肉湯, 어물을 재료로 한 어탕魚湯, 고기를 넣지 않은 소탕素湯이 기본이다. 다만, 단탕單湯, 3탕, 5탕의 원리만 알면 된다. 탕은 국(갱)과 달리 신위의 숫자와 관련이 없다. 신위가 여럿이라도 단탕이면 한 그릇, 3탕이면 세 그릇, 5탕이면 다섯 그릇을 올린다. 탕의 종류에 따라서 탕기의 숫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탕은 신분과 형편에 따라 단탕, 3탕, 5탕 등으로 준비하



탕기 | 국립민속박물관

였으므로 탕기도 단탕의 경우 하나, 삼탕의 경우 세 개, 오탕의 경우 다섯 개를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

탕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무탕기, 사기탕기, 놋탕기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나무로 만든 제기는 가볍고 운반하기가 편리하여 묘제墓祭에 많이 사용하였다. 집에서는 주로 사기와 놋쇠 제품으로 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나무탕기보다 놋탕기의 굽을 더 높게 만들었다. 탕기는 사기그릇 또는 유기그릇을 쓰다가, 현재는 나무로 만든 제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에도 나무탕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탕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나타나지 않는 한국의 독특한 제물로, 탕기 역시 독특한 양식의 제수용 그릇이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두산동아, 1995),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태교
胎敎

정의 잉태된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임신부가 가지는 생각이나 실제 취하는 행위 따위.

내용 사람은 누구나 가문에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바란다. 좋은 아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른부터 미리 조심했는데, 백 리 밖에서 혼처 구하기를 권장하고 20세 이전에 자식 낳기를 기대했다. 백 리 밖에서 혼처 구하기는 근친결혼을 막아 우성 유전자를 확보하려는 시도이고, 20세 이전에 자식 낳기는 젊은 부모가 일찍 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부터 일찍 얻은 아기를 두고 '올 자식이 내 자식'이라 했으니, 일찍 튼튼한 자식 얻기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잉태한 여인은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좋은 말씨를 쓰고 남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임신부는 뱃속의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좋은 행위를 많이 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며,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임신부는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적당히 운동을 해야 한다. 몸가짐을 바로 하고 맑은 공기를 쐬며,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독서도 한다. 길을 갈 때는 몸을 세우고 바르게 걸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바르게 앉아 조용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는다. 누워 잘 때에도 반듯하게 누워 태아가 뱃속에서 부자유스럽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임신부로서 올바른 행동이다.

임신부에게는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첫째, 좋지 않은 곳에 가서는 안 된다. 좋지 않은 곳이란 시끄러운 곳·남이 싸우는 곳·악취가 나는 곳·불결한 곳·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등이다. 이런 곳에 가면 임신부 자신에게도 불쾌하며, 뱃속의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깊은 우물이나 위험한 변소에도 가지 않는다. 잘못해서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초상집에도 가지 않는다. 초상집은 사람이 죽은 곳이고 많은 사람이 모여 곡을 하는 곳이므로, 태아가 부정을 타서 나중에 아기가 병에 걸리기에 십상이라고 여겼다. 초상집은 죽음의 상징이고 태아는 생명의 탄생이므로, 어쩌면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작용한 것일지도 모른다. 임신부는 불이 난 곳에 가지 않는다. 화재 현장은 위험한 곳이고 불을 보면 겁을 먹어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기가 태어나면 성질 나쁜 사람이 된다고 여겼다.

둘째,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 혼자서 산이나 강에 가서도 안 된다. 낭떠러지나 논둑길, 외나무다리를 건너서도 안 되고 다리 밑으로 가서도 안 된다. 외나무다리는 폭이 좁아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다리 밑에서는 흙이나 돌멩이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비바람 칠 때도 외출하지 않는다. 밤길을 걷는 것도 안 좋다.

셋째, 좋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거나 화내지 말고,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고함지르거나 우는 일도 좋지 않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욕설하지 말고 남이 욕하는 소리도 듣지 말아야 한다. 남과 다투거나 싸우지도 않으며, 그러한 장소에 가지도 않는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남에

게 미움 살 짓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비굴한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이런 행동을 하면 태아도 그런 속성을 전달받아 태어났을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따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임신부는 길이 아닌 곳으로 다녀서도 안 되고 담을 넘어가서도 안 된다. 담을 넘어가면 아기가 나중에 도둑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된다고 여겼다. 짐승 잡는 것을 보아서도 안 된다. 짐승 잡는 것을 보면 아기가 나중에 잔인하게 생명을 죽이는 악한 사람이 될까 봐 염려한 것이다.

넷째, 위험한 짓을 하지 않는다. 부엌에서 불을 땔 때에도 땔나무를 발로 차 넣지 않는다. 불붙은 나무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월産月에 빨래를 해서는 안 된다. 임신부도 힘들겠지만 태아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으므로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빨래하면 임신부의 손등이 거칠어지듯 아기의 피부도 거칠어진다고 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고 가는 것도 위험하다. 산월에 큰절을 하지 않는다. 몸을 구부리면 배부른 임신부도 힘들겠지만 뱃속의 태아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임신부는 비가와도 나막신을 신지 않는다. 굽이 높은 나막신은 신다가 발목을 다쳐 넘어지면, 임신부와 태아가 낙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임신부가 마루 끝에 걸터앉지 않도록 했다. 마루 끝에 걸터앉았다가 미끄러져 낙상하면 몸을 심하게 다칠 염려가 있고, 배 속에 있는 태아도 놀라 심하면 낙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지방에 걸터앉아 음식을 먹지 않으며, 문지방 너머로 음식을 갖다먹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옛날 재래식 주택에는 방과 마루의 경계에 나무로 된 제법 높은 턱, 즉 문지방이 있었다. 높은 문지방에 걸터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불안해 보여 좋지 않다. 문지방은 폭이 좁고 턱이 높아서 잘못하여 미끄러지면 몸을 다칠 염려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 낮잠을 많이 자지 말아야 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어도 곤란하다. 낮잠을 많이 자면 임신부에게도 좋지 않을뿐더러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모체가 움직여야 태아도 운동이 되는 것이다. 배불리 먹지 말고 편식해서도 안 된다.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에서는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칠태도七胎道라 하여 임신부에게 일곱 가지 전래하는 태교를 가르치기도 했다. 제1도에서는 다섯 가



엄격히 지켜지는 임신부 금기 사항 | 1977.11. 8 | 경향신문



태교 스트레스 안받게 가족들의 협조를 | 1972.11.24 | 경향신문

지를 금지했는데, 출산일에 머리 감지 않기·높은 곳에 오르지 않기·술 마시지 않기·무거운 짐 들지 않기·물 건너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도에서는 임신부가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웃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거나, 곡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지나친 행동이나 감정의 표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도는 몸이 무거워진 임신부에게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는 가르침인데, 이를테면 문턱·부뚜막·평상·곳간·돌확·측간 등을 들고 있다. 제4도는 아름다운 말을 듣고, 성현의 명구를 외우고, 시를 읽거나 붓으로 써보며, 예악을 듣는 것이다. 또한, 삼불三不이라 하여 나쁜 소리를 듣지 말고, 나쁜 일을 보지 말며,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도 하였다. 제5도는 몸가짐을 바로 하여 자신과 태아의 건강에 유의하고, 아들을 낳도록 유념하는 것이다. 제6도는 잉태한 뒤 석 달이 지나면 아이의 기품이 형성

되므로 기품 있는 물건을 가까이 두고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라는 것이다. 제7도는 배가 불러오면 금욕하고 특히 산월에는 교접交接을 피하라는 것이다.

태아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았다. 술이나 진한 식초를 먹지 않는다.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약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 약이 독이 되어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모양이 비뚤어진 과일이나 벌레 먹은 과일은 먹지 않는다. 비뚤어진 과일을 먹으면 태아가 비뚤어질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토끼고기를 먹으면 입이 찢어진 언청이를 낳는다고 먹지 않았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붙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 금했다. 문어나 오징어도 먹지 않았다. 뼈가 없는 사람처럼 흐물흐물한 아기를 낳는다고 여겼다.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아기가 검어지고 도둑이 된다고 생각했다. 초상집의 음식도 먹지 않았다. 가물치, 가오리, 상어 같은 비늘 없는 고기도 먹지 않았다. 이런 고기는 표면이 검고 거칠어서 아이의 피부도 거칠어진다고 여겼다.

특징 및 의의 태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배 속의 태아를 위해 좋은 행위를 하는 것, 태아와 임신부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태아의 건강이나 운명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에 해당한다. 태교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좋은 걸 배워서 건강하고 온전한 아기로 태어나길 바라는 행위이다.

참고문헌 도리도리 짝자꿍(유안진, 문학세계사, 1980), 민속학산고(김승찬, 제일문화사, 1980), 태교(석성우, 백양출판사, 1986),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2003), 한국민속학논고(임동권, 집문당, 1975).

필자 배도식(裵桃植)

태교신기
胎敎新記

정의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1739~1821)가 1800년(정조 24)에 임신부의 태교를 위하여 한문으로 글을 짓고, 그 아들인 유희柳僖(1773~1837)가 음의音義와 언해諺解를 붙여 1801년(순조 원년)에 완성한 책.

내용 사주당 이씨의 본관은 전주이다. 어려서부터 『소학小學』·『주자가례朱子家禮』·『여사서女四書』 등을 비롯한 경서經書를 두루 읽고 익혔다. 신사임당申師任堂에 버금갈 만큼 학식과 부덕이 뛰어나, 동해모의東海母儀라는 칭송을 받았다. 목천현감木川縣監 유한규柳漢奎와 혼인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언문지諺文志』와 『물명유고物名類考』를 펴낸 서파西陂 유희가 아들이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임신·육아의 경험과 경서 및 의서醫書 등에 기초하여 『태교신기胎敎新記』를 저술했다. 이 책은 수고본手稿本 1책으로, 원문 26장과 언해 43장을 합하여 모두 69장이다. 전체 내용은 2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지언교자只言敎字: 사람의 성품은 하늘을 근본으로 삼아 이루어지며 기질은 부모로부터 받아 형성된다. ②지언태자只言胎字: 태는 인성의 근본이기에, 수태를 위해서 반드시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③비론태교備論胎敎: 태아에게도 군자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 ④태교지법胎敎之法: 태교는 임신부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함께 해야 한다. ⑤잡론태교雜論胎敎: 군자가 되고 소인배가 되는 것은 오로지 태교에 달려 있다. ⑥극언불행태교지해極言不行胎敎之害: 태교를 잘못하면 육신이 온전치 않고, 병약할 수도 있다. ⑦계인지이미신구기위유익어태戒人之以媚神拘忌爲有益於胎: 소경이나 무당을 부르는 따위의 사술邪術을 경계해야 한다. ⑧잡인이증태교지리신명제이장지의雜引以證胎敎之里申明第二章之意: 태교의 이치는 오이가 오이 넝쿨에 달려 있는 것과 같다. 자식은 어미에게 달려 있다. ⑨인고인이행지사引古人已行之事: 중국 주周나라의 태교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⑩추언태교지본推言胎敎之本: 태교는 본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아내와 딸이 반드시 알도록 해야 한다.



태교신기 | 1801 | 한국국학진흥원

또한, 임신 전의 부성父性 태교도 강조한다. 곧 잉태 이전 아버지의 심신 상황이 어머니의 태중 열 달보다 더 중하다는 것이다.

필자 이필영(李弼泳)

태몽
胎夢



태몽이야기 | 1955.12.12 | 경향신문

정의 태아의 임신, 성별, 운명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꿈.

역사 태몽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잘 남아있다. 『삼국사기』권41 「열전列傳」 김유신조金庾信條에는, 서현이 꿈에 형혹성熒惑星과 진성鎭星 두 별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인 만명 역시 신축일 밤 꿈속에서 금빛 갑옷을 입은 동자가 구름을 타고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본 후 임신을 하여 김유신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수로왕이 곰을 얻는 꿈을 꾼 뒤 징조가 있어 태자 거등공을 낳았으며, 죽지랑조竹旨郎條에는 술종공과 그의 아내가 거사가 방 안에 들어오는 꿈을 동시에 꾸고 난 뒤 죽지랑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삼국유사』권4 원효불기조元曉不羈條에 따르면 원효의 어머니가 별똥별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그를 낳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서는 정몽주, 이이, 서경덕 등 여러 인물들이 범상치 않은 태몽을 배경으로 태어났음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이미 고려 이전부터 꿈을 풀이하여 태아의 임신 및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전해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예로부터 특별한 상징물이 등장하는 꿈을 꾸면 태아를 임신할 징조로 여기고, 상징물의 해석을 통해 태아의 성별과 미래의 운명을 예측했다. 태몽을 꾸는 사람은 주로 아이를 낳을 어머니이며 남편 또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심지어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신 꾸기도 한다. 태몽을 꾸는 시기도 임신을 알기 전, 임신 기간, 출산 후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태몽에 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1970년대에 행해진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1,342명의 제보자 가운데 1,220명이 태몽이 맞았다고 응답했다.

태몽에 나오는 상징물은 천체(해·달·별)나 동식물(호랑이·늑대·돼지·황소·토끼·고양이·구렁이·우렁이·조개·잉어·꽃·난초·새), 자연물(산·바위), 도구 및 장식물(가위·가락지·비녀·실·시계), 인물(동자·선녀·군인·예쁜 사람), 기타(비행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상징물들을 유감주술이나 접촉주술 혹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여 태아의 성별과 운명을 예측했다.

태몽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는 데는 꿈에 등장한 상징물이 남녀의 생식기 가운데 어느 것과 비슷한가를 따져보는 유감주술의 원리가 활용된다. 고추·용·구렁이·뱀·미꾸라지·지렁이·무·오이 등 남성의 생식기와 비슷한 것들이 꿈에 나오면 아들이라 여겼고, 밤송이·조개·가락지·곶감 등 여성의 생식기와 비슷한 상징물이 나오면 딸이라 생각했다. 또한 크고 힘센 생명체나 남성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아들을 나타내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생명체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딸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태아의 성별을 점치기도 했다. 같은 상징물이라 해도 그 색에 따라서 남녀를 구분했는데, 예를 들어 붉은 고추·붉은 복숭아·홍시·누런 호박·금가락지·금비녀·나락 등 노란색과 붉은색은 아들을, 풋고추·풋복숭아·풋감·애호박·은가락지·은비녀·쌀 등 푸르거나 흰색은 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다.

한편 태몽은 단순히 상징물이 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 당사자와 상징물이 일정한 관계를 맺거나 상징물이 스스로 일정한 행동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금덩이를 물고 오거나 여우가 가진 구슬을 뺏는 꿈, 잉어를 잡아보니 배에 임금'王'자가 새겨져 있는 꿈 등이 그러하다. 또한 돼지나 물고기·소·말·늑대·뱀·호랑이·용 등에게 밀리고·기고 물리거나, 구렁이에게 몸이 칭칭 감겨서 놀라고 천둥소리나 종소리에 놀라며, 감을 따다 떨어져서 놀라는 꿈 등도 태몽으로 간주된다.

두 가지 이상의 상징물이 꿈에 복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나무가 돼지로, 오이가 미꾸라지로 변하는 등 어떤 물체가 동물로 변하거나, 달걀이 돼지로, 가물치나 새가 금붕어로, 강아지가 고양이로 변하는 등 동물이 동물로 변하기도 한다. 또한 젊은 남자, 남의 남자, 큰 남자, 이상한 사람 등과 동침 또는 애무를 하는 성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태몽도 있다. 이밖에 암수소가 서로 붙어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도 태몽으로 여겼다.

한편 꿈을 꾼 당사자와 상징물의 행위가 태아의 운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달려드는 구렁이나 용의 목을 조르거나 내치는 것은 태아의 운명에 좋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닭을 잡아다 매어두는 행위,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물고기를 본 것 역시 태아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태몽으로 여겼다.

실제로 강원의 한 제보자는 첫아들을 가졌을 때 호랑이가 아이의 손가락을 깨무는 꿈을 꾸었는데, 이 때문에 첫아들이 죽고 둘째아들이 장손이 되었다고 여겼다. 또한 둘째아들을 가졌을 당시 어디 가서 고물을 주워와 대들보까지 잔뜩 쌓아두었는데, 실제로 이 아들은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유통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또한 첫딸을 가졌을 때는 꿈에 담뱃대를 얻었는데, 담뱃대를 얻었으면 아들을 낳아야 함에도 딸을 낳아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태몽이 태아의 운명을 담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징 및 의의 태몽에 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의 기준은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길쭉한 애호박은 남성의 생식기와 비슷하여 아들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색이 푸르기 때문에 딸을 상징하기도 한다. 상징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밤송이에서 알밤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아들을 나타내고, 그냥 벌어진 밤송이는 딸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다.

이처럼 태몽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태아의 성별과 장래를 예측해보려는 가족의 염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다 태몽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포괄하는 산속이 비공식적인 의례 영역으로 남겨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몸소 감당하는 일이었고 비의적秘儀的 성격을 일정하게 지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유교적 의례 영역 속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속은 여성이 주도하는 의례의 영역으로서 일정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배경 속에서 임신과 태아의 성별, 아이의 장래 등을 예측하는 태몽에 관한 해석도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성을 지닌 채 전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三國史記, 海東名臣錄, 강원인의 일생의례(김의숙·이학주, 민속원, 2005),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산속에 나타난 태점·태몽연구(홍순례, 한국민속학27, 한국민속학회, 1995), 태몽에 관한 연구(문홍세, 중앙의학회, 1974),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문화재연구소, 1993).

필자 한양명(韓陽明)

태점
胎占

정의 임신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

내용 태점은 기본적으로 태아가 남아인가 여아인가를 알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임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아이의 성이 결정된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다. 태점을 통해서 남아가 아니라는 심증이 굳어지면, 아들을 낳아야 할 사정이 절박한 임부妊婦는 여러 주술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태아의 성별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유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아의 출산을 막으려고 했다.

태점을 보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태몽, 임부의 행동이나 신체적 변화, 먼저 태어난 아이의 행동이나 신체적 특징 등을 관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태몽에 관해서는 '태몽'편 참조). 여기에 임부와 남편의 나이를 기준으로 태아의 성별을 점치거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움직임을 보고 성별을 점치는 방법 등이 더해지기도 한다.

①임부의 행동이나 신체적 변화를 기준으로 한 태점

- 임부의 배가 되똥하면 딸, 평평하며 두루뭉술하면 아들.
- 임부의 배꼽이 단단하면 딸, 물렁물렁하면 아들.
- 태아가 배꼽·젖가슴 밑에서 놀면 딸, 옆구리·아랫배에서 놀면 아들.
- 뒤에서 임부를 불렀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딸,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
- 임부의 손이 손목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트면 딸, 가로 세로형으로 트면 아들.
- 입덧이 저녁에 나면 딸, 아침에 나면 아들.
- 임부에게 곡식 낟알을 주어 짝이 맞으면 딸, 맞지 않으면 아들.
- 임부의 옆구리에서 길쭉하게 있으면 아들, 반듯이 공처럼 부르면 딸.
- 신을 벗고 들어 갈 때 오른발 먼저 벗으면 딸, 왼발 먼저 벗으면 아들.
- 임부의 배가 왼쪽이 부르면 딸, 오른쪽이 부르면 아들.
- 9개월째에 임부의 젖을 짰을 때 노랗고 끈기가 있으면 아들, 하얗고 미끈거리면 딸.
- 임부가 절에 가서 공을 드린 후 절에 있는 샘을 품어서 미꾸라지가 나오면 아들, 가재가 나오면 딸.
- 임부가 바늘이 든 송편의 뾰족한 끝 쪽을 물면 아들, 귀 쪽을 물면 딸.

②먼저 태어난 아이의 행동이나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 태점

- 아이에게 방망이와 주걱을 내밀었을 때 주걱을 집으면 딸, 방망이를 집으면 아들.
-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앞으로 포옹하면서 앉으면 딸, 궁둥이부터 들이밀면 아들.
- 아이가 놀면서 물건을 머리에 이면 딸, 목에 걸치면 아들.
- 아이에게 물었을 때 대답이 항상 다르면 딸, 항상 같으면 아들.
- 아이가 놀면서 항문 쪽으로 고개를 자꾸 숙이면 아들.
- 아이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었을 때 아들이라 하면 아들, 딸이라 하면 딸.
- 아이의 태를 들어 올렸을 때 반듯하게 수평을 이루면 아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딸.
- 아이의 탯줄이 거뭇거뭇 콩이 박힌 듯하면 아들, 미끈하면 딸.
- 아이의 탯줄이 태반 가운데 붙었으면 딸, 국자모양으로 한쪽에 붙었으면 아들.

③남편이나 산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태점

- 남편과 산모의 나이를 합한 수가 짝수이면 딸, 홀수이면 아들.
- 산모의 나이가 짝수이면 딸, 홀수이면 아들.
- 산모의 나이 수대로 문살을 세어 문살에 닿으면 아들, 문종이에 닿으면 딸.
- 주먹을 쥐고 산모의 나이대로 짚어보아 뼈에 닿으면 아들, 뼈와 뼈 사이의 살에 닿으면 딸.

④태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태점

- 태동胎動이 강하고 드문드문 놀면 아들, 태동이 가볍


悲
哀願하는 産母
喜
斗衡이 넉 아우가…
"이機會에 斗衡이 돌려줬으면"
崔女史, 감쪽같이 生男
이웃마저 몰랐던 「임신」

비희 애원하는 산모 | 1963. 9. 11 | 경향신문

고 자주 톡톡거리면서 놀면 딸.

⑤기타

- 태산을 짚어보아 홀수이면 아들, 짝수이면 딸.
- 동지 팥죽에 넣을 새알을 불에 구웠을 때 위로 부풀어 오르면 아들, 벌어지면 딸.
- 산월로 예정된 달의 초하루에 남자가 집에 처음으로 들어오면 아들, 여자가 들어오면 딸.
- 치마 주름을 세어 짝이 맞으면 딸, 틀리면 아들.
- 칼이나 방망이 등으로 솥 가장자리를 7번 돌려가면서 두들긴 후 세웠을 때 서면 딸, 넘어지면 아들.
- 베개를 살 때 금실이 맞물려 있으면 쌍둥이, 떨어져 있으면 외동이.
- 미역을 사서 들고 올 때 왼손에 들면 아들, 오른손에 들면 딸.
- 미역을 사서 들고 올 때 새끼로 묶었으면 아들, 짚으로 묶었으면 딸.
- 임신한 달이 음월이면 아들, 양월이면 딸.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태아의 성별을 예측했을 때, 아들이라면 별 문제될 게 없지만 여아로 판단될 경우에는 태아를 아들로 만들기 위한 주술적 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했다. 예컨대 붉은 수탉과 오래된 백도라지를 붉은 수수쌀과 함께 삶아 먹으면 태아가 아들이 된다고 여기거나, 도끼를 이불 속에 넣어두든지 돌부처의 코를 긁어다 먹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방법이 민간의 비방秘方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준은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임신 3개월까지는 태아의 성별이 확정되지 않아 약을 복용하거나 여러 방법을 써서 성별을 남아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서는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가지로 만든 도끼를 다른 사람 몰래 아내의 이불 밑에 갖다놓으면 전녀위남轉女爲男의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극단적인 경우, 딸을 낳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유산시키기도 했다. 이때는 장록뿌리를 찧어 생즙을 내어 먹거나 할미꽃뿌리를 삶아먹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 또는 임부의 배를 훑거나 언덕에서 마구 뒹구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태점은 많은 경우 음양설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음양설에서는 우주의 일체만물을 음과 양으로 나누어, 그 생장변화가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음양은 좌우左右, 천지天地, 남녀男女 등 다양한 대립의 쌍으로 나타난다. 태점 역시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좌는 남성 우는 여성, 하늘은 남성 땅은 여성, 홀수는 남성 짝수는 여성 등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감주술의 원리도 태점에 작용한다. 예컨대 동생을 볼 아이가 하는 행동이 남성스러우면 아들을 낳고 여성스러우면 딸을 낳는다거나, 산달 초하루에 집안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남성이면 아들, 여성이면 딸을 낳는다든지 동생을 볼 아이가 방망이를 잡으면 아들, 주걱을 잡으면 딸이라고 보는 것 등이 그러하다.

참고문헌 東醫寶鑑, 增補山林經濟,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산속에 나타난 태점·태몽연구(홍순례, 한국민속학연구27, 한국민속학회, 1995),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문화재연구소, 1993).

필자 한양명(韓陽明)

태처리

정의 자궁에서 태아를 길러 낸 아기 방석方席인 태반胎盤과 생명줄인 탯줄을 출산 후에 일정한 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민속 관행.

내용 태는 보통 짚이나 종이에 정성스럽게 싸서 산실産室 혹은 산가産家의 길방吉方이나 깨끗한 장소 또는 삼신께(삼신을 모신 장소)에 잘 두었다가, 출산 후 3일 이내 또는 3일째에 부정하지 않은 장소를 가려서 태를 내보낸다. 이날을 '삼날'이라고 부른다. '삼'은 태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태는 열 달 동안 어머니와 태아를 한 몸으로 이어주고 태아를 키워 낸 생명줄이다. 분만 후에 잘라 낸 태는 이제 더는 쓸모가 없다고 해도, 새 생명을 기른 태에 대한 신비감과 고마움은 지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태는 일정한 격식에 따라 내보내야 하는 공경恭敬의 대

상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태는 신격화되기도 한다. 삼날을 '삼 나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태를 불에 태우면서 '태가 나간다'고 하거나 아예 태제胎祭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불에 태워진 무형의 태가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인간계가 아닌 자연계로 되돌아간 것인지 모른다. 태 내보내는 일을 왕실에서는 안태安胎라 했다. 이에 반하여, 다소 불경한 느낌이 드는 '태처리'란 말은 실제 잘 쓰이지 않는다.

태는 흔히 아기가 태어난 진자리의 짚과 함께 왕겨나 장작불 또는 숯불에 재만 남을 때까지 태운다.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태를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 땅에 묻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어느 경우든 태는 일단 태운 다음 그 재만 물에 흘려보내든가 땅에 묻는다. 서해안 어촌에서는 태를 갯벌에 묻기도 한다. 그래야 아기가 나중에 갯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해안 어촌에서는 태를 단지에 넣어서 피를 뺀 다음에 바다에 흘려보내기도 한다. 이날 산모는 목욕재계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태를 태울 때는 반드시 그 자리를 누군가 지켜야 한다. 태는 매우 오랜 시간 서서히 타므로, 잠시 방심하여 자리를 뜰 수가 있다. 이렇게 태를 지키는 사람 없이 스스로 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태를 태우는 동안 태를 약으로 쓰려고 노리는 사람이나 간절히 수태를 원하는 불임 여성이 태를 훔쳐 가도록 해서도 안 된다. 개나 다른 짐승이 접근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만일 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태주胎主인 갓난아기에게 좋지 않다고 한다. 아기 얼굴에 금세 열꽃이 피며, 더욱이 향후 팔자가 사나울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태를 태울 때는 모든 과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태실 복제(영조 8년 옹주의 태실) | 안성맞춤박물관

태를 태우는 삼불을 입으로 불어서도, 춥다고 삼불에 몸을 쪼여서도 안 된다. 삼불을 지키면서 덥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등 일체의 불평 섞인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사람의 왕래가 끊긴 시간에 내보낸다. 태를 내보내는 과정을 일체의 부정도 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즉, 다른 사람 모르게 몰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 아래에 장태藏胎하는 사례도 매우 보편적이다. 이때도 태 자체를 묻든지 아니면 태를 태운 재를 묻는다. 특히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 밑에 묻어야, 태주도 그처럼 씩씩하게 큰다고 한다. 태는 아기와 분리된 다음에도 일정한 관계를 지니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은 단지에 태를 넣어서 매장하기도 한다. 이때 단지의 밑은 조금 뚫어 놓는다. 탯물이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전라남도 해안 및 도서지방 일부에서는 아들의 태는 오지항아리에, 딸의 태는 바가지에 담기도 한다. 그만큼 아들을 귀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마을마다 태를 묻는 산이 따로 있기도 했다.

태를 내보낼 때도 당연히 길방을 가린다. 특히 장태방藏胎方, 소태방燒胎方, 매태방埋胎方 등을 따진다. 아기가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인 태세太歲, 달의 간지인 월건月建, 날의 간지인 일진日辰에 따라서 어느 방위에서 태를 내보내야 길吉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물론 시간도 신중히 고려된다. 특별히 일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개 새벽이나 저녁 또는 한밤에 태를 태운다. 일부 해안지방에서는 땅거미가 지는 해거름에 한다. 또한, 반드시 인일寅日 인시寅時를 고집하기도 한다. 이 시간에 태워야 크게 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일子日은 피한다. 이날 태를 내보내면 아기가 나중에 쥐처럼 숨어 다니며 산다고 하여 매우 꺼린다.

한편, 신비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으므로, 태는 간질·폐병·경기 등의 불치병이나 급병에, 그리고 부스럼 등의 사소한 일상 질환에 두루 묘약으로 쓰였다. 만병통치의 명약이라 하여, 태로 술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소주 항아리에 태를 넣고 3년 동안 땅속에서 묵히는 식이다. 잘 말린 태를 빻아서 가루를 내고 기름에 개어 종기 등에 연고처럼 쓰기도 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사용했다. 함경도 일부지역에서는 산모의

기력을 보補하기 위해 미역국에 태를 넣어 끓이기도 했다. 심지어 떨어진 배꼽조차 배냇저고리와 마찬가지로 각종 고시考試나 송사訟事에 큰 효험이 있다고 여겨서, 시험이나 송사에 응하는 사람은 건조된 배꼽을 소지했다.

특징 및 의의 태는 어머니 자궁에서 아기를 길러낸 생명줄이다. 출산 후 모체로부터 분리된 태반과 탯줄은 더는 소용이 없다. 아기를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에 태는 자신의 임무를 다 한 것이다. 그러나 소임을 다하고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해서 태를 그냥 버리지는 않았다. 삼신의 점지를 받아 열 달 동안 새 생명을 키운 태는 감사와 존숭의 대상이다. 마땅히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격식에 따라서 인간계가 아닌 자연계로 보내는데, 이러한 절차를 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신 기간에 어머니-태-태아는 하나의 생명공동체였다. 그러나 출산 후에는 태를 가르는 행위를 기점으로 어머니와 태는 분리된다. 한 몸이 바야흐로 두 몸이 된 것이다. 이제 어머니와 태아를 매개하는 존재였던 태는 자연으로 되돌아갔지만, 태와 태에서 자란 아기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영속적이다. 태를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내보내면 태주인 아기에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길할 수 있다. 그래서 태를 내보내는 일의 절차는 엄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태를 소중히 여기는 관념은 이[齒]나 머리카락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편적인 인류문화의 하나이다. 즉, 접촉주술(contagious magic)의 한 가지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참고문헌 민속의 지속과 변동-출산의례 중의 안태를 중심으로(이필영, 역사민속학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9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필영(李弼泳)

태항아리

정의 태를 담아 보관하는 항아리.

내용 조선 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길일을 택하여 태를 깨끗하게 물로 일백 번을 씻어서 태항아리에 넣었다. 태항아리는 대개 분청사기 혹은 백자로 만들고, 뚜껑과 몸체에는 네 개의 귀를 달았다. 그리고 큰 항아리인 외호外壺와 작은 항아리인 내호內壺로 구성된다. 외호는 특히 '태호胎壺', '태항胎缸', '태옹胎甕'이라고도 불렀다. 내호에는 태를 담고, 그것을 다시 외호에 넣었다. 태를 넣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내호의 안쪽 면 바닥에 동전銅錢을 놓고, 그 위에 태를 얹었다. 그리고 내호의 입구는 기름종이와 남색 명주로 덮고, 이를 붉은색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내호는 외호에 비하여 다소 홀쭉하게 생겼다. 이렇게 내호를 준비한 다음에는 다시 길일을 택하여 외호에 넣었다. 이때 외호의 안쪽 면 바닥에 솜을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내호를 놓았다. 외호와 내호 사이의 공백은 역시 솜으로 촘촘하게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했다. 외호의 입구는 감당甘糖으로 밀봉을 하고 붉은 끈으로 묶었다. 이렇게 마련한 태항아리는 태실胎室까지 봉송하여 그곳에 태지석胎誌石과 함께 봉안했다. 태실 옆에는 태비胎碑도 세웠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양반은 왕실처럼 태실은 쓸 수 없었지만, 자손의 태를 태항아리에 정성껏 담아 가산家山에 안장安藏했다. 16세기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의 『양아록養兒錄』에는 당대의 안태安胎 실상이 묘사되어 있다. 곧 계집종에게 손자의 태를 개울에서 깨끗이 씻게 하고, 이를 황색 사기항아리에 담아 기름종이로 덮고 끈으로 묶은 다음, 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묻어 두었다. 그리고 열이틀 후에 선석산禪石山 서쪽 마을 태봉胎峯 아래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묵재일기默齋日記』에서는 태항아리에 불에 태운 태의 재를 넣었다고 하였다.



세종대왕 태내항아리와 태지석 | 국립고궁박물관

민속자료에서도 태를 항아리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태를 태운 재를 태항아리에 담아서 태주胎主가 혼인을 하면 주든가, 또는 길방吉方의 산을 찾아 그곳에 묻는다. 그러나 태를 태우지 않고 항아리에 담아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태항아리의 안쪽 바닥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태의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한다. 태항아리는 길방을 잘 가려서 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태주가 눈을 잘 뜨지 못하거나 시름시름 아플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길방을 다시 찾아 이장移藏을 해야 한다. 때로는 집안의 대문이나 산실과 일직선 방향에 있는 밭두렁이나 둔덕에 묻기도 한다. 어촌에서는 바다에서 일을 잘하라고 갯벌에 묻기도 한다. 또 사내아이의 태는 항아리에, 여자아이의 태는 바가지에 넣어 묻기도 한다.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태항아리의 전통이 강한 편이다.

특징 및 의의 항아리의 질이나 크기만 다를 뿐, 태항아리는 조선 왕실이나 사대부 양반가 그리고 일반 백성까지 두루 사용하였다. 태항아리 전통은 현존하는 민속으로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왕실산속 태항아리 특별전(문화재청 궁중유물전시관, 1999), 조선시대 백자 태항아리의 성립과 변천(윤용이, 동양미술사학1, 동양미술사학회, 2000), 조선왕실 태항아리 변천 연구(윤석인, 고문화7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0),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필영(李弼泳)

택일
擇日

정의 행사를 하기에 앞서 피흉추길避凶趨吉의 한 방법으로 음양오행 원리와 육갑六甲 신살법神煞法 등에 의거하여 좋은 날을 가리고 나쁜 날을 피하는 일련의 행위.

역사 택일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록은, 진평왕(재위 579~632) 대에 설씨녀薛氏女가 혼인을 앞두고 '날을 골랐다[卜日]'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 설씨녀는 율리 마을 민가의 여자이다. …… 진평왕 대에 …… 설씨가 말하기를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갑작스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가 변방 방위에 나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에, 날을 골라서[卜日] 예식을 올려도 늦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6세기 말경에 이미 민간에서도 혼인을 앞두고 좋은 날을 택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도 신부 측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 연길涓吉·날받이 관행과 비슷하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일자日者·일관日官 관련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길일과 흉일을 가리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국가나 왕실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능을 개장改葬할 때, 혹은 기설제祈雪祭 등 각종 제사를 지낼 때 사천대司天臺의 일관에게 명하여 택일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 밖에도 좋은 날과 방위를 가리는 관행이 널리 행해졌다.

조선시대에도 국가·왕실과 민간에서 날을 가리는 풍습은 지속되었으며 더욱 성행하였다. 17세기 초 경상도 현풍에 살았던 곽주郭澍(1569~1617)와 그 가족이 쓴 한글 편지인 『현풍곽씨언간玄風郭氏諺簡』도 당시의 다양한 택일 관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 없고 조용한 날(손 업고 죠용ᄒᆞᆫ 날)을 가려 말[馬]을 보내고, 십악대패일十惡大敗日과 천구일天狗日을 피하고 책력(칙녁)과 날 받는 책(날 밧ᄂᆞᆫ 칙)을 이용하여 딸의 혼인날을 받으며, 살풀이하는 날(살 므ᄅᆞᆯ 날)을 가리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신재효申在孝(1812~1884)가 개작한 판소리 〈박타령〉의 놀부 심술을 묘사하는 대목 중에는 "본명방本命方에 벌목하고, 잠사각蠶絲角에 집짓기와 오귀방五鬼方에 이사 권코, 삼재三災 든 데 혼인하기"라는 사설이 나온다. 이 사설을 볼 때, 조선 후기 사람들도 날짜와 방위를 가려서 일을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례와 관련해서도 길일과 흉일을 가리는 풍속이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장기葬期를 정해 장사를 치르는 것이 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에 따른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태어난 시가 좋으면 팔자가 좋고, 장삿날이 좋으면 자손들이 좋다."는 믿음에 따라 길일을 택해 장사를 지내고자 너도나도 장기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내용 "길일과 흉일을 구별하여 고르다, 가리다"는 의미에서 '날가림', "길일을 점쳐서 골라 정하다."는 의미에서 '복일卜日', "길일을 물어서 취하다."는 의미에서 '추길諏吉' 또는 '추일諏日'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삶에서 시간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대한 행사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서 미리 그 기일期日을 정해놓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시대에 따라 중대한 행사에 포함되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혼인·출산·초상·이장·개업·건축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인생사에서 중요한 일의 경우 그 빈도가 낮아 평생 1~2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생의례적 성격을 지니므로 그 주기도 대부분 인생의 전환기에 해당되며, 일상日常 택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 낮은 변화성, 강한 전승력을 가진다.

즉, "새사람 들어오고 3년, 새집 짓고 3년 나기 어렵다."라는 말처럼 일생一生 택일은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이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인생의 중대사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신중하게 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피흉추길의 한 방법으로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하여 좋은 날을 고르고 나쁜 날을 피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사용해 왔다.

사람들이 택일하는 이유는, 좋은 날에 행하는 일은 좋은 기운을 받아 그 결과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좋은 결과는 더 좋게 하고 나쁜 결과는 작게 하려는 조치로서 길일과 흉일을 가려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인류가 지닌 보편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길일과 흉일에 관한 풍속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서양의 대부분 문화권에 널리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한국에도 길일과 흉일을 가려서 어떤 일을 하려는 풍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문명화하면서 택일 풍속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국가와 민간에서 중시하던 택일 풍속은 점차 그 힘을 잃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굳이 택일을 믿어서가 아니라 좋은 게 좋으니까'라는 보험 심리에서 길일을 일부러 선택한다. 그래서 요즈음에도 여전히 길일이라고 알려진 날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예식장이 붐비고 이삿짐 업체가 유난히 바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길일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으므로, 인쇄 시설의 보급에 힘입어 『가정보감家庭寶鑑』이나 『택일력擇日曆』 같은 서적이 민간에서 많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서적은 생기복덕生氣福德 일람·연길·혼삼재婚三災·중상일重喪日·입관길시·하관길시·개총기일開塚忌日 등 가정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택일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현재 택일 풍속의 전반적인 전승 실태를 살펴보면, 혼인·이사 택일이 가장 성행하고, 그다음으로 출산·개업 택일이 중요시되며, 장례·이장·집수리에 관한 택일은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상량 택일은 좀처럼 행해지지 않는다. 『천기대요天機大要』 등 과거의 택일서에서 기조문起造門으로 매우 중시되던 건축 택일은 예전에는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던 출산 택일보다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가 대표하는 규격화·공동화된 주택 문화의 확산, 한두 명의 자녀만 낳는 저출산 추세의 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축 택일은 점점 사라지고 출산 택일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택일 풍속도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삿날과 이장일을 정할 때도 예전에는 집안에 거듭 초상이 난다는 중상일重喪日·복일復日·중일重日을 모두



천기대요 | 1738 | 국립민속박물관

엄격하게 가렸지만, 지금은 중상조차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삼일장三日葬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후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삼일장이 보편화하면서 장례에 관한 택일에서도 금기 사항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혼인 택일은 신랑·신부의 본명생기법本命生氣法에 의거하거나, 신랑·신부의 사주를 택일 원리에 맞추어 하는 것이 본래 원칙이다. 그러나 1주일 주기로 생활의 흐름이 짜인 현대인들은 역학상의 길일보다도 하객들이 편하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공휴일을 더 선호한다. 여기에 길일까지 겹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하면서 금요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혼인·이사·집수리 등을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손'이다. 우리 민속에서 '손'은 날짜에 따라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귀신으로, '손님'의 약칭이다. 음력으로 1일·2일은 동쪽, 3일·4일은 남쪽, 5일·6일은 서쪽, 7일·8일은 북쪽에 있다가, 나머지 이틀간(9일·10일)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 뒤 11일에 다시 땅에 내려와 동쪽에 나타난다고 한다. 즉, 10일 간격으로 해당 방위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흔히 손 있는 날이나 방위에 이사·혼인·집수리 등을 했다가는 큰 재앙을 당한다고 믿었다.

속칭 '손'을 『천기대요』에서는 태백살太白煞이라고 하는데, 대례大禮 때 초례상을 차리는 방향을 피하는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17세기 초 『현풍곽씨언간』에서 말[馬]을 보내는 날로 '손 없고 조용한 날'을 꼽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행사 택일 시 손 없는 날을 두루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손 없는 날에는 혼인·이사·개업·집수리·장 뜨기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다. 손 없는 날은 순서대로 항상 반복되므로 누구나 책력 없이도 쉽게 알 수 있어서 민간에서 행사 날짜를 잡는 데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특징 및 의의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좋은 날을 가리고 나쁜 날을 피하려는 택일은 혼인·출산·초상·이장 등 일생의례적 성격의 행사에서는 일상적인 택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낮은 변화성·강한 전승력을 가진다.

참고문헌 역서류를 통해 본 택일문화의 변화(김만태, 민속학연구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김만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국 택일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김만태, 정신문화연구3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현풍곽씨언간 주해(백두현, 태학사, 2003).

필자 김만태(金萬泰)

통과의례
通過儀禮

정의 인생의 고비와 계절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 짜낸 구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들.

내용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는 '인생고비(life crisis)'라고 부른다. 인생고비는 개인의 삶인 일생에 밀착된 것과 자연현상의 변화과정과 밀착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일생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전자를 '일생의례一生儀禮'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계절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간적으로 집중화된 표상으로 나타나는 '세시의례歲時儀禮(Chapple과 Coon이 rites of intensification 명명)'라고 부를 수 있다. 인생이 고비를 넘겨야 하듯이 계절도 고비를 넘김으로써 다음 시기가 다가온다는 인식과 사상의 반복적인 유형화에 착안한 사람이 인류학자들이다. 인생고비와 계절변화를 무난히 넘기지 않으면 세상의 질서와 인생살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으므로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한 구상과 행위가 벌어지게 마련이며,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통과의례라는 문화 현상으로 이해한다.

"의례를 통하여 개인의 인생고비를 넘긴다."라는 것에 착안한 아놀드 반 게넵(A. Van Gennep, 1873~1957)은 개인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産-冠-婚-葬]들을 고려하여 삶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반 게넵은 삶에서 의례만을 따로 떼어 내거나 일생의례의 범주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례라는 현상을 통해서 삶을 구

성하는 구상과 행동들이 통합적(synthetic)으로 드러남을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한 분석적 준거 틀로서 1908년 '통과의례通過儀禮(rites of passage)'라는 용어를 창안하였다. 통과의례의 과정적 구도는 분리分離—전이轉移—재통합再統合으로 구성되며, 이는 사회를 하나의 '통합적 전체(society as a whole)'로 보는 뒤르껭(É. Durkheim) 학파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생의례와 세시의례는 서술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의례는, 의례를 준비하거나 의례의 과정에 참여하여 연행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관계는 규격화하고 더욱 돈독하게 변한다. 그래서 의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벼슬이 높으면 높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정성으로 준비해서 사회적 관계의 원활함을 위해 준비하고 예禮를 갖추는 것이 통과의례의 본래 목적이다. 의례가 없으면 개, 소 또는 벌레와 다름없으며, 이것이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문화의 문제이다. 주자학朱子學에서는 의례의 유무가 문화의 문제라고 한다면(본질), "의례의 과잉은 예禮가 아니다過則非禮."라고 했다(정도). 즉, 지나친 의례는 인생살이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며, 세상의 질서와 삶을 유린하는 결과를 생산한다는 인식이 깔렸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의례의 본질과 정도가 문화의 제어공학(cybernetics)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삶의 과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것은 문화적 차이의 반영이다. 개인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생生—사死의 기본 구조를 설정한 석가모니나 반 게넵의 인식은 인도—아리안 전통의 반영이다. '생生은 고苦'라고 가르치는 불가佛家에서는 인생고비를 생로병사生老病死라고 하여, 살아가는 것보다는 삶을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인생고비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관혼상제冠婚喪祭'라는 예로서 규정하였다. 석가모니는 생과 사를 연결하는 인생고비를 노老와 병病이라고 가르쳤고, 반 게넵은 어른이 되고 혼례를 하는 과정으로 '생'과 '사', '산産'과 '장葬'을 연결하였다. '생'과 '사'의 처리는 누군가가 해 주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이해가 '산'과 '장'으로 나타난다. 현세의 삶과 인간관계에 주목한 주자朱子는 예禮라는 개념으로 관혼상제를 설정하였다. 중국인들이 설정했던 '관혼상제'의 구도를 받아들여,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했던 조선에서는 전통 만들기 과정에서 하나의 형식이자 틀로서 '사례四禮', 즉 '관혼상제'를 이용하였다. 주자학과 성리학에서 아예 출생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점은 출생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반영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통치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출산의 전후에 이어지는 의례들을 인생고비에 포함한다. 예학은 남성 중심의 관행이었지만, 의례의 실천은 여성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쌀과 정화수와 미역 한 줄기를 얹은 삼신상은 신생아의 아버지에 대한 금기 사항도 요구한다. 출산일이 가까워져 오면 짐승을 도살하거나 도살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돌잡이는 부모와 가족들의 희망을 말해주는 자리이고, 돌상은 아이의 탄생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이다. 돌은 부엌에서 돌상에 올릴 전을 부치는 아이의 숙모에게도 기쁜 날이다.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을 위하여 곡哭하고 상복을 입을 조카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의례가 관례다. 그런데 어른이 되는 과정이 복잡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산간에 사는 두굼다니(Dugum Dani)족의 성인식인 관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통과의례의 과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번지점프는 두굼다니족의 성인식을 흉내 낸 것이다. 우물 '정井'자로 나뭇가지들을 쌓아 올려서 15m 정도 높이를 만든다. 성인식을 치러야 하는 남아는 발목에 칡넝쿨을 묶고 꼭대기로 올라간다. 지상에 있는 어른들이 격려의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가운데, 아이는 공중에 몸을 날린다. 줄이 풀린다든지 너무 길어서 몸이 땅바닥에 닿아 크게 다치면, 아이는 어른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간주된다. 줄이 짧아서 몸이 공중에 걸리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웃음거리가 되어 어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다치지 않거나 약간 다치는 정도로 땅바닥에 근접하게 떨어져서 살아난 아이만이 제대로 어른 대접을 받는다.

옛날 신문을 뒤져 보면, 결혼 당일 신랑이 죽은 사

건들이 보도되었다. 신부 측 하례객들이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서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는 동상례東床禮 중에 신랑이 사망했다거나, 갑자기 동네에 불이 나서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둔 채 모두 불을 끄러 간 사이에 신랑이 죽었다는 이야기들이다. 신부가 겪는 폐백의 어려움도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부와 신랑이 혼례라는 통과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인생고비를 풀어내는 대가의 의미를 지닌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한 쌍으로 연결되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돈독해지는 것이다. 스페인 신부神父는 아즈텍족의 혼례 그림을 그리면서 신부와 신랑의 옷자락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매듭으로 표현하였다. 그 매듭은 영원히 풀어버릴 수 없는 부부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혼이 쉬운 것은 그만큼 결혼 과정이 쉽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일 수 있다. 개인이 배우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맺어진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인정이 필요하다.

부거제夫居制를 하는 진도에서는 시집을 온 신부가 마을의 새로운 주민이 되었다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그 인정의 획득 과정은 혼인날 이루어지는 '탈초脫草'에서 비롯된다. 신부의 고향 마을에서 결혼식을 치른 다음 갓 혼인한 부부는 신랑 동네로 신행을 간다. 신부가 탄 가마는 신부 동네의 청년 네 명이 메고, 가마 주위를 여러 명의 신부 동네 청년들이 호위하듯이 둘러싼 채 행렬이 움직인다. 그러다가 동네를 벗어나는 지점에 다다르면, 미리 기다리고 있던 신랑 동네 청년들이 가마를 향하여 돌진하여 가마를 둘러싼 청년들과 싸움판을 벌인다. 이때 공격 측의 청년들은 "신부초新婦草"를 외치면서 가마를 향하여 달려든다. 가마 속에 앉은 신부는 치마폭에 수북하게 담배를 쌓고, 가마 속으로 들어오는 손마다 한 개비씩 쥐여준다. 이렇게 해서,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에게 시집을 갔다고 하는, 한 개인의 혼인 사실은 마을과 마을의 경계를 넘어선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한다. 개인의 통과의례가 개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이라는 부분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통과의례라는 분석적 준거 틀의 용어가 어떻게 문화 전반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자가례』는 상대적으로 상례에 치중하고 있다.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설정하는 의례를 복잡하게 구성한 배후에는, 조상을 빗대어서 살아있는 자손들의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풍수사상과 중첩된 상례는 자손의 발복發福과 깊은 관계가 있는 조상의 지위를 설정한다. 조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잘 살아온 사람은 조상대접을 받기 쉬웠으나, 그렇지 못하면 조상으로 모셔줄 자손조차 없는 법이다. 사령死靈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예화例話들이 많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팽창하는 이유도 된다.

일본인들은 유교의 『주자가례』를 받아들이면서 관혼상제가 아니라 '관혼장제冠婚葬祭'라고 명명하였다. 상喪보다 장葬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예학으로서 복잡함의 극치를 이루는 상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주검을 처리하는 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이 일본문화의 한 측면이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례 과정의 핵심인 복服 또는 오복제五服制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대화 과정의 조선에서는 제사 방식도 변하였다. 『가례』에서 "벽설壁設"로 제사상을 차리라고 했던 것을 천도교에서는 "아설我設"로 차리라고 하였다. 벽설로 차리는 것은 귀신의 입장이고 아설은 제사를 봉행하는 자손의 입장이다. 제사도 결국은 살아있는 자손 중심으로 차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졌다. 제주도에서는 문전상이라는 것을 차린다. 조상제사도 중요하지만, 집을 지키는 여러 다른 귀신에게도 예를 갖추어야 한다.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제사상 옆에 성주상과 삼신상도 차린다. 제삿날에 집을 지키는 성주에게 예를 올리고, 아이들을 점지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삼신할머니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죽은 조상을 위해 제사를 모시는 것과 서양식의 추모기념을 하는 것은 '사람(person)'이라는 개념에 대한 동서양의 기본적인 생각, 이른바 '인격주의(personalism)'의 차이를 표현한다. 이승의 사람이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과하여 저승의 조상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제사라는 의례를 통하여 조상과 후손은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는 음지령陰地靈이 '귀鬼'이고 양지령陽地靈이 '신神'이라고 풀이하였다. 후손들이 조상을 음지에 모시면

조상은 후손에게 벌이나 앙갚음을 내릴 것이고, 후손들이 조상을 양지에 모시면 조상은 후손의 발복에 힘을 실어준다는 이론이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호혜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사상에서 이런 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느님과 그의 대리인 예수뿐이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상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적 절차들이 모두 통과의례의 범주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통과의례라는 분석적 준거 틀로 바라볼 수 있는 한국인의 일생의례는 한국문화를 반영하기에 충분하다. '관혼상제'를 한국인의 전통적인 일생의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전형화된 측면이 있다. 성리학적 통치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관혼상제'와 '사례四禮'를 한국인의 일생의례라고 간주하는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적으로 일생의례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시대적으로 일생의례의 변화 양상이 문화 변동의 차원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학자들은 토속지土俗誌(ethnography)와 관문참여觀問參與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반 게넵이 『통과의례』란 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왕에 수집된 자료들을 치밀하게 정리하였던 것처럼, 한국인의 일생의례에 관해서도 지역적·시대적으로 면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진도 하사미의 의례생활-조상숭배 의례의 생태적 기능을 중심으로(전경수, 인류학논집3,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77), 통과의례(A. Van Gennep,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92), Principles of Anthropology(Eliot D. Chapple & Carleton S. Coon, 1942).

필자 전경수(全京秀)

통혼권
通婚圈

정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

내용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배타적이고도 영속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정이다. 그러나 혼인은 당사자의 개인적 결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가문과 가문이 상호 인척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더욱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를 형성한다. 혼인은 자족적인 마을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던 농촌주민들이 마을을 넘어서서 사회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그러나 혼인은 당사자의 일생과 그가 속한 가문의 신분적 지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가를 연결해주고 양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적관계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통혼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혈연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어느 사회나 특정한 범위 내의 친족 성원들과 혼인하는 것을 선호 내지는 금지하는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같은 씨족 내에서는 혼인할 수 없고 다른 씨족의 성원들과 혼인하도록 규범화된 '씨족외혼제氏族外婚制(clan exogamy)'가 일반적이다. 조선시대에 관습적으로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철저하게 준수되어 온 '동성동본불혼율同姓同本不婚律'은 씨족외혼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부계친족의 성원들이 한 마을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종족마을(집성촌)이 발달한 한국사회에서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마을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각성마을各姓-에서는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질 수 있지만 혼전 이성교제를 금기시하는 남녀의 사회적 격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촌락내혼村落內婚을 바람직하지 못한 혼인양식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는 대체로 촌락내혼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녀의 사회적 격리의식이 희박하거나 넓은 범위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고립된 지역에서는 촌락내혼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해안의 어촌마을이나 제주도에서 촌락내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녀의 사회적 접촉이 비교적 개방된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서 촌락내혼율이 높은 것은 남녀 교제의 개방성과 함께 지역적 고립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혼의 지역적 범위는 신분적 배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귀속적歸屬的 지위를 중시하는 신분사회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신분이나 계급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규범화된 계급내혼제階級內婚制(class endogamy)가 개인의 혼인을 규제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제도로서의 신분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폐지되었으나 오랜 신분사회의 전통이 반상班常관념으로 강하게 남아 배우자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이 신분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들보다 사회적 평가가 높은 집안과 통혼하여 자신들의 신분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고자 노력하는 반면, 신분적 지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낮은 신분과의 통혼은 기피한다. 그래서 신분적 우월감이 강하고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저명한 양반 가문에서는 자신들과 어울리는 혼반婚班을 찾아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원혼遠婚을 즐겨하였다. 시집살이라는 고달픈 문화적 적응과정을 거쳐서 며느리가 시댁문화에 철저하게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부계중심의 친족 구성원리도 가능한 한 멀리서 혼처를 구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라는 말은 이러한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고 교유의 범위가 넓지 않은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혼인을 통해서 신분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조건들이 이들의 통혼 범위를 제약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일상적인 생활권 범위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근혼近婚의 경향을 보여준다. 전통사회에서는 대체로 오일장五日場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장권市場圈의 범위 안에서 70~80% 이상의 혼인이 이루어져 시장권과 통혼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반가에 예속되어 있거나 특정 촌락에 거주가 제한되어 있었던 천민들의 경우에는 같은 마을 안에서 비슷한 신분끼리 혼인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신분에 따른 계급내혼 의식은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이 상호 간의 통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끼리 혼인하고 어촌지역은 어촌지역끼리 혼인하여 농촌과 어촌 사이의 통혼은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여성이 어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어촌에서 성장한 여성이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태학적 적응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농촌지역 사람들이 어촌지역 사람들과 혼인하기를 기피함으로써 어촌지역 사람들은 어촌끼리 혼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더욱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촌과 어촌 간의 통혼 단절은 계급내혼제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 통혼권은 혈연적 요인과 신분적 요인 외에도 사회관계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명한 양반들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배우자를 물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림儒林을 통한 폭넓은 사회관계망의 형성이 현실적인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고 활동범위가 넓지 못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폭넓은 사회관계망의 구축이 불가능했으므로 비교적 가까운 일상적인 생활권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였다. 같은 양반 가문의 성원 중에서도 활동의 범위가 좁은 보통 성원들은 일반 서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근혼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종족의식과 신분적 우월감이 강하고 사회적 활동범위가 넓은 주요 인사들이 원혼의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가 개방되고 제도교육이 폭넓게 보급되어 직업적·지역적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통혼권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는 이처럼 개인의 배우자 선택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함께 사회관계망의 확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통혼의 지역적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 공간적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요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같은 마을', '같은 면面', '같은 군', '같은 도道', '다른 도' 등 행정구역별로 범위를 나누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사회관계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행정구역의 경계선 가까이에 위치한 마을에서 인접 마을과 혼인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다른 면', '다른 군' 또는 '다른 도'로 집계되어 실제로는 근혼이지만 분석에서는 원혼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마을을 벗어난 농촌주민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범위로는 오일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장권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군현郡縣]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 시장권은 '우리 고을'이라는 귀속의식을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공동생활권이다. 현대의 행정구역으로는 몇 개의 면을 포괄하는 범위에 해당하며 하나의 군에는 대개 2~3개의 시장권이 존재한다. 일반 농촌주민들은 약 70~80% 이상이 이 시장권의 범위 안에서 혼인을 하고 있어서 시장권과 통혼권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각 마을에 산재한 연비聯臂 친척들이 양가를 연결하는 중매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서 상대 집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혼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동일한 시장권 안에서는 같은 면面인가 다른 면인가 하는 문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같은 군'이라 하더라도 시장권이 다르면 통혼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다른 군'이나 '다른 도'라 하더라도 시장권이 인접해 있으면 통혼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통혼권의 분석은 중요한 생활권의 하나인 시장권을 '일차적 통혼권'으로 설정하고, 일차적 통혼권과 인접한 시장권을 '이차적 통혼권', 이차적 통혼권을 벗어난 지역을 '삼차적 통혼권' 혹은 '원혼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농촌 주민들의 의미 있는 사회관계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삼차적 통혼권은 통혼의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다시 세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촌락내혼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촌락이 아니라 사회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한 독자성을 갖는 자연촌락을 단위로 해서 분석하여야 한다. 자연촌락이 자족적 생활의 단위를 이루고 있고, 이 자연촌락을 '우리 마을'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촌락을 벗어나면 비록 같은 행정촌락[리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 마을은 '다른 마을'인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자연촌락을 포함하는 행정마을을 단위로 통혼권을 분석하면 '다른 마을'과 통혼한 사례가 촌락내혼으로 집계될 위험이 있다.

공간적 거리를 기준으로 통혼 범위의 넓음과 좁음을 구분하는 방법도 지형이나 교통로 등 마을의 입지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기준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촌주민들의 사회관계망으로서의 통혼권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통혼권은 친족제도와 혼인관습, 신분제도와 반상관념, 남녀교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친인척 관계와 문중 간의 교류, 선비들의 학문적 교유, 시장 출입, 관공서 출입, 학교 교육, 마을의 입지와 교통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된 매우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다. 그러므로 통혼의 지역적 범위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이 속한 가문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며, 농촌주민들의 사회관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통혼의 지역적 범위는 '같은 마을(자연촌락)', '시장권(일차적 통혼권)', '인접 시장권(이차적 통혼권)', '기타 원혼지역(삼차적 통혼권)'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농촌지역 통혼권의 구조와 변화과정(이한방, 지리학논총14,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987), 동해안 어촌마을의 지역적 통혼권(이창기, 민족문화논총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영해지역 반촌·농촌·어촌의 통혼권 비교연구(이창기, 민족문화논총4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지역적 통혼권 연구의 비판적 검토(이창기, 민족문화논총4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8), 통혼권과 지역사회체계 연구(정승모, 한국문화인류학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통혼권의 공간동학적 의미(박성용, 한국문화인류학28, 한국문화인류학회, 1995), 한국농촌의 지역적 통혼권(여중철, 신라가야문화9·10, 영남대학교 신라가야문화연구소, 1978).

필자 이창기(李昌基)

퇴계상제례답문
退溪喪祭禮答問

정의 조선 중기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이 문인들과 함께 상례와 제례에 관하여 문답한 내용을 후일 그 문인들이 모아서 만든 예문답서禮問答書.

내용 목판본 2책이다. 1618년(광해군 10) 이황의 문인 정구鄭逑(1543~1620)가 공주목사로 있을 때 공주에서 이 책을 간행하였다. 이때 김장생金長生(1548~1631)은

정구에게 글을 보내서 이 책이 간간이 고례古禮와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고증考證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 시기 호서, 영남을 대표하는 예학자들(정구와 김장생)의 예학적 교류가 빈번했음을 알게 한다. 후에 이황의 문인 조목趙穆(1524~1606)은 이 책의 총록總錄을 지었다.

조목은 이황의 팔고제八高弟 중의 한 사람이다. 이 책의 본문 내용은 대개 이황의 문인인 김성일金誠一(1538~1593), 정유일鄭惟一(1533~1576), 김부윤金富倫(1531~1598), 우성전禹性傳(1542~1593), 이덕홍李德弘(1541~1596), 김명일金明一(1533~1569), 임영林泳(1649~1696), 문위세文緯世(1534~1600), 정사룡鄭士龍(1491~1570), 류운룡柳雲龍(1539~1601), 구봉령具鳳齡(1526~1586) 등의 저술 속에 들어 있는 이황과의 예 문답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모두 편지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이황의 예설에 관한 견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남학파의 예설을 두루 살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호서예학파인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의례문해疑禮問解』에는 이 책의 퇴계 예설이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부록」에는 『퇴계상제례답문변의退溪喪祭禮答問辨疑』라 하여 퇴계 예문답서에 대한 의문점을 변설한 '변의辨疑 34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17세기 초에 호서와 영남의 예설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퇴주 | 경북 안동 하회 류씨 묘소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퇴주기
退酒器

정의 제례祭禮 때 헌작獻爵하고 물린 술을 담는 그릇.

내용 퇴주退酒는 헌작, 즉 제상에 올렸던 술을 물린다는 말이다. 따라서 퇴주기退酒器는 헌작한 술잔을 내려 술을 비울 때 쓰는 그릇이다.

예전에는 퇴주기가 따로 있었으나, 그릇의 모양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던 것 같다. 현재의 관행에서는 특별히 정해진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접과 같은 그릇을 쓰고 있다.

초헌初獻을 하고 아헌亞獻을 하기 전에 초헌 잔의 술을 퇴주기에 부어 잔을 비운다. 아헌을 마치고 종헌終獻을 할 때도 아헌 잔의 술을 퇴주기에 따라 잔을 비운 후 종헌 잔에 술을 채운다. 퇴주기에 모은 술은 음복飮福 때에 나누어 마신다.

특징 및 의의 퇴주기는 제상에서 물린 술을 모으는 빈 그릇으로, 특별히 지정된 용도의 그릇은 아니다. 주로 대접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편기
籩器

정의 제례 때 제물인 떡을 담는 그릇.

내용 떡은 한자로 '병餠' 또는 '편籩'이라고 한다. 그래서 떡을 담아 올리는 제기를 '병기'·'편틀'·'편대'·'떡틀'이라고 한다.

편기는 높거나 낮은 굽이 달린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유기鍮器나 나무로 된 네모 판을 사용하였다. 편



편대 | 국립민속박물관

기 윗면의 네모 판 모서리에 약간의 운두(그릇이나 신 따위의 둘레나 둘레의 높이)가 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함께 쓰였다. 편기를 따로 마련하지 못하면 큰 평접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편기에 많은 종류의 떡을 높이 괴는 것을 가문의 위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떡을 편기에 쌓아올리는 일은 남성들이 주로 맡았다. 제사음식의 떡은 '본편'이라 불린 시루떡을 가장 많이 쌓고, 그 위에 여러 종류의 떡을 층층이 괴어서 높게 한다. 시루떡 위에 올라가는 갖가지 떡은 외형상 본편을 장식하는 형상으로서 모양과 색, 재료, 만드는 법이 다양하다. 이처럼 떡을 높게 괴어 올린 것은 "제사에 떡을 안 올리면 조상이 섭섭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훨씬 웃돌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제사에 쓰는 떡을 괴는 그릇으로 편틀에 떡을 높이 괴는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구이를 놓는 적대炙臺와 네모난 겉모양이 같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두산동아, 1995),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편적 片炙

정의 제례에서 신에게 올리는 두부구이.

역사 1634년(인조 12)의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에는 표고버섯·석이버섯·참버섯·김·다시마·죽순·산약·연근·녹두가루·밀단백질 등과 아울러 두부를 소선素膳 재료라 하고, 이들로 만든 찬품饌品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부로 만든 찜을 숙편熟片, 두부로 만든 구이를 편적片炙이라 하였다. 그런데 1643년(인조 21)의 『영접도감의궤』에는 편두포片豆泡로 적炙을 만들어서 두목頭目들의 조반早飯에 올린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편적은 편두포적의 준말로 짐작된다. '편片'은 '조각 편'이고, '두포豆泡'는 두부豆腐이니, '편두포'란 두부를 자른 두부 조각이고, '편두포적'은 자른 두부로 만든 구이이다.

내용 조선왕조는 기신제忌晨祭나 능침제陵寢祭 등에서 두부로 만든 백증白蒸·전증煎蒸·잡탕雜湯을 올렸다. 백증은 두부를 방형方形으로 잘라 기름에 지져서 간장을 넣고 만든 것이고, 전증은 두부를 방형으로 잘라 기름에 지져서 간장과 후추를 넣고 만든 것이며, 잡탕은 두부를 방형으로 잘라 표고버섯·죽순·녹말가루·오해조·간장·잣을 넣어 만든 탕이다. 이 백증·전증·잡탕은 면麵과 함께 올렸는데,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왕실의 기신제 제례문화를 조선왕조가 속례俗禮로서 받아들인 결과이다.

현재 경상북도 안동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 종가宗家의 기신제에서도 면과 함께 편적을 올리고 있다. 이 편적은 두부를 가로 12㎝, 세로 12㎝, 높이 2.5㎝로 썰어 끓는 소금물에 삶아낸 것이다. 이처럼 자른 두부로 만든[片] 구이[炙]가 아닌데도 물로 삶아낸 두부에 적이란 명칭을 붙임으로서 관행화된 편적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징 및 의의 편적은 원래 불교의 정진식품精進食品으로 시작된 소선이었는데, 나중에 유교 제례에서 채택된 것이다. 1969년에 나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라남도 나주 지방에서는 제례 때의 편적을 '소적素炙'이라 하였다. 이는 소선이라는 명칭이 변화된 것이다. 원래 편적은 면과 함께 차려야 하지만, 나주에서는 면을 생략하고 밥반찬과 술안주로서 적炙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곳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보통 가정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迎接都監儀軌, 太常志,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종가의 제례와 음식(김상보, 월인, 200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필자 김상보(金尙寶)

평생도
平生圖

정의 높은 관직을 지내고 오복五福을 누린 사대부의 이상적인 인생행로를 시간 순서에 따라 도해한 그림.

내용 〈평생도平生圖〉는 18세기 후반 풍속화의 발달과 더불어 탄생한 화제畫題로서 이상적이고 길상적인 요소가 강한 일종의 풍속화이다. '평생도'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근대 이후에 붙여진 것이다. 평생도는 돌잔치, 혼례, 회혼례 등의 평생의례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이르기까지의 관로官路를 보여주는 관직생활 장면으로 구성된다. 관직생활은 과거급제한 뒤 출세의 첫 관문이 되는 한림겸수찬翰林兼修撰을 시작으로 유수留守·관찰사觀察使·판서判書·의정議政 등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높은 관직 중에서 두세 장면이 선택되며 치사致仕가 포함되기도 한다. 관직생활 장면은 혼례와 회혼례 사이에 배치되므로, 평생도의 첫 번째 장면은 돌잔치, 마지막 장면은 회혼례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전하는 평생도 중에서는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화



평생도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풍의 영향을 받은 19세기의 작품으로,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1549~1615)이 주인공인 〈모당평생도慕堂平生圖〉 8첩 병풍과 담와淡窩 홍계희洪啓禧(1703~1771)가 주인공인 〈담와평생도淡窩平生圖〉 6첩 병풍이 가장 널리 알려졌다. 특히 돌잔치·혼례·과거급제·한림겸수찬·송도유수·병조판서·좌의정·회혼례 등으로 이루어진 〈모당평생도〉 병풍의 내용 구성과 도상은 현전하는 대부분의 평생도가 그대로 따르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범본이 되었다. '돌잔치'는 저택을 배경으로 가족들에 둘러싸여 돌상을 받는 주인공이 그려지며, '혼례'는 신랑이 신부를 친영親迎하여 신랑의 집으로 가는 행렬이 그려지거나 대례가 거행되는 대례청의 광경이 그려졌다. '과거급제'는 주인공이 악사 3명과 재인을 거느리고 삼일유가三日遊街하는 모습인데 거리를 행진하는 광경, 혹은 은문恩門이나 친척 집을 배경으로 인사하는 광경이 그려졌다. '한림겸수찬'을 비롯한 관직과 관련된 장면은 부임지에 도임하거나 초헌을 타고 거리 행차하는 행렬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회혼례'는 가족과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노부부가 다시 한 번 대례를 치르거나 동뢰연同牢宴을 치르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런데 홍이상 및 홍계희의 일생과 〈모당평생도〉 및 〈담와평생도〉 병풍의 내용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들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평생도는 실제 개인의 일생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순탄한 관직생활과 복된 가정을 영위하였어도 요직要職을 두루 거치고 당상관 이상 1품의 벼슬을 누리며 70세 이상 장수하면서 치사를 청하거나 회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조선시대의 평생도는 장수·입신양명·부귀·다남 등의 복록에 대한 염원을 담아 사대부의 이상적인 인생 여정을 시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평생도의 이와 같은 길상적이고 이상화된 경향은 오동·파초·석류·괴석·학·오리·닭·사슴 등 장수와 다남을 상징하는 길상물이 배경 곳곳에 장치되어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평생도는 높은 관직을 지낸 특정 인물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일생 중 주요한 사실을 그린 기록적인 성격의 그림이라기보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고의 복록을 누린 이상화된 사대부의 인생 여정을 시각화한 그림이다.

참고문헌 19세기 평생도 연구(최성희,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16,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2), 단원 김홍도 연구(진준현, 일지사, 1999), 조선 후기 평생도 연구(최성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필자 박정혜(朴廷蕙)

폐백
幣帛

정의 빈賓(손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빈(신)께 비단 등으로 구성된 선물을 올리는 행위.

역사 폐幣는 '선물로 서로 주고받는 예'이고, 백帛은 '비단'이다. 폐백幣帛은 예의로서 비단을 선물로 올림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폐백의례 행위는 제사와 혼례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국가적 제례인 종묘宗廟제례 같은 대향大饗에서 폐백을 사용했다. 『예기禮記』에서는 종묘제례와 같은 대향에 신에게 선물로 폐백을 올리는 것은 신神의 덕德을 존중하는 행위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종묘대제[大祭]은 현주玄酒, 삼생三牲(소·양·돼지), 대갱大羹(간하지 않은 맑은 고깃국), 변邊과 두豆에 담은 음식, 악樂, 폐백을 잘 갖추어 모두 함께 올려야 예禮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조선왕조가 종묘 등의 제례에서 폐백을 올리는 것은 고례古禮를 따르고자 한 데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가례에는 혼약의 증거로 신부 집에 사자를 보내어 폐백을 받게 하는 예인 납징納徵이 있었다. 이 의례는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가 근거로, 역시 고례를 따르고자 한 데에서 출발한다. 이상의 폐백의례는 민간에게 확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조선왕조는 나라에서 행하는 길례吉禮제사의 모든 예절을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누었다. 대사에는 종묘宗廟(조선왕조 때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영녕전永寧殿(조선왕조의 임금 및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위를 봉안한 전각)·경모궁景慕宮(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모신 곳)의 오대五大(정

조·한식·단오·추석·동지) 시향時享과 사직社稷의 시향, 대보단大報壇(명나라의 태조·신종·의종을 제사 지내던 사우)의 대향 그리고 종묘와 영녕전에서 제왕帝王의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그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모실 때에[祔太廟] 올리는 제사 등이 있었다. 우牛·양羊·돈豚의 삼생三牲과 육색병六色餠, 사궤四簋·사보四簠, 육등六登·육형六, 십이두十二豆·십이변十二籩, 주악奏樂(음악을 연주함)과 더불어 폐백을 올리는 헌폐獻幣가 있었는데, 헌폐를 할 때에는 신위의 성격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였다. 종묘와 영녕전 신위에게는 백폐白幣 1단端을, 사직 신위에게는 흑폐黑幣 1단을, 대보단 신위에게는 백폐 1단을 올렸다.

중사에는 풍운뇌우風雲雷雨 절제節祭·성황城隍 절제·악해독嶽海瀆 절제·선농先農(처음으로 농업을 가르친 신, 신농씨) 절제·선잠先蠶(양잠하는 법을 시작하였다는 신, 서릉씨) 절제·우사雩祀(비를 하늘에 비는 제사) 절제, 문선왕文宣王(공자)·관왕묘關王廟(중국의 군신軍神 관우를 모신 곳)·역대시조歷代始祖·문희묘文禧廟(정조正祖의 제1자의 묘)에서 올리는 사중삭제四仲朔祭(2월·5월·8월·11월의 초하루제), 칠궁七宮(왕의 사친私親을 모신 곳)에서 올리는 사중삭제, 영소묘永昭廟(장헌세자의 제1자의 묘)에서 올리는 춘추향春秋享제사 등이 있었다.

이생二牲과 이색병二色餠, 주악과 더불어 폐백을 올리는 헌폐가 있었으며, 헌폐를 할 때에는 신위의 성격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였다. 영소묘·문희묘·칠궁·문선왕·관왕묘 및 역대시조 신위에게 백폐 1단을, 풍운뇌우·목멱산·서해·백악산·한강·우사·성황의 각 신위에게 역시 백폐 1단을, 동해·선농 신위에게 청폐靑幣 1단을, 선잠·웅진·가야진·한강·덕진·평양강·압록강·두만강·비백산 신위에게 흑폐黑幣 1단을, 삼각산 신위에게 황폐黃幣 1단을, 남해와 지리산 신위에게 적폐赤幣 1단을 올렸다.



폐백상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소사로는 풍운뇌우·산천·성황의 기고제, 영성靈星(농업신)·노인성老人星(남극노인성. 나타나면 치안治安이 오고 나타나지 않으면 전란이 있다고 함)·마조馬祖(말의 수호신인 방성房星의 이칭)·명산대천名山大川·선목先牧(말을 처음으로 먹였다고 전해지는 신)·마사馬社(말을 처음으로 탄 신)·마보馬步(말을 해치는 귀신)의 제사, 영제禜祭(기청제祈晴祭)·독제纛祭(대가大駕 앞이나 군중軍中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는 기, 독에 지내는 제사)·여제厲祭(여귀厲鬼에 지내는 제사), 영녕전의 춘추봉심春秋奉審(봄과 가을에 왕명을 받들어 전을 보살피는 일), 종묘의 춘추봉심, 기고祈告, 이환안제移還安祭, 사직의 기고별제祈告別祭, 계성사啓聖祠(공자·안자·자사·증자·맹자의 아버지를 제사하는 사당)의 절제와 고유제 등이 있었다.

제물은 일생一牲을 중심으로 하고 폐백을 올리는 헌폐가 있었다. 헌폐를 할 때에는 중사와 마찬가지로 신위의 성격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였다. 풍운뇌우·산천·성황·종묘·영녕전·계성사·영성·노인성·마조·마사·마보·선목·독신의 각 신위에게는 백폐 1단을, 사직의 신위에게는 흑폐 1단을 올렸다.

조선왕조의 대사·중사·소사 때에 올리는 폐는 원래 명주였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명주를 모시로 대체하였다. 폐백을 청색靑色·적색赤色·황색黃色·백색白色·흑색黑色으로 구분하여 올린 것은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 의한 것이다. 동쪽[木]의 신에게는 청색 폐幣, 남쪽[火]의 신에게는 적색 폐, 중앙[土]의 신에게는 황색 폐, 서쪽[金]의 신에게는 백색 폐, 북쪽[水]의 신에게는 흑색 폐를 적용하였다. 즉, 종묘·영녕전·대보단·영소묘·문희묘·문선왕·칠궁·관왕묘·풍운뇌우·목멱산·서해·백악산·한강·우사·성황·계성사·영성·노인성·마조·마사·마보·선목 신은 서쪽에 있다고 보고 백폐를 올렸으며, 사직·선잠·웅진·가야진·한강·덕진·평양강·압록강·두만강·비백산 신은 북쪽에 있다고 보고 흑폐를 올렸고, 선농신은 동쪽에 있다고 보고 청폐를 올렸다. 또 남해와 지리산 신은 남쪽에 있다고 보고 적폐를 올렸고, 삼각산 신은 중앙에 있다고 보고 황폐를 올렸다.

민간에서는 역시 담제禫祭(대상大祥을 지낸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 이후의 길제吉祭부터 헌폐하였고, 삼년상을 마친 뒤에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인 부제祔祭 때에도 헌폐하였다.

한편, 조선왕조 가례嘉禮에서의 폐백을 납징納徵의 례를 중심으로, 1749년에 나온 『어제국혼정례御製國婚定例』에 기초하여 보면, 현색玄色 비단 세 필과 훈색纁色 비단 두 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의례』에 나타난 현색 비단 세 필, 훈색 비단 두 필과 일치한다.

특징 및 의의 현재 일반인들의 제사에서 헌폐獻幣의례는 없어졌다. 다만, 혼인 전날 신랑 집에서 함을 진 혼수아비(함진아비)를 신부 집으로 보내는 '함보내기'가 납징에 해당한다. 이때의 함을 혼수함이라고도 한다. 1974년에 나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함에 넣는 예장지禮狀紙(혼서지)를 신랑이 직접 써서 함에 넣은 다음, 폐백이라 하여 현玄 1단과 홍紅 1단 외에 패물과 신부의 사철 옷감을 함께 넣어서 혼수아비로 하여금 신부 집에 가져가게 한다. 그런데 현 1단과 훈 1단은 『의례』에서 제시한 현 3단(즉 양陽), 훈 2단(즉 음陰)과는 다르다. 이는 이미 기수 3과 우수 2로 각각 양과 음을 상징하는 규범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世宗大王實錄, 御製國婚定例, 禮記, 儀禮, 太常志,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필자 김상보(金尙寶)

폐백음식
幣帛飮食

정의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큰절을 하고 올리는 음식.

내용 폐백幣帛에서 '폐幣'는 '선물로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예물이나 돈', '백帛'은 '비단'을 의미한다. 엄밀하게 보면, 폐백이란 선물로 돈이나 비단을 주고받는 예를 뜻한다. 친영혼親迎婚으로 치렀던 조선왕조의 가례에서는 혼약의 증거로 신랑 집에서 사자使者를 신부 집에 보내 신부 집에서 폐백을 받도록 하는 납징納徵(민가의 경우 납징을 '함 받는다'라고 함)이 있었는데, 이때 검은색 비단 3필, 분홍색 비단 2필, 말 2필 등을 포함하는 폐백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납징을 납폐納幣(폐를 받음)라고도 했다.

궁중 납폐 때의 폐백이 민중에게 전파되면서 증답贈答을 뜻하는 폐백이 현구고례見舅姑禮의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져, '폐백 음식'이라는 새로운 말이 탄생하였다. '현구고'의 '현見'은 '만나 뵈다', '구舅'는 '시아버지', '고姑'는 '시어머니'이므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올리는 음식'의 뜻으로 폐백 음식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다.

간택揀擇·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친영親迎·동뢰연同牢宴·조현례朝見禮의순서로 치른 조선왕조 가례에서 조현례는 동뢰연을 치른 다음 날 아침 신부가 시부모를 뵙는 예이다.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서는 이를 '현구고례'라 했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고대 중국에서는 윗사람을 처음 뵐 때 부인婦人은 포脯(고기를 얇게 저며 썰어 말린 육포)와 수脩(길게 썰어 말린 육포), 대추·탱자·개암·밤을 예물로 사용하였다. 「사혼례」에서도 현구고례 때 단수포腶脩脯(쇠고기를 길고 얇게 썰어 생강가루와 계피가루를 뿌려 말린 포)와 조율棗栗이 시부모에게 올리는 예물이었다.

비록 고대 부인의 예물이 건육류乾肉類와 각색 과일이었다 하더라도 「사혼례」에서 단수포와 조율로 규정한 것은 음陰과 양陽이 화합하는 천시天時의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조棗(대추)와 율栗(밤)은 음성陰性의 식물食物, 단수포는 양성陽性의 식물로서, 시아버지[舅](양)에게는 음성의 조와 율을, 시어머니[姑](음)에게는 양성의 단수포를 적용한 것이다. 겉은 검은색, 안은 분홍색인 베[布]로 싼 대[竹], 버들[柳], 갈대[葦]를 재료로 만든 원형의 바구니에 조·율·단수포를 담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처음 만나 뵙고 올린다. 그런 다음 신부는 시부모에게 효순孝順을 나타내기 위하여 특돈特豚 한 마리를 올렸는데, 시아버지에게 삶아 익힌 작은 새끼 돼지 왼쪽 반 마리, 시어머니에게 삶아 익힌 작은

새끼 돼지 오른쪽 반 마리를 드렸다.

조선왕조는 「사혼례」에 나타난 현구고례의 예법 그대로 조현례를 비교적 충실히 따랐다. 1749년(영조 25)에 제정된 『어제국혼정례御製國婚定例』「왕세자가례」에서는 조[대추] 3되[升]와 율[밤] 3되를 왜주홍칠소소사방반倭朱紅漆小小四方盤(새빨간 붉은 칠은 한 작은 네모난 반)에 담아 왜주홍칠평안倭朱紅漆平案에 차린 다음 시아버지께 올릴 때 과반果盤 1상을 같이 차려 올렸고, 단수포 1첩(貼, 100장)을 왜주홍칠소소사방반에 담아 왜주홍칠평안에 차린 다음 시어머니께 올릴 때 과반 1상을 같이 차려 올렸다. 과반에 담아 차린 찬품饌品은 물론 고임음식으로 높게 담아 차린 것이다.

> 시어머니: 왜주홍칠소소사방반에 담은 단수포 100장, 아름답게 칼로 오려 담은 건치절乾雉折·전복절全鰒折·문어절文魚折, 그 밖에 소약과小藥果·석류石榴·생률生栗·생이生梨를 높게 고여 담아 차린 과반.
> 시아버지: 왜주홍칠소소사방반에 담은 대추 3되·밤 3되, 건치절·전복절·문어절·소약과·석류·생률·생리를 높게 고여 담아 차린 과반.



폐백음식 | 1999 | 이길표

『어제국혼정례』에 의하면, 조선왕실에서는 조율과 단수포를 「사혼례」대로 비교적 충실히 적용했지만, 특돈은 적용치 않았다. 특돈 대신 고여 담아 차린 과반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고려왕조의 예제를 속례俗禮로서 받아들인 결과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현구고례를 폐백이라 했다. 조선왕실이 친영혼을 한 것과 달리, 명종대(1545~1567) 이후로는 민간에 반친영혼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조선왕조 말기까지 이어졌다. 친영혼이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 동뢰연을 치르는 것이고, 반친영혼이란 신랑이 신부 집에서 동뢰연을 치른 다음 날 신랑 집으로 와 시부모에게 현구고례를 행하는 것이다. 친영혼이든 반친영혼이든 동뢰연 이후에는 향응을 베풀었다. 반친영혼에서는 신부 집에서 동뢰연을 치른 이후 향응을 베풀었고, 다음 날 신랑 집으로 와 현구고례를 한 다음에도 신랑 집에서 다시 한 차례 향응을 베풀었다. 동뢰연 이후에 베푸는 향응에는 신랑과 신부가 받는 큰상[大床], 신랑과 신부가 직접 먹도록 배려한 입매상[小床](작은 상), 그 밖에 친인척을 대접하는 주연상을 차렸다. 정조대(1776~1800)의 서민 혼례 기록인 『동상기東廂記』에는 큰상을 받고 치른 연회 모습이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 수파련水波蓮을 꽂지 않을 수 없었으니 ……
> 두꺼비가 받은 큰상과 같았도다.
> 평생을 마시고 먹었으되 죽과 밥만을 알았거늘,
> 한술 뜨기도 전에 배 먼저 부르구나.
> 신랑의 소매엔 황률이 반 되나 가득.
> 수모手母가 합환주合歡酒 따른 통에는 술이 가득.
> 다들 사양치 마시고 드십사,
> 이렇듯 큰상은 다시 얻기 어려우니.

신랑과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줄 때에는 신랑에게 반 되의 황률을 준다고 하였다. 이렇게 밤을 주는 것에 대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요즘 풍속에 또한 자리 잡고 앉아 술을 마시고 나면 소년이 탁상의 밤을 집어 신랑에게 먹게 하는데, 이 또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바로 폐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약용은 동뢰연을 한 다음 큰상을 받을 때 신랑에게 밤을 먹게 하는 일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모를 일이라 하였다. 그런데 신랑에게 밤을 먹이는 행위는 『동상기』의 기록으로 보아, 관행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한편, 신응순辛應純(1572~1636)이 쓴 『성재집省齋集』에 따르면, 큰상에 올랐던 음식을 이바지음식으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지고 와 현구고례 때 첫 번째 상으로 차리고, 신부가 몸소 만든 밥·국·생선·고기 등으로 진지상을 두 번째 상으로 차려, 두 상 모두를 시부모에게 조·율 및 단수포와 함께 올렸다. 이 두 상은 특돈特豚 대신에 시부모에게 올린 것인데 정약용은 "지금 사람들은 성찬盛饌 두 자에만 매달려 사치와 낭비가 극에 달하여 남의 눈을 현혹하고 가난함을 업신여겨 색시의 뜻을 오만하게 하니, 이는 크게 어지러운 도이다. …… 마땅히 특돈 한 마리를 써야 하는데 어찌하여 마음대로 증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어쨌든 지금의 폐백 음식은 「사혼례」의 현구고례 때에 시부모에게 드리는 예물인 대추와 밤, 그리고 단수포 외에 시부모를 접대하는 특돈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추와 밤·단수포는 「사혼례」대로 적용했지만 특돈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 특돈 대신 조선왕조는 과반으로 했고, 왕가 가례의 영향을 받은 민간에서는 신부가 가지고 온 이바지음식으로 했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에는 혼인 당일 혼례를 마치고 곧 폐백(현구고례) 의례를 하는데 과거 신부만이 현구고례에 임했던 것과는 달리 신랑과 신부 모두 폐백에 참석한다. 시부모는 반盤에 담은 대추와 밤 일부를 신랑과 신부에게 돌려주고, 신랑과 신부는 반盤에 담은 과일·약과·포 등을 술안주로 시부모에게 올린다. 대추·밤을 신랑과 신부에게 주는 것은 과거 큰상을 받았을 때 소년이 신랑에게 밤을 주던 관행의 흔적일 것이다. 또한, 집안에 따라서 시부모를 위한 술안주로 닭을 올렸는데 이를 '폐백닭'이라고 한다. 붉은 실에 꿰어서 그릇 위에 둥글게 쌓아 올린 폐백대추와 마찬가지로 폐백닭을 취급하여, 선물 음식과 대접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폐백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東廂記, 省齋集, 御製國婚定例, 與猶堂全書, 禮記, 儀禮, 조선여속고(이능화, 동양서원, 1927),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조선왕조 혼례연향 음식문화(김상보, 신광출판사, 2003).

필자 김상보(金尙寶)

포
脯

정의 육포, 어포, 그리고 절육截肉 등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포.

역사 '포脯'는 젓갈인 해醢와 함께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찬이다. 예로부터 제사는 다섯 등급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이 '포'와 '해'만을 올리는 제사였다. '포'는 주로 사냥과 수렵을 통해 얻은 물고기나 육류를 건조함으로써 저장과 보관을 쉽게 한 식품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683년 조에 기록된 신문왕의 폐백 품목은 쌀·술·기름·장·시豉·혜醯 또는 해醢·포脯가 135 수레, 조곡이 150 수레였다. 포가 폐백의 기본 식품으로 기록된 것을 통해, 포의 존재와 이용을 알 수 있다.

내용 포 중 육포는 고기를 조미하여 말린 것이고, 어포는 건어물 중 대구포·북어포·오징어포를 쓰기도 하며, 낙지포·홍합포·전복포도 쓰인다. 그리고 문어다리나 오징어를 가위나 칼로 왕관·산호·공작 깃의 형태로 오려서 장식하는 절육 등이 있다.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포를 '좌반佐飯'이라 하였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건어


북어포 | 대구 동구 둔산동 | 국립민속박물관


어포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육포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육을 모두 '포'라 하였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건어를 '좌반'이라 하고, 포로서 쇠고기포를 따로 구분하였다. 포는 직사각형의 제기에 포개어 담되, 어포는 등이 위로 가도록 담는다.

지역사례 서울 가회동에서 살았던 대원군의 형 흥완군興完君(1815~1848)의 후손들은 육포를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혼례 때는 폐백 음식으로 편포를 쓰고, 여름에는 육포, 제상에도 육포를 썼다. 또 육포를 장방형으로 잘게 잘라 '식혜눈'을 만들어 식혜 위에도 얹는다. 특히 한식과 추석 묘제의 제수로 주과와 함께 육포는 꼭 올린다. 경상북도 경주 양동마을 월성손씨 손소孫昭 종가에서는 커다란 대구포를 올린다. 제사 후 대구포는 찜통에 푹 찐 후 방망이로 두드려 대구보푸라기를 만들거나, 대구포조림, 대구해물신선로 등을 만들어 먹는다. 충청남도 논산 교촌마을의 파평윤씨 노종파 명재明齋 윤증尹拯(1629~1714) 종가에서는 기일 제사상에 포로 어포, 육포, 문어포 세 가지를 올린다.

포를 올릴 때 일반적으로 좌포우해左脯右醢로 진설하나, 경북 안동 지역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 32종가 중 좌포가 21사례이고, 우포는 10사례이다. 하회 풍산 류씨의 경우는 우포이고, 의성 김씨와 진성 이씨는 좌포를 따르고 있다. 안동 지역에서는 "좌포는 노론老論, 우포는 남인南人"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조사 결과는 그리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징 및 의의 땅에 뿌리를 박지 않은 고기나 생선은 천산天産, 즉 양산陽産이므로 양수인 홀수로 놓는다. 서울 양반 풍산 홍씨 추만공파 홍봉한洪鳳漢 종가에서는 한식 차례상에 명태포 세 마리를 등이 위로 가도록 놓는다.

참고문헌 상차림과 메뉴구성개발(윤덕인, 도서출판 평화, 2008),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종가의 제례와 음식1-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종가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2001),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5).

필자 윤덕인(尹德仁)

풍장 風葬

정의 주검을 숲, 들판 혹은 바위 위, 동굴 등에 놓아둠으로써 저절로 사라져 없어지게 하는 장례 방법.

역사 풍장風葬은 주검을 노천에 방치하여 비바람에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하는 장법이다. 주검을 땅에 묻는 매장이나 물에 띄워 보내는 수장과는 다르다. 풍장은 오랫동안 흔적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관련 유적이나 유골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풍장이 있었는지는 고고학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과 『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 부여조扶餘條에서 "여자가 질투를 하면 죽여서 시체를 남쪽 산에 가져다 버려 썩게 내버려둔다."라고 한 문헌 기록을 통해서 기원 후 3세기 무렵에 부여에서 풍장이 행해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질투한 여자를 징벌적으로 살해한 후 주검을 산에 버려두었던 것으로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풍장은 일제강점기까지 주검을 묻을 곳이 없는 빈민이나, 어린 아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주검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서해 도서지방에

서는 전염병으로 죽은 아이의 주검을 짚으로 싸서 나무에 높이 매달아 두는 사례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

내용 풍장은 주검을 가마니나 자리 등으로 싸서 나무에 매달거나 나무로 만든 시렁 위에 두어 자연적으로 비바람에 의해 소멸시키는 장례법이다. 따라서 풍장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유골을 수습해서 이차장二次葬을 치르는 세골장洗骨葬이나 초분草墳과는 다르다. 풍장은 세골장이나 초분과는 달리 주검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차장을 위한 전前 단계로서 행해지는 일차장적一次葬的 성격을 갖는 주검 처리방법은 엄격히 말해서 풍장이 아니다. 풍장은 그 자체로 완결된 주검 처리방법이다. 일부에서 풍장을 초분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징 및 의의 주검을 노천에 두어 비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하는 것으로, 대개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은 주검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세골장, 초분 같은 복차장複次葬의 전前 단계와는 구별된다.

참고문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영원한 만남 한국 상장례(국립민속박물관, 1990), 옛무덤의 사회사(장철수, 웅진출판, 1995),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초분(국립민속박물관, 2003), 朝鮮の風水(村山知順, 조선총독부, 1931).

필자 김영관(金榮官)

하관 下棺

정의 장지에서 광중壙中이 완성되고 정해진 하관 시간이 되면 널을 광중에 내리는 일.

역사 『의례儀禮』「기석례旣夕禮」에는 '광壙에 이르러[至於壙]', '하관[窆]'을 하고 '명기明器 등의 기물을 매장[藏器]'하며, '광에 흙을 채우는[實土]' 과정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개원례開元禮』에는 '묘에 도착함[到墓]'이라는 절차를 분리하고, 이어서 '명기를 진설함[陳明器]', '널을 내리고 곡을 하는 순서[下柩哭序]', '묘에 널을 들임[入墓]', '묘에 기물을 두는 순서[墓中置器序]', '광을 덮음[掩壙]', '후토신에게 제사함[祭后土]'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서의書儀』는 '묘소에 도착함[及墓]', '하관을 함[下棺]', '후토신에게 제사함[祭后土]', '우제에 쓸 신주를 씀[題虞主]'의 절차를 두고 있다. 『가례家禮』는 『개원례』와 『서의』를 따라 '발인' 이후의 절차를 '급묘·하관, 사후토·제목주·성분'으로 정리한다. 조선의 학자들은 『가례』의 분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몇몇 학자가 『가례』를 보완한 사례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사례편람四禮便覽』은 『가례』에 '급묘, 하관, 사후토, 제목주, 성분'으로 병렬되어 있던 절차를 '급묘'로 통합하고, 나머지 절차를 내용 속에서 다루고 있다. 『상변통고常變通攷』와 『사의士儀』는 급묘를 발인 항목의 마지막 부분인 '널이 도착함[柩至]'이라는 소항목으로, '사후토'를 '하관'의 하위 항목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성분' 뒤에 '석물石物' 항목을 설정하였다.

내용 하관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여가 이르기 전에 집사자는 먼저 영악靈幄과 친척 및 빈객의 막차, 부인의 악차幄次를 설치한다. 이어서 방상과 명기와 영거靈車가 도착하면 술과 과일, 포와 해로 전奠을 차리고 물러난다. 널이 도착하면 광壙의 남쪽에 깔아 놓은 자리 위에 내리는데,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한다. 이때 집사자가 명정銘旌을 가져다 깃대를 제거한 뒤 널 위에 놓는다. 주인 남녀가 각각 자리로 나아가 곡하고, 조객이 절하고 하직한 뒤 돌아가면 하관을 한다.

먼저, 나무 깃대를 회격灰隔의 위에 가로로 걸치고 밧줄 네 가닥으로 널 바닥의 쇠고리에 건 뒤, 매지 않고



하관 | 전남 장흥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내려서 깃대 위에 이르면 밧줄은 빼버린다. 별도로 가는 베나 생견을 접어 관 아래쪽까지 덮어씌워 내리되, 다시 빼내지 않고 남는 것만을 잘라서 버린다. 널에 쇠고리가 없으면 즉시 밧줄로 널 바닥을 에워싸 양쪽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깃대 위에 이르면 밧줄을 제거하는데, 베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널을 내리는 것은 가장 정밀하게 살피고 힘을 써야 하니, 잘못하여 기울어 떨어지거나 요동치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인과 형제는 곡을 멈추고 몸소 다가가 살펴야 한다. 내리고 나서는 다시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하여 평평하고 바르게 만든다.

하관한 뒤 주인이 현훈玄纁을 받들어 널의 곁에 놓고 재배하고 이마를 조아리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슬픔을 다해 곡한다. 이후 회격의 안팎 덮개를 덮고, 석회로 채운 뒤 흙을 채워 조금씩 다진다. 흙을 반 정도 채우면 명기明器, 하장下帳, 포苞, 소苴, 앵罌을 편방에 매장하고, 널판으로 그 문을 막는다. 이후 지석을 내리고, 다시 흙을 채우면서 촘촘히 달구질하여 견고하게 다진다. 봉분의 높이는 넉 자로 그 앞에 작은 돌 비석을 세우는데, 또한 높이가 넉 자이고 받침대의 높이는 한 자 정도이다.

사마광司馬光에 의하면 송대에는 하관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땅을 수직으로 파 내려가 광을 만든 다음 관을 매달아 하관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도隧道를 뚫고 옆으로 토실을 파서 그 속으로 관을 밀어 넣는 것이다. 후자는 전통적으로 천자의 신분일 때만 사용하였고, 나머지 신분의 사람들은 모두 전자의 방식으로 하관하였다. 따라서 『서의』와 『가례』는 물론 조선도 예외 없이 전자의 방식으로 하관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하관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긴 장대 두 개를 광중 입구의 좌우에 세로로 두어,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 장대 네 개를 사용하여 긴 장대의 위에 가로로 둔다. 또 장대 두 개를 사용하여 회격 위에 가로로 둔다. 이에 새끼줄 두 가닥을 사용하여 관의 양쪽 끝을 한 번 감아서 가로로 둔 장대 위에 편안하게 안치하고 사방을 바르게 한다. 그런 뒤에 새끼줄 양쪽 끝으로 세로로 둔 긴 장대를 감아서 한쪽 끝마다 두 사람씩 잡아끈다. 이에 가로로 놓은 장대를 제거하고 일시에 소리를 지르며 점점 놓으면서 회격 위에 이르게 한다. 회격 위에 가로로 둔 장대를 제거하고 하관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는 하관할 때 두 기둥을 세우고 녹로轆轤를 쓰기도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상변통고』는 "지금 속제俗制의 녹로는 두 기둥을 금정틀 앞뒤에 세우고, 기둥의 머리를 둥글게 깎아 반월형처럼 파서 녹로의 나무 장대를 받게 하는데, 기둥 밖으로 돌출된 나무 장대의 길이는 두 자쯤이다. 나무 장대 양 머리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작은 나무를 가로세로로 끼워 십자형十字形을 만들고, 두 개의 발綍을 사용해서 나무 장대 중간에 위아래로 두르고, 아래에 관을 두르는 베를 맨다. 그런 뒤에 앞뒤에서 각각 2인이 기둥 밖에서 십자형의 나무를 당겨서 녹로를 천천히 굴려 내려가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하관할 때는 집안에 따라 관 채로 광중에 안치하는 경우도 있고, 탈관하여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시신은 머리를 북향, 발을 남향으로 좌향에 맞도록 상하좌우가 반듯하게 안치하며, 이후 관 또는 광중의 사이를 흙으로 메운다. 충청남도 지역의 경우 하관은 미리 정해 둔 시간에 맞추어 지관地官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이때 지관은 하관을 보지 말아야 할 띠를 미리 일러준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관하는 순간만큼은 뒤로 돌아서서 보지 않아야 하는데, 만일 하관 장면을 보게 되면 살을 맞아서 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여긴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금기는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참고문헌 家禮, 開元禮, 四禮便覽, 常變通攷, 書儀, 儀禮,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장동우(張東宇)

한식 절사
寒食節祀

정의 한식에 조상의 묘소를 찾아 지내는 제사.

내용 한식寒食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속절俗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명절이었다. 『가례家禮』에서는 속절이 정제正祭에 비하여 작은 제사이므로 가묘에 나가서 하며 음식도 이미二味로 그치고 술도 한 번만 올리라고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묘제墓祭를 지냈다. 분묘가 멀 경우에는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동사강목東史綱目』을 보면, 1390년(공양왕 2) 춘정월에 한식의 상분上墳은 옛 습속에 따르도록 허락하고 행례 의식은 『가례』에 준하되 편의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한식 묘제는 고려 이전부터 행한 관습으로, 이를 『가례』에 의거하여 지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가례』에 한식 묘제가 수록되지 않았어도, 당시의 유자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온 사회습속을 부정하지 않았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살펴보건대, 세속에서는 정조正朝, 한식, 단오, 추석에 모두 산소에 가서 소분掃墳하고 절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를 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날이 되면 아침에 사당에 나아가서 천신薦新하고 이어 산소로 가서 전奠을 올리고 절한다."라고 하였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도 이를 따르고, 『동춘당집同春堂集』에서도 이를 인용하였다.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은 한식 성묘가 예서禮書에 근거가 없지만, 예경禮經을 상고하고 나라의 풍속을 채집하여 양陽 기운이 생겨나는 동지冬至와 음陰 기운이 생겨나는 하지夏至에는 사당祠堂에 제물祭物을 올리고, 풀이 자라나는 한식과 곡식이 익는 추석에는 분묘墳墓에 전奠을 올리는 것으로 정하였다. 『담헌서湛軒書』에서는 제찬祭饌을 갖추고 삼헌하며 축祝을 두고, 가묘에서 다례를 올릴 때에는 과일 두 그릇, 모사茅沙를 설치하고 삭망의식과 똑같이 한다고 하였다.

한식 묘제의 절차는 고려 공양왕 때 이미 『가례』의 묘제를 기준으로 형편에 따라 가감한다고 하였다.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묘제는 사계절에 다 지낼 경우 가묘家廟와 차등이 없어서는 타당하지 않을 듯하다. 마땅히 한식과 추석 두 절후에는 제찬祭饌을 잘 마련하여 가지고 가서 축문을 읽고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등의 의식을 일체 『가례』 묘제의 의식대로 한다. 축문식에서는 한식의 경우 세시歲時를 일컫고 나서 이 구절을 '세율歲律이 벌써 바뀌니'로 고친다."라고 하여, 『가례』의 묘제대로 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명재유고明齋遺稿』에서는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인용하였는데, 정월초하루와 단오 외의 경우에는 『가례』에 의거하여 미식米食, 면식麪食, 어魚, 육肉을 네 개의 큰 대접에 올린다고 하였다. 『택당집澤堂集』에서는 한식제는 묘제와 동일하게 하지만, 반과 갱 이하의 제품祭品은 조고祖考의 기제忌祭와 같으나, 적은 일곱 꼬치로 한다고 하였다.



한식 절사 | 충북 청주 우암 송시열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한식절차에 대한 논의는 『성호전집星湖全集』의 묘제식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는 "정자程子와 한위공韓魏公 등이 한식에 묘제를 지낸 사실을 수용함으로써, 사절四節의 묘제는 근세에 풍속이 되어 우리나라의 선현이 많이 인정하였다. 묘소가 멀거나 부득이 오랫동안 성묘하지 못한 자라도 아주 그만둘 수는 없으니, 가까운 노복으로 하여금 포와 과일 같은 종류만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해도 무방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제사 절차를 살펴보면, 기일期日 하루 전에 재계하고, 음식을 갖춘다. 음식은 과일 4품과 서수庶羞, 채소가 도합 10여 그릇이고, 구운 간[炙肝]이 1품이고, 구운 고기[炙肉]가 2품이며, 미식米食, 면식麪食, 밥, 국이 각각 한 그릇이다. 오직 간소함을 따르고 정결하도록 힘쓴다. 다음 날 새벽에 묘소로 가서 재배하고 소분掃墳한 다음 다시 재배하고, 무덤 왼쪽에서 후토제를 지낸다. 마치면, 자리를 펴고 진찬進饌하는데, 생선·고기·미식·면식의 네 쟁반을 자리 남쪽 끝에 진설하고, 잔반盞盤과 시저匙箸는 북쪽에 진설한다. 참신—강신—초헌—아헌—종헌—사신—철상의 순서대로 거행한다. 초헌 때의 축사는 앞 단락에 나온 율곡의 언급대로 한다. 마치면, 다시 후토제를 지낸다.

특징 및 의의 한식제가 『주자가례』를 그대로 따른 예속이 아니라, 조선 특유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당보다 묘제를 더욱 중시해온 뜻을 여러 방면으로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東史綱目, 同春堂集, 明齋遺稿, 四禮便覽, 星湖全集, 澤堂集,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함
函

정의 혼례과정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지婚書紙와 예물을 넣어 가져가는 상자.

내용 혼례에는 신랑 집에서 신부용 혼수와 예장 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신부 집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다. 장가들기 위해 처음 신부 집으로 가는 초행길初行-에 신랑이 이 혼수함을 가져간다. 옛날 기록에는, 혼수함이 '봉채', '납채', '봉징', '납징', '예단', '예장', '예물', '큰 짐', '함짐', '함', '혼함'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명칭이 다양하여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에서는 함, 평안도는 예장함, 황해도는 예물함·예장함, 경상북도에서는 혼새함·혼수함·송복·봉치, 경상남도에서는 봉치, 제주에서는 홍세함이라고 한다.

함 속에는 혼서지와 예물을 넣는다. 예물은 지역이나 집안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함경도는 큰글(혼인서약서)과 청홍 치마저고리, 평안도는 치마저고리·옷감·이불감·광목·비단·바느질실, 황해도는 혼서지·명주·모시·광목·이불감, 경기도는 혼서지·채단(치맛감 두 벌), 강원도는 파란 저고리와 빨간 치마·노란 저고리와 옥색 치마·호두·고추·나무 고리·청홍실·목면실·목화, 충북은 청홍 치마저고리·혼서지, 경북은 혼서지(예장지)·신부 윗옷감·중벌·중상벌·상답(패물, 옷감, 이부자리감)·물목·청홍실 두 타래·고치푸솜·수수깡 세 개·홀기, 경남에서는 멱설(저고리, 치마 각 세 벌), 이불감·솜·패물·조급돈을 넣는다. 아들 낳기를 바라는 뜻에서 남자를 상징하는 물건이나 패물을 넣는 지역도 있다. 제주의 홍세함에는 예장과 미녕(무명), 광목 등을 1~3필(지역에 따라 반드시 홀수)을 넣어 보낸다. 이 천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저귓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함에는 종이(백장지)를 깔고 맨 밑에 혼서지를 넣는다. 그다음 혼수를 차례로 넣는데, 옷감을 함께 맞춰 접어서 홍색을 먼저 담고 그 위에 청색을 담는다. 종이를 덮고 싸리대나 수숫대로 혼숫감이 뒤섞이지 않게 하여 뚜껑을 닫는다. 붉은 보로 네 귀를 맞추어서 싸매고 남은 끝을 모아 매어 종이를 감고 근봉謹封이라고 쓴다. 제주는 홍세함을 집안마다 마련해 놓고 사용하므로, 이를 받은 신부 집에서 나중에 신랑 집으로 되돌려 보낸다. 함을 마련하지 못한 집에서는 남의 함을 빌려 사용하기도 한다.



봉치시루 위에 놓인 혼수함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예물함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예장함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본래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을 뜻하나, 『가례家禮』에서는 '납폐納幣'에 해당되어 '함'이라는 명칭과 혼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가정의 혼인연구(김혜숙,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제주도의 가족과 **궨**당(김혜숙,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조선민족혼인사연구(박경휘,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2),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한국의 혼속연구(김종명, 대성출판사, 1981).

필자 김혜숙(金惠淑)



함진아비 | 전남 보성 | 1968 | 김태우

함진아비

정의 혼인 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혼서지婚書紙, 채단采緞 등을 넣은 함函을 보낼 때 지고 가는 사람.

역사 조선시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육례六禮 중 '납징納徵'에 해당하는 절차가 함函에 관한 내용인데, 보통 납폐納幣라고 불렀다. 기록에 따르면, "사자使者를 보내어 납폐의 예를 다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집사와 함진아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집사는 신랑 친척 중 예의범절에 발라 납폐서를 받드는 일에 뽑힌 사람이다. 함을 지고 따르는 함진아비는 '복수福手'라 하여 하인 중 복 있는 사람이 선발되어 갔다. 함진아비는 대가로 노잣돈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신랑 친구 중 한 사람이 함을 지거나, 예비 신랑이 혼자서 직접 함을 지고 신부 집에 가기도 한다. 그러나 원래 신랑은 동행하지 않는다.

내용 함진아비는 신랑 친구 중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깨끗한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함진아비는 우선 얼굴에 솥 밑 검댕을 바르는데, 검댕은 불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로 그 자체가 불[火]을 상징한다. 즉, 불처럼 재앙과 액운을 태워버려 함에 부정이 끼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검댕을 바르는 풍속은 사라졌고, 그 대신 마치 가면처럼 마른오징어에 눈과 입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 얼굴에 쓴다.

함진아비는 함을 도중에 내려놓지 않고 신부 집까지 간다. 함진아비가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은 음양이 교차하는 유시酉時(오후 5~7시) 무렵이다. 그런데 근래에 함을 팔고 사는 풍습이 생겨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감정을 상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한, 시간도 지연되어 유시 이후에 함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70년대 신문에는 함진아비의 횡포가 종종 보도되었다. 그러나 『경향신문』(1984.11.13) 기사에는 함진아비 풍습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왔다(찬성 62.8%, 반대 36.6%). 그런데 함진아비 풍습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42.8%), 소란과 번거로움(24.7%), 함진아비의 횡포(16.3%), 전근대적 풍습(16.3%) 등이었다.

함진아비는 무명 한 필로 질빵을 만들어 함을 짊어지고 간다. 오늘날에 함진아비는 등짐을 지고 가는 말[馬]에 비유되어, 마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다.

특징 및 의의 함진아비는 혼서지婚書紙와 채단綵緞 운반을 책임진 사자로 혼례 절차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얼굴에 검댕을 바르는 것도 부정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예비 신랑이 혼자서 직접 함을 운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함진아비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참고문헌 솥과 민속(신영순, 생활용구6·7, 민속원, 1998), 우리말 풀이사전(박남일, 서해문집, 2004), 자살까지 부른 함값시비 왜곡된 풍습 바로잡아야(1996년 3월 9일, 동아일보 기사), 함진아비 풍습 찬성이 더 많다(1984년 11월 13일, 경향신문 기사).

필자 정연학(鄭然鶴)

합근례
合巹禮

정의 전통혼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주고받으며 혼인 서약을 하는 절차.

역사 고려시대에 수입된 송나라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나 1844년(헌종 10)에 간행되어 널리 유행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친영親迎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합근례合巹禮'는 신랑이 신부를 맞는 친영의 한 절차로, 지금도 전통혼례에서는 합근례를 행하고 있다.

내용 교배례交拜禮를 마친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 꿇어앉고, 신랑·신부의 시자侍者는 대례상大禮床의 술잔과 과일 접시(신랑의 상에는 밤, 신부의 상에는 대추)를 작은 상으로 내려놓는다. 양편의 왼쪽 시자는 받침잔에 받친 잔을 신랑·신부에게 주고, 오른쪽 시자는 술을 따른다. 신랑과 신부는 이 잔을 받아 눈높이로 올렸다가 내려서 빈 그릇에 붓는다. 왼쪽 시자는 잔을 받아 상 위에 놓고, 신랑과 신부는 과일 안주를 집어 상 위에 놓는다. 신랑의 오른쪽 시자는 대례상에 놓인 소나무 가지의 홍실을, 신부의 오른쪽 시자는 대나무 가지의 청실을 손목에 걸친다(잔을 교환할 때 누구의 시자인가를 표시하기 위함임). 양편의 왼쪽 시자가 잔을 신랑·신부에게 주면, 오른쪽 시자가 술을 따른다. 신랑과 신부는 배우자 서약을 하는 의미로, 잔을 가슴 높이까지 받들어 올렸다가 내려서 술을 반쯤 마신 뒤에 각각 오른쪽 시자에게 준다. 오른쪽 시자는 술잔을 들고 일어나 각각 오른쪽으로 돌아



합근례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상대편 왼쪽 시자에게 주고, 왼쪽 시자는 잔을 받아 신랑·신부에게 준다. 신랑과 신부는 배우자 서약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잔을 가슴 높이까지 올렸다가 남은 술을 마신 후 잔을 왼쪽 시자에게 준다. 왼쪽 시자가 잔을 받아 상대편 오른쪽 시자에게 주고, 오른쪽 시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잔을 원래 자리에 놓는다. 왼쪽 시자가 받침잔에 있는 술잔을 내리면 오른쪽 시자는 대례상 위에 있는 표주박잔을 받침잔에 올려놓는다. 왼쪽 시자가 받침잔을 들어 신랑·신부에게 주고, 오른쪽 시자가 표주박잔에 술을 따른다. 신랑이 함께 들자는 뜻으로 신부를 향하여 읍揖하고 표주박잔을 들어 마시면, 신부도 따라 마신다. 오른쪽 시자는 표주박잔을 가져다가 대례상 위에 합해 놓고, 각각 청실과 홍실을 원래 자리에 걸쳐 놓는다. 신랑과 신부가 일어선 다음 신랑이 신부를 향해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답례한다. 합근례를 마치면 대례大禮 절차가 끝난다.

지역사례 합근례의 절차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첫째 잔과 둘째 잔은 신랑과 신부가 마시는 시늉만 하고 퇴줏그릇에 붓는다. 셋째 잔은 서로 교환하여 마신다. 전라북도에서는 첫째 잔은 신랑이 입에 대었다가 신부에게 주고, 신부가 입에 대었다가 신랑에게 주면 받아서 퇴줏그릇에 붓는다. 둘째 잔과 셋째 잔은 첫째 잔과 같이 한 후 퇴줏그릇에 따르지 않고 마신다. 경기도지방에서는 표주박잔에 따른 술잔만을 교환하는데, 먼저 신부의 시자가 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술잔에 입을 대었다가 시자에게 준다. 신부의 시자가 상 위에 걸쳐놓은 청홍색실 위로 술잔을 통과시켜 신랑의 시자에게 갖다 주면, 신랑의 시자는 이를 받아 신랑에게 주고, 신랑은 받아 마신다. 신랑의 시자가 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술을 조금 마시고 시자에게 준다. 신랑 시자가 술잔을 청홍색실 위로 통과시켜 신부의 시자에게 갖다 주면, 신부는 술잔을 받아 입만 대거나 마신다.

특징 및 의의 합근례는 대개 세 번 술잔을 나누는데, 각각 의미가 있다. 첫째 잔은 하늘과 땅에 서약하는 잔이고, 둘째 잔은 배우자에게 혼인을 서약하는 잔이다. 셋째 잔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백년해로百年偕老할 것을 다

짐하는 잔이다. 합근례는 예로부터 제의祭儀에서 빠지지 않는 술을 매개로 하여 혼인 서약을 하고, 백년해로할 것을 다짐하는 제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의 생활예절(성균관, 1992),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한국인의 삶과 문화(최운식, 보고사, 2006),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최운식(崔雲植)

합문
闔門

정의 문을 닫고 나가 조상신이 흠향歆饗하기를 기다리는 절차.

내용 유식侑食이 끝나면 주인 또는 축관 이하가 조상이 식사를 하도록 문밖으로 나가 잠시 기다리는데, 이것을 '합문'이라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상례비요喪禮備要』·『사례편람四禮便覽』의 시제時祭 합문闔門 조의 내용이 모두 같다.


경북 예천 예천 권씨 종가


경북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합문 | 국립민속박물관

축관이 문을 닫고 문이 없는 경우에는 발을 내리거나 병풍을 친다. 주인은 동문에 서서 서쪽을 향하고 여러 남자는 그 뒤에 선다. 주부는 서문에 서서 동쪽을 향하고 여러 부녀자가 그 뒤에 선다. 어른일 때에는 다른 곳에서 조금 쉰다. 참사자는 한 끼 아홉 번 밥을 뜨는 시간 동안 엄숙하게 기다린다.

문이 없을 때는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고 참사자 전원이 한참 동안 엎드리는 것으로 합문을 대신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조상님이 음식을 흠향하는 동안 문을 닫고 기다리는 의식이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합사
合祀

정의 둘 이상의 조상을 한날 한곳에 모시고 제사하는 방식.

내용 합사合祀는 둘 이상의 조상을 함께 모시고 제사 지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기제사에는 기일에 해당하는 조상의 신위만 모시는 단설單設과 고비考妣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 방식이 있다. 합설은 고위제사考位祭祀에 비위妣位를 함께 모시고 비위 제사 때 고위를 모셔오는 방식으로, 합사와는 다른 형태의 제사이다. 즉, 합설은 제사는 생략하지 않고 신위를 함께 모시고 지내는 형태인 반면, 합사는 한 조상의 제사를 생략한 뒤 다른 조상의 제사에 함께 모시는 방식이다.

합사의 유형에는 비위의 제사를 생략하고 고위제사 때 함께 지내는 방식이 있고, 윗대 조상들의 제사를 특정일에 함께 지내는 방식 등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각 대代의 양위(부부)끼리 합사하는 방식이다. 즉, 부父와 모母, 조부와 조모, 증조부와 증조모, 고조부와 고조

모의 제사를 각각 합사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위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비위의 제사를 생략한다. 따라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는 경우라면 1년에 여덟 번 지내는 기제사가 네 번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부모의 기제사忌祭祀는 모두 지내고, 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의 양위는 각각의 고위 기일에 비위를 함께 모시는 방식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대봉사를 하는 경우 1년에 다섯 번의 기제사를 지내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부모와 조부모는 양위끼리 각각 합사하고, 증조부모와 고조부모의 제사는 고조부의 기일에 함께 지내는 방식이다. 이로써 1년에 지내는 기제사가 세 번으로 줄어들게 된다. 네 번째 유형은 4대 조상을 모두 합사하는 방식으로, 고조부나 증조부의 기일이나 혹은 1년 중 가장 앞선 기일의 일요일에 지낸다.

이처럼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합사의 유형은 비위의 제사를 생략하고 고위 제사에 함께 모시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는 남성의 재혼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던 조선시대의 혼인습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당시 여성의 재혼은 엄격히 금지했던 반면, 남성에게는 허용되었으므로 재취再娶나 삼취三娶를 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처럼 비위가 여러 명일수록 거행해야 할 제사의 횟수가 그만큼 증가하고, 이는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대봉사를 할 경우 일처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8회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10회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위제사를 생략하고 고위제사에 합사한다면 제사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합사의 지방紙榜은 일반 기제사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다. 사대봉사의 경우 고조부모 이하 조상들의 지방을 같은 종이에 작성하되, '신위神位'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가장 하단의 중앙 부분에 한 번만 적어 넣는다. 즉, 원래라면 '현고조고모관부군신위顯高祖考某官府君神位', '현고조비모봉모씨신위顯高祖妣某封某氏神位'라고 적지만, 합사의 지방에서는 '현고조고모관부군顯高祖考某官府君', '현고조비모봉모씨顯高祖妣某封某氏'가 되는 것이다.

축문祝文 역시 달라진다. 만약 비위의 제사를 생략하고 고위 제사에 함께 모시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문은 부모의 합사 축문이다.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顯考妣某封某氏
歲序遷易 顯考妣合祀 諱日復臨
追遠敢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또 조부모 양위를 합사할 때는 '효자孝子'를 '효손孝孫'으로, '현고비합사顯考妣合祀'를 '현조고비합사顯祖考妣合祀'로, '호천망극昊天罔極'을 '불승영모不勝永慕'로 각각 수정한다. 참고로 '호천망극'은 부모의 축문에서만 사용하는 문구로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넓어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고, '불승영모'는 조부모 이상의 축문에서 사용하며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뜻이다. 나머지 조상들의 합사 축문에서도 본인과의 관계, 해당 조상 등을 적합하게 고쳐 쓰도록 한다. 한편,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를 특정일에 합사로 지낸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玄孫某 敢昭告于
顯高祖考某官府君
顯高祖妣某封某氏
顯曾祖考某官府君
顯曾祖妣某封某氏
顯祖考某官府君
顯祖妣某封某氏
歲序遷易 顯高祖考妣 顯曾祖考妣 顯祖考妣 合祀 諱日復臨
追遠敢時 不勝永慕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饗

합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을 모두 거론한 뒤 마지막 부분에 '현고조고비顯高祖考妣 현증조고비顯曾祖考妣 현조고비顯祖考妣 합사合祀'라는 문구를 적어 넣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1934)을 토대로 공포된 「가정의례준칙」(1969)은 지나치게 번잡한 의례절차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서 허례허식으로 치우친 가정의례를 모든 국민이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가정의례준칙」 '제례' 항목의 가장 큰 변화는 향사자享祀者의 축소이다. "조부모 이상은 실제 동거상견同居相見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증조부 이상을 제사 지내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기존의 사대봉사 대신에 조부모까

지의 양대봉사兩代奉祀를 규정하고, 신주를 모시는 방식은 합설合設로 통일했다. 비록 「가정의례준칙」에서 합사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고비 합설의 권장이 의례 간소화를 모색하는 현대인들의 경향과 부합하여 자연스럽게 합사로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합사合祀는 둘 이상의 조상을 함께 모시고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의례 간소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관행이다.

참고문헌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제례를 통해 본 종교적 관념의 변화(석대권, 비교민속학24, 비교민속학회, 2003).

필자 김미영(金美榮)

합설
合設

정의 조상제사에서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함께 모시고 지내는 방식.

내용 신주를 제사상에 모시는 것을 설위設位라고 하는데, 기일을 맞이한 분만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것을 '단설單設'이라 하고, 기일에 상관없이 내외분을 함께 모시는 것을 '합설合設'이라고 한다. 즉, 고위의 제사에 비위를 함께 모시고, 비위의 제사에도 고위를 함께 모시는 것이다. 참고로 『가례家禮』에서는 "단지 하나의 신위만 설치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왜냐하면, 기일은 상喪의 연속이므로 해당 조상만을 모시는 단설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편,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기일에 한 분의 신위에만 제사 지내려 하는데,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내 생각도 그러하다. 다만, 중고中古시대에도 두 신위에 제사 지낸다는 설이 있었으니, 깊이 구애될 것은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서는 전해오는 규례에 따라 두 신위에 제사 지낸다."라고 하여 단설을 합당한 예로 인식하면서도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역시 "우리 집에서도 고위와 비위 두 신위를 설치했는데, 비록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행한 지가 이미 오래이므로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합설로 지내는 불천위제사 |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합설의 사례 중에는 고위제사에 비위를 모셔오지만, 비위 때는 고위를 모셔오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퇴계 이황은 "고위와 비위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은 참으로 예禮가 아니다. 고위의 제사에 비위를 함께 제사 지냄은 그나마 무방하지만, 비위의 제사에 고위를 함께 제사 지낸다면 감히 존자尊者를 끌어온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집안에서도 일찍이 이처럼 했지만, 내가 종자宗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멋대로 고칠 수 없다. 다만, 내가 죽은 뒤에는 이런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반면,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기일에 고위와 비위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이 비록 주자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현들이 일찍 행했고, 율곡栗谷 또한 '두 신위에게 제사 지냄이 마음 편하다.'라고 했으니, 존자를 끌어온다는 혐의를 아마도 꼭 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라고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여기서 '존자를 끌어온다.'라는 것은 "남자를 왕부王父에게 부祔할 때는 배위를 모시고, 여자를 왕모王母에게 부할 때는 배위를 모시지 않는다."라는 『예기禮記』 문장의 주석에서 "존자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비자卑子에게 미칠 수 있지만, 비자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존자를 끌어올 수 없다."라고 설명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처럼 단설과 합설에 대해 『가례家禮』를 비롯한 예서에서는 단설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실제 관행에서는 합설을 적지 않게 실행하였던 것 같다. 특히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속제俗祭」의 '대부사서인시향大夫士庶人時享'에서는 합설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문공의 『가례』에서는 '기일에 한 신위만 설치한다.'라고 했으며, 정씨程氏의 제례에서는 '고위와 비위를 함께 제사 지낸다.'고 했으니, 두 예가禮家의 설이 같지 않다. 대개 한 신위만을 설치함은 '올바른 예[禮之正]'이고, 고위와 비위를 함께 제사 지냄은 '인정人情에 근본을 둔 예[禮之本於情]'이다. 만약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자리를 펼 때에 궤几를 같이 놓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보면, 예는 인정에 근본을 둔 것이니 이 또한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징 및 의의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서는 "기일은 상喪의 연속이기에 해당 조상만을 모셔온다."라는 이유로 단설을 합당한 제사방식으로 규정했지만, 인정에 근본을 둔 예를 따르는 과정에서 합설合設도 실행되었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儀, 禮記,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김미영 외,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합장
合葬

정의 하나의 묘혈墓穴에 다수의 시신을 나란히 묻는 매장 형태.

역사 『예기禮記』에 "계무자季武子가 '합장合葬하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니다. 그러나 주공周公이 합장을 시작한 이래로 그 예가 고쳐진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합장은 주나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 성과에 따르면 합장의 역사는 이미 고분에서부터 발견되며, 삼국시대의 기록에도 합장의 사례가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합장의 가능성은 있지만, 기록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조선시대가 되면 유교식 의례를 기본으로 매장을 주 장법으로 삼으면서 합장이 다수 이루어진다. 왕릉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왕릉의 합장에 대한 기록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내용 고고학 발굴 성과에 따르면 고대의 합장은 부부뿐만 아니라 순장殉葬 등으로 인해 하나의 무덤에 여러 사람이 함께 묻히는 것으로 '어울무덤'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유교식 상례에 따른 매장에서는 반드시 부부의 합장을 전제로 한다. 『백호통白虎通』에서는 "살아서는 집을 달리하나, 죽어서는 묘혈을 함께한다."는 『시경詩經』의 설을 받아들여 "합장이란 부부가 함께하는 도道"라고 하였다.

합장을 표현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합폄合窆과 합부合祔는 원래의 무덤에 배우자를 함께 매장하였다는 뜻이다. 쌍분雙墳은 같은 묘역에 합장하였지만 봉분을 따로 만들었고, 묘비 등은 모두 하나로 하였다는 뜻이다. 합분合墳·합봉合封·합조合兆는 봉분을 하나로 하였다는 뜻으로 '단분單墳'이라고도 한다.

합장은 하나의 묘역에 부부를 함께, 재취가 있을 때는 3인 이상을 함께 매장하는 장법이다. 따라서 단독 무덤보다는 매장 위치·방법 등이 복잡하여 고려할 사항이 많다. 첫째, 곽을 함께 사용하는지의 여부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두 관棺은 곽槨을 함께한다. 대개 옛날에는 여러 재목을 합쳐서 곽을 만들었으므로 크고 작음을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판을 써서 만드니 두 관을 함께 넣을 만큼 큰 곽을 만들 큰 나무가 없다. 그러므로 합장할 때는 단지 혈穴만 함께하고 각각 다른 곽을 쓴다."는 주자朱子(1130~1200)의 설을 따른다. 그러나 『예기』에서는 "부祔는 합장合葬인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곽槨 가운데에 물건 하나로 두 관棺 사이를 떼어 놓는다는 말이고, 노魯나라 사람이 합合한다는 것은 두 관棺을 하나의 곽槨에 놓고 딴 물건으로 가운데에 간격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남자와 여자의 위치 문제이다.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는 "살펴보건대, 장사 지내는 위치는 참으로 제사 지내는 위치와 같게 해야 한다. 다만 세속에서는 잘못된 것을 따른 지 이미 오래되어, 장사 지낼 적에는 모두 남자는 왼쪽에 장사 지내고 여자는 오른쪽에 장사 지내는데, 온 집안이 홀연히 이처럼 행하고 있다. 몇 대가 지나간 뒤에 자손들이 잘못하여 고考를 비妣로 삼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 우선은 주자가 유부인劉夫人을 장사 지낸 전례에 따라서 하는 편이 좋

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살펴보건대,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는 이요경李堯卿의 질문에 '내가 당초에 망실亡室을 장사 지낼 적에는 단지 동쪽 가의 한 자리만을 남겨 두었다.'고 답하였고, 진안경陳安卿이 '지도地道는 오른쪽이 높은 곳이 되는바, 아마도 남자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묻자, '제사 지낼 적에는 서쪽을 위로 삼는다. 그러니 장사 지낼 때에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지금 구준邱濬의 설은 이와 같으니, 왜 그렇게 말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주자의 뜻을 따른다. 『사의士儀』에서도 "합장을 한다면 남자는 오른편에, 여자는 왼편에 묻는 예를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무덤의 발굴성과를 보면 남녀의 위치가 반대이거나 남자를 가운데에 두고 정실正室과 계실繼室을 좌우에 매장하는 등 차이가 크다. 또한 남자를 약간 위쪽에 두고 정실과 계실은 조금 아래쪽에 좌우로 매장하여 품品자형으로 배치하기도 한다.

셋째, 정실과 계실의 합장 여부이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합장은 원비元妃에게만 쓴다."라는 정자程子의 주장, "계실繼室은 따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옳다."는 장자張子의 주장, "오늘날 사람들은 부부를 꼭 다 합장하지는 않으니, 계실은 따로 묘역을 만드는 것도 역시 좋다."는 주자의 주장에 따라 정실만 합장하는 설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분묘의 발굴성과를 보면 계실을 함께 합장한 사례를 여럿 볼 수 있어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넷째, 봉분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예기』에서는 "위衛나라 사람의 부장은 봉분을 따로 만들었고 노魯나라 사람의 부장은 봉분을 합쳤으니, 좋은 일이다."라고 한 공자의 설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의 상황에 따라 쌍분과 합봉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는 풍수지리의 영향도 적지 않다.

다섯째, 석물을 한 쌍으로 준비하느냐 각각 준비하느냐이다. 1410년(태종 10)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을 옮기면서 다양한 합장의 사례를 상고하고 "지금 두 능의 천장은 마땅히 공자가 좋게 여긴 노나라 사람의 부합祔合하는 제도와, 혈穴은 같이 하고 곽은 각각 쓴다는 주자의 설을 모방하여, 석인石人·석수石獸는 하나의 능에 배치하는 수數를 쓰고, 오직 석상石床과 장명등長明燈만은 각각 두도록" 하겠다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른 사례가 있다. 또한 1821년(순조 21) 건릉健陵을 이전하면서 "만약 합봉의 예를 사용할 경우 합하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장릉長陵의 합장한 의식을 보건대, 혼유석魂遊石은 각각 설치하였고 장명등長明燈은 중앙에 하나만 설치하였으며, 현륭원顯隆園 합장 때에는 혼유석까지 중앙에 하나만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왕은 현륭원의 사례를 따르도록 한다. 『상례비요』에서는 석물은 형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유교식 상례에서 합장은 부부를 하나의 묘역에 함께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부는 각각 하나의 객체이므로 묘역의 넓이, 봉분의 넓이, 석물의 수량 등 일정한 규칙은 없다. 합장할 때 남녀의 위치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발굴 결과를 보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상대적 방위와 절대적 위치의 인식 문제와 연관된다. 또한, 묘비와 실제 매장된 위치가 다른 것 역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합장할 때 묘비를 쓰는 방법에 대해 『상례비요』에서는 "묘비를 쓸 경우 합장할 때는 고비를 쌍행雙行으로 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우祔右'·'부좌祔左'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계실을 합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실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儀節, 家禮輯覽, 白虎通, 士儀, 喪禮備要, 禮記,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온양민속박물관, 1989), 용인의 분묘 문화(용인시, 2001),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합환주
合歡酒

정의 전통혼례에서 신랑·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마시는 술.

내용 합근례合巹禮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 잔을 바꾸어 마시며 혼인 서약을 하고, 백년해로할 것을 다짐한다. 이때 마시는 술을 '합근주' 또는 '합환주'라고 한다. 합환주는 '남녀가 함께 자기 전에 마시는 술'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합근주'라고 많이 쓴다. 합근례에서는 대개 세 번 술잔을 바꾸어 마시는데, 셋째 잔은 한 쌍의 표주박잔을 사용한다. 한 쌍의 표주박잔은 조롱박이나 동근 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것이다. 박은 예로부터 다산多産의 식물로 대지大地의 생산력 상징·새의 알과 같은 생명의 근원 상징·신비한 능력을 지닌 태양의 상징으로 보아 신성시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가 알에서 나왔다 하여 박[瓢]과 음이 같은 박朴을 성으로 한 것은 이러한 사유의 표현이다. 한 쌍의 표주박잔은 이처럼 신성의 의미를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표주박잔의 다른 짝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신랑·신부가 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뜻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

신랑·신부가 마시는 술은 민간신앙에서 정화수井華水와 같은 의미가 있다. 물은 예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 파괴破壞와 정화淨化의 큰 힘을 지니고 있어 신성시되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다시 짝을 구할 수 없는 한 쌍의 표주박잔에 신성시하는 물[술]을 부어 서로 바꾸어 마시며 백년해로百年偕老할 것을 서약하고 다짐하는 합근례의 의식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다. 대례상大禮床에는 병에 꽂은 소나무와 대나무 가지에 홍실과 청실을 걸친다. 합근례 때 신랑 쪽 시자侍者는 홍실을, 신부 쪽 시자는 청실을 손목에 감는다. 이것은 어느 쪽 시자인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실은 장수長壽·인연因緣·정절貞節의 의미를 지닌다. 음양陰陽으로 보면, 홍색은 양陽으로 남성 상징이고, 청색은 음陰으로 여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홍실과 청실은 남녀가 혼인으로 부부의 인연이 맺어졌음을 의미한다.



합환주잔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술은 예로부터 제의祭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정화수와 함께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혼례에서 합근주는 역시 신성한 것으로, 신랑과 신부가 백년해로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다짐이 변하지 않도록 천지신명께 도움을 청하는 제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의 생활예절(성균관,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2(동아출판사, 1995),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한국인의 삶과 문화(최운식, 보고사, 2006).

필자 최운식(崔雲植)

해산의례
解産儀禮

정의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첫국밥을 먹을 때까지 행하는 각종 의례와 금기.

내용 출산이 임박한 가정에서는 본격적인 해산준비에 들어간다. 이때 산바라지를 해줄 사람을 미리 정해두기도 하는데,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은 보통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였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웃에서 산파産婆를 구하는데, 아이를 낳은 경험이 많고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운 여성에게 맡기기 마련이었다. 한편 태어난 아이가 사용할 배냇저고리와 포대기, 기저귀 및 산모가 먹을 미역 등은 미리 구입해 두었다. 산모가 몸을 푼 이후에는 태아와 산모를 연결해주던 태를 처리하고, 집안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각종 부정을 막기 위해 금줄을 설치했다. 이어서 무사히 몸을 풀게 해준 삼신에게 밥과 국을 차려 대접하고 산모가 첫국밥을 먹음으로써 해산을 마쳤다.

해산준비는 보통 산실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산실은 아이를 낳을 장소를 말하는데, 산모와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의 운명에도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산실은 시댁이나 친정에 차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댁에 산실을 마련할 때는 산모가 거주하는 방을 사용하였고, 친정에서는 따로 방을 정해두었다. 경우에 따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해 또는 같은 달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한 지붕 아래서 두 아이를 출산하면 한 아이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여겨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도 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어머니는 본채에서 아이를 낳고 며느리는 아래채나 헛간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가피하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서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출산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특별한 경우에 집을 떠나 아이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마을의 동제기간과 겹쳐지면 친정에 보내거나 대개 마을 외곽에 마련한 피막避幕이나 해막解幕으로 거처를 옮겨 아이를 낳게 했는데, 이는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한편 임부姙婦가 분만할 기미를 보이면 먼저 불을 때서 방안을 따뜻하게 덥혔다. 다음으로 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분만할 자리에 '삼신짚'이라고 하는 짚을 깔았는데, 출산하면서 발생하는 양수나 피 같은 분비물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삼신줄'을 설치하여 분만할 때 힘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삼신줄은 남편이나 집안의 다른 남성이 왼쪽으로 꼰 새끼나 천으로 만든 줄을 말하는데, 대들보 등에 걸어서 임부가 잡고 의지할 수 있게 했다. 전통적으로 민간에서는 대부분 엎드려서 출산을 했는데, 이때 삼신줄을 잡고 일어서면 하복부에 힘을 주기가 수월했다. 삼신줄을 잡고 분만을 하여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지 못한 집에서 다투어 삼신줄을 얻어가려고 했다.

분만을 시작하면 순산을 위해 주술종교적인 안산법安産法이 동원되었다. 근대적인 의료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출산 중 사망하는 산모와 태아가 많았기 때문에, 해산은 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부에게 날계란을 먹이거나 아주까리 대를 산실 네 귀퉁이에 세워 순산을 기원하기도 했다. 또한 장농이나 집안의 모든 문을 열거나 논의 물꼬를 터서 아이가 잘 나오기를 기원했으며, 자식을 순산한 여성이 임부의 배를 타넘거나 개울에 나가 빨랫돌을 뒤집어 놓았다가 아이를 낳은 뒤에 본래대로 돌려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안산법이 동원되었다.

태아가 완전히 자궁을 빠져나오면 먼저 탯줄을 자르는데, 이를 두고 "삼 가른다."라고 했다. 탯줄을 자를 때는 낫이나 가위, 사람의 이, 수숫대 등 여러 도구를 사용했다. 잘라낸 태는 소중하게 여겨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했다. 태단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지에 태를 담아 땅속이나 큰 나무 밑에 묻었다. 단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왕겨에 태워서 그 재를 물에 띄워 보냈다. 아이의 태열이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불에 태운 뒤 그 재를 약용으로 보관해두기도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대문이나 삽짝에 금줄을 매달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다. 왼새끼에 솔가지나 숯, 고추 등을 꽂았는데, 대개 남아이면 고추와 숯을, 여아이면 솔가지와 숯을 꽂았다. 금줄을 걸어두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세이레까지였다.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밥과 미역국을 먹는데, 이를 두고 "첫국밥 먹는다."라고 했다. 산모가 첫국밥을 먹기 전에 먼저 산모의 머리맡에 삼신상을 차려서 무사히 아이를 낳게 해준 삼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아이의 건강과 순조로운 수유를 기원했다. 삼신을 위한 다음에는 상에 차려두었던 밥과 미역국을 산모에게 먹였다. 산모가 첫국밥을 먹는 관행은 지역과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만약 집안에 아이를 낳다 죽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미역국을 먹기 전에 맨된장국을 먹이기도 했고, 미역국에 앞서 호박국이나 무국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해산과 관련해서 각종 금기가 뒤따랐다. 예를 들어 산실의 문종이를 새로 붙이거나 쥐구멍을 막는 행위를 금기시했는데, 이처럼 구멍을 막거나 열 수 있는 걸 닫아놓으면 산모가 순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이 때문에 출산 때까지 솥뚜껑을 열어두거나 쥐구멍을 터주기도 했다. 삼신을 대접하고 산모가 먹을 미역을 사올 때도 금기가 뒤따랐다. 만약 미역을 구부리거나 꺾어서 사오면 산모의 허리가 아프거나 순산하지 못하

며, 태어날 아이의 운명도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또한 사온 미역은 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데,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누군가 미역을 뜯어 먹으면 아이가 남을 잘 깨문다고 여겼다. 한편 해산전후 그리고 해산과정에서 각종 부정이 기피되었다. 예컨대 상가喪家에 다니지 않고 짐승을 도살하는 현장도 피하는데, 개를 잡는 것을 보면 아이가 개처럼 짓는 흉내를 낸다고 했다. 아이를 분만한 직후에도 각종 금기가 뒤따랐다. 만약 탯줄을 자를 때 아이 얼굴에 피가 튀면 아이가 커서 "피를 보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조심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25~1930년까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은 무려 73%에 달한다. 1996년의 영아사망률이 8.5%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시의 영아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다. 제왕절개술 같은 수술법이 없었던 전통사회에서, 만약 태아가 자궁을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의 목숨도 위태로웠기 때문에, 민중들은 실제적이고 주술종교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출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애썼다. 먼저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안온하고 위생적인 산실과 순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한편 경험 많은 산파를 데려와서 출산의 과정을 주관하게 했다. 또한 주술종교적으로는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을 모시고 위하는 한편 각종 금기를 따르고 주술적 행위를 함으로써 산모가 안전하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염원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강원인의 일생의례(김의숙·이학주, 민속원, 2005),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문화재연구소, 1993).

필자 한양명(韓陽明)



향로
香爐

정의 향을 사르는 데 사용하는 분향기구焚香器具.

역사 향로의 사용은 제사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데,



향로 | 국립민속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에서 보듯이 고대인들은 향로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향로는 주로 금속, 도자기 등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오늘날에도 중국 고대의 대형 청동 향로들이 남아 전한다.

불교를 수용한 이후 삼국이 모두 수많은 사찰의 건립을 추진하였으므로, 향공양香供養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향로 또한 일찍부터 전래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박산형博山形 향로와 병향로柄香爐가 한두 점 전하여 올 뿐 그 유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어떠한 형태가 크게 유행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고구려 쌍영총雙楹塚 벽화의 〈귀부인행렬도〉, 단석산斷石山 신선사神仙寺 마애불磨崖佛의 공양상,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의 비천상飛天像 등에서 보이는 향로의 모양으로 미루어 당시에는 병향로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조선시대까지 향로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청동제靑銅製 고배형高杯形 향로가 출현한다. 이 향로는 넓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밥그릇[鉢] 모양의 몸체, 위는 좁고 아래는 넉넉한 나팔모양의 대臺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보통 제사의 첫 절차인 분향焚香, 강신降神 때 향을 피운다. 향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도향塗香과 소향燒香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도향이란 명향名香 가루를 깨끗한 물에 혼합하여 바르는 것을 말하고, 소향이란 향을 불살라서 쐬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가지 중 소향은 향을 담아서 불을 사를 그릇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향로이다.

향로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크게 토제·도제陶製·금

속제·석제·목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국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주로 토제 향로가 성행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청자와 청동제 향로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유교가 득세하였던 조선시대에는 불교적 향로보다 일반 제기祭器로서 백자와 유제鍮製 향로가 널리 애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향을 피우는 것은 주위의 잡스러운 냄새를 제거하여 엄숙한 분위기의 성역을 이룩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도 종교의 제의에 향은 두루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 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권삼문(權三文)

향탁 香卓

정의 향로, 향합香盒, 모사기茅沙器를 올려두는 작은 상.

역사 향탁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언급될 정도로, 그 사용이 아주 오래되었다. 『삼국유사』 권3 천수天授 3년 조條의 백률사 관련 기록을 보면 "여러 날 저녁 기도를 드렸더니 홀연히 향탁 위에 금과 적의 두 보물을 얻었다禋祈累夕, 忽香卓上, 得芩笛二寶."라는 기록이 있다.



향탁(향상)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제상 앞에 놓아 향로를 올려놓는 작은 상이다. 향을 사르는 데 쓰는 향로香爐, 향을 담아 두는 향합香盒, 모사기茅沙器 등을 올려두는 작은 상이다. '향상香床', '향안香案'이라고도 한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주위의 잡스러운 냄새를 제거하며 신성한 분위기의 성역을 이룩한다는 뜻이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제의에 향은 두루 사용되었다. 향이란 '향내가 나는 물건'으로, 인도에서 크게 성행하였는데, 손님을 맞이할 때에는 나쁜 냄새의 기운을 없애기 위하여 마당에 향즙香汁을 뿌리고, 향을 몸에 바른 뒤에 맞이할 정도로 널리 쓰였다. 이와 더불어 향은 마음의 때까지도 말끔하게 씻어 준다 하여 마침내는 불교의 설법 장소에서도 즐겨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향로에 향합을 올려 제상 앞에 놓아두는 향탁 중에는 향을 보관하기 위해 서랍이 달린 것도 있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 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필자 권삼문(權三文)

향합 香盒

정의 제사 때에 쓰는 향을 담아두는 도구.

역사 향합香盒은 고려시대에 청동 및 청자로 만들어진 예가 많으며, 특히 순청자純青磁·상감청자象嵌青磁로 납작한 몸체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널리 알려졌다. 조선시대에는 제사의식에 따라 제상 앞의 향탁香卓 위에 향로와 함께 놓여 사용되었고, 18~19세기에는 백자



향합 | 국립민속박물관

의 소형 향합이 사용된 예가 많다. 향나무를 분쇄하여 가느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만든 향이 보급되면서, 향합은 용도를 잃고 사라지는 추세이다.

내용 향나무의 심재心材를 잘게 자른 향을 집어넣는 소형의 합盒이다. 향합은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이다. 원래 향로와 함께 세트로 사용되었으나, 나무 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향합은 용도가 폐기되고 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종교의 제의에 향은 두루 사용되었다. 인류가 일찍부터 사용해 온 향이란 '향내가 나는 물건'으로, 사람의 '입 냄새[口臭]'나 '몸의 때[身垢]' 냄새를 제거하고, 집 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갖가지 취기臭氣를 없애기 위하여 사용된 것을 말한다.

특징 및 의의 신에게 올리는 향을 담은 기구이므로 향로 같이 아름답고 정교한 합이 많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민족생활어 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권삼문(權三文)

허혼서
許婚書

정의 혼인을 허락하는 편지.

내용 허혼서란 혼인을 청하는 남자 집안에서 보내온 납채서를 받고 여자 집안은 이를 사당에 고한 후에 남자집안에 보내는 납채답서納采答書를 말한다. 피봉식(봉투 서식)은 납채 때와 같다. 경첩은 사주와 같은 것이지만 생시生時는 적지 않는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의하면 허혼서를 받은 남자 집안의 혼주는 이것을 사당에 고한다고 되어 있다. 이 의식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양가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고례에는 '아내로 주심, 어리석음' 등의 구절이 있었지만 납채의 예는 반드시 혼인 전에 행하는 것이니 양가의 변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글을 약간 바꾸어서 인정에 맞게 한다. 종가의 종손이 아니면 사당에 고하지 않았다.

납채답서 1

○○고을의 ○○○은 ○○벼슬의 집사執事께 여쭙습니다.
어른께서 저희의 한미함을 낮춰보지 않으시고, 중매의 말을 너무 믿으시어 저의 ○째 딸을 댁의 아드님의 배필로 채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제 딸은 어리석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였는데(고모나 자매의 경우에는 이 구절을 뺌) 이미 채택됨을 입었으니 어찌 절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어른께서는 특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년 ○○월 ○○일
○○고을 ○○○는 사룁니다.

납채답서 2(여유당전서)

가명嘉命을 받잡고 경첩을 주시오니 제가 어찌 사양하오리까. 삼가 받자옵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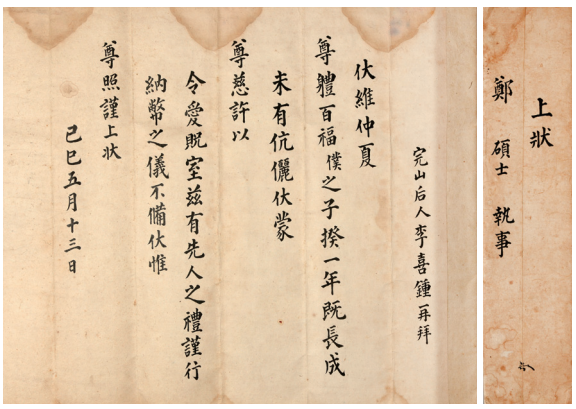
고유서 1

○○의 아들 ○○가 ○○고을 ○○벼슬 ○○○의 ○째 딸과 혼인하게 되어 오는 납채의 예가 끝났음을 삼가 고합니다.

고유서 2

○○의 아들 ○○가 ○○○의 딸을 취하기로 의논하여, 오늘 납채를 하려 이에 삼가 고합니다.

지역사례 경상도에서는 사주를 받은 여자 집안에서 납채복서와 택일을 적어 허혼서를 보낸다. 황해도에서는 중매로부터 남자 집안의 청혼과 권유를 받고, 여자 집안이 승낙할 의사가 있을 때에 혼인을 허락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 글에는 "계절 존체 만안하오십니까. 저의 여식 혼사는 가문이 보잘것없는데도 힘써 권유해 주시


上狀
鄭 碩士 執事
完山后人李喜鍾再拜
伏維仲夏
尊體百福僕之子挨一年既長成
未有伉儷伏蒙
尊慈許以
令愛貺室茲有先人之禮謹行
納幣之儀不備伏惟
尊照謹上狀
己巳五月十三日

허혼서 | 이길표

니 어찌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비롯한 북부지방에서는 허혼하는 것을 '면약面約(서로 만나서 약속함)'이라고도 한다. 허혼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남자의 집안에서 신부의 집안에 혼인을 하게 됨을 감사한다는 편지를 보내면 신부의 집에서도 이에 대한 회답을 보낸다. 양가 편지의 서식은 육례六禮의 혼인 절차에서 문명問名 때에 하는 형식을 따랐다. 남자 집안에서는 혼인당사자인 남자의 사주단자를 같이 써서 여자 집에 보낸다. 여자 집안에서는 남자의 사성을 가지고 혼인 일자를 정해서 남자 집으로 보낸다. 전라북도에서는 여자 나이 14세, 남자 나이 16세 이상인 시기에 남자의 사주를 적은 단자를 중매인에게 제공하여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이러한 절차는 동등한 처지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혼인할 남자와 여자의 행실, 그 집안의 가법家法, 친족관계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허혼했다.

특징 및 의의 허혼서는 혼인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혼서를 받은 남자 집안에서는 앞으로 신랑·신부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그리고 혼인을 허락할 때는 앞으로 두 사람이 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가법家法은 물론 빈부귀천貧富貴賤이 동등한 생활여건을 중요시했다. 또한 신랑·신부 양쪽 집안이 삼가 조심하여 겸손한 자세로 임했다.

참고문헌 與猶堂全書, 增補四禮便覽, 한국의 혼속연구(김종흥, 대성문화사, 1981).

필자 이길표(李吉杓)



헌다 獻茶

정의 조상신에게 갱羹을 내려놓고 차나 숭늉을 올리는 절차.

내용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차를 올렸는데,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차 대신 숭늉이나 물을 올린다고 하였다.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경북 고령 점필재 김종직 종가

헌다 | 국립민속박물관

조상신에게 음식 드시기를 권한 다음 문을 닫고 기다리가다 문을 열고 제관은 갱(국)을 내려놓고 숭늉을 올린다.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숭늉에 말아놓고 수저를 고른다. 제관들은 2~3분간 읍揖하고 있다가 고개를 든다.

헌다獻茶는 제례의 한 순서라는 의미 외에도 종교적 대상에게 예배의 한 행위로서 차를 올리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옛 문헌에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에게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나 공다供茶와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였으나, 현대에는 조상이나 신불을 대상으로만 쓰이고 있다. 신전神前에 바치는 것을 헌차獻茶, 불전佛前에 바치는 것을 공차供茶라고 부르는 예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종헌終獻 후에 음식 드시기를 권한 후, 문을 닫고 기다리다가 음식을 다 드신 후 차나 숭늉을 올리는 의식이다.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드신 후 차나 숭늉을 권하는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헌식
獻食

정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상을 차리거나 제사를 지낸 뒤 제물을 조금씩 담아 잡귀雜鬼에게 대접하는 것. 또는, 상에 올린 제물을 먹기 전에 신神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식 일부를 떼어 담아놓는 의례.

역사 헌식獻食은 인도의 풍습으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우리나라의 제례문화로 정착하였다. 굶어 죽은 귀신인 아귀餓鬼는 '죽은 사람'을 뜻하는 범어 'pereta'의 번역이다. 선조의 영혼에 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도 귀계鬼界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고 믿는 인도인들의 관념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귀가 찾아와서 먹도록 음식을 집 밖의 일정한 곳에 놓아두는 형태로 행해진 습속이다. 우리나라의 절에서도 사십구재四十九齋나 기일제忌日祭 등이 끝나면 문 앞쪽의 시식돌施食-에 음식을 차려 잡귀를 대접했다. 또한, 절에서 대중이 공양할 때 음식을 조금씩 덜어 아귀에게 주는 것도 헌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아귀신앙施餓鬼信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제사 헌식 음식(강원 속초 청호동)


헌식 준비하기(제주도)

헌식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가정제례에서 헌식에 쓰이는 제물은 잡식, 물밥, 거렁지밥, 귀신밥, 문전상, 거리상, 손(님)상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부른다. 헌식 행위도 '물기'한다, 고수레, 퇴송, 잡귀풀어먹이기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헌식은 제의의 마지막 과장인 뒷전으로 인식되지만,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제사상을 준비할 때 잡귀들을 대접하는 손님상을 문밖에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죽은 조상을 대접하는 시아귀신앙은 우리나라에 전래하여 아귀餓鬼뿐 아니라 모든 잡귀와 잡신을 대접하는 의례로 변모되었다. 잡귀나 잡신은 무주고혼無主孤魂·객귀·하탈(애 낳다가 죽은 귀신)·영산靈山(참혹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같은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이므로, 산 인간에게 화禍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잘 달래어서 화를 면하고자 하는 의례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가정제례에서 잡귀와 잡신은 조상을 따라온 귀신들인데, 이들을 대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제사상을 차릴 때 잡귀들을 위한 상을 별도로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이다. 주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행하는 방법인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충남 서천에서는 조상의 상을 차릴 때 현관문 앞에 손님상을 준비하는데, 제물로 메 세 그릇·청수 세 그릇·나물·부침개·과일 등을 조금씩 차린다. 조상을 따라온 귀신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므로 수저를 놓지 않으며 특별히 술을 올리거나 절을 하지도 않는다.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차례를 지낼 때 차례상 곁에 떠도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문전상(거리상)을 차리는데, 제물은 떡과 술 정도로 간단하다.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조상을 따라온 귀신을 대접하기 위해 방 밖에 간단한 제물을 올린 손님상을 차려둔다.

둘째는 제사가 모두 끝난 뒤 제상의 제물을 조금

씩 모아 헌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하는 방법이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경상북도 고령에서는 조상을 따라온 잡귀들을 위해 '거렁지밥' 혹은 '물밥'을 삼거리 길에 갖다 놓거나 쏟기도 한다. 충청북도 진천에서는 제사가 끝난 후 제물을 푸짐하게 담은 상을 현관문 앞에 차려 잡귀들에게 헌식하고, 제천에서는 망자를 따라온 귀신을 위해 상을 치우기 전에 밥그릇 뚜껑에 조금씩 세 번 따른 술과 3색 나물 약간을 밖에 가져가 버리는 것으로 헌식한다. 전남 광양과 강진, 전북 부안에서는 제사가 모두 끝나면 '물기'한다고 하며 유식밥(물밥)과 제물을 나무토막 위에 담아 대문 밖에 둔다. 이것을 귀신밥이라 부르는데, 예전에는 대문 밖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부었다. 제주도에서는 차례와 기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문전제를 지내며, 문전제 후에 헌식을 치른다. 상에 올린 술잔에 제물을 조금씩 뜯어 모으는 것을 '잡식'이라고 하며, 먼저 잡식한 것을 '웃잡식', 나중에 한 것을 '알잡식'이라고 한다. 웃잡식은 지붕 위에 올리고 알잡식은 조왕에 올린다. 제주시 중부지역에서는 기제사 후에도 헌식의례를 한다. 기제사의 마지막 과장인 하직배례를 한 후 잡식과 '걸명(고수레)'를 하고 상을 치운다.

위의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한 특수 사례는 산멕이에서의 헌식이다. 산멕이는 산에서 행하는 가정제례로, 주로 동해안 지역에 전승된다. 특히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 지역의 산멕이에서는 헌식용 제물을 별도로 준비한다. 헌식하는 것을 '객구를 물린다.' 또는 '뒷전 먹인다.'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뒷전의례를 위해 삼척 지역에서는 조밥과 뒷전떡(까마귀떡, 동돌개비), 울진 지역에서는 잡귀신떡(까마귀떡, 고시레떡) 같은 뒷전 제물을 준비한다. 까마귀떡이라는 이름은 까마귀를 저승총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잡신에 대한 의례도 산신이나 조상 같은 다른 신 못지않게 지극한 모습을 보여준다. 뒷전 제물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조상제가 끝난 후 제상에서 제물을 조금씩 잘라 담아놓고 뒷전을 먹이는데, 뒷전을 담당한 무당은 "젊어서 죽은 청춘귀신, 처녀귀신, 몽달귀신" 등 잡신을 부르면서 자기 입에다 거리밥 한 술씩을 떠 넣는다.

특징 및 의의 우리 전통제례는 본 과장에 모시는 주신主神뿐 아니라 원한을 품은 갖가지 잡귀와 잡신마저 성격과 식성에 맞추어 잘 대접하면서 의례를 마무리 짓는다. 이러한 헌식의례에는 인간관계에서 원한을 사서는 안 된다는 한국인의 의식이 담겨 있다. 수많은 사람이 도우려 해도 한 사람이 원한을 갖고 방해하면 소용이 없다는 현실세계에서의 경험이 제례에 반영되어 헌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주신主神을 아무리 잘 대접했어도 잡귀와 잡신에게 소홀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이다.

헌식은 신과 신, 신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례이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실천하는 의례이기도 하다. 제물을 드리는 대상은 잡귀 내지는 잡신이지만 제물을 실제 먹는 것은 동물과 곤충이다. 그러므로 헌식은 우리 민족의 생명존중의식과 나눔의 미덕을 잘 보여주는 민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음복이 사람 사이의 나눔의식이라면 헌식은 각종 짐승 및 곤충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이다. 대자연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병립신관과 한국문화(임돈희, 비교민속학20, 비교민속학회, 2001),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잡귀, 잡신을 총정리한다(조흥윤, 문화예술 통권10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김태수(金泰水)



헌작
獻爵

정의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복을 구하려고 격식에 맞춰 술을 올리는 일.

역사 『문헌통고文獻通考』에 "고대에는 종묘宗廟제사에 구헌九獻을 하였는데, 황제와 황후가 각 네 번씩 헌작하고, 신하가 한 번 헌작하였다. 그러나 한대漢代부터 황후가 입묘하지 않아 삼헌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한다. 『의례儀禮』의 "포해脯醢를 천신할 때 삼헌을 한다."라는 기록과 『후한서後漢書』 등의 "광록훈


침주


좨주


진적

헌작 | 경북 포항 경주 손씨 묘역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光祿勳과 경卿 1인은 교사郊祀에서 삼헌三獻을 담당한다."라는 기록에서 제사의 헌작獻爵은 삼헌이 기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괄沈括(1031~1095)의 『몽계필담夢溪筆談』에 따르면 "제사에서는 날 것[腥]과 삶은 것[燔]과 익힌 것[熟]의 세 가지를 세 번 올린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가례家禮』로 계승되고, 다시 조선으로 이어졌다.

내용 제사에서 헌작은 신과 소통하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신에게 술을 올리는 것은 음주의 황홀경을 신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여겼기 때문이다. 인간이 술을 마시고 황홀경에 빠져 신과 소통하듯 신도 술을 마시고 인간과 소통한다고 여겨 동아시아의 제사에서는 헌작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제사에 사용하는 술을 '청작淸酌'이라고 하는데, 『사의士儀』에서는 소주가 원나라에서 온 흉주凶酒이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여름에 맛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기禮記』에 "일헌一獻을 질質이라 하는데, 군소사群小祀의 제사를 일컬으며, 가장 낮아서 일헌만 할 뿐이며, 질박하고 생략된 것이다. 삼헌을 문文이라 한 것은 사직社稷과 오사五祀의 신을 존중하여 군소사보다 문식文飾이 있게 한 것이다."라고 하여 삼헌을 격이 더욱 높은 것으로 여겼다.

헌작하는 사람을 '헌관獻官'이라고 한다. 초헌初獻하는 초헌관初獻官은 반드시 적장자인 주인主人이 담당하고, 제사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지내도록 하였기에 아헌하는 아헌관亞獻官은 주부主婦가,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관終獻官은 연장자나 귀한 손님이 담당한다. 헌작할 때는 진적進炙이라고 하여 헌작마다 간을 구워서 올린다. 헌작하는 방법은 첫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방식이다. 주인이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집사가 잔을 내려 주인에게 주고, 우집사가 술을 떠서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술잔을 받들었다가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가 원래의 자리에 술잔을 올린다. 둘째, 『가례』의 방식이다. 주인이 신위 앞에 나아가면 집사자가 주전자를 잡고 그 오른쪽에 선다. 주인이 직접 잔을 받들어 신위 앞에 동향해서 서면 집사자가 서향해서 잔에 술을 따른다. 주인이 술잔을 받들어 원래의 자리에 올린다. 주인이 신위 앞에 북향하여 서면, 집사자

가 제상 위의 잔을 받들어 주인의 옆에 선다. 주인이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도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잔을 받아 모사에 좨주하고, 집사자에게 주면 원래의 자리에 올린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문선東文選』 등에 실린 도교道敎 제사에서 삼헌할 때 올리는 글을 통해 삼헌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초헌에서는 '시기에 맞춰 제사를 올리게 되었음을 고하고', 아헌에서는 '평소 보살핌에 감사하고', 종헌에서는 '앞으로의 복을 비는' 내용이다.

지역사례 영남지역이나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국조오례의』 방식의 헌작을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례』 방식의 헌작을 하는 등 집안에 따라 헌작 방법이 다르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헌작마다 좨주祭酒를 하지 않고 종헌에서 모사에 술을 좨주[祭酒]하는데, 이를 제작除酌이라고 한다. 합문에서 첨작添酌을 위한 것이다. 영남지역에서는 도적都炙을 올리면서 진적을 생략하지만, 학봉鶴峯 종택에서는 미수味需를 올린다. 기호지역 일부에서는 여성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 주부가 아헌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제사는 술을 매개로 신과 교통하므로 술을 올리는 헌작이 핵심이 되었다. 그래서 헌작은 삼헌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차례 등 고유 형식의 제사에서는 무축단헌無祝單獻이라는 말처럼 단헌도 하지만 술은 반드시 올린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輯覽,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夢溪筆談, 士儀, 禮記, 조상 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현구고례
見舅姑禮

정의 신부가 폐백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부모를 뵙는 예禮.

내용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가서 신랑의 부모, 즉 시부모를 만나서 배례拜禮하고 폐백을 올리는 의례로, 이때에 시가의 친족에 대한 상면相面의 예도 같이 한다. '폐백드린다'는 말은 여기서 기원한다.

그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부는 신랑집 대청에서 시아버지에게 절한다. 수모手母가 대추 폐백의 보자기를 풀어서 신부의 손을 거쳐 시아버지 앞의 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다음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시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수모가 신부의 손을 거쳐 시어머니 앞의 상 위에 고기 폐백을 올린다. 이때 신랑은 함께 절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다. 절은 신부만 하며, 폐백을 받은 시부모는 신부에게 덕담을 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현금이나 패물 등을 주는 일은 삼간다. 시조부모가 계셔도 먼저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시어머니의 인도를 받아 시조부모의 방으로 가서 시조부모에게 준비한 폐백을 드리고, 같은 방식으로 예를 올린다. 시조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폐백을 두 벌 준비한다. 다른 친족들과는 폐백 없이 상견례만 한다. 상견례를 마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계례笄禮를 행한다. 낭자를 하고 시댁에서 지어준 관례벗김으로 갈아입고 패물을 단 뒤에 큰상을 받는다. 사흘 뒤 신부는 시댁의 조상을 뵙는 사당폐백의 예를 행한다. 시아버지가 없으면 대추폐백, 시어머니가 없으면 고기(육포나 편포) 폐백을 사당에 올린다. 사당 폐백을 올리는 장소에는 타인, 즉 직업적인 수모는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시댁 집안의 여인 중에 신부를 도와 수모의 역할을 하였다.

현구고례를 마친 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부에게 단술을 내리는 예부지례醴婦之禮의 예가 행해진다. 그리고 신부가 친정에서 보내온 음식으로 시부모님을 대접하는 관궤지례盥饋之禮의 예가 포함된다. 또한, 『가례작의嘉禮酌儀』와 『광례람廣禮覽』에서는 혼례식이 날이 저문 후에 행해지기 때문에 신부집에서의 합례合禮가 신랑집에서의 현구고례見舅姑禮보다 먼저 행해지지만,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서는 낮에 식이 거행되므로 혼례식이 끝난 후 신랑집으로 가서 현구고례를 행한 뒤에 다시 신부집으로 되돌아와서 합례를 치르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현구고례를 행할 때 신부는 다홍치마나 분홍치마, 그리고 노란색의 회장저고리 위에 대례복인 활옷이나

원삼 또는 소례복인 당의를 입고 새앙머리(두 개의 쪽머리)를 하고 화관이나 족두리를 썼다. 소례복인 당의를 입었을 때는 여덟 자 길이의 명주 한폭으로 된 한삼으로 손을 가리고 절하고, 대례복인 활옷, 원삼을 입었을 때는 한삼을 따로 쓰지 않았다. 폐백상에는 대추와 꿩고기나 쇠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가 사용되었다. 포로는 육포와 편포가 사용되었지만, 한여름 복중伏中에는 육포를 사용하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폐백음식을 준비할 때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 육포를 마련하지 못하면 밤과 수(건어)를 써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형편에 맞도록 준비할 것을 말했다. 예서에 나타난 현구고례의 순서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폐백 시 가족의 위치는 표 2의 내용과 같다.

'구고예지'에서는 '부 현우구고'에서만 폐백을 준비하는데 요즘에는 구고예지를 폐백이라고 한다. 시부모를 처음 뵐 때 준비하는 폐백은 고례古禮에서는 지(대추, 밤)와 육포만 썼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지와 폐(비단)을 함께 썼다.

예서에 나타난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폐백의 내용은 뒷장의 표 3과 같으며,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폐백의

표1. 현구고례 순서

	증보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가례작의)	광례람
1	신부는 시부모를 뵙는다. (婦 見于舅姑)	부 현우구고	신알례	현구고례	신례(현구고례)
2	시부모가 신부에게 대접한다. (舅姑禮之)	구고예지	예부례(며느리에게 인사하는 예)	부 현우제존장	부현우제존장
3	신부가 여러 어른께 인사한다. (婦 見于諸尊丈)	부 현우제존장	부 현우제존장	예부지례(색시에게 단수를 내리는 예)	해헌례풀보기(신부가 혼인한 후 며칠 뒤에 시부모를 뵈러 가는 예)
4	맏며느리인 경우 시부모께 음식을 대접한다. (饋于舅姑)	궤우구고	궤고례(시부모에게 대접하는 예)	관궤지례(음식을 보내는 예)	
5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음식을 내린다. (舅姑饗之)	예부례	향부례(색시를 대접하는 예)	향부지례(관궤지례의 보답, 색시를 대접하는 예)	
6	삼일째에 주인은 며느리를 사당에 뵙게한다. (婦 見于祠堂)	부 현우사당		부 현우사당	

표2. 폐백 시 가족의 위치

현토주해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	광례람
시부모는 서로 나란히 앉는다.	시부모는 당상에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父東母西)	시부모는 대청에서 동향해서 앉는다.	시부모는 동쪽 두 자리를 마련하여 서향하여 앉으며, 시모는 시부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는다.	대청에 동서로 마주보고 앉는다.(「주자가례(朱子家禮)」는 시부모가 동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신부는 동쪽 계단 아래로 나아가 서서 북쪽을 향해 시부에게 절한다.	양쪽 계단 사이에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나란히 서서 북쪽을 향해 신랑은 이배, 신부는 사배한 후에 신랑은 물러난다.(「가례」에는 신랑이 절하는 예가 없다.)	서쪽 계단 아래로 내려와 앞마당에 서면 찬자가 번(대추, 밤)을 준다. 신부는 이를 들고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시아버지 앞에 앉아 폐백을 놓고 조금 물러나 사배한다.	신부는 북향하여 서서 사배(四拜)한 후에 대추를 담은 반을 드린다.
친족 남자들은 시아버지의 남쪽으로, 여자들은 시어머니의 남쪽으로 앉는다.				

표3.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폐백의 내용

현토주해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	광례람
대추	지(대추, 밤을 번에 담은 것)와 폐(비단)	지례(폐백, 예물)와 폐를 신부가 탁자 위에 놓는다.	대추와 밤을 담은 번을 신부가 직접 드린다.	대추를 담은 번을 수모가 상에 놓는다.(반 위에는 붉은 보가 덮혀 있다.)
며느리에게 던져준다.	어루만지고 시자가 들고 나간다.	시부앞에 사배하면 시자에게 준다.	어루만진다.(기쁨의 표시)	북향해서 사배하고 번을 드리면 시아버지는 이를 어루만진다.
신부 재배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다시 절한다.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사배한다.	숙배 (현재는 사배)	

(*번: 소쿠리 같은 것 / *반: 쟁반 같은 것)

표4.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폐백의 내용

현토주해 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	광례람
포를 수모가 놓는다.	번에 담은 지(단수 육포)와 폐	지(폐백, 어물)와 폐	육포와 단수를 담은 번	포를 담은 번(반 위에는 붉은 보가 덮혀 있다.)
	시모는 이를 시자에게 준다.	시모 앞에 사배하면 시모는 이를 시자에게 준다.	시모는 어루만진다.	신부는 북향해서 사배하고 시모는 포(꿩고기나 육포)를 어루만진다.
수모가 인도하여 재배한다.	신부는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서 절한다.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사배한다.	신부는 조금 물러가서 숙배 (현재는 사배)	

표5. 폐백에 올리는 절의 횟수

현토주해 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	광례람
수모가 인도하여 시부 탁자 앞에서 재배한다. 수모가 포를 시어머니 탁자에 놓고 신부를 인도하여 재배한다.	시부가 서있는 북쪽을 향해 신부는 절한다. 손을 씻고 다시 절한다. 시모를 향해 북향으로 절하고 지와 폐를 드린 후에 계단 아래에 내려와서 다시 절한다.	신랑 신부는 북쪽을 향해 함께 절한 후에 신랑은 물러난다.	시부에게 번(대추, 밤)을 드리고 물러나 숙배(현 사배)하고 시모에게 숙배(현 사배)하면 시모는 앉은 채로 답한다.	신부는 북쪽을 향해 사배하고 대추를 드리고 물러나 다시 사배하고 시모에게는 포를 드린다.
	어른 방에 가서 시부모를 뵙는 예가 동일하다. 시댁친족에게는 지는 없고 모두 일렬로 절을 받는다. 시누, 시동생과는 맞절한다.	시조부모에게도 동일하다. (지폐는 없다.) 색시는 왼쪽으로 사배하고, 어린친족(어린고모 · 어린시누이)과는 오른쪽에서 답배한다.어른이 많아도 함께 일렬로 절하여 간편함을 따른다.	여러 시숙,모에게 두루 단배한다.	여러 어른에게 두루 절한다.

표6. 폐백의 절차

	증보사례편람	현토주해 사례편람
부현우구고	신부는 시부모를 뵙는다.(婦見于舅姑)	
	1. 시아버지는 동쪽, 시어머니는 서쪽으로 서로 마주 보고 앉는다. 2. 절한다. 3. 폐백(지, 폐)을 들고 서쪽 계단으로 오른다. 시아버지가 폐백을 어루만지고 나서 시자는 이를 들고 나간다. 4.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다시 절한다. 5. 신부는 다시 북향하여 시어머니께 절하고 서쪽 계단을 올라 지와 폐를 드린다. 7. 시어머니는 이를 들어 시자에게 준다. 8. 신부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시어머니께 절한다.	(수모가) 대추상자를 시아버지 앞에 드리고 신부가 재배한다. 수모는 포를 시어머님 앞에 드리고 신부는 재배하게 한다. (수모가) 술을 따라 신부의 손을 거쳐서 시부모 앞에 드린다. 대추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 대추씨는 아들 낳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구고 예지	시부모가 신부에게 하는 예. (친정 부모가 딸에게 술을 내릴 때와 같이 함.)	
부 현우 제존장	신부가 여러 어른께 인사한다. 시조부모가 계시면 시부모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시부모를 뵙는 때와 같이 한다.	신랑집 가족이 동시에 세대 순서로 상견례를 행한 후 신부는 화관, 낭자에 원삼을 입는다.(가난하면 원삼을 안 쓴다.)

내용과 절의 횟수 기록도 예서에 나타난 내용을 표 4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단脹(포)이란 '두드린다'는 의미로 두드려서 생강과 계피가루를 친 것이다. 수脩는 '길다'는 의미로 길게 쪼개어 말린 포로 만든 것으로 '산포'와 동일하다. 현재는 대추 한 그릇과 지(말린 꿩고기) 한 그릇만을 드리니 간략함을 따른 것이다. 대추와 밤은 '아침 일찍부터 스스로 조심하고 공경한다'는 뜻이고, 단수는 '단단하게 스스로 닦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폐백에 올리는 절의 횟수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비교해 정리하면 표 5의 내용과 같으며, 폐백의 절차에 대한 『증보 사례편람』과 『현토주해 사례편람』의 차이를 표 6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폐백을 받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계례를 시킨다. 신부의 두 개의 쪽머리인 새앙낭자를 풀고 일반 부녀자의 쪽과 같이 빗질하여 낭자한다. 관례벗김으로 만들어 놓은 녹의홍상을 입히고, 비녀나 가락지 패물, 옷, 비단 같은 예물을 내려준다. 신부는 새 옷에 패물을 단 후에 시부모를 뵙고 큰상을 받고, 여러 친척과 친한 집의 여자들을 청하여 같이 잔치한다. 신랑·신부의 첫날 저녁상으로 찹살밥과 미역국, 팥밥과 곰국을 먹여 본가로 보낸다.

지역사례 경상도 지방에서는 신행으로 시댁에 온 신부가 큰상을 받고 다시 밖으로 나와 현구고례를 한다. 시부모에게는 사배하고 조부모에게는 이배, 근친에게는 일배를 한다. 그리고 술을 올리고 찬을 올린다.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입매엿을 올린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신행을 한 신부가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시부모를 비롯하여 시집의 여러 어른에게 인사를 드린다. 사흘째 되는 날에 시아버지가 새 며느리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인사를 한다. 시부모가 앉은 자리의 앞에 폐백상을 놓고 그 위에 예물을 놓고 술잔을 올린다. 그런 다음 시부모에게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조부모에게 절한다. 백숙모와 고모에게까지 절하고 나머지 근친과는 맞절한다. 올리는 안주로는 시부와 조부에게는 고기, 시모와 시조모에게는 밤과 엿을 올린다. 밤은 까느라고 정신없으라는 뜻이며, 엿은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황해도 지방에서는 신행으로 온 신부는 큰상을 받고 곧 현구고례를 한다. 시부모께는 사배, 시조부모께는 이배, 근친(백숙부모, 삼촌지간)에게는 단배, 형제들과는 맞절한다. 이때의 폐백은 엿, 대추, 밤, 오과五果를 놓고 술과 찬을 올리는데, 시모는 엿을 쓰다듬으며 '모두 입 다물라'고 하고, 신부는 가져온 옷과 버선을 내어 놓는다.

북부지방에서는 먼저 신랑집에 이른 신부가 방에 들어가면 요기할 수 있는 상을 받게 한 후에 다시 큰상을 받게 한다. 저녁이 되면 현구고례를 한다. 그 순서는 우선 부모에게 재배하고, 조부모에게 단배한다. 아제와 삼촌에게 단배한 후에 숙모뻘에게 단배하고, 형제들과는 맞절한다. 이때의 폐백은 황해도와 동일하다. 3일 후에 부엌에 들어가 찬을 만들어 뫼(진뫼=밥)와 같이 사당에 고한다. 옛날에는 석 달 안에 사당에 고했다.

전북 지방에서는 신랑집 대청에 자리를 마련하여 문 앞에 병풍을 치고, 시부는 동쪽, 시모는 서쪽에 앉는다. 그리고 그 앞에 폐백상을 놓는다. 폐백상 앞에는 주안상 두 개를 놓아 시부 앞 주안상에는 절육切肉이나 포를 올리고, 시모 앞 주안상에는 엿과 유과를 놓는다. 그리고 양쪽으로 친족들이 앉는다. 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먼저 부모에게 재배한 다음 신부가 시부모[舅姑]께 사배하고, 주酒를 드린다. 신부가 먼저 동쪽 시부에게 재배하고 올라가서 지폐를 드리면 시부는 이를 어루만진다. 신부는 다시 내려가서 재배한다. 시부모께 폐백이 끝나면 신랑 집안의 친족들에게 서열대로 절한다. 고하를 따라 답례한다. 그래서 상견례相見禮라고 한다. 사당이 있는 가정에서는 시부모의 인도를 따라 사당에 참배하고 시조부모가 있을 때에는 시부모의 인도를 따라 시조부모에게 예를 올린다.

특징 및 의의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예의의 가치 기준은 바로 효孝와 경敬의 자세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현구고례를 행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폐백을 준비하지만 과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현고구례는 시댁의 돌아가신 조상께 사당폐백을 올리므로 조상과 부모를 섬기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나타내는 혼례의 중요한 의식절차로 여겨졌다. 구고향지를 마치면 시어머니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고, 주인의 계단인 동

쪽 계단으로 신부를 내려가게 함으로써 대代를 전하였음을 상징한다.

참고문헌 嘉禮酌儀, 廣禮覽, 省齋集, 與猶堂全書, 增補四禮便覽, 조선조 혼인의례 중 현구고례에 관한 연구(이길표·주영애, 생활문화연구8,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94), 조선 후기 의례서에 나타나 혼례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길표·최배영, 가정관리학회지48-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0).

필자 이길표(李吉杓)



평생도 | 국립중앙박물관

혈식군자
血食君子

정의 갓 잡아 피 흘리는 날것의 육류와 신선한 어물을 제수祭需로 받는 선현先賢를 높여 부르는 말.

역사 『예기禮記』「교특생郊特牲」 제11에서는 "천자의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대향大饗에는 날고기를 올리고, 삼헌제三獻祭에는 데친 고기를 올린다."라고 날것의 제육祭肉 사용을 설명했다. 피 흘리는 희생犧牲 제물을 제수로 받는 성인과 선현의 제사는 먼저 문묘文廟의 석전에서 비롯되어 서원의 향사로 이어지고, 다시 불천위제不遷位祭와 시향제時享祭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문묘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성인과 선현 및 우리 18현 등 다수를 배향한다. 또 서원과 사우에서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학자, 명망 있는 인물을 주로 배향한다. 불천위는 대부분 문묘 또는 서원書院과 사우祠宇에 배향된 인물이지만, 명문 씨족의 시조나 현조도 포함한다. 문묘에 배향된 중국의 성인과 선현뿐 아니라, 고려와 조선의 18현도 공자가 말한 '군자'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후대에는 서원과 사우에 배향된 인물과 각 씨족의 불천위 현조도 군자로 칭송하게 되었다.

내용 "어느 집에 혈식군자血食君子가 몇이다."라는 말에서 '혈식군자'란 향사와 불천위제의 대상자를 지칭한다. 그런데 서원에서 배향자의 기일忌日에 제수祭需를 보조하는 사례를 보면, 향촌 사림의 공론에 따라 발의하고 주도하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배향자의 집안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혈식군자를 불천위제로 모시는 집이라야 명망 있는 가문이라 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집은 종가라 하지 않을 정도였다.

'혈식군자'는 서원 향사에서 희생 제물을 흠향하는 명현 또는 현인을 칭송하는 표현이다. '혈식'은 국가 주도의 석전과 공식적 추대를 받는 서원 향사의 주요 제물인 희생을 미화한 용어인데, 여기에서 '희생'이란 배향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피 흘리는 생식을 말한다. 따라서 '혈식군자'는 선현이나 현조 같은 배향자가 갓 잡아 피 흘리는 날것 제물의 냄새와 향기를 흠향한다고

믿는 은유적 표현이다.

여러 서원은 수많은 유학자를 배향하고, 불천위란 제도를 통해 명망 있고 뛰어난 명현을 추숭追崇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서원 배향자는 불천위 또는 불천위와 연고가 있는 인물이었다. 이는 혈연집단이라는 제사조직의 성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영구히 추앙받는 불천위의 기제사는 일반 기제사의 제물에 향사의 희생을 받아들임으로써, 혈식을 제물로 드리는 형태로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

즉, 불천위제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서식하는 '새·짐승·생선[羽毛鱗]' 따위의 생물生物을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중요한 '희생'의 제물로서 받아들였다. 생물 제물로는 날고기뿐 아니라 다양한 어물도 올린다. 진찬進饌의 제물로 생간 등 생식을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 각 불천위제사에서 '혈식'을 중시하는 것을 볼 때, '혈식군자'는 선현과 명현의 군자다움을 통칭하는 상징적 언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희생에 화식을 가하는 제물은 각 서원의 향사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원의 향사에는 시향제와 불천위제사의 생식 제물 진설과 비슷하게 '새·짐승·생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혈식군자에 해당하는 조선의 성현 또는 군자는, 인간 덕성과 사물 이치의 조화를 지향하는 문화를 형성하였고, 자연의 세계와 일치하는 삶의 수양을 추구하였다. 사화와 당쟁, 변란과 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면서도 중국의 의례음식을 조선 고유의 산물로 대체하여 조선의 음식문화로 바꾸는 의례방식을 선택하였다. 제사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 조상은 제물을 받는 대상을 지칭하는 혈식군자라는 문화코드로 날것의 희생 제물을 상징화했다. 조선의 유학은 실제 의례에서 일반인도 성인 즉 군자가 될 수 있는 불천위라는 영웅을 탄생시켰고, 그 영웅은 제사문화에서 의례음식의 독특함을 상징하는 혈식군자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문헌 안동의 서원 향사(안동민속박물관, 2001), 안동의 제사(안동민속박물관, 2001), 조선시대 서원의 군자와 제수(김영순, 조선시대 제례와 목제구, 단호문화연구9, 용인대학교박물관, 2005),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권삼문·김영순, 민속원, 2003).

필자 김영순(金永順)

호상
護喪

정의 부모를 잃은 상주가 슬픔과 혼란에 빠져 예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례喪禮와 관련된 일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사람.

역사 삼례서三禮書에는 호상護喪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상相 또는 상례喪禮로서 의례의 집행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상 또는 상례는 관례冠禮와 혼례婚禮 그리고 제례祭禮를 포함한 모든 의식에 필요하지만 상례喪禮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예기禮記』「단궁檀弓」에 "두교杜橋의 어머니 상喪에, 빈궁殯宮에 예의 시행을 돕는 사람[相]이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두교가 예에 거칠고 소략하다고 평가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공영달孔穎達은 "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고 혼란에 빠져 예절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일과 의식은 모두 다른 사람이 돕고 인도해야 한다. 두교는 어머니가 죽었는데, 빈궁에 돕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가 예에 대하여 거칠고 소략했다'고 평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주자朱子 또한 "한창 마음이 슬퍼서 정신이 혼미한 즈음에 무슨 마음과 정이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고례와 같이 번거롭고 자세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옛날에 상례相禮를 둔 것은 효자를 인도하여 예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효자에게 하나하나를 다 고례 의거하여 직접 행하게 한다면, 반드시 애척哀戚하는 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다. 『가례』에 고례古禮의 상례相禮에 해당하는 호상護喪을 세우도록 규정한 것은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를 따른 것이다.

명대 구준邱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는 호상과 더불어 상례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상喪에 반드시 상相을 둔 지가 오래되었다. 하물며 예가 폐해진 후 일반사람들의 자제가 모두 반드시 예를 아는 것은 아니므로, 마땅히 상의하여 가까운 친구나 마을의 이웃 중에 평소 예를 익힌 한사람을 상례로 삼아, 상에 관한 일을 모두 그의 말을 듣고 처분하되 호상이 그를 돕게 한다."라고


분정 내역 논의


집사 분정 기 작성


집사 분정 내역 통지


분정기 게시

호상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하였다. 이는 '자제들 가운에 예를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호상으로 세우도록 한 『가례』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호상과 상례를 중복해서 두는 것에 대해 신의경申義慶은 『상례통재喪禮通載』에서 "『문공가례文公家禮』에서 말한 호상이 바로 고인들이 말한 상례이다. 구씨의 『의절』에는 이미 호상을 두고도 다시 상례를 두었으니 잘못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조선 학자들의 예서禮書에는 『가례』에 따라 호상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가례의절』의 의견을 참고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내용 부모가 사망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상주는 상례를 관과 수의壽衣, 상복喪服 등을 준비하는 한편, 묘 터를 잡고 산역山役도 준비해야 한다. 빈소를 지키며 조객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호상을 세우는 것이다. 예서에 호상은 자제 가운데 예를 알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상례에 관한 일은 모두 그에게 물어보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호상은 치관治棺할 때 목수에게 나무를 골라 관을 짜도록 지시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부고를 보내며, 초종初終의 단계에서 주인이 아직 성복成服하지 않아 조객을 맞이하지 못하면 주인을 대신하여 조문을 받고 답배答拜를 하기도 한다. 호상과 함께 사서司書와 사화司貨를 두는데, 전자는 부고를 쓰거나 상례에 사용되는 물건 및 돈의 출입 그리고 친척과 조문객들의 부의의 수량을 기록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상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자제나 집안의 일꾼이 맡았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가례』에 따르면, 호상은 자제 가운데 예를 알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지만, 관행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상주의 집안 사정 및 인간관계를 잘 아는 친척이나 친우 가운데서 상례 절차를 잘 알고 또 절차에 따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셨다.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부모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안 어른이나 마을 사람 중 예를 잘 아는 사람이 호상을 맡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대부분 집안 어른이 호상을 맡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참고문헌 家禮儀節, 喪禮通載, 禮記, 朱子語類,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장동우(張東宇)

호석
護石

정의 묘 봉분을 보호하고자 설치한 석물.

역사 호석은 능묘의 봉분이 도괴倒壞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석물이다. 중국의 황릉에서는 지하궁전을 마련한 관계로 봉분이 따로 없어 호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묘에서는 호석의 역할을 하던 구조물이 나타난다. 우리와 달리 봉분의 사면뿐만 아니라 위쪽도 벽돌이나 석재石材로 모두 덮어 잔디가 나지 않게 한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광개토대왕릉과 장군총(추정 장수왕릉)에서 장대석長大石으로 기대어 세운 호석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큰 판석板石 여러 장을 둘러 봉분을 보호하고 신장상神將像의 십이지十二支를 조각하여 기능성과 장식성을 함께 갖추었다. 이 같은 방식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이를 계승하여 왕릉에 호석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전 시대에 비해 양식은 간략화되고 기능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공민왕릉에 이르러 호석의 기능을 발전시킨 12각의 병풍석을 두르고, 복련覆蓮과 앙련仰蓮 등의 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문관상文官像의 십이지를 조각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진주의 평거동 고려고분군(사적 제164호)에는 방형의 호석이 설치되어 있어 고려시대 묘 호석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왕릉의 호석은 공민왕릉의 병풍석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세조의 유언에 따라 광릉光陵부터는 병풍석을 폐지하고 난간석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후대의 일부 왕릉에서 병풍석을 계속 설치하였고 그 전통은 홍유릉洪裕陵까지 이어졌다. 사대부 묘의 호석은 기본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권문세가들에 의해 조선 초기에는 사각형으로,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원형으로 설치되었다.

내용 조선 초기의 사각형 호석은 단순한 형태로, 기반을 튼튼히 해주는 지대석地臺石이나 봉분에 꽂아 토사의 붕괴를 막아주는 인석引石은 설치하지 않았다. 호석의 석축은 1단에서 3단까지 쌓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1단이었다. 호석의 석재는 무너지지 않게 서로 교차하며 쌓았고, 사방에는 'ㄱ'자 형태로 돌을 다듬어 서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호석의 앞면에 방위를 나타내는 글자를 음각陰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각 호석은 16세기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15세기에 조성된 광평대군廣平大君(1425~1444) 묘(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8호)는 봉분 앞면에만 2단의 장대석으로 호석을 갖추었는데, 그 양 끝을 꺾어 봉분 앞쪽에 사다리꼴의 공간을 마련한 특이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호석의 양 끝 소맷돌 부분에 태극문을 조각하여 더욱 이채롭다. 이러한 호석 구조는 봉분의 붕괴를 방지함과 동시에, 만약 붕괴하더라도 토사가 묘표墓表와 상석床石을 덮쳐서 매몰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16세기부터는 원형 호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


노봉 민정중 묘와 말각형 호석


경암 신완 묘와 원형 호석

호석 | 2000 | 이민식

(1630~1687)과 좌의정 민정중閔鼎重(1628~1692) 묘의 사각형 호석처럼 네 모서리의 각이 줄어든 말각抹角형태도 나타나 주목된다. 이 시기는 왕릉이나 묘의 화려한 치장을 지양하고 박장薄葬을 유도하던 때였다. 그래서 왕실은 백성의 고충을 줄이고자 비교적 검소하게 왕릉 석물을 마련하였으나, 오히려 사대부의 일부 묘에서 과도하게 호석을 설치하고 신도비神道碑·묘갈墓碣·묘표 등을 지나치게 많이 세워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문의 권위와 위세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호석은 묘 봉분의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석물로 우리 선조들의 조상에 대한 효와 예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경기 묘제 석조 미술 상·하(경기도박물관, 2007~2008), 서울 경기 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김우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여주의 능묘와 석물(여주군향토사료관, 2005), 용인의 분묘 문화(용인문화원, 2001).

필자 이민식(李敏植)

호피 虎皮

정의 혼구婚具의 하나로, 신행갈 때 신부가 타는 가마에 얹는 호랑이의 모피.

내용 신행 시의 신부가마는 무명 살바로 앞문을 제외한 3면을 X자형으로 엮어 두르거나 호피를 뚜껑에 덮어 표시한다. 이때의 호피는 호랑이의 등가물等價物로서 위용威容·벽사진경辟邪進慶·식재초복息災招福의 의미가 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백수지왕百獸之王, 산중군자山中君子, 산신령 등으로 불리면서 반속班俗과 민속民俗에 관계없이 복식, 장신구, 가구, 석물, 병기, 부적, 자수, 회화 등에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모두 위와 같은 상징성을 띤다. 이러한 상징성은 호랑이의 생태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호랑이의 맹수성이 오히려 보호, 호신護身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켜 흉맹凶猛·위용과 보호·호신이라는 양극단兩極端의 개념이 한데 어우러진 양가적兩價的 상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양가적 상징은 뱀도 마찬가지이다. 뱀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겁나고 가죽은 탐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호피는 예로부터 귀한 물건이었다. 중국으로 보내는 조공품의 한 가지였고 일본과 교의를 맺을 때 보내는 예물의 한 가지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신하에게 내리는 값진 하사품의 하나였다.

왕실이나 귀인의 자리에는 호피를 깔개로 사용하였다. 문인이나 학자 같은 귀인의 좌석을 '고비皐比'라고 하는데, 원래 고비는 호피를 뜻한다. 편지 겉봉의 상대편 이름 아래에 호피하虎皮下라고도 썼는데 이런 말이 나온 까닭은 문인과 학자 같은 귀인의 자리 혹은 수레에 호피자리[虎皮茵]를 깔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혼례식 같은 의식에 호랑이 가죽 무늬를 넣어 만든 호담자虎毯子를 깔았다. 한편, 중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소명태자의 납징納徵 물목으로 옥벽玉璧과 호피를 갖추도록 주청한 기록이 있다. 이처럼 호피는 문무 고관이나 귀인의 표징으로서, 실용성과 함께 그 고유의 상징성, 나아가 주술성으로 인해 귀품貴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우리 풍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호피의 전통은 현재도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포호捕虎정책이나 일제강점기의 해수구제害獸驅除정책, 그리고 6·25 전쟁 이후의 급속한 개발로 호랑이가 거의 멸종되어 국내의 호피를 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 호피무늬를 넣은 무릎담요, 재킷, 치마, 신발, 모자, 가방 등의 다양한 상품이 이러한 상징성을 띠면서 거래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옛날에는 관원들이 가마를 타고 행차할 때 등 뒤에 호피를 드리워 그 위용을 드러냄과 동시에 안녕을 빌고자 하였다. 신행의 행렬 자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관원의 행차 모습과 비슷하지만 신부가마 뚜껑에 호피를 덮는 것은 그 성격이 귀인의 행차 시 가마에 호피를 깔거나 드리워 위용을 드러내고 무사 안녕을 비는 것과 흡사하다. 옛날에는 복식은 물론 품석品席이라 하여 관원이 깔고 앉는 방석도 품계에 따라 표피豹皮·호피·구피狗皮·양피羊皮 등으로 종별이 달랐는데 신부가마에는 당상관이나 되어야 깔고 앉거나 드리우는 호



호랑이 무늬 가마덮개 | 1920 | 국립민속박물관

피를 뚜껑에 덮었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반상의 구별이 엄격하던 시대였지만 혼례일만큼은 평민일지라도 누구나 지체 높은 귀인의 대접을 받았다. 심지어 신랑이 웬만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못 하게 할 정도였다. 이러한 평민들의 혼속婚俗은 치자가 갖추어야 할 민본民本·애민사상에서 기인한 듯하다. 풍속은 위와 아래가 함께 만들어 낸 산물이다. 군君이 위에서 교화하는 것을 '풍風'이라 하고[君上所化曰風], 민民이 아래에서 익히는 것을 '속俗'이라 하였기[民下所習曰俗]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학도감(이훈종, 일조각, 1970), 기러기 아범의 두루마기-한국의 통과의례와 상징(강재철,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일상생활과 근대결혼제도-신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민속원, 2010), 일상생활과 근대결혼제도-잡지(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민속원, 2010),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7), 한국의 혼인문화(김인옥, 구상, 2011), 호랑이(이어령, 생각의 나무, 2009).

필자 강재철(姜在哲)

혼담
婚談

정의 혼인과 관련하여 신랑 집과 신부 집에서 오가는 이야기.

내용 혼담婚談이란 남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혼인당사자 집에서 혼인대상인 신랑이나 신부, 그리고 그들의 집안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 서로 오가는 말이나 이야기를 지칭하며 '연담緣談'이라고도 한다. 혼담은 혼인할 만한 적당한 대상자를 찾아서 혼인 의사를 알아본 다음, 청혼請婚하고 허혼許婚하는 과정까지 이어진다.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혼인에 대한 상대의 의중과 조건들을 알아보거나, 혼인당사자 혹은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의혼議婚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개 혼기에 이른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일가친척이나 마을 사람, 방물장수 등을 통해 혼담을 나눈다. 이를 통해 양가에서는 동성동본의 여부와 가격家格의 높낮이 등을 알고서 적합한 혼인조건인지를 파악한다. 그 밖에 혼인할 집안에서는 상대 집안에 전해오는 질병 유무, 살림살이나 사회적 지위, 사람됨, 가업, 친척관계 등을 알아보고 자녀가 혼인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생각한다. 즉, 어느 마을의 처녀와 총각이 혼인할 대상으로 알려지면 중매인, 친인척, 마을 사람들이 혼인할 당사자와 그 집안의 내력에 관해 이야기하게 된다. 먼저, 당사자들의 나이·직업·성격·인물 등을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을 통해 집안의 좋고 나쁜 점들을 파악한다. 예컨대, 혼인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로서 '남자가 바람기가 있다더라', '여자가 말이 많다더라', '몸이 약하다더라'는 등의 이야기가 돌면 혼인이 성사되기 어려웠다. 반면에 '궁합이 좋다더라', '집안의 배경이 좋다', '잘 생겼다'라는 말이 오갈 때에는 양가에서 어느 정도 맞선을 볼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혼담이 오갈 때 당사자들은 몸가짐을 조심하였다.

혼담은 마을 내, 마을과 마을, 지역사회, 정기시장에서 오고 간다. 전통사회에서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친구를 만들고 술을 마시면서 "어디에 좋은 총각이 있다, 아는 사람이 있거든 좋은 처녀를 중매해라, 혼사를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하였다. 두 집안에 혼담이 오가면서 혼인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이들을 '중매인中媒人', '중매쟁이', '매자媒子'라 한다. 흔히들 남자 중매쟁이를 '중신아비', '중인애비', '중매재비'라고 부르며 여자를 '중신어미', '중신할미' 또는 '매파媒婆'라고 부른다.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

도 종족宗族이나 씨족氏族으로 구성된 마을에서는 연비연사聯臂連査라 하여 사람을 통해 서로 알고 혼인으로 사돈이 된 이들이 혼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혼인관계를 맺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고 각 마을의 사정을 잘 알며 남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혼인당사자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혹 순회상인 같은 이들이 혼사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상대 집안의 경제 사정, 집안 내력, 병 등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당사자 집안에서는 친척 중에서 신임할 만한 사람을 보내 상대 집안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때로는 시어머니나 시고모가 될 분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신붓감을 만나 보기도 하고, '간선看選'이라 해서 지나가는 사람인 체하면서 신붓감의 생김새와 자태를 엿보는 수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과객인 척하면서 신붓감의 집에 들어가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하면서 신부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대개 안목 있는 시숙媤叔이나 시형媤兄 격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친어머니나 여자들은 가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혼담이 오가는 가운데 혼인당사자들이 선을 보거나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드물었으며, 일단 한 가문에 혼담이 오간다는 소문이 나면 그 집으로는 혼담을 넣지 않는다.

무엇보다 혼담을 넣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격家格, 즉 양쪽 집안의 수준이다. 양반 집안에서는 가풍家風, 당색黨色, 사는 형편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영남지역의 경우 남인南人이 대부분이어서 노론老論 집안과의 혼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동성촌락(동족촌락)의 경우, 한 마을 내에서 혼사가 이루어지는 예는 드물었다. 이러한 마을에서 혼인하는 이들은 타성他姓인데 종족집단宗族集團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더 낮았지만, 서로 혼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상도의 한 지역에는 "한 마을의 처녀, 총각이 혼인하려면 3대가 적선積善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마을내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다.

혼사에 대한 말이 오간 다음 각 집안의 어른들이 어느 정도 혼인당사자나 그 집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둘의 궁합宮合을 보고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중매인을 보내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알린다. 그 후 청혼請婚과 허혼許婚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때 신랑 집에서는 청혼서請婚書를 보내고, 신부 집에서는 허혼서許婚書로 답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혼사가 이루어지면 중매인에게 수고에 대한 답례로 잔칫날 약주를 대접하거나 부유한 신랑 집일 경우에는 신발 한 켤레 혹은 옷을 한 벌 해주었다.

특징 및 의의 혼담은 지역사회에서 혼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상대 집안의 지위나 당사자들의 혼인조건을 파악하는 언설이라 할 수 있다.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각 집안은 혼인조건 즉 가격·가풍·시대·사는 형편·당사자의 됨됨이·건강 등을 파악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경제교환과 사회관계-동성촌락과 각성촌락의 비교(박성용, 영남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서류부가혼속을 중심으로(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한국인의 일생의례-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필자 박성용(朴晟慵)

혼례
婚禮

정의 성인이 된 남녀가 각기 출생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사회·문화적 상징 단계를 통과한 후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모든 의례와 절차.

역사 혼례는 상고시대 제례에서 기원하였다. 즉, 본래 제례 때 먹고 마시는 풍속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때는 기장밥을 짓고 고기도 굽고 우물도 만들어서 물을 떠 마셨다. 또한, 흙으로 북을 빚고 북채도 만들어 천지신과 조상신을 공경하는 의례를 행하였는데 이러한 풍속이 혼례 풍속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제사 중심의 예 관념이 부여되면서 중요한 사회원리로 정착된다. 예는 사치스러움보다 검소함의 실천 태도이며 고래의 예서를 수용하여 생활의 전범으로 실천하였던 것이 한반도에 혼례가 전승되었던 당시의 맥락이었다. 『삼국지三國志』「백제전百濟傳」에 "혼인의 예는 중화의 혼속과 같다婚娶之禮略同華俗."라고 한 것에서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례는 유교적 사유에 의하면, 상호보완과 견제 및 천지상응의 조화를 이룬다. 즉, 음양의 표상은 상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상대방을 기다리는 대대對待구조이자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다.

태괘泰卦란 아래로 내려오려는 땅 기운이 위에 있고, 위로 올라가려는 하늘 기운이 아래에 있는 괘로, 하늘·땅이 교합하여 만물이 조화롭게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태괘泰卦가 형통하여 천지가 있고 만물이 있으며 만물이 있어 부부가 있다. 또한, 부부가 있어야 부자가 있고 군신의 관계도 성립된다. 즉, 가례家禮의 근본이 혼례, 곧 부부윤리라는 것이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가족윤리 더 나아가 사회윤리까지 순기능하는 이치이다. 천지음양, 외적 대립과 내적 조화의 융합은 우주원리의 기본이며 개별 존재의 규범이 된다. 우주 조화와 삼라만상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 존재의 이해와 일치된다.

한국의 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태학太學 교과목에 『예기禮記』가 있었고 백제가 『논어論語』·『천자문千字文』 등을 일본에 전해 준 기록이 있다. 또한, 화랑들의 예禮 공부를 맹세한 신라 금석문(「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도 전한다. 그리고 고려 말 안향安珦이 원元에서 주자의 저술을 가져와 가정의례를 시작하였고, 조선 세종대(1418~1450)에는 예 교육 실천을 강행했다. 이상사회의 구현을 지향했던 신진사류新進士類는 예 이념의 실천을 주도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예 이념을 생활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편찬하여 백성 교화와 유교윤리 실천을 위해 유포하였다. 이로써 가정의례의 신분별 격식을 갖추게 된다. 유교적 생활가치가 가정·친족·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혼례의 형식도 17세기에 갖춰지게 되었다. 『예기禮記』와 『주자가례朱子家禮』는 학문계보와 친연관계에 따라 예학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주자가례』 등 선진시대先秦時代로부터 전승되어 온 예禮를 일괄하여 '고례古禮', '고제古制'라 하는데, 이러한 예서禮書의 주석·편람·문답사례 편찬 과정은 조선조 가정의례에서의 유교문화에 대한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 혼례는 부부·가족·윤리·풍습·법률관계·인류관계의 행동규범으로 작용한다. "부부사이에 인간이 태어나 만복의 근원이 된다二姓之合, 萬福之源."라는 것은 『동몽선습童蒙先習』의 혼례 지침이고, "부부의 도리는 인생의 근본을 두터이 함이라. 부부 사이가 박하여지면 부모 섬



전안후는 모양 | 기산풍속도(2002년 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시집가셔잔 붓는 모양 | 기산풍속도(2002년 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김과 형제, 친척, 이웃을 대하기 어려워 임금을 섬기고 신하를 거느림이 힘들게 된다."라는 것은 퇴계 이황李滉(1501~1570)의 가르침이다.

혼례는 현대사회의 전환점인 6·25 한국전쟁이라는 사회·역사·문화에 변화, 적응하였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 곧 1950년 전후 가족들이 이룬 혼인집단 코호트(cohort)들은 '의례혼주의' 전통과 갈등을 겪었다. 혼례는 곧 '식 올린다', '잔치한다'는 관념과 관행, 즉 혼례식 잔치 중심의 '예식혼문화'이며 '의례혼주의'이다. 혼례를 행하기 어려웠던 당시, 가족·친지들은 기회를 보아 잔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 걸었다. 그들은 북향하여 정화수를 떠놓고 부부의 연을 천지간에 고함이 곧 혼인 성립 의례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 1970년대에 잔치 없이 혼인하여 가족을 형성하였던 전후 격동기 소외집단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회·종교단체에서 주선한 합동결혼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합동결혼식은 월남가족, 피난민, 실향민 그리고 이촌향도한 도시이주민 등에게도 정체감을 회복하게 하고 물질주의와 산업화과정에 적응하게 하는 순기능을 하였다. 21세기에 이르러 외국이주민과의 국제결혼 등 혼례의 변화는 다른 문화와의 공생과 조화, 곧 신부나라혼례, 신랑나라혼례 등 이중혼례가 병존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물론 민족동란 이전에 근대사회의 전환점 있었다. 1900년 전후, 개항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사회의 '서구화' 초기 과정에서 외국의 의사와 목사들이 의료·교육·선교를 목적으로 내방하였을 때 전통혼례를 바라본, 서구문화 중심의 기록들이 있다. 그들 자신의 일생의례, 즉 서구식 결혼식 관행과 신혼여행 기록들도 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자가 귀국하여 서구·일본의 결혼식 문화인 '신식혼례'를 유포하니, 전통혼례가 곧 '구식혼례'가 되어 이들 문화가 병존하였다. '가가례'로 정립되고 전해져 온 혼례의 두 이념형인 육례혼례 또는 사례혼례의 절차는 서구혼례, 일본혼례 같은 결혼식 문화와 상호작용하였고 혼배성사, 혼례 채플, 불교식 혼례 등 종교 예식도 병행되었다. 현재도 문화재청 소속 '한국의 집'에서의 전통혼례와 지역 향교가 집전하는 전통혼례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세기 전후 세계대전과 식민시기에 한반도를 떠난 무리가 있었다. 일본에 고국을 내주고 독립운동에 나서거나 전쟁에 동원되는 남녀의 무리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가족생활의 출발인 혼례는 상징적이다. 양가가 합의하여 약식 혼례인 '조상보이현사당見祠堂' 즉, 사당 참례 후에 동네잔치가 어려운 정황에 다만 먼 길을 앞두고 기념사진은 남겼다. 주고받은 결혼 기념 증답물이 혼례 증표이다. 중국 만주지역, 러시아 사할린, 동남아시아와 남·북아메리카 등지로 이주한 동포들의 혼례에 다양한 이문화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멀리 이국땅 하와이 노역 이민자와의 '사진결혼' 등은 한국 신식·구식혼례 민속의 역사이다.

내용 전통혼례란 혼담에서부터 시작하여 근친覲親까지의 절차를 이른다. 따라서 혼인 성립의 절차는 양가의 혼담婚談으로부터 비롯된다. 사주단자四柱單子·택일擇日·혼서婚書 등이 오가고 혼물의 기본인 현훈玄纁을 폐백으로 준비한다. 안방 조상신에 예를 표하여 '예장禮狀'으로 혼서·현혼과 함께 반지·시계·만년필 등속을 예장함禮狀函에 넣는다. 예주醴酒·조율棗栗·육포 등을 폐백으로 마련한다. 혼례청은 차일로 하늘을 가리고 화문석을 깔며 모란병풍을 친다. 혼례상 위에는 송죽松竹을 세우고 촛불을 밝히는 것이 예식 공간의 기본이다. 신부는 녹의홍상綠衣紅裳에 원삼 일습一襲을 갖춰 입고 신랑은 사모관대와 흑혜를 갖춘다. 혼례에는 '육례'와 전통적인 '사례'의 관행(『사례편람』)이 병존하여 전한다. 신랑이 말을 타고 초행하며 신부는 신행길에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간다. 신랑이 예를 갖추고 집을 나서고 신부가 혼례청을 향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생의례 중 전이단계, 즉 '모처제母處制 혼례', '서류부가혼속'의 전통이다. 상객上客들이 처가에 당도하기 전에 신랑은 사처에 머문다.

'신랑하마新郎下馬'라고 홀기笏記하면, 사선紗扇으로 얼굴을 가린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 집에서 이를 맞이한다. 계례笄禮를 올린 신부는 밀랍을 눈에 발라 내리운 채 하님의 도움을 받아 '신부출新婦出'을 한다. 혼인 성립 의례의 예물을 주고받는 순서로 함을 상 위에 올려놓는 '봉치어탁상'과 천지신명에게 '전안奠雁'을 올리면서 혼인을 고하는 '전안례'가 있다. 전안은 고례 유습의 예물인 꿩을 대신하는 '목안木雁(나무기러기)'



혼례 | 이억영 | 국립민속박물관



신식혼례 | 1930 | 국립민속박물관

이다. 이후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를 하고 관대 벗김하면서 큰상을 받는다. 신부가 신행新行하여 '현구고례見舅姑禮'·'현사당見祠堂'하면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시집에 새사람이 들어가는 '시가입가媤家入家'의 공인을 받는 중요한 과정이다. 현대에는 이러한 절차가 신식 웨딩홀 공간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민속 나름의 재구조화가 되어 지속된다. 전통혼물의 상징인 청홍보에 싸인 나무기러기는, 주과포를 갖춘 폐백 예물과 함께 폐백상에 자리한다. 이때만큼은 전통혼례의 의례복을 갖추어 입은 신랑·신부가 폐백실로 들어와서 '합근례'를 한다. '현구고례'를 끝내고 합근의 잔을 주고받으면서 부부의 '합근초례合巹醮禮'를 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예식 공간의 사회화로 '폐백실'이 출현하여 '현구고례'의 폐백문화가 자리 잡은 지 반세기를 넘었다.

신부의 친정 첫 나들이인 근친례覲親禮에 술 석 잔을 주고 신랑에게 한시의 대구를 짓게 하는 등 문장 테스트를 하며 신랑을 다루는 동상례東床禮 등의 혼인 풍속이 전한다. 오늘날 예식장에서 사회자가 '신랑입장'·'신부입장'을 외치면 결혼행진곡에 맞춰 신랑·신부가 입장하는 것 등은 전통혼례에서 홀기를 낭독하면 이에 따라 식이 진행되는 것과 같고 다름을 보여준다. 요즈음의 혼례가 글로벌 지역사회화, 서구화되는 사조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친척, 인척, 친지는 물론 직연職緣을 포함한 신랑·신부의 결합을 공인·획득하는 단계는 여전히 '혼례잔치'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먼저 처가를 방문하고 그다음 시댁을 방문하는 '회가回家'의 순서도 전통적으로 그러하다.

도시민속이라 할 수 있는 혼례 뒤풀이나 신혼집들이 등은 의례의 긴장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가부장사회에서 전통혼례를 마치는 단계는 '근친'이었다. 이 또한 현대에는 처가 근처에서 살림을 차리고 친정과 근린공생을 하는 모습에서 모녀·조손관계의 순기능을 반영한다. 공동체 친분 결속의 부조품앗이 전통은 집단과 개인의 행위를 질서화하는 기능적 규범으로 지속적인 작동을 한다.

특징 및 의의 고례의 『예경禮經』·『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 등은 유교사회의 질서규범이다. 춘추시대에 질서가 쇠퇴하여 전국시대 예 규범의 격을 상실하였다. 의례절차와 예법은 그 시대 이념의 생활화와 실천의 반영이며 지배계급의 질서 규제, 곧 국가질서·가족질서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삼강三綱을 예의 중심으로 하였다. 예를 '천리의 절문, 인사의 철칙'으로 하는 주자의 실천덕목 『가례』와 『소학』을 민속사회에 유포하여 예교화하였다. 관혼상제의 실천 매뉴얼인 『사례편람』의 발간은 예교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고, 곧 한반도 재래의 혼인 풍속인 '모처부처제母處父處制'·'서류부가壻留婦家'·'남귀여가男歸女家' 등의 유구한 민속문화와 혼효混淆되는 결과를 낳았다. 혼례는 부부관계의 합법성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양가의 결속과 인척관계의 사회적 확대로 이어진다. 혼례는 곧 자녀가 사회성원으로서 적법성을 부여받는 선결조건이 되며 부모됨의 전제이다. 현대적 관례인 성인의례에 이어 혼인 당사자들이 기혼의 성인 신분을 획득하는, 재확인 과정이 혼례이다.

글로벌화·산업화·다문화사회라는 문화 환경의 상호변화 과정에서 전통혼례의 그 기반이 일부 상실되는 것이 보이지만 민속의 지속성은 유구하다. 상호 간에 민속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인식은 인간관계와 규율질서의 전통, 곧 예를 계승하는 전통문화를 돌아보게 한다. 과거의 지혜는 미래사회와 역사문화에 적응하는 혼례 민속으로 거듭나며 나름대로 그 사회에 순기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경국대전에 보이는 혼인권장 예교화정책과 가족생활문화 흐름(박혜인, 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논문집9, 국제고려학회, 2007), 혼례전안례고(박혜인, 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논문집6, 국제고려학회, 2005),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Westermarck, E., N.Y.: Allerton Books Co. 1922), Les Rites de Passage(Van Gennep, Emile Nourry, 1909; 通過儀禮. 弘文堂, 1977).

필자 박혜인(朴惠仁)

혼례복
婚禮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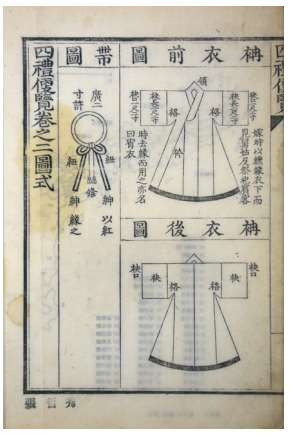
정의 혼례 시 신랑과 신부가 입는 예복.

역사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복은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고 신부는 원삼圓衫이나 활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개항과 함께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신식혼례의 혼례복으로 신랑은 서양식 예복을 입고 신부는 흰색 한복을 입고 면사포를 쓰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는 신식혼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세기 후반부터 웨딩드레스를 입는 신부가 증가하여 1970~1980년대 이후로는 신랑·신부 모두 서구식 예복을 입고 혼례를 치르고, 전통혼례복은 폐백을 드릴 때만 착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내용 혼례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 전기에도 어떠한 혼례복을 입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혼례에서만큼은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는 옷차림도 허용되었다. 즉, 벼슬이 없는 일반 백성들도 혼례에는 공주와 부마駙馬의 예복을 혼례에 입는 것이 허락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혼례복은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활옷에 화관花冠을 쓰거나 원삼에 족두리를 착용하는 것이다. 사모관대란 조선시대 관리의 상복常服 차림을 말한다. 즉 머리에는 사모紗帽를 쓰고 단령團領을 입으며 목화木靴를 신는데, 관리의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와 대帶를 찼다. 그러나 신랑은 직품職品의 높고 낮음이나 벼슬의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흉배와 각대角帶를 찼다. 대례청大禮廳에 들어갈 때 신랑은 차선遮扇을 양손으로 들어 얼굴을 가렸다. 차선은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네모난 부채이다. 신부의 옷차림을 흔히 녹의홍상綠衣紅裳이라고 하듯, 신부는 다홍치마에 분홍 속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녹색 저고리, 혹은 노란 저고리를 착용한 다음 원삼이나 활옷 같은 혼례예복을 입는다. 다홍치마를 입는 것을 일정하나 노란 저고리와 녹색 저고리, 원삼과 활옷, 족두리와 화관 중 무엇을 착용하는가는 집안마다 달랐다.

서민층에서는 혼례예복을 한 가지만 갖추기도 어려웠던 반면, 상류층에서는 혼례 사치가 심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예복을 두 종류 전부 준비하여 하나는 친영親迎에, 다른 하나는 현구고見舅姑에 입기도 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따르면 친영에는 염의褟衣, 현구고례에는 소의宵衣를 입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삼과 활옷이 일반적인 신부의 혼례복이었다. 염의와 소의는 혼례 사치가 심한 상황에서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당시 유행하던 홍장삼紅長衫 대신 제안한 예복이지만 실용화되지는 못한 것으



여자혼례복의 염의와 띠 | 사례편람
국립민속박물관



혼인 | 1910
국립민속박물관

로 보인다. 또한 『현토주해사례편람懸吐註解四禮便覽』에서는 대례와 현구고례를 치를 때 활옷[袿衣]을 입고 현구고례가 끝난 후에는 녹의綠衣(속칭 당의)를 입는다고 하였으므로, 대례복과 현구고례복이 같았고 현구고례가 끝난 이후에 다른 예복으로 갈아입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입든 혼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칠보단장七寶丹粧이다. 혼인을 앞둔 신부는 성적成赤이라 하여 피부의 솜털을 제거하고 백분白粉을 바른 후 입술연지를 바르고 양 뺨과 이마에 연지와 곤지를 찍는다. 머리치장으로는 가체加髢를 하거나 쪽머리를 한 후 도금 용잠龍簪 또는 매죽잠梅竹簪을 꽂았다. 비녀의 양쪽으로 앞댕기를 드리우고 머리 위에는 족두리 또는 화관花冠을 얹은 후 뒤로는 큰댕기를 길게 드리워 장식하였다. 격식을 갖추어 대례에는 낭자쌍계娘子雙髻를 하고 첫날밤을 지낸 후 쪽을 찌기도 하였다. 신부는 밀랍蜜蠟에 참기름을 섞어서 만든 밀기름을 속눈썹에 발라 눈을 크게 뜨지 못하도록 했다.

혼례복은 신랑 집에서 마련해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신부 집의 것을 사용하거나 마을에서 보관하는 것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신부의 혼례복으로 가장 대표적인 옷은 원삼, 그중에서도 공주의 예복에 해당하는 녹색 원삼이다. 무릎을 덮는 긴 길이에 앞길은 짧고 뒷길은 길며, 양 옆선은 무가 없이 트여 있다. 매우 넓은 소매 끝에는 색동과 백색 한삼汗衫이 달려 있다. 앞여밈은 섶이 없이 서로 맞대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은銀 칠보로 장식한 원삼 단추나 작은 끈 고름을 달아서 여며 입었다. 궁중원삼이 옷 크기가 크고 직금織金이나 금박金箔을 장식하여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었던 것과 달리 민간에서 입던 혼례용 원삼은 크기와 재료가 소박하지만 소매에 여러 색의 색동을 달아 화려하게 꾸몄다. 만드는 방식이 지역 및 집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앞길과 뒷길의 길이가 같은 것도 있고, 깃의 색을 길과 다르게 홍색으로 한 것도 있다. 혼례 시 원삼을 입을 때는 대개 족두리를 썼다.

또 다른 혼례복인 활옷은 다홍색 바탕에 각종 자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구조는 원삼과 비슷하여 앞길이보다 뒷길이가 길며, 무가 없이 옆선이 트이고 앞은 마주 여미게 되어 있다. 자수무늬로는 장수長壽와 길상吉祥을 의미하는 물결·바위·불로초·구봉九鳳·호랑나비·연꽃·모란꽃·동자童子 이외에 이성지합二姓之合·만복지원萬福之源·수여산壽如山·부여해富如海 같은 문자文字무늬가 애용되었다. 또한 앞면보다 뒷면에 더 많은 수를 놓았다.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활옷은 조선시대 공주·옹주 혹은 대군의 부인의 예복이었던 홍장삼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문헌에서 발견되는 '화의華衣', '화의花衣', '활의豁衣' 등의 용어는 모두 활옷을 한자화하여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크다는 의미의 '활'과 '옷'이 결합하여 큰 옷을 의미하는 '활옷'이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원삼과 활옷 모두 수구袖口에는 흰색의 한삼을 달았으며, 홍색의 대대大帶를 둘렀다.

이 밖에도 지방 혹은 가풍에 따라 다양한 혼례복이 있었다. 평양지방에서는 혼례식에는 원삼을 입지만 대례를 마친 후 잔치에서는 저고리와 치마 차림에 털배자를 입고 손에 백색 한삼을 끼며 머리에 화관과 고이댕기를 착용하였다. 개성의 원삼도 앞뒷길과 수구에 붉은



신부 활옷 | 국립민속박물관



도투락댕기 | 국립민속박물관



족두리 | 국립민속박물관

색 장식선을 겉에 두른 것이 다르며, 큰 댕기가 아닌 진주댕기를 드린다. 족두리와 화관도 다른 지방의 것과 차이가 있다. 제주에서는 장옷을 혼례복으로 착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개항과 함께 서구식 혼례식이 대도시의 지식인층과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신랑은 연미복燕尾服 같은 서구식 예복을 입고 신부는 흰색 치마저고리에 베일을 착용하는 절충식이었지만 이를 신식혼례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궁핍한 경제상황으로 제대로 된 예복을 갖추기 힘들었으므로 치마저고리에 한삼용으로 수건만을 손에 두르고 예를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제 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1960년대 대도시에서는 전통 혼례가 줄어들고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르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신랑은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양복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전통 혼례나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는 절충식이 지속되었다. 20세기 중반 약혼 예복으로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혼례에 전통복식을 입는 것이 더욱 줄어들어 신부의 약혼복 용도의 분홍색 한복과 신랑·신부의 관례벗김(관대벗김) 용도의 한복을 준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70년대 이후 예식장에서 폐백실을 갖추고 폐백용 예복을 대여하면서, 신랑은 폐백드릴 때 사모관대를 입는 것 외에는 혼례의 전 과정에서 한복을 거의 입지 않았다. 심지어는 양복 위에 사모와 단령을 입고 폐백을 드리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 또한 현구고례 때 신랑·신부가 혼례예복을 갖추어 입어도 신랑·신부의 취향이나 안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마련한 것을 착용하다 보니 지방이나 가풍에 따른 차이는 사라졌다. 예식장에서 마련한 혼례복은 사극 의상의 화려한 색상과 장식을 모방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의상들은 낮은 가격대임에도 화려하게 보여야만 했으므로 강렬한 원색배색과 조악한 기계자수 문양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혼례예복의 원형과는 한참이나 멀어진 것들이었다.

20세기 말부터는 약혼식을 생략하고, 사진 촬영과 폐백을 위해서 입는 혼례복도 대여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여용 예복은 이전보다 디자인이 매우 다양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 의상을 모방한 화려한 예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양반가 예복보다는 드라마를 통해 선보인 왕비의 대례복이나 궁중예복이 선호되고 있다.

신랑 예복의 서구화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모닝코트, 연미복 같은 서양식 예복을 혼례예복으로서 받아들였다. 이후 서양식 혼례가 일반화되면서 혼례예복은 일반 양복의 형태로 바뀌어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시 턱시도, 모닝코트, 연미복 등의 다양한 서양 예복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도 20세기 후반부터는 A라인, X라인, H라인 등의 실루엣은 물론 소재와 장식의 측면에서도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여 세계적인 패션 경향을



신랑 단령 | 국립민속박물관



각대 | 국립민속박물관



신랑 신발 | 국립민속박물관

따라가고 있다.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 같은 해외 유명인 혹은 국내 유명 연예인의 웨딩드레스도 일반인의 혼례복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국내의 웨딩드레스뿐만 아니라 해외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혼례복과 혼례식의 형식은 혼례절차 중 서구의 영향을 받아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6·25전쟁 같은 혼란기에 외래 문물이 수입되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변질되거나 소멸된 점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전통혼례복에서 절충식을 거쳐 서구식 웨딩드레스로 서서히 변모한 신부의 혼례복과 달리 신랑의 예복은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서양식 예복인 모닝코트, 연미복 등을 바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남성 복식과 관복이 외래 문물의 영향을 받은 반면에 여성 복식은 전통적인 복식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복식의 이중구조를 나타내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세기 전통혼례복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전망(홍나영, 혼례 전통 속 혼례복의 어제와 오늘, 유희경 복식문화원, 2007),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홍나영·신혜성·이은진, 교문사, 2011), 아시아문화기획전-혼례(국립민속박물관, 2012), 조선시대 관혼상제1-관례 · 혼례(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필자 홍나영(洪那英)

혼례식
婚禮式

정의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성姓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 양가 부모와 친지를 모시고 부부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과 절차.

역사 혼례식은 조선시대 이후 개화기를 거치면서 기독교와 서구문화의 유입, 일제강점기 등의 영향으로 다양하게 변모했다. 족두리에 원삼圓衫을 입은 신부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입은 신랑이 절을 하는 유교식 전통혼례는 '구식'혼인, 서구종교와 신사조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인 예식은 '신식'혼인이라 불렸다. 신식혼인은 '서양식 혼례'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대 후반부터 신식혼인을 치렀다. 1888년 3월 정동교회에서 기독교식의 혼례식이 치러졌고, 이후 1920년대 중반까지 소위 '예배당혼인'과 불교의 불교식화혼례佛教式花婚禮 같은 종교적 혼례식이 뒤섞여 치러졌다. 1910~1930년대에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공회당·학교·사찰·신문사·강당에서도 혼례식을 치렀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반포한 「의례준칙」 이후 근대적 의례개념이 전통적인 유교 개념을 포섭하여 변형시켰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구식과 신식, 봉건과 근대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혼례식은 과도기적인 형식을 보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예식을 권장하면서 일본의 신사나 사원에서 혼례식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1930년대 전문예식장이 생겼고, 농촌에까지 전문예식장이 보급되어 예식장 혼례식이 보편화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였다.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 1973년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1999년에 「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과다한 혼례식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졌다. 1980~1990년대에는 대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출신 대학교 교정이나 동문회관에서 혼례식을 올리는 사례도 많아졌으며, 혼례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주관하여 '합동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사학연금재단, 교직원공제회관, 교통회관, 향군회관 등 부모나 자신의 직업과 관련 있는 시설에서 혼례식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90년대 전반 호화결혼식을 규제하기 위해 불허했던 호텔 결혼식을 정부에서 허용하자, 혼례식 장소로 호텔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호화결혼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른바 과다혼수와 예단,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호화결혼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성가족부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작은 결혼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청·구민회관·복지관·문화회관 같은 공공기관의 공간을 이용하여

실속 있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자는 계도 활동이 벌어졌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혼례전문가, 즉 '웨딩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일종의 이벤트 성격의 혼례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예식장이 아닌 산과 바다를 비롯한 펜션, 골프장 등 다양한 장소가 혼례식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소규모 혼례식을 치르는 하우스 웨딩도 성행하고 있다. 전통혼례식을 치르는 신랑·신부들도 있지만, 주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문화의 상징으로서 전통혼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혼례식은 집례자執禮者가 홀기笏記에 적힌 순서에 따라 예식을 진행하므로 주례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기관에서 거행하는 혼례식은 목사나 사제, 법사 등 성직자가 집례하며 '조언'을 하는 형식을 취한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혼인식에서는 사회자가 예식의 전체 순서를 진행하며, 아울러 주례가 혼인서약, 성혼선언, 주례사 등을 주도한다. 사회자는 신랑의 친한 친구가 대부분 맡으며, 주례는 신랑이나 신부의 학교 은사, 직장 상사, 양가 부모가 평소에 존경하던 어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간혹 전문주례사에게 의뢰하여 주례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반적인 예식 절차나 형식과 다르게 주례가 없이 진행하는 예도 있다.

내용 전통혼례식은 집례자의 주도로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의 순서로 이어지며 특별히 주례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예식장에서 치르는 일반적인 혼례식은 개회식, 화촉 점화, 주례 선생님 등단,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랑·신부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언, 주례사, 축하연주 또는 축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 신랑·신부 내빈께 인사, 신랑·신부 행진, 폐회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부 입장은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여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신랑·신부가 맞절하면 혼인서약, 성혼선언, 주례사까지 주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혼인서약과 성혼선언문은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 진행한다.



혼례식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혼인서약

저는 OOO양(또는 OOO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OOO(서명 또는 날인)

성혼선언문

이제 신랑 OOO군과 신부 OOO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OOO (서명 또는 날인)

성혼선언까지 끝나면 주례사가 이어지며, 미리 준비된 축가나 축하연주가 진행된다. 이후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또 내빈에게 인사한 후에 '결혼행진곡'에 맞추어 행진한다. 이때 화동이 신랑·신부 앞에서 꽃을 뿌리며 두 사람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축하의 의미로 행진 중간에 폭죽을 터뜨리며 축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한다. 이후 폐회사와 기념 촬영이 이어진 다음 혼례식이 끝난다. 혼례식이 끝나면 폐백幣帛을 드린다. 개성 있는 혼례식을 하는 경우에는 혼례식 절차를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치른다. 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일반적인 혼례식 절차를 따르고 2부에서는 축하행사를 가미하여 신랑·신부만을 위한 유일한 혼례식을 연출하기도 한다. 오늘날 혼례식은 주중보다는 주로 주말, 즉 하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때에 치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식장 이용료도 주중보다 주말이 더 높은 편이다. 혼례식을 치르려면 수개월 전부터 예식장을 미리 예약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한편, 종교적인 혼례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회나 예식장·강당 등에서 하는 기독교식, 성당에서 하는 천주교식, 사찰에서 하는 불교식 등이 있다. 기독교식에서는 목사가 주례가 되며 주례 등단, 신랑·신부 입장 후에 찬송과 기도, 성경낭독이 이어진다. 그다음으로 주례사와 서약, 반지 교환, 기도 후에 성혼선포를 하고, 감사와 축가를 부른 후 양가 대표가 인사하며, 주례 목사의 축도가 끝나면 신랑·신부가 인사한 다음 행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천주교식에서는 시작예식으로 주례사제와 신랑·신부가 입장하며, 본기도로 시작하여 말씀의 전례 후에 혼인예식이 이루어진다. 주례사제의 강론, 혼인서약(질문과 답, 합의와 수용), 반지의 축성과 교환이 있다. 이후 성찬전례로 봉헌성가, 예물기도, 혼인감사송이 이어지며 영성체예식 후 마침예식으로 강복과 파견성가 후 신랑·신부 행진으로 끝이 난다. 불교식 화혼례에서는 주례법사가 등단하고 신랑·신부가 입장하면 분향과 삼귀의례가 이어지고, 신랑·신부가 불전에 경례를 한다. 주례법사의 고유문 낭독과 신랑·신부의 교배례, 헌화, 예물교환, 유고諭告 및 선서, 신랑·신부의 분향, 독령, 내빈축사, 양가 대표의 인사 후 폐식한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 혼례식은 일반적으로 예식장, 교회, 사찰, 성당, 야외 등 가정 외의 장소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식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종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혼례식도 같이 치러지고 있다. 혼례식의 시간은 하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주말인 경우가 많으며, 주례가 있는 혼례식이 대부분이지만 주례 없는 혼례식이나 신랑·신부의 개성을 살리고 절차나 규모를 간소화한 작은 결혼식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혼례복장으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주로 착용하며, 그 밖에 신랑·신부의 개성을 살린 의상을 준비하여 입기도 한다. 즉, 오늘날의 혼례식은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화해가는 특징이 뚜렷하며 일반예식과 종교식, 신랑·신부의 개성을 살리는 방식 등의 다양한 혼례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박혜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일생의례로 보는 근대 한국인의 삶(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안혜숙 외, 신정, 2002).

필자 주영애(朱英愛)

혼례홀기
婚禮笏記

정의 혼례婚禮를 거행하기 위한 의식儀式 절차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글.

내용 혼례홀기는 혼례를 거행하는 의식절차를 기록하여 집례자執禮者가 큰 소리로 읽음으로써, 예식을 진행하는 식순의 일종이다. 전통혼례의 여섯 가지 절차인 육례六禮 중에서, 주로 오늘날 혼례식에 해당하는 친영례親迎禮(대례大禮라고도 함)에서 주로 사용한다.

대례에 해당하는 전안례奠鴈禮와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에서, 홀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안례

  주인영서우문외主人迎壻于門外: 주인이 문밖에 나아가 신랑을 맞이하시오.

  읍양이입揖讓以入: 읍하고 들어오시오.

  서집안이종壻執雁以從: 신랑은 기러기를 안고 따르시오.

  주인승자조계입서향主人升自阼階立西向: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 서향하여 서시오.

  서승자서계북향궤 치안어지壻升自西階北向跪 置雁於地: 신랑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 북향하여 꿇어앉아 기러기를 바닥에 놓으시오.

  서면흥재배壻俛興再拜: 신랑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교배례

  부종자포서석어동방婦從者布壻席於東方: 신부의 종자는 신랑의 자리를 동쪽에 펴시오.

  서종자포부석어서방壻從者布婦席於西方: 신랑의 종자는 신부의 자리를 서쪽에 펴시오.

  서관우남 부종자옥지진세壻盥于南 婦從者沃之進帨: 신랑은 남쪽에서 손을 씻으시오. 신부의 종자가 물을 부어주고 수건을 주시오.

부관우북 서종자옥지진세婦盥于北 壻從者沃之進帨: 신부는 북쪽에서 손을 씻으시오. 신랑의 종자가 물을 부어주고 수건을 주시오.

서읍부취석壻揖婦就席: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자리에 나아가시오.

부선재배婦先再拜: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시오.

서답배壻答拜: 신랑은 답배하시오.

부선재배婦先再拜: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시오.

서답배壻答拜: 신랑은 답배하시오.

• 합근례

서읍부취좌 서동부서壻揖婦就坐 壻東婦西: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자리에 앉으시오.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자리하시오.

종자침주설찬從者斟酒設饌: 종자는 술을 따르고 안주를 준비하시오.

서부좨주거효壻婦祭酒擧殽: 신랑과 신부는 술을 좨주하고 지내고 안주를 올리시오.

우침주又斟酒: 다시 술을 따르시오.

서읍부거음壻揖婦擧飮: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잔을 들어 술을 드시오.

부거음婦擧飮: 신부도 잔을 들어 술을 드시오.

우취근분치서부지전又取巹分置壻婦之前: 표주박 술잔을 신랑·신부 앞에 나누어 놓으시오.

침주斟酒: 술을 따르시오.

서읍부거음壻揖婦擧飮: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잔을 들어 술을 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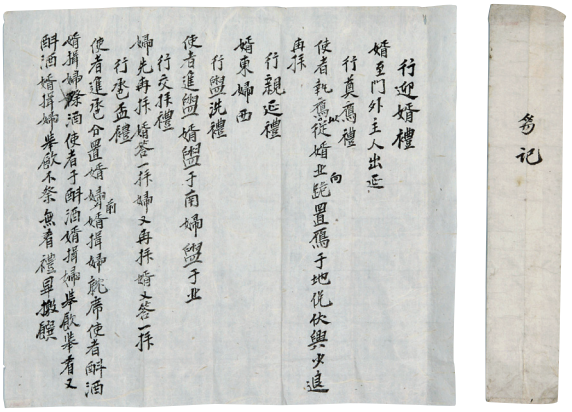
부거음婦擧飮: 신부도 잔을 들어 술을 드시오.

철상撤床: 상을 치우시오.

예필禮畢: 예를 마칩니다.

이상이 『사례편람四禮便覽』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전통혼례의 홀기로, 실제 행해질 때는 행사의 사정에 따라서 가감하여 시행하였다.

다만, 『도산전서陶山全書』에 실린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찬술撰述한 「혼례홀기」는, 『주자가례朱子家禮』나 『사례편람』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배례에서 신랑과 신부의 위치이다. 일반적으로 전통



혼례홀기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혼례에서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자리하나, 퇴계의 「혼례홀기」에서는 신랑이 서쪽, 신부가 동쪽에 자리한다. 그 이유는 서쪽이 빈객賓客의 자리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본래 『주자가례』에서의 친영 의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서 전안례를 마친 후,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신랑 집에서 교배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부가 빈객의 자리인 서쪽에 자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전통 혼례의식은 신부 집에서 모든 혼례 절차를 치르기 때문에, 퇴계는 신랑을 빈객의 자리인 서쪽에 자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혼례는 『주자가례』의 친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친영이라 하지 않고 대례大禮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신부 집에서 대례를 치르더라도, 『주자가례』의 방식대로 신랑이 동쪽에 자리하여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 퇴계의 「혼례홀기」에서는 합근례合巹禮 이전에 교수례交酬禮를 별도로 두어, 일반 술잔의 의식과 표주박 술잔의 의식을 구분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혼례홀기는 혼례의 의식에서 주로 친영례(대례)를 거행할 때 필요한 의식 절차를 정리해놓은 식순의 일종이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도산전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우리의 생활예절(전례연구위원회, 성균관, 1997), 조선시대 관혼상제1-관례·혼례(문옥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퇴계선생찬 혼례홀기 연구(여증동, 퇴계학보65~69, 퇴계학연구원, 1990~1991).

필자 도민재(都民宰)

혼반
婚班

정의 중첩된 혼인관계를 대대로 계승해 온 문중 집단.

역사 혼반은 부계 종법질서가 강화된 16세기 이후 문중의 형성과 더불어 나타난 것으로, 17세기 이후 양반사족층의 혼인문화로 정착하였다. 근대 이후로 신분제가 사라지고 문중조직이 약화되면서, 또한 근대적 혼인제도가 보편화되면서 거의 사라졌으나 양반문화의 전통이 강한 가문이나 지역에서는 혼반이나 길성·피성을 따지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

내용 축자적으로 혼반은 '서로 혼인을 맺을 만한 지체' 또는 '혼인의 조건에서 반격이 걸맞은 양반 가문'을 뜻하는 말이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지체나 반격이 대등한 양반가문 간의 잦은 연줄혼인으로 맺어진 사회적 연대를 의미한다. 통혼관계를 보면 그 가문의 지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전근대 사회에서 혼인은 한 가문의 가격家格을 말해주는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조선조의 양반사족들은 지체가 낮은 성씨나 가문과의 혼인을 낙혼落婚이라고 하여 수치스럽게 여겼다. 또 가문에 따라서는 혼인하기에 좋은 길성吉姓, 혼인을 피해야 하는 피성避姓 또는 악성惡姓이 있었다. 길성·피성의 관습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왕조가 계급내혼제를 강화하고 낙혼과 더불어, 자기보다 높은 신분과 혼인하는 앙혼仰婚, 역적 가문과의 혼인 등을 법으로 금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는 통념상 혈통·문명文名·관작官爵·경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체가 대등한 문중 사이의 혼인은 인척으로 맺어진 두 문중의 사회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중의 세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조의 양반들은 특정 가문과 혼인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가운이 융성해지면 길성吉姓 또는 길반吉班이라고 하여, 그 가문과 혼인관계를 지속했다. 이러한 혼인관계를 '길혼吉婚'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매하여 혼인을 성사시키는 연줄혼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줄혼인에는 두 문중이 당대 통혼관계를 중첩하거나, 두 문중이 세대 간 인척관계를 계속하거나, 세 문중이 서로 중첩적인 인척관계를 맺어 온 것 등의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사족층 가운데는 가문 간 연줄관계를 지속해 오다가도 그 가문의 여자가 시집온 후로 가운家運이 위축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연줄을 다른 곳으로 바꾸기도 했다. 부계친족 문중의 잦은 연줄혼인의 계승이 곧 혼반을 형성하는 바탕이다. 적어도 부계 파조派祖 이후 특정 성씨와 4촌 이내에서 1회 이상의 연줄혼인이 적어도 3~4대 이상은 지속되어야 혼반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누이바꿈'혼과 같은 거의 근친에 가까운 연줄혼인의 지속은 같은 문중끼리의 사돈관계가 겹치는 연비연사聯臂連査 관계를 누적시킴으로써, "따지고 보면 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친족관계가 서로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양반사족층이 연줄혼인을 선호하게 된 것은 부계 종법을 중심으로 한 향촌사회의 질서 재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조선 사회는 여전히 처가 중심의 남귀여가혼이 지배적이어서 사위와 외가가 한 촌락에 거주하는 경우가 흔하였고, 자녀균분상속제로 인해 사위가 부모의 터전을 이어받거나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일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당시는 반촌이라고 하더라도 사위와 외손을 포함한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이성잡거촌異姓雜居村의 면모를 띤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부계 종법질서가 강화되는 17세기에 이르러서 부계의 대표 조상을 파조派祖로 내세운 문중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특정 문중이 동성촌락을 지배하여 세거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때 부계 조상인 파조는 사회적으로 현달한 존재로서, 높은 관작을 지냈거나 학문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연히 경제적인 부도 따랐으며,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해당 문중의 사회적 위세가 되어 누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점차 향촌사회의 지배 성씨가 된 문중들은 자기들끼리 혼반으로 결집함으로써 그 위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문중 간 통혼을 매개로 한 혼반의 형성은 그들의 사회적 결속을 위한 일종의 문화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안동지역에서는 진성 이씨眞成李氏·의성 김씨義城金氏·광산 김씨光山金氏·풍산 류씨豐山柳

氏·안동 김씨安東金氏 등이 오랫동안 혼반관계를 유지하였다. 또 경남지역의 하동 정씨河東鄭氏·광산 김씨光山金氏·은진 송씨恩津宋氏·연안 이씨延安李氏 등도 상호 지속적인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사회·경제적인 결속을 도모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조 향촌사회 사족층의 동향이나 조선조의 혼인 연구에서 혼반은 양반층의 신분 내혼과 통혼권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혼인문화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특히 안동 사림의 혼반관계를 일종의 사회적 연대(alliance)로 주목한 조강희의 연구 이래로, 혼반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사례 부계 불천위 종가가 많기로 유명한 안동은 혼반을 통한 정치·사회적 결속이 특히 번성했던 지역이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 동성촌락의 지배 사족이 내세운 부계 파조들 대부분이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인 점도 주목된다. 퇴계학의 적통임을 드러내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문의 위상을 강화하고 반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남인에 속한 안동의 양반 사족층은 1694년의 갑술옥사甲戌獄事 이후로 중앙 정계로의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퇴계학을 중심으로 한 향교나 서원 활동을 통해 일종의 정치·사회적 결속을 도모하였다. 안동 사림이 이황의 제자를 주축으로 결집한 것과 동성촌락을 토대로 부계 가문의 결속을 강화한 것은 그러한 추세를 말해주는 것이다. 문중 간의 통혼을 매개로 한 혼반의 형성도 그러한 정치·사회적 결속의 일환이었다. 중앙 정치권에서 소외되면서 통혼의 범위가 좁아진 상황에서 퇴계학맥을 중심으로 한 혼반의 형성을 통해 가문 간의 결속을 다졌던 것이다. 따라서 안동의 혼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 성씨의 파조가 퇴계학맥에 속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안동의 혼반에서 생물학적 혈통 못지않게 학연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말해 주는 사실이다.

안동에서 일찍이 재지在地 기반을 확보한 학봉鶴峯과 서애西厓의 두 가문 가운데, 퇴계 가문과의 유대는 학봉 가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다. 학봉 김성일金誠一을 파조로 한 학봉계의 혼반을 살펴보면, 안동 임하면 천전리에서 생장한 학봉은 처가가 있는 금계에 정착하면서 재지기반을 확보하였는데, 그의 손자 김시구金是九가 이황의 증손녀를 배우자로 맞이하고 그의 조카 김용金涌이 이황의 손서孫壻가 되면서 진성 이씨와 혼반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애 류성룡柳成龍을 파조로 한 서애 문중에서는 16세기 중반 진성 이씨를 비롯하여 퇴계학파에 속했던 예안 이씨, 인동 장씨, 의성 김씨, 경주 이씨와 집중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 서애 류성룡의 손자 류원지가 김성일의 손자인 김시구의 딸과 혼인하고, 겸암 류운룡의 아들과 김극일의 딸이 혼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서애 문중과 학봉 문중 간의 혼인 비율이 높았던 것이 주목된다. 당시 정치적 대응 방식에서 일정한 시각차를 드러낸 두 가문이지만 서원의 추향 문제로 양 계열이 대립한 19세기의 병호시비屛虎是非가 있기 전까지는 서로 혼반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 때로 대립적이고 때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던 이 지역 사족들은 여성을 매개로 문중 간의 결합을 이루면서 대내외적으로 결집된 힘을 유지해 왔다. 곧 가문 간의 혼반 형성은 안동 사림 내부의 대립과 조화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그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일종의 제어장치로서 안동 사림의 정치적 세력을 결집하는 기능을 하였던 셈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양반 혼인 700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척에 있는 가문들이 혼반관계를 맺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명문의 동성집단이 밀집해 있는 안동이라는 지연이 작용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혼반의 기초가 되는 연줄혼인은 교환혼의 일종인 '누이바꿈'혼과 비슷한 형태이나 형성 배경은 전혀 무관하다. 누이바꿈혼은 두 집안이 친밀한 관계이거나 혼사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인척관계를 맺는 것인 데 비해, 연줄혼인은 지체가 비슷한 둘 또는 세 가문이 반격을 유지하거나 사회적 결속을 위한 필요에서 여자를 교환하는 것이다. 혼반은 혈통·학연·가풍 등을 혼인의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가문 간의 단순한 인연이나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혼맥'과도 다르다. 조선조의 혼반은 생물학적으로 맺어진 혼인 집단이 정치적·사회적 결합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정 가문의 혼반을 통해 그 가문의 사회적 위세, 정치적 권력, 그리고 경제적 부의 정도까지 짐작할 수 있다. 안동의 혼반에서는 퇴계학맥과 가풍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 점이 특징적

이다. 혼반은 혼인을 지나치게 가족과 친족 또는 출계出系 중심으로 이해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혼인의 연대(alliance)가 지닌 정치·사회사적 의의를 읽을 수 있는 혼인문화로 주목될 만하다.

참고문헌 16~19세기 풍산류씨 하회파의 혼반(김명자, 국학연구12, 안동국학진흥원, 2008), 안동사림의 정치적 분화와 혼반 형성(설석규, 안동학연구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2),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에 관한 연구(조강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영남지방의 혼반 연구(조강희, 민족문화논총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족적 결합-경상도 단성현의 실태 분석(한기범, 호서사학19·20, 호서사학회, 1992).

필자 천혜숙(千惠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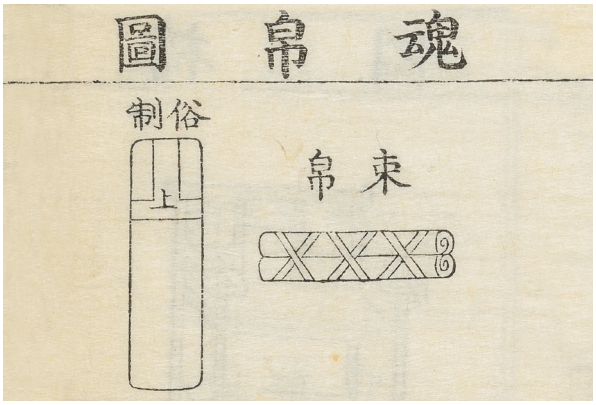
혼백
魂帛

정의 상례에서 신주神主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제작하여 영좌靈座에 봉안하는 신위神位.

역사 혼백魂帛은 나무로 만든 인형의 일종인 '중重'에서 비롯되었다. 『가례家禮』에 따르면 "옛날에는 나무를 깎아 중을 만들어서 신령을 주장하였다. 지금도 그 법식이 있으나 사민士民의 집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비단을 묶어서 신을 의탁하여 혼백이라고 하니, 이것 또한 고례古禮의 남은 뜻이다."라고 했으며, "은殷에서는 신주를 만들면 중을 매달아두고, 주周에서는 신주를 만들면 중을 없앤다. 대부大夫로서 신주가 없는 자는 비단을 묶어 신을 의탁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내용 혼백은 습襲과 염殮을 마친 뒤 영좌靈座에 안치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신위神位의 일종이다. 『가례家禮』에 따르면 신주神主를 만들어 망자亡者의 혼을 완전히 의탁시키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면서 각각 다른 물체로 혼을 대신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초혼招魂에 의해 죽은 사람의 웃옷에 망자의 혼을 실어 시신에 의탁하는 방식이다. 유교적 관념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을 이루는 혼魂과 육체를 이루는 백魄으로 이루어졌고, 혼과 백이 결합해야만 생명이 유지되며, 혼백魂魄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고 여겼다. 또 인간이 죽으면 정신을 이루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를 이루는 백은 지상에 머무른다. 이때 하늘로 올라가는 혼을 지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초혼의식을 치른다. 즉, 숨을 거둔 후 체백體魄을 벗어나는 혼은 초혼의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에 임시로 의빙依憑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옷을 '복의復衣'라고 한다. 초혼의식이 끝나면 전奠을 차리는데, 이것 역시 체백을 떠난 망자의 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차리는 음식상이다.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서도 "체백을 떠난 영혼은 형상이 없으므로 전을 차려서 의지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처럼 초혼의식의 거행과 전을 차리는 것은 망자의 혼을 지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단계는 습을 거행하고 혼백魂帛을 만들어 망자의 혼을 의탁한 후 명정銘旌을 세우는 방식이다. 이로써 혼령은 복의에서 혼백으로 옮겨오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시신을 매장한 후 신주를 만들어 망자의 혼을 의탁시키는 방식이다. 신주는 발인發靷 전에 미리 만들어 혼백과 함께 장지葬地로 가져가는



혼백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혼백과 혼백상자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데, 아직 망자의 혼이 혼백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주는 상자에 넣어서 혼백 뒤에 안치한다. 장지에 도착하면 영좌를 설치하고 혼백에 머물러 있는 혼을 신주로 옮기기 위한 제주題主를 행하는데, 망자의 직함과 이름을 신주에 쓴 후 "공경하는 돌아가신 아버지 아무 벼슬 부군府君께 아룁니다. 형체는 무덤으로 가시고 신령만이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신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높으신 영혼은 옛것을 버리시고 새것을 따르시어 이에 의지하소서."라는 내용의 축문을 읽는다. 이로써 혼백에 깃들어있던 망자의 혼은 신주로 옮겨오게 된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혼백과 신주의 위치를 바꾸어 놓는다. 즉, 발인 때와 달리 제주전題主奠부터는 신주를 앞에 두고 혼백을 뒤에 놓는 것이다. 제주전을 마치고 신주와 혼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후, 영좌에 신주와 혼백을 안치할 때도 신주를 혼백 앞에 두고 우제虞祭를 거행한다. 『가례家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따르면 우제를 지내고 나면 혼백을 깨끗한 곳에 묻는다고 했다. 실제 관행에서는 태우거나 빈소 옆에 묻기도 한다. 또 신주를 만들지 않는 집에서는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혼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혼백의 종류에는 속백束帛과 결백結帛이 있다. 속백은 명주 한 필의 양 끝을 말아 서로 향하게 묶는 형태이며, 결백이란 명주를 긴 끈으로 만들어 동심결同心結로 묶되 머리 부분이 위로 나오도록 하고 옆으로 양 귀를 빼내서 그 아래로 양다리를 늘어뜨린 것으로 사람의 형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관행에서는 한지를 이용하여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접기도 하며,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소매나 옷고름을 혼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혼백은 삼베나 모시 등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수의의 재질이 명주에서 삼베로 바뀐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듯하다. 혼백을 사통팔달로 접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와 아래를 서로 관통하도록 접고, 양옆[東西]은 천으로 감싸서 막아두지만 이를 젖히면 서로 통하게끔 접어두고, 전면과 후면은 좌우로 안주름을 각각 잡아서 공간을 만들어 둔다. 이처럼 동서남북이 관통하고 있기에 '사통四通'이 되고, 이 동서남북의 통로와 전·후면의 좌우 통로를 합치면 '팔달八達'이 되는데, 이를 '사통팔달'이라고 한다.

혼백을 안치할 때는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돗자리를 깐 다음 교의交椅를 놓고, 초혼의식에서 사용한 복의復衣를 백지에 싸서 교의 위에 놓고 그 위에 혼백상자를 봉안하고 흰 명주보자기를 덮어둔다. 교의 앞에는 제사상을 펼쳐두고 그 위에 촛대 한 쌍을 놓은 뒤 앞쪽에는 향상香床을 배치한다. 『사례편람』에서도 역시 "시신 남쪽에 횃대를 설치한 뒤 휘장으로 덮고 의자(교의)와 탁자를 그 앞에 두고 흰 비단을 묶어서 혼백으로 삼아 의자 위에 둔다."라고 했다. 한편, 혼백을 넣어둔 상자는 항상 뚜껑을 닫아두며,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 때에만 잠시 열어둔다.

특징 및 의의 혼백은 망자의 혼이 임시로 머무는 신위神位의 일종으로,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는 땅속에 묻는다. 그러나 신주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탈상할 때까지 빈소에 안치하여 망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儀禮,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혼사계
婚事契

정의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준비해 사용하거나 혼례를 치루는 집에 쌀 등의 물품을 부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契.

내용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혼례복을 비롯해 가마 등 많은 물품이 필요하다. 전통사회에서 이것들을 한 집안에서 모두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문중 단위로 이것들을 준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 못할 상황에는 마을 사람들이 계를 모아 공동으로 준비하여 집안에 혼례가 있는 계원에게 빌려주기도 한다.

혼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 중 신랑의 혼례복인 사모관대紗帽冠帶와 신부의 족두리, 활옷 등의 혼례복, 그리고 신부가 신행新行 갈 때 타고 갈 가마는 한집안에서 큰 비용을 들여 구입하기가 어렵다. 자녀들을 출가

시키면 더는 사용할 일이 없는 물건이므로, 반드시 가정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다.

혼사계는 혼례에 필요한 물품 중 어떠한 것을 공동으로 준비해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명칭이 정해진다. 혼례에 필요한 의복의 준비를 위해 계를 만드는 경우 '관대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모관대, 족두리, 활옷 등을 계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해 계원 자녀의 혼례 때 돌려가며 사용한다. 혼례 때에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신랑·신부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 하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음식을 담을 그릇이 많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릇계'를 만들기도 한다. 혼례 때 사용될 많은 종류의 그릇을 계원들이 구입해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관대계'나 '그릇계'는 마을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없기도 하고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마을에 있었던 혼사계 중 하나가 '가마계'이다. 가마는 다른 어떤 혼례물품보다 가격이 비싸 부피가 커서, 한 가정에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물품 중 하나이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이를 준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사계를 만들어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때 계원들은 일정한 회비를 내서 물품을 준비한다. 쌀을 조금씩 내서 논을 산 후 소작을 주어 소작료로 쌀을 받아서 혼례물품을 장만하기도 한다. 계의 목적이나 계원에 따라 혼사계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혼사계를 통해 준비된 혼례물품을 사용할 때, 계원은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비계원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계를 만들 때 유사를 뽑는데 유사가 물품 정비나 대여비 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한다.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준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계를 모으기도 하지만 계원 중에 혼사가 있을 때 쌀을 모아 부조扶助할 목적으로 계를 모으기도 한다. 보통 마을 부녀자들이 이러한 계를 모으는데 '쌀계'가 대표적이다. 혼사가 있는 집에 쌀을 모아 주어 떡 등의 음식 장만에 도움을 준다.

특징 및 의의 혼례는 한 개인에게는 인륜지대사이고 한 집안에서는 큰 행사 중 하나이다. 그만큼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물품이 사용된다. 혼사계는 한 가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혼례물품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요한 일을 현명하게 준비하여 대처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혼례문화이다. 평상시 쌀을 모아 계원의 혼례 때 부조하는 방식에서도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북면 사람들의 삶과 민속(한양명 외, 제일기획, 2005),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박동철(朴東喆)



혼수
婚需

정의 두 남녀가 앞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하는 물품.

역사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혼인 풍속은 혼인으로 인한 여자 측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띤다. 혼인이 개인의 자유의사가 아닌 집안이나 혈연집단의 결정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나타난 관행이다. 여자 측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보통 신부값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한 물건을 전달하여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국지三國志』「동옥저전東沃沮傳」에 기록된 혼인 방법을 보면, "여자가 10세가 되면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할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여자 집으로 돌아간다. 여자 집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지급이 끝나면 신랑 집으로 온다."라고 하였다. 신부값과 반대로 신부 측에서 가져가는 '신부지참금'이라는 것도 있었다.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혼수, 예단, 예물 등은 바로 이 신부지참금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처가살이가 지배적이던 시절에는 신부 측이 혼수를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신부가 혼인해도 자기 집에서 살기 때문이었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혼수는 청색과 홍색의 채단綵緞이 기본이었고, 그 밖에 집안 형편에 따라 혼숫감의 종류도 비단·광목廣木·옥양목玉洋木·목면木綿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혼

인풍속이 시집살이로 바뀌면서 신부는 신랑 집으로 들어가야 했으므로 자기가 평생 쓸 옷감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혼수로 준비해야 했다. 이런 사정은 20세기 전반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서울 여성들은 혼수를 준비해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러나 혼인풍속이 사회변화에 발맞춰 달라지면서 처가거주제妻家居住制나 시가거주제媤家居住制, 신거주제新居住制에 따라 혼수가 변화했다. 혼인 후에 처가나 시가에 거주할 때에는 이미 존재하는 가족 내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혼수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신접살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살림살이를 위한 혼수품을 세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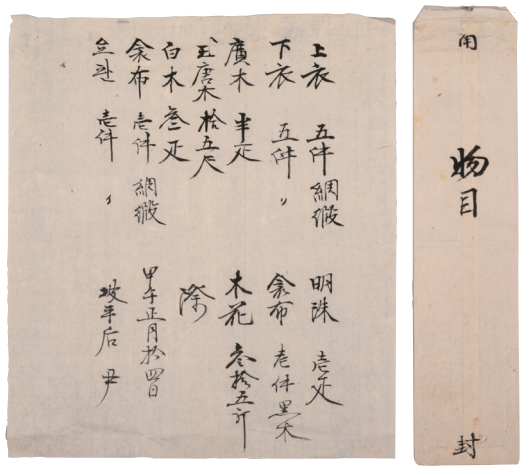
내용 혼수는 혼례 관행의 변화, 사회변화 및 혼인제도의 변화, 거주규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또한 과다한 혼수로 인한 폐해는 오랜 세월 변함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과다한 혼수가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서는 "혼인을 함에 있어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문중자文中子(왕통王通)의 말을 인용하며, 혼담을 나눌 때 재물을 언급하는 사람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과다한 혼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또한 "혼인을 의논할 때에는 먼저 신랑과 신부의 성행과 가법家法이 어떠한지를 살펴야지, 구차하게 부귀를 흠모하지 말라."라는 사마광司馬光의 말도 실어 놓았다. 즉, 혼인에서는 물질보다 혼인하는 사람의 인품을 보아야 하고, 혼인의 올바른 정신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제국시대(1897~1910)의 유물로 남아 있는 혼숫감의 하나가 견직물인 산동주山東紬인데, 치마, 저고리, 속옷, 생활용품 등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직물이었다. 또한 올이 가늘고 바닥이 고우며 질이 좋은 마직물인 부포는 여름 옷감으로 쓰였고, 면직물의 한가지인 당목唐木은 옥양목이라고도 하였는데, 적삼이나 치마 등을 지어 입으면 검박하며 아름다웠다.

1940~1970년대까지의 혼수는 주로 좌식생활 침구류, 바느질 용구, 의류, 가구류, 가전제품, 주방용품류와 그 밖에 보자기, 요강 등이었다. 특히, 신부의 치맛감과 저고릿감은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필수적인 품목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시기의 혼수는 침대사용을 위한 침구류와 가구류, 가전제품류, 주방용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에 대한 두 집안의 기대 차이와 혼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당사자뿐만 아니라 두 집안 간에 갈등이 야기되어 결국 파혼에 이르기도 한다. 게다가 혼인 후에도 혼수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거나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이혼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혼수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만 것이다.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혼수시장의 상업화 물결 속에서 혼인당사자들이 더욱 의식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고, 세대 간의 의식개선으로 지나친 혼수를 요구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과거에는 친정어머니가 혼인 전부터 혼수를 장만해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시대에 따라 혼수의 의미가 변화하면서 혼수품목과 혼수 준비시기도 변화해 왔다. 특히 산업화 이전의 혼수는 정성의 표현으로 여겨졌고 손수 준비하는 것이었으며, 그 품목은 주로 의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생활수준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이 혼수품의 주류로 대체되었으며, 신거주제가 보편화되면서 더 많은 품목이 요구되었다. 한편, 현금형식의 혼수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또한, 혼인비용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혼수에 대한 신랑·신부



혼수물목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이층농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당목·부포 |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및 양가 부모의 인식과 태도도 변화하고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신랑·신부의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해 더욱 합리적인 혼수문화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增補四禮便覽,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박혜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서울지역의 혼수 및 예단 풍속에 관한연구(홍나영·최혜정, 서울학연구17,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1), 혼례유물에 대한 내용분석(최배영, 한국가정관리학회지21-5,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필자 주영애(朱英愛)

혼인
婚姻

정의 한 쌍의 남녀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제도와 의식.

역사 혼인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보다 긴 역사를 가졌다. 『백호통白虎通』에서는 '혼婚'이 원래 '혼昏'으로 '혼시성례昏時成禮'의 의미이며, 『예기禮記』에서는 '혼婚'은 사위[婿], '인姻'은 처妻를 이르는 말로 "사위가 저물녘에 와서 부인이 그로 인하여 갔다婿以昏時來 女因之而去."라는 의미라고 한다. 원시 사회에서는 난혼, 군혼이 있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는 그것에 관한 기록이 없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고대 한반도의 여러 나라에 형사처수혼兄死妻嫂婚·서옥제婿屋制·족외혼·축첩·솔서혼率婿婚·예부혼豫婦婚 등이 있었던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서옥婿屋'으로 표현된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은 가장 일반적인 한국의 혼속이다. 또 신라와 고려 왕실에서는 근친혼을 했지만, 민간에서는 근친혼을 금한 역사가 오래되었다. 몽골의 고려 침략에 따른 공녀貢女 정책이 이 시대 여자의 조혼을 추동하였다. 혼인제도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때는 조선시대이다. 가부장제의 기틀을 잡기 위해 주자학과 대명률大明律을 도입한 조선왕조는 동성동본불혼, 처첩의 분변分辨, 여성의 재가 금지, 신분내혼제를 법제화하였을 뿐 아니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한 친영례를 강요하여 오랜 남귀여가혼의 전통을 뒤흔드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결국, 조선 중기 이후 보급된 반친영半親迎의 절충안은 남귀여가 혼속을 점차 시집살이 혼속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대 이후로는 사회·문화적 변동과 함께 서구식 혼례의 영향으로 신식 혼례가 이루어져서 점차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법 개정으로 20세가 되면 혼인 당사자들이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 독신가구나 동거혼 가구, 외국인과의 혼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내용 혼인은 남녀 두 사람이 사회의 제도와 관행에 따라 성적, 경제적 결합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혼인을 통해 부부로 결합한 신랑과 신부는 가정을 꾸리고 후사를 출산하여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가족을 이룬다. 또한, 신랑은 사위, 신부는 며느리의 지위로 각각 상대 집안의 일원이 되며, 이렇게 아들과 딸을 나눈 두 집안은 사돈관계로 맺어져서 인척이라는 더 큰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아도 혼인을 하지 않으면 아이 취급을 했으며, 어린 나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어른으로 인정하였다. 혼인을 계기로 비로소 사회적 성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혼인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여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혼인은 사회가 마련한 제도적 규범이나 관행에 따라서 행해진다. 인간사회에서 혼인 제도를 정비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나아

가 사회 질서의 기틀을 바로잡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든 혼인의 적령·배우자의 수·배우자 선택 방법·혼인 결정의 권리·예물이나 대금과 같은 혼인조건·혼례식·혼인 후 거주규정 등에 관한 제도와 관행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제도와 관행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독특한 혼인문화를 형성해 왔다. 혼인 연령만 하더라도 고대에는 남자 30세, 여자 20세까지 혼인하였으나, 조선조에는 남자는 15세, 여자는 12~14세로 조혼의 경향이 강하였고, 근대 이후에는 다시 20~30세 이상으로 높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배우자의 수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다처 또는 축첩이 허용되는 다처적 경향이 오래 지속되다가, 근대 이후 일부일처제가 확고하게 정착하였고 축첩의 관행도 사라졌다. 배우자 선택에서는 근친금혼의 원리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민간에서는 근친간의 혼인을 '상피相避 붙는다'고 하여 기휘忌諱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신라와 고려의 왕족에 한해서는 근친혼 또는 인척혼이 행해진 것이 확인된다. 또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취하는 형사처수혼을 하기도 했다. 유교의 영향이 강화되는 고려 말에는 외사촌 및 이성 재종자매간 혼인이 금지되고, 조선조에는 근친금혼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동성동본 또는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혼인의 혼婚이 혼昏을 의미하듯이, 혼례는 저녁 무렵에 행했는데, 후대로 오면서 아침이나 낮에 혼례를 올리고 밤에는 신방을 차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의 '서옥' 기사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사위가 저물녘에 처가에 와서 고한 뒤에 전백錢帛을 제공하고 여자와 동숙하였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혼례가 저녁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혼인 시에 예물을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기록에서 아이를 낳아 장성할 때까지 처가에서 머무르다가 처자와 함께 본가로 돌아갔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혼인 후 부부가 장기간 처가에서 생활하는 모처부처제母妻父妻制의 거주 규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인의 예에서 재폐財幣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주서周書』「고구려전」의 기사, "옛날에는 혼인날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 술 석 잔을 돌리는 것으로 행례를 끝냈다."라고 한 『용재총화慵齋叢話』(권1)의 기록을 참고하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혼인의례가 간소하게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계종법의 원리가 강화된 조선조에 이르면 혼인에 대한 규제와 규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혼인의례의 절차도 복잡해지게 된다.

오늘날 유교식 혼례 전통으로 간주되는 반친영례의 절차는 조선조에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왕조는 가부장제 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주자가례』의 친영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나 끝내 민간에 수용되지 않자, 이전의 남귀여가혼 및 삼일대반三日對盤의 전통을 절충한 반친영례를 보급하였다. 혼례는 전처럼 신부 집에서 올리되 3일 만에 시가로 신행하는 반친영례로의 전환은 모계 또는 처가 거주의 혼속이 부계 또는 시가 거주의 혼속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혼인 제도의 변화는 재산 및 제사상속을 부계 적장자 중심으로 바꾸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와 친족 제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친영이 널리 보급되는 18세기에 이르면, 혼인한 여성은 시가의 일원으로 종속되어 오로지 적장자 출산과 치가사治家事의 노역으로 시가 가문의 영속을 위해서 복무하는 존재가 된다. 출가외인出嫁外人이나 시집살이는 그러한 여성의 처지를 잘 대



신부 | 엘리자베스 키스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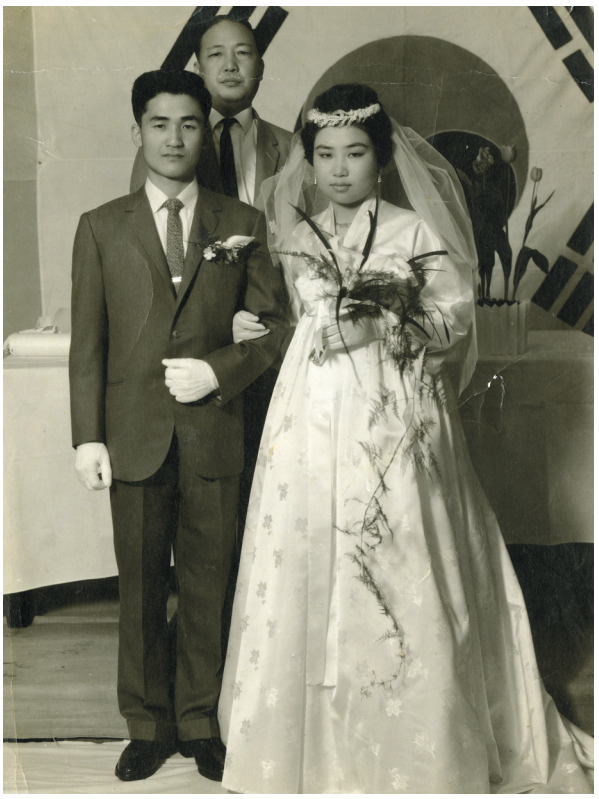
변하는 말이다. 같은 배경에서 이 시대에는 조혼과 중매혼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계급내혼제, 동성동본불혼, 처첩의 분변分辨, 여성의 재가 금지 등이 법제화되기에 이른다. 조선조는 부계 종법 사회의 확립을 위해 국가가 혼인을 관리하고 통제한 시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시대에는 처첩妻妾과 적서嫡庶를 분별함으로써 일부일처제와 정처의 지위를 보장하였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군신과 부자의 관계처럼 수직적 상하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다처나 중혼이 금지되었을 뿐 남성에게는 축첩蓄妾과 재혼이 허용된 대신, 여성에게는 계층을 막론하고 수절과 일부종사의 윤리가 강요되고 남편 사후 재가가 금지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여성의 재가가 금지되면서 민간에서는 '과부보쌈'이라고 하는 약탈혼이 성행하기도 했다.

18세기부터 민간에 정착한 반친영의 혼속은 근대 이후까지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일부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달묵이 또는 해묵이 신행이 남아 있었다고 해도 18세기 이후에는 대부분 삼일신행의 반친영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신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길게는 10년 넘게, 짧아도 1년은 되었던 사위의 처가 체류가 2~3일로, 더 짧게는 당일로 단축된 것은 남귀여가 혼속의 소멸과 시집살이 혼속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속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는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고, 여성은 친가의 재산 및 제사상속에서도 제외되는 처지가 되었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란 속담이 있듯이 여성은 혼인 또는 남편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수동적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혼인문화가 근대 이후까지도 많은 여성들을 강제하고 구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기 서양문화가 유입되고 근대적 여성 교육이 보급되면서 유교적 혼인문화에도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난다. 서양식 혼례를 모방한 신식 혼례가 출현한 것과 더불어, 전문예식장과 같은 혼례 장소의 출현, 중매혼 기피와 연애혼에 대한 점진적인 선호, 그리고 조혼의 감소와 만혼의 증가 등을 이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로 들 수 있다. 혼인에 대한 관념도 집안 간의 결합을 우선으로 하던 것이 점차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시집살이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많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장남이라고 해도 시집살이를 하는 경우가 흔치



부모님의 혼인(1세대)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자녀의 혼인(2세대) | 1962 | 국립민속박물관

않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이나 병역의무와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혼인 연령이 30대 이후로 늦추어지거나 혼인 적령의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경향도 나타난다. 또 남성이 연상인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오늘날은 동갑은 물론이고 여성이 연상인 경우도 드물지 않게 되었다.

예식장 혼인이 일반화되면서 혼인의 절차도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의 혼인은 통상 만남/연애–청혼–상견례–함보내기–약혼식–혼례식–폐백–피로연–신혼여행–분가로 완성된다. 다만 정부가 반포한 여러 차례의 『가정의례준칙』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이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부조문화, 호화 혼수, 호화 결혼식의 폐단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이다. 그 밖에도 나이가 들도록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 가구나 혼인의 법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동거혼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 또는 성비의 불균형이나 여성들의 농어촌 기피에 따른 대안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의 여성과 혼인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는 현상, 또는 세계화 및 국제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이른바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현상 등은 오늘날 혼인문화의 새로운 풍속도라고 할 만하다.

혼인 제도에 관한 법학 및 사회학 분야의 논의에 비해서 혼인문화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 편이다. 혼속 또는 혼인문화에 관해서 다루더라도 『가례家禮』·『사례편람四禮便覽』·『상변찬요常變纂要』 등과 같은 예서를 중심으로 한 것이 많고, 민간의 관행이나 문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마을공동체의 혼속과 변화에 관한 논의, 또는 현대사회의 혼인문화를 도시민속학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논의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성년의례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된 시기에 치르는 통과의례라면, 혼인의례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된 시기에 치르는 통과의례이다. 따라서 혼인을 거친 남녀에게는 사회적 성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조선조에는 혼인 후 남성의 삶은 공적 사회에서의 성취로 확장된 데 비해, 여성의 삶은 시집 가문을 위한 출산과 노역으로 제한되는 젠더상의 차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것은 조선조가 신랑과 신부를 대등하게 대우한 남귀여가혼의 오랜 전통을 버리고 여성을 시집의 대문 안으로 가두어 부계 가문의 영속을 위한 존재로 도구화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혼인제도의 변화가 가족의 지위 및 가족 내 권력관계의 구조를 바꾼 것이다. 한편으로 혼인을 통한 가문 간의 결합은 처가, 사돈가, 외가라는 인척관계를 통한 더 큰 사회적 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혼인한 개인 또는 가문으로서는 사회적 활동영역이 확장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후사의 번성, 조상에 대한 봉사, 가문의 창달 등에 의미를 두었던 전통적 혼인관이 오늘날에는 인생의 동반자, 친밀한 관계 또는 사랑의 관계에 의미를 두는 쪽으로 바뀌면서 가족관계, 성문화, 자녀출산 등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혼인 제도 및 관행은 인간 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된 것인 만큼, 집단의 사회와 문화의 통찰을 위한 코드가 될 만하다.

참고문헌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양상(이영수, 아시아문화연구2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서류부가 혼속의 변천과 그 성격(박혜인, 민족문화연구14, 민족문화연구원, 1979), 조선민족혼인사연구(박경휘, 한남대학교출판부, 1992),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예속사(김춘동, 한국문화사대계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회갑·관례·혼례(민제, 한국민속대관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천혜숙(千惠淑)



혼인법
婚姻法

정의 남녀가 법률상 부부로 대우를 받는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역사 혼인은 인구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소생 자녀의 신분과 법적 지위 및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인의 의식과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규율하였다.

예濊에서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을 하였으며 부여夫餘에서는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데리고 사는 형사취수兄死娶嫂의 관습이 있었다. 또한 고구려에는 데릴사위제, 부여에는 민며느리제도가 있었다. 신라의 왕실에서는 동성혼과 계급내혼階級內婚이 이루어졌다. 고려의 왕실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족내혼族內婚이 있었고 상층에

서도 동성 간에 혼인하였지만 후기로 갈수록 근친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조선에서는 동성동본 및 이성 근친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1746년(영조 22)에 반포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동성이본同姓異本 사이의 혼인도 금지하였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혼인이 이루어졌다. 동성동본 금혼은 철저하게 유지되어 여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 시행된 「민법」에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동성동본인 부부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7년, 1987년 두 차례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동성동본 금혼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고,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전통적으로 혼인은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에 따라 사례四禮를 거행해야만 정당한 혼인으로 인정받았다. 『주자가례』의 핵심적인 혼례절차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신랑 집에서 혼례를 거행하는 '친영례親迎禮'이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혼례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인식을 거행하고 거주하는 '솔서혼속率壻婚俗'이었다. 이는 조선이 지향하는 유교적 가족질서, 즉 가부장제의 확립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친영례를 보급하려는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특히, 왕실에서 솔선하여 친영례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영례의 보급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았다. 친영례를 옹호하는 측의 근거는 가부장제의 확립이었고, 솔서혼속을 옹호하는 측의 근거는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사정이었다. 16세기 중엽에 '반半친영례'가 등장하면서 혼인과 관련한 풍속이 변화하였다. 반친영례는 우선 남자가 여자 집에서 혼례식을 거행하고 3일이 지난 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주자가례』에 따른 친영례를 거행한 다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기로 갈수록 친정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줄어들어 현재까지 그 풍속이 남아 있다. 현재의 혼례는 대개 신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혼인장소를 결정하여 혼인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을 가며, 여행을 마치고 거의 신부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신랑 집으로 간 다음에 신혼집으로 가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부 측에서 혼례장소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신혼여행 후 신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솔서혼속의 핵심이 지금의 혼인 관습에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485년(성종 16)에 시행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혼인의례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속대전』에서는 혼인을 『주자가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의식혼주의儀式婚主義를 취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1923년 7월부터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혼주의를 채택 하였으며, 동시에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에서도 이를 규정하였다.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과 『호적법』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내용 혼인법은 혼인의 성립 및 그 해소, 효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는 성립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혼인적령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이면 혼인을 할 수 있었고, 양쪽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숙질宿疾이 있거나 50세 이상이면 12세 이상도 가능하였다.(『경국대전』「예전·혼가禮典·婚嫁」). 조혼은 물론 만혼晩婚도 사회문제였기 때문에 사족의 딸이 서른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 가난하면 국가에서 혼수를 제공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을 장杖 100대로 처벌하여 혼인을 강제하였다(『경국대전』「예전·혜휼禮典·惠恤」). 1894년에는 만혼의 기준을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상, 1907년에는 남 17세, 여 15세 이상으로 고쳤다.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부터는 일본 「민법」에 따라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 이상으로 하였다. 1960년 「민법」에서는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 이상으로 하였는데, 남녀차별을 이유로 2007년 12월부터는 남녀 모두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현재는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조선시대에 혼인은 개인이 아닌 가문의 결합이었다. 혼인은 같은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가문끼리 하였으며, 부모나 조부모 등 주혼자主婚者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부모나 조부모의 상중에는 혼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유습은 해방 이후에도 남아 있어서 1978년까지는 남 27세, 여 23세 이하인 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혼인은 개인 간의 신분계약이므로, 현재는 만 19세 이상(단, 2013년 6월까지는 만 20세)의 성년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까지 부녀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지만 유교윤리가 강조된 조선시대에 부녀는 재혼할 수 없었다. 부녀의 재혼은 직접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그 소생자녀들의 관직진출을 제한하고 재산상속에서 차별을 두며 제사승계를 제약하는, 다시 말해 신분적·공법적인 질곡과 굴레를 채우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지되었다. 부녀의 재혼은 1894년에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하지만 2014년 현재는 여성의 재혼율이 남성보다 높은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혼인한 부부는 동거의 형태로 함께 생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솔서혼속의 영향으로 남편이 처가의 호적에 등재되었고(『경국대전』「예전·호구식禮典·戶口式」), 독립 호를 구성하게 되면 남편의 호에 처가 등재되었으며,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은 혼인을 하더라도 성姓을 바꾸지 않았다. 이 성불변의 원칙은 1939년「조선민사령」의 개정 등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이 도입된 1940년 2월부터 바뀌어 처도 남편의 성을 따랐다. 그러나 1960년 제정「민법」에서는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 처의 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가家와 호주戶主 제도를 규정하여 처는 남편의 호적에 등재되며 그 자녀는 아버지, 즉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고 그 가에 입적入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가와 호주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에 따른「민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어 2008년부터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가지게 되었고,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그것을 따르지만, 부부가 합의하여 다르게 할 수도 있게 되었다.

혼인은 신분문제만이 아니라 재산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부부의 재산이 독립된 별산제別産制로 부부 각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따로 관리한다. 그 결과, 부부는 서로 상대의 재산에 대해 생존하는 동안만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약 자녀 없이 사망하게 되면 혈연血緣 상속의 원칙에 따라 본족本族, 즉 남자는 그들의 형제나 조카가, 부녀는 친정의 친척들이 상속하였다. 제정민법에서는 생존배우자의 생활을 고려하여 직계비속直系卑屬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몇 차례「민법」의 개정으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었다.

특징 및 의의 혼인법의 변화는 한편으로 사회의 풍속이나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식,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변천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솔서혼속은『주자가례』를 따라 친영례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유제遺制를 남기고 있다. 또한 혼인연령 등에서 남녀차별은 사라졌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모두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법과는 달리 혼인법은 사회적 분위기와 의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한된 법률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事實婚 등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권의 신장 등으로 혼인법에서 전통적 요소는 약해지고 남녀평등에 입각한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가족법-친족법·상속법(이경희, 법원사, 2008),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 1992),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서류부가혼속을 중심으로(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한국 혼인법론-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한복룡, 하락도서, 1989).

필자 정긍식(鄭肯植)

혼인성사
婚配聖事

정의 가톨릭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 중의 하나로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일생을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하느님께 서약하며 맺는 성사.

내용 가톨릭교회에서 혼인이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남녀가 어버이를 떠나 배우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하느님의 창조 이념에 부응하는 행위

로 인식한다. 또한 부부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인간 행위를 통해 구현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견고한 제도로 파악한다. 그래서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약을 통하여,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교회법」 제1055조)으로 정의하고, 예수가 세운 눈에 보이는 형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의식인 거룩한 성사로 간주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신자끼리의 혼인, 즉 성사혼聖事婚을 권장한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신앙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본당신부의 허락을 얻어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관면혼인寬免婚姻'이라고 한다. 한편, 종교나 교파가 다른 경우에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관면을 받아 혼인할 수 있는데, 이를 '혼종혼인混宗婚姻'이라고 한다. 교회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신자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면서 관면이나 허가를 무시하고 사회 관습대로 혼인한다면, 교리상의 혼인장애로 영성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 가톨릭에서, 혼인하려는 사람은 「교회법」(제1055조, 제10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혼인 예정자는 혼인하기 1개월 전에 배우자와 함께 소속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교육'(가나 혼인강좌)을 받아야 한다. 혼인교리교육은 가정공동체가 사회와 교회의 기본구조이자 작은 교회라는 인식 아래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는 혼인하는 사람들에게 혼인과 가정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의 차이부터 혼인하는 사람의 준비자세, 혼인의 교회적 의의와 혼인의 절차, 자녀 출산과 양육 같은 혼인 후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혼인의 신성성과 사회성이 강조된다.

혼인 2개월 전에는 혼인신청서와 함께 세례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본당에 제출하고 사제와 혼인 면담할 날짜를 정한다. 그러면 본당에서는 일정기간(주일이나 축일이세 번 경과하는 시간) 동안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 공시하게 된다. 이를 혼인공시婚姻公示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사람에게 묻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혼인자의 연령(남녀 모두 만 19세 이상) 미달이나 영구적 성교불능 장애, 유괴·범죄·협박으로 인한 혼인, 친인척 간 혼인, 이전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해소되지 않은 혼인(혼인유대장애) 등 두 사람의 혼인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밝혀지면 교회는 혼인을 허가하지 않는다.

공시가 끝나면 본당 신부와의 혼인 예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를 작성한다. 이어서 당사자들의 혼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자를 선정하여 혼인의 증인을 세우고, 신의의 표시로 교환할 반지를 준비한다.

보통의 경우 혼인성사는 가톨릭교회의 거룩한 제사인 미사(Missa, 라틴어이며 영어로는 Mass) 중에 거행하며, 이를 '혼인미사'라고 한다. 혼인미사는 두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 신랑 혹은 신부의 소속 성당에서, 그리고 관면혼이나 혼종혼의 경우에는 가톨릭 신자인 배우자의 소속 성당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속 본당이 아닌 다른 성당이나 경당, 수도회 성당 등에서도 거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전제로 다른 장소에서도 거행할 수 있다. 혼인의 주례 사제는 관례상 신부 측 본당 주임신부가 맡으며, 혼인 당사자가 특정의 사제를 희망할 경우 본당 신부의 허락을 얻어 해당 사제가 주례를 맡을 수 있다.

혼인예식은 미사 중 말씀의 전례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다. 먼저, 사제는 두 증인을 정혼자들의 양편에 세우고 훈시를 한 다음, 교회공동체 앞에서 혼인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묻는다. 이어 두 사람이 손을 잡도록 하고 "나(성명, 세례명)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혼인 합의를 유도한 후 교회의 이름으로 두 사람의 합의를 수용하여, "주님께서 두 분이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혼인선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의의 표시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으로 혼인 예식은 마무리되고 미사가 계속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자는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혼인 축하객 접대나 폐백 장소, 사진 촬영 등의 문제로 성당에서는 혼인성사만을 하고 다시 호텔이나 예식장 등 일반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부 성당에서도 성당 내에 피로연장이나 폐백장소를 마련하여 신자들이 수월하게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가톨릭에서 혼인은 서로 갈라질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그 목적은 자녀를 출산하여 인류의 창조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부부애를 구현하기 위해 부부간에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공동체를 완성하는 데에 혼인의 지향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톨릭교회에서는 단일성單一性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이라는 혼인의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뜻한다. 혼인은 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로,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사랑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느님 안에서의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위해서, 혼인의 단일성은 꼭 지켜야 할 부부의 지고한 소명이라고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가톨릭 혼인의 두 번째 특성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장 6절)라는 『성서』 구절에 기초한 불가해소성이다. 이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헤어지지 못하는, 혼인 생활의 영속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이혼 풍조가 만연한 오늘날, 죽음만이 혼인의 결합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인격 완성을 위한 윤리상의 상호 신의의 의무가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혼인은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인격공동체인 만큼 부부 사이에 평생의 유대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성사에서도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성사로서의 그리스도교 혼인과 그 특성(조재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이찬우 엮음,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필자 김영수(金榮洙)

혼인신고
婚姻申告

정의 혼인당사자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관청에 보고하는 행위.

역사 법적·사회적으로 공인公認하는 부부관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관계임을 공시公示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공인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적자녀嫡子女, 그렇지 않은 자녀는 첩자녀妾子女 또는 서자녀庶子女로 구별하였고, 관직 진출과 부모 재산의 상속에서 첩자녀와 서자녀에게 차별을 두었다. 현재에는 적서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등에서의 차별은 사라졌지만, 사회적 차별은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국가기관 등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다만 3년마다 시행하는 호적을 작성할 때에 부부로 신고하였고 남편의 족보에 처의 이름을 등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적조사는 꼭 3년마다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족보 등재나 편찬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혼인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혼인신고가 강제된 시기는 1909년 3월 「민적법民籍法」의 시행 이후이다. 호주가 본인이나 자녀 등의 혼인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여 혼인신고를 강제하였다. 그리고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에서는 호구기재양식을 규정하여 부부관계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였는데, 여전히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 등 주혼자主婚者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혼인의 효력은

관습에 따라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발생하였고, 민적신고는 혼인을 공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공포하였지만, 혼인신고 등에 대해서는 일본민법을 의용依用하지 않고 민적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1922년 「조선민사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7월 1일부터는 부윤府尹 또는 면장에게 혼인을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신고하지 않은 혼인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호적법」에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호적법」에서는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76년의 「호적법시행규칙」에서는 혼인신고양식을 제정하였다. 2005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호적법」이 2007년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내용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여 위의 법령에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신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당사자의 성명과 본관 등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 ②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③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이 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까지는 가家 및 호주戶主 제도가 있었고, 또 혼인성립의 장애요소가 달랐기 때문에 「호적법」에서는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④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과 관계 ⑤남편[夫]이 처가의 호적에 등재하는 입부혼入夫婚 또는 사위를 양자로 삼아 가를 계승하는 서양자壻養子인 사실, ⑥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일자, ⑦당사자가 혈족이 아닌 동성동본同姓同本인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였다. 다만 ⑦의 동성동본금혼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다.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형식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내용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 형식적인 결격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18세 미만자(단, 2007년 12월까지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미만자),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단, 1978년까지는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 미만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8촌 이내의 혈족血族, 6촌 이내의 인척 등 근친자, ④다른 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중혼자重婚者 등이다.

신고 장소는 「호적법」이 시행된 2007년까지는 본적지本籍地, 현재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원칙이지만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제출을 위임할 수도 있다. 혼인당사자 중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만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이는 한쪽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사자가 신고지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두[말]로 진술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들려주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특징 및 의의 혼인신고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법률상 정당한 부부로 인정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당사자가 부부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부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주의事實婚主義'라고 한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혼인방식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라고 하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부부로 인정받기도 하는데, 이를 '신고혼주의申告婚主義'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2007년까지는 「호적법」,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신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 등에 특별한 절차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고, 사례四禮 등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가 동거함으로써 부부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사실혼주의' 내지 '의식

혼주의儀式婚主義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인 부부를 정당한 부부로 인정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23년 7월 1일부터 신고주의를 채택하였으며, 1960년 제정 「민법」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즉, 혼인은 사실혼주의에서 신고혼주의로 이행하였다. 그런데 전통적인 혼인풍속에 익숙하여 부부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피해가 컸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식을 거행하여 함께 살던 부인은 부인 아닌 첩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혼인신고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여권의 신장 등으로 인하여 혼인식 거행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는 사라졌다.

그러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 혼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혼인신고에 대한 의식도 변화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가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났다. 부부가 어느 정도 공동생활을 하여 서로를 확인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것이다. 이는 혼인 직후에 파경을 맞이할 경우 당사자들의 신분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는 선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비율이 높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비율이 낮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또는 이혼한 부부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태도가 반영된 현상이다.

혼인신고는 부부가 된 것을 국가적으로 승인받고 사회에 공시하는 절차로 부부관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가족관계등록법(신영호, 세창출판사, 2009), 가족법-친족법·상속법(이경희, 법원사, 2008),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 1992),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한국의 가계계승에서 여성의 지위-식민지기 여성호주를 중심으로(정긍식, 법사학연구47, 한국법사학회, 2013), 한국호적제도사연구(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호적실무요론(김갑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필자 정긍식(鄭肯植)

혼인여탐굿

정의 서울 지역에서 혼사가 있을 때 조상들에게 미리 알려 재액災厄을 막고 복福을 받기 위하여 하는 굿.

내용 혼인여탐굿은 혼인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의례로 과거 서울 지역의 혼인을 앞둔 재가집에서 주로 행하던 굿이었다. '여탐'의 뜻은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는 이를 예탐豫探으로 풀이하였는데, 조상들에게 미리 알려 재액을 예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가집의 형편에 따라 작은 규모의 치성 형식으로 하거나, 정식으로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혼인여탐굿에 대해 조사된 것은 거의 없고, 서울 지역에서 비손으로 행하던 혼인여탐은 조사된 적이 있다. 대개 양가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한 후 혼인식을 앞두고 진행한다. 혼인을 앞둔 당사자는 여러 친척에게 혼인함을 알리는데, 돌아가신 선대 여러 조상에게 혼인을 알리는 혼인여탐굿은 '인사'의 의미와 복을 청하는 '기복'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혼인여탐굿은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당이 없는 경우에는 안방 윗목 벽 밑의 조상자리나 대청의 기둥 아래에 상을 차리고 진행했다. 사당이나 조상자리나 모두 조상이 위치한다고 간주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조상상祖上床에 조상 수대로 잔을 올리고 나물과 삼색실, 주酒·과果·포脯를 올린 후 당사자가 혼인함을 아뢴 다음, 혼인 후 잘살게 해 달라고 빈다.

과거에는 혼인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은 왕신을 모신 집에서는 이 왕신을 달래느라고 혼인 전에 혼인여탐굿을 하기도 했다. 혼인하지 못하고 죽어서 샘이 난 조상의 혼인식 훼방을 미리 막기 위해 하는 일종의 예방의례였다. 『조선무속고』에 따르면, 옛날 손씨 집안에 규수가 있었는데 출가하지 못하고 죽자 이를 일러 '손각씨'라 했고, 손각씨를 모신 집에서는 처녀를 출가 시킬 경우 여무女巫에게 부탁하여 미리 신의 뜻을 알아본 다음에 잔치를 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이러한 의식이 비교적 널리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강화 지역,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심술 많고 욕심 많은 별상을 따로 모신 집의 경우, 혼인식을 소리 소문 없이 준비하여 별상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혼인여탐굿 같은 의례는 거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혼인여탐굿은 서울 지역만의 고유한 혼인의례로 보인다.

치성이 아닌 굿으로 하게되면, 일반적인 굿의 형식을 따르다가 여러 신령에게 기원하거나 공수를 줄 때 원만한 혼인의 성립과 복을 비는 내용이 이어진다. 즉, 굿은 일반적인 재수굿 제차第次를 따르면서 〈조상거리〉에서 조상에게 따로 복을 비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굿을 할 때 신랑 쪽과 신부 쪽의 축원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신랑 쪽에서는 "업며느리 점지하고 복며느리 점지하고 며느리가 안을 복 안고 오고 질 복은 지고 오고"라고 축원했다면, 신부 쪽에서는 "업사위 복사위가 들어오고 함바리 농바리가 들어오고 오색 비단에 가진 패물이 들어와서"라는 식으로 축원했다. 본격적인 〈조상거리〉가 시작되면, 여러 선대 조상이 들어와 혼인하는 자손의 발복을 기원하는 공수를 내린다. 친가 조상 중에서는 대개 사대봉사四代奉祀하는 조상, 즉 고조부모 내외, 증조부모 내외, 조부모 내외, 부모까지, 그리고 형제 중에서 미리 죽은 이들까지 모두 들어와 복을 내려준다. 처가 쪽은 이보다 범위가 작아 처조부모 내외, 장인 장모 내외, 처의 형제까지만 들어와 복을 준다. 조상들이 내려주는 공수는 대부분 혼인을 앞둔 자손에게 초점을 맞춘다. 다른 가족의 재수 발복에 대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혼인여탐굿은 죽은 조상 앞에서 혼인의식을 거행하는 또 다른 혼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안주거리〉 다음에 이어지는 〈성주거리〉에서는 왕신이 함께 들어오는데, 이때 혼인을 앞둔 사람은 각별한 마음으로 혼인 후의 복을 기원한다.

혼인여탐굿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무속에 대한 믿음도 각별해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혼인여탐굿을 할 정도의 재가집이라면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임을 의미했다. 혼인여탐굿을 하지 못하는 집에서는 정월에 '홍수맥이'[횡수막이]를 하거나, 따로 재수굿을 할 때 자식들의 혼인이 잘 이루어지고 복이 가득하기를 비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서울 지역의 무속에서는 재물은 여러 신령이 내려주지만, 자손의 발복은 조상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모든 굿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조상거리〉에 상당한 의미를 둔다. 따라서 혼인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조상에게 알리고 복을 빌어야 하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행하는 것이 혼인여탐굿인 셈이다. 혼인여탐굿을 하게 되면 혼인식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척들도 미리 참석하여 축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가집에서는 혼인식에 버금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 분위기를 내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혼인은 삶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일생의례이다. 혼인여탐굿을 거행하면서 혼인당사자는 혼전婚前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다.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믿는 한국인들은 혼인여탐굿을 통해 삶의 재창조를 의례화儀禮化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소멸시키고 생을 새롭게 출발시켰다. 아울러 새로운 삶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재액이 물러가기를 기원했다. 또한 혼인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을 넘어선,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기도 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가려야 할 것도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조상의 가호를 빌고 복을 기원하는 혼인여탐굿은 혼인식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게 한다. 혼인식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라면, 혼인여탐굿은 죽은 조상과의 이어짐을 확인하면서 혼인이 조상의 가호 속에 이루어지는 의례임을 되새기는 의식이었다. 무엇보다도 혼인해야지만 비로소 성년이 되고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데 혼인여탐굿은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의례였다.

참고문헌 강화의 가정신앙1(홍태한 외, 민속원, 2010), 무속고2(장성만, 민산출판사, 1992), 조선무속고(이능화,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0), 한국인의 일생과 무속의례(김헌선, 종교와 일생의례, 민속원, 2006).

필자 홍태한(洪泰漢)



혼주
婚主

정의 '혼인과정의 주인'이란 뜻으로 혼사를 주재하는 사람.

내용 예서禮書에 의하면 혼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양가가 중매인을 통해 여자 쪽의 허락을 기다리는 동

안, 처음으로 신랑 측 혼주가 『예기禮記』에 있는 서식에 따라 신부 집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것을 '납채서納采書'라고 한다.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측 혼주가 대문 밖에 나와서 안으로 맞아들여 납채서를 받고 북향하여 재배한다.

신식 결혼식에서 약혼식을 하는 경우, 사회자가 양가 친척을 소개하고 신랑·신부를 소개한다. 다음에는 신랑 측 혼주가 신부 측 혼주에게 사주를 전달하고 예물을 교환한다. 결혼식은 대개 예식장을 대여하여 진행하는데 요즈음의 혼주 역할은 우선 청첩장에다 이름을 적고, 결혼식장에서 식전에 입구에서 서서 인사하고, 식이 시작되면 식장 한쪽에 마련된 혼주석을 채우는 것일 뿐이다. 다만, 신랑·신부 측 혼주(이때는 주로 양가의 어머니)들이 등장하여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점촉點燭(화촉 점화)을 한다. 1961년 「의례준칙」이 생긴 이래 양가의 어머니가 앞에 놓인 등에 점촉하는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였다. 예식이 끝나면 신랑 측 혼주가 모든 하객에게 감사의 답례를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이천에서는 숯검정을 칠한 함진아비가 함을 메고 신부 집에 도착하면 돗자리 혹은 멍석을 깔거나 납채 시루 또는 소반을 준비해 놓는다. 함진아비가 그 위에 함을 올려놓고 절을 하면 혼주가 답례한다. 그런 다음 혼주가 함 속의 혼서지婚書紙를 꺼내어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주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과거에 '혼주'가 될 자격은 남자에게만 있었다. 대를 잇는 남자 측을 존중하는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라고 보면 된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형, 오빠 순으로 혼주를 맡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혼주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혼주는 혼례의 주인이란 뜻이지만, 실제 하는 역할은 별로 없다. 다만, 각자 역할과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일을 하므로 이들을 잘 돌보는 정도이다.

참고문헌 白虎通疏證, 白虎通義, 四禮便覽, 禮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충남·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필자 최인학(崔仁鶴)

화장
火葬

정의 죽은 이의 몸을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장법葬法.

역사 우리나라에서 화장의 흔적은 신석기시대부터 발견된다.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5세기경부터는 화장한 다음 뼈를 추려 용기에 담아 매장하는 화장묘火葬墓의 풍습이 생겨났다. 7세기 중엽에 이르면 불교의 영향권 속에서 화장이 본격적인 장법으로 조명되기 시작하며, 기록상 최초로 화장된 이는 신라의 승려 자장慈藏(590~658)으로, 화장 후 석혈石穴에 유골이 안치되었다. 이어 문무왕을 비롯해 효성왕·선덕왕·원성왕·진성여왕·효공왕·신덕왕·경명왕 등 8명의 왕이 화장되었으니, 왕실과 지배층에 불교적 죽음관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전까지 많은 부장품으로 치장하던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이 사라지고 무덤의 크기와 수가 축소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통일신라 중반까지는 승려사회에서도 화장이 일반화되지 않다가, 9세기에 이르러 당나라에서 선종禪宗이 들어오면서부터 화장이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선불교가 크게 일어나 선문구산禪門九山이 확립되자, 각 선문의 문도들은 조사祖師가 입적한 뒤 후세에 보존될 조형적인 장골처藏骨處를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아울러 고승이 입적한 뒤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온다고 하여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넣는 묘탑으로 부도浮屠를 조성하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본격적으로 화장이 사회전반에 정착된 것은 고려 중기인 12세기 이후로, 왕실·민간에서도 점차 광범위하게 화장을 수용하였다.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화장한 다음 유골을 매장하는 이중장二重葬을 치렀는데, 묘지명墓誌銘 등의 기록을 참조하여 정리한 고려시대 불자들의 화장풍습은 다음과 같다. ①사찰이나 집에서 사망하면 그곳에 2~26일간 빈소를 차리고 ②좋은 날을 받아 산기슭이나 사찰 주변 화장지에서 화장한 뒤 ③유골을 수합해 사찰에 일정기간(2~76개월) 모시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권안權安을 거쳐 ④좋은 날을 받아 용기에 넣은 유골을 매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념과 맞지 않는 화장을 전면

적으로 금하였으나 화장풍습이 계속되자 금령을 어기는 자들을 처벌하였다. 이에 화장은 민간의 풍습에서 점차 사라져 극빈자나 특수하게 죽은 자에게 적용하는 장법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화장이 배척 대상이었다면, 일제강점기의 화장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일제는 우리의 전통과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관혼상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1912년 6월에 총독부령으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을 공포하였고, 그 결과 화장이 다시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장이 설치되어, 1923년 707건에 불과했던 화장 숫자가 4년 뒤에는 배 이상인 1,530건로 증가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화장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타율적 수용이다. 그렇지만 수백 년간 화장을 금지했음에도, 화장에 대한 서민들의 기본적인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광복 이후에는 화장이 1천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장례의 하나가 아니라, 식민문화의 잔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1971년의 화장 비율은 7%에 불과하였고 1980년대까지 화장 비율의 증가는 미미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에 전국의 화장 비율은 절반을 넘어선 53%에 달하였고, 2012년 현재 74%에 이르렀다. 매장은 자연친화적이고 전통적 정서에 적합한 장례방식이지만, 무덤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 산림의 황폐화, 무연고 무덤의 증가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친환경적 대안으로 화장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내용 근대 이후의 화장은 불교적 의미와 무관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화장이 불교적 장법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은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없지만, 승려는 사찰에서 일정한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을 행할 수 있다. 승려의 다비식茶毘式은 장작더미·숯 등으로 화장장을 만들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태우고 유골을 거두는 의식으로 치른다. 세부절차는 불을 지피는 거화擧火, 나무에 불을 붙이는 하화下火, 주검에서 분리된 망혼을 떠나보내는 봉송奉送, 새 몸을 받아 옷을 갈아입는 창의唱衣, 유골을 살피고 수습하여 부수는 기골起骨·습골拾骨·쇄골碎骨의 순으로 진행하며, 각 절차에 따라 의식문을 염송한다.

일반인은 공공화장장인 승화원昇華園에서 화장을 한다. 승화원에 관을 인도한 다음 순서가 되면 화구火口를 배정받고, 화장이 끝나면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로에서 나온 유골을 수습하여 유골함에 담는다. 화장은 특히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초점이 되어 왔다. 유골은 대개 화장을 마친 날 모시지만, 사찰이나 가정에 49일 또는 일정 기간 두었다가 탈상을 겸하여 모시기도 한다. 유골을 모시는 방식으로는 크게 산골, 봉안시설 안치, 자연장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산골散骨은 유골을 가루 낸 다음 지정된 장소나 산·강·바다에 뿌리는 방식이다.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산골은 화장의 원형적 모습에 해당한다. 산골을 할 때는 골분骨粉을 그대로 뿌리거나 환丸을 만들어 뿌린다. 환을 만들 때는 반죽한 곡식가루를 골분과 섞어서 콩알 크기로 만든 뒤 연못이나 강의 물고기에게 먹이로 주거나 산속에 놓아 새나 들짐승이 먹도록 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친환경적 장법으로 화장 후 산골이나 자연장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유골을 용기에 담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다. 유골을 안치하는 것은 고인의 유체를 남겨 추모하기 위함이며, 이는 화장한 뒤에 다시 화장무덤을 만들었던 옛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형식이다. 봉안방식은 하나의 시설 안에 유골함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것에서부터 무덤이나 탑의 형태로 만들어 계속 합장할 수 있도록 한 것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봉안당奉安堂은 대부분 도시근교에 조성되어, 무덤보다 더 자주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일부 봉안시설의 대형 석물을 이용한 조형과 호화로운 장비의 사용은 환경훼손과 허례허식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셋째, 자연장自然葬은 나무·잔디·화초 등 식물 주위에 골분을 묻는 방식이다.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권장되는 자연장은 다양한 방식이 개발 중이다. 대표적인 자연장으로는 나무 주위에 땅을 파서 골분을 묻는 수목장樹木葬을 꼽는다. 고인이 묻힌 나무를 찾아 추모하고 정성들여 가꿈으로써, 정서적인 위안을 얻고 나무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므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화장은 고대 인도사회의 장법 가운데 하나로, 불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화장을 통해 흙·물·불·바람의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구성된 인간의 몸을 본래대로 돌려보내는 것을 이상적인 죽음으로 여긴다. 윤회사상에 따르면 몸은 이승에서 잠시 빌려 입었던 옷이므로, 헌 옷과 같은 몸을 태움으로써 이승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끊고 새 옷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장은 우리 민족의 내세관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의 윤회사상이 반영된 장법으로, 사후의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통일신라시대부터 호화로운 무덤을 꾸미는 대신 생전의 선업을 강조하고 망자를 위한 의례에 더 치중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성행한 화장묘가 전통무덤에 불교식 화장이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라면, 종교와 무관하게 '봉안'에서 '산골'로 진행되는 현재의 장례방식이 오히려 불교식 화장의 원형에 가깝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참고문헌 茶毘文, 三國史記, 三國遺事,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고찰(정길자, 역사와경계7, 부산경남사학회, 1983), 불교 전래에 따른 화장의 수용양상과 변화요인(구미래, 한국종교민속시론, 민속원, 2004), 석문의범(안진호, 만상회, 1935), 조선초기 상장의례 연구(정종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필자 구미래(具美來)

화장장
火葬場

정의 일정한 건물 안에 화장로와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시체나 유골을 불태워 장사葬事 지내는 시설.

역사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화장이라는 장법葬法은 불의 사용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전세계적으로 인류가 불을 다루기 시작한 신석기시대부터 화장 유적이나 유구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진주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불에 탄 사람의 뼈가 토기 속에서 발견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높은 온도의 불을 손쉽게 다루게 되면서 화장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고고학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지석묘 유적에서 화장한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 화장 흔적을 보면, 대체로 구덩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묘혈이 바로 화장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가 전래하여 중국화한 화장묘가 다수 등장한다. 유골을 골호骨壺에 담아 무덤 속에 장골藏骨하는 방식이 왕실 및 귀족사회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화장은 대부분 절 부근의 화장터에서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묘지墓誌와 금석문, 문헌의 화장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시대 화장은 위로는 왕실에서 고급 귀족과 관리층, 아래로는 일반 서민층에까지 널리 유행하였다. 대체로 사망 후 화장할 때까지 사찰에 빈소를 두고 장례를 치렀으며, 시신을 화장하는 장소로 사찰 주변 및 산록山麓을 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화장 후 유골처리 방법은 산골散骨과 장골 두 가지였다. 산골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화장 유골을 매장하였는데, 장골 용기로는 1m 미만의 조립식 석관을 많이 사용하였다. 고려 말기인 1390년(공양왕 2)에 사대부와 서인의 제사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이후 불교식 화장을 금지하는 명이 내려진다.

조선에서도 『주자가례』에 따라 유교식 장법을 시행하면서 화장을 금지하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그런데 1492년(성종 23) 11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에 의하면 "사대부의 상장喪葬에 부도浮屠의 교를 쓰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때에 이르러 일반인들의 화장이 소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승려사회에서는 계속 화장을 행했고, 화장터는 주로 절이었다. 1902년 당시 일본인 거류민단에서 고양군 한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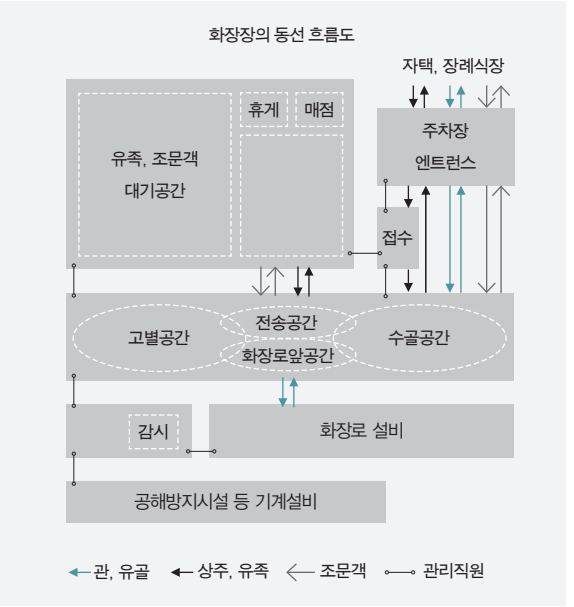
서울추모공원 로전실 | 서울 서초구 | 2012 | 박태호

신당리 수구문 밖 송림(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일본식 화장장을 건립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식 화장장의 시초이며, 이후 전국 각지에 주로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화장장이 들어섰다. 그리고 1912년 6월 조선총독부령 제123호「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규칙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이 시행됨으로써 수백 년간 금지되었던 화장이 제도권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써 화장장이 법정 공식용어로 등장하지만, 많은 사람은 종전대로 '화장터'라고 불렀다. 화장을 경원시하던 유교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1961년 12월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법률을 본뜬 것이지만,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법률 속에 화장과 화장장을 인정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법률은 거의 40년 만인 2000년 1월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때 법률개정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첫째는 일본의 장사 제도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종전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2008년 3월에는 화장장이라는 말이 지닌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화장시설로 바꾸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

내용 우리나라 화장장들이 현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종전 벽제화장장에서 배출하던 검은 매연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어 1995년 현대화된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이 개장되었고, 2000년대에는 인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대식 화장장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 무연무취를 구현한 화장로와 밝고 안락한 유족 대기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식 화장장에서 화장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 발인發靷 이후 화장장 도착, 고별의식, 관을 화장로에 넣는 입로入爐 또는 전송, 유골 수습收骨, 봉안시설에 안치의 순서를 거친다. 이 모든 과정은 상주를 중심으로 한 유가족과 조문객 상당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장의차가 화장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화장을 끝내고 나갈 때까지의 동선動線 구성은 옆 그림과 같다. 그리고 각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녔거나 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진입로 및 정원은 외부에서 진입해 들어올 때, 최초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화장장의 얼굴과 같다. 유족들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좋은 정원수와 화훼류를 심고, 연못·조각품 등으로 연출한다. 그리고 화장장 주변을 둘러싸는 녹지 공간은 화장 공간과 주변과의 완충지대 역할과 함께 부지 전체의 경관을 조성하는 역할도 한다.

주차 공간은 보통 화장장의 정면에서 약간 벗어나게 둠으로써 외부에서 장례 행렬을 쉽게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지 여건에 따라 외부와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수목 등으로 차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주차장의 차폐에 신경을 쓰는 것은 유족들의 심적 상태를 고려하고, 주변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현관은 고인과 유족 및 조문객을 맞아들이고 내보내는 곳이다. 보통 영정을 모신 차 또는 장의차를 선두로 차량 행렬이 화장장에 도착하는데, 약간의 복도나 주랑柱廊을 두어 장례 행렬을 다시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엔트런스(Entrance) 홀은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접하는 공간이다. 2000년대 이후 건축된 국내외 많은 화장장들은 이 공간에 특별하고 상징적인 인테리어와 조형물·회화 등을 비치하거나 특수한 채광 또는 조명을 설치하여 장엄한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고별실告別室 또는 제례실은 고인을 향한 마지막 헌

화 분향 등의 고별의례를 거행하는 장소로서 그에 걸맞은 분위기를 조성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 안치대와 분향대 및 기타 종교의식 등을 치를 수 있는 비품을 마련해둔다. 일부 화장장에서는 고별을 위한 장소를 두지 않고 화장로 전실에서 고별의례를 거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로火葬爐 전실前室 또는 노전爐前 홀은 화장로 문 바로 앞에 있는 공간으로서 이곳에서 대차를 이용하여 화장로에 관을 넣거나, 화장이 끝난 다음 유골을 밖으로 들어내는 작업이 진행된다. 여기서 고인을 배웅하고 나면 유족 등은 대합실(대기실)로 이동하여 화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관망실觀望室 또는 참관실은 1987년 서울시립화장장에 처음 만들어진 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장장에 마련되어 있다. 화장로 전실 앞 공간을 유리벽으로 차단하고, 간단한 제단과 의자 몇 개를 비치하여 화장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 두었다. 유족들은 이곳에 영정을 모시고 분향을 하면서 대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종전 구식화장장에서는 유족들이 화장로 바로 앞에서 관이 노爐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화장이 끝날 때까지 분향을 하면서 기다렸다. 또한, 화장이 끝난 다음에도 노 앞에서 유골을 수습하여 분골했다.

중정中庭·수정水庭·내정內庭은 자연의 빛, 물과 녹색의 조경 요소 등을 조성해 둔 공간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 공간은 현대 국내외 화장장 건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기실은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이나 조문객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안정된 공간에 정원을 연결하여 산책도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기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대기실(홀)과 개별대기실로 구별하는데, 개별대기실은 화장로 수만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골실收骨室(습골실拾骨室)은 화장이 끝난 유골을 어느 정도 식힌 다음, 금속 등 이물질을 골라내고, 유골을 그대로 또는 분골粉骨하여 유골함에 담아 인계하는 공간이다. 종전 화장장에서는 화장이 끝난 뒤 노전실에서 유족들이 직접 뼈를 골라서 유골함에 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 우리나라의 대부분 화장장에서는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작업원들이 수습하여 유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화장로실火葬爐室은 화장장의 핵심 설비인 화장로와 공해방지 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과 더불어 기계 정비를 할 수 있는 작업실, 화장로를 자동 제어하고 화장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앙감시 및 제어실, 예비용 대차 등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 작업원들의 휴게시설 등이 갖추어진다. 화장장과 장례식장 기능을 겸하는 곳에서는 관을 냉장 보관하는 장소, 즉 시신안치실이 필수적이다. 장례식장 기능을 겸하지 않는 곳에서도 신원미확인 시체 같은 행정상 필요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냉장시설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보통 서양의 화장장에는 유족 등이 대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서양의 화장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철저하게 작업의 효율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장로를 미리 가열하여 둔 상태로 화장로 문을 열고 관을 넣으면 노 안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붙어버리는 다소 볼썽사나운 광경이 그대로 노출된다. 반면에, 조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특성상 화장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서양의 화장로 대부분은 주연소로에서 재연소로까지 모든 설비가 하나의 구조물(캐비닛) 안에 같이 설치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다. 서양 화장로만의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온의 배기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관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서울장묘시설 100년사(박태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3), 장례의 역사(박태호, 서해문집, 2006), 화장장의 공동 설치·운영방안 연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9).

필자 박태호(朴台浩)

회갑 回甲

정의 육십갑자의 갑이 돌아왔다는 뜻으로, 예순 한 살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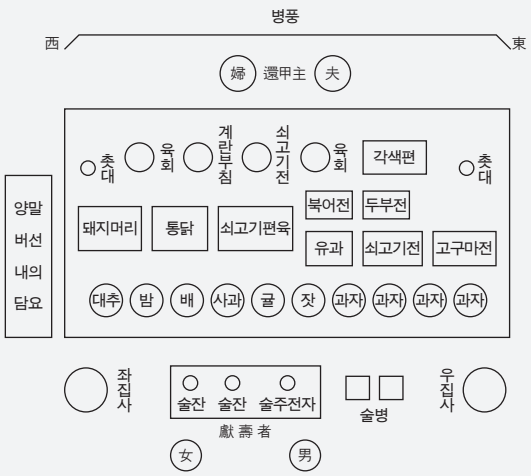
역사 61세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 기록된 것으로는 환갑換甲·화갑花甲·환갑還甲·회갑回甲·주갑周甲·화갑華甲·환력還曆 등이 있다.

환갑에 대한 첫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의 1296년(충렬왕 22) 정월 조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충렬왕 병신 22년 조의 기사에서 "그때 왕의 나이 61세, 무꾸리[術者]가 환갑이 액년厄年이라는 말을 하기에, 은혜를 베풀고 죄인을 풀어주어 용서하였다時, 王年六十一, 術者, 有換甲厄年之說, 故推恩肆宥."라고 한 대목에서 발견된다. 환갑에 관한 첫 기록은 청천당聽天堂 심수경沈守慶(1516~1599)의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 7언 절구에서 "나는 여든, 아들은 환갑還甲을 넘었네, 부자가 모두 장수하네吾踰八耆兒還甲, 父子俱爲壽域人."라고 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회갑에 관한 첫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682년 (숙종 8) 10월 9일 조 기사에 "내년은 자의대비慈懿大妃의 회갑이 되는 해입니다. 민간의 미천한 백성도 부모의 회갑이 되면 술을 거르고 음식을 장만하여 친족을 모아 경하하니, 이는 곧 인정상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明年適當慈懿大妃回甲之年. 閭巷小民, 當父母回甲之歲, 猶且釃酒設饌, 聚族而慶之, 此乃人情之所不能已者."라고 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지식인과 중산층의 시민은 '회갑回甲'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며, 한반도 전역의 보통사람과 농어촌 지역의 서민은 '환갑還甲'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환갑', '회갑', '화갑'이라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만갑挽甲, 輓甲'이라 한다. 환갑을 맞이한 사람을 '환갑주' 또는 '갑주甲主'라 하고, 나이 예순한 살이 되는 해를 '환갑년' 또는 '갑년甲年'이라 한다. 그해의 생일을 '환갑날' 또는 '갑날甲日'이라 하고, 죽은 사람의 갑날을 '만갑날挽甲日, 輓甲日'이라 한다. 갑주가 살아있는 경우, 환갑날 아침 자녀들이 갑주 부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헌수를 하고 환갑잔치를 베푼다. 환갑잔치는 환갑날 아침에 큰상을 차려 놓고 갑주 부부가 수연석壽宴席에 앉으면 먼저 장남 부부가 술잔을 올리며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배례, 폐백, 축원 순으로 헌수례獻壽禮를 행한다. 갑주가 죽은 경우, 고인의 갑날 아침에 자녀들이 집이나 묘지에서 제상을 차려 놓고 삼헌고축三獻告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갑사甲祀를 지낸다. 만갑잔치는 갑사의 음복절차가 확대된 것으로 자녀들이 가족과 친지, 고인의 동년배들을 초청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축제이다.

'산 제사'라고도 하는 환갑잔치의 상차림은 부모를 위한 큰상[望床]과 하객을 위한 주안상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환갑상차림은 가풍과 지역, 경제적 여건,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제상차림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환갑상에는 밥과 갱을 놓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고, 고임음식 뒤에 장국상(입맷상)을 곁들어 놓기도 한다. 환갑주의 부모가 살아있으면 큰상 앞에 돌상을 차려 놓고 환갑주가 부모님께 헌수례를 하고, 재롱잔치를 열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큰상의 고임음식 그릇은 홀수로 배치하고, 고임음식은 제사상차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음식의 높이는 다섯 치, 일곱 치, 아홉 치 등으로 높게 쌓는다. 고임음식으로 가득 진설한 큰상의 좌우에 폐백 선물과 상화床花를 배치한다. 큰상의 고임음식 전면에 축祝, 수壽, 복福 등의 글자를 색상으로 맞춰 부모님의 만수무강, 생기복덕을 축원한다. 고임음식 높이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의 척도라고 여겨 숙수熟手라 불리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임음식을 높이 화려하게 장식한다.

환갑잔치 수연석과 수연상



환갑잔치에서 헌수례는 환갑주가 자녀로부터 받는 효행 가운데 으뜸이다. 헌수절차는 환갑주의 부모가 살아계시면 오색반란지경五色斑爛之慶이라 하여 환갑주가 큰상 앞에 돌상을 차리고 붉은 띠를 매고 어린애처럼 꾸며 재롱을 부리고 헌수를 한다. 그런 후 환갑주 부부가 수연석으로 인도되어 보료에 앉으면, 환갑주의 직계비속의 자녀들이 서열대로 북향으로 도열하여 남자는



회갑 | 1940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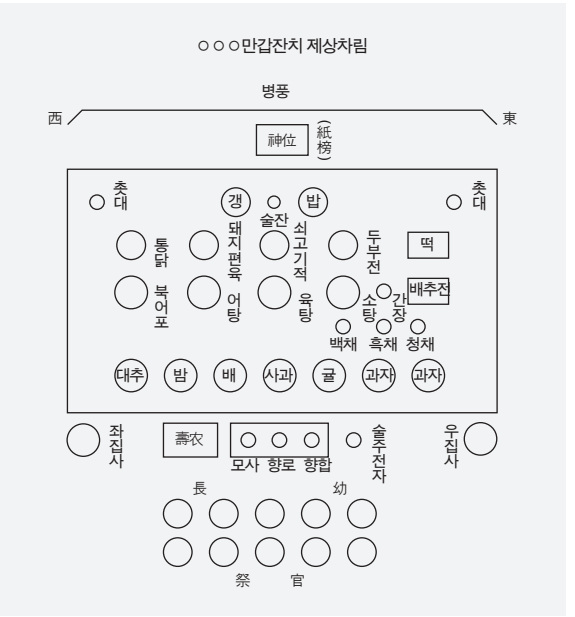
우집사, 여자는 좌집사 도움을 받아서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과 생기복덕을 축원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직계비속 자녀들과 친척들을 제외하고 동년배 친지들과 하객들은 큰절을 하지 않고 목례와 악수, 축하로 헌수례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헌수를 할 때, 자녀들이나 친지들, 동년배 친구들, 하객들 중에 축하, 축시, 축사, 수의, 장신구, 기념품, 기념논총, 축가, 축무 등을 헌정하면, 환갑주 부부는 자녀들이 장만한 폐백 선물인 수건, 양말, 버선, 내의, 담요, 이불 등을 가까운 친척과 동년배, 하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특히 1997~1998년 IMF경제위기를 겪은 이후로 도회지의 많은 가정에서는 환갑잔치를 하지 않고 환갑날 또는 주말에 인근 예식장이나 뷔페식당에 모여 직계비속 자녀들을 중심으로 부모님께 헌수례를 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으로 환갑잔치가 바뀌었다. 더구나 2007년 제2의 IMF경제위기설이 퍼지면서 도시와 농촌의 많은 가정에서 환갑잔치를 하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부모만 기념여행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헌수례 풍속이 점차 바뀌고 있다.

갑년이 되기 전에 고인이 된 부모님의 갑일에 갑사를 지내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 후, 부모님의 영생을 축원하는 만갑잔치를 베푼다. 이때 만갑잔치의 준비와 청첩·갑사·만갑잔치 등의 과정은 환갑잔치와 별반 차이가 없다. 죽은 사람의 만갑날 아침에 갑사를 지내는데, 집에서 지내는 경우와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다. 갑사는 기제사에 준해서 제상을 진설하되 만갑옷 등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고 부유한 가정에서는 음복을 확대하여 만갑잔치를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가족들이 음복을 나누는 것으로 갑사를 마무리한다.

특징 및 의의 환갑의례는 재생再生을 기원하는 통과의례의 절차와 구조, 특성을 함축하고 있고, 혈연과 지연, 학연, 직연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있다. 환갑의례를 통과한 환갑주는 혈연과 지연, 학연, 직연 공동체 성원으로부터 '갑 지낸 노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또한 만갑주는 '갑 지낸 조상신'으로서 가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조상신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茶山詩文集,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聽天堂詩集, 한국인의 삶에서 수연례가 갖는 의미 분석(김만태, 실천민속학연구12, 실천민속학회, 2008), 한국인의 환갑의례(최종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한·중 연령의 별칭 비교-총각과 화갑, 환갑을 중심으로(유현아, 중국언어연구34, 한국중국언어학회, 2011), 회갑의례와 그 의식에 관한 인지도 연구(박명숙,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필자 최종호(崔鍾浩)

회갑상
回甲床

정의 나이 예순 한 살이 되었을 때 베푸는 생일잔치상.

내용 회갑回甲은 '주갑周甲', '환력還曆', '환갑還甲'이라고도 하고 이때에 베푸는 잔치를 '화연花宴', '환갑연', '회갑연', '갑연甲宴'이라고 한다. 나이 예순한 살을 회갑이

라고 하는 것은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가 짜 맞추어져 그 최소 공백수인 60주기로 편성된 육십화갑자六十花甲子를 일순一巡하였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갑자년甲子年에 태어났으면 61세에 다시 갑자년을 맞이하니까 태어나서 60년을 경과하여 생년의 간지干支를 맞이하는 것이다. 60년의 간지 편성을 일순하는 것은 한 주기의 인생을 다 살았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다음 인생이 탄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환력생일을 축하하는 풍습을 회갑이라 하여 잔치한다.

조선시대에 효孝는 충효쌍전忠孝雙全·충효일맥忠孝一脈에서 보여 주듯이 충忠과 함께 조선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사상적 기둥이었다. 백행百行의 근본根本이요, 만화萬化의 근본이었던 효의 요체는 경敬(존경)과 순順(순종)이었다. 부모가 생일을 맞이하였을 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성대하게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의 발로이며, 당연한 일이었다. 최립崔岦(1539~1612)이 쓴 『간이집簡易集』「신동추경수도시서申同樞慶壽圖詩序」에는 그 뜻이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 어버이를 위하는 효자의 정성 어린 마음은, 그 자신이 가난하여 쌀을 멀리서부터 등에 지고 오든, 솥을 늘어놓고 음식을 만들어 진수성찬을 맛보는 신분이든 간에, 오래 살면서 출세하여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다행히 그러한 행운을 얻게 된다면 술과 음식을 차리고 음악을 준비하여 영화로움을 받들어 즐거워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 또한 자식의 경사이다.

생일잔치 중 가장 경사스러운 잔치가 회갑연이었다. 수명이 그다지 길지 못했던 조선시대에 회갑까지 60년 동안 사는 삶은 진실로 축하할 만한 일이었으므로, 자손들은 성대하게 회갑상을 차려 헌수주獻壽酒와 음악이 동반되는 회갑연을 올려드렸다. 이때에는 자식·손자·일가친척·이웃들이 전부 모여 축하하며 주인공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수주壽酒를 올린다.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를 보면, 정조正祖가 회갑을 맞은 모친 혜경궁 홍씨에게 올린 회갑상은 찬안饌案과 주별미晝別味로 나뉘어 차려졌다. 이 상차림과 회갑연에 참석한 손님에게 차린 상차림을 비교하여 회갑상이 가진 성격을 파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자궁慈宮(혜경궁 홍씨를 지칭함)에게 올린 찬안은 심홍변흑조각대원반心紅邊黑雕刻大圓盤 1좌와 흑칠조각중협반黑漆雕刻中挾盤 5좌에 82기의 당화기唐畫器를 사용하여 한 자 두 치에서 다섯 치 높이까지 찬품을 고여 담아 차렸다. 각색 설기, 각색 밀점설기, 임자절병, 각색 절병 및 증병, 각색 조악 및 화전, 약반, 오색수단, 맥수단, 낭화, 수면, 강병, 약과, 만두과, 다식과, 흑임자다식, 송화다식, 잡당다식, 황률다식, 신감초다식, 홍갈분다식, 홍차수, 백차수, 오색강정, 삼색매화강정, 삼색요화, 팔보당, 옥춘당, 인삼당, 어과자, 사탕, 오화당, 잡당, 민강, 귤병, 잉금, 사과, 이실, 유월도, 자도, 복분자, 청포도, 서과, 진과, 생리, 송백자, 실호도, 증황률, 증대조, 각색 정과, 수정과, 이숙, 수상화, 칠계탕, 생치탕, 양포탕, 천엽탕, 족탕, 추복탕, 저육탕, 각색 절육, 편육, 계전, 합전, 생선전, 양전, 간전, 전복초, 해삼초, 홍합초, 화양적, 각색 만두, 구증, 부어증, 연계증, 갈비증, 생복숙, 어채, 인복회, 생복회, 백청, 개자, 초장, 소주가 찬안의 찬품이다. 여기에는 대수파련 1기·중수파련 4개·소수파련 9개·삼색목단 3개·월계 2개·사계 2개·홍도삼지건화 24개·홍도별건화 23개·홍도별간화 15개 등 총 83개의 상화床花를 꽂았다.

자궁에게 올린 주별미는 심홍변흑조각대원반 1좌와 흑칠조각중협반 4좌에 40기의 당화기를 사용하여 아홉 치에서 네 치 높이까지 찬품을 고여 담아 차렸다. 각색 병, 약반, 병시, 수면, 만두과, 삼색연사과, 잡당다식, 삼색매화강정, 각색왜당, 각색당당, 조란, 잉금, 이실, 유월도, 복분자, 서과(수박), 진과(참외), 도전, 복분자고, 각색정과, 수정과, 이숙, 수상화, 금중탕, 초계탕, 각색절육, 편육, 각색전유화, 숙복초, 연저적, 연치적, 구증, 연계증, 삼복숙, 부어백숙, 어회, 생복회, 청, 개자, 초장, 소주가 주별미상 찬품이다. 여기에는 대수파련 1기, 중수파련 1개, 삼색목단화 3개, 월계화 1개, 사계화 1개, 홍도삼지건화 5개, 홍도별건화 10개, 홍도별간화 10개 등 모두 합해 32개의 상화를 꽂았다.

이 밖에 최측근 왕족들을 위해서는 흑칠대원반 1좌에 40기의 갑번자기甲燔磁器를 사용하여 찬품을 고여 담아 차린 내입內入 1상, 흑칠중원반 1좌에 20기의 갑번자기를 사용하여 찬품을 고여 담아 차린 내입 2상, 홍칠중

원반 1좌에 18기의 갑번자기를 사용하여 찬품을 고여 담아 차린 내입 6상이 있었고, 15기를 차린 내외빈상상內外賓上床 215상, 13기를 차린 내외빈중상 20상, 10기를 차린 내외빈하상 50상, 15기를 차린 조정상상상朝廷床上床 15상, 13기를 차린 조정상차상朝廷床次床 205상, 9기를 차린 조정상중상朝廷床中床 100상, 8기를 차린 조정상하상朝廷床下床 130상, 각각 6기로 하여 겸상 60상을 준비한 시위백관상이 있었다.

혜경궁 홍씨에게 올린 82기를 차린 찬안과 40기를 차린 주별미를 합하면 122기가 되는데 찬안과 주별미가 차려진 가운데 헌수주獻壽酒와 정재呈才(춤)가 반복되면서 회갑연이 개최되었다. 6기를 차려 겸상하도록 한 시위백관상에 비하면 122기는 엄청난 것이며, 이는 회갑을 맞는 주인공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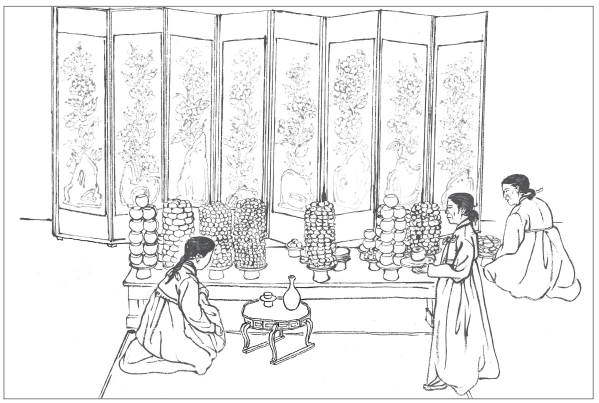
당연히 사대부가의 회갑연은 조선왕조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다. 비록 그 규모는 조선왕조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구성은 비슷하였다. 혜경궁 홍씨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올린 찬안인, 대탁大卓과 같은 성격의 상을 '큰상[大床]'이라 했고, 혜경궁 홍씨가 먹도록 마련한 주별미와 같은 성격의 상을 '입매상'이라 했다. 큰상에는 일반적으로 제1행에 높게 고여담은 형태로 실과류를 담아 8기를 차리고, 제2행에 유밀과油蜜果류와 각색 떡 8기를 역시 고여 담아 차렸으며, 제3행에는 맛있고 귀한 찬饌류를 고여 담아 7기를 차렸다. 이 상을 '망상望床'이라고도 하였다. '망望'은 바라다는 뜻이다. 장수를 기원하는 상이란 뜻이다. 정조 치세 이후에 전개된 민간의 큰상에는 상화도 꽂았을 것이다.

물론 주인공은 이 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자손들이 따라주는 헌수주와 함께 한바탕의 풍악도 곁들여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고, 이후 큰상에 올렸던 음식은 허물어 사찬도 하고 집안 모든 식구에게 나누어 먹이고 대접한다. 주인공에게는 따로 먹을 수 있는 나물·김치·편육·구이·전·회·찜·초장·청장·면麵(국수)·탕 등으로 구성된 입매상을 원반에 차려 올렸다.

큰상이 회갑연에서 주인공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차린 상이라고 한다면, 큰상과는 별도로 주인공이 받는 입매상 역시 자손들이 주인공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차린 헌주상獻酒床과 함께 올리는 술안주상이다. 헌주상에는 헌수주가 가득 찬 술잔 만수배萬壽杯를 올렸는데, 입매상의 찬품은 이 만수배와 함께 장수를 기원하면서 차린 술안주가 되는 것이다. 헌주 때에는 노래도 불렀다. 노진盧禛(1518~1578)이 모친 수연 때에 불렀던 노래에는 부모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자손의 효심과 함께, 만수주와 곁들이는 안주상인 입매상의 비중이 잘 나타나 있다. 노진의 『옥계집玉溪集』에 수록된 이 노래는 다음과 같다.

> 만수산萬壽山 만수동萬壽洞에 만수천萬壽泉이 있더이다.
> 이 물로 술을 빚어 만수주萬壽酒라 하더이다.
> 이 잔을 잡수시면 만수무강萬壽無疆하시리다.

특징 및 의의 현재 큰상이란 '축하를 드리는 뜻으로 차리는 특별한 상차림'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회갑연이 주인공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는 잔치라는 것을 의미하며 회갑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큰상을 올리는 것이다. 민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1975년에 나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는 각종 생과일·유과[油果]·강정·다식·실백(잣)·호도·



회갑 상차림 | 국립민속박물관



회갑상 | 부산박물관

생률·대추·곶감·당속(사탕류)·정과·편[餠](떡)·약식·포 등을 색에 맞추어 고여 올린다. 잣은 수壽·복福 등의 글자가 반듯하게 나타나도록 색깔을 들여 고인다. 또 포脯를 고일 때에는 여러 가지 포를 포개어 담은 후에 마른 문어다리로 꽃모양으로 오려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들을 차려 큰상이라 하였다. 이 큰상을 주인공 앞에 나란히 놓고, 술안주상에 해당하는 입매상인 찜·신선로·전·편육으로 구성된 장국상을 따로 차린다.

참고문헌 簡易集, 玉溪集, 園幸乙卯整理儀軌, 조선시대 생일노래의 성격과 전승연구(이상원, 국제어문26, 국제어문학회, 2002),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조선조 효인식의 기능과 그 전개(조광, 한국사상사학10, 한국사상학회, 199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김상보, 광문각, 1997).

필자 김상보(金尙寶)

회격
灰隔

정의 땅에 구덩이를 판 후 관棺 또는 곽槨을 안치하기 위해 회灰를 써서 구획하는 것.

역사 우리나라에서 회격이 처음 사용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고려 말 중국 남송南宋의 주자朱子가 지은 『가례家禮』가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전래되자, 회격을 만들어 무덤을 만드는 방법이 알려졌을 것이다. 조선 건국 후 세조가 석곽과 석실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자, 왕족을 비롯한 지배계층에서는 석곽과 석실 대신에 회격을 만들어 광중壙中을 단단하게 한 후 목관과 목곽을 안치하는 회곽묘灰槨墓를 채용하게 되었다. 회격은 조선 건국 이전에 전래하였지만, 사용이 일반화된 것은 세조 사후인 15세기 중반 이후였다. 석회를 사용하여 광중을 조성한 회격과 회곽묘는 조선시대 전全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다. 그러나 석회의 값이 비쌌으므로, 부유층만이 다량의 석회를 사용하여 제대로 회격을 만들 수 있었다. 20세기에 석회와 비슷한 성분인 시멘트를 이용하여 광중을 조성한 경우가 흥선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의 무덤에서 찾아졌으나 특이한 예에 불과하다.

내용 주검을 관에 넣어 매장하기 위해서는 땅에 구덩이를 파는데, 이것을 '광중'이라고 한다. 광중은 관이나 곽이 들어갈 만큼만 좁게 판다. 구덩이를 판 후에는 관과 곽을 놓을 자리에 널판지를 이용하여 관 또는 곽의 형태처럼 만들고, 바닥을 비롯한 구덩이와 널판지 사이에 석회와 가는 모래와 황토를 3:1:1의 비율로 섞어서 물에 개어 넣는다. 석회와 가는 모래와 황토를 '삼물三物'이라고 하는데, 삼물을 이용하여 관 또는 곽을 놓을 자리를 만드는 것을 회격을 만든다고 한다. 회격은 삼물 중에 석회가 주된 재료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회격은 광중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관과 곽이 나무뿌리나 곤충 등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다. 회격을 만든 뒤에는 관과 곽, 또는 관만을 그 안에 넣은 후 다시 삼물로 그 위를 덮는다. 이는 석회가 가는 모래와 황토와 섞여 돌처럼 단단해지는 성질을 이용해, 관과 관이 동식물의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인위적인 도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회벽의 두께는 일정하지 않았다. 10㎝ 남짓으로 얇게 만들거나 수십 센티미터에 이를 정도로 두껍게 만들기도 했다. 회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었으므로, 회를 사용하여 만든 회격은 관과 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적합하였다. 또한, 두꺼운 회벽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여 밀폐시킴으로써, 주검과 같이 관 속에 넣은 여러 상례·장례 용품 등이 산화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발견되기도 한다. 회곽에서 발굴된 주검과 여러 가지 문물은 장례 당시의 문화와 피장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당시의 역사와 문화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징 및 의의 회격은 관과 곽을 안치하기 위해 광중을 마련하고 광중을 관과 곽의 모양에 맞추어 단단하게 구획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지배층과 부유한 계층에서 크게 유행한 회곽묘를 조성하는 방법이었다. 최근 들어 회곽묘를 회격묘라고 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회격은 회곽을 만드는 과정의 하나를 일컫는 용어이므로 회격묘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增解,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考,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영원한 만남 한국 상장례(국립민속박물관, 1990).

필자 김영관(金榮官)

회다지

정의 흙에 회를 섞어 다진다는 말로, 관을 광중壙中에 안치한 뒤 일꾼들이 흙으로 채우거나 봉분을 축조하면서 발로 단단하게 밟는 일.

개관 회다지를 하는 이유는 나무뿌리 혹은 뱀·쥐·여우 같은 동물이 광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이다. 회다지를 '다구질' 또는 '달구질'이라고 부르는데, '흙을 다지는 일'이라는 점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들이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래서 달구질을 하면서 〈회다지소리〉를 하기도 하고, 회다지를 하면서 〈다구질소리〉를 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노동의 장소만 다를 뿐 노동의 행위나 노래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흙을 다지는 경우는 보통 광중을 흙으로 채우거나 봉분을 만들 때, 집을 짓기 전에 집터를 단단하게 다질 때, 제방을 단단하게 쌓을 때 등이다. 또한, 흙을 다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흙을 운반하여 쌓은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흙을 운반하는 도구인 가래를 이용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가래질소리〉를 부르기도 한다. 가래질은 1인이 하거나 3인이 하는 작업인데, 주로 흙을 많이 운반해야 할 때는 3인이 1조가 되어 가래질을 했다. 이를 '장부질'이라고 불렀고, 장부질을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래질소리〉라 하였다. 이 노래는 흙을 쌓는 때뿐만 아니라 흙을 다질 때에도 불렸다. 그래서 흙을 다지면서 부른 노래의 명칭으로 〈회다지소리〉·〈다구질소리〉·〈가래질소리〉 등이 뒤섞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흙을 다지는 일을 하면서 사용한 막대기를 '횟대' 혹은 '달굿대', '연춧대' 등으로 부른다. 보통 '달구'에는 굵은 통나무 토막 위에 손잡이가 2개 혹은 4개가 달려 있다. 쇠로 된 것을 '쇠달구'라고 하고, 나무로 된 것을 '목달구'라고 부른다. 돌덩이에 줄을 달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달구를 공중에 높이 들었다가 땅에 떨어뜨려 흙을 다진다.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노동의 피로를 덜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달구를 들어 올렸다 놓았다 한다. 이를 '달구질' 혹은 '달구방아'라고도 부른다. 선소리꾼은 북을 치면서 노랫말을 선창하고, 일꾼들은 달구질하면서 후렴을 부른다.

내용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관을 묘상각墓上閣에 안치하고, 하관 시간이 되면 복인들이 관을 묶은 새끼를 풀어 하관한다. 그다음, 내광內壙과 관 사이에 회를 채우고 명정銘旌을 덮은 뒤 상주 이하 복인들이 조금씩 실토實土한다. 실토가 끝나면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내광에 흙을 붓고, 흙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한번 회다지를 한다. 한번 다진 후에 다시 흙을 넣어 중광中壙을 채운다. 내광이 흙으로 메워져 평지와 같이 되면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평토제에 이어 봉분을 만드는데, 성분成墳을 계속하고 흙을 달구로 다지면서 일꾼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때는 광중에 흙을 채운 뒤 일꾼들이 선소리꾼의 소리와 북장단에 맞추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다지기도 한다. 간혹 달구질을 하는 동안 망인의 사위나 조카 등을 데려다가 봉분 위에서 춤을 추게 하여, 그들로부터 담뱃값이나 술값을 받기도 한다.

지역사례 강원도 횡성의 〈회다지소리〉는 의식요의 하나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1984년 12월 18일 지정)인데, 장례 때 하관이 끝난 후 회灰를 넣고 다지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하관이 끝난 후 회다지는 연회挺灰·청회錆灰·방회傍灰의 순서로 진행된다. 회다지꾼 여섯 명이 금정金井 안에 들어가 선소리꾼이 앞뒤에 서서 선소리를 주면, 율동과 함께 그 소리를 받으면서 회작대기로 찧고 밟으면서 다진다. 먼저 첫 번째 연회挺灰 과정에서 회다지꾼들은 선소리에 맞춰 서로 등을 대고 엎드려, 서서히 다리를 드는 율동을 반복하는 느린 가락과



회다지 | 경북 청도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동작으로 회를 다진다. 그리고 두 번째, 청회靖灰 과정에서 회다지꾼들은 회작대기를 바꾸어 쥐면서 회를 다지며 돌아가는데, 이는 앞의 연회 과정보다는 조금 빠른 중간다지기 과정이다. 이처럼 회다지기 과정은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전개된다. 마지막, 방회方灰 과정은 회다지기가 절정을 이르는 과정으로, 두발차기와 세발차기의 율동으로 진행되며 소리가 매우 빠르다. 회를 굳게 다지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횡성 지방에서만 전해지는 것으로, 회다지기가 막바지에 이르면 회다지꾼과 금정 밖의 모든 일꾼이 한데 어울려 큰 율동과 함께 "에헤라 달회"를 우렁차게 부르며 회다지를 마무리한다.

충청남도 공주 우성면 봉현리에는 상엿소리 가운데 〈흙가래질소리〉와 〈달공소리〉가 전해지는데, 달구질 장면은 에헤소리—달공소리—잦은달공—에헤소리로 진행된다. 에헤소리는 달구꾼들이 다 함께 부르는데, 세 번의 "에헤—" 중 첫 번째는 왼팔을 반쯤 비스듬히 벌려 앞으로 모으고, 두 번째는 오른팔을 비스듬히 벌려 앞으로 모으며, 세 번째는 양팔을 비스듬히 벌려 앞으로 모은다.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각각 3분박 4박 1마디씩이다. 제1박에선 왼발을 한 걸음 옆으로 내고, 제2박에서는 오른발을 갖다 붙이며, 제3박에선 제자리에서 크게 다지고, 제4박에선 제자리에서 작게 굴린다. 잦은 달공소리 때는 오른발을 옆걸음질하여 오른쪽으로 다지며 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다복하고 장수한 사람이 죽었을 때 호상好喪이라 하며 〈회다지놀이〉를 한다. 이 놀이는 슬픈 마음을 해학적으로 풀어 회다지소리를 부르고, 그 소리에 따라 흥을 돋우면서 슬픔을 달래고 묘역 작업하는 과정을 놀이화한 것이다. 놀이는 상여행렬과 회다지놀이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회다지놀이의 행렬이 장지에 도착하면 상여를 내려놓은 다음, 일부는 상여를 해체하고 일부는 산역을 시작한다. 회다지를 할 때에는 "슬프고 슬프도다! 석숭에 역만제를 어찌하여 슬프던가……"라고 시작되는 성토가를 부른다. 이렇게 내광다지기가 끝나면 광중을 제거하고 평토다지기와 봉분다지기를 하고 끝낸다.

전라남도 진도 지산면 인지리 진도만가(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에서 보면, 봉분을 만들기 전에 달구질꾼들이 흙가래질의 가래소리에 맞추어 나무토막에 두 귀를 단 달구를 각자 잡고 관을 묻은 땅을 다진다.

특징 및 의의 중부지역에서는 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흙에 회를 섞기 때문에 회다지를 하지만, 남부지역에서는 회를 넣지 않고 흙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흙을 다지는 달구질을 하는 예가 많다. 특히 달구질하는 방법도 노동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강원도 횡성처럼 광중에 들어가서 다지는가 하면, 밖에서 다지는 마을이 있고, 연춧대나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으며, 발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 노래를 부르는 과정도 지역에 따라 다른데, 광중에 시신을 하관하고 흙을 덮어 평토할 때까지만 노래를 부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평토 이후부터 시작하여 봉분을 만들고 묘가 완성될 때까지 노래를 하는 지역도 있다.

이와 같은 회다지 과정에는 단순히 나무뿌리 혹은 뱀·쥐·여우 같은 동물에 의한 광중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실용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회다지 과정은 지신地神이나 산신山神에게 고하는 제의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를 위로하고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적인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판소리(국립민속박물관, 2013), 한국의 농요-4(이소라, 민속원, 1990), 한국인의 일생(이광규, 형설출판사, 1985), 횡성 회다지 연구(김선풍, 영동문화2,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86).

필자 표인주(表仁柱)

회혼례
回婚禮

정의 해로偕老하는 부부의 혼인 60돌을 기념하는 의식.

역사 유교적인 예속禮俗의 하나로, 어느 시대부터 행하여졌는지 문헌상으로는 잘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문벌門閥이 높은 집안에서 행했으며, 최근까지도 행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거나, 이미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 회혼을 맞으면 나라에서 술과 음식이나 옷감 또는 궤장几杖(국가 유

공자에게 내리는 안석案席. 안석은 벽에 세워 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이나 지팡이를 말함)을 내려 축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회갑回甲, 회방回榜(과거에 급제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 회혼을 3대 수연壽宴(장수를 축하하는 잔치)이라고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선시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회혼례도回婚禮圖〉가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은 하객賀客에 둘러싸인 늙은 부부가 혼례복을 입고 초례청에 서 있는데, 조선시대 회혼례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회혼례에 관한 시를 남겼다. 다산은 15세에 한 살 위인 홍씨와 결혼하여 60년 해로하였다. 다산은 전라남도 강진에 18년간 유배되어 있다가 57세에 풀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자식들이 마련한 회혼례를 사흘 앞두고 자신의 결혼생활을 돌아보며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썼다. 그런데 다산은 애석하게도 회혼례 당일 별세하여 회혼례를 보지 못하였다. 경기문화재단 산하 실학박물관과 남양주시에서는 2012년 8월 4일에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재마을 다산유적지에서 다산의 회혼례 재현 행사를 열었다. 다산 탄생 250주년과 다산의 세계문화인물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회혼 행사는 다산이 1810년 집안의 혼례서로 찬술한 『가례작의嘉禮酌儀』와 〈회혼례도〉 등을 바탕으로 복원·재현되었다.

내용 회혼잔치는 자녀들이 회혼을 맞는 부모를 위해 마련하는 의례이면서 잔치이다. 회혼잔치를 하려면 부부가 자녀를 두고 한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어야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없어야 한다. 회혼례 날에 노부부는 신혼부부가 혼례를 올리는 것처럼 혼례복을 갖추어 입고 혼례의식을 재현하며, 자손들로부터 헌수獻壽(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림)를 받고, 친척과 친지로부터 축하를 받는다. 이날은 자손들도 모두 고운 색 옷으로 차려입은 후 부모 앞에서 춤을 추고 어리광을 부려 부모를 즐겁게 한다.

회혼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의 회혼례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친척과 친지들을 초청한다. 전에는 대개 집에서 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음식점이나 예식장에서 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노부부가 당일에 입을 옷과 전통혼례복을 준비한다. 당일에는 신혼예식 때와 같은 초례상醮禮床을 차리는데, 음식점이나 예식장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할 때에는 마당에 차일遮日을 치고 차린다. 시간이 되면 노부부를 식장으로 모시고 나와 신혼예식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혼례식의 절차를 진행한다. 회혼식을 마친 뒤에는 초례상을 치우고 회갑잔치 때처럼 큰상을 차려놓고, 노부부를 앉힌 뒤에 큰아들 내외부터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헌수할 때에 초청한 손님들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들게 한다. 직계 자녀의 헌수가 끝나면 친척들이나 하객이 헌수한다. 이때 축하의 글을 지어서 바치기도 하고, 간단한 축하의 말을 하기도 한다. 아들·며느리·딸·사위를 비롯하여 잘 사는 친척은 적당한 선물을 드리고, 일가친척과 친지는 뜻있는 선물을 드리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는 혼인예식과 환갑의 헌수 절차를 혼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와 춤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는데, 하객들은 당사자의 해로를 축하하고, 자손들의 효심을 칭찬한다.

잔치의 규모는 자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財力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에는 10대에 혼인하는 조혼早婚 풍습이 있었으나, 사람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아 회혼례를 맞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상류층 가정에서는 부모의 회혼을 맞으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면서 가문家門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회혼을 맞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산업사회로 발전하여 도시화되면서 핵가족이 늘어가고, 부부 중심의 생활이 정착됨에 따라 서양처럼 결혼기념일에 대한 의식도 강해졌다. 그래서 회혼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사례 『한국민속종합보고서』에는 여러 지역의 회혼례 사례가 실려 있다. 1986년 12월 6일에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 원주 관설동에 사는 박○○(84세), 김○○(75세), 김○○(77세) 씨는 회혼례 예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내외 해로하고, 낳은 자식이 다 살아 있을 때 연회를 한다. 초혼初婚하는 방식대로 식을 행한다. 둘째,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고, 처음 혼례 때와 같이 식을 올리는데, 이때 아들 며느리들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아이 행세를 한다. 셋째, 상을 성대하게 차려 드리고, 아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모두 헌수한다. 회혼례 때 노부부에게 신랑·신부처럼 사모관대를 갖추고, 원삼에 족두리를 씌우고 큰상을 차리는 것은 강원도 원주, 경기도 용인·여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라도에서는 노부부가 신랑·신부처럼 혼례복을 입고 예식을 거행하는데, 사위가 함진아비가 되고, 아들이 신랑을 맞는 사람이 되며, 딸과 며느리가 신부의 시중을 드는 사람 노릇을 한다. 모든 절차가 혼인예식 절차와 같은데, 다만 대례가 끝난 뒤에 나이든 신랑·신부가 큰상 앞에서 헌수를 받고, 연회를 하는 점이 다르다.

1978년 음력 9월 10일에 가진 강원도 명주 주문진읍 향호리 2구 정○○(당시 75세)·권○○(당시 77세) 씨 부부의 회혼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당에 큰 차일을 치고 손님을 맞이하였는데, 남자 손님은 사랑과 사잇방, 안손님은 안방에 모셨다.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큰상을 차리고 자손들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고운 색옷을 차려입고, 부모 앞에서 어리광을 부렸다. 사위들도 모두 한복으로 잘 차려입었다. 큰상을 차린 방에는 병풍을 치고 그 앞에 노부부가 앉아 자손들과 친척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회갑 때와 마찬가지였다. 자손들이 식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상 앞에 나와 헌수하였다. 상에는 온갖 과일을 고이고, 떡·약과·호두·잣·전煎·육肉·떡·해산물 등을 푸짐하게 차렸다. 먼저 아들 형제가 장남·차남의 순으로 나와 술잔을 올리고, 수壽를 빌었다. 그리고 딸과 사위, 손자, 친척이 순서대로 나와 단배團拜를 하였다. 강원도 화천 상서면 구운리 양○○ 씨 내외는 1980년대에 회혼례를 치렀는데, 잔치 뒤에 부부가 가마를 타고 읍내를 한 바퀴 돌았다.

1997년에 전라북도 장수에서 치른 회혼례는 노부부가 전통혼례복을 입고, 사위가 함을 지고 들어왔다. 대례상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각각의 병에 꽂고, 밥그릇에 곡식을 담아 흰 양초를 꽂았다. 북어 두 마리에 나무젓가락으로 다리 세 개를 만들어 세워두고, 통무 두 개도 젓가락으로 다리 네 개를 만들어 세웠다. 상 가운데에는 대추와 밤을 놓았다. 노부부는 대례상을 마주보고 서서 혼례를 올렸다. 혼례가 끝난 뒤에 그 자리에 앉아 자손들의 축하주와 절을 받았다. 음식상의 차림은 결혼 잔칫상과 같았다.

경상남도 거제 남부면 저구리 박○○ 씨는 2006년 10월에 회혼을 맞았는데, 거제시에서 회혼을 맞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뽑는 '잉꼬부부'로 선정되어 거제시 문화회관에서 회혼례를 치렀다. 이들 부부는 60년 전에 혼례식을 치른 것처럼 거제시에서 준비한 전통혼례복을 입고,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를 치렀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개인이 자기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회혼례를 치른 내용과 사진, 단체에서 주관한 회혼례의 내용과 사진이 많이 실려 있다.

대한노인회 홈페이지를 보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는 2012년 12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에 남원시 금동 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에서 혼인 60주년이 된 유○○(80세)·김○○(75세) 부부의 회혼례를 가졌다. 이날 회혼 예식은 가족과 친지 등 약 1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점촉點燭,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천지례(천지신명께 드리는 예), 서배우례(배우자 서약), 근배례巹杯禮 순으로 진행하였고, 예식 후에는 두 아들 내외가 헌수하였다. 경로당 회원들은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축하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지회에서는 2012년 6월 12일에 부산시민회관에서 16쌍의 회혼례를 거행하였다.

충청남도 서산 지역신문 〈서산뉴스〉를 보면, 충청남도 농가주부모임 서산시연합회가 2013년 10월 13일에 서산시에 거주하는 김○○(83세)·박○○(81세) 부부를 비롯한 4쌍의 회혼례를 해미읍성에서 거행하여 가족과 친지는 물론 관광객의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충청남도 공주 지역신문 〈특급뉴스〉에 따르면, 공주시 새마을회에서는 2013년 10월 5일에 선화당에서 회혼을 맞는 5쌍 부부의 회혼례를 거행하였는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총 20쌍의 회혼례를 거행했다.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회혼을 맞은 6·25전쟁 참전 유공자 10쌍의 합동회혼례를 2013년 11월 15일 오후 3시에 서울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가졌다.

특징 및 의의 부부 중심의 서양사회에서는 결혼기념일에 대한 의식이 강하여 매해 이를 기념한다고 한다. 특



회혼례도 | 회혼례도첩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히 결혼 1주년은 지혼식紙婚式이라 하여 기념하고, 5주년은 목혼식木婚式, 15주년은 동혼식銅婚式 또는 수정혼식水晶婚式, 25주년은 은혼식銀婚式, 30주년은 진주혼식珍珠婚式, 35주년은 산호혼식珊瑚婚式, 40주년은 녹옥혼식綠玉婚式, 45주년은 홍옥혼식紅玉婚式, 50주년은 금혼식金婚式, 60주년은 금강혼식金剛婚式이라고 하여 기념한다. 그러나 대가족중심의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기념일을 중시하지 않았으나, 혼인 60주년의 회혼만은 매우 중시하였다. 회혼례는 자녀들이 해로한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고, 당사자는 부부가 해로하면서 자녀를 잘 길러 가정을 꾸리게 한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친척과 친지들에게 자랑하는 의례이다. 그 바탕에는 효사상과 가문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81),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한국민족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최운식(崔雲植)



효 孝

정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의 감정.

개관 효孝의 근본은 기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처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감정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는 방식은 모든 민족이나 사회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효를 어떤 식으로 제도화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효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이다. 그렇지만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孝를 특히 강조한다. 곧, 한국에서 효는 일방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일방적인 친자親子관계에 종속된 효의 개념은 손자의 조부모에 대한 효와 및 숭배로도 연장된다.

효는 보은報恩, 즉 부모의 은혜를 자식이 갚는다는 개념에 바탕을 둔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호혜互惠의 원리는 일반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상대적 상호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효가 비롯되지만, 결코 상대적 상호관계로만 설명될 수 없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효가 크게 강조되는 것이 한국적 효의 특징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보면 상호적이라고 이해되지만, 부모의 은혜와 자식의 효孝는 본질에서 그 양과 질이 다르므로 상호교환적으로 보기 어렵다. 부모의 은혜는 양과 질에서 더욱 높고도 깊다. 또한, 한없이 크다. 부모의 은혜를 한없는 것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양이나 질에서 한없는 효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상호적이 아니라 일방적이라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은 부모가 사망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가족적 차원에서 조상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관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하로서 임금으로부터, 제자로서 선생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개념은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용 한국인의 효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이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은 채 수미산을 백 번, 천 번 돌아 가죽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 골수가 드러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는 것. 즉,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례'를 들어 어머니의 은혜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보은의 구조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의 사회관계는 사회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어떤 사회에서는 은혜의 양이나 질을 무한대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부모의 은혜는 무한대가 아니고 부모가 베푼 은혜의 질이나 양을 자식이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갚는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회(기독교 중심)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랑으로 설명된다. 반드시 부모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거나 부채를 진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의 보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에 의해 낳고 기를 뿐이다. 사랑이란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은 관념을 제도화하지 않는다.

은혜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다. 보통 낳아준 은혜와 양육의 은혜 같은 어머니의 은혜를 언급한다. 하지만 재산상속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라 할 수 있다. 재산은 물론 신분, 인간관계처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거나 이어받은 것들이 효孝의 제도화에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효와 은혜를 설명할 수 없다. 자식에게 불리한 신분을 물려주거나, 재산도 주지 않고 부담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효는 강요된다. 즉,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효라는 감정은 사회적 도덕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효도라는 제도로 확장된 듯하다. 자식에게 효는 기본적인 윤리이다. 따라서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이다. 즉, 효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면서 동시에 의무로서 강요된 효도孝道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른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출산, 양육, 재산(상속)의 세 가지 은혜를 베풀고, 자식은 부모에게 대 잇기, 봉양, 제사의 세 가지 의무를 졌다.

효도의 실천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부모와 자식이 각각 자신들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이다. 즉,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이다. 둘째, 서로 주고받는 상호관계이다. 셋째, 받은 것을 제삼자에게 돌리는 구조, 즉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자식에게 돌리는 관계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낳아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자식을 낳아서 대를 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큰 불효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형태에서 첫째와 둘째만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관계가 기본이 되어 반복되는 것이다.

보은報恩 정신에 의한 부모와 자식의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질과 양을 정하는 것이다. 사정에 의해서 낳은 자식을 양육하지 못한 사람은 자식으로부터 효孝를 받을 권리가 없거나 적다, 또는 반대로 많은 재산을 남긴 사람은 많은 효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부모의 은혜는 질과 양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하다. 부모가 낳아준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은혜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 따라서 자식의 효도에 대한 의무도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헤아리기 어려워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결국, 자식도 부모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효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유학자 이을호李乙浩는 효심과 효도를 구분하여, 유교적 측면에서 볼 때 심청沈淸의 효孝는 불효라고 보았다. 여성은 출가하여 시부모를 통해서 효도하는 것이 유교적이기 때문에, 효심을 가지고 효를 행하여도 효도라는 유교적 제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효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상제사와 효(최길성, 민속원, 2010), 효의 윤리와 가정교육(이을호, 단국대학교출판부, 1977), An Introductory Commentary(Fortes, Meyer. Ancestors, In Newell ed., Paris: Mouton Publishers, 1976).

필자 최길성(崔吉城)

후토제
后土祭

정의 토지신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올리는 제사.

내용 후토씨는 땅을 주재하는 토지신이다. 『예기禮記』「월령月令」의 주에서 "오행五行 중 유독 토신土神에 대해서만 후后라고 칭하는데, 후는 임금인 군君을 뜻한다. 가운데에 있으면서 사행四行을 통솔하므로 군이라고 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운회』에서는 "땅을 후토后土라고 하는데, 두텁게 싣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옛 글자에서 후后는 후厚와 통용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토지신에 대한 제사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주자朱子는 그 기원을 중류中霤 제사에서 찾았다.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역시 참람한 듯하다. 그러나 이는 바로 옛사람들이 중류에 지내던 제사이다."라고 하였다. 『예기』「교특생郊特牲」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주자는 집의 중심인 중류를 토신으로 보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나 토신土神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제사 지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후토제의 연원에 대한 언급은 『가례의절家禮儀節』에도 보인다. 『가례의절』에서는 "옛 예를 보면 묘소의 왼쪽에 제사 음식을 놓아둔다는 글이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후토씨라는 것은 없다."라고 했다. 오직 당나라 『개원례開元禮』에만 이 말이 보인다.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는 『개원례』에 근본을 두고, 『가례』는 『서의』에 근본을 두었으니, 그중에서 상례喪禮 조항을 보면, 묘역墓域과 광壙을 열 때와 묘제墓祭를 지낼 때에 모두 후토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구준邱濬은 "문공文公의 대전집大全集을 상고해 보면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글이 있는 바, 후토를 토지로 고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가례家禮』에서는 치장治葬과 묘제 때 후토제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에 민간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에 옮겼으며, 『사례편람四禮便覽』 등 각 가례서에서도 이를 전재하고 있다. 치장하기 직전의 후토제는 치장 사실을 토지신에게 고하고 그 보우保佑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고자告者는 먼 친척이나 손님 한 사람을 택해 담당하게 했다. 진설 절차를 보면, 축祝은 집사를 이끌고 광혈壙穴의 중간에 세운 푯말의 왼쪽에 남향하여 신위를 진설한다. 잔, 주전자, 술, 과일, 포, 해를 그 앞에 차린다. 또 대야와 수건을 두 개씩 동남쪽에 놓는다.

진설을 마치면, 아뢰는 사람은 길복을 입고 들어가서 신위 앞에 서서 북향한다. 집사는 그 뒤에 서되 동쪽이 윗자리이다. 모두 재배한다. 아뢰는 사람과 집사는 모두 손을 씻는다. 집사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서향하여 무릎 꿇고, 한 사람은 술잔을 들고 동향하여 무릎 꿇는다. 아뢰는 사람은 술을 따르고 나서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들어 신위 앞에 강신降神한다. 그런 다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선다. 축은 축판을 들고 아뢰는 사람의 왼쪽에 서서 동향하여 무릎 꿇고 다음과 같이 읽는다. "모년 아무 해 아무 달 초하루에 아들 모관 아무개가 감히 후토신에게 아룁니다. 지금 모관 아무개를 위해 무덤을 영건하오니, 신께서는 보우하셔서 훗날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삼가 맑은 술과 포, 해를 공경히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읽기를 마치면, 축은 자리로 돌아간다. 아뢰는 사람이 재배하면, 축과 집사도 모두 재배한다. 철상撤床하여 내간다. 주인은 돌아가서 영좌靈座 앞에서 곡하고 재배한다.

이후에 발인發靷하여 하관한 다음 흙을 채워 점차 다지고 묘소의 왼쪽에서 다시 후토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때의 의절은 앞과 같다. 축판도 같은데, 다만 "지금 모관봉시某官封諡를 위하여 이 유택에 하관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신께서는" 이후는 같다.

이외에 『사례편람』 등 여러 가례서에 수록된 '개장改葬'에도 후토제를 치른다. 구묘舊墓와 새 영역塋域을 열 때도 후토제를 지내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구묘에서 관을 옮겨 새 무덤에 폄장窆葬하고 난 후에도 역시 후토제를 지냈다.

특징 및 의의 과거의 농본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토지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장기간의 역사적·종교적 경험이 온축되었다는 점에서, 후토제는 전통문화의 한 상징을 살펴볼 수 있는 절차이다.

참고문헌 家禮輯覽, 四禮便覽, 禮記, 朱子語類,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후행
後行

정의 신랑이 장가들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갈 때, 혹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시집으로 갈 때 신랑과 신부의 뒤를 따라 동행하는 사람.

내용 혼례일에 신랑은 장가들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간다. 이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대표하는 상객上客과 혼례를 도와줄 사람들, 즉 기럭아비, 함진아비, 교자꾼, 등롱잡이, 하인 등이 함께 가게 되는데, 이들을 '후행' 혹은 '후객', '후배後輩'라 불렀다. 후행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상객들이다. 기럭아비는 당일 혼례 때에 신랑이 전안청奠雁廳에 바칠 목안木雁, 즉 목기러기를 안고 가는 사람이다. 혼례의 상징적인 물건이므로 대단히 중요시했다. 기럭아비를 다른 이름으로

'안부雁夫', '중방中房쟁이', '혼수아비'라 부르기도 했다. 기럭아비는 유복한 사람으로 뽑는데, 첫아들을 낳은 사람을 선호했다. 부잣집에서는 기럭아비에게 붉은 철릭을 입히고 붉은 갓을 씌웠으며 때로는 옷이 평복이더라도 붉은 갓은 씌워서 보냈다. 그러나 재력이 좀 부족한 집일 경우, 기럭아비는 그냥 평복 차림으로 갔다.

함진아비는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날 함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납폐納幣 풍속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짊어지고 가는 것일 뿐이다. 신랑 일행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함진아비가 들어가서 흥정을 한다. 함진아비는 뜸을 들이며 함을 잘 내려놓지 않는다. 혼인집에서 벌어지는 재미나는 광경이다.

교자꾼은 신랑이나 상객이 말을 타지 않았을 때 가마에 태워 메고 가는 사람이다. 등롱잡이는 행렬 앞의 양쪽에 서서 길을 밝히며 가는데, 옛날에는 어두울 때 신부 집에 들어갔으므로 등롱을 들고 갔다. 그러나 부잣집에서는 길이 어둡지 않아도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등롱잡이를 대동시켰다. 하인이 따라가는 것은 심부름을 하고 대소사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혼례가 끝나고 3일 뒤에 신랑과 신부는 시가媤家로 간다. 이를 '우귀于歸'라고 하는데, 신부 입장에서는 처음 시가로 가는 길이므로 '신행新行 간다'고 하였다. 이때는 신랑과 신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부 후행이 따라간다. 후행은 신부의 어른들과 수모手母, 웃각시 등이었다. 수모는 신부의 복색이나 화장을 담당하는 여인이다. 웃각시로는 신부의 올케언니나 언니, 고모 등이 따라가는데, 폐백幣帛을 드릴 때 절을 시켜주는 임무를 띤다.

특징 및 의의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혼례풍속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식을 치르는 것이었다. 이때 반드시 신랑을 따라 혼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후행이 가는데, 상객은 신랑 가문을 대표하는 어른들이고, 기럭아비는 혼인의 상징인 목안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붉은 도포를 입혀 보내기도 했다. 그 밖에 등롱잡이나 하인들이 따르기도 했는데 이들은 짐을 지고 가기도 했지만 중간에 혹시 혼인행렬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들을 막아 일행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

참고문헌 한국 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의 전통혼례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향토문화지(여증동, 경상남도, 1989), 혼례(민제, 한국민속대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필자 배도식(裵桃植)

휘장
揮帳

정의 제례 장소의 전면 또는 주위를 가리는 장막.

역사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휘장을 설치한 거대한 규모의 집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 따르면 실로 수백 명을 수용할 크기로 보인다. 이러한 주거양식은 몽고의 파오와 흡사하여 우리 민족이 유목생활을 하는 북방민족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불려拂廬'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집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서唐書』에 의하면, 당나라 조정에서 큰 잔치를 베풀 때 정전의 앞뜰에 막을 설치하고 '불려정'이라 불렀는데, 불려의 설치는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또, 654년에는 토번吐蕃에서 불려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토번은 서역과 고구려로 이어지는 문화교류의 통로에 있었던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당나라에 불려를 보낸 시기는 고구려 말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휘장은 불려가 당나라에 수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작·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옥사屋舍」에는 전포氈布로 방장房帳(휘장의 일종)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휘장의 설치는 고구려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라·백제·통일신라 때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를 비롯한 북방의 문화가 중원에 전파된 한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나 휘장을 치는 풍속은 우리 민족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주거양식이 벽체를 설치하는 양식으로 바뀜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휘장은 조선시대 종묘 정전에서 위패를 모신 각 방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외기外氣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문에 치는 방장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내용 휘장은 외기를 막는 실제적 기능과 더불어 제례 공간임을 알리는 의례적 상징물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제례」에 보면, 교의交椅(위패를 모시는 의자), 제상祭床, 역帟(제상 위를 가리는 작은 장막), 막幕(제상 주위를 가리는 장막)이 등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거와 생활환경이 변하면서 휘장이 사용되는 예는 더욱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늘날 영정의 전면에 휘장을 드리운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나, 제사에서 휘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휘장은 주변과 차단하여 제장祭場을 신성하게 정화하는 의미가 있다. 아마도 병풍이 사용되면서 휘장이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불천위제례(김길영, 민속원, 2011),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권삼문(權三文)



흠향
歆饗

정의 조상이 제상에 차려진 제사음식을 받아들이는 행위.

개관 흠향은 모든 제사에서 신위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절차부터 시작된다. 명절의 차례, 절기의 제사와 천신, 생신제 때는 먼저 제사음식을 제상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일반가정의 제사 중에서 흠향의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되는 기제사는 제물을 모두 차려놓거나 또는 진설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차리는 두 가지 진설 방식을 따른다. 진설을 나누어 차리는 것은 참신과 강신이 있기 전에 손길이 적게 가는 포와 혜, 신선한 실과와 채소 등의 제물을 먼저 차려 조상의 기운이 깃들길 바라는 뜻이다.

2차 진설은 조상이 제사에 참석한 이후에 시작된다. 제물은 메와 갱, 도적과 편류, 탕류로 주로 훈훈한 기운이 있는 따뜻한 음식, 신선한 생물, 금방 만든 음식 등이다. 이를 진찬進饌이라고도 한다. 이런 절차는 사당에 신주를 모신 집들이 따른다.

내용 먼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술로 헌작을 하면서 안주를 올리는 의미로 진적進炙이 행해지고, 축관의 독축이 따른다. 불천위제 또는 길제의 축문 끝에 보면 "삼가 이에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이 제사를 올리옵니다. 흠향하소서謹以淸酌庶羞, 祗薦歲事, 尙饗"라는 내용이 나온다. '상향尙饗'은 기제사와 길제의 상용구로 흠향에 해당한다. 축문을 고유하지 않는 집안에서는 바로 유식侑食을 한다. 유식은 민간에서 '조상이 아홉 술의 밥을 드실 정도의 시간' 동안 제관들이 부복하여 기다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숭늉 또는 차를 조상에게 드리는 진다進茶, 헌다獻茶를 한다. 참례자는 조상이 차를 드시는 동안 허리를 굽혀 기다리는 국궁鞠躬을 행하고, 축관이 주인에게 제사를 순조롭게 끝내고 있다는 뜻으로 '이성利成'이라 알리면 흠향이 종결된다.

흠향은 조상의 혼이 찾아오면 제사를 지내는 제주와 부인이 1년 동안의 안부와 사정을 전하면서 한 끼의 음식을 대접하고 보내는 절차에 포함된다. 유식은 조상이 음식을 드시는 절정의 시간이므로 마음껏 드시길 바라는 뜻에서 축문에서 '흠향'이라 한다. 즉, 술을 비롯한 모든 음식을 드시듯 냄새와 기운을 받아주시길 바라는 염원이 담긴 표현이다. 흠향은 제사 등 의례에서 상용화되어 길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오늘 제사음식을 할아버지가 잘 운감殞感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후손들의 말은 조상의 직접적 행위를 상상함으로써 제관의 염원과 제사의 결과를 평가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또, 조상이나 선현이 운감한 음식을 음복하면 자손이 복을 받고 선현처럼 재주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조상은 이처럼 제사음식 먹는 것을 '음복', 제삿밥을 '복반', 제주를 '복주'라고 하여, 신들이 운감 또는 흠향한 음식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또한 참례하지 않은 자손, 이웃, 초상집 등에까지 제물을 봉송하여 공식共食하려고 했다. 음복을 통한 제사음식의 공식은, 제

물을 나눔으로써 조상과 후손, 선현과 후예의 혈연관계나 교감의 도리가 지켜진다는 믿음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죽은 이의 흠향과 운감은 불천위, 시향제, 향사, 명인의 제사에 참여하려는 후손들의 대가가 기대되는 의식으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 과정에 관한 일 연구(정승모, 인류학논집5,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1979), 조선후기 제사 절차와 행례의 차이(최순권, 조선시대 제례와 목제구, 단호문화연구9, 용인대학교박물관, 2005),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권삼문·김영순, 민속원, 2003).

필자 김영순(金永順)



희생
犧牲

정의 제사를 위해 산 동물을 잡아 마련한 날것의 육류 제물.

역사 『예기禮記』「제의祭儀」 제24에는 희생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제삿날에 임금은 희생을 끌고, 태자도 이를 같이 끈다. 경대부는 관직의 순서대로 임금의 뒤를 따른다. 묘문廟門에 들어서면 희생을 돌기둥에 매어둔다. 경대부는 소의 털을 취하여 신령께 바치는데, 귀의 털을 먼저 바친다. 그다음 방울 달린 칼로 소를 찌르고 율로脾臂라는 소의 피와 기름을 취하여 제사를 지내고 물러선다. 다음에는 삶은 고기와 날고기를 제기에 올려 제사 지낸 후 물러선다. 이것이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또, 『예기』「교특생郊特牲」 제11에는 "천지에 제사하는 교사郊祀에는 먼저 희생의 피를 올린다. 천자의 조상신 제사인 대향大饗에는 날고기를 올린다. 지경至敬의 제사는 맛을 올리지 않고 냄새를 귀히 여겨서 냄새를 권한다. 이것이 교사에서 먼저 희생의 피를 올리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종묘, 성균관과 향교의 문묘, 서원에 쓰이는 희생과 제물의 숫자를 차등 있게 규정하여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였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에서는 희생을 살펴보는 홀기에 따라 희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기록과 실제 관행이 전해져 온다.

내용 희생은 종묘와 문묘, 석전과 향사에서 제상 중앙의 제기인 조俎 위에 놓는, 가장 비중 있는 제물이다. 갓 잡아 피 흘리는 동물의 몸통 전체를 올린다는 의미에서 주로 머리를 진설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생육을 올린다. 희생으로는 주로 흑색의 양, 소, 돼지를 이용하였다. 흑색의 동물이 희귀해지자 점차 누런 소로, 농경사회에서 소가 주요 가축이 되면서 양으로, 다시 돼지로 바꾸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사의 희생으로 닭을 진설하였다.

희생은 고대 유목민족의 식습관을 보여준다. 희생의 제물을 불에 살짝 그슬린 것에서 살균과 소독의 위생처리방식이 보이고, 화식火食한 것을 보면 음식문화의 발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인에게 올리는 희생은 자연 그대로의 혈식을 강조한다. 다만, 보통 소규모의 제사에서는 살아 있는 날것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지만, 성대한 제사에서는 혈식이 가능하도록 형태만 보존하여 바쳤다. 또한, 조선시대 제사에서는 희생에 쓰이는 제물로 유목민의 야생육과 농경민의 가축을 혼용했다.

불천위제사에서는 살아 있는 날것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만 강조했지만, 우리 조상은 기제사에서 우모린羽毛鱗, 즉 날짐승·길짐승·어류 등을 모두 포함한 제물을 희생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조상은 어떤 형태의 희생이든 날것이라면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했으며, 이런 날것의 제물을 받는 불천위의 대상을 '혈식군자'라고 부르며 존숭했다. 헌관례 때 헌주하고 나서 진첩으로 올리는 효주肴酒에서도 희생은 날것을 이용했다. 불천위가 아닌 사대봉사 제사에서도 우모린, 즉 날짐승·길짐승·생선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제상에 오른다. 이것은 시향제에서도 따르며, 가가례에서 한국적인 제물의 형태로 변형되어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안동의 제사(안동민속박물관, 2001), 조선시대 서원의 군자와 제수(김영순·조선민, 1997),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권삼문·김영순, 민속원, 2003), 조선시대 제례와 목제구(단호문화연구9, 용인대학교박물관, 2005)

필자 김영순(金永順)

부록

색인
필자
분야별 표제어 일람표

색인

기역

가가례	22, 23
가래놀이	118
가래질소리	770
가례	24, 321, 497, 671, 696, 733
가례도감의궤	25
가례언해	26
가례오복	87
가례원류	27
가례의절	27, 28
가례증해	28
가례질서	29
가례집람	30, 483
가례향의	31
가마	730
가매장	197
가묘	161
가무극적	117
가문잔치	503
가복	31, 461
가빈	228
가상제놀이	118
가신	266
가정신앙	365
가정의례준칙	31, 32, 69, 273, 451, 553
가족묘지	164
가족장	452
가톨릭	472
간납	32
간랍	32
감모여재도	33
감실	35, 198, 587
감여가	601
갑사	229, 765
갑연	766
갑오개혁	541, 577
갑 지낸 노인	766
강복	38, 461
강신	38, 93, 163, 620, 670, 715
개도둔	226
개명정	157
개사초	318
개석	530
개장	501
개화기	447
객귀물리기	284
객사	528
갱	41, 718
갱기	41
갱물	41
거릿제	470
거사사당놀이	118
건전가정의례준칙	42, 451
격몽요결	43
견여	289
견전	43, 544
결혼	45
결혼기념일	44
겹사돈	237
겹이불	125
경국대전	121, 203, 369, 497, 566
경례유찬	45
경조사	209

계급내혼제 691
계녀서 46
계례 46
계문 48, 96
계반개 49
계반삽시 49
계빈 50
계적 613
고깔 449
고려사 예지 52
고문 559
고복 246
고비 708
고사 651
고사당 52
고손 579
고애자 545
고위 92, 708, 710
고유제 250
고이성 53
고인돌 59, 147
고임새 54
고자 579
고조고비 313
고종명 528
곡 56, 578
곡령 266
곡신 74
곡한 544
골호 478
공녀 577
공다 718
공동묘지 164, 533
공민왕릉 169
공원묘지 164
공창 477
공포 58, 179
과 249
곽 59, 70
관 60, 61
관곽색 528
관곽소 528
관넋이 513
관대벗김 63
관례 46, 50, 64, 507, 512
관례벗김 496, 634
관례홀기 66
관모 172
관상감 486, 600
관욕 243
관음시식 244
관직명 569
관혼상제 31, 66, 507, 688
광 39, 453
광목 747
광중 70, 661, 702
교대 465, 538, 621
교배례 71, 127, 707
교의 72
교환혼 73, 744
구고례 278
구슬 178
구이 542
구족 195
국가장 452
국가제사 74
국궁 74
국립묘지 164
국립현충원 165
국민장 451
국수 74
국수장국상 512
국장 451
국제결혼 76
국조오례의 78, 149
군례 321

굴건 60
굴건제복 61
굴신장 148
궁중 56
궁합 78
궂긴소식 207
궐명 80
궤연 175, 442
귀신 181
귀후서 511, 528
귀후소 511
규표 145
균분상속 489
극락왕생 624
근봉 705
근친 81, 540
근친혼 67, 82, 749
금강혼식 775
금관조복형 172
금기 253, 270, 653, 656
금정틀 70
금줄 83, 633, 654, 658, 713
급묘 85, 280, 453
급묘전 544
기도 470
기도문 559
기독교 648
기두 181
기러기 545
기럭아비 86
기신재 86
기신제 440, 694
기안 87
기일비망기 87
기일생신첩 87
기일재 295
기일제 553
기자 253, 266, 656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기자속 90
기자의례 89, 506, 590, 662
기재 295
기제사 92, 304
기처 502
기호학파 23
길례 321, 696
길례요람 96
길상 138
길성 743
길일 40
길제 97, 280, 342, 544, 578
길지 153, 534
김성일 443
김장생 282, 483
김종대 487
깃발 58
까마귀 모른 식게 99
꼭두 294

ㄴ은

나경 486
나례 180, 181
나침반 486
나희 181
낙산 480
난산 253, 432, 657
날받이 444
남계선생예설 100
남계집 100
남귀여가 67
남귀여가혼 101, 176, 667
남근석 662

남녀유별 461
납골 201
납골당 201, 523
납골분함 478
납골상자 478
납골용기 478
납길 103, 444, 592
납주 96, 103, 629
납징 104, 592
납채 105, 499, 592, 593
납채서 107, 717
납채시루 205
납폐 108, 499, 593, 698, 706
납폐물목 110
납폐서 111
납폐함 110
내세 152
냉장실 529
넋건지기굿 625
넋대신 514
녜제 112, 342, 553
노제 113
놀이꾼 117
뇌주 39, 114, 586
누이바꿈혼 73
늑백 448
능묘 307
능비 166
능침제 694

디귿

다구질소리 770
다비 114
다비작법 117, 347
다산 258
다시래기 117
단군신화 274, 506
단문 168
단문친 168
단설 119, 708, 710
단자 246
단장 148
단체장 451
단헌무축 135
달구질 525
달묵이 69
담락연첩 520
담복 121, 131
담제 120, 280
당내 121, 584
당률 502
당목 748
당의 137
당일우귀 540
대갱 122
대곡 57
대공 38, 123, 194, 286, 321, 350, 461, 538, 547
대구리 226
대내림 514
대대 465
대도움 226
대돋움 226
대뜨리 226
대렴 124, 280, 286, 320, 447, 453, 511, 606, 623
대렴교 448, 450
대렴금 125, 324, 448
대렴전 544
대령 243
대례 126, 131, 248, 354, 358, 644
대례상 71, 128
대반 130

대사 54, 696
대상 131, 263, 280
대상문 283
대수장군 538
대여 289
대왕암 515
대제 149
대종 199, 234, 669
덧널 522
데릴사위제 200
도관 61
도빈 453
도신행 539
도적 133, 221
도참사상 41
도판 604
독축 134
돌 135, 139, 183, 185, 484, 658
돌띠 137
돌림제사 489
돌복 137
돌빔 137
돌상 136, 658
돌잔치 136
돌잡이 135, 139, 658
동고조 196
동기감응론 40
동뢰연 673
동상례 357
동전 246
동지 52
동천왕 151
돼지 503
두광족협형 61
두부 694
두불잔치 505
들돌 608
들돌놀이 608
딸수건 190
떡 140, 693
떡국 312

리을

류성룡 443
리 448, 538

미음

마을잔치 607
마을 제사 535
막편지 143
만가 144
만갑잔치 765
만수배 768
만시 144
만인문 629
만장 144
말 448
망갑제 229
망건 448
망상 768
망자 347
망전 544
망주석 145, 320
망차례 660
맞선 146
맞절 71
매장 147, 661, 711, 769
매태방 683
메 148, 175
메탕 41

멱목 149, 432
면 74
면기 150
면례 501
면리 501
면봉 501
면포 449
면포(명목) 448
명기 156, 179, 664
명당 153, 534
명당도 154
명목 448
명재선생의례문답 155
명절 615
명정 156, 179, 448
명주 126, 450
명주옷 190
모당 167
모란병 157
모발 460
모방주술 477, 547
모사 38
모사기 39, 158, 716
모시 450
모죽지랑가 559
목곽 60
목관 61
목기 41
목기러기 159
목묘 326
목욕 160
목용 345
묘 530
묘비 167
묘산도 154
묘소 179, 250
묘실 59
묘제 161, 553, 582, 777
묘지 163, 523, 605
묘지명 605
묘표 166
무굴관 60
무당 181, 268, 477
무덤 40, 164
무마질 344
무명 126
무복친 167
무속 513, 625
무시곡 57
무인석 168
무축단잔 650
묵신행 366, 540
문명 103, 169, 592
문무왕 515
문상 170, 212, 280, 665
문상객 483
문안 361
문안 인사 303
문인석 171
문자도 186
문중 173, 348, 584
문중묘지 164, 533
물레혼 73
미륵 663
미수 430
미역국 260, 269, 632
민며느리 67

비읍

박성원 459
반곡 174, 280, 570
반기 175
반닫이 552

반보기 81
반생 480
반장산 432
반친영 176, 354
반함 160, 178, 447
반혼 174, 640
발상 178
발인 43, 58, 113, 179, 280, 453, 513, 577
발인예배 327
발인제 451
밤달애 117
방가심 514
방목 145
방상시 179, 180
배냇머리 183, 187, 658
배냇머리자르기 183
배냇저고리 183, 184, 657, 684, 713
배위 119
백골양자 325
백년해로 76
백부 277
백수도 186
백수문 629
백수백복도 186
백일 183, 185, 186, 484, 658
백일떡 187
백일상 187
백일속도 186
백일옷 188
백채 264
백호 153
버드나무 178
버선 448, 449
벌초 188
베 450
베가르기 514
베개 448, 449
벽감 36
별전 189
병 140, 693
병원 528
병자성사 526
병풍 157, 326, 457
보공 190
보공의 339
보름 544
보삽 275
보쌈 541
보은 775
복 191
복건 150, 448
복두공복형 172
복반 779
복수결혼 192
복인 194, 285
복주 779
복차장 147, 196, 224
본종 167
봇뒤창옷 184
봉다 48
봉분 320, 770
봉사 234
봉사대수 197
봉사위 567
봉사자 488, 652
봉사조 203
봉사혼 199
봉선잡의 200
봉송 244
봉안 201
봉안단 201
봉안담 202
봉안당 201
봉안묘 202
봉안시설 201

봉안탑 202
봉제사 582
봉제사접빈객 203
봉치떡 205
봉치시루 204
부고 178, 205, 211
부귀 189
부모은중경 33, 775
부복 482
부신장 148
부여 345
부음 207
부의 207
부장품 151
부제 208, 280
부조 209, 746
부조록 210
부조묘 218
부케 210
부포 748
북두칠성 669
분골 515
분골용기 478
분릉 522
분면 363, 569
분묘 309
분상 211
분재기 212
분정기 213
분축 96, 214
분향 38, 215, 715
불교 117
불교의례 67
불교화혼식 216
불설정반왕반열반경 115
불식화혼법 216
불천위 218, 220
불천위기사 220
불천위대제 220
불천위제사 220
불천지위 220
비속 196
비위 92, 709, 710
빈 64, 224
빈례 321
빈상여놀이 226
빈소 228, 301, 622
빈장 224, 228, 639
뼈단지 478

시옷

사갑제 229, 458
사기 41
사당 52, 65, 208, 230, 236, 325, 361, 365, 587, 602, 618, 620, 622, 660
사당감실지도 36
사당도 34
사당방 36
사당제 233
사대봉사 173, 198, 234
사대부 483
사돈 236
사돈열맹 505
사돈음식 81
사돈잔치 503
사돈지 238
사례 507
사례집요 238
사례편람 106, 239, 369, 450, 483, 497
사마광 239
사마씨서의 239
사모관대 736

사분율 347
사비 167
사성 79, 444
사시제 240, 313, 342, 553, 614, 660
사신 96, 163, 242, 629
사십구재 242
사의 245
사자상 245
사제문 560
사주 78, 246
사주단자 63, 246
사주보 248
사찰 295
사처방 248
사초방 248
사회장 452
사후토 85
삭망곡 57
삭망전 249
삭망차례 660
삭장 297, 538
삭전 544
삭차례 660
산골 249, 515
산도 154
산모 653
산문 433
산바라지 713
산방 252, 654
산소 148, 533
산속 680
산신제 250
산실 252, 632, 657, 713
산실청 252
산역 148
산의 461
산전 656
산전금기 654
산전의례 253
산 제사 765
산치성 662
산통 433
산파 256, 713
산후 657
산후금기 654
산후의례 183, 258
산후조리 259, 654
삼 434
삼가 346
삼가례 64, 261, 346, 534
삼가르기 262
삼강행실도 733
삼국지 344
삼 나가는 날 683
삼날 682
삼내흠 262
삼년상 263, 673
삼베 341
삼베옷 190
삼불 434, 677
삼불거 502
삼색나물 264
삼신 266, 269, 662, 682, 713
삼신받기 267, 656
삼신상 136, 187, 267, 269, 632, 657, 714
삼신짚 269, 657, 714
삼실과 270
삼우제 271, 468
삼월장 483
삼일우귀 540
삼일장 272
삼제우지 586
삼줄 434
삼칠일 83, 258, 274, 633, 658
삼칠일속 186

삼할머니 256
삼헌 49, 430, 585, 646
삼헌고축 765
삽 275, 448
삽시정저 276, 631
상 538
상각 277
상객 277, 644, 777
상견례 277
상극 493, 599
상단권공 244
상대 530
상두계 302
상례 279, 507, 521
상례비요 282
상례언해 283
상문살 283
상변통고 284, 369
상복 61, 194, 285, 319, 673
상복법 285
상생 493, 599
상수 287
상수송서장 288
상식 288, 576
상신 480
상여 43, 289, 453, 456, 468
상여꾼 469
상여놀이 118, 227
상여장식 293
상엿소리 469
상용영반 295
상장 297
상장례 24, 250, 298
상제 491, 544
상조회사 530
상주 60, 170, 300, 727
상중 369
상차림 611
상청 301
상포계 302
상향 559
새벽문안 303
새앙낭자 725
새처방 248
새해 313
생기복덕 337, 599
생기일제 304
생신제 304
생여도듬 226
생채 265
생휘일제 304
서류부가 488
서류부가혼 173, 306
서수 145
서옥제 67, 101, 305
서운관 600
서원 348, 476, 780
석 448
석곽 60
석관 61, 478
석등 530
석문가례초 306
석문상의초 307
석물 307, 729
석상 320
석수 310
석양 310
석인 168, 320
석전 544, 576
석조물 307
석호 310
선덕여왕 157
선생복종 311
선정비 167
선조제 553, 607
선종 311

설날 52
설소과 609
설위 93, 119, 313, 710
설 차례 312
설찬도 610
성년식 314, 608
성년의 날 48, 316
성년의례 46, 608
성년의식 315
성명 569
성묘 188, 313, 317, 650
성복 280, 319, 544
성복전 544
성분 85
성분제 320
성사 578
성장의례 607
세거지 171
세계도 87
세골장 196
세종실록 477
세종실록 오례 321
세포 323
세호 145
소 249
소공 38, 123, 194, 286, 321, 344, 350, 444, 461, 466, 538, 548
소렴 280, 286, 322, 447, 510, 511
소렴교 323, 448, 450
소렴금 323, 448
소렴전 544
소목 324
소목계서 326
소묘 326
소병 326
소복 444
소사 54, 696
소산 480
소상 131, 263, 280, 326
소상문 283
소여 290
소적 613
소종 199, 234
소천 329
소천예배 327
소탕 610
소태방 683
속절 329, 650
속칭 569
손두둠 608
손모듬 226
손발톱 460
손신 480
솔서제 305
솜이불 124, 125
송시열 466
쇠 486
수노인 331
수레 144
수망굿 625
수목장림 515
수복 76, 138, 189
수성노인도 331
수시 332
수연 333, 772
수연문 337
수염 460
수유 338, 714
수의 126, 208, 339, 431, 447, 461, 510
수장 147, 342
수저 353
수조 342
수질 327, 343, 344, 538, 621
숙부 277
숙채 265

순산 433
순장 67, 151, 344
술잔 707
숭늉 42, 48, 631, 718
습 160, 280, 286, 447, 461
습구 149, 431
습 · 대렴 322
습 · 소렴 125
습의 339
습전 544
시가례 64, 345, 534
시다림 347
시다림작법 347
시도 348
시도기 348
시마 38, 123, 194, 286, 321, 344, 349, 350, 444, 461, 466, 538, 548
시묘살이 350
시사전 353, 544
시신 339
시아 139
시의전서 76, 542
시접 353
시제 240, 318, 440
시주 139
시집살이 354
시집살이혼 128
시향제 318
시혜소 528
식게 99
식초 641
식혜 356
신랑다루기 356
신방 358
신방엿보기 358
신부가마 359
신부값 361
신부대 360
신식결혼식 193
신알 233
신알례 361
신여성 447, 598
신위 54, 218, 242, 601, 604, 745
신전장 148
신주 36, 92, 202, 209, 220, 230, 313, 324, 362, 364, 455, 456, 570, 601, 603, 641, 648, 660, 745
신줏단지 364
신행 303, 354, 359, 366, 725
신혼곡 57
신혼부부 368
신혼여행 360, 368
신혼체백 455
실태 480
심상 369
심원록 349
십이지상 310
쌀 178
쌀뜨물 160
쑥탕 160
씻김굿 457, 625

이응

아놀드 반 게넵 687
아침저녁 544
아헌 93, 163, 241, 430, 670
아헌관 549, 779
악귀 182
악성 743
악수 150, 430, 448, 449
안사돈 238

안산법 432
안태 434, 683, 684
앙와신전장 148
앙와장 148
앙장 293, 436
애도 571
애물단지 438
애사 559
애산 432
애석장 437
애석총 437
애손 579
애자 579
애장 437
애장터 437
애총 437
약혼 439
약혼서 439
양로연 333
양수 595
양자 38, 496
양창독 588
어육 440, 675
어육기 441
어적 613
어탕 610
어포 700
엄광전 320
여 442
여막 442
여묘 442
여소 442
여차 442
역복 211, 444
역복불식 171, 444
역월단상제 523
연길 444, 497, 499
연길단자 63
연담 731
연도 471, 525
연복 327
연애결혼 447
연애혼 446
연옥 470, 471, 472
염 510
염습 323, 353, 430, 447, 461, 669
염습구 126, 448, 449
염습실 160, 529
염습용구 150, 432
염습의 448
염습제구 431
염신 74
염우 145
염의 339
염포 461
엽전 178
엿기름 356
영개울림 514
영거 179
영결식 451
영구 43, 85, 179, 453, 577, 599, 622
영구차 454
영남학파 23
영당 456, 601
영상 544
영실 514
영안실 528
영애 108
영여 455, 469
영역 40
영연 301
영정 455, 456
영조척 156
영좌 44, 457, 529, 640
영혼 242

영혼결혼식 457
예기 50, 458, 497
예물 705
예법 509
예의유집 459
예장 204
예제 245
오구굿 457, 625
오낭 448, 449, 460
오례 321
오륜행실도 733
오방색 138
오복 121, 350, 695
오복제 122
오복제도 67, 461, 547, 621
오복친 168, 286
오선생예설분류 463
오행 492
옷 190, 339
옹관 61
옹중 168
왕릉 530
왕릉지 533
외빈 228
외손봉사 173, 464
왼새끼 83
요여 455
요질 465, 538, 621
용재총화 182
우귀 499
우암경례문답 466
우인 466
우제 280, 467
운각 145
운감 779
운구 454
운구예식 526
운삽 275
운상 468
원문 559
원삼 736
위령기도 470, 526
위령미사 472
위령제 473
위령탑 475
위토 475
위패 230, 476
위호 477
유감주술 477, 547, 653, 679, 682
유거 289
유골 249
유골용기 478, 515
유기 41
유량 338
유림장 451
유복자 621
유사고 52
유산 253
유산법 480
유세차 559
유소 294
유식 93, 241, 482, 631, 708
유언 510
유월장 224, 273, 483, 524
유인 156
유장원 284
유허비 167
육낭 460
육례 666
육아의례 484
육적 49, 613
육탈 197, 522
육탕 610
육포 700
윤달 341
윤도 486

윤증 155
윤회봉사 488
윤회사상 627
은전 249
은혜 776
음다 42
음복 343, 490, 675
음식금기 653
음양 491
음양설 682
음양오행 486, 491, 624, 679
의 538
의려 442
의례 494
의례경전통해 494
의례문해 495
의례용 장치. 83
의례준칙 451, 495
의리 495
의복 461, 495, 496
의양 496
의양단자 63, 496
의장계 581
의절 502
의혼 497, 593
이난수 283
이레잔치 503
이문건 351
이바지음식 499
이상재 451
이성 53
이승 125
이언적 200
이이 351
이익 345
이장 500
이재 239, 483
이정회 443
이중장 522
이진상 238
이차장 147
이항복 144
이혼 502
이황 350, 692
인도 144
인륜지대사 69
인생고비 687
인재행 81
인형 152
일곱이레 484
일년복 444
일뤠잔치 503
일생의례 365, 506, 608, 656, 687
일월오봉병 492
일차장 147
임신부 676
임종 289, 509
임종예배 327
입관 125, 448, 510, 511, 669
입맛 511
입매상 768
입맷상 511
입사의례 315
입장 148
입향조 161
잉태 676

지읒

자관자례 64, 512
자리걷이 513
자연장 250, 480, 515
자연장지 515
자유연애 447

자유연애혼 279
자최 194, 538
자침 486
작명 517
작수성례 192
작위 569
잔대 38, 39, 519
잔반 39, 519
잔치 520
잡귀 719
장가턱 357
장골 522
장골용기 478
장관자 346
장국상 512
장례 521
장례미사 472, 525
장례식장 69, 160, 527, 528
장메 449
장메(교포) 448
장명등 530
장사택일지 531
장송 522
장송의례 525
장수 76, 138, 186, 189
장유 461
장의사 528
장의업 454
장지 532, 702
장태 434
장태방 683
재가례 64, 345, 534
재계 534
재궁 511
재사 559
재실 536
재우제 271, 468, 537
재최 38, 123, 321, 344, 350, 461, 466, 538, 547
재최관 538
재최복 31
재최삼년 264
재행 366, 539
재혼 540
저승 125
저승돈 190
저승사자 245
저장 297
적 542
적기 543
적장자 52
전 544
전계 538
전녀위남 682
전안례 126, 159, 545, 666
전유어 32
전의 208
전죽석 145
절치성 662
접촉주술 478, 546, 684
정령신앙 572
정몽주 499
정방 645
정복 31, 463, 538, 547
정신대 578
정자석 530
정종 509
정침 191, 453, 509, 511, 548, 660
정화 160, 447, 535
정화수 269, 586
제 544
제관 549, 619
제구 609
제기 353, 550, 609
제기함 552

제례 25, 72, 250, 507, 552, 647
제례홀기 557
제망매가 559
제목주 85
제문 544, 559, 665
제물 245, 560, 611, 719
제복 563
제사 610
제사공동체 583
제사도구 565
제사분할 566
제사일 329
제삿밥 175
제상 326, 567, 629
제수 550, 609, 610
제오방문 559
제주(祭酒) 568
제주(題主) 569
제주(祭主) 670
제주전 544, 570
제찬도 610
제청 301
젯메 175
조 280
조매 570, 648, 669
조문 559, 571
조발낭 160
조상 362, 364
조상굿 477
조상숭배 473, 572
조상신 163, 299, 475, 572, 574
조상제사 470
조석곡 57
조석전 576
조선여속고 80
조율시이 586
조장식 87
조전(弔奠) 544
조전(祖奠) 544, 576, 577
조전(朝奠) 544, 576
조현명 169
조혼 359, 577
존비 461
졸곡 133, 280, 444, 483, 578
졸곡제 209
종가 348, 579
종계 173, 581
종묘 36, 149
종법 171, 234, 575, 583, 584
종법제도 234, 579
종부 580
종손 580
종헌 93, 163, 585, 670
종헌관 549, 779
좌임 448
좌장 148
좨주 586
주과포 586
주당맥이 118
주독 36, 365, 554, 587
주례 588
주병 589
주술기자 590
주신 145
주안상 635
주육례 105, 592, 635
주인 300
주자가례 106, 176
주자사례 593
주자성리학 166, 308
주작 153
죽음의례 514
준 96, 594
중구 595
중구 차례 595
중대 530

중매인 146, 596
중매혼 596, 598
중사 54, 696
중상 598
중양절 595
중의 538
증보사례편람 534, 599
지관 486, 532, 600
지남반 486
지남철 486
지문 604
지방 457, 601, 603, 620
지방함 603
지사 601
지석 604, 664
지요 448, 449, 606
지청 301
지팡이 297
직각장군 168
직계존속 196
직지장 148
진기 93, 607
진다 42, 718
진도다시래기 227
진도만가 771
진사턱 608
진새내기 608
진새례 607, 608
진설 93, 607, 609
진설도 610
진설법 611
진세턱 608
진습의 431
진오기굿 457, 514, 625
진적 613
진찬 93, 163, 614
진찬도 610
질명 80
집가심 514
집사자 549
집안치성 662
짚불 470
짚신 246

치읓

차례 615
차반 81
차비 114
차사본풀이 99, 190, 288
찬기파랑가 559
참례 233, 618
참사자 619
참신 93, 163, 241, 620
참최 123, 194, 297, 321, 344, 350, 461, 466, 538, 547, 621
참최복 31
참최삼년 264
채단 204, 706, 747
처가 539
처당 167
처사 156
처처혼 102
천개 461
천거정침 548
천구 280, 453, 577, 622
천금 448, 449, 461, 623
천기대요 624, 686
천도굿 624
천도재 242, 627
천문학 486
천신 233
천원지방 145, 486
천인천자문 629

천장 501
천주성교예규 471
철 96
철상 163, 629
철시복반 631
첨작 631
첫국밥 632, 657, 713
첫나들이 633
첫날밤 634
첫돌 137
첫돌의례 137
청기 592, 635
청룡 153
청사 453, 559
청장 636
청첩장 637
청혼 497, 638, 731
청혼서 638
체석 530
체천 639
초례 64, 126
초분 197, 228, 639
초사 559
초상화 456
초우제 271, 468, 640
초접 641
초조제 313, 553, 607
초종 85, 286, 509, 510, 642
초하루 52, 544
초행 131, 545, 644
초헌 93, 163, 241, 646, 670
초헌관 549, 779
초헌례 134
초혼 179, 191
촛대 647
촛대석 145
총부봉사 464
최장방 639, 647
추길 444
추도식 648
추모 76
추모식 474
추석 188
추석 차례 650
축관 549, 640, 653
축문 214, 559, 651, 653
축의금 210
축판 653
출산 653, 657
출산금기 653
출산의례 655
출생의례 655, 656
출입 233
출입고 52, 659
출주 93, 659
출주고사 660
출타 170
충이 150, 432, 448, 660
취토 661
측와장 148
치성기자 662
치아 460
치장 280, 664
치전 544, 665
치제문 560
친빈전 544
친소 461
친영 177, 592, 593, 666, 696
친영혼 128
친전 113
친진 639, 669
칠거지악 502
칠성판 606, 669
칠출 502
칠태도 677
침주 670

키읔

큰상	511, 699, 768, 772
큰상물림	288
큰상받기	671
큰상의	287

티읕

탈상	350, 513, 673
탑비	167
탕	674, 675
탕기	675
탕병	74
태	256, 434
태교	253, 254, 655, 676, 677
태교신기	678
태몽	253, 656, 679, 681
태반	256, 682
태봉	436
태실	434
태아	676
태옹	684
태장경	435
태점	253, 680
태제	683
태처리	682, 683
태항	684
태항아리	684
태호	684
택일	64, 143, 444, 496, 531, 532, 685
택일기	143
택지	531
탯줄	256, 547, 655, 682
토속지	690
토용	345
토장	147, 522
토지신	776
토테미즘	572
통과의례	316, 655, 687, 688, 766
통과의례(책)	507, 508
통혼권	690
퇴계상제례답문	692
퇴계상제례답문변의	693
퇴주기	693

피읖

파시조	161
판석	604
패철	486
편	693
편기	693
편산	432
편적	694
편청	142
평생도	695
평생의례	507
평토제	770
폐백	449, 696, 722
폐백음식	698
포	249, 700
표목	145
풍수	486, 492, 600, 601
풍수가	601
풍수사	601
풍수사상	534
풍수지리설	153
풍수지리술	40
풍장	147, 701
풍차바지	137

프레이저	477
피막	714
피성	743

히읗

하관	70, 85, 174, 661, 702
하대	530
학생	156
한식	161, 188, 317, 703
한식 절사	703, 704
할급휴서	503
함	705
함중	569
함진아비	645, 706
합궁례	368
합근례	707, 713
합문	93, 708
합사	708
합설	119, 708, 710
합장	148, 711
합환주	712
항표	145
해	249
해막	714
해묵이	69, 366
해산	713
해산방	252
해산의례	713
햇세배	319
행위금기	654
행전	538
향	716
향교	348, 476
향로	715, 716
향사	780
향상	716
향안	716
향음주례	491
향탁	716
향탕	160
향합	716
허리	465
허전	245
허혼	497, 731
허혼서	717
헌관	549
헌다	718
헌수	772
헌수례	765
헌수주	767
헌식	719
헌작	613, 693, 720
헌주상	768
현구고례	238, 303, 500, 699, 722
현무	153
현손	647
현우사당	65
현주	609
현충일	474
현훈	448
혈식군자	726
혈연	575
호상	727, 771
호석	729
호피	730
혼담	638, 731
혼례	24, 101, 507, 732, 777
혼례복	645, 736
혼례식	739
혼례홀기	741
혼반	743
혼백	39, 180, 351, 455, 456, 457, 640, 745

혼백상자 455
혼사 732
혼사계 746
혼서지 705, 706
혼속 354
혼수 705, 747
혼여꾼 360
혼인 502, 749, 758
혼인 방식 446
혼인법 752
혼인성사 754
혼인신고 756
혼인여탐굿 758
혼주 759
홀기 588
홑이불 125
화갑 334
화리 502
화사 530
화삽 275
화상 202
화연 766
화장 117, 147, 250, 342, 515, 760
화장법 522
화장장 523, 762
환갑 334, 765, 766
환갑연 766
환갑의례 766
환갑잔치 765
환력 766
활옷 736
황금가지 477
회갑 764, 765, 766, 772
회갑상 766
회갑연 767
회격 70, 769
회곽 60
회다지 525, 770
회혼 772
회혼례 696, 771, 772
횡산 432
효 775
효건 61
효대 465
효손 579
효자 545
후토신 40
후토제 163, 776, 777
후행 130, 644, 672, 777
휘장 778
흉례 321
흉사 343
흉행 211
흠향 54, 594, 652, 708, 779
희생 726, 780

필자

강재철 姜在哲 단국대학교

봉치시루 204
신부가마 359
호피 730

강정원 姜正遠 서울대학교

교환혼 73
근친혼 82
봉사혼 199
신부대 360
유감주술 477
접촉주술 546

고부자 高富子 전 단국대학교

배냇저고리 184

고영진 高英津 광주대학교

가례도감의궤 25
가례언해 26
가례원류 27
가례의절 27
급묘 85
대렴 124
세종실록 오례 321
소렴 322
영구 453

구미래 具美來 불교민속연구소

불교화혼식 216
사십구재 242
산골 249
상용영반 295
천도재 627
화장 760

권삼문 權三文 여헌기념관

갱기 41
교의 72
모사기 158
소병 326
앙장 436
잔반 519
제기 550
제기함 552
제사도구 565
제상 567
주병 589
지방함 603
촛대 647
탕기 675
퇴주기 693
편기 693
향로 715
향탁 716
향합 716
휘장 778

권순형 權純馨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옥제 305
이혼 502
재혼 540
조혼 577

김만태 金萬泰 동방대학원대학교

궁합 78
수연례 333
연길 444
음양오행 491
작명 517
천기대요 624
칠성판 669
택일 685

김명자 金明子 전 안동대학교

기자의례 89
상문살 283
설 차례 312
신줏단지 364
일생의례 506
조상신 574
주술기자 590
차례 615
추석 차례 650
치성기자 662

김문택 金文澤 서울역사박물관

삼년상 263
시묘살이 350
심상 369
여막 442
유월장 483

김미영 金美榮 한국국학진흥원

고이성 53
단설 119
불천위제사 220
사당 230
소목 324
수조 342
영정 456
위패 476
정침 548
제문 559
제사분할 566
조매 570
준 594

진설 609
체천 639
최장방 647
친진 669
합사 708
합설 710
혼백 745

김상보 金尙寶 대전보건대학교

갱물 41
고임새 54
대갱 122
대례상 128
도적 133
떡 140
메 148
삼색나물 264
상수 287
어육 440
이바지음식 499
적 542
큰상받기 671
편적 694
폐백 696
폐백음식 698
회갑상 766

김시덕 金時德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가례 22
감모여재도 33
관혼상제 66
목욕 160
묘제 161
문상 170
봉사대수 197
분상 211
빈 224
삼일장 272
상례 279
상장례 298
아헌 430
염습 447
영결식 451
오복제도 461
이장 500
종헌 585
중상 598
진설법 611
초헌 646
취토 661
치전 665
합장 711
헌작 720

김시황 金時晃 경북대학교

가복 31
강복 38
관례 63
의복 495
정복 547

김영관 金榮官 제주대학교

곽 59
관(棺) 61
매장 147
복차장 196
빈장 228
수장 342
순장 344
초분 639
풍장 701
회격 769

김영수 金榮洙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복수결혼 192
선종 311
소천예배 327
위령기도 470
위령미사 472
장례미사 525
추도식 648
혼인성사 754

김영순 金永順 한국민속촌

불천위 218
혈식군자 726
흠향 779
희생 780

김영재 金永才 국립민속박물관

제복 563

김윤정 金潤貞 국립민속박물관

백수백복도 186
수성노인도 331

김지욱 金志昱 경기문화재연구원

노제 113
빈상여놀이 226
사갑제 229

김창호 金昌鎬 국립민속박물관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별전 189

김태수 金泰水 삼척시립박물관

생신제 304
헌식 719

김혜숙 金惠淑 제주대학교

막편지 143
일훼잔치 503
함 705

김효경 金孝慶 한남대학교

산후조리 259
속절 329
안산법 432
유산법 480

나경수 羅景洙 전남대학교

다시래기 117
잔치 520
진새례 607

도민재 都民宰 청주대학교

가정의례준칙 31
건전가정의례준칙 42
관례홀기 65
독축 134
의례 494
의례경전통해 494
의례문해 495
의례준칙 495
제례홀기 557
축문 651
축판 653
혼례홀기 741

박경하 朴京夏 중앙대학교

상포계 302
종계 581

박동철 朴東喆 한국국학진흥원

신행 366
연애혼 446
중매혼 598
혼사계 746

박성용 朴晟慵 영남대학교

국제결혼 76
의혼 497
청혼서 638
혼담 731

박정혜 朴廷蕙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란병 157
평생도 695

박종민 朴鍾珉 부천시박물관

상여 289
영구차 454

박태호 朴台浩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묘지 163
봉안 201
유골용기 478
자연장지 515
장례식장 527
화장장 762

박혜인 朴惠仁 계명대학교

혼례 732

박홍갑 朴洪甲 국사편찬위원회

계빈 50
삼가례 261
성년식 314
성년의 날 316
시가례 345
자관자례 512
재가례 534

배도식 裵桃植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상객 277
애장 437
우인 466
태교 676
후행 777

배영동 裵永東 안동대학교

감실 35
금줄 83
기제사 92
명기 151
벌초 188
봉제사접빈객 203
사대봉사 234
성묘 317
제관 549
제물 560
종가 579
지석 604
참사자 619

백민영 白旻永 국립민속박물관

삼신상 269
새벽문안 303

변혜민 邊慧敏 국립민속박물관

상여장식 293
석수 310

서해숙 徐海淑 전남대학교

산파 256
육아의례 484

송미경 宋美京 서울여자대학교

대렴금 125
소렴금 323
수의 339
염습구 448
염포 449
지요 606
천금 623
충이 660

송재용 宋宰鏞 단국대학교

근친 81
길제 97
삼우제 271
우제 467
재우제 537
초우제 640

윤덕인 尹德仁 관동대학교

면기 150
반기 175
삼실과 270
시접 353
식혜 356
어육기 441
적기 543
제주(祭酒) 568
주과포 586
청장 636
초접 641
탕 674
포 700

은현정 殷賢貞 국립민속박물관

부케 210
청첩장 637

이관호 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중매인 596
초행 644

이길표 李吉杓 성신여자대학교

납채서 107
사주단자 246
첫날밤 634
허혼서 717
현구고례 722

이민식 李敏植 수원화성박물관

망주석 145
묘표 166
무인석 168
문인석 171
석물 307
장명등 530
호석 729

이상현 李相賢 안동대학교

부조 209
부조록 210
사돈지 238

이용범 李龍範 안동대학교

영혼결혼식 457
자리걷이 513

이창기 李昌基 영남대학교

문중 173
사돈 236
윤회봉사 488
통혼권 690

이필영 李弼泳 한남대학교

삼신 266
삼신받기 267
안태 434
첫국밥 632
출생의례 655
태교신기 678
태처리 682
태항아리 684

이해준 李海濬 공주대학교

기일비망기 87
납폐물목 110
종법 583
천인천자문 629

이향숙 李香淑 동부산대학교

결혼기념일 44
맞선 146
신혼여행 368
약혼 439

필자

이희재 李曦載 광주대학교

계반개 49
국궁 74
궐명 80
기신재 86
납주 103
사신 242
위호 477
음복 490
재계 534
좨주 586
진적 613
철시복반 631
침주 670

임민혁 任敏赫 한국학중앙연구원

가례 24
개영역 39
견전 43
곡 56
담제 120
대상 131
발인 179
부고 205
분축 214
사시제 240
산신제 250
설위 313
성분제 320
재실 536
진기 607
천구 622
철상 629
치장 664
탈상 673
한식 절사 703
후토제 776

장동우 張東宇 대진대학교

광중 70
무복친 167
발상 178
복 191
복인 194
부의 207
상주 300
성복 319
수시 332
임종 509
장사택일지 531
조문 571
초종 642
하관 702
호상 727

장병인 張炳仁 충남대학교

남귀여가혼 101
반친영 176
친영 666

장장식 張長植 국립민속박물관

명당 153
명당도 154

전경목 全炅穆 한국학중앙연구원

경례유찬 45
계녀서 46
고려사 예지 52
국조오례의 78
길례요람 96
남계선생예설 100
당내 121
명재선생의례문답 155
봉선잡의 200
분재기 212
분정기 213
사례집요 238
사례편람 239
사마씨서의 239
사의 245
시도기 348
증보사례편람 599

전경욱 田耕旭 고려대학교

방상시 180

전경수 全京秀 中国 贵州大学 东盟研究院 特聘教授

통과의례 687

정각 正覺 중앙승가대학교

다비 114
석문가례초 306
석문상의초 307
시다림 347

정긍식 鄭肯植 서울대학교

위토 475
혼인법 752
혼인신고 756

정연학 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산실 252
함진아비 706

정종수 鄭鍾秀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공포 58

만장 144
명정 156
반곡 174
부제 208
삽 275
상청 301
소상 326
역복 444
영여 455
영좌 457
입관 510
장례 521
졸곡 578

정현미 鄭賢美 국립민속박물관

간납 32
국수 74
입맷상 511

조선영 曺善映 전 국립민속박물관

신방엿보기 358
첫나들이 633

조우현 趙又玄 성균관대학교

관(冠) 60
대공 123
상복 285
상장 297
소공 321
수질 343
시마 349
요질 465
재최 538
참최 621

조현숙 趙玄淑 국립민속박물관

멱목 149
악수 430
오낭 460

조희진 趙熙眞 인천대학교

돌 135
돌잡이 139

주영애 朱英愛 성신여자대학교

납폐 108
납폐서 111
상견례 277
혼례식 739
혼수 747

지두환 池斗煥 국민대학교

강신 38
계문 48
계반삽시 49
뇌주 114
분향 215
삼내흠 262
삽시정저 276
유식 482
진찬 614
참신 620
첨작 631
출주 659
합문 708
헌다 718

천진기 千鎭基 국립민속박물관

윤도 486

천혜숙 千惠淑 안동대학교

대례 126
대반 130
백일 186
사처방 248
산후의례 258
시집살이 354
재행 539
출산금기 653
혼반 743
혼인 749

최길성 崔吉城 히로시마대학교

조상숭배 572
효 775

최배영 崔培英 성신여자대학교

납길 103
납징 104
납채 105
문명 169
주육례 592
주자사례 593
청기 635

최순권 崔順權 국립민속박물관

계례 46
고사당 52
녜제 112
사당제 233
삭망전 249
시사전 353
신알례 361
신주 362
전 544
제례 552
제주(題主) 569

조석전 576
조전 577
주독 587
지방 601
진설도 610
참례 618
출입고 659

최운식 崔雲植 한국교원대학교

관대벗김 63
교배례 71
반함 178
사자상 245
주례 588
합근례 707
합환주 712
회혼례 771

최원석 崔元碩 경상대학교

장지 532
지관 600

최은수 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돌복 137

최인학 崔仁鶴 인하대학교

기럭아비 86
목기러기 159
신랑다루기 356
전안례 545
혼주 759

최종호 崔鍾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연문 337
회갑 764

표인주 表仁柱 전남대학교

운상 468
위령제 473
회다지 770

한기범 韓基範 한남대학교

가례증해 28
가례질서 29
가례집람 30
가례향의 31
격몽요결 43
상례비요 282
상례언해 283
상변통고 284
예기 458
예의유집 459
오선생예설분류 463
우암경례문답 466
퇴계상제례답문 692

한미옥 韓美玉 전남대학교

수유 338
중구 차례 595

한양명 韓陽明 안동대학교

삼가르기 262
삼칠일 274
외손봉사 464
태몽 679
태점 680
해산의례 713

현승환 玄丞桓 제주대학교

까마귀 모른 식게 99
보공 190
상식 288

홍나영 洪那英 이화여자대학교

의양 496
혼례복 736

홍태한 洪泰漢 중앙대학교

천도굿 624
혼인여탐굿 758

황경순 黃慶順 국립문화재연구소

배냇머리자르기 183
산전의례 253

분야별 표제어 일람표

관혼상제 66

일생의례 506

통과의례 687

출생의례

출생의례 655

산전(産前)

산전의례 253
기자의례 89
유감주술 477
접촉주술 546
주술기자 590
치성기자 662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별전 189
삼신 266
삼신받기 267
안산법 432
유산법 480
태교 676
태몽 679
태점 680
택일 685

해산(解産)

해산의례 713
금줄 83
산실 252
산파 256
삼가르기 262
안태 434
첫국밥 632
출산금기 653
태처리 682
태항아리 684

산후(産後)

산후의례 258
산후조리 259
삼신상 269
삼칠일 274

육아(育兒)

육아의례 484
배냇머리자르기 183
배냇저고리 184
수유 338
작명 517
첫나들이 633
백일 186
돌 135
돌복 137
돌잡이 139
천인천자문 629
잔치 520

아이의 사망

애장 437

관·계례

성년식 314
성년의 날 316

관례(冠禮)

관례 63
계빈 50
시가례 345
재가례 534
삼가례 261
자관자례 512
관례홀기 65
진새례 607

계례(笄禮)

계례 46

혼례

전통의례절차

의혼 497
혼담 731
납채 105
택일 685
연길 444
납폐 108
고사당 52
초행 644
대례 126
전안례 545
교배례 71
합근례 707
관대벗김 63
큰상받기 671
첫날밤 634
신방엿보기 358
신행 366
현구고례 722
새벽문안 303
재행 539
신랑다루기 356
근친 81
일뤄잔치 503
혼인여탐굿 758

현대의례절차

맞선 146
상견례 277
약혼 439
혼례식 739
신혼여행 368

의례도구

함	705
봉치시루	204
청혼서	638
납채서	107
사주단자	246
납폐서	111
의양	496
허혼서	717
막편지	143
혼례홀기	741
납폐물목	110
혼수	747
목기러기	159
모란병	157
신부가마	359
호피	730
사돈지	238
청첩장	637
부케	210
부조록	210
혼례복	736

의례음식

고임새	54
국수	74
대례상	128
이바지음식	499
입맷상	511
폐백음식	698
합환주	712

용어

결혼기념일	44
교환혼	73
국제결혼	76
궁합	78
근친혼	82
기럭아비	86
남귀여가혼	101
납길	103
납징	104
대반	130
문명	169
반친영	176
복수결혼	192
봉사혼	199
부조	209
불교화혼식	216
사돈	236
사처방	248
상객	277
상수	287
서옥제	305
시집살이	354
신부대	360
연애혼	446
영혼결혼식	457
우인	466
음양오행	491
이혼	502
잔치	520
재혼	540
조혼	577
주례	588
주육례	592
주자사례	593
중매인	596
중매혼	598
청기	635
친영	666
통혼권	690
평생도	695
폐백	696
혼례	732
함진아비	706
혼반	743
혼사계	746
혼인	749
혼인법	752
혼인성사	754
혼인신고	756
혼주	759
후행	777

수연례, 회혼례

수연례(壽宴禮)

수연례	333

회갑(回甲)

회갑	764

회혼례(回婚禮)

회혼례	771
백수백복도	186
수성노인도	331
회갑상	766
평생도	695
폐백	696
수연문	337

상장례

의례

상례	279
장례	521
상장례	298

의례절차

초종	642
임종	509
수시	332
복	191
발상	178
사자상	245
곡	56
전	544
- 시사전	353
- 조석전	576
- 삭망전	249
- 조전	577
부고	205
염습	447
목욕	160
반함	178
소렴	322

대렴 124
입관 510
보공 190
빈 224
성복 319
상식 288
조문 571
문상 170
분상 211
부의 207
치장 664
개영역 39
천구 622
견전 43
영결식 451
발인 179
운상 468
노제 113
급묘 85
하관 702
회다지 770
취토 661
제주(題主) 569
반곡 174
우제 467
- 초우제 640
- 재우제 537
- 삼우제 271
졸곡 578
부제 208
소상 326
역복 444
치전 665
대상 131
탈상 673
담제 120
길제 97
후토제 776
성분제 320
산신제 250
위령제 473
다시래기 117
빈상여놀이 226
자리걷이 513
천도굿 624
장례미사 525
선종 311
위령기도 470
소천예배 327
다비 114
시다림 347
사십구재 242
천도재 627

신체

영구 453
영정 456
혼백 745

의례도구

여막 442
염습구 448
대렴금 125
- 소렴금 323
- 천금 623
- 지요 606
- 염포 449
- 멱목 149
- 악수 430
- 충이 660
- 오낭 460
수의 339
관(棺) 61
칠성판 669
곽 59
유골용기 478
상복 285
- 관(冠) 60
- 요질 465
- 수질 343
- 상장 297
상여 289
상여장식 293
영구차 454
방상시 180
명정 156
영여 455
공포 58
만장 144
삽 275
윤도 486
명당도 154
명기 151
지석 604
석물 307
- 문인석 171
- 무인석 168
- 호석 729
- 묘표 166
- 석수 310
- 망주석 145
- 장명등 530

의례문서

분정기 213
시도기 348
장사택일지 531
제문 559

의례장소

광중 70
묘지 163
상청 301
영좌 457
자연장지 515
장례식장 527
장지 532
화장장 762

용어

오복제도 461
- 참최 621
- 재최 538
- 대공 123
- 소공 321
- 시마 349
- 정복 547
- 가복 31
- 강복 38
- 의복 495
당내 121
회격 769

택일 685
음양오행 491
중상 598
상문살 283
상주 300
복인 194
무복친 167
호상 727
지관 600
상포계 302
삼일장 272
유월장 483
삼년상 263
시묘살이 350
심상 369
명당 153
매장 147
풍장 701
수장 342
화장 760
순장 344
산골 249
초분 639
복차장 196
빈장 228
합장 711
이장 500
봉안 201

제례

의례

사시제 240
사당제 233
- 신알례 361
- 출입고 659
- 참례 618
- 고사당 52
녜제 112
기제사 92
묘제 161
- 산신제 250
한식 절사 703
차례 615
- 설 차례 312
- 추석 차례 650
- 중구 차례 595
불천위제사 220
사갑제 229
생신제 304
성묘 317
기신재 86
상용영반 295
추도식 648
위령미사 472
위령제 473
까마귀 모른 식게 99

의례절차

재계 534
설위 313
진기 607
진설 609
출주 659
참신 620
강신 38
- 분향 215
- 뇌주 114
진찬 614
헌작 720
- 초헌 646
- 아헌 430
- 종헌 585
- 침주 670
- 좨주 586
- 진적 613
- 계반개 49
독축 134
유식 482
- 첨작 631
- 삽시정저 276
- 계반삽시 49
합문 708
계문 48
- 헌다 718
- 삼내흠 262
수조 342
고이성 53
국궁 74
철시복반 631
사신 242
납주 103
분축 214
철상 629
음복 490
- 준 594
헌식 719

의례장소

사당 230
감모여재도 33
정침 548
감실 35
재실 536

신체

불천위 218
신주 362
신줏단지 364
위패 476
주독 587
지방 601

의례물품

제사도구 565
교의 72
모사기 158
소병 326
앙장 436
제상 567
촛대 647
축판 653
퇴주기 693
향로 715
향탁 716
향합 716
휘장 778
지방함 603
제기 550
갱기 41

면기 150
반기 175
시접 353
어육기 441
잔반 519
적기 543
제기함 552
제복 563
주병 589
초접 641
탕기 675
편기 693

의례음식

제물 560
간납 32
갱물 41
국수 74
대갱 122
도적 133
떡 140
메 148
삼색나물 264
삼실과 270
식혜 356
어육 440
적 542
제주(祭酒) 568
주과포 586
청장 636
탕 674
편적 694
포 700
희생 780

용어

효 775
조상숭배 572
조상신 574
봉사대수 197
사대봉사 234
종법 583
제관 549
참사자 619
종가 579
문중 173
봉제사접빈객 203
당내 121
종계 581
위토 475
소목 324
체천 639
최장방 647
친진 669
조매 570
속절 329
흠향 779
혈식군자 726
윤회봉사 488
제사분할 566
외손봉사 464
합사 708
합설 710
단설 119
위호 477
벌초 188
가가례 22
궐명 80
고임새 54
진설법 611

의례문서

기일비망기 87
분재기 212
분정기 213
시도기 348
제례홀기 557
진설도 610
축문 651

관내 자문위원

김영재
이관호
정연학
정현미
최순권
최은수

관외 자문위원

고영진(광주대학교)
구미래(불교민속연구소)
김명자(전 안동대학교)
김상보(대전보건대학교)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나경수(전남대학교)
박혜인(계명대학교)

감수위원

이길표(성신여자대학교)
이범직(건국대학교)
이필영(한남대학교)
지두환(국민대학교)